

1037-07-0430-01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학원 · 간첩편 (Ⅵ) -



nis 국가정보원
www.nis.go.kr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학원 · 간첩편 (Ⅵ) —

정치

IV

사법

1. 서론
2. 정치인 사찰
3. 선거개입
4. 정당·국회활동 개입
5. 정치자금 통제
6. 결론

1. 서론
2. 재판에 대한 개입
3.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4. 검찰과 중앙정보부·안기부
5.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6. 결론

언론

V

노동

1. 총론
2. 조사내용
3. 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탄압실태
4. 결론

1. 서론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과 평가
4. 결론

학원

VI

간첩

1. 개요
2. 조사결과
3. 결론

1. 총론
2. 중정-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의 사례검토
3. 중정-안기부 간첩수사와 처리상의 문제
4. 결론

VI

1. 개요
2. 조사결과
3. 결론

1. 총론
2. 중정-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의 사례검토
3. 중정-안기부 간첩수사와 처리상의 문제
4. 결론



-
1. 개요
 2. 조사결과
 3. 결론
-

I. 개 요

1. 조사의의 · 8
 2. 조사방향 및 한계 · 10
 3. 조사내용 · 11
-

II. 조사결과

1. 권위주의정부의 학원문제 대처양태 · 12

 - 가. 학원문제에 대한 정보기관의 시각 / 12
 - 나. 학생운동 전개상황 및 정부의 대응 / 20
 - 다. 정부차원의 학원문제 대책 유형 / 30

2. 학원대상 정보활동 체계 · 42
3. 정보기관의 학생운동 통제실태 · 48

 - 가. 학원대상 통제유형 / 48
 - 나. 학원사찰 실태 / 49
 - 1) 학원망 활용 / 49
 - 2) 협조자 활용 및 학내·외 잠복활동 전개 / 56
 - 3) 정보기관원의 직접적인 학내사찰 발각사례 / 62

-
- 다. 유형별 학생운동 통제실태 / 64
- 1) 학교 및 교수에 대한 통제 / 64
 - 가) 학사개입을 통한 통제 / 64
 - 나) 비판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등 견제활동 / 85
 - 2)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 100
 - 가) 학원건전화세력 육성을 위한 개입활동 / 100
 - 나) 집회·시위 진압대책 강화방안 제시 / 127
 - 다) 총학생회장 선거 개입 활동 / 142
 - 라) 학원망 및 프락치혐의자 폭행사건 활용사례 / 149
 - 마) 운동권명의 서신 발송차단 대책 강구 / 157
 - 바) 이념서클 등 통제 강화 / 158
 - 사) 배후세력 및 연계조직에 대한 수사확대 / 172
 - 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조정권 행사 / 190
 - 자) 언론 등을 활용한 反 운동권 여론 형성 / 209
 - 차) 운동권 학생 동향내사 및 순화활동 전개 / 221

1 조사 의의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1차 개별사건(7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차로 정치·언론·노동·학원·간첩·사법 등 6개의 분야별 조사를 통해 과거 정보기관의 사회 전반적인 통제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진실위」는 이 중 학원분야 조사와 관련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당시에 학생운동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과도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규명하는 것을 중점적인 조사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은 사회의 민주화를 추동한 원동력이었다. 1960년 4월항쟁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시위, 1969년 3선개헌 반대와 1972년 ‘10월유신’ 선포 이후 영구 집권 반대시위, 1979년 10.16 부산마산민주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등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낸 민주화운동이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3·4공화국)으로부터 전두환(5공화국)·노태우대통령(6공화국)에 이르는 이른바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학생운동세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순집단으로 인식하고 통제 대상으로 취급해 왔다.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위수령(3회), 계엄령(5회), 긴급조치(9회)와 수시 휴교 및 조기방학 조치를 비롯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뿐만 아니라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학원안정법 제정 등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추진된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명백히 알 수 있다.

* 본 학원편 보고서 집필에는 외부 전문가로 고지훈님이 참여하였다.

이렇듯 권위주의정권에 있어서 학원문제는 범정부차원에서 다루었던 중대 사안이었으며,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안기부 또한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에 주력했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83.12, 94쪽) 1) 문건의 내용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안기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학원문제에 대한 정보기관의 시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우선 “국가안보를 이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대학사회는 반정부 소요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학원의 안정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선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즉, 당시 학원문제는 정보수사 활동의 중요대상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진실위」는 권위주의 정권 하의 30여년에 걸친 학생운동사 전체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된 학원관련 공안사건도 주어진 조사 기한과 권한의 한계로 인해 거의 조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공안사건 중심이 아닌 국정원에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정보기관의 학원통제 실상을 확인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먼저 권위주의 정부의 학원문제 대처양태와 학원대상 정보활동 체계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보기관의 학생운동 통제실태를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정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원문대로 인용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국정원이 민주화시대와 세계화시대에 상응하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 문건의 내용은 II장(조사결과)의 1절(권위주의정부의 학원문제 대처양태)에서 자세히 설명

2 조사방향 및 한계

조사대상 기간은 1961년 중정 창설 이후부터 1980년 안기부로 개편하여 활동했던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문민정부 출범(93년) 전후 시기까지로 설정하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원으로 개칭된 이후에는 학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 양태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조사대상 범위로는 정보기관이 학원에 대한 정보수사 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사실은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제외했으며, 본 위원회의 조사목적상 학원분야에 과도하게 개입·통제한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학원관련 공안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외기로 했다. 다만 무리하게 조직사건으로 확대한 경우나 정권안보 목적으로 활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본 위원회에 주어진 활동기간 및 자료부족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심층적으로는 다루지 못했다.

조사방법은 우선 국정원에 보존된 자료 검색을 통해 구체적인 개입 및 통제사례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1980~90년대에 각 대학 학생과에 근무한 교직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학원사찰 실태와 정보활동 양태에 대한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보강증거로 활용했으며, 일반 공개자료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도 객관적인 사안을 선별, 조사결과에 반영하였다.

조사상의 한계로는 중정창설 이후인 1960~70년대 자료가 국정원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1980~90년대 중반 안기부 시절의 통제 실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학원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정보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는 총체적인 통제실상을 확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조사내용

가 자료조사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는 학원분야 관련자료 총 448건(7,137매)을 분석한 결과, 중정 및 안기부 시절 국내담당 부서에 학원 전담팀(구체적인 조직편제는 보안원칙상 비공개)을 운영, 정보수사 활동을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사담당 부서는 이른바 운동권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범증 확보를 위해 동향내사를 했으며, 구체적 증거가 확보될 때는 사법처리를 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정보담당 부서는 중요한 학원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부에 보고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이러한 대책방안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며, 중요사항은 대통령에게도 보고 되었다. 본 보고서는 주로 정보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학원통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형식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밝힌다.

타 기관 자료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문교부 작성 문건(22건, 302매)을 입수,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였다. 기타 언론보도 내용이나 일반 공개자료(350매)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면담조사

국정원 보존자료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방향에 따라 면담조사는 거의 실행하지 못했다. 다만 정보기관의 학원대상 정보활동 체계에 대한 보강자료로 활용키 위해 1980~90년대에 대학 학생과에 근무했던 교직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 즉, 조사관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전남대·조선대·광주대 학생처 교직원 출신 4명에 대한 면담을 통해 대학당국과 정보기관과의 협조실태 등 증언을 청취하였다.

1 권위주의정부의 학원문제 대처양태

가

학원문제에 대한 정보기관의 시각

우선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통제실태를 살펴보기 전에 중정 및 안기부 시절 정보기관이 학원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안기부에서 1983년 12월 초 학원자율화 조치를 앞두고 작성한 94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즉, 앞에서 언급한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 문건²⁾이 바로 그것이다. 동 문건은 그동안의 학원소요의 양상과 정부의 대응상황 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향후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학원문제를 바라보았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19세기 말부터 개시된 학생층의 사회참여 문제를 시기별로 구분하면서 그 특성과 의의 그리고 세계사적 조류 등과 비교하고 있으며, 향후의 학생운동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예견하고 있다. 1983년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문건에는 정보기관이 학생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동 문건에 나타난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인식이 1961년 중정이 창설되어 오늘날 국정원에까지 이어지는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원소요가 가장 빈발했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

2) 안기부, 「학원사태양상분석 및 대처방안검토」(83.12.1). ‘권위주의정부의 학원문제 대처양태’ 항목에서는 국정원 자료의 원문을 인용할 경우 보고서의 본문과 구별이 되게 글자체를 축소하여 기술하였다.

중반 경까지 학원문제와 관련한 대책방안 강구에 주력해 왔던 정보기관의 관점을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 원용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동 보고서는 먼저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개관 하면서 각 시기별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제1기(갑오경장~3.1운동)는 엘리트로서의 사명의식을 자각하고 있으며,

제2기(3.1운동~광주학생운동)는 공산주의 이념이 도입된 시기이기는 하나 민족적으로 완강한 저항력을 갖게 해주었다.

제3기(광주학생운동~해방)는 지하운동의 기술과 끈질긴 인내, 자중을 터득케 했고,

제4기(해방~대한민국 수립)는 민족의 비극이 새롭게 시작되어 새로운 국가형성의 이념과 학생운동이 직결되는 괴로운 민족 에너르기의 분열을 겪게 되는 시기다.

제5기(정부수립~4.19혁명)때는 새로운 학생세력이 대두되며, 사회 개혁적인 요구가 학생운동의 주축 속에 침투하였다. 제6기(4.19혁명~6.3사태)는 4.19 혁명의 성공으로 학생사회가 활기를 띠고 학생세력의 사회적 발언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로 학생세력은 정치권력에 대립적인 항거집단화하였다.

제7기(6.3~10월유신)는 학원의 정치참여 문제에 반성을 촉구하는 운동이 점철된 고뇌의 시기로서 학생운동의 전환기였으며, 제8기(유신~83년 현재)는 장기집권체제 돌입으로 학생운동도 체제 부정적 방향으로 발전하여 60년대와 비교할 때 가치 지향적이라기보다 가치 부정적이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의 발로라기보다 욕구좌절의 소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이 舊 韓末에서부터 4.19에 이르기까지의 학생운동은 민족의 수난기에 맞선 엘리트로서의 임무에 호응한 민족운동이자 당위적인 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으로서 가치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층이 이처럼 시대적 과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된 원인으로 한국의 ‘미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그 요인으로 들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역사적 조건이었다고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는 자주적으로 독립을 쟁취 했다가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여건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체제가 앞섰고 사회체제는 국가체제의 주도 아래 정비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정치의식을 구비한 중산 시민층의 형성이 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지성의 표본이라 자처하는 대학생의 현실참여가 유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시민적 권리, 민주주의, 민족주의 등의 요구는 자연 ‘지성의 표본’이라 자부하던 학생들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국가권력과 정부당국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학생운동의 저류에는 민주주의 정신이 맥맥이 흐르고 있는 바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낡은 권위에 도전하며 합의에 의한 의사규합을 찾고 만인이 찬성하는 일은 그대로 제도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학생소요의 저변에는 민족의 이해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정신이 흐르고 있으며, 강대국 침략에 저자세인 사대주의적 비굴성에도 용서를 못하고 있다. 2.8 독립선언, 3.1운동에서부터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6.3사태, 또한 최근의 일본 교과서 왜곡규탄이나 한미일 3각 안보체제 반대, 굴욕외교 반대 등은 모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이처럼 주요한 사회발전의 동력이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던 것은 한국의 역사적 특성일 뿐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남미제국에 있어서도 19세기 자유주의운동은 대학생들로부터 나왔고, 중국 학생운동 역시 30년대 국공합작을 요구, 장개석 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타 60년 한국 및 터키에서, 64년에는 볼리비아, 월남 및 수단 등 국가에서 학생운동의 결과로 정권이 붕괴되었다.

후진사회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 엘리트로서의 자각은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조국과 선진국을 비교하면서 근대화를 촉진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과격한 비판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저항과 탄압에 부딪치면 직접적인 정치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선진국의 학생운동이 풍요와 발전의 산물임에 반해 후진국의 학생운동은 정반대의 원천에서 출발하였다.

학생층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후진국사회의 발전문제를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지적된 것처럼, 중산층이 부재하고 개혁을 주도해나갈 뚜렷한 사회계층이 없는 저발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서 이와 같은 정당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던 학생운동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여 이 문건이 작성되었던 1983년경에는 과격한 양상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판단이었음을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과거 학생소요의 지지기반이 되어있던 일반 국민들이 사회 안정을 우위에 두고 학생소요에 대해 무관심 또는 비난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자 학생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방화, 기물파손, 투신자살, 시가지 진출 등 과격한 시위행위를 야기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형태적 측면에서 학생운동이 ‘과격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대국민 홍보 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아울러 학생운동의 성격도 민주적, 민족적 요구를 주장하는 대신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시각이었다. 정보기관은 반정부투쟁과 시위가 ‘과격화’하여 결국 1980년 광주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5.18 광주사태는 갑자기 밀려온 자유화물결로 이성애 앞서 감정이 폭발, 의사를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며 극도의 사회혼란을 야기함으로써 광주사태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은 학생운동세력이 민족적·시민권적 권리를 주장했던 과거와 달리 반체제·반정부투쟁으로 전환되어 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즉, 학생운동 세력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하면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강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를 이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대학사회에서는 반정부소요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바 학원의 안정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선결되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생운동은 70년대 말부터 정권타도 등 현실비판 고발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변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쟁양태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학생비판활동 및 소요는 학원만의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현상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현실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 학원문제는 그 시대의 정치·사회 현실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원의 주인인 대학생들이 본연의 학문수련에서 이탈, 이데올로기적인 반체제집단화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1980년대 들어 안기부는 학생운동을 반체제·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학생운동이 이렇게 변화된 계기를 1974년 발생한 ‘민청학련사건’에서 찾고 있다.

민청학련사건은 정부전복 목적 하에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위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좌파 혁신계 인물들의 주동으로 학원을 이용, 북괴의 폭력혁명 노선에 따른 정부타도와 인민정권수립을 획책한 건국 이후 최초의 반국가적 대역기도였다. 동 사건은 학원소요가 종교계와 연계, 발생한 최초의 케이스이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저항양상이 노정되는 계기가 되었고 학원 내에서도 이후 불순화 된 서클 중심의 주도세력이 형성, 지하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정보기관은 1983년 당시 학생운동이 친북 좌경화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학생구호 및 유인물에서는 반제반과쇼 민중해방투쟁, 민중투쟁의 최후목표는 민중해방, 민중의 혁명적 역량, 계급적 모순, 보수반동세력, 반동정권, 주체적 민주민족혁명, 반민중세력의 착취, 당면 투쟁목표 등 과격한 용어나 북괴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좌경혁명이론에 관심을 유도하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다.

한편, 1981년 4월에 작성된 「최근 대학가의 용공활동 개요와 문제점」이란 문건³⁾을 통해서도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정보기관의 시각을 알 수 있다. 동 문건은 ‘남민전사건’ 관련자들의 취조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홍보책자 형식으로 간행한 것이다. 정보기관은 대학생들이 이른바 운동권으로 활동하게 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대학생들의 지적 욕구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학사지도 부재, 둘째 체계적이며 차원 높은 공산주의 이론 비판교육의 부재, 셋째 현실 부정적 측면에서 시작된 북한선전매체에의 의식적 접촉, 넷째 일방적 이론서의 탐독으로 인한 현실부정(자본주의체제의 모순점) 자세, 다섯째 “주체사상”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인식결여로 인한 북한체제 우월성 및 이에 대한 동조적 성향

안기부는 동 문서에서 “대학 내의 좌경화 분위기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대학 외부의 사상단체, 사회주의 국가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점은 1980년대의 학원소요를 바라보는 정보기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건대 점거농성사건 계기 극렬좌경세력 소탕대책」(1986.11.1) 문건⁴⁾을 살펴보면 당시의 학생운동 전개상황과 이에 대한 정보기관의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최근 좌경실태와 관련 종교, 학원가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주장되어 온 좌경사조가 노동계, 재야, 교육문화, 정치분야까지 점차 확산되어 최근에는 각계층 급진 좌경 세력이 연합, 통일전선을 형성한 채 자유민주주의체제 타도를 위한 폭력혁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3) 안기부, 「최근 대학가의 용공활동 개요와 문제점」(1981.4)

4) 안기부, 「건대 점거농성사건 계기 극렬좌경세력 소탕대책」(1986.11.1)

지난 10.10 서울대에서는 북괴 기관지인 “민주전선” 내용을 전제한 대자보가, 상지대에서는 “김일성 수령...” “가자 가자 붉은 낙원으로” 등의 벽보가 백주에 나붙는가 하면, 심지어 의정단상에서까지 “반공 부정”, “북괴 적화 통일전략 동조” 내용의 노골적인 좌경 용공 발언이 자행, 이들 좌경세력에 영합하더니 5) 마침내 당국의 강력한 소탕과 국민비판 여론에 몰린 학원가 극렬좌경세력은 소위 “애학련”을 결성, 금번 건국대 점거 농성·방화사건을 자행, 그 정체를 여지 없이 드러내고 말았는 바 이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완전 발본대책이 긴요함

건대 점거농성 방화사건의 처리방침과 관련 자민투 조직이 북괴추종 세력인 정체를 노정하고 있어 수사당국은 서울대 교수 이 0 0 간첩단 사건과 민노추·애국학생연맹 사건, “M·L주의당” 결성기도 사건 등 학원가 극렬좌경 세력을 지속적으로 소탕하고 있다. 국민의 비판 여론과 학원가 건전 세력에 몰린 이른바 자민투·민민투 조직은 분산된 세력을 재규합, 보다 극렬한 좌경소요를 획책할 목적으로 지금까지의 자민투 배후조직인 “구국학생투쟁연합”을 “애국학생투쟁연합”으로 개칭, 전국 좌경학생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여 북괴의 대남적화 혁명 전략을 그대로 추종한 친북괴노선 정체를 전국민 앞에 실증적으로 드러낸 사건임

처리방향은 관련자 전원구속, 극렬좌경세력에 철저한 타격을 주고 학원가와 사회로부터 철저히 추방·격리해야 하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사건자체를 철저히 수사, 실체 및 배후 연계관계를 완전 규명해야 한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학원가는 물론 각 분야에 침투, 준동하고 있는 극렬좌경 용공세력의 계보, 조직, 명단, 배후를 완전히 밝혀 이들 좌경세력을 발본 소탕하여 다시는 이 땅에 극렬좌경세력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획기적 전기로 활용해야할 것임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극렬좌경세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완전 발본색원하며, 既 조직편성 운영중인 “전국 합동수사대책기구”를 가동, 국가의 쏠공권력을 동원 지속적이고 집요한 수사 전개와 각 분야에 침투 준동하는 좌경세력의 실체를 정밀 분석, 확고한 수사대상 목표 선정 후 정체가 드러난 좌경세력은 엄중처단,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

5) 유성환 당시 민주당 의원의 1986년 10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지적하는 것인데, 동 문건에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야당의원인 유성환이 10.14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시 국시인 반공을 부정하고 인천소요사태, 3민투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비호. 유성환 의원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극렬좌경 세력과의 연계여부 수사중”이라고 적시

세부 추진대책으로는 민민투, 민청련, 민교협(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협의회) 등 좌경 불순세력을 중심으로 한 문제단체는 완전 해산시키는 원칙 하에 사전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핵심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엄중 사법처리로 조직단체가 붕괴, 유명무실화되도록 한다. 또한 좌경문제단체가 더 이상 준동, 발붙일 수 없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같이 학생운동 세력이 친북 좌경화되고 지하조직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정보기관은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극렬좌경세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완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건대사태’와 관련 “좌경세력을 발본 소탕하여 다시는 이 땅에 극렬좌경 세력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좌경문제단체 해산 외에도 “좌경문제인물과 용공 분자 적출·엄단, 문제출판사 척결 분쇄, 사회분위기 일신, 수배중인 좌경 용공분자 조기 검거”⁶⁾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기관은 1980년대에 들어 학생운동이 친북 좌경화 및 과격화 양상으로 더욱 변질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강경한 대책강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곧 안기부내의 수사 부서는 학생운동 조직와해를 위해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국보법 위반 범증확보를 위한 내사활동 포함)에 주력하였고, 학원담당 정보부서는 운동권 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방안 강구에 전력했음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 문건 내용을 토대로 1960년대~1980년대 초반까지의 학생운동 전개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비록 일정기간에 한정된 학생운동사이지만 동 자료는 시기별로 발생한 학생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6) 안기부, 「건대 점거농성사건 계기 극렬좌경세력 소탕대책」(1986.11.1)

「학원사태양상분석 및 대처방안검토」 문건에서는 학원소요 상황을 크게 제3공화국(5.16~10월 유신), 유신전기(유신이후~75.5), 유신후기(75.5~10.26), 학원자율화시기(80.3~광주사태) 등 네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별로 학원소요의 요인 및 배경, 정치·사회적 상황과 실태, 정부차원의 조치사항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동 내용을 통해 5.16쿠데타 이후부터 1983년까지 발생한 학생운동 전개상황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 실태를 상세히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의 ‘개요’ 부분에서 “권위주의정부 하에서의 학원 문제는 범정부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그러한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할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학생운동 전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자.

1) 제3공화국 시기(5.16~10월유신)

먼저 5.16 이후 유신선포 시기의 학원소요 발생 요인 및 배경에 대해서는 “4.19 학생운동의 성공으로 학생세력의 발언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으나, 6.3사태와 3선개헌 파동을 거치면서 정치와의 대결에서 학원은 점차 압력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과정”에 놓였다고 하며, 그 이전시기까지의 긍정적 측면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시기에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던 1966년 삼성그룹에 의한 사카린 밀수사건과 1967년 6월 제 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개표 과정에 대한 관권개입으로 초래된 정국의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외교정상화와 3선 개헌, 1970년 11월 13일 청계피복노조 전태일의 분신자살 역시 이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규정하는 주요사건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과 아울러 학원 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4.19 이후 민주주의 이념을 학원에 제도화시킨다는 취지 하에 자율적 학생회 조직, 어용교수 퇴진, 학교 행정체계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6.3 시위가 정부의 강경조치로 좌절되자 대학은 심각한 회의와 불안에 빠지게 되며 국가적 개혁이 아닌 지역적 영역에서 학생운동이 파생되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이 시기 발생한 주요 학원소요와 관련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1962년 5월 29일 파주주둔 미군의 위안부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6월 6일에서 6월 8일 간 고대와 서울대 등에서 시위가 발생하였고, 1964년부터 한일국교정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3월 24일 서울문리대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각 대학으로 파급되어 갔다. 한일 간의 교섭을 비판하고 구속학생의 석방 및 YTP(靑思會) 7) 규탄 등을 주장하였다.

1965년 한일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던 6월 22일을 전후해서 1만 여명의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나섰고, 위수령이 내려지기까지 동 협정비준 반대 운동이 계속되었다. 1966년 2학기 들어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보도되자 이에 대한 학원의 규탄시위가 발발했으며, 1967년 6월 8일 7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과 관련 6월 9일 연세대 교내시위를 시작으로 6월 16일 휴교령이 내려질 때까지 전국적으로 10만 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7) 64.4 한일회담 반대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던 중 시위대는 학원자유 수호를 외치면서 정보정치와 학원사찰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학생 정보조직인 YTP(Youth Thought Party), 일명 청사회(靑思會)를 폭로하였다. 청사회는 중정의 후원과 지휘 아래 학원사찰을 담당하는 비밀조직이란 의혹이 제기되었고, 63년 10월 대선 당시 민정당 대변인이었던 김영삼은 “각 대학 내에 YTP라는 비밀 결사가 조직되어 박정희의 당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TP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64.4.23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학원사찰 진상규명대회’를 개최하고 YTP 조직에 대해 성토를 하였고, 64.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한 송OO(당시 서울대 미학과 4년)이 5.21 신원미상 청년들에 의해 린치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송OO은 YTP의 내막을 폭로하기도 했다.

또한 1969년 3선개헌과 관련하여 6월 27일 고대의 ‘민주헌정수호성토대회’를 계기로 각 대학으로 확산되어 118,600명이 시위에 참가, 7월 5일 조기방학에 이어 10월 7일 휴교령 발동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과 관련 11월 16일~26일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연대에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1970년부터 대학의 교련교육 개시에 따라 시위가 발생, 12월 2일 고려대의 성토대회를 계기로 1971년 들어 확산되었고, 10월 15일 위수령이 선포 될 때까지 전국대학에서 82,050여명이 시위에 가담하였다.

여기에서 보듯이 한일외교정상화, 3선개헌, 전태일분신 등 정치·외교·사회적으로 한국사회의 모순이 증폭되었던 이 시기에 대학가의 소요발생은 빈발했다. 이 같은 학원소요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역시 1950년대와는 달리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정부의 조치사항은 위수령과 계엄령, 휴교, 조기방학 그리고 학생징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에 위수령 2회(6.3 한일협정반대시위, 71.10.15 교련반대투쟁)와 계엄령이 2회(63.8.26 한일협정반대 시위, 유신헌법 선포시) 선포되었다.

휴교조치로는 1964년 6월 3일~7월 20일 동안 한일협정반대 시위(무기 휴교), 1965년 8월 25일~9월 10일 간 한일협정반대 시위(전국 45개 대학), 1967년 6월 9일~7월 10일 간 6.8 총선부정규탄시위(13개 대학교), 1969년 10월 7일 3선개헌 반대 시위(14개 대학), 1971년 10월 15일 교련반대 시위(17개 대학), 1972년 10월 18일~11월 30일 유신반대 시위(전국대학 휴교) 등 총 6회에 걸쳐 강제휴교 조치가 시행 되었다.

조기방학조치는 1964년 7월 10개 대학, 1965년 6월 13개 대학, 1967년 7월 13개 대학, 1969년 7월 전국대학, 1972년 12월 5개 대학 등 총 5회 실시되었으며, 징계조치(제적)는 전국대학에서 269명에게 가해졌다.

2) 유신전기(유신이후 ~75.5 긴급조치 9호 선포)

유신선포 이후 소위 긴급조치시대라 불리는 이 무렵의 정국에 대해서는 “유신선포로 활동의 자유가 제약받게 됨으로써 유신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자체모순(1인 장기집권, 비민주, 독선성 등)으로 체제유지에 무리와 변칙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빈발한 시위와 학원소요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정치·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1973년 7월 김대중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미국) 등 해외에서 반정부 활동을 전개하다 1973년 8월 강제 귀환 당하였다. 1973년 12월 19일 윤보선 등 재야인사 15명이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했으며, 1974년에는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혁당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4년 9월 26일 함세웅 등 시국선언 및 10월 24일 동아일보사태 그리고 11월 27일 윤보선 등이 기독교회관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조직하였고, 1975년 1월 2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유신선포에 대한 당시 종교계·학계 등 재야의 강력한 반발은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 시기 학원의 내적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전통적인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유신체제가 부르짖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정권연장을 위한 수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회의가 대학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정보기관은 이 같은 분위기에 의해 학생운동이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정권타도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 사건’ 8)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8) 본 위원회의 1차 사건조사 결과, ‘인혁당 사건’은 실체가 없는 조작된 사건으로 판명되었으며,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반대 시위를 ‘인혁당 재건위’와 연계시켜 확대한 사건으로 확인되었음.

1974년 4월 3일의 민청학련사건은 정부전복 목적 하에 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등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위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물들의 주동으로 학원을 이용, 북괴의 폭력혁명 노선에 따른 정부타도와 인민정권수립을 획책한 건국이후 최초의 반국가적 대역기도였다. 동 사건은 학원소요가 종교계와 연계, 발생한 최초의 케이스이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저항양상이 노정되는 계기가 되었고, 학원 내에서도 이후 불순화 된 서클 중심의 주도세력이 형성, 지하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대학 내외의 상황 하에서 이 시기 발생한 주요 학원소요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73년 8월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의 여파로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김대중 사건 진상규명·학원사찰 중지 등 요구로 시위가 발생했고, 이에 호응 전국의 대학과 일부 고등학교도 시위에 가담하였다. 1973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1·2호 선포 이후 학생들은 4월 3일 긴급조치 4호 선포와 함께 민청학련의 적발이후 표면적인 활동을 자제한 채 잠적하였다. 1974년 8월 23일 긴급조치 1, 4호가 해제되자 9월 하순부터 대정부시위가 시작되어 10월에 거의 모든 대학이 시위에 가세하였다.

1975년 3월 연세대에서 당국의 제적생 복교 불허조치에 불응, 2월 15일 석방학생의 복교는 허용한 바 4월 3일 유신헌법 철회를 주장하며 시위를 전개했고, 4월 11일 서울농대생 김상진 할복자살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5월 13일 긴급조치 8·9호를 선포하였다. 이 무렵 학원소요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사항들은 계엄령이나 위수령보다 긴급조치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시행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긴급조치는 총 9회 실시되었고, 戒告조치는 2회에 걸쳐 총 19개교에 내려졌다. 휴교 및 휴강은 1973년 13개교와 1974년 45개교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조기 방학은 1973년 20개교, 1974년 6개교에 내려졌으며, 각종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학교당국으로부터 징계조치(제적 등)를 당했던 학생수는 모두 495명에 달했다.

3) 유신후기(75.5~10.26사건)

긴급조치 9호의 선포에 따라 1976년~1979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대학가의 시위 회수와 참가자 인원이 전시기보다 대폭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반체제 비판세력들은 강화되는 정부의 통제에 비례하여 조직화, 음성화되고 있다”⁹⁾는 평가를 하면서 유신평화의 국내외 상황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단계적 미군철수 발표 등으로 일시 국가안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그런대로 체제유지가 가능하였으나 유신평화에 접어들면서, 장기 집권 및 고도성장 정책에 따른 누적된 부작용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 불황, 권력상층부의 상호 갈등과 반목에 따른 체제 응집력의 결여, 반정부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상실 등으로 이 시기는 체제 붕괴 과정을 밟게 되었다.

특히 1976년 민주구국선언¹⁰⁾과 박동선사건 및 청와대 도청사건에 따른 한미관계의 악화, 1978년 김영삼 등이 조직한 ‘야당성회복 투쟁동지회’의 결성, 1978년 공화당의 총선패배와 YH사건에 이르는 정치상황은 유신평화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다.

정보기관은 당시 학생운동과 관련 “학도호국단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지만, 박동선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여 결국 정권타도로 발전, 체제붕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면서 이 시기에 발생한 주요 학원소요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76년 하반기 박동선 사건을 계기로 12월 8일 학기말고사가 진행되던 서울대에서 동 사건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1977년 3월 28일 서울대의 긴급조치해제, 호국단 해체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된 이후 1978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위가 발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9) 안기부, 「학원사태양상분석 및 대처방안검토」(1983.12.1)

10)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친구교 연합기도회를 개최한 후 김대중, 문동환, 함석헌 등 12명이 서명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으로 이른바 ‘명동성당사건’이 그것이다.

1978년 6월 12일 서울대 소요때부터는 총선을 앞두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총선거거부 등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1979년 9월 3일 강원대 시위를 시작으로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하여 9월 20일 서울대 시위에서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등장하였고, 이는 10월 16일~19일의 부마사태로 이어졌다.

이 시기 학원소요와 관련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계엄령 2회(부마사태, 10.26사건), 위수령 1회(부마사태), 휴교·휴강조치는 1975년 23개교, 1977년 4개교, 1978년 1개교, 1979년 10월 27일~11월 18일간 숭대학에 내려졌으며, 조기방학은 1978년 1개교에 실시되었고,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징계조치(제적)를 당한 학생수는 모두 317명이었다.

4) 학원자율화시기(1980년 3월 ~광주민주화운동)

동 문건에서는 이 시기를 “학원자율화기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10.26에서 5.18로 이어지는 과도기동안 유신 기간 중의 군인·경찰의 대학 진주 및 조기방학 등의 학원개입정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학원개입 중단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5.17 계엄선포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이라는 초강경 대책에 의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정보기관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유신체제하에서 통제를 받아왔던 언론, 학원, 노동 등 제 분야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쳐 실력행사 사태로 발전, 점차 극렬화·광역화함으로써 종국에는 광주사태로 이어져 군의 정치개입을 초래하게 되었다”면서 사태 발생 원인을 학생·시민들의 극렬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유신의 종말과 함께 그간 억눌려있던 정치·사회적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던 兩김씨가 다시 등장했고, ‘사북사태’처럼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빈민·노동의 문제도 분출되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폭발적 팽창에서 학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속학생 및 해직교수들의 석방, 복권, 복직을 서둘러 실시함에 따라 이른바 학원자율화운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유신이라는 당위성에만 갇혀 왔던 학생사회는 10.26이후 갑자기 밀려온 자유화물결로 이성애 앞서 감정이 폭발, 의사를 과격함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며 극도의 사회혼란을 야기함으로써 광주사태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안기부는 다시 한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이라는 비극이 극단적인 소요와 시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 학원소요 발생 실태는 다음과 같다.

1980년 신학기를 맞아 학원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어 3월 19일에서 4월 26일 사이 25개 대학에서 수업거부가, 성토·시위대회는 106개 대학, 철야농성은 33개 대학에서 발생하였다. 4월 10일~26일 간 성대, 서강대, 전남대에서 병영집체교육입소를 거부하며 교련반대 철야농성 및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으며, 5월경부터 대학 시위는 대정부시위로 발전하여 가두로 진출, 경찰차량 방화 및 투석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5월 1일~10일 간 26개 대학에서 91,000여명이 시위에 가담하였으며, 5월 13일 서울대, 고대 등 재경대학생들의 시가지시위에 이어 전국대학 학생회장단의 전국 일제 가두시위 전개결의에 따라 5월 14일~15일간 13만여 명이 참가하여 도심연합시위가 전개되었다. 5월 16일에는 전국 학생회장단의 “교외시위보류” 합의에 따라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되자 광주에서는 김대중 석방,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가 전개되었고, 5월 27일 계엄군 진입으로 사태가 수습되었다.

이 사건으로 지역감정이 심화되고 동 사태관련 구속자, 부상자 및 가족들이 새로운 불만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1979년 10월~1980년 5월 17일 기간 동안 283회에 걸쳐 연인원 29만 명이

시위에 가담했고, 1일 최고 가담인원은 89,250명에 이르는 학원소요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동 문건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 가운데 가장 많은 학원소요가 발생했던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으로는 계엄 전국확대(5.18사태), 휴교는 1979년 10월 27일~11월 18일간 쏘대학, 1980년 5월 18일~8월 31일간 쏘대학에 내려졌고 징계조치(제적 등)를 당한 학생의 수는 모두 541명이었다.

5) 제5공화국(1981.3~1983년 현재)

12.12와 5.18을 거쳐 출범한 5공화국 하에서 학원소요는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동 문건이 작성되었던 1983년경 까지 학원소요는 이전 시기와 같은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5공화국 초기 학원소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대학 내 경찰 상주’로 상징되는 것처럼 대단히 강경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잠잠하던 학원분위기는 1983년 하반기에 이르러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당시의 학원 내외의 상황에 대해 정보기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혼란기를 체험한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안정 회귀 여망에 따라 5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과감한 사회개혁 및 정치구도의 재편성을 단행, 안정을 이룩하였으나, 정화대상자 및 광주사태관련 구속자 등 새로운 소외계층이 반체제세력 형성, 70년대 말 이후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 저변 층의 불만 심화, 집권층 측근에 대한 불신여론 등으로 그간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며 비판활동을 자제하고 있던 저항세력들의 활동이 점차 표면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정치사회적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정치풍토쇄신 조치’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자의 양산, 언론통폐합, 1981년 9월 30일 올림픽 유치결정, 1982년 4월 26일 경남 의령경찰서 우범곤 순경의 총기난사사건, 1982년 5월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 및 83년 8월 명성사건과 9월의 영동진흥개발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 1982년 6월 일본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1983년 9월 11일 소련 전투기에 의한 KAL기 피격사건과 10월 9일에는 대통령 버마순방 중 북한에 의한 암살폭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과 함께 정보기관은 당시 학원문제와 관련해 “제적생 복교조치 등으로 활기를 찾았던 대학가는 학원자유화운동이 비상 계엄령 선포로 중도에서 종식, 학원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짐으로써 또다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개헌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대통령 간선제가 채택되자 대학가에서는 현 체제를 유신체제의 연장으로 인식, 정통성에 대한 강렬한 반발심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줄었지만, 여전히 학원소요는 발생하고 있었다.

즉, 1980년 10월 7일~11월 18일간 한신대, 고대, 연대 등에서 계엄 해제, 구속인사 석방,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1981년 3월 19일 서울대에서 대정부시위가 발생한 이래 5월 28일~6월 1일간 국풍행사를 개최, 대학가에 새로운 소요구실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5월 27일 서울대 시위 중 김태훈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학가가 격분하여 연중 38회에 걸친 현 정부 퇴진 시위가 발생하였다. 1982년 3월 18일 광주사태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등에 불만을 품은 고신대, 부산여대 학생 9명이 부산미문화원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1982년 3월 24일 고대에서 학원민주수호,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으로 연간 55회의 시위가 발생했다. 1983년에 들어서도 134회에 걸친 현 정권 퇴진 등의 시위가 발생해 온 것으로 정리하면서

김근태, 황인성, 정문화, 문국주, 박계동 등 74년 민청학련 및 80년 김대중 내란음모관련 제적생들이 1983년 9월 30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하고 문체 종교인, 문인 등을 규합하여 각계 불만세력과 상호 연계 하에 반정부 세력의 조직화를 기도 중에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5공화국 수립 이후 학원소요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사항은 이전과 달리 계엄령 등의 강경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학사징계만 이루어졌는데 1981년부터 1983년까지 모두 803명이 제적되었다.

이상과 같이 유신 이전시기에는 한일회담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있었고, 유신체제 하에서는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0.26사건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이르러서도 학원소요는 계속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정부는 학원소요와 관련해서 계엄령·비상조치·위수령과 같은 강력한 공권력 행사와 더불어 휴교·휴강 또는 조기방학 조치를 통해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공권력 행사 외에 대학당국 및 교수·학생들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 정부차원의 학원문제 대책 유형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1983.12.1) 문건은 이른바 ‘학원자율화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에 그간의 학원소요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문건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은 동 문건에서 5공화국 이전과 이후의 정부대책을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후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새롭게 시행할 학원자율화 조치의 성패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먼저 5공화국 이전의 학원대책에 대해서는 특별조치와 학사관련 대책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별조치란 비상계엄, 긴급조치, 위수령, 휴교와 휴강, 조기방학 등과 같이 1960~70년대 학원소요에 대처하여 정부가 실시했던 강경조치들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와 같은 강경조치가 내려진 시기와 횟수, 관련 소요사태 등을 나열¹¹⁾한 다음 그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특별조치의 성과로는 대학소요가 진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는 소요 이슈가 1~2년 단위로 종식됨에 따라 효과가 거양될 수 있었으나, 1970년대는 유신반대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서 일시적인 냉각효과만 발생하였다.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물리적 힘의 행사로 학생층의 불만이 심화되었고,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대외적으로 민주화 이미지가 손상되고, 대내적으로 학원탄압 인상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변화한 대학내외의 환경(시위 이슈의 장기화, 대내외 對학원정책 이미지 문제 등)은 과거의 특별조치들이 더 이상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정보기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 조치에 의해 일시적인 소요진정의 효과를 거양했다면, 보다 궁극적으로 학원 안정대책은 대학의 학사행정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대책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은 5공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한 각종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1) 교련교육

정부는 1969년부터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방위력을 증대한다는 명분 하에 교련교육을 실시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교련교육은 점차 강화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1971년~1975년간 1학기 중 週 2시간을 실시했고, 1975년 2학기부터는 週 4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1) 앞부분의 '학생운동의 전개상황 및 정부의 대응' 부분 참조

특히 1976년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5박 6일 간 병영집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1982년부터는 2학년을 대상으로 5박 6일 간 전방부대 교육 및 경계근무를 실시해오고 있었다.

이 같이 대학 내에서 교련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에서는 ‘교련반대시위’가 주요한 이슈의 하나로 자리 잡기도 했다. 정보기관은 교련교육과 관련한 학원안정대책 효과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련교육의 성과로는 국방의 중요성 및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비상시 동원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원의 병영화 인상 부여로 소요이슈를 제공해 왔고, 교관과 조교 등 군의 학내상주로 거부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군의 학내발언권 강화로 초기에는 교직원들의 불만이 존재했으며, 병영집체교육 실시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소요 및 군복무 기피의식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학생 군사교육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교육효과 거양 및 정착화를 위해 교육내용, 방법 개선 등의 보완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교련교육이 학원의 병영화 인상을 줌으로써 소요이슈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안보현실을 감안, 필요한 제도로 평가하면서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보완책 강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학도호국단

교련교육과 함께 대학 내의 또 다른 관제단체 혹은 어용단체로 지목되어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학도호국단 문제였다. 동 문건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학도호국단은 해방직후부터 4.19 시기에 존재했던 학도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특히 베트남 공산화(1975. 4.30)를 계기로 대학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안보와 대학 내 규율·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한 조직이었다.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도호국단 창설이

외부로부터 강제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정보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동원 체제를 마련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호국단창설 이래 호국단 철폐가 계속 학내 이슈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일반 학생들은 호국단을 학내 어용단체로 규정 배타시하고 있고 학원자율화의 가장 큰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낮은 지지도로 호국단은 소신 있는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일부 대학 호국단 간부들은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문제 학생층과의 연계 하에 불순활동을 모색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학도호국단 체제유지로 인한 제반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현 호국단체제 속에서 직접 선거제를 도입, 자치활동 보장 등의 자율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건전학생 선임을 위한 자격기준 강화 및 선거지원 활동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학생조직을 통해서 학원소요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1980년대 후반 까지 정보기관이 유지하고 있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위에서 보듯이 부분적으로 학도호국단을 개조하여 자율성을 높여줌으로써 문제학생들의 활동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후 학원 건전화사업의 핵심내용이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던 1984년 이후 이 같은 정책은 건전학생회, 건전서클 육성 방침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유형별 학생운동 통제실태’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3) 교수 재임용제

학원소요와 관련한 정보기관의 주요 개입사례 중 학생에 대한 직접통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수에 대한 개입·통제 행위였다. 이는 교수야말로 학생들과의 1:1 관계를 통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재임용제도는 때로 정부의 학원대책과 관련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였는데 정보기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 학원의 면학분위기 조성책의 일환으로 1976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며, 교수재임용제에 따라 임용기간은 교수 및 부교수는 6년, 조교수는 3년, 전임강사는 2년, 조교는 1년이다.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교수들의 국가관, 교육관 확립으로 교육자상 정립에 기여를 해왔으며, 교수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 자세확립과 총학장들의 교수들에 대한 지휘체제가 강화되었고, 평소 불평불만 습성이 있거나, 현실비판성향 등으로 학생들을 배후에서 선동하는 이른바 정치교수들이 탈락됨에 따라서 학원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재임용 평가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총학장들 개인의 감정적 처리나 사립대의 경우 재단 측의 간섭을 배제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또한 관련 개입이라는 인상으로 교수와 학생의 불만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소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 교수 탈락으로 대학가의 강력한 반발이 초래되었지만, 제5공화국 이후 대학의 자율적인 운용으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었다. 향후 官의 개입은 배제하고 교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로 토착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도 보듯 대학에 필요한 제도라는 취지에 편승하여 정부당국이 문제 교수 적출을 위해 사안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당연히 이 문제는 학원자율화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소요이슈를 제공하였는데, 정보기관에서는 이후에도 정례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은 5공화국 이전의 학원안정 대책을 평가한 후 1983년 당시 학원문제와 관련한 현안들을 제적생, 해직교수, 졸업정원제, 전담지도교수제 등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있다. 5공화국 이후의 학원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학원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에 있어서 일종의 지침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제적생 처리문제

정보기관은 유신 이후 1983년 12월까지 학원소요와 관련한 제적생의 규모는 모두 65개 대학에 1,4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적

생들의 구제는 1983년 말 취해진 학원자율화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였는데, 당시 정보기관에서는 제적생 처리문제가 학원관련 정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5.17 이전 및 이후 조치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유신 전기에는 제적과 구제조치가 반복되었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 이후에는 구제시 부작용을 우려하여 일절 복교 조치가 불허되었으며, 5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1974년 민청학련사건과 1980년 자율화 사태 등 과거 경험을 되살려 구제 불허는 물론 취업 및 유학 제한 등 가일층의 강경책이 고수되어 왔다.

현재의 제적생 증가 추세로 보아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제적생 누적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른 조직적인 대정부 비판 세력화(민청련 등)의 문제도 우려되는 한편 제적생 구제문제는 이들이 복교한 후 학원사태와 관련 될지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현 학원상황은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점차 극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 학원 특성상 제적생 구제여부와 관계없이 소요는 계속될 것이며, 제적생 복교시 이들 중 일부 극렬학생들에 의한 소요발생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5.17 이전 및 이후 학원 소요의 중요 차이점은 5.17 이전에는 시위가 담인원이 많을 뿐 아니라 학원이 시위주동 학생들에 의해 압도되었고, 휴강·조기방학 등 정상적인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5.17 이후에는 시위 가담인원이 적을 뿐 아니라 공부하는 자와 시위하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휴강 없이 정상학업이 지속되고 있다.

제5공화국 통치이념(단임)과 통제력으로 학원소요의 사회파급 및 혼란사태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이와 함께 학원외적 상황으로는 레이건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정치상황, 84년 교황 바오로 2세 방한, 84~85년 총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대회 등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원내적, 학원외적 변인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제적생 구제문제가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의 학원개입 중 제적생 복교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검토 되겠지만, 정보기관의 이 같은 판단은 1984년 제적생 복교조치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정보기관은 제적생 복교조치의 역효과로 이들이 소요 주동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이 무렵의 학원소요 양상이 이전과 달리 일부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요와 무관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건전학생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운동이 극렬화 되더라도 충분히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제적생 복교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5) 졸업정원제

제5공화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정책 중 하나였던 졸업정원제는 현장에서 부터 반발이 제기되었지만, 정보기관은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으며, 지속·발전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졸업정원제는 입시지옥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대학의 면학분위기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사학의 재정난극복과 같은 사학육성의 간접지원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도 운영 면에서의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는데 4학년 수료자의 취업 곤란에 따른 고급실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화가 우려되며, 학업성적 불량학생들이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학원소요를 주동하려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졸업정원제 자체가 소요 이슈화하였는데, 성적 평가 면에서 객관식화, 단답식화로 고교식 교육의 연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외활동 참여율이 저하된 반면 학과점수 포함행사에는 적극 참여 등 전인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책의 일환으로 고교내신제, 전일수업제 등과 함께 제5공화국 정부가 획기적으로 추진 중인 문교정책이다.

제도 시행상 노정된 제반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만성적 학원소요로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대학가에 면학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대학가에 공부하는 자와 데모하는 자의 구별이 확연 등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향후 대학면학 풍토 토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은 졸업정원제에 의해 면학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공부하는 자와 데모하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학원 안정화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5공화국 정부가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란 평가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 5공화국의 대표적인 대학정책이었던 졸업정원제는 교육시설의 보강, 교수진 증원 등의 지원정책이 없이 사실상 대학정원만을 늘려놓는 결과를 초래, 그 후 폐지되는 등 정책실패의 사례가 되었다.

6) 해직교수 문제

해직교수의 문제는 제적생 문제와 함께 정보기관이 학원소요의 잠재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였다. 이 무렵 학원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직교수 복직의 문제가 검토되었는데, 뒤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정보기관은 복직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5.17 이후 과거 학원사태 등과 관련하여 전국 25개 대학 86명의 교수가 해직 조치 되었다. 개별성향 및 자숙도를 감안하여 A급(과거반성, 자숙) 28명, B급(문제활동 자제) 40명, C급(비판활동 지속) 18명으로 분류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해직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정부 불만세력화 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국민화합차원에서 과감한 포용조치가 필요하다.

원적교 이외 대학복직을 허용할 경우, 대학의 채용 기피와 적응 곤란으로 복직 인원이 감소될 것이며 때문에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직교수들의 불만만 심화시켜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일절 제한 없이 복직 허용하는 방안이 기대성과 등을 감안할 때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학원 안정상 위해인물에 대해서는 이면적으로 복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은 이처럼 해직교수들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해직기간의 장기화로 대정부 불만세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감한 복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위해인물(위 문건 내용처럼 비판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C급 18명이 이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에 대해서는 복직 전제조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7) 운동권 학생 및 이념서클 지도

정보기관은 학원소요와 관련된 운동권 학생과 이념서클을 별도로 분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지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동 문건에서는 이와 관련 “문교부 및 각 대학당국에서 학생들의 평소 의식성향, 동향, 서클관계 등을 토대로 매년 선도대상학생 명단을 확정, 관리(83년도에는 69개 대 1,492명)해 오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는 졸업생, 사회 유력인사들과 연계하여 순화토록 조치하였다”면서 경우에 따라 관계기관 합의를 하에 “특별선도대상 학생을 추출하여 83년도 하계방학 중 18개대 69명을 입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조기 군 입대 조치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강제입영조치를 포함 이른바 ‘문제권 학생’에 대한 순화는 사법적 처리 외에 정부당국이 학생운동 주도인물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압력수단이였다. 경찰·정보기관·사법부가 관련되는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강제입영, 이념순화활동, 산업시찰과 같은 순화활동은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지만, 정보기관의 학원개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 같은 순화활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문교부 및 대학당국과 정보기관 사이의 협조는 필수적이였다. 문제학생 관리제도에 대한 동 문건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야기 예상학생에 대한 사전 감시 및 관리체제 강화로 학원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직적인 문제학생 관리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

하는 등 측면에서 성과가 거양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명단 선정에 그칠 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는 부실한 실정이다.

문제학생 선정시에 음성서클의 문제학생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문제학생으로 편입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주목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하고 반발심에서 오히려 탈선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 유력인사들의 경우 형식적 면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연계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기피하기도 한다.

군 입대 조치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들은 이에 불복하여 도피하거나 학원사태를 주도하는 사례도 발생하였고, 문제학생 군입대 조치 자체가 학내 이슈화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도 대상학생 선정시 다각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엄선토록 하고, 일단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에 통보하고 지도교수에게 선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선도여부를 판별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학생의 군입대 조치시에는 철저한 보안유지 하에 신병을 확보하여 입영조치 시켜야 한다.

학원소요를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된 문제서클 역시 대학당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다는 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문제서클도 여타서클과 마찬가지로 지도교수제를 실시하여 학내 영향력이 있는 교수로 문제서클을 지도토록 독려한다. 지도교수가 수련회, 각종 행사 등 서클 활동 전반에 걸쳐 지도하면서 음성 서클의 양성화를 유도해야하나 교수들이 문제서클의 지도담당을 기피하고, 문제서클 회원들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회피한다. 지하 음성서클에 대한 계보 파악이 곤란하여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문제서클이 집단적식화의 온상이며 학원소요 주도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서클에 대한 집중 순화 노력 및 지도대책이 별무하여 이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문제학생에 대한 순화작업과 문제서클에 대한 지도문제는 동 문건에도 표현되어 있듯, 대학당국과 정보기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건전서클·건전학생회 수립 유도라고 하는 공작차원의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운동 통제실태에서 살펴보겠다.

8) 교수분담 지도제와 학사행정지도 문제

정보기관은 197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던 교수분담 지도제 운영과 학원소요와 관련한 문교정책의 조율 등을 담당하는 기관운영 문제 등도 점검하고 있다.

1971년 10월 교련반대 데모 확산으로 대통령의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명령 9개항’(10.15)에 이어 서울대에서 교수분담지도제를 도입한 이래, 각 대학에서 동 제도를 실시하였다. 교수별로 대학사정에 따라 5~15명 정도의 학생을 분담, 월 1회 이상의 면담을 통해 지도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따라 교수·학생 간의 대화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교수·학생 간 상호 신뢰감 조성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교수들이 시간문제로 면담실시를 미루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동 제도를 학원억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면담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이 형식적 면담에 그칠 뿐 교수 학생 간 신뢰감 조성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뿐이며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도만이 학원소요를 극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꾸준히 실시해나가되 효과제고를 위해 1학년부터 졸업 시까지 가능한 한 동일교수가 지도 담당하도록 한다.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분담학생 수에 따라 지도비를 지급하고 면담시 신상문제 거론에서 탈피하여 전공분야 등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면담 실시에 대한 동기를 부여토록 한다. 면담지도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동 제도를 보장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은 교수분담 지도제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면담지도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문교당국이 학사행정지도를 위해 설치한 학사담당관실(이후 교육정책실로 개편)은 정보기관이 제도적으로 문교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교육정책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기구가 구성되었는데 정보기관 또한 이에 참여하여 학원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시행해 왔음을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971년 문교부에서는 학사담당관실을 설치하여 각 대학에 학사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1981년부터 교육정책실로 개편하여 학원대책과 관련한 학사지도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다. 교수재임용, 교수추천제, 학사경고제, 지도교수제 운영 등을 지도·감독하며, 문제학생 지도 실태를 감독한다. 학원사태의 주동자를 처리하는 문제 등을 지시·감독하며, 축제 등 학내행사시 행사기간·시간 등에 대한 규제 업무도 맡고 있다.

관계기관 간 학원대책기구(심의위, 추진위, 실무소위 등)에서는 수시로 학원 대책관련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학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학원안정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대학간의 학생지도 상의 불균형도 조정해오고 있으나, 학원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지시 감독으로 학사행정의 경직화의 우려가 있고, 대학 자율성 저해 및 대정부의존심을 키울 염려가 있다.

대학에서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로 전가할 수 있는데, 당국의 광범위한 학사행정개입은 학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성과가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문교부에서는 정책사항에 대한 기본지침만 시달하고 구체적 계획은 대학자체에서 수립 시행하는 등 대학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문교부 교육정책실에 대해서는 교수재임용제, 학사경고제, 지도교수 운영 및 문제학생 지도실태 등을 감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학원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학원대책기구(회의)에는 정보기관을 포함하여 문교부 교육정책실, 경찰, 보안사 등이 함께 참여·논의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학생운동 통제실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위주의정권 시대에 있어 학원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방안이 강구되고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계엄령·긴급조치·휴교령 등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억제조치와 함께 교련교육, 학도호국단, 교수재임용제, 졸업정원제, 교수분담지도제, 제적생 및 해직교수 처리 등 학원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정보기관은 통치권 보좌가 주요 임무의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원대상 정보활동 체계”를 살펴보겠다. 즉, 과연 정보기관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학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사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했는가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본 보고서의 핵심 부분인 “학생운동 통제실태”(제3절)에 언급한 내용들이 과연 법적 권한을 일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2 학원대상 정보활동 체계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보기관이 학원문제에 개입한 형태는 크게 수사활동과 정보활동으로 나누어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사담당 부서에서는 운동권 학생들을 국보법 등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정보담당 부서는 각 대학별 운동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각종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보고서를 작성, 지휘부에 보고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사 활동이 과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중정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부서로 창설되었다.

당시 중정법(1961.6) 제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고, 개정 중정법(1963.12)은 “국내보안 정보 수집·작성·배포권”과 “내란·외환죄 및 국보법 등에 규정된 범죄 수사권”

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권” 등 세부적인 권한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권한들은 안기부법(1980.12)과 국정원법(1998.12)에도 약간 수정이 된 상태로 계속 부여되어 오고 있다.

즉, 중정법 및 안기부법 중 학원분야에 대한 정보수사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권”과 “국보법 등 위반 범죄 수사권”이라고 하겠다. 범죄수사권은 수사담당 부서에서 국보법 등 위반 혐의자를 조사 후 송치하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 재판이 진행되어 형이 확정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제 I 장 ‘개요’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학원관련 개별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심층적으로는 다루지 않았으며, 사건조작 또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로 중형선고를 내리게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간첩분야’ 또는 ‘사법분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을 밝힌다.

수사담당 부서가 이렇게 국보법 등 위반 범죄수사권을 근거로 학원대상 정보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면 정보담당 부서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권”을 근거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본다.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기획·조정)규정”에 의하면 “국내보안정보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취급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해 정보기관이 학원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정법 및 안기부법은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권” 외에 “직무상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한 협조요청권”¹²⁾을 통해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받았으며,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조정·감독)

12) 중정법에서는 “중정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소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중정법 이후에는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협조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규정”¹³⁾은 외무·내무·법무·국방·체신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조정협의회(정보위원회)규정”¹⁴⁾은 학원문제 발생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조치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은 이러한 권한을 통해서도 학원문제에 개입해 왔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학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 자체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구체적인 통제사례들이 과연 합법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과도한 통제행위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본 보고서의 제Ⅱ장 제3절(정보기관의 학생운동 통제실태)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정보기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에 보존된 중정 및 안기부 시절의 학원문제와 관련된 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정보기관은 학생운동 세력을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불순세력으로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정보기관이 학원문제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했다는 점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13) 1963년의 개정 중정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규정’은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체신부·공보부 등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감독권을 부여하였고, “각 기관의 장은 정보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집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협조의무 조항을 두었으며, 안기부로 개편된 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으로 개정되어 “부장은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은 부장이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은 일반지침에 의해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개정 중정법 제13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정보위원회 규정’은 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외무부·내무부·공보부·대검·국방부 등 국장급 인사인 위원들을 소집하여 국가정보판단 토의 및 조정, 국가정보정책 및 기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정보 및 보안업무 운영상 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논의했으며, 안기부로 개편된 후 ‘정보조정협의회규정’으로 개정되어 위원으로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공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각 기관 국장급으로 “실무협의회”(위원장은 안기부 차장)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는데, ‘정보조정협의회(정보위원회) 규정’은 중정 및 안기부에서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관한 근거규정으로 판단되며, 동 규정은 94년 폐지되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수행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통제실태란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보기관이 학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크게 네 가지 양태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대학별 담당관을 지정·운영하였고, 둘째 정보망 등 협조자를 활용했으며, 셋째 대학당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한 조정권을 행사하여 통제해 왔다는 것이다.

첫째, 대학별 담당관 지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 중 서울대 및 연·고대 등 운동권 총학생회의 활동이 활발했던 대학은 2~3명의 담당관들이 배정되었고, 여타 대학들은 1명이 전담하여 정보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지방소재 대학은 각 지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주요 거점대학은 1~2명, 기타 대학은 1명이 2~3개를 동시에 맡았다.

각 대학별 담당관의 규모는 시대에 따라 상이했으나,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운용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이들 정보수사관에게 내려진 활동지침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는 국가안보위해세력 포착과 운동권 총학생회 핵심간부 및 비판성향 교수의 동향파악, 불순유인물 살포 저지와 집회 및 시위의 사전대처 등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원담당 부서의 조직체계는 정보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명시하지 않았다.

둘째, 학원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망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수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조자를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활동방법이었다.

즉, 1970~90년대에 걸쳐 운동권 총학생회 간부들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고, 더욱이 ‘전대협’·‘범청학련’·‘한총련’이 잇따라 이적단체로 판시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은 동 조직에 정보망을 침투시켜 동향을 감시하고 범증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조자로서 포섭대상자는 대상목표인 총학생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는 학생이나 학생처 소속 교직원들이었다. 그리고 해당대학 관할 경찰서 정보과 형사 또는 수배자 검거를 전담했던 보안수사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렇듯 정보망의 주 임무는 총학생회 주관 집회 및 시위 정보의 사전 입수, 국보법 위반 수배자 검거단서 제공, 운동권이 발행한 각종 유인물과 자료집을 입수하여 신속히 전달하는 것 등이었다.

셋째, 정보기관은 대학당국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운동권 총학생회 등의 동향을 사전 파악하여 학원안정화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각 대학 학생처(과)는 특히 운동권 학생을 비롯한 총학생회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교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건, 학교 자체 방침에 의한 것이건 간에, 분명한 것은 학내문제나 정치문제에 학생들이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처 교직원들의 본연의 업무였다.

각 대학 학생처 직원은 총학생회를 관리하는 본연의 직무활동 수행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나 자료를 정보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나 또는 사전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중정 및 안기부의 학원담당 부서는 대학 당국과의 협조체제를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접근성이란 측면을 고려해서 대체로 해당대학 출신 직원을 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하였다. 학생처 직원들도 같은 대학 졸업자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서로 선후배 관계라는 학연에 의해 협조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인 협조형식은 총장에게 보고하는 운동권의 동향자료를 안기부의 정보관에게 팩스로 송부해 준다거나, 기습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통보해 주는 것 등이었다. 또 총학생회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료집 등을 확보하여 신속히 제공했으며, 안기부 또는 보안수사대와 협조하여 수배자의 자수를 주선하는 등의 일을 주로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

15)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학생과 출신 교직원 대상 면담결과 참조

넷째, 정보기관은 학생문제와 관련 주요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조치방안을 협의했는데, 이는 중정법 및 안기부법에서 명시한 “정보조정협의회(정보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¹⁶⁾ 다만 법적으로는 위원장인 부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산하 실무협의회는 차장이 소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권한을 확대해석하여 국장이하 실무자급의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수시 개최된 것으로 국정원 보존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원문제는 범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대사안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 하였고, 이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법적 권한을 일탈한 과도한 통제행위 사례도 발생하였다는 데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정보기관은 학생들의 도심 연합시위가 예상될 경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조정권을 행사 해 문교부에서 각 대학에 교수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집회 불참을 유도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과격화 내지 폭력화를 예방토록 지침을 내렸다. 또 경찰·검찰·법무부·보안사 등과 함께 “공안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집회·시위에 대처하는 방안과 불법시위로 연행된 학생들의 처리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정보기관이 학원에 대한 정보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통제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언급할 구체적인 학생운동 통제사례를 통해 좀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본 위원회의 조사가 자료 분석 위주로 진행되는 한계로 인해 중정 및 안기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나타난 대책방안들이 모두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보존 되어 있는 자료는 거의 대책방안 보고서로 조치결과를 보고한 자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16)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작용이 문제되자 94년 안기부법 개정을 통해 동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보존된 문건을 통해 학원통제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이제 정보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운동을 통제해 왔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3 정보기관의 학생운동 통제실태

가 학원대상 통제 유형

과거 권위주의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학생운동을 “사회 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하였다. 정보기관 또한 학원 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운동 조직 내부의 동향 파악과 핵심 활동인자 및 조직구성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배후조종세력을 색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입수한 범증 자료를 통해 국보법 등 위반으로 사법처리함으로써 조직을 와해시키고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

정보기관은 중요 학원문제 발생시에는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치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문교부의 학사행정과 관련한 고유업무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때로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적 권한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3절(정보기관의 학생운동 통제실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정보기관의 학생운동 통제실태’를 크게 ‘학원사찰 실태’와 ‘유형별 학생운동 통제실태’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별 학생운동 통제실태’는 다시 ‘학교 및 교수에 대한 통제’와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보기관의 학생운동 통제실태는 국정원에 보관

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중정 및 안기부 작성 문건을 인용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문서의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본 보고서 형식에 맞추어 편집하였다. 그리고 당시 언론통제 등으로 인해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시위상황 보고서도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분을 적시하였다.

나

학원사찰 실태

학원사찰이란 개념과 관련해서 우선 검토해야 될 것은 과연 당시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정보활동이 사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보기관의 학원대상 정보활동 자체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 전체를 ‘학원사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80년대에는 경찰 병력이 학내에 상주하고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 학내까지 진입하여 해산시키는 등 학원이 병영화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는 사실상 경찰에 의해 ‘학원사찰’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학원사찰’이라는 용어는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넘어선 과도한 통제행위였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통해 정보기관 고유의 학원사찰 실태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학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학원망 활용

정보수사 활동에 있어서 대상목표에 대해 이른바 ‘망’을 활용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로서 그 자체를 법률적 의미에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정보기관이 학원에 망을 부식하여 정보수사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보다는 과연 어느 정도 많은 수의 학원 망을 운용하였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망’과 ‘프락치’의 개념을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즉, ‘망’은 정보수사관의 설득에 의해 당사자가 자발적인 협조의사를 밝힘으로써 형성되는 협조자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정보수사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프락치’란 정보기관이 대상자의 취약점 등을 이용한 공작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협조를 유도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학원 망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며, 프락치공작과 관련한 사항은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다루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 과정에서 안기부는 1980년대에 대학 내에 광범위한 망 조직을 부식, 정보수집 활동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학원문제에 개입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구체적인 망 운영 실태부터 살펴보자.

◎ 망 운영 실태

권위주의정부 쏠 시기를 망라하여 정보기관의 망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1983년과 1984년 안기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나와 있는 망 운영 현황과 활용실적 등을 통해 정보기관이 망을 이용하여 학원 사찰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983년 당시 학원 망의 운영실태는 「학원사태양상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1983.12.1) 문건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당시 안기부의 정보 및 수사부서(본부 및 지부 포함)에서 운영하던 망의 형태별 현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1983년 12월 경 안기부의 유보수 학원망 부식현황은 총 401개 망으로 00망(0국) 66개, 00망(분실) 83개, 00망(분실) 102개, 00망(분실) 150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1984년 9월경에는 502개 망(고정 00망 98개, 기동00망 179개, 특수 00망 225개)으로 증가하였다.

동 문건에 따르면 안기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던 401개 망(84.9에는 502개 망으로 증가)외에도 당시 치안본부(267개)와 보안사(16개)에서 운영하는 망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던 대학 내 망 조직은 1983년 12월 기준 모두 684개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유보수 망’ 외에 ‘무보수 망’이나 ‘협조자’ 형식으로도 정보수집이 이루어졌음은 前職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였다.¹⁷⁾

◎ 망의 형태와 역할

정보기관이 대학 내에 부식하였던 망은 임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학원 망의 활동실적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작성된 「84년 2학기 대비 학원망 점검결과 보고」(1984.9.3)란 문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학원 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정 00망은 소관분야내부의 실정 및 동향을 수집하여 제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기동 00망은 특수임무 부여시 목표 내에 침투하여 순화·저지·와해·차단 능력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특수 00망은 학내 건전세력 육성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 교직원 및 학생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 기준에 의해 평가

일반적인 정보수집을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고정00망과는 달리 기동00망과 특수00망은 이른바 ‘문제권’ 내에 침투하여 구체적인 공작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7)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등 학생과 교직원 출신자 면담내용 참조

「84년 2학기 대비 학원망 점검결과 보고」(1984.9.3)에는 망원의 신원성분을 보여주는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당시 정보기관에서는 학원 망으로 위장학생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 등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학원 망 부식분포 >

구 분	계	호국단 간부	서클학회 간부	문제 학생층	학보사 기자	교수 교직원	잡급 직원	기타
계	502	31 (6.2%)	132 (26.3%)	188 (37.5%)	12 (2.3%)	93 (18.5%)	4 (0.8%)	42 (8.4%)
固定00網	98	7	17	59	2	13		
機動00網	179	17	64	72	3	12	2	9
特殊00網	225	7	51	57	7	68	2	33

동 문건에서는 502개의 망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부실 망 91개를 발견하여 교체·보강하였다”는 등 조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교체된 사유에서도 망원으로 활용된 사람들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된다. 교체된 91개 망 중 실적부진이 34개 망, 군 입대를 비롯한 신상변동이 46개 망으로 교체사유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상변동으로 교체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15개 망의 경우 “군 입대 및 해외연수 중에 있는데 추후 학원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다시 활용하기 위해 교체가 아니라 활용유보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학원 망 부식현황을 통해 정보기관에 협조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총학생회 또는 서클 간부(63.8%)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상목표에 접근성이 뛰어난 사람을 포섭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망 조직은 특히 ‘예방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기관이 학원문제와 관련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정보(집회·시위 기타 운동권학생들의 동향 등)를 수집·보고하였다. 학원 망은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문건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관내 대학의 미승인 농활 및 의식화 활동과 관련하여 모두 12개 망에 의해 계획이 포착되었다. 서울농대의 10개 팀과 성대의 20개 팀의 계획인데, 이 같은 정보탐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2명에 대해 매달 0만원씩 2개월치 00만원이다.¹⁸⁾

안기부 00분실에서 운영하고 있던 농활 및 의식화 활동관련 사항을 수집하는 망은 모두 12개였는데, 이중 서울농대와 성균관대에서 하계방학 중 활동을 계획하고 있던 30개 팀의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활용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00분실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활동내용과 계획을 탐지하고자 “특별 00망을 투입, 의식화 활동계획 사전 파악 및 활동내용을 심층 분석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이 문건이 작성된 지 일주일 뒤인 1986년 7월 8일, 00분실 보고내용을 포함한 망 조직의 활동계획과 관련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망별 활동내역과 성격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의식화과정(학생, 농민) 및 실태, 2학기 투쟁방안 등을 중점 수집하여 학원 안정화 대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소요를 선도하고 있는 8개 대학에 9개망(서울대는 2개망)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외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에 각 1개망 씩이다.¹⁹⁾

18) 안기부, 「학원 관련 경기, 인천지역 봉쇄대책」(1986.7.1)

19) 안기부, 「하계방학 중 학원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건의」(1986.7.8) 문건에서는 00분실이 신청한 00만원을 포함 모두 00만원의 특망비를 “00예산”에서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 문건에 나와 있는 ‘대학별 세부 공작내용’을 통해 보면 방학 중 이른바 ‘불순농활’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념서클과 학생회가 주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대학의 농활준비 주체 내부에 망을 부식하여 세부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 망들은 방학기간 중 한시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망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정보기관은 이처럼 특화된 임무에 따라서 광범한 망을 대학 내에 부식·운영하였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었다. 1983년도의 경우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었다.

대상별로 각 정보기관 간 중복 부식,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문제요소 보다는 학도호국단, 학생처 등에 부식·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내 전반적인 동향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태의 사전징후 파악에는 미흡하고 취약요소 부식 경우에도 일반서클 중심으로 부식하여 소요를 주도하는 의식화 문제 서클에는 정보망이 별무한 실정이다. 특히 특수학원 O O망의 경우 1차년도 부식 대상자들이 현재 2학년으로서 학내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현재까지 활용실적 전무한 실정이다.²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던 망 조직이 정작 핵심적인 대상 목표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수학원OO망’으로 불리는 것은 현역 학생들을 직접 활용한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들은 학생운동 주도 세력과는 괴리되어 의도된 실적을 낼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1983년 경 작성된 망 활동 평가에서 성과가 미미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이 망 운영을 재고하거나 중단하지는 않았다. 1984년 9월 대규모로 진행된 망 점검사업은 1983년 12월에 작성된

20) 안기부, 「학원사태양상분석 및 대처방안검토」(1983.12.1)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입각해서 점검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점검결과 1983년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원망의 활용은 중요하고 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84.2학기 대비 학원망 점검 결과보고」(1984.9.3)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중 각 분실별로 1차적으로 분실장이 직접 학원망 운영, 정보·수사관을 개별면담, 망원의 활동실태·신상문제 등을 점검하고, 2차적으로 분실간부들이 망원을 분담, 점검중점사항에 의거 개별면담을 통해 점검한 결과 망원 공히 새로운 정신자세로 학원안정에 일익을 담당, 지원에 보답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특히 OO망에 대해서는 분실장이 직접 면담, 등록금을 지급하면서 학원안정수호 세력화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총 502개 학원망 중 대부분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약 18%에 해당하는 91개망에 부실사유가 발견되어 교체 보강이 필요하다. 학원망 점검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대학에 중점적으로 부식되었는지 여부, 특히 문제발생 소지가 많은 학과·서클단체 등에 치중하고 있는지 여부, 84년 1학기 중 망별 활용성과 유무에 따라 진행되었다.

금번 학원망 점검은 망원 개개인의 영향력과 목표에 대한 접근성·과거 활동실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정비하는 한편 간부들이 직접 망원을 면접, 격려와 당부로 학원 안정에 一役을 다짐하는 등 사명감 고취에 많은 기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수시로 이들을 격려하여 학원안정 수호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실망은 계속 정비 보완함으로써 실효거양에 주력하겠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1980년대 초반이란 특정시기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정보기관(치안본부, 보안사 포함)에서 운영한 학원망이 총 684개였다는 것은 학원에 대한 감시체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보기관은 이러한 망을 통해 정보 수집과 함께 학원사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학원 망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협조자’를 활용하거나 정보기관이 직접 학내·외 잠복활동을 통해 학원동향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협조자 활용 및 학내·외 잠복활동 전개

1980년대~90년대까지 대학교 학생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 교직원들은 정보기관과 자연스럽게 업무상 협조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앞에서 설명했듯이 총학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정보수사관에게 전달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즉,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정보관과 학생처 교직원은 같은 대학 출신들로서 서로 선후배 사이라는 학연 등에 의해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담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당시 국립대에서는 “연구사”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연구사”는 각 대학 운동권 총학생회 간부들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출신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선발하여 이들을 해당 대학에 파견, 학생처와는 별도로 운동권 학생의 선도활동 등 동향을 파악해 문교부 교육정책실에 보고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문교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이며, 큰 틀에서 볼 때 학원사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학가 불순유인물 살포자 적발을 위한 잠복활동보고」(1983.3.21) 문건을 통해 정보기관이 직접 학내·외 잠복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록 잠복활동의 목적이 불순유인물 살포자를 적발하거나 경찰 및 대학 야간근무자 근무상태 점검 등을 위한 목적이긴 했지만, 직접 대학 내 학생회관 및 서클룸 등에서 유인물을 회수 또는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학원 동향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잠복활동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가 불순유인물 살포자 적발을 위한 잠복활동 보고

1983.3.21

1. 상 황

- 최근 대학가는 신학기 개강 이후 불순유인물 살포 및 낙서행위가 급증
- 당부에서는 유인물 살포 등 불순행위를 적발키 위해 3.16부터 다음과 같은 잠복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중,

2. 실시계획

- 전국 98개 대학을 소요발생 빈도, 문제학생수 등을 감안 A, B, C급으로 분류
 - A급 :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서강대, 동대, 이대, 전남대, 부산대 등 9개대
 - B급 : 외대, 경희대, 경북대, 강원대, 조선대 등 21개대
 - C급 : 기타 68개대
- 등급 분류에 따라 잠복근무 조를 편성
 - 학내 취약지역 순찰
 - 경찰 및 대학 야간근무자 근무상태 점검
 - 불순유인물 살포자 및 낙서자 적발
 - 불순세력의 학내 침투 차단 등의 임무 수행
- 근무요령
 - A급 : 2개조(4명) : 24시간 교대근무
 - B급 : 2개조(2명) : 06:00~09:00, 18:00~23:00
 - C급 : 1개조(1명) : 06:00~09:00
 - 기타 : 주간에는 학원 망 활용

이 계획은 1883년 3월 16~17일 동안 위에 분류된 A·B급 대학 전부와 C급 일부를 포함한 전국 68개 대학에 160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3. 실시결과

- 3.16 재경 주요대인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동대, 서강대, 이대 등 7개대(38명)와 3.17 서울대 등 20개 재경대 및 전남대, 부산대 등 41개 지방대(122명)에 대해 실시
- 동 근무를 통하여 학내 취약요소인 학생회관 및 서클룸 등에서
 - 불순유인물 : 8개대 41종 71매
 - 불순책자 : 6개대 13종 13권
 - 불순낙서 : 3개대 9종등을 발견 회수 및 제거조치
- 적출된 불순유인물 및 책자는 대부분 기히 배포된 것이며 새로운 것은 “민족민주를 위한 투쟁선언” 1종임(책자 중 ‘조선인민공화국만세’ 운운이 포함된 불온노래집 소지자 이00(서울대 종교 4)을 내사 중)
- 이와 함께 동 근무를 통하여 경찰 및 학내 야간 근무자에 대해
 - 근무자세 점검
 - 경각심 고취
 - 조기 경보체제 확립 등 효과 거양

이처럼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서 대학내부를 사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례 없던 當部 직원의 학내철야잠행 근무로 인해 일부 교직원들에게 학원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도 산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정보기관의 대학에 대한 사찰작업은 ‘정보망’을 통한 것이었음을 다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4. 문제점

- 동 잠복근무를 통하여 불순유인물 발견 등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 잠복근무 사실이 교직원을 통하여 전파
 - 대학의 자율성 침해 오인
 - 일부 문제학생들은 이를 새로운 이슈화
 - 當部가 학원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부여 등이 우려
- 전례 없던 當部직원의 학내철야잠행 근무로 인해 일부 교직원들에게 학원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도 산견

5. 조치방향

- 불순분자의 학내침투 사전저지 및 적발, 학원안정을 지속화시키기 위해 일부 노정된 문제점을 극소화하여
 - 특망 활용 징후 포착시
 - 학생 참여 각종 문제행사 대비
 - 수시필요에 따라 경찰 및 교직원의 협조 하에 집중적으로 야간잠행 근무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겠음

이와 같이 정보기관에서 학내·외에 대한 불시점검 활동을 통해 불순 유인물을 적발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학원사찰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학원사찰은 아닐지라도 대학가 주변 하숙·자취촌과 서점·주점·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목적을 위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대주변 학원아지트 수색계획 검토보고」(1985.10) 문건에는 당시 정보기관이 주도한 대학촌 주변에 대한 수색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주변 학원아지트 수색계획 검토보고

1985.10

(중략)

다. 실태

- 운동권 문제학생들은 주로 신림동, 봉천동 지역 하숙·자취가, 경양식집, 다방, 복사점 등을 시위도구 제작 보관, 의식화교육 및 시위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
- * 문제 하숙, 자취생들은 정보 수사기관에 주거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2개월마다 철새처럼 전전
- 문제서점, 복사점 등은 각종 불온유인물, 전단 등 제작 및 보관 판매
- 신림동 소재 일명 “대학촌”은 신학기 각종 단합대회 서클집회 등을 통해 의식화 교육장으로 활용
- 수배자 및 운동권 핵심 지하조직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방, 독서실, 여관 등지에서 은신 및 시위 등 모의
 - OO다방에서 민주위 “깃발” 제작관련자 윤 OO 등 모의
 - OO독서실에서 前 서울대 총학생회장 백 OO 은신
 - OO여관에서 윤 OO 등 린치사건 관련자들이 은신, 프락치혐의자 손 OO 불법감금
- 학생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주점, 다방, 경양식점, 중국음식점 등 문제 장소에는 불온낙서가 충만
 - “군부파쇼 타도하자”, “내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OO다방 벽)
 - “태산이 높다하되 대머리의 밑이로다”(OO 경양식집 건물 2층 화장실)
- 학교주변 서점, 경양식점, 학사주점 등은 광고비 명목으로 지하 불순유인물 자유언론, 관악평론 등에 자금 지원, 학원사태의 직간접 지원세력으로 등장
 - OO서적, OO서점, OO경양식, OOOO안경원 등 업소에서 수차에 걸쳐 1회 광고에 2~3만원씩 지불

(위 문건에서 계속)

3. 검토결론

- 최근 문제학생들이 전학련, 3민투 등을 재건, 2학기 개헌투쟁 등 강력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불법아지트를 학내 외에 확보코저 획책하고 있어 학내 외 수색을 유기적으로 반복 실시함으로써 학원불순 조직인 3민투, 민주위 등 수사와 병행, 학원사태 예방에 효과 제고가 기대됨
 - 그러나 전국 주요대 주변을 일제 수색할시 문제단체와 주민 여론악화 등을 감안, 1차적으로 학원사태의 진원지인 서울대를 선정
 - 학외 아지트 발본색원, 학원사태 체감
 - 민주위 등 학원사태 관련 수배자 검거
 - 학원가 주변 불순장소 정화
- 등 학원 및 사회안정 차원에서 강력 실시함이 좋겠음
- * 경찰, O국, 서울분실 동일의견

4. 기본방침

- 관계기관 공조체제 하에서 실시
 - 검찰 : 사전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 경찰 : 수색전담 지휘
 - 안기부 : 수색지원 및 조정
 - 작전시기 : 10.15(화) 20:00
 - 수색 계획시부터 보안철저 엄수
 - 수색 대상지역
 - 서울대 주변(신림 9동, 신림본동, 봉천 7동 지역), 225개소
 - 동 방침 부작용 체감을 위해 세부대책 강구 시행
- * 관계기관(검찰, 경찰, 문교부, 당부)회의 개최 세부사항 결정

3) 정보기관의 직접적인 학내사찰 발각사례

정보수사관이 학내에 직접 들어와 사찰한 사례는 문건 상으로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연세대 정보요원 납치사건」(1984. 4.10) 문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정보기관 직원이 직접 학내에 들어가 관련 정보를 파악하다 학생들에게 발각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문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세대 정보요원 납치사건

1984. 4. 10

1. 연대 當部요원 납치사건

○ 개요

서클연합회 주최로 3.29. 13:10~14:30간 도서관 앞 광장에서 500여명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학원민주화추진위 발족 총회를 개최 후 학생들은 전진가, 농민가 등 노래를 제창하며 농성타 15:15 스크림을 짜고 본관으로 진출, 동 광경 채증 중이던 當部 OO과 소속 OOO 직원을 납치, 도서관에 감금하였다가 21시간 만에 학교당국에 신병 인계하고 해산

○ 경위

- 3.29 11:30경 연대 학원민주화추진위 발족총회 행사동향 파악 및 채증 활동을 위해 행사장 주변 등지에서 학내상황 점검
- 12:30부터 행사장 주변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 이후 공식행사가 14:10 종료된 후 15:15부터 500여명의 학생들이 스크림을 짜고 본관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에서 채증 활동 중이던 동명을 발견 포위, 휴대하고 있던 사진기 및 무선호출기 등을 탈취
- 15:20~17:50간 300여명의 학생들이 동명을 에워싼 채 신분제시를 요구한 가운데 17:50 이들 중 200여명이 동명을 대동코 도서관로비로 이동, 연좌농성

(위 문건에서 계속)

- 18:00 농성인원이 150여명으로 감소된 가운데 20:30 학생설득 및 동명 구출을 위해 교직원 50여명이 현장에 진입,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중략)

- 20:30~24:15간 교무회의에서 설득으로 사태 수습을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01:25 총장, 보직교수, 교직원 120여명이 학생들에게 “이 사건을 학교에 맡겨주면 그 결과를 알려주겠으니 농성을 해제하라”고 설득하였으나 이에 불응, 철야농성

- 3.30 10:55 학원민주화추진위 대표와 학생처장간 합의문서에 서명 후 납치 중이던 當部요원을 풀어주었으며, 이후 동위 부위원장 000의 철야농성 경과보고, 합의사항 발표를 끝으로 11:50경 자진해산

o 합의서

- 일시 및 명의 : 84.3.30 연대 학생처장,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 내용 : 3.29의 사찰요원 사건관련 학교당국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

1. 정부의 학내 기관원 철수조치 발표 이후에도 학원사찰이 계속되었는바 3.29의 학내 기관원 정탐사건은 그것을 명백히 반증했다. 학생들에 의해 발각된 기관원으로부터 나온 분명한 증거품(녹음기, 카메라, 송신기 등)과 학생처에서 그 기관원이 상부로 보고한 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그리고 학교당국의 확인으로 볼 때 그는 국가기관원임이 확실하다

(중략)

3. 학교당국과 학민추는 이러한 학원사찰 사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공동으로 해당 국가기관에 엄중한 항의서를 제출할 것이며, 앞으로 학원사찰에 대하여 성실하게 공동으로 대처, 해결해 나갈 것이다

4. 이번 학내 사찰요원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모든 사태는 그 직접적 원인이 학원사찰의 사실에 있으므로 이에 관계한 어떤 학생에게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o 조 치

- 연세춘추 등 학내 언론 보도시 당부 및 증거품의 구체적 명칭 삭제토록 조정하고 사진기, 녹음기 등 증거품 회수 조치, 학교당국에 주동학생 처벌 문제 일임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 기관원”²¹⁾이라고만 표현했지만, 국정원 보존문건에서 확인한 바처럼 모 기관원은 안기부의 학원담당직원으로 확인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기관원의 학원사찰 문제는 대학가에서 꾸준히 그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다.²²⁾ 학내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던 경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수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 문건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시 안기부 직원이 대학에 직접 들어가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유형별 학생운동 통제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다 | 유형별 학생운동 통제실태

1) 학교 및 교수에 대한 통제

가) 학사개입을 통한 통제

정보기관은 1970~80년대를 통해 대학의 학사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개입·통제를 가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학원사태양상분석 및 대처방안검토」 문건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전반적인 학사행정 개입 상황을 포착하였다.

학사행정 지도의 실태로 1971년 문교부는 학사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각 대학에 학사지도를 실시했으며, 1981년부터 교육정책실로 개편, 학원대책 관련 학사지도 업무를 관장해오고 있는데, 교수재임용, 교수추천제, 학사경고제, 지도교수제 운영 등 지도 감독과 문제학생 지도 실태 감독, 학원사태 주동자처리 지시 감독, 축제 등 학내행사시 행사기간, 시간 규제를 해오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간 학원

21) 『조선일보』 1984년 4월 8일자(10면) 기사 참조

22) 안기부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월간말』誌와 같은 재야언론에서는 경찰, 보안사 등에 의한 학원사찰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월간말』 87년 3월호 “학원정보공작의 실상”, 87년 5월호 “또 다시 드러난 학원정보공작”, 89년 7월호 “학원정보공작대 ‘CP’의 전모”, 90년 1월호 “학군단 프락치활동 지침서”, 90년 11월호 “나에겐 아직도 갇아야 할 빛이 있다-윤석양의 서빙고 80일 체험기”, 94년 12월호 “당신도 문민시대 안기부의 프락치가 될 수 있다” 등 내용 참조.

대책기구(심의위, 추진위, 실무소위 등)에서는 수시 학원대책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학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학원안정에 기여하였고, 대학간 학생지도 불균형을 조정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제점으로는 학원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지시 감독으로 학사행정의 경직화와 대학 자율성 저해 및 對정부 의존심 제고와 함께 대학에서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로 전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평가를 통해 당국의 광범위한 학사행정 개입은 학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성과가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 저해 등 부작용 감안, 문교부에서는 정책사항에 대한 기본지침만 시달, 구체적 계획은 대학자체에서 수립 시행하는 등 대학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학원자율화조치와 함께 대학당국의 학사업무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된 듯하지만, 정작 학원소요와 관련된 주요 학사업무에 대해 정보기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개입은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985년 12월에 문교부에서 작성한 「'86학년도 학원대책 보고」 내용을 보면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5공화국 정부는 대학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통해 '학원안정'을 이루려고 했다.

즉, 「'86학년도 학원대책 보고」에서 문교부는 “학원안정 부실대학에 대한 단계별 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학원안정 부실대학은 행정·제정적 지원을 규제
 - 총학장 및 이사장 취임, 연임의 승인 및 취소
 - 단과대학의 종합대 승격 - 법인 기본재산 관리
 -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학과증설, 학생증원
 - 학술연구구성비 배정 - 총·학장 해외여행
 - 대학교수 및 국비 해외연수 인원 배정
 - 학생활동 경비 보조 - 교육차관 사업예산 배정
- 계속 문제가 있는 대학은 특별감사와 단계별 조치 병행
 - 1단계 조치 : 구두경고 - 2단계 조치 : 공개서면 경고
 - 3단계 조치 : 휴업, 휴교

이와 같이 일상적인 문교부의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도 학원안정이 부실한 대학은 ‘특별감사’와 더불어 3단계(구두경고 ⇒ 공개 서면경고 ⇒ 휴업 및 휴교조치)에 걸친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문교부였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학원에 대한 통제대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문교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했다. 한편 문교부는 학원 문제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해 ‘실무소위·추진위·심의회의’ 등 여러 종류의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안기부는 문교부 주관으로 개최된 심의회의·실무소위 등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원소요 사태 등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왔다.²³⁾

문교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학원대책심의회의’는 ‘실무소위’와 달리 관계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체였다. 조사과정에서 1987년 4월 9일 청와대에서 ‘심의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청와대 교문수석, 문교부 장관·차관·정책실장, 치안본부장, 보안사 참모장, 안기부 O국장 등이었다.²⁴⁾

이 회의에서는 “서울대 건대사건 관련자 징계처리 방안을 협의”하여 “집행유예자 징계(무기정학)는 원칙을 고수하고 학생지도 결과에 따라 선별적, 단계적 구제토록 학교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건대사태 구속자의 학사징계를 학교 측 재량에 부여하겠다는 결정이었는데, 이를 통해 ‘심의회의’는 구체적인 안건의 최종결정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아진다.

한편 회의 결과를 “서울대학 측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총장이 자기책임

23) 문교부가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1984학년도 학원종합대책」(1983.12.15)에 따르면 1983년도의 경우 “학원대책심의회는 6회, 추진위 8회, 실무소위 52회”에 걸쳐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한다. 실무소위의 경우는 주1회 개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 안기부, 「문교부 학원대책 심의회의 결과」(1987.4.29) 문건에서는 비슷한 시기였던 4월 29일 회의 참석자는 청와대 교문 수석, 정무 2수석, 민정수석, 안기부 1차장, 법무차관, 치안본부장, 보안사 참모장 등이었다.

하에 조치해야 한다는 간접적 언급이나 시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합의” 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전년도에 발생했던 건대사태 당시의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공식발표나 문교부 방침하달의 형식을 빌지 않기로 한 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80년대의 경우 거의 모든 학사운영은 학원소요사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저지하거나, 학생의식의 건전화 등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교당국의 대학정책은 정보기관의 학원관련 통제대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리고 비록 문교부 주관으로 ‘학원대책 실무소위’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그 성격상 정보기관의 입장이 강하게 관철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은 정보기관의 학원 통제 방안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²⁵⁾

국정원 보존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실무소위는 사립 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조치의 검토에서부터 휴학 후 군입대자의 자살사건, 불법시위 연행자에 대한 처리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학원관련 실무들을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정보기관의 학사업무에 대한 개입·통제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운동권출신 제적생 복교 불허조치 등 개입

1983년 말경 학원자율화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은 문교당국의 주요업무 사항이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제적생의 복교문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안기부는 “전원 복교안과 선별 단계적 복교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극렬문제 제적생 제외, 단계적 구제조치가 타당”하다고 제적생 복교와 관련된 원칙을 제시한 다음, 제적생들의 복교의 구체적인

25) 대개의 경우 정보기관이 문교당국을 통해 다양한 학원통제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안기부에서는 시위관련 제적생들이 타대학에 입학치 못하도록 문교부가 통제할 것을 조종한 바 있는데, 문교부는 이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출했던 것이 좋은 사례로 이는 「대학가 학원사태관련 제적자 타대입학 저지대책」(1986.12.3) 문건과 「문교부 학원사태 관련자 타대학 입학저지 계획」(1986.11.29)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절차와 관련 문교부장관의 정부방침 발표문의 세부내용까지 미리 작성하여 통보하는 등 사실상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원사태관련자 처리방안 검토결과 보고」(1983.12.6) 문건을 통해 당시 제적생 및 구속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적생현황>

80년 538명, 81년 296명, 82년 212명, 83년 330명 총 65개대 1,376명. 주요 대학별 현황은 서울대 271, 연대 97, 고대 116, 성대 120, 서강대 38, 경희대 40, 외대 47, 동대 48, 이대 33, 충남대 30, 전북대 29, 전남대 79, 경북대 39, 부산대 32명으로 상기 14개 대학이 전체 제적생의 74%(1,019) 점유

<구속학생 연도별 현황>

총 2,212명으로 73년 81명, 74년 180명, 75년 163명, 76년 32명, 77년 83명, 78년 162명, 79년 272명, 80년 508명, 81년 242명, 82년 181명, 83년 308명

정보기관은 이러한 제적생현황을 토대로 제1안은 제적생 전원을 일괄 복교조치 하는 것이고, 제2안은 개별성향 및 자속도를 감안하여 선별적·단계적 복교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두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제적생 누적현상 해소와 학원안정대책 추진 필요에 따라 “극렬 문제 제적생을 제외한 단계적 구체조치가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체절차로는 문교부장관이 ‘전국대학 총학장회의’를 소집하여 정부의 구체방침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했는데, 동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문교부장관의 발표문 요지까지 미리 적시해 놓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제적생들에 대해 “과거를 뒤우치고 앞으로 자속할 것을 약속할 것”등 전제조건을 달면서 “다시 한번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적생 구체조치의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발표내용 요지>

- 정부는 그동안 학원소요와 관련 제적되었던 학생에 대하여 과거를 뒤우치고 앞으로 자숙할 것을 약속하는 자는 새해 신학기부터 전원 복학을 허용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 같은 조치는 비록 한때의 잘못으로 범을 어기고 면학분위기를 해친 바 있으나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각 대학당국에서는 복학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각 대학별로 심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복학절차를 추진할 것임
- 이와 같은 정부의 관용조치에도 불구하고 금후 다시 학원안정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수학생 보호를 위하여 엄단방침이므로 금번 조치로서 다시 학적을 갖게 된 학생들은 앞으로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여 면학에 정진할 것을 당부함

이와 같이 전국대학 총학장회의 석상에서 문교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정부의 정책이지만 사전단계에서부터 안기부가 주도했다. 문건 상으로 보면 복교 대상자를 심사하여 명단을 확정하는 데에도 정보기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건 말미에는 월/주 단위로 복교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으며, 서울대생 21명을 포함하여 전체 84명의 ‘복학 불고려자 현황’까지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른바 학원자율화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제적생 복교와 관련한 실무는 현황점검에서부터 대안제시,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시행세칙에 이르기까지 안기부가 총괄적으로 주도했음을 확인하였다.²⁶⁾ 단계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26) 주요대학별 복학 불고려자 총 84명의 대학별 현황과 개인별로 성명, 학과, 제적사유와 함께 특이동향 내용에 의해 복학 불고려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복역 중인 367명은 석방시 별도 개별 심사한다는 방침 명기

(위 문건에서 계속)

(1) 1단계 : 관계기관 합동심사

- 문교부, 내무부, 보안사, 안기부 합동으로 제적생 성향분석
- 구제 대상자 선정 및 불고려 대상자 구분
- * 동 자료는 문교부를 통해 해당 대학에 지원

<구제대상 제외자>

- 복교시 문제종교인 및 재야정치인 등과의 연계활동이 예상되는 자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단체 가입, 조직적으로 문제활동 중인 자
- 문제서적 출판 및 판매 등 학생의식화 선동자
- 제적 후 문제학생 연계 학원사태 배후조종 및 주동자
- 남민전 및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
- 공단 등에 위장침투, 근로자 의식화 기도자
- 기타 복교시 학원안정 저해 우려자
- * 첨부 : 복학 불고려자 현황 및 명단

(2) 2단계 : 학교당국 자체심사

(3) 3단계 : 복학절차 추진

- 대상자에 대한 각 대학 개별심사로 복학자 선정
- 보호자 연대 각서 및 서약서 징구 등 조치
- 향후 별도 특별지도 대책 수립 시행
- * 동 조치 후 관계기관에서는 미 복교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여 철저한 동향감시 및 기관장 연계, 지도 병행

제적생들이 복교할 경우 학생 시위와 다시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보기관은 복교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는 필연적으로 학교당국의 고유한 학사업무에 대한 개입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84.1학기 제적 복교자 수학실태 점검결과」(1984.8.13) 문건은 제적생 복교 조치에 따라 84년 1학기부터 이들의 1학기 동안 수강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을 성적(평점)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성적 우수자들에 대해서 문교부·문공부 등과 협조하여 적극 홍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학원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정보기관이 문교부 등 학원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학사업무에 개입하는 관행은 지속되었다. 1986년 ~ 1987년경, 문교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학원문제 관계기관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학원소요로 연행된 학생들이 학내징계와 관련된 문제였다.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정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문교부는 이 문제를 정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당 학교별로 처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문교부, 학원대책 심의회의 개최결과」(1987.3.24) 문건과 「문교부, 학원대책 실무소위 개최결과」(1987.3.25) 문건을 통해 그와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심의회의’는 문교부장관과 안기부 제1차장 등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였고, ‘실무소위’는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두 회의에서는 건대사태와 관련된 학생들의 처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즉, 86년 10월 일어난 건대사태 결과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390명의 집행유예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 대학에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학내징계를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동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한달 간격으로 개최된 심의회의와 실무소위에서는 문교부가 마련해 온 징계 안을 검토하였는데, 문교부에서 제시한 학사처리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행유예자에 대한 무기정학 조치”를 “무기정학 이상(무기정학 또는 제적)”으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가 소요에 재감담한 경우 제적조치”하는 것으로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교부, 학원대책 심의회의 개최결과

1987.3.24

- 문교부에서는 3.24 학원대책심의회의(주재: 문교장관, 당부 1차장 참석)를 개최코 건대사건 관련 집행유예자 징계 등 사태관련자 처리문제를 다음과 같이 중점 협의하였음
- 문교부의 ‘사태 관련자 학사처리 기준’을 상향 조정
 - 집행유예자에 대한 무기정학 조치를 → 무기정학 이상(무기정학 또는 제적)으로
 -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가 소요 재가담 경우 → 제적조치 등 기준 강화
- 이와 관련 건대사건 집행유예자 중 미처리자(108명)에 대해서 무기정학 이상 처벌토록 강력 추진

[집행유예자 처리현황]

- 계 309명 : 제적 12 / 무기정학 189 / 미처리 108
- * 건대사건 관련자 총 1,522 명중 구속기소는 397명
 - 징역 : 81명, 집행유예 309명, 미확정 7명.
 - 무기정학은 최소한 1학기 이상 적용
 - 무기정학 기간 중 문제야기 시 제적처리

하루 뒤에 개최된 실무소위²⁷⁾는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이와 같은 원칙을 실무자급인 문교부·안기부·치안본부·보안사의 학원과장들이 참석,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문교부가 1차적으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징계수위의 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안기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했음을 알 수 있다.

27) 안기부, 「문교부, 학원대책 실무소위 개최결과」(1987.3.25)

◎ 소요 극렬학과의 폐과 등 강경제재조치 검토

80년대 중반 정부에서는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시위학생이 많은 학과 또는 학과 교수들의 성향이 반정부적이라는 구실로 특정 대학의 해당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폐과를 검토하는 강경한 조치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문교부 주관으로 열린 안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소요다발 대학에 대한 강경 제재조치관련 유관기관 회의결과」(1986.12.2) 문건과 「소요다발 대학에 대한 폐과 등 강경제재조치여부 검토」(1986.12.3) 문건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는 문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건국대 사태’ 등 학원소요에 많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 대학 학과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1986년 12월 2일 문교부 주관으로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위원들이 참석, ‘학원대책 실무소위’를 개최하고 소요다발 학과들을 대상으로 문교부에서 제시한 방안과 관련 폐과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문교부 조치안’에 대한 안기부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요다발 대학에 대한 폐과 등 강경제재조치 여부 검토

1986.12.3

1. 개황

문교부에서는 건대 난동사건 이후 소요다발 대학에 대한 소요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학과에 소요 주동자 및 소요가담 인원이 집중되고 있어 학원안정 차원에서 관련 학과 폐과, 정원감축 등 강경제재 조치 여부를 검토 중임

(위 문건에서 계속)

2. 관련내용

○ 12.1 학원실무소위 개최, 소요다발 학과에 대한 제재 조치안(문교부 검토안)에 대해 시행 및 타당성 여부 논의

- 대상 3개대 : 서울대, 한신대, 부산대 - 대상학과 : 7개학과

[문교부 조치안]

○ 서울대 : 신입생 모집 감축학과

- 서양사학과(정원 21명) : 10.11 용공대자보 원본이 동학과 강의실에서 발견 (주동자 1명 구속)

- 지리학과(정원 35명) : 용공대자보 사건 주동자 2명 소속 학과

- 지구과학교육과(정원 32명) : 건대사건 주동자이며 서울대 자민투 위원장인 정OO 소속학과

○ 부산대 : 정원감축

- 경제학과(정원 137명) : 학과단위 소요발생 최고 (학기 중 25회)

○ 한신대 : 폐과

- 국사학과(정원 53명) : 건대사건 28명 가담, 53% 가담으로 단위학과 가담자 최고수

- 신입생모집 감축학과

· 신학과(정원 58명) : 소속교수 전원이 교수시국선언에 가담, 소속 학생 10명이 건대사건 가담

· 기독교교육학과(정원 36명) : 상동 · 신학대학원 : 대학원생 시국선언 주도

○ 동 문교부 조치안에 대해 관계기관 공히

- 건대사태 이후 소강상태 유지

- 새로운 이슈 제공, 신학기 개강시 물의소지 다분

- 특히 과 선정시 객관 타당한 합리적 기준 검토 필요

등 이유로 신중론 제시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제재 안은 ‘문교부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 제재 안은 매우 강경한 내용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건대사태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여 신학기 개강시 물의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科 선정시 객관 타당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실무자들의 회의였던 ‘실무소위’에서 결정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는 보다 상급자들의 대책회의였던 ‘학원대책 심의회(86년 12월 4일 개최예정)’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이 같은 문교부의 제재안에 대해서 안기부는 독자적인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12월 4일 개최될 ‘학원대책심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완화된 제재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소요다발 대학 학과에 대한 강경제재 조치는 향후 학원 안정을 위해 경중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일용 바람직하나 폐과, 정원감축 등에 따른 대학, 교수, 학생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 고려도 필요함. 그러나 여타 대학에 대한 경중차원에서 소요다발 학과에 대한 강경조치가 필요하므로 반발 극소화를 위해 우선은 정부 의지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정원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으로는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한신대 국사학과로 정원감축시키고 3년 입시생들에 대한 피해 극소화를 위해 여타 학과(건전성향) 증원조치 검토 필요 28)

그러나 정원감축은 실제 시행되지는 않고, 해당 학교에 대한 경고조치로 완화되었다.²⁹⁾ 이처럼 정보기관은 문교부의 폐과 등 강경제재안에 대해 정원감축안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보기관이 학사행정에 대해 깊이 관여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28) 안기부, 「대학가 소요다발에 대한 관련학과 폐과 등 강경제재조치 여부 검토」(1986.12.3)

29) 「1987학년도 학원대책보고」(1986.12.19) 문건은 문교부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정원감축 등을 논의했던 대책회의의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신대 국사학과·신학과 및 서울대 서양사학과에 대해 모두 정원감축 등의 제재 없이 총·학장, 학과장에 대한 경고와 학과경고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맨 앞쪽에 전두환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사항은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 자료 중 87. 6.16 문교부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와 관련 쏘 대통령은 “시위·농성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대학에 대해서는 휴교조치 등 강력 대처할 것”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권위주의정부 하에서의 학원문제는 통치권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쏘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하, 문교장관 업무보고시 지시사항

1987.6.16

각하께서는 6.16 11:00~12:00간 손재석 문교장관으로부터 최근 학원상황 등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지시

○ 학원상황 관련 지시

- 시위·농성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대학에 대해서는 휴교조치 등 강력 대처할 것
- 서명교수들이 학생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볼 것
- 서울교대는 경찰을 투입, 해산 조치토록 하고 정태수 학장에 대해서도 책임소재 명확히 할 것 (6.16 15:30 기 해산조치)

○ 8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연기

- 87학년도 2학기 조기개강(8.17 개학)은 문제가 있는 바
- 전기대입 전형일을 12.17에서 12.21경으로 연기할 것

(중략)

◎ 학원사태 관련 제적생 타대학 입학저지 대책 추진

대학의 신입생 선발은 학교의 고유 업무와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정보기관에서는 학원소요를 주도하는 문제학생들의 재입학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대학의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개입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즉, 안기부는 「문교부, 학원사태 관련자 타대학 입학저지 계획」(1986.11.29)이란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문교부에서는 當部の ‘학원사태 관련 제적자 타대학 입학 저지 대책’제하 정보 통보(11.29 별보)에 따라 각종 사태 관련자 57개대 1,572명을 선정, 타대 입학 저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다. 문교부에서는 동 관련자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 (제적, 성적불량 제적, 지명수배, 미등록 제적, 휴학 기타 등 항목별 인원수 기재)하여 매년 대입학력고사 응시자를 적출 예정(금년도 : 1.10까지 완료)이라 하며 사태 주동 문제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원 입학 시 적용 확대하는 등 제도화 해 나갈 방침이다.

일단 문교부가 자체적으로 소요사태로 제적된 학생들의 타 대학 입학을 저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안기부의 문건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조치 역시 정보기관의 주도 하에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학가 학원사태관련 제적자 타대입학 저지대책」(1986.12.3)이란 문건에서는 1983년 이전까지의 제적생들은 1984년 학원자율화 조치로 이미 복학한 상태이기 때문에 1984년 이후 제적자 총 47개대 346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입학 저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적생의 복교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타 대학의 대입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경우, “불합격 조치 시 대학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등 부작용 파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세심한 대책이 필요했다. 따라서 정보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교부의 선례를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가 학원사태관련 제적자 타대입학 저지대책

1986.12.3

○ 개 황

- 최근 학내외에서 시위, 농성, 불법집회 개최 등의 문제활동을 자행하여 학교당국의 징계조치로 제적된 자가 누증됨에 따라 이들이 타대에 입학불순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어 견제 대책 필요

(중략)

○ 문교당국 책임 하에 각 대학 제적자 인적사항 컴퓨터 입력, 대상자 적출시 해당대학에 일괄 통보 불합격 조치

○ 타대입학 견제대상에 미제적된 극렬 문제권 학생도 포함

- 성적불량으로 학사제적 후 문제 활동 자행중인 자
- 사태 주동 후 수배중인 자 (미제적자)
- 미등록, 휴학중이면서 문제 활동 자행중인 자 (유관기관 협의 하에 대상자 선정)

○ 제적자 불합격 조치시 부작용 극소화

- 대상자의 소송제기 등 물의야기 동향 철저히 파악
- 물의야기징후 포착시 본인 및 학부모 회유, 설득 부작용 사전 방지 (면접과정에서의 탈락조치는 학교당국의 고유권한임을 강조)

○ 각 대학 관련 학칙개정, 학원사태 관련 제적자(타대 제적자 포함)의 입학 불허조항 삽입

정보기관은 대학의 고유권한인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제적된 ‘문제권 학생’들이 재시험을 통해 신입생으로 선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세세한 내용(학칙개정 등)에 이르는 조정권을 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은 운동권 학생들이 제적을 당한 후 타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재차 운동권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 자체를 불허하는 조치를 강행토록 제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서울대 중간고사 거부대책에 대한 개입

1984년 10월 22일 작성된 「학원대책보고」라는 문건은 정보기관의 학사개입이 얼마나 세세하고 구체적인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동 문건은 서울대 중간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된 회의를 정리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소요 주도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던 서울대를 일종의 ‘시범케이스’로 가정하여, 다른 대학으로의 파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해결책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서울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기부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안기부 회의실에서 소집되고 여기에 서울대 총장이 직접 참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회의는 1984년 10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마련되었는데 참석자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학원대책보고

1984.10.22

국가안전기획부장 주재로 학원문제 관계장관 등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협의

○ 일시 및 장소

- 1차 : 84.10.20(토) 11:30~13:30 안기부 회의실
- 2차 : 84.10.21(일) 20:00~23:07 안기부 회의실

○ 참석자(15명)

- 안기부장, 내무장관, 법무장관, 문교장관, 문공장관, 서울대총장, 보안사령관, 청와대 정무1수석, 교문수석, 치안본부장, 안기부 1차장, 문교부 교육정책실장, 문공부 홍보실장, 안기부 O·O국장 30)

30) 동 회의는 안기부장이 내부·법무·문교부 장관, 보안사령관 및 학원문제 관련기관 고위급을 소집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보조정협의회’ 규정에 근거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로 판단된다.

서울대 중간고사 거부에 대한 대책마련 회의에 주요 장관 및 보안사령관, 청와대 고위인사, 경찰 책임자 그리고 안기부장, 차장 및 국장들이 모두 모였다는 것은 당시 정부당국이 서울대의 시험거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서울대 중간고사는 43%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³¹⁾하여 사실상 파행상태로 치러지고 있었는데, 우선 회의에서 서울대 차원의 대책부터 제시되어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나. 대책 (서울대안)

- 중간고사 미응시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시험기회를 부여하되, 불응시자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학사징계
- 재시험은 기초과정의 중간고사 실시 종료 다음 주인 10.29~11.2 실시
- 학생출석 상황을 시간별로 철저히 점검
- 재시험 실시계획 및 동 불응자에 대한 다음의 조치계획을 10월 22일 (월) 9시에 총장 명의로 학내 각 게시판에 공고와 동시 총장 담화문을 기자회견으로 발표

다. 조치계획

- 불응자는 유급을 포함함 학칙에 따른 엄중조치
- 불응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학칙에 따라 제명처분
- 범법자는 사법당국에 의법조치 요청
- 총장명의 경고 담화문 내용에는
 - 앞으로 시험거부, 수업거부 또는 방해행위와 폭력행위 등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재시험 실시계획은 10월 26일 별도 공고)

31) 안기부, 「서울대 기초과정 중간시험 응시율」(1984.10.25)에 따르면 응시자 15,502명 중 4,983명이 응시하여 모두 34%의 응시율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는 일자, 과목, 시간별 구체적인 응시자의 수와 응시율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경고담화문 요지>

- 대학의 기본적인 사명과 존립목적은 문화적 전통과 전문화된 지식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음
- 이러한 사명과 존립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비판의식과 반지성적, 비학문적 정치화활동은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최근 대학의 사명과 목적 수행의 기본과정인 수업과 시험을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 不禁
- 최근 사태가 대학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하고 있음을 통감, 대학의 기본적 지도방침을 밝혀 학생들의 반성 촉구

(1) 모든 학생은 수업과 그 연장인 각종 시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수의 지도에 따르기 바란다. 만일 이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과 교권에 따르는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2) 학칙과 대학의 권위에 의하여 지도·규제될 수 없는 행동 및 그 결과로 야기되는 제반사태와 본대학교의 소속원이 아닌 자의 학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는 불행하고 불가피한 방법에 의하여 수습되거나 제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84.10.21.16:00~17:45 임시학장회의에서 협의, 채택(전문 첨부)

추가적으로 시험을 계속 거부한 학생들은 유급을 포함함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며, 시험거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학칙에 따라 제명하고 나아가서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위 문건에도 나오듯, 서울대 총장 명의의 담화문은 10월 21일 오후 임시학장회의에서 협의되어 채택된 것이었다. 담화문에는 사법처리에 대한 경고가 “학칙과 대학의 권위에 의하여 지도·규제될 수 없는 행동 및 그 결과로 야기되는 제반사태는 불행하고 불가피한 방법에 의하여 수습되거나 제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식으로 표현되었다. 이 문건에서 서울대 총장 담화문의 내용에 안기부가 직접 관여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담화문의 내용을 채택했던 서울대 임시학장회의가 열렸던 시간(10월 21일 16:00~17:45)이 안기부에서 열렸던 두 차례의 회의의 중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담화문의 내용이 대책회의에서 이미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건 이와 같은 서울대의 문제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문교부 장관과 문공부장관은 각 부처의 동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문교부>

- 서울대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 및 독려
- 타대학에 대하여도 서울대와 동일한 원칙 적용을 통고
- 시험거부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한 확고한 대처방안을 서울대를 비롯한 전대학에 강력히 재선명 독려
- 10.23 ‘서울, 경기지역 총학장회의’를 소집하여 정부방침 재확인 시달
- ※ 고대, 연대, 전남대 등 주요대학은 별도 재강조

<문공부>

-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총장 담화문 발표를 확대, 보도하는 한편 국민의 지지여론 환기
- 타대학의 유사사태에 대하여도 동시 홍보함으로써 확산방지
- 최근 과격행위에 대한 기획보도 병행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고사 거부대책 사안 외에도 서울대 출신 수배자 검거 및 각종 시위도구와 근거지의 적발·소탕과 관련된 대학 측의 협조방안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위 문건에서 계속)

2. 불순세력의 학내 아지트화 방지

가. 현황

○ 서울대의 예

- “외부인 불법감금, 폭행, 고문 등 私刑” 행위로 제적 조치되어 형사입건 중인 이OO, 백OO, 백OO, 윤OO, 오OO 등이 학내잠적 또는 출입으로 학생선동 계속
- 학생회관에 각종 연락망, 급식공급루트, 유인물 발간도구, 각종 선동 및 파괴도구, 침구류 등 비치
- 불법으로 학내 시설물 내에서 상습적으로 침식 등 비밀생활을 하며 교직원의 접근 불용
- 지하신문, 불온유인물 발간, 사태모의 등 아지트화

나. 대책

- 제적 수배중인 백OO, 윤OO 등과 제적자 이OO 등의 학내잠적 또는 출입으로 학생선동 계속에 대하여는 10.21~10.25까지 교수 및 부모의 공동노력으로 해당자를 설득, 경찰에 자진출두 자수토록 중용
- 동 노력이 무산될 시에는 10.26일 중 총장명의로 공권력의 학내개입을 요청
- 학생회관, 학도호국단실, 서클룸, 학생회 등 불순학생조직의 활용가능 장소는 대학 당국에서 철저히 점검·확인 후 불순유인물 및 인쇄용구, 각목 등 각종 불순목적 도구를 몰수조치
- 지하신문·불순유인물 등에 대하여는 일절 발행, 판매, 게시 또는 배포를 못하게 하고 동 이행시에는 회수조치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제작 발행 및 자금조달 등 근원적인 봉쇄방안을 강구
- 상기 각항 불순행위자에 대하여는 선도위원의 노력으로 교정, 치유에 최대 주력하는 한편 不如意者는 적절한 징계조치의 병행으로 학원의 질서 확립

당시 서울대에서 발생한 소위 ‘서울대 프락치사건’은 중간고사 거부사태와 맞물려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경찰이 대학 내에 투입되는 빌미가 된 사건이었다. 위 문건에서도 확인되듯, 84년 10월 26일 서울대 총장이 경찰투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0월 23일로 앞당겨 시행되었다. 이 00 서울대총장은 “지금까지 자율화정신에 입각하여 학생활동을 용인해 왔었으나, 2학기 들어 수업과 시험을 대규모로 거부하는 서울대 사상 유례없는 위기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교직원의 노력만으로 대학의 생명을 구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력을 요청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력 요청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³²⁾

그러나 위 문건에서도 확인되듯, 서울대의 시험거부를 계기로 서울대가 ‘시위 아지트화’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경찰병력 투입은 사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경찰의 학교진입 요청을 결정했다고 알려진 서울대 총장과 학장·처장회의는 이 같은 사전계획을 추인한 것에 불과³³⁾하였고, 모든 것은 10월 20·21일 안기부에서 진행된 두 차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서울대에 적용된 조치를 다른 대학에도 동일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 역시 재확인하였다. 정보기관은 서울대의 시험거부 사태가 전국 대학으로 확대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안기부장이 직접 서울대 총장과 관계장관 등을 소집하여 대책방안을 협의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기관이 서울대의 중간고사 거부사태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한 것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 권위주의정부 하의 정보기관이 대학의 학사행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이다.

32) 『조선일보』 1985년 10월 24일자, “이 서울대 총장 일문 일답” 기사 참조

33) 10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열린 서울대 학·처장 회의에서 이 00 총장은 “이제 학교와 교수의 권위로서는 더 이상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총장의 입장으로서 경찰력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1985년 10월 24일자(11면) 기사 참조

나) 비판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등 견제활동

학원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학생지도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교수들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운동권 학생에 대한 순화·지도는 물론이고 건전학생들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올바른 이데올로기 교육 등과 관련해서 교수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기관에서는 교수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수 성향분석 등 동향파악

4.19 혁명당시 교수들의 성명과 시위 동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듯이 지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실천적인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바는 적지 않았다. 정보기관은 이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금번 조사활동에서도 그간 정보기관의 이른바 ‘비판성향 교수’ 라고 지칭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들에 대한 통제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한일외교 정상화와 관련하여 대학교수들의 반대성명이 터져 나왔던 1965년의 사례이다. 한일협정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던 1965년 7월 12일, 서울시내 18개 대학 354명의 교수들은 서울대에서 모임을 갖고 비준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³⁴⁾

이와 관련 증정은 한일협정 반대 성명에 참가했던 교수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명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문리대 교수들과 고려대 교수 등에 대해서는 성명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문제소지의 발언,

34) 『조선일보』 1975년 7월 13일자 기사 1면

접촉인물, 추후활동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같은 교수들에 대한 동향내사 보고서만으로 정보의 수집경로를 알 수는 없지만, 사적인 대화와 은밀한 논의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중정의 교수들에 대한 사찰활동의 강도를 짐작케 하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00대 0 0 0 교수동향

1965.7.19

서울문리대 0 0 0 교수는 0 0 0 교수와 7월 14일 12시 경 출발하여 00 부근에 있는 00라는 곳의 저수지에 낚시를 갔다가 동일 21시 경 귀가하였는데 0 교수와의 대담 중 한일회담 및 시사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말했다 한다. “한일관계와 관련 현 정부에서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매사에 졸렬한 수법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 정책시행 과정에 봉착되는 난관을 예상치 못했다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는 예가 허다하다. 한일문제만 해도 사전 선전을 못하고 사후에 황급히 하려니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교수들의 성분조사는 지나친 처사이며 학계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나 자신도 6.3사태 이후 성분을 의심받고 있는 판인데 불안하다”.

한일협정 비준반대서명 00교수 파악통보

1965.7.15

00대학 교수 0 0 0는 과거 00시 남노당 학생과장과 노동신문 사장, 혁신계 교원노조 00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5.16 직후 반국가 행위자로서 지명 수배되었으나, 1961년 9월 5일 경 자수한 사실이 있으며, 본명은 요시찰 대상자임.

연대 000 교수 동향

1965.7.27

7.12 교수 서명 주동 16명 중 일원으로 당국에 의하여 면담 또는 전화 상으로 성분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이를 본명은 학생이나 비서명 교수들에게 언동하기를 정부의 처사가 매우 졸렬하여 이러한 처사를 함으로 비서명 교수나 학생들에 의분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니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하며 학생이나 비서명 교수들에게 선동한다 함

000 동향

1965.10.7

前 00대학 교수이며 과거 학생 때 남로당에서 활약하였던 자로서 지난 인민 혁명당 사건에 입건 구감 되었다가 석방된 바 있는 000는 00연구소 사무실에 수시 출입하면서 동 사건으로 같이 교도소 생활을 한 000 등 동료분자들과 000(00에서 남로당 활약) 등 좌익계 인사와 비밀리 횡적 연락을 유지하면서 현재 두각을 나타낸 혁신계는 전부가 금력에 이끌리는 000라고 지적하고 목하 유엔에 중공이 가입하게 되면 국제정세는 급변되어 한국도 필연적으로 통일을 목표로한 정세로기우러질 것이나 (후략)

서울대 000 교수 동향

1965.12.3

본명은 00대학 출장 강의차 갔다가 통일호 열차로 상경했는데 금일 10시 경 잠시 00 교수실에서 000 교수와 면접하고 심함 감기로 오후 강의를 못하고 귀가했는데, 동석에서 “터무니없는 한독당 내란음모관련 설로 몹시 심경이 좋지 않으며, 5.16 혁명 전 민주당 정권시 동대 교수진의 파벌○○○ ○○된 현 00대학교 000 및 000의 모략으로 쫓겨 날지도 모르겠다면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 교수 동향보고서들은 현재 국정원에 보관중인 「교수관계철(첩보) 1965.3~12」에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1965년 한 해 동안 대학교수에 대한 동향파악 보고서들을 묶은 것이다. 위에 소개한 것처럼 주로 1965년에 있었던 ‘7.12 교수성명’과 관련된 인물들이 중심이지만 교수성명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춘천 O O 학장의 개인 비위사실, 교수들의 연구비 인상 등과 관련된 민심변화, 문제교수의 경범죄 위반사실 등 비정치분야의 정보보고도 일상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문제권 교수’로 분류된 인물들을 포함하여 대학교수층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지속적인 동향파악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대학교수에 대한 통제 및 사찰사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82년 1월 작성된 전국 대학교 교수 성향분석 자료 중 「OO대학교」라고 하겠다. 현재 확인된 것은 당시 OO대 교수들에 대한 성향분석 자료뿐이지만 특히 국립대 교수의 경우에는 대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성향분석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동 문건은 OO대 교수 120명을 A부터 D까지 모두 4등급으로 분류하여 성명(연령), 직위 및 직급, 최종학력 및 학위, 본적, 성향, 특기사항, 비고(등급) 등의 항목에 따라 개별적인 성향과 함께 등급이 적시되어 있다. 동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대학교

- 총장 O O O 은 80.3 학원자율화시 학생들로부터 OO총장으로 배척되었으나 “내 한몸 죽어도 좋으나 나라위해 이성 찾자”고 학생들을 설득하는 등 평소 학생지도에 적극적 자세임 (A)

(위 문건에서 계속)

- OO대학원장 O O O 는 음주량이 과하고 평소 전주시내 맥주홀, 등지에서 만취되어 소일하는 자로 학생지도에 미온적 자세 (C)
- OO학장 O O O 은 81.3 제적복교생 진 O O 등 문제학생을 호출하여 “학칙을 위반할 생각이 있으면 자퇴하라”는 등 강경하고 적극적 학생 지도자세 (A)
- OO학장 O O O 는 총장을 유일한 상관으로 모시는 아부파로서 일반교수 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독선적이면서 정부시책에도 미온적 태도 (C)
- OO학장 O O O 은 81.9 학생지도에 대하여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학생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는 등 학생지도를 기피하고 정부시책에도 비판적 성향 (D)
- OO대학원 교수 O O O 은 학생지도는 적극적이나 매일 내기바둑으로 소일하는 등 도박성이 다분 (B)
- OO학생과장 O O O 는 매사에 비판적이고 정부시책에 비협조적이며 학생지도도 소극적 자세로 80.3 학원자율화시 학생소요지지 및 교수 결의문 지지자임 (D)
- OO대 학생과장 O O O 는 OO교육학과 학생들로부터 총대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학생지도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음 (A)
- OO학과장 O O O 는 차기총장 야망이 있는 자로 정부시책에 적극순응 하고 매사에 활동적이고 학생지도에 적극적 자세임 (A)
- OO학과장 O O O 은 “유럽에서는 학생들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군대 같은 교육을 시킨다”는 비난을 평소에 하고 있음 (D)
- O O O 교수는 아집이 강하며 학생지도에 비협조적이고 교무행정에도 미온적이며 정부시책 비판성향으로 80.4 학원자율화시 O O을 비난하는 기사 게재 사실 있음 (D)
- O O O 교수는 평소 정부시책에 비판적이며 학생지도도 소홀히 하는 등 반공성격 소유자 (D)

보직교수의 경우 대개 A등급을 부여했는데, 특이사항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인 “학생지도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정부시책에 순응적이다”는 점을 보면 A등급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다. D등급으로 분류된 이른바 문제교수의 경우는 정부시책에 비판적인 성향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A등급이 33명, B등급이 37명, C등급이 33명, D등급이 17명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비판·순응과 같이 정부정책과 관련된 교수성향 뿐 아니라 취미·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교수 재임용·승진 등의 심사에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보기관이 대학교수들을 성향에 따라 등급 분류하여 관리·관찰하고 있었던 사실은 다음의 문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일부교수, 각하 담화관련 성명서 발표 관련동향 및 대책」(1987.4.23) 문건에서는 87년 교수시국선언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고대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관련된 대책을 담고 있는데, 동 문건에는 서명에 참여한 30명의 고대교수들을 ‘극렬-비판-중도’의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가 4월 23일이고, 고대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발표된 것이 하루 전인 4월 22일인 것을 보면, 정보기관에서는 이른바 ‘문제교수’들을 포함 대학교수층에 대한 성향분석 자료를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일부교수, 각하담화관련 성명서 발표 관련동향 및 대책

1987.4.23

1. 발표경위

- 고대 이문영, 이상신, 윤용 등 문제교수들은 4.22 18:40 동료교수 30명 공동명의로 “개헌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제하 성명서를 발표
- 이들은 성명서 작성 및 서명작업 완료 후 김우창, 최장집 등 7명이 내외신 기자 20여명을 이문영 교수실로 불러 성명서 배포식으로 기습 발표

(위 문건에서 계속)

2. 서명교수(30명) 분석

○ 기서명 여부

- 86.3.28 고대 시국선언문 서명 : 17명
- 신규 서명자 : 13명

○ 성향별

- 극렬비판 : 8명
- 비판 : 10명
- 중도 : 12명

(중략)

4. 대책방안

○ 타대학 확산 차단을 위해

- 문교부 장관이 각대학 총학장에게 책임관리 촉구
- 기 추진 중인 주동예상 문제교수(35개 대학 89명) 각 기관별 분담 1:1 동향점검 및 순화강화

○ 금번 서명자 응징조치 강구

- 작년도 시국선언 발표시 일반교수 자극 등 부작용 우려, 총·학장에게 조치 일임하는 온건방책으로 전대학 조기확산 결과 초래

○ 따라서 금번 서명자에 대해서는 응징조치 검토 필요, 우선 총장이 면담을 통해 개인별 경위 및 반성여부 확인

- 1안 : 강경조치 (주동자 및 미반성자 의법조치)
 - 2안 : 강·온 양면조치 (주동자, 단순가담자 불문, 반성한 자는 지속순화 실시, 미반성자는 의법조치)
 - 3안 : 온건조치 (총장 책임 하에 특별관리 순화, 여타대 확산 차단 치중)
- * 4.23 학원실무소위 개최, 구체적 조치방안에 대한 법적용 및 장·단점 분석, 협의계획

한편 언론기고 등을 통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교수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찰도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신말기인 1979년 8월 29일 작성된 「OO대 O O O 부교수 신원조사」라는 문건은 언론기고문을 문제 삼아 당시 중정이 O O O 교수에 대해 신원조사를 한 내용이다. OO지부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동 문건은 O 교수의 고향 마을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간략한 사상이력을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다.

O 교수는 1979년 6월 2일 동아일보에 “닉슨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제동 장치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동 장치가 없어 지배층 인사가 시정잡배만 못하고 여당과 정부가 미워 야당에 표를 던져 1.1%를 승리하게 한 것이다. 신민당의 민주적인 저력은 높이 평가해줄만 하다”는 글을 기고했는데, 동 문건은 본적지에서 작성된 가족·친척 등에 대한 경제상황과 간략한 사상이력에 대해 조사해놓고 있다. “신원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결론내리고 있는 보고서는 비판성향의 대학교수를 상대로 진행된 개별사찰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비판성향 교수에 대한 순화활동

시국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 비판적 집필활동을 했던 이른바 ‘문제교수’들의 경우, 학교당국으로부터의 징계나 사법처리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들을 순화시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순화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정원 존안자료 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문교부 산하의 ‘학원대책 실무소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문교당국의 대학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거나 관련자들에게 개별적인 방법으로 연결하여 통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7년 2월~3월에 진행된 학원대책 실무회의에서는 시국선언을 주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수들에 대한 순화활동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명주동 예상교수 순화’와 관련하여 서울대 김 O O, 한 O O 등 일부 문제교수 순화 책임자를 교체하여 보완토록 한다. 기타 문제교수에 있어서는 순화 중간 실적을 평가한 후 재조정토록 한다.³⁵⁾

‘교수시국선언’ 주동 예상 교수에 대해 관계기관이 분담하여 순화한 결과, 대부분 교수들이 자숙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특이한 불순기도는 없으나 접촉순화를 지속하여 사전에 이상 징후를 철저히 파악토록 한다.³⁶⁾

3월 17일 현재 순화대상 문제교수 89명중 69명에 대해 친분인사(순화책임자) 통한 접촉 순화활동을 벌인 결과, 대부분(62명)은 긍정적인데 일부 극렬문제교수(7명)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순화책임인사를 통해 순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기로 합의하였다.³⁷⁾

既 추진 중인 시국선언 주동예상 문제교수(35개대 89명)에 대한 각 기관별 분담 1:1 동향점검 및 순화활동을 강화한다.³⁸⁾

1987년 상반기에 속출하기 시작한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후 대규모의 시민항쟁으로 이어지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6년부터 터져 나왔던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정보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 같은 시국선언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수들을 상대로 안기부를 포함한 유관기관들이 사전 정보수집 및 순화활동을 진행해나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른바 ‘문제교수’들에 대한 순화활동을 동 실무회의의 주요 참가기관인 문교부와 안기부 등이 주도하였음은 확실하지만, 실제 순화활동을 벌인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현재의 자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35) 안기부, 「문교부, 학원대책 실무소위 개최결과」(1987.2.25) 문건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고려대학교 윤 O 교수에 대한 해임과 관련 “청와대로부터 직접 해임 검토지시”가 내려와 동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무회의는 문교부에서 개최되었고 치안본부, 보안사, 안기부 학원과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36) 안기부, 「문교부, 학원대책 실무소위 개최결과」(1987.3.4)

37) 안기부, 「문교부, 학원대책 실무소위 개최결과」(1987.3.18)

38) 안기부, 「고대일부교수 각하담화관련 성명서 발표 관련동향 및 대책」(1987.4.23)

다만 “친분인사(순화책임자)”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전성향으로 분류된 동료 교수이거나, 학교 교직원 혹은 문제성향 교수의 주변인물 등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비판성향 교수들의 활동이 산발적인 시국선언의 형태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약칭 민교협)라는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등으로 연결되면서, 정보기관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대학가 비판성향 교수동향과 대책」(1989.12.9)은 「민교협」과 같은 비판적 교수들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는데, 학원건전화 사업에서처럼 이 문제 역시 건전교수들을 적극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 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대학가 비판성향 교수동향과 대책

1989.12.9

(전략)

2. 관련동향

[대학사회 내 비판성향 교수 입지위축]

- 전국 115개 4년제 대학의 교수 26,000여명 중 민주교수협에 가담·활동하고 있는 비판성향 교수는 5%인 1,100여명으로서 이들은 지금까지 문제학생권은 물론 일반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自判 하에 총학장 직선제 추진 및 각종 학내 부조리 폭로를 통한 대학운영권 장악을 기도해왔으나
- 5·3 동의대사태를 비롯 연대 학원프락치 조작 치사사건 등으로 인해 문제학생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평소 배후 지원세력으로 인식된 비판성향 교수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직접적인 비판활동보다는 학외 문제권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

(위 문건에서 계속)

[각종 문제학술단체 결성 및 체제 변혁이론 개발 주력]

- 또한 이들은 “기성학계 및 지식인들은 기존체제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다”고 비판하고 소위 민족·민중적 차원의 학문연구를 지향하면서
 - 88.11 소위 ‘학술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대학 또는 노동문제권 등 체제 부정세력들에게 사회변혁논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 “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한국근대민중운동사”등 다수의 의식화 서적을 제작하여 교재로 각계에 판매·배포하고 있음

3. 평가 및 대책

- 건전학생조직으로 하여금 대학신문·대자보·유인물 등을 이용
 - 교수들의 재야신당 참여 등 정치활동은 교육자의 본분에 어긋나며
 - 비판성향 교수들의 문제권 주장 대변 등은 최고지성인의 행동이 아님을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토록 유도하고
 - 특히 동계방학 기간 중
 - 총학장 등 보직교수들과 원로교수들의 “대학발전세미나” 개최와
 - 이념교수를 중심으로 한 친여교수들의 중국·소련 등 공산권 해외연수를 통해 건전교수들의 단합을 도모하여 비판성향 교수 대응여건을 적극 조성·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 문교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건전교수의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건전학생 세력화에 비견할만한 구체적인 대책이 다른 문건 등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결국 대학 내에서 건전세력(교수·학생)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문교정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입장이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 해직교수 복직문제 검토

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시국선언 등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수들의 복직 문제를 검토한 안기부의 문건을 통해 교수의 해직 및 복직에 대해 안기부가 꾸준히 관련 사항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는 문건인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검토」에 따르면, 80년 5.17 이후 과거 학원사태 등과 관련 전국 25개대 86명의 교수가 해직 조치 되었다. 이렇게 해직된 교수들의 개별성향 및 자숙도를 감안하여 A급(과거반성, 자숙) 28명, B급(문제활동 자제) 40명, C급(비판활동 지속) 18명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17 이후 학원사태와 관련된 교수들의 해직조치에 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해직교수들의 복직 문제와 이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정보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A등급으로 분류된 해직교수들은 해당 학교 복직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안기부가 직접 취업을 주선해주기도 하였는데, “적정 취업처 부족, 본인 적응성 결여 등으로 실적 저조(1명)”라고 하는 평가에서도 보듯, 궁극적으로는 원적교로의 복직만이 해결책일 수밖에 없었다.

제적학생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직교수의 해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들이 결국 불만세력화 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따라 정보기관에서는 “일절 제한 없이 복직 허용하는 방안이 기대성과 등 감안, 효과적일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학원안정상 위해인물에 대해서는 이면적으로 복직 견제조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해직교수에 대한 원칙적 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정보기관은 해직교수들이 해직기간의 장기화로 불만 세력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복직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비판성향 국립대 교수 승진허용 여부 검토

1987년 3월 16일자 「시국선언문 서울대 서명교수 한 O O, 김 O O 교수 승진 허용여부 검토」 문건은 이른바 ‘문제교수’에 대한 일상적 감시·사찰 내용을 활용하여 정보기관이 학사고유 영역인 교수의 승진관련 업무에 까지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동 문건은 한 O O, 김 O O 서울대 교수 외 문교부에 승진이 상신된 9명의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문건에서는 1986년 6월 2일의 ‘연합시국선언’에 두 교수가 서명한 문제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 동 선언에는 두 교수를 포함해서 전국 105명의 국립대 교수가 서명하였는데, 85년도의 국립대 교수 승진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한 검토대상이었다. 연합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국 국립대 교수 105명중 서명이후 승진실태는 86.10.1 기준, 대상교수 11명 중 7명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다.

1987년 4월 1일자로 승진심사를 신청한 교수 중 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은 86년도 불허자 7명을 포함하여 모두 16명이었다. 이 중 5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신청을 제외하였고, 2명은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였다. 따라서 당시 문교부에 승진을 신청한 교수 중 문제가 되는 인원은 모두 9명이었다. 이중 서울대의 두 교수는 “현재에도 문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 2명은 서명 주동자인데다 박종철 추모위원으로 가담하는 등 문제 활동을 지속중인 바 문제활동 교수에 대한 경고, 여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1차 승진대상임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승진 불허하고 차후 자숙여하에 따라 승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시국선언에 대해서 ‘반미용공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두 교수를 “반미용공의 시국선언”의 적극적인 주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여타 문제교수 경중 차원에서 승진탈락 등 불이익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주동자가 아닌 단순가담자인 경우에도 “단순 가담 후 자숙자는 순화차원에서 해당 총학장 책임관리 조건 하에 승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6월 2일자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 1986년에도 유사한 처리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즉, 서명 이후 국립대 서명교수 승진 실태를 보면 “작년 (86.10.1)에는 대상자 11명 중 승진이 허용된 남 O O, 이 O O, 배 O O, 허 O O 교수(00대)의 경우 시국선언에 단순가담한 후 반성한 교수들이다”고 한 반면 “탈락한 명 O O, 송 O O(00대), 김 O O(00대), 이 O O, 이 O O, 조 O O(00대), 구 O O(00대) 교수의 경우는 서명을 주동했거나 현재에도 문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승진 및 탈락 기준 또는 사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승진 1차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고차원에서 논문심사를 명분으로 탈락시켰다”고 전례를 제시하고 있다.

동 문건에서 제시된 승진검토 대상 교수의 명단과 문제가 된 활동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대상 교수	비 고
학교자체 제외자(5명)	송 O O (00대)	작년 2회 탈락 불구 문제활동 지속
	O O O, 허 O O (00대)	시국선언 주동자로서 금번이 승진 1차시기
	유 O O (00대)	시국선언 적극가담, 금번이 승진 1차시기
본인포기(2명)	명 O O, 이 O O (00대)	명 O O은 작년도 승진불허 조치후 문제지속, 이 O O은 논문심사에서 탈락
문교부 상신중(9명)	김 O O, 한 O O (00대)	시국선언 적극가담 및 문제활동 지속
	김 O O (00대)	시국선언 적극가담자로서 작년도 1회 승진 탈락 후 반성중인 자
	박 O O (00대)	단순 가담 반성자
	이 O O, 조 O O (00대)	단순가담자로서 2차 대상으로 이번 구제 방침
	이 O O, 조 O O, 김 O O (00대)	단순가담 후 반성자

위 교수들 중 한·김 두 교수의 경우에는 승진을 불허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승진을 허용해도 좋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 문건 뒤에는 또 다른 문건 내용을 정리한 “한 O O, 김 O O 최근동향”이라는 문서를 첨부해놓고 있는 점이다. 동 문서에는 두 교수의 1986년 6월 경부터 1987년 3월까지의 주요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고 있으며, “재야나 좌경학생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사회 건설 주장 등에 대한 학문적 기반이 되겠다는 불순의도 포지”라든지,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정부비판 발언 수시 자행”이라는 등의 개인 성향 및 특성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병기해 놓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록 국립대 교수의 승진문제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문교당국의 최종 감독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정보기관이 원칙을 제시하고 세세한 처리지침까지 마련하여 개입하였다는 것은 당시 정보기관의 학원문제 개입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한편 “국비 해외 연수대상 교수들 가운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를 제외한다”든지, “책임연구원이 시국선언을 한 경우에 연구비 지급을 제외한다”와 같은 결정³⁹⁾ 역시 문교부와 정보기관이 함께 협의했던 ‘관계기관 실무 회의(심의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위주의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는 비단 학생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교부의 학사정책과 비판성향 교수들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음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실태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39) 안기부, 「문교부 학원대책 실무회의 개최 결과」(1987.5.23) 문건은 문교부 대학정책실에서 관계관 6명이 참석하여 열렸는데, 국비 해외연수 대상자 교수들 가운데 시국선언에 서명한 OO대 권 OO 교수를 연수대상에서 “경중 및 건전교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987년 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한 시국선언 서명교수(총 600명 가운데 100명이 연구비를 신청한 상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최종결정을 내릴 것을 협의하고 있다. 본 조사과정에서 연구비를 통한 교수통제의 사례는 이 두 사례 외에 더 이상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연구비신청과 해외연수 등 교수 연구활동과 관련된 통제책 역시 주요한 개입수단 중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가) 학원 건전화세력 육성을 위한 개입활동

정보기관은 이른바 문제권 학생들이 학원분위기를 반정부·좌경화로 몰고 간다는 인식아래 사법처리를 통한 대처방안과 함께 궁극적인 학원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건전학생세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건전화공작을 비롯한 건전세력 육성 방안이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금번 조사과정에서 정보기관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이 확인되었다.

◎ 건전유인물 배포 유도

안기부 작성 보고서를 통해 1980년대 중반 대학가에 북한의 공식문건이나 출판물들을 직접 인용하는 이른바 ‘친북좌경’ 성향의 각종 불온유인물들과 벽보가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친북좌경 유인물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거·사법처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학 내부의 비판을 담은 유인물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안기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86년도 1학기 중에만 “건전학생들이 문제권 학생들에 대항하여 소요 자숙을 촉구하는 등 바람직한 양상이 증가하여 건전유인물이 20개 대학에서 74회 20만 8천여매⁴⁰⁾ 이상 배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전유인물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배포했을 수도 있지만,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한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⁴¹⁾

40) 안기부, 「86년 1학기 학원소요분석 및 하계방학기간 중 대책」(1986.6.18)

41) 안기부의 조정이나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86학년도 학원대책 보고」(1985.12.18)에는 1985년도 각 대학의 건전활동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구분	계	유인물	벽보	현수막	캠페인	기타
계	262회(69校)	150회(56校)	26회(22校)	10회(9校)	41회(27校)	35회(25校)
1학기	74회(34校)	25회(12校)	12회(11校)	1회(1校)	10회(7校)	26회(20校)
2학기	188회(63校)	125회(56校)	14회(12校)	9회(8校)	31회(23校)	9회(8校)

예컨대 1986년 10월 중순, OO대와 OO대에서는 북한문건을 직접 인용한 대자보의 내용을 비판하는 ‘건전유인물’이 OO대 서클(OO문화연구회)과 OO대 총학생회 명의로 배포되었는데, 이 문건들은 모두 “OO분실 건전공작 사업의 일환”⁴²⁾이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존안자료에서 확인되었다. 건전공작의 구체적인 전개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동보고서의 말미에는 “OO대 불온 벽보 사건관련 용공비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 독려하겠음”이라고 부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활동에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1985~86년을 전후해서 대학가에서는 북한방송 청취와 북한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사례가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OO대 등에서 정보기관이 건전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1986년은 북한방송이나 북한의 출판물들이 대자보나 유인물의 형태로 대학가에 등장했고, ‘친북·용공’의 문제가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정원 존안자료 가운데에서 건전유인물 배포는 바로 이 같은 특정 주제·시점과 일치해서 진행되었다.

1986년 10월 23일자 「OO대 대학가 용공대자보 반박내용 건전유인물 배포」, 1986년 11월 4일자 「OO대 OO대 용공비판 건전유인물 벽보부착」 문건은 모두 이 같은 맥락에서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 외에도 1986년 상반기 주요 대학에서 건전유인물 배포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즉, 3월 11일에는 OO대⁴³⁾가, 3월 26일은 OO대⁴⁴⁾에서, 9월 12일과 12월 16일에는 OO대⁴⁵⁾에서 건전유인물이 배포되었다.

42) 안기부, 「OO대 OO대 좌경학생 비판 건전유인물 배포」(1986.10.14)

43) 안기부, 「OO대 건전유인물 배포 동향」(1986.3.11)

44) 안기부, 「OO대 건전 유인물 배포 동향」(1986.3.26). 「OO대 OO서클연합, 학원건전화 추진」(1986.9.4) 문건을 통해 1986년 9월에도 동 12개 서클은 학원건전화 캠페인을 주도하였는데, 이 역시 당시 안기부의 건전화사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5) 「OO대, 문체권 비난 내용의 건전유인물 배포」(1986.9.12) 및 안기부, 「OO대 건전서클, 문체권의 활동비판 유인물 배포」(1986.12.16)

00대의 경우 12개의 건전서클 및 00대 학생회가 함께 참여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매일 20명씩 향후 5일간 100여명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當部 공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역시 안기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었음이 분명하다.

00대의 경우에도 9월 12일자에는 “단계적·점진적으로 건전활동 활성화하겠다”이라고만 언급하였지만, 12월 16일의 유인물 배포는 “當部 조정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직접 개입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아울러 “87년 신학기에는 적극적인 건전활동 전개를 위해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적극적인 건전화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1987년 상반기에도 정보기관의 건전유인물 배포를 통한 건전화사업은 계속되었다. 3월 31일 00대와 00대⁴⁶⁾에서 건전서클인 ‘00반’과 ‘000회’의 주도로 3,500여 매의 건전유인물(학생회의 건전 활동 촉구 등)을 배포하였는데, 이 활동은 “4.19 전후 불순확책 사전제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안기부는 “문제권 비판 공개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이라고 덧붙여 지속적으로 건전유인물 배포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87년 4월 23일~28일 사이에는 00대와 0대 그리고 00대에서 14,000 여매 분량의 건전유인물이 “안기부의 조정에 의거” 배포되었는데, 동원된 학생들은 건전서클로 분류된 0 0 0선교회, 0 0회, 00대 0 0 0 0 위원회 등이었다.⁴⁷⁾

이 외에도 안기부 조정에 의해 5월 14일 00대, 5월 15일 00대에서 각각 2,000매와 3,000매의 건전유인물이 배포되었고, 전방입소일인 5월 18일에도 비슷한 분량의 유인물 배포를 계획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⁴⁸⁾

46) 안기부, 「00대, 0대 건전유인물 배포」(1987.3.31)

47) 안기부, 「00대, 0대, 00대 면학 촉구 건전유인물 배포」(1987.4.23)

48) 안기부, 「00대, 00대, 건전화 분위기 조성 건전유인물 배포」(1987.5.4)

하반기에는 특히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내용의 유인물들이 건전서클을 중심으로 학내에 배포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정보기관이 추진한 공작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0대·00대 건전서클, 문제권 정치활동 비난 유인물 배포」(1987.12.22)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그것이다. 1987년 10월 23일에는 00대에서 “안정 속의 번영”을 위한 현명한 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사실상 여당후보인 노태우 후보의 지지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같은 날 00대에서는 “일부 교수들의 김대중 지지활동은 본분 망각행위”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각기 2천부가 배포되었다. 동 문건에서는 “양교에서의 실시결과 분석 후 전국 주요 대학에 점진적 확산실시 등 건전서클 활용 대선지원 활동 적극 추진하겠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유인물 배포는 아니지만 정보기관은 1984년경부터 대학 내 건전서클이 중심이 된 건전활동을 개시하고 있었는데, 1984년 4월자 「00대, 00대 학원안정을 위한 건전활동 전개」에 따르면 동년 “4월 2일 00대 건전 기독교 서클 연합인 ‘0 0회’는 當部 조정에 의거하여 6동 대형 강의실에서 학생 300여명 참석 하에 00교회 유00 목사를 초청하여 학원안정을 위한 연합예배를 개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학생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했다는 등의 사실로 보아 동 모임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한편 “00대 00대 학생회는 當部 조정에 의거 학내외 건전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4월 2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000여명 참석리 불우 이웃돕기 자선음악 공연회 개최”했다는 내용도 있다. 두 학내 행사가 대학 내에서 반운동권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모두 대학 내 조직을 통한 정보기관의 건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은 분명하다. 동 문건의 말미에는 “공개 건전활동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겠음”이라 하여, 추후 건전서클 연합체와 건전학생회 결성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대협」·「한총련」에 대항할 수 있는 전국 건전학생세력 연합체 결성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은 건전유인물 배포를 통해 운동권 세력에 대항

하기도 했지만, 87년 대선 당시에는 이러한 활동을 여당후보 간접지원 목적에도 활용했음을 확인하였다.

◎ 건전서클 및 건전총학생회 육성 추진

정보당국은 이른바 ‘문제권 학생’들이 대학문화 및 대학조직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맞설 수 있는 학생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보기관은 이것을 “일반학생들을 대항 세력화하여 좌경 학생들과 분리”⁴⁹⁾라고 표현하였다. 대학 내에서 운동권 비판 유인물 배포와 관련된 서클이나 학생들을 궁극적으로 서클·서클연합·단대학생회·총학생회 등으로 조직화한다는 목표였다.

1987년 5월 13일 작성된 「대학가 건전분위기 조성대책 안건」이란 문건에서는 이 같은 대항세력의 후보로써 당시 안기부가 파악한 대학내 건전서클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가 육성 중에 있는 건전서클은 전국 20개 대학 92개가량이며, 8천명에 가까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학	서클명	세력수	비고
20개대	92개 서클	7,942명	
서울대(7개서클 724명)	000선교회	40	종 교
	00도가	41	종 교
	00운동학생회	50	반 공
	00학생협회	45	종 교
	0000천문회	60	취 미
	00연구회	60	종 교
	00회	288	보 훈
연세대(4개서클 394명)	00회	32	봉 사
	000회	75	봉 사

49) 안기부, 「서울대 좌경사상 확산 저지방안 검토」(1986.10.20)

	000연구회 00회	58 229	반 공 보 훈
고려대(5개서클 372명)	00회 000사랑회 000선교회 00회 00회	20 30 50 254 38	극 우 학 술 종 교 보 훈 반 공
성균관대(4개서클 403명)	00연합 00예우회 000학생회 00회	200 43 80 80	체 육 친 목 도 덕 보 훈
서강대(2개서클 112명)	00반 00회	32 80	친 목 보 훈
경희대(4개서클 364명)	00회 0000 복지위 00회 00반	100 20 174 70	봉 사 자 치 보 훈 친 목
한양대(4개서클 200명)	00선구회 000회 000 00회	60 30 50 60	극 우 봉 사 반 공 보 훈
외대(3개서클 595명)	00연합반 00회 000우회	400 150 45	종 교 보 훈 종 교
중앙대(5개서클 376명)	00회 00연구회 0000회장단 00회 00회	10 40 14 20 292	극 우 봉 사 친 목 반 공 보 훈
국민대(3개서클 195명)	000 0000연구회 00회	50 51 94	도 덕 학 술 보 훈
동국대(3개서클 286명)	0000 명예위원회	124	군 사

	OO회	131	보 훈
	OO회	31	반 공
단국대(5개서클 228명)	OOO학생회	5	자 치
	OO협의회	70	친 목
	OOO학생회	10	친 목
	OOO학생회	10	자 치
	OO회	133	보 훈
전남대(11개서클 1,328명)	OOOOO추진본부	25	극 우
	OO연합회	600	친 목
	OO회	40	친 목
	OOO회	27	학 술
	OOO회	30	음 악
	OO회	40	친 목
	OO회	30	친 목
	OO회	35	이 념
	OO동우회	30	친 목
	OO회	267	보 훈
OOOO연구회	204	학 술	
전북대(4개서클 295명)	OOO	40	반 공
	OO학생회	10	자 치
	OOOO촉진위	10	극 우
	OO회	235	보 훈
조선대(6개서클 471명)	OOOO회	16	자 치
	OO회	25	봉 사
	OO회	400	보 훈
	OO회	10	자 치
	OO학생회	10	자 치
	OO학생회	10	자 치
부산대 (4개서클 340명)	OOOO학우회	8	극 우
	OOOOOOO연합회	30	친 목
	OO회	45	반 공
	OO회	257	보 훈
경북대(3개서클 341명)	OOOOO회	20	극 우
	OO회	40	친 목
	OO회	281	보 훈

충남대(4개서클 386명)	OO회	30	친 목
	OO연합회	150	보 훈
	OO회	201	보 훈
	OO모임	5	학 술
인천대(6개서클 296명)	OOOO협의회	60	친 목
	OOOOO협의회	10	친 목
	OOO협의회	50	친 목
	OOO회	60	자 치
	OO회	93	보 훈
	OO회	23	반 공
강원대(3개서클 236명)	OOO소리	30	극 우
	OO회	60	체 육
	OO회	146	보 훈

이 문건이 작성될 무렵이던 1987년 5월 무렵은 박종철 사건과 함께 5월 대학가의 주요 시위이슈였던 ‘광주문제’로 인하여 시위와 소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안기부는 이 같은 전국적 시위확산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既 추진되어 오던 건전화 사업을 이 시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했다. 위 표에 나온 건전서클들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는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학내 건전서클 활동 강화를 통해 학내폭력 추방 및 면학 저해요인 축출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5.18 기간 중 건전유인물 배포와 건전캠페인을 집중 실시하고, 이공대 및 예체능계 학회 간부중심으로 총학생회 대행체제를 구축하여 문제권 대항세력으로 육성하여 “맞불작전”을 전개하도록 한다.⁵⁰⁾

건전서클을 대학 내 시위반대세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보기관의 계획은 이처럼 87년 5월 대학소요의 전국화와 맞물려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는데, OO대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경우도 있다.

50) 안기부, 「대학가 건전분위기 조성대책 안건」(1987.5.13)

대학가 건전분위기 조성대책(안)

1987.5.13

1. 개 황

- 최근 학원가는 주로 지방대에서 학내문제 쟁점 비폭력 소요 장기화 및 일종의 ‘도미노 현상’ 유도로 대중성 확보에 의한 소요 여건 전국 확산
- 5.18을 계기로 재경 주요대 및 00대 선도하에 전국적 연합체 결성을 기도 하고 특히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 및 종교계 농성 등에 자극, 학내문제 이슈에서 4.13 조치관련 시국문제 이슈로 전환, 연합 소요 분위기 획책
- 금번 00대 00캠퍼스, 00대의 학원폭력(방화, 파괴, 은사구타 등) 사태로 일반학생 및 대다수 국민들의 지탄 분위기 조성을 계기로
 - 1단계로 00대, 00대에서 학내외 건전단체를 최대 활용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폭력추방, 교권확립 운동 전개 등
 - 일종의 학원 건전화를 위한 ‘봄’ 조성방안 검토

2. 추진활동 방향

- 00대(00)는 00회 등 4개 건전서클 동원, 5.18기간 중 건전유인물, 건전 캠페인 집중 실시 ○ 이공대 및 예·체능계 학회 간부 중심으로 총학생회 대행체제 구축, 문제권 대항세력으로 육성 및 ‘맞불활동’ 전개
- 00대는 금주 내 총학생회 명의 면학풍토 조성 및 폭력추방 호소 유인물 제작 배포 및 언론기관 우송, 00회 등 6개 서클 670명을 동원하여 문제권 규탄, 폭력추방 호소 유인물 집중 배포, 5.18 전후 학원수호결의대회 개최 검토
- 기 추진 대학가 건전화사업 5월중 집중 실시
 - 전국 주요 20개 대학에서 기 추진중인 87.1학기 대학가 건전화 사업을 5월중 집중 실시(20개 대 92개 서클 7,942명 활용, 건전유인물·벽보·플래카드 부착 등 건전학풍조성 결의대회 등 개최)
 - 전국 103개 4년제 대학으로 점진적 확산
 - 각 대학별 건전행사 계획 자료 매스컴 사전 제공, 지속부각 보도로 일종의 “봄” 조성

한편 00대의 경우는 안기부 조정에 의해 서클연합회 전체를 상대로 한 건전화사업이 성공하여 총학생회에 대항하는 ‘맞불활동’의 중심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00대 서클연합회 건전화 성공, 문제권 고립화 추진

1987.3.25

- 동교 건전서클인 ‘O O O’에서는 當部 조정에 의거
 - 지난 3.25 학생회관에서 29개 서클대표 참석리 서클대표자회의 개최를 유도하고
 - 그간 문제 이념서클이 주도해온 서클연합회 회장에 건전학생인 000을 선출하는 한편
 - 향후 불순활동을 배재한다는 취지의 기본활동 방향 채택
 - 기본 활동 방향
 - 순수 학술행사 위주의 활동 전개
 - 총학생회 주도 불법행사시 학생동원 등 일체의 협조 거부
 - 건전 대자보 수시 부착, 문제권의 저의 폭로
 - 동 건전화활동의 배경은 O O O 서클에서 총학생회에 대항 ‘맞불활동’ 전개 목적 하에
 - 1차로 배후세력인 서클연합회(세력수 : 70개 서클 3,500명)를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코
 - 지난 동계방학 기간 중 각 서클대표를 접촉, 포섭하는 한편
 - 0000연구회 등 문제이념 서클대표 제압에 성공한 데 따른 것임
- * 문제권 대항 ‘맞불활동’ 적극 전개토록 촉구하겠음

00대와 함께 00대 역시 건전서클 육성사업이 비교적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00대의 경우 서클연합회를 비롯 상당수의 서클이 건전서클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보기관의 학원건전화 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부작용 또한 야기되었는데 1987년 4월경, 00대 총학생회는 정보기관원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학원사찰을 중단하라는

유인물을 살포하였는데, 안기부는 다음과 같이 대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O대 문제권 당부 정보관 매도 유인물 배포 관련 대책검토

1987.4.2

OO대 담당 분실정보관 실명 적시, 매도 유인물 학내 배포(개강 이후 7회)담당정보관의 능력, 적극성으로 문제권 활동 위축에 따른 저항으로 분석

* 신변 안전에 유의, 주동자 조기 색출, 정보관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 바람직

1. 유인물 배포 경위

- OO분실 OO대 출입 정보관 O O O 직원의 활동을 학원사찰로 매도하는 유인물, 개강(3.2) 이후 7회 살포
- 3.31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제하 유인물 재살포
- 유인물 요지
 - 학우들을 정보요원화 시키거나, 회유 협박하는 작태 중단 요구
 - 최근 OO이 학교행정의 무능을 잘 봐 달라며 O O O 정보관에게 요청에서 항응 제공 주장 (사실무근)
 - 우리의 주장
 - 정, 후문 수위는 O O O 탑승 승용차 학내출입 차단하라
 - OO은 기관원의 사주에서 탈피하라

본 위원회의 OO대 前 학생과직원 면담을 통해서도 1980년대 중반경 정보기관의 OO대 총학생회에 대한 통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대학 졸업생 출신인 학생과 직원과 OO대 담당 정보관 그리고 경찰 등의 협력관계는 다른 대학에 비해 원활한 것이었다. 관련 문건에도 나오듯, 당시 OO대에서는 담당 정보기관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활동이 학생들에 의해 확인될 정도로 노골적이고도 공개적인 것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정보관의 학내사찰 중지를 요구하는 총학생회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위 문건에서 계속)
2. 저의 분석
- 담당 정보관의 활발한 정보활동으로 문제권 활동 위축에 저항
 - 현재 OO대 내 11개 서클 1,328명을 활용, 건전활동 적극 전개로 문제활동 위축
 - 최근 극우서클 OO를 분실 조정으로 결성, 문제권 제압으로 초조감 고조
 - 학내 영향력 학생들에 대한 담당정보관의 집요한 침투, 포섭에 의한 세력약화에 고심
 - OOO회장 O O O 등 문제권 상당수가 정보관과 개인적 유착관계 유지
 - 정보관의 영향력 때문에 유인물도 무기명으로 제작 등 위축
 - 금학기 들어 건전교수 및 건전학생들의 학원수호의지 고양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들을 매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도 분석
3. 분실 조치 계획
- 문제권 학생들의 저의(담당정보관 교체)가 뚜렷한 바, 위축되지 않고 계속 학원안정에 노력토록 조치
 - * 단, 동 정보관의 장기출입에 의한 신분노출 감안 하계방학 중 자연스럽게 담당목표 교체 검토
 - 유관기관, 학교당국 협조하에 동 행위 주도자 조기색출, 엄중 조치 계획
 - * OO분실 의견대로 조치토록 하겠음

이처럼 학원건전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성공한 사례도 있었지만, 1987년 당시 건전화사업이 대학 내에서 시위반대 여론을 조성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건전서클을 육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가 건전분위기 조성대책안”을 통해 정보기관의 건전서클 활용방안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 안기부에서 1986년 10월 20일 작성한 「서울대 좌경사상 확산 저지방안 검토」 문건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동 문건은 00대를 비롯한 대학가의 북한관련 유인물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 문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가의 ‘친북·좌경화’ 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안기부는 좌경학생에 대한 건전학생의 대항세력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00대 좌경사상 확산 저지방안 검토

1986.10.20

1. 상 황

- 최근 00대 일부 문제권 학생들은 북괴 주장을 전제한 벽보를 학내에 부착하는 등 좌경사상이 심화되고 있어 방치시 다수 학생 오염 우려
- 따라서 학부모, 동창, 교수, 학생 등을 적극 활용, 비판여론 확산 등 좌경사상 확산 철저 봉쇄 필요

(중 략)

3. 대책

가. 기본방향

- 학부모, 동창, 교수, 일반학생의 거교적인 좌경사상 규탄 여론 조성, 좌경학생 고립화유도
- 일반학생들을 대항 세력화하여 좌경학생들과 분리
- 국가생존 위해 좌경학생은 발본색원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의지를 과시

나. 세부계획

- 학부모협의회를 통해 좌경세력 규탄여론 조성

(위 문건에서 계속)

- 좌경사상 확산 우려 /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면학정진 희망 / 좌경사상 발본색원을 위한 정부, 학교당국의 각별한 조치 요망 등 건의문을 학부모 대표가 총장, 문교부장관을 방문하여 전달
- 학부모협의회일동 명의 좌경사상 규탄 유인물 배포
- 학내 소요시 학부모협의회 중심 친여 학부모 동원 현장 저지
- 동창회 중심 거교적 좌경세력 추방운동
 - 총동창회 소집 거교적 “좌경세력 추방운동 전개” 결의
 - 선후배 간담회, 교수·동창 간담회, 교수·동창·학생대표 간담회 개최
- 건전학생 중심 대항세력화
 - 건전서클, 학생중심 좌경세력 비판 유인물 배포
 - * 2학기 들어 1회 3,000매 배포, 2회 10,000매 배포 계획
 - 좌경학생 소요시 대항세력으로 육성
 - * OO회, OOOO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대항세력화 공작사업으로 기 추진중
- 총장, 동창 및 학생대표 참석 TV 대담프로 주선
- 일간지 활용, 좌경 규탄 논조 전개

이 같은 건전서클을 중심으로 한 건전유인물 배포계획은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 1986년 11월 작성된 「OO대 OO서클 등 신민당 서울대회 불참유도 건전유인물 등 배포」라는 문건에는 정보기관이 육성하던 건전서클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다.

OO대 OO서클, 신민당 서울대회 불참유도 건전유인물 등 배포

- OO대 OOO 선교회 회원 40여명은 당부 조정에 의해 11.27 OO서클연합회 지원 하에 ‘전국 대학생들에게 고함’ 제하 건전유인물 1만 5천매를 서클 명의 학내에 배포하고

(위 문건에서 계속)

- 신한당 서울대회(11.29) 불참분위기 유도를 위한 공산주의 비판 및 야당의 선동행위 중지를 촉구 예정

* 각 대학의 OO서클을 통해 동 유인물 확산배포 유도 중

o 유인물 주요 내용

- 우리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위적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 지금 학생운동은 공산주의의 전략과 전술에 이용당하고 있다
- 야당과 재야여,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생을 선동하고 이용하지 말라

1986년 건전서클의 활동은 학원 내 친북·좌경세력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이듬해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를 의식, 야당과의 연계 차단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 문건에는 서울대 외에도 000대의 건전서클인 00학우회와 00대 0 0 0 학생회가 각각 ‘00 학우에게 고함’ 및 ‘00 학우여 정확한 위상을 찾자’라는 제하 건전유인물 1,000매와 500매를 배포했으며, 이에 덧붙여 “문제권에 대응하는 건전활동을 앞으로 적극 전개토록 하겠다”⁵¹⁾고 보고하고 있다.

학생회의 건전화는 건전서클 육성 사업과는 달리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서울 00학생회의 건전화 사업”⁵²⁾이다. 안기부 스스로 “성공적”이라 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당시에 대다수 학생회가 문교부가 제시한 ‘회칙구성 5원칙’⁵³⁾에 입각한 학생회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면서 서울00 학생회에 대한 공작을 통해 문교부 원칙에 입각한 학생회칙을 통과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은 건전화세력 육성이 정보기관의 학원 망을

51) 안기부, 「00대 00서클 등 신한당 서울대회 불참유도 건전유인물 등 배포」(1986.11)

52) 안기부, 「00대 00 학원건전사업으로 문교부 지침에 의한 학생회칙 통과 성공」(1986.10.23)

53) 문교부의 5원칙은 “① 정치활동 금지 ② 교수회의·학생대표 참석조항 삭제 ③ 피선거격 기준(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 ④ 학교 지도 하에 학생회비 징수 및 관리 ⑤ 학생지도위원회 설치” 등이다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OO대 OO 학칙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은 동 문건에서는 비록 ‘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협조자의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OO대 O대 학원건전사업으로 문교부 지침에 의한 학생회칙 통과 성공

1986.10.23

- 동교 학생회에서는 문교부 5원칙에 의한 학생회칙 미제정으로 학생회 예산사용 동결 등 불법단체화 되던 중
 - 000의 지속적인 간부진 설득으로 문교부 지침을 수렴한 학생회칙을 성안
 - 10.20 대의원총회 및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
- 그간 OO대의 경우
 - 불법 총학생회 구성으로 문교부 지침에 의한 학생회칙 제정조차 거부
 - 단대별로 학생회칙을 제정, 대학당국의 승인을 받아오던 중
 - OO대의 경우, 당부 공작사업에 의해 완전히 합법적 자치기구를 구성케 된 것 임
- * 학생회칙 미통과 대학(세종대, 카톨릭대), 불법 학생회 구성으로 회칙 미승인 대학(서울대 여타 단대, 숙대, 아주대) 등에 결성 촉구토록 하겠음

문교부의 5원칙에 입각한 학생회칙 제정만으로 OO대 OO학생회가 건전학생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학원소요의 진원지라고 여겼던 학생회에 대해서 당시 정보기관이 건전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점이라 하겠다.

정보기관의 학생회 건전화사업은 재경 시위주도 대학이 아닌 지방 및 중소규모의 대학으로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 시위주도

대학의 학생회 조직은 건전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6년 11월에 작성된 「대학가 지방 13개 대 금월 중 총학생회장 선거시 건전학생 당선 지원사업」이란 문건에서는 당시 안기부가 집중적으로 건전 총학생회장의 당선을 위해 공략하고자 했던 대학의 현황과 활동 실태를 알 수 있다.

대학가 지방 13개대 금월 중 총학생회장 선거시 건전학생 당선 지원사업

1986.11

- OO대, OO대 등 지방 13개 대학에서는 當部 조정에 의해 학원 건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학생회장 선거시
 - 건전학생 출마유도
 - 건전세력을 동원, 간접지원 활동 전개
 - 문제권학생 후보 견제활동 등을 관계기관 협조 하에 실시 중

정보기관의 학원건전화 사업은 1987년 대선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면서 보다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건전화 사업이 각 대학별 건전서클과 건전학생회 육성 및 건전유인물 배포 등에 국한된 것인 반면, 1988년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전학생 전국연합조직 육성계획 추진」(1988.1.25) 문건은 이 같은 정보기관의 학원건전화 사업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 문건에서는 공세적 계획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지난 대선기간 중 건전학생(5만 5천명)들의 여권 지원활동 전개결과, 좌경권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수적으로 소수인 ‘문제권 학생’들이 1987년 8월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결성한 「전대협」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건전조직을 구성(가칭 ‘민대련’ : 학원민주수호대학생총연합),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었다. 동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은 전국대학 연합조직의 결성은 결국 학원건전화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로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전학생 전국연합조직 육성계획 추진

1988.1.25

1. 전국 총 103개대 71만 여명 학생 중 좌경운동권 학생은 0.7%인 5,190명(자민투 4,020, 민민투 1,170) 으로서
 - 수적으로는 열세이면서도 문체 활동이 극렬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학생 활동이 위축되어 왔으나
 - 지난 대선기간 중 건전학생(5만 5천명)들의 여권 지원활동 전개결과 좌경권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고조되어
 - 신학기 개학과 동시 좌경 '전대협'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조직을 결성(가칭 '민대련' : 학원민주수호대학생총연합),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
2. 지난 1.25부터 조직결성을 추진
 - 어용시비, 관제인상탈피 원칙하에 여건이 조성된 전국 13개 대부터 결성 준비 중인 바

<1차 결성예정 13개대>

 - 재경(3개대) : 고대, 경희대, 중앙대
 - 지방(10개대) :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남대, 강원대, 인천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 개학직후인 3.2-3.10 간 대학별로 조직을 결성하여 문체권에 의한 신입생 오염을 예방하고

(위 문건에서 계속)

* OO대는 2.16 “민대련창립준비위” 발대식을 갖고 3.10경 1,000명을 동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타 12개대는 지도교수 및 핵심학생 선정완료

o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학기 중에 전국연합조직체를 발족 완료할 계획임 (10만명 목표)

아울러 동 문건에서는 이 같은 전국조직 결성과 맞물려 대대적인 ‘對문체권 학생 공세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3. 한편 동 조직 지원 육성을 위해

- o 전국단위 반공조직인 “자유수호구국연합회”(의장:정OO)와 연계하여
 - 일체감 있는 ‘민·학연대’ 활동을 강력 추진하여
 - 학교당국과 정부간의 원만한 지원매개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 전국 9개 시도 지부를 통해 관내 지방대학과 연결, 지도관리토록 하고
- o 해당대학 출신 기업인, 지역연고 등을 참작, 정부(사·도 지역대책협의회)에서 각 대학별로 특정기업과 자매결연을 주선
 - 핵심학생 장학금 지급, 졸업후 산하단체 취업
 - 조직운영자금 지급 등 적극 후원토록 유도중이며
- o 지역 내 선배중심의 지역별 후원회 및 각 대학 “교수지도위”(간사:학생처장)를 구성, 학생자생조직으로 육성지원하고
- o 정부차원에서도
 - 서클지도비 명분의 예산지원(문교부)

(위 문건에서 계속)

- 핵심학생에 대한 해외 연수실시(문교부, 연간 200명)
- 자매결연 기업체 취업불가시 정부지원 취업알선 등 적극 지원 계획임
- * 신학기 개학과 동시, 건전유인물 대량 배포(200만장 목표) 및 문제권 시위 시 공개적 규탄 등 실력행사로 좌경권을 제압하고 올림픽 개최지에서의 질서운동, 반공세미나 등 학원 건전화의 일대 전기마련에 전력 집중 계획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핵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학과 해당지역 기업간의 자매결연, 조직운영자금의 결연기업 지원, 해외연수(문교부 주도로 연간 200명), 서클지도비 명목의 예산지원, 자매결연 기업 및 정부 지원 취업 알선 등의 건전학생 지원방안이 실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83년도에 문교부에서 요청한 학원 안정대책사업 예산을 안기부에서 지원해 준 사실은 실제로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해 준다. 「83년도 학원대책추진 00예산 검토」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3년도 학원대책추진 00예산 검토

- o 문교부의 83년도 학원안정대책사업 소요예산 중 일반회계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당부에 지원 요청한 00사업 00예산 소요 내역을 검토

<문교부에서 요청한 예산 항목>

- o 건전학생 세력 육성
 - 고교생 건전화

(위 문건에서 계속)

- 학도호국단 간부 수련 : 9개 주요대 간부 매월 활동비 지원
- 영향력 학생 특별교육
- 건전서클 활동지원 : 112개대에 0만원씩 2회
- o 교수 연구심화 및 자세 확립
 - 서클 지도교수 연수
- o 문제학생 서클 집중 지도
 - 재경 22개교 91개 서클(5,600여명) 기본 경비 지원
 - 문제학생 집중 지도
- o 학사지도 운영 강화
 - 부모 초청 설명회 등
- * 학원안정대책비 중 00예산은 공작적 차원의 학원안정대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비공개로 집행해야 되는 특수성으로 00 예산에 편성키 곤란하여 74년부터 當部에서 지원
- o 검토결과
 - 영향력 학생 특별연수, 건전서클 활동지원, 문제학생 및 서클 집중 지도 관련항목은 학원안정대책 추진상 성과가 기대되며 성격상 공개가 곤란하다며 인정하였으나
 - 학도호국단 간부 활동비 지원은 국비 해외연수 실시 및 졸업 후 취업주선 등 旣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사업 재검토 필요 의견
 - 결론적으로 문교부에서 요구한 00예산 총액 00여원 중 00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은 40%정도 삭감된 00여원으로 평가

위 문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안기부는 1974년부터 문교부에 학원안정대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해 오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민대련」 조직 건설을 주도한 안기부는 1989년 이후에 변화한 상황에 맞추어 동 계획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이른바 ‘전국대학문화발전 학생협의회(「전대문협」)’을 조직하겠다는 것이었다. 1990년 3월에 작성된 「대학가 건전총학 및 연합체지원 적극화 유도」라는 문건을 통해 정보기관이 동 조직 결성을 위해 배후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대학가 건전총학 및 연합체지원 적극화 유도

1990.3.31

- 當部에서는 체제수호 차원에서 00대·00대 등 31개 대 건전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1.31~3.23 간 11개대 지역연합체를 결성한데 이어 4월중 전국연합체인 전국대학 문화발전학생협의회(「전대문협」)를 결성할 예정임
- 이와 관련 「전대협」 등 학원문제권에서는 입지약화를 우려한 나머지
 - 건전 총학생회를 어용조직으로 몰아 퇴진분위기를 조성하고
 - 전대협 탈퇴를 선언한 00대, 00대, 00대 등 건전총학생회를 규탄하는 한편 문제권을 동원하여 전대협에 재가입토록 강요하고 있으며
 - 기자회견, 유인물 등을 통해 건전연합체가 정부당국의 지원세력인양 오도하면서 건전세력 와해에 주력하고 있음
- 따라서 0국에서는 보좌관실과 협조, 3.28 0국 및 소 지부에 긴급 지시를 통해
 - ‘전대문협’이 학내 건전세력을 주도하여 학원안정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 사전 건전학생간부들에 대해 취업보장, 해외연수, 시·도지사, 기업체, 사회단체 간부 등과의 간담회 주선으로 사기진작과 인정감을 제고토록 하여 문제권 대응세력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였음
- * ‘전대문협’ 결성과 관련, 문제점 해소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1988년 추진되었던 「민대련」 계획에서 빠져있던 00대와 00대가 새로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1990년 1~3월경의 이 계획은 1987년 대선 이후 변화하고 있던 학생운동과 대학가의 분위기⁵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일부 대학에서 전대협 의 노선에 반대하여 전대협을 탈퇴하는 사례가 출현⁵⁵⁾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속도가 가속화되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물론 80년대 전반에 걸쳐 정보기관이 대학 내 부식하려했던 건전화세력이 어느 정도의 근거지를 확보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튼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보기관에서는 건전 총학생회장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재경대 학원건전화 사업 추진동향」(90.9.12) 문건에 잘 나와 있다.

재경대 학원 건전화사업 추진동향 56)

1990.9.12

1. 개황

- 89.11월 재경대 총학생회장 선거결과 건전 및 일반성향 학생들이 다수 당선된 것을 계기로 추진중이던 ‘민대련’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 학생회장 당선자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건전총학생회장 연합체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54) 「대학 건전서를 활성화대책 강구 필요」(1990.4.24)라는 문건에서는 90년대 들어 변화하고 있던 대학가의 분위기를 “문제권 학생들의 의식화를 주도해 온 이념·학술분야 문제서클에서는 신입생뿐 아니라 기존 가입회원들의 탈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55) 전대협 탈퇴 러쉬를 이끌었던 것은 충북대학교였다. 1989년 4월 28일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박00은 “좌경세력의 온상이 되어가는 대학현실을 누군가 나서서 말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전대협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충북대를 이어서 1990년 3월 6일 대구경북의 4개 대학(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경주관광대)이 전대협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 외에도 원광대, 충주대 등 소위 ‘학원건전세력의 조직화’의 핵심 대학들이 속속 전대협을 탈퇴하였다. 『조선일보』 1989년 4월 29일과 1990년 3월 7일자 기사 참조

56) 「재경대 학원 건전화사업 추진동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비슷한 시기인 1990년 9월 21일 강원대, 경남대, 전북대 등 전국 13개 지역 대학생 2천여 명이 서울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전국학생협의회’(회장 충북대 무역 4, 신00)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발대선언문에서 “대학생으로서의 자존과 자주의식을 갖고 정의와 인도주의에 입각 침묵하는 대다수 학생의 뜻을 대변키 위해 결성됐다. 앞으로 대중적 도덕성을 상실하고 폭력집단으로까지 변해버린 전대협이 주도하는 현 학생운동의 시대착오적 이념을 폭로, 참 민주사회에 걸 맞는 학생의 위상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출범에서부터 전대협과의 대립관계를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 1990년 9월 22일자 기사 참조

(위 문건에서 계속)

- 90년 11월 선거에 대비하고, 건전세력 회원교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민대련’ 조직을 ‘대학문화정립추진위’로 전환, 회원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2. 추진동향

- 재경대 건전학생회장 연합체인 가칭 “대학생 민주실현 서울연합”(의장 나 0 0, 00대 총학생회장)에서는 3.21~3.22 2차례에 걸쳐 재경 11개대 대표 60여명 참석리 00공대 강의실에서 회의를 개최코
- 당초 계획한 3.23 기자회견 개최를 논의하였으나 상대적 하위수준이고 수적 열세인 동 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경우, 학내 탄핵분위기고조는 물론, 결성식과 연결시킬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 서클단위의 참가가 가능해 참가대학수를 늘릴 수 있고 준비과정의 홍보활동 등을 통해 건전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결성식(4.6 경 00대, 목표 20개대 2,000명)만 개최기로 결정하였음

3. 건전총학 落選校 및 여타대학 관리

- 서강대 등 총학생회장 낙선교 및 출마자가 없었던 서울대 등에 대해서는 90년경 11월경 실시예정인 총학생회장 선거에 대비하고 건전총학생 회장연합체 지원 및 학내 건전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 기존의 ‘민대련’ 조직을 ‘대학문화 정립추진위’로 전환,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 * 대학문화정립추진위 조직책 선정 완료대학(현 15개대) :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중앙대, 홍익대, 서울교대, 국민대, 경희대, 외대, 단국대, 건국대, 숙명여대, 성대, 동덕여대
- 동 대학문화정립추진위는 이 0 0 (00대), 장 0 0(00대), 손 0 0 (00대) 등 3명이 공동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 90년 목표로 재경 40개대 전체에 동 위원회를 구축하고, 전 대학에서 입후보하여 이중 10개교 당선을 설정하고 있음

이처럼 건전 서클, 건전 학생회 그리고 이를 통한 대학 내 건전학생세력의 형성을 목표로 했던 전국조직의 결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정보기관이 ‘학원건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원건전세력 안정화 사업 추진

정보기관에서는 이른바 ‘문제권’에 맞서는 건전대학생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등의 차원에서 여러 지원정책을 강구하였다. 국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된 지원정책 사례로는 산업체시찰, 해외 유학 등 각종 특혜를 베푸는 것과 대학 졸업 이후 관공서 및 관변단체 입사 등을 알선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1987년 3월 26일 작성된 「전북지역 대학생 건전화 일환 특수시책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에서는 전북 소재 5개 대학을 대상으로 00분실의 조정 하에 학교 자체행사인 것으로 유도하여 건전학생들의 산업체시찰을 성사시킨 바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지역 대학생 건전화 일환 특수시책 추진계획

1987.3.26

전북지역 5개대 1,440명 대상 4월 중 실시, 전주·군산·이리지역 산업시찰로 지역발전 현장 교육

○ 추진배경

- 0000장 주재 전북지역 5개대 총학장 간담회서 제의
- 학원 면학분위기 조성과 정부시책 홍보 차원에서 추진키로 합의
- 분실 조정, 전북도 후원 하에 학교 자체행사로 추진

○ 세부추진계획

- 주관 : 전북지역 총학장회의
- 학교 자체행사로 유도 : 선발, 인솔 학교 측 일임

(위 문건에서 계속)

- 소요예산 : 전북도 지원
- 시찰인원구성 : 건전 70%, 학훈단 20%, 문제권 10% (1회 160명)

(중 략)

- 1차 실시 대상인원
- 총 9회 1,440명 / 전북대 400, 원광대 320, 전주대 320, 군산대 240, 우석대 160
- * 1단계 실시효과 면밀 측정 후 전북지역 참여폭(인원) 확대 추가 실시, 수범사례로써 전국 각 시도별 확산실시 검토하겠음

이 계획의 시행결과는 1987년 4월 4일자에 「전북대학생 건전화 일환 산업시찰 성공리 시행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시절 정보기관의 학원건전화 사업에 협조하였던 학생들은 졸업이후에도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유관단체 등에 취업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학도호국단 간부 및 건전학생 취업실태」(1986.3.8)에 따르면 이처럼 학원안정화를 위한 건전학생의 취업은 정보기관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알선해 주었다. 동 문건에는 당시 취업알선 현황과 더불어 취업학생들이 재학시절 어떤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도호국단 간부 및 건전학생 취업실태(추가보완)

1986.3.8

- o 정부당국 취업알선 학도호국단 간부(830여명) 중 5공화국 이후에 취업 추천한 학생은 총 72개 대 547명으로
- 총리실 주관 취업학생 : 539명
- 당부(분실) 주선 취업학생 : 8명

(위 문건에서 계속)

<當部주선 취업학생 현황>

- 대전(1명), 광주(3명), 부산(4명)으로 취업처는 00회(사회단체), 00 00개발협의회, 00전남지부, 0000금융, 00대 학생과, 00시 00사업 조합 등임
- 상기 당부 주선 취업자 8명(호국단 간부 출신 5명, 건전학생 출신 3명) 중 85.1 0000개발협의회에 취업한 0 0 0의 경우
 - 재학당시 건전영향력 학생 20여명으로 ‘00회’란 건전서클을 결성, 동 서클을 중심으로
 - 총학생선거, 4.19 및 5.18 기념행사 등 각종 학내문제 행사시 학생들의 자제 설득 및 문제권 학생 신랄히 비판
 - 각종 학내시위 및 농성시 해산중용, 과격행위 저지 및 건전유인물 다량 제작 배포
 - 체육대회, 학원 수호다짐 결의대회 등을 주도, 학내 건전풍토 조성에 솔선하는 등 학원안정 및 면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 85.1 당부 주선에 의해 0000개발협의회 사무요원으로 취업된 이후에도
 - 장학생(73명) 선발 등 개발협의 7개분과 40건의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과 집행 및 결산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상사 및 동료 직원들 간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 특히 모교인 00대의 학원안정에 기여코자 85.8경 모교 단과대 학생장 출신자들 75명으로 ‘00’이란 건전모임을 결성, 후배학생 및 교직원 등을 수시 접촉코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등 모범적인 행동으로 주위의 칭송대상

이들이 취업한 직장은 0000개발협의회, 00 전남지부, 0000금융, 00대 학생과, 00시 00사업조합 등인데, 이중에는 졸업생 출신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모교의 학원건전화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집회·시위 진압대책 강화방안 제시

집회나 시위 진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은 경찰이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학내·외 집회·시위를 사전 저지하거나 진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1983년도 말경 정보기관은 80년 5.17 이후 학내에 상주해 오던 경찰병력을 학원자율화조치에 따라 철수하는 문제와 관련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85년에는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원소요 진압을 위한 공권력 운용지침”을 마련, 강경한 진압대책을 강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먼저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검토」(1983.12.1) 문건에서는 경찰의 학내상주 문제점과 철수에 따른 보완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학에는 사태발생시 진압을 위해 경찰요원이 常駐 * 서울대 209명, 연대 194명, 고대 194명, 동국대 85명, 부산대 92명, 경북대 81명, 충남대 61명, 전북대 71명, 전남대 149명 ○ 경찰 常駐를 위한 별도의 指示는 없었음 ※ 80.5.17 이후 경찰이 첩보不在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체관단에 의해 常駐
成 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 초기단계 진압 및 주동자 조기 검거 ○ 사태확산 방지, 학내 질서유지, 데모기도 위축효과
問 題 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극, 경찰 및 정부에 대한 반발심 생성 ○ 주동자 검거 및 사태 진압시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태확산 사례 발생 ○ 경찰요원의 강의실 및 연구실 투입, 교수 및 일반학생 구타사례 발생으로 불필요한 저항감 조성
評 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들의 경찰병력, 사태진압 기대로 소극적 자세 견지 등 학교당국의 사태 적응력 低下 ○ 사태초기단계 진압, 확산방지 측면에서 완전철수는 위험부담 多大 ○ 보완책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B級 요원으로 축소 - 비노출 잠복활동 실시 - 교육을 통해 활동기법 제고 - 학교당국과의 유기적인 연락체제 형성

학원자율화조치의 가장 상징적인 내용은 대학상주 경찰의 철수였다. 「학원현안 문제점 및 대처방안」(1983.12.1) 문건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경찰병력 철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원현안 문제점 및 대처방안

1983.12.1

(전략)

경찰의 대학 상주 문제

1. 개 황

○ 학원사태의 초기단계 진압을 위해 각 대학내에는 경찰병력이 상주하고 있어 불순모의 조기포착, 주동학생 검거 등으로 사태의 확산방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경찰의 학내 상주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학내 병영화” 또는 “학원사찰” 문제가 학생들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노출활동 및 과잉대비로 학생 반항의식 자극 사례

- 11.25 연대 학내 소요시 시위가 발생한 도서관 앞에서 시위학생들을 다수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 연행하자 주변 학생들이 이에 보도 불력을 깨어 경찰에 대항

- 서울대 등 일부대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 C요원(학내상주 사복전경)들이 학내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회롱 야유하는 사례도 있어 학생들은 이들을 “짹새”(사찰요원)라고 지칭

○ 사태저지 및 주동자 검거시 과잉대처로 학생들의 적대감 유발 사례

- 1983년 5월 24일 서울대 시위시 일부경찰들이 투석하는 학생을 추격하여 다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휘어잡은채 5~6명의 경찰이 끌고 가자 학생들은 흥분하여 사회대 행정실(평소휴식소)에 난입 방화하는 사태로 발전

(이하 기타 사례 생략)

안기부 스스로도 “경찰의 학내상주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학내 병영화’ 또는 ‘학원사찰’ 문제가 학생들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듯이 이 무렵의 경찰의 학내상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안기부에서는 학원자율화조치의 상징으로써 경찰을 철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는 대학상주 경찰이 철수했다는 홍보효과와 함께 정보 공백이나 시위 진압대처 능력의 약화 등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였다.

(위 문건에서 계속)

3. 대처방안

- 학생들의 저항의식 자극, 대외적인 학원탄압인상 부여 등의 부작용을 감안, 현행 대처방법의 개선이 필요
- 사태 초동단계 진압 및 사태확산 저지 측면에서 볼 때 완전철수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큼
- 따라서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C요원(학생가장 전경)을 철수시키고 A, B 요원⁵⁷⁾만 상주하되 비노출 잠복활동으로 임무수행
 - 소요징후 파악 및 주동자에 대한 채증
 - 요원에 대한 활동기법 교육실시
 - 학교당국 및 관계기관 간 정보전달 체계 확립
- 소요징후 포착시는 경찰기동대를 교문 등 진출로에 배치
 - 학내상황은 학교당국 대처 원칙하에 가능한 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
 - 학교당국의 능력만으로는 대처 불가능시 되거나 사태확산이 예상시 교내 병력투입 대처(구타 등 자극행위 지양)
 - 교외 진출시는 경찰책임 하에 대처

57) A요원 및 B요원은 각각 ‘관할서 정보과 학원담당’과 ‘관할서 타과 지원병력’을 의미한다.

비록 학내 상주 경찰병력의 철수는 이루어졌으나, 안기부는 “사태의 확산이 예상될 경우에는 학내에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다 1985년 중순경, 학원안정법제정이 무산되면서 대학가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대두되기에 이른다. 1985년 8월 24일 문교부 주관으로 개최된 ‘학원대책추진위원회’⁵⁸⁾에서는 「학원소요에 대한 공권력 운용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정부가 강경한 시위진압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원소요에 대한 공권력 운용지침 보고

1985.8.24

- 학내집회 및 시위시
 - 단순 집회시는 대학당국에 위임(문교부 및 대학측 요청시 공권력 투입)
 - 국가보안법위반, 폭력, 파괴, 방화, 린치, 감금, 수업방해 등 극렬 사태 시는 요청 불문코 즉각 공권력 투입
 - 공권력 투입시는 주동자 완전 검거연행
 - 현행법, 수배자 검거는 총학장 고발 여부에 관계없이 실시
- 대학정문 대치시
 - 학외진출 嚴禁
 - 투석, 화염병투척, 방화, 기물파손 등 범법행위자 현장체포연행(현지 지휘관 재량권 부여)
 - 상기 행위자가 도주시는 끝까지 추적체포(장소불문)
- 학내시설의 아지트化 時
 - 문교부 통보에 의거 공권력 투입 아지트 철거
 - 투입시간 및 복장은 상황에 따라 경찰이 결정

58)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학원>관련 청와대 이관자료철』의 「학원소요에 대한 공권력 운용지침 보고, 교육·문화」(1985.8.26) 문건 참조. 이 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 문교부 차관실에서 안기부, 문교부, 문공부, 청와대(교육, 민정, 정무1·2비서관), 치안본부, 보안사, 대검에서 13인이 참석하여 85년 2학기 개강 후부터 적용할 학원소요에 대한 ‘공권력운영지침’을 설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문건에서 계속)

○ 학위가두 시위시

- 여하한 경우에도 학위가두시위 절대 불용
- 사전모의단계부터 차단, 와해조치
- 해산과 동시에 주동자 체포연행에 주력
- 연행된 자는 장기간 구류처분 및 구속조치로 격리

○ 학외 옥내 집회시

- 미승인 집회강행 불용
- 시설물 사용주 규제, 설득으로 사전와해 주력
- 외부인 접근차단 및 주동자 연행 조사

○ 대학간 연합 학내외 시위예고시

- 대학간 연합 문제행사 및 집회는 일절 불승인
- 연합대학 주동학생 사전 연행 격리
- 집회 예고장소 주변 통로차단 및 사전병력 배치로 집결 와해
- 사전 예방 불가능한 ‘학내집회 및 시위시’에 준하여 처리

結言

- 상기 합의된 ‘공권력운용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2학기부터는 학교 당국과 함께 초동단계에 와해 조치기로 결의했으며
- 이에 따른 세부작전절차 및 행동요령은 치안본부가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작전에 임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언론(특히 신문)의 보도성향을 국가이익과 사회안정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음

비록 대학에 상주하던 경찰은 철수했지만, 정부의 학원문제에 대한 개입의 강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음은 1985년 중반을 전후해서 논란이 되었던 학원안정법제정을 비롯하여 이상과 같은 ‘공권력운용지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기부는 이처럼 대학가 시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던 경찰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학내 철수 후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2월 6일 작성된 「서울대 시위관련연행자 처리지침」 문건에서는 정보기관의 현장지휘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회의는 비록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정식명칭이 붙지는 않았지만 참석자의 범위나 다루는 사안에 있어서는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u>서울대 시위관련 연행자 처리지침</u>	
1986.2.6	
당부 조정 하에 2월 5일 서울 시경국장실에서 검찰, 보안사, 문교부, 당부 등 관계관 참석리 서울대 시위(2.4) 관련 연행 학생 252명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임에도 정치집회를 개최한 것은 범질서 파괴행위로 규정 ○ 특히 연행자 중 타교생(155명)에 대해서는 학원소요가담자 처리지침 중 전원 주동자급 차원에서 철저조사, 엄벌조치 	
[등급별 처리방안]	
A급 (구속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및 현장주동자 ○ 구류 이상 전과가 있는 시위 적극가담자 ○ 화염병 제작, 투척, 투석, 각목소지, 유인물배포, 플래카드 소지 등 시위도구 제작 및 사용자, 휴대자 ○ 기수배자로 현장참가자
B급 (즉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이외 적극 가담자 ○ 우발적 적극 가담자 * 타교생은 B급 이상으로 분류
C급 (선도위 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정을 모르고 부화뇌동 한 자 * 본인, 보호자, 지도교수 각서징구 후 석방
전원 선도위 인계 이상 처리, 훈방은 불고려	

문건에서 확인되듯이 동 회의는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개최된 연합시위 연행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를 시급히 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86년 소위 ‘건국대사태’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단일 집회에서 가장 많은 구속자를 배출했던 사건이기도 했다. 그만큼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 및 조율이 필요했던 사건이고, 정부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투영되어 있던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연행 및 추후 처리원칙이 신속하게 결정되었다.

(위 문서에서 계속)

[보완대책]

- 특히 1학년생(144명) 철저조사
 - 고교 재학시 교사의 의식화 교육 여부 집중 파악
 - 적출시 문교부에 통보, 해당교사 응징조치
- 선도위 인계대상자 석방시
 - 본인, 보호자, 지도교수 각서징구는 물론
 - 서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동 서클 지도교수 책임각서도 징구하는 한편 서클 대표학생 입회 하에 선도위로 인계
- 금번 사건 관련자중 향후 시위 재가담시는 단순 가담자라도 엄중처벌
 - 즉심대상자가 재범시는 무조건 구속
 - 선도위 이계 대상자가 재범시는 무조건 즉심 이상
- 현재 조사 진도
 - 연행자들이 대부분 자진진술 기피하고 있어 개인별 범행 확인 진도 부진
 - 시위 진행중 자신들의 모의사항, 연락사항, 투석, 화염병 투척 등 범법행위 부인, 단순가담만을 주장
 - 개별적인 신병처리 검토는 연행 후 법정시한(48시간)인 2.6 17:00까지 철야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증거 보강 중

위 회의는 서울시경에서 개최되었지만, “當部 조정 하에”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안기부였다. 현장주동자·화염병 투척·각목 소지·기 수배자·구류이상 전과자등에 대해서는 구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타교생은 주동자급 차원에서 엄벌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연행자들의 고등학교 때의 행적까지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문제가 적발될 경우 문교부를 통해 해당 교사의 “응징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정부당국은 ‘2.4 서울대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강력 대처함으로써 시위가 다른 대학으로 과급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⁵⁹⁾

한편, 정보기관은 서울대생 김세진 분신사건의 경우에도 시위가 확대되기 전 신속한 현장대응조치로 사태의 악화를 막고자 했다. 「서울대 분신자살 기도자 관련대책(사망시 대책검토)」(1986.4.30) 문건에 따르면 당시 정부당국에서는 분신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인물의 문병을 차단”하고 “가족에 대한 순화”활동 등에 분주했다.

이 같은 ‘조치사항’들은 안기부가 주도했던 현장의 ‘실무대책위원회’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실무위는 안 ○ ○ 영등포구청장(위원장), 황 ○ ○ 영등포서장, 박 ○ ○(보안사), 배 ○ ○(소방서장), 김 ○ ○(보건소장), 김 ○ ○(병원사무국장), 안기부 3명, 남 ○ ○ 영등포서 정보과장(간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위 산하에 ‘병원현장 기동처리반’을 조직하여 급박하게 돌아가던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기동처리반’은 이 ○ ○ 문교부 제3조정관, 황 ○ ○ 영등포서장, 안기부 서울분실 학원과장, 조 ○ ○ 보안사 정보과장, 이 ○ ○ 서울대교수(학생담당 학장보)으로 구성되었다.

59) 이는 당시의 언론도 다르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에서는 이날의 서울대 시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사회면과 1면 톱기사 그리고 사설 등을 통해 반복해서 보도했다. 『중앙일보』 1986년 2월 7일자 “구속대상학생 너무 많아 시한넘겨 영장신청 시작”, 1985년 2월 5일자 “대학요청 없어도 경찰투입”·“수세적 대응서 적극 진압으로 - 서울대 경찰병력 투입이 뜻하는 것”; 『조선일보』 1985년 2월 6일 “제적학생 캠퍼스출입 금지-‘연합시위’관련 문교부서 시달”, 2월 7일 “서울대 시위 189명 구속키로-타교생은 대부분 포함”, 2월 8일 “법질서문란 지위불문 엄벌 - 고교부터 이념교육 충실히 하도록”·“사실:보통시민의 충격·근심 - 13개대생 1백89명 구속이란 사태” 등 기사 참조

실무대책위와 기동처리반의 활동은 분신학생 가족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 이를 토대로 가족 및 주변인물을 그들이 속한 조직의 기관장들(농협OO도지회장, OO부시장 등)의 교육을 거쳐 각기 서울로 파견해서 가족들을 설득하는 작업 등 대책을 전반적으로 조율·시행하였다.

‘김세진 분신사건’처럼 자세한 내막을 담은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산 산업대생 전성일 투신자살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1986년 11월 9일 작성된 「대학가 주간 대학가소요사태 및 전망」에 따르면 “부산산업대생 전성일이 ‘건대사태에 즈음하여’ 제하 유인물 10여매 살포하고 6층 문과대 건물에서 분신, 투신자살(11.5)하였는데, 관계당국 공조체제 하에 11월 6일 자정 화장 처리함으로써 물의확산을 방지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한편 정보기관은 학원소요가 빈발하던 대학당국과 관할경찰서 사이의 업무상 마찰관계를 적극 중재·조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1986년 11월 12일 작성된 문건인 「대학가 학원대책관련 대학과 관할경찰의 업무협조실태 및 문제점」은 관할 경찰서와 대학 당국자들의 협조관계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대학가 학원대책관련 대학과 관할경찰의 업무협조실태 및 문제점

1986.11.12

1. 개요

- 대학과 관할경찰에서는 학원 문제의 관련 공동대처 인식하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유지 중
- 그러나 일부대학에서는 과잉 학생보호의식 및 어용규탄 우려 등으로 피동적 자세 시현
 - 따라서 합리적 공조체제 강구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실무대책회의 등을 통한 협조창구 활성화, 협의대상 업무 및 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 지침하달 검토가 필요

학내시위와 관련하여 “불순징후 및 경비사안은 대학 학생과장과 경찰 CP책임자(경사)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대비하고, 병력 동원 등 주요 사안은 학생처장 및 부총장이 경찰서장 또는 정보과장과 협의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당시까지의 관행이었다. 이런 업무협조 과정에서 학교당국은 경찰이 “일반행사 개최와 고유 학사업무에까지 간섭”하고 있다거나 “문제 학생 신병처리 시 학교 측 의견 반영률이 저조”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기부는 이 같은 대학과 경찰 간의 업무상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의 학원담당 직원이 포함된 정기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위 문서에서 계속)

(중략)

3. 업무협조 실태

○ 협의창구

- 각 대학 공히 불순징후 및 경비사안은 대학 학생과장과 경찰 CP책임자(경사)와 상호 정보교환
- 병력 동원 등 주요 사안은 학생처장 및 부총장이 경찰서장 또는 정보과장과 협의

○ 협조 방법

- 경비사안은 대학 구내전화가 설치된 경찰 CP와 유선 협조
- 주요 사안도 유선협조가 가능하나 일부 경찰에서는 사후 책임 등을 의식코 학교 측에 서면통보 요구 사례도 산견

○ 협의 대상 업무

- 불순징후 정보 교환 및 병력 운용문제가 주류

(위 문서에서 계속)

- 일반행사 개최 여부 및 고유 학사업무에 대한 간섭으로 학교측 불만 산견
- 특히 문제학생 신병처리시 학교측 의견반영을 저조에 불만 시현

4. 문제점

가. 경찰측

- o 학내진입, 초동과정에서 학교측 의견을 묵살한 병력 동원 및 학교시설물에 최루탄투기 등 과잉진압 인상에 따른 부작용
- o 업무협조를 이유로 과다 인원 대학 학생과 출입에 따른 불만
- * OO대, OO대 등에서는 경찰측에서 관할서 정보형사, 대학 상주경찰, 시도경 담당자, 대공과 직원들이 각각 출입하고 있어 대학 학생과는 기관원 휴게실이나는 학생 비난 여론 대두
- o 내사 명분으로 학생 가정방문시 경찰 신분임을 숨기고 학생과 직원으로 사칭
- o 일방적 업무협조 요구 태도 및 경찰 CP 운영 지원요구로 일부 비난
- * OO대 경찰 CP 근무자들은 보직교수들에게 명령조 언동과 CP 방어시설 및 난방비용 요구

나. 학교측

- o 불순징후 입수시 자체보고를 이유로 한 상황 지연 전파 적시성 상실 사례 산견
- o 지나친 학생보호의식 및 어용지탄 우려 등으로 경찰측 협조요구 기피 또는 형식화 경향
- * OO대, OO대, O대 등은 경찰의 시위징후 첩보 통보시 오히려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사례 발생

나. 주요대 협조실태 (생략)

5. 개선방안

- 학교당국과 경찰당국 간의 협조체제 및 협조방안 등은 이미 지침으로 시달되어 제도상에는 문제 별무, 상호 협조 자세 확립 재강조 필요
- 대학별 협조체제 내실화를 위한 실무대책위 운영 활성화
 - 구성 : 소요선도 대학부터 단계적 구성
 - 실무위원 : 경찰은 서장, 정보과장, 대학측은 학생처장, 학생과장, 당부 학원담당, 문교부 담당관, 기타 필요 인원
 - 회의 : 대학측이 간사로 월1회 정기회의 및 주요상황 발생시 수시 개최
 - 협의사항 : 상황 조기전파, 학내 병력투입 문제, 상호협조 요망사항 등
 - 운영 : 각 기관별 상급부서의 위임을 받아 당부 정보관 조정 하에 유기적인 현장 대책회의로 활용

이처럼 정보기관은 학원소요에 따른 대학당국과 관할경찰서 간 업무상 마찰을 적극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즉, 문교부·경찰·대학당국·안기부 등 학원담당 기관 실무자들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상황발생시 수시 회합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협의사항으로는 상황 조기전파와 학내 병력투입 문제 등이었으며, 안기부 정보관 조정 하에 유기적인 현장 대책 회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안기부가 이처럼 대학가 집회·시위 진압과 관련하여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통해 대처하는 모습은 87년 6월 항쟁에서도 이어졌다. 즉, 「6.13 가두시위 동향분석 및 대학가 내주 전망」(1987.6.16)에서는 6월 항쟁 당시 거리시위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가투 진압시 탄력 대처, 기말고사 집단거부 저지, 도심지 가투 적극와해” 등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6.13 가두시위 동향분석 및 대학가 내주 전망

1987.6.16

1. 개황

- 문제학생, 명동성당 농성지원 명분 하에 6.11 이후 연 3일째 극렬가투 자행

<가투현황>

구분	6.11	6.12	6.13
연인원 (회수)	7,700 (22)	5萬 1,630명 (71)	1萬 6,200명 (40)

- 명동성당 농성 장기화에 비례, 가두시위 지속 예상

2. 6.13 소요양상

가. 학내소요

- 21개대 9,500여명 소란
- ※ 이 중 10개대(4,300명) 명동성당 투쟁 출정식 개최
- 「서대협」은 2차에 걸쳐 총학생회장단 회합 개최, 명동성당 관련 투쟁 방안 협의하였으나 결론 별무
 - 일부 간부 13:00경 성당 잠입, 해산 설득하였으나 실패
 - 北地評 소속(고대·국민대 등) 대학들은 6·13 가투에 불참 선언

○ 명동성당 내 농성자 분류

- 학생 : 17개대 250명(서울대 10, 시립대 40 등)
- 일반인 : 50(운전기사·퇴직근로자)
- 주도 : 민주협·민통련 소속 기성세대

나. 가두시위

- 명동인근 : 연 40회 1만 6,200명
- 지방 : 부산(700명), 안산(130명), 마산(150명)

(위 문서에서 계속)

<특징>

- 시민밀집지역 중심으로 가투 빈발
 - 일반시민 호응 유도 목적
 - 경찰 진압시 피신 및 재집결 용이 겨냥
 - ※ 경찰 진압병력 : 158개 중대
 - 문제권 투쟁전술 변화 : 비폭력 지향
 - 화염병 등 시위용품 발견별무
 - 투석 등 과격시위 자제 현상 뚜렷
 - 50~100명 소단위로 다수 장소에서 불순구호 및 가요 제창
 - 일부 상인층, 최루탄 사용 반대 농성
 - 남대문 시장상인(200명), 시장앞 연좌 “최루탄 사용 중지” 구호 제창
 - 명보극장상가(200명), YMCA 지하상가(100명), “경찰병력철회” 요구
 - 시민반응
 - 학생 300명이 노점상 리어카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자 상인들은 방입 (남대문 시장)
 - 민간인 1명, 최루탄 파편으로 안경이 파손, 눈에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에 치료비 보상요구(제일백화점 앞)
 - 상인들의 최루탄 사용 반대구호에 주위시민들은 “잘 하는 일이다”라며 박수(YMCA 부근)
 - 경찰이 시위학생 10여명 연행하자 관망시민이 방해(중앙우체국 앞)
 - * 6.10 이후 시위대에 대한 시민 호응도 점증추세
 - ※ 총 연행자 : 754명(남 733, 여 21), 최루탄 사용량 : 총 3,944발
3. 전망
- 명동성당사태 관련 학내외 소요 지속
 - 문제권 재결집 및 시민 동조세력화 성공 自判
 - 대정부 투쟁 본격화 호기로 계속 악용
 - ※ 명동성당사태 수습 후는 명분퇴색 소요 진정

(위 문서에서 계속)

- 자민투세력 “인원동원은 대규모, 방법은 비폭력” 투쟁 전술 구사
 - 시민 여론악화 및 당국의 강경조치 우려 폭력성 의도적 지양
 - “도로에 눕거나, 연좌” 등 무저항으로 시민동정 유도
- ※ 민민투는 과격투쟁 지속방향 고수
- 일반학생 선동목적 기말고사, 군사교육 거부
 - 기말고사 종료 시는 등교학생 별무함을 감안 소요여건 지속 목적 (서울대, 고대, 연대 등)
 - 구속학생 석방(고대), 최루탄 피해 규탄(연대) 등 학생관심사 거론 투쟁세력화
- ※ 금주(6.14) 이후는 여건 변화 불문 소요진정 예상되나 연대 이한열 사망여부가 변수 (금주 중 74개대 기말고사 종료계획)

4. 대책

- 가투 진압시 탄력대처
 - 교통체증 조기해소 등 시민불편 최소화
 - 시민 자극행위 자제
- 기말고사 집단거부 저지
 - 주동학생 순화 경고 불응시 징계조치
 - 거부 장기화시 성적평가, 종강여부 교수 일임처리
- 도심지 가투 적극 와해
 - 사복조 운용 주동 및 극렬행위자 필포
 - 단순가담자도 구류처분, 일정기간 격리

정보기관이 각종 집회·시위나 분신자살 사건 등 중요사안 발생시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학원소요가 빈발했던 80년대 초반에서부터 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안기부 등 정부당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실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하겠다.

다) 총학생회장 선거 개입 활동

80년대 초반부터 각 대학별로 구성되기 시작한 총학생회는 학원가 집회와 시위를 보다 조직적이고 광범한 규모로 확산시키는 주역이었다. 정보기관에서는 운동권 총학생회에 대해서 대학가 지하불순단체가 배후조종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회장 선출이전 단계에서부터 운동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문교부에서는 학생회구성에 관한 이른바 ‘문교부 5원칙’을 제정하여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한 대학 총학생회에 대한 개입과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⁶⁰⁾ 소위 ‘문제권 학생’들의 반발⁶¹⁾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은 문교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학생회구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안기부에서는 문교부의 5원칙을 근거로 이를 어긴 총학생회에 대한 규제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학생자치기구 구성실태 및 대책

1986.3.22

1. 개 황

- 학생 자치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전국 100개 대학 중
 - 87개 대학이 학생회칙 5원칙 준수 등 문교부 지도지침에 의거하여 회칙을 제정, 총학생회를 구성하였거나 현재 구성을 추진 중
 - 13개 대학(서울대, 고대, 성대 등)은 학생들의 거부로 학생회칙 미제정 상태 하에서 문제권 학생 중심으로 불법 총학생회 구성

60) 기존의 학도호국단조직을 학생회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은 1984년부터 진행되어왔다. 「학도호국단 운영개선대책 회의결과 보고」(1984.10.25) 문건 참조. 1985년에 접어들면서 학도호국단을 학생회로 재편하겠다는 정부당국의 방침은 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 형태로 처음 제시되었다. (조선일보 1985년 1월 25일 “대학 학생자치기구 부활”·“학원쟁점 완화, 자율터전 넓혀” 기사 참조). 1월 24일 대교협의 건의로 문교부가 학생회 구성에 관한 구체안을 각 대학으로 시달하는 형태로 1985년 초 대학 학생회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는 합법화의 전제 조건으로 소위 ‘문교부 5원칙’을 제정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학생회 간부의 평점규정과 같은 것이었다. “4일 문교부는 새학기에 부활되는 학생자치기구와 관련 정치활동 및 학교운영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학생자치기구회칙지침을 마련,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대표 피선거격을 징계 또는 유급 받은 사실이 없고 성적 평균이 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이며 출석상황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토록 했다.” (『중앙일보』 1985년 3월 4일자 7면 “학생대표 B학점 이상” 기사 참조)

61) ‘문교부 5원칙’이 알려지면서 각 대학에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1985년 3월 8일, “총학생회장 자격요건 철회 요구, 14개대 준비위 7개항 공동성명” 기사 참조)

(위 문서에서 계속)

3. 전 망

- 대부분 대학은 학교당국과 학생과의 합의하에 학생회칙을 제정, 총학생회에 대한 지도조정 가능
- 서울대, 고대, 성대 등 불법학생회 총학생회장들은 상호연계 소요주동은 물론 대학연합체 결성을 획책, '전학연' 조직 재건에 주력 예상

4. 대책

가. 기본방향

- 전학연과 같은 여하한 형태의 대학간 총학생회 연합조직결성 철저 저지
- 학생회칙 5원칙은 철저히 고수, 불법학생회 구성 사전 와해
- 불법학생회의 활동(각종집회, 행사)는 적극 견제

나. 학생회칙 미제정하에 선거 실시 예정대학의 대책

- 5원칙 포함 회칙제정 고수
- 학교당국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의 선거유세 및 총학생회 결성은 학교당국 책임하에 사전와해

다. 학생회칙 미제정하에 既 결성된 불법학생회에 대한 관리

- 5원칙 수용 학생회칙 제정 후
- 학교 당국의 지도에 순응할 경우에 한하여 총학생회를 추인
- 학교당국 지도를 계속 거부하는 불법학생회에 대해서는 각종집회,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 철저히 견제, 학생회비 지출 등 봉쇄(문교부도 동일 의견)

* 특히 서울대의 경우 현재 총학생회가 학교당국의 지도권을 완전 이탈한 상태인바

- 기구성 불법총학생회 절대 불인
- 학생간부 지속 순화, 5원칙 수용 회칙 제정 유도
- 합법적 회칙 하에 재선거 실시토록 호응세력 조성 추진 등 대처 (학교당국 및 문교부 동일의견)

또한 정보기관은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대학 내 운동조직의 노선과 규모 그리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계기로 삼았다. 1986년 9월 진행된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전후한 안기부의 관련활동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서울대 불법총학생회 선출동향 및 대책검토(1986.9.11)

1. 개 황

- 서울대 문제학생층에서는 대학당국의 미승인 및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9.5~9.9간 유세 및 투표를 실시하여
 - 총학생회장에 오 O O(외교4, 자민투 지지자)
 - 총여학생회장에 송 O O(화학교육 4)을 선출, 불법 총학생회 재구성

[개표결과]

- 유권자 : 1만 8,915명 ○ 투표자 : 9,608명
 - 기호 1 : 민민투(여 O O, 공법 3), 3,655명(38.2%)
 - 기호 2 : 자민투(오 O O, 외교 4), 5,764명(60.3%)
- 금번 선거에는 자민투 민민투 간 공개적 경합으로 일반학생들의 관심이 집중

(중 략)

3. 선거분위기

- 동 선거는 예전처럼 사전에 당선자를 내정, 각본에 따라 형식적 절차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 자민투, 민민투에서 학생운동 주도권 장악을 위해 후보자를 지원, 양세력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 양상 시현
 - 양측은 공히 유세전후를 통해 자민투, 민민투 재건설을 별도 개최하는 등 세력과시, 경합상 노정
- 총준위에서는 투쟁 지휘부 통합차원에서 양후보간의 막후협상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였으나 양 계열간의 이견 심화로 합의조정 실패

(위 문서에서 계속)

- 선거 초반에는 전국 조직(전민학련)을 가진 민민투측이 유리하였으나 후반에 들어 민민투측 후보의 연소, 경력부족 등을 부각시킨 자민투측이 대세 장악

4. 평가

가. 분석

- 선거공약이 지난 1학기시 팀스피리트 반대 등 용공 좌경성향과 비교해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 ‘아시안게임 저지’ 등으로 대동소이, 2학기에도 반미 용공성향 일관
- 자민투 세력이 총학생회, 투쟁위 등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민민투 세력 급격약화 시현
- * 9.9 서울대에서 개최된 전민학련 남지평대회 참석인원 100명에 불과

나. 전망

- 서울대 총학이 재구성되고 여타대 총학생회도 재건됨에 따라 향후 총학생회 연합조직 결성 본격 기도 예상
- 문제권 학생투쟁에 있어 자민투 계열이 주축을 구성하고 민민투 계열은 소수파로 전략 가능성 농후

이와 같이 선거결과 뿐 아니라 선거후보의 성향과 유세내용, 선거공약, 후보자개인의 인적사항(평점, 보호자 직업 등), 그리고 후보 측에서 배포한 유인물 및 벽보원본 등을 모두 수집하여 자료로 첨부해놓고 있다. 아울러 선거결과 자민투 계열이 총학생회를 장악함으로써 향후 여타 대학과의 연합조직 결성을 본격적으로 기도할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이를 보면 대학가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보당국이 선거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위 문서에서 계속)

5. 대책

- 서울대 불법총학생회 구성을 방임할 경우, 실질적인 투쟁지휘부 역할을 담당, 학원소요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 반미 용공성향 유세내용을 근거로 총학생회장 후보자들을 수배 검거, 의법 조치하여 총학생회 활동 제약 62)
- 학교당국에서는 불법 총학생회임을 공식 천명, 예산사용 등 일체 불허
- 각 대학 총학생회 연합조직(가칭: 전학련) 결성 철저 와해

정보기관은 궁극적으로 이른바 ‘문제권’이 총학생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다. 학생들의 투표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기관으로는 선거기간 중에 입수된 각종 유인물 등을 토대로 당선이 유력한 운동권 총학생회장 후보 이하 간부들의 사법처리 준비를 동시에 진행시켰다. 1987년 1학기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된 문건인 「서울대 총학 선거 유세 관련 동향 및 대책」(1987.4.2)이 그것이다. 당시 민민투와 자민투의 후보로 출마했던 최 O O(민민투)와 이 O O(자민투)에 대해서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당선저지를 위한 사법처리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 선거유세 관련 동향 및 대책

1987.4.2

1. 상황

- 서울대 문제권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구성을 추진키 위해 4.1 아크로폴리스에서 3,000여명 참석리 1차 유세 실시
- * 학교당국의 미승인(학생회칙 5원칙 미합의)으로 선거완료시에도 불법학생회 조직으로서 불인정

62) 반미용공이 유세내용이란 “친미로 흥한나라 반미로 살리자” 등을 의미

(위 문건에서 계속)

2. 관련동향

- 처음 등단한 건전학생(이 O O, 경영3) 유세시
 - 호응자 별무, 일부학생 야유, 조소 등으로 분위기 산만
 - 통일교 서클인 원리연구회원으로 추정되는 극소수 학생만이 호응
- 민민투 소속 최 O O 유세시
 - 민민투 세력 열세를 반영 호응도 저조(세력분포 : 자민 4, 민민 1)
 - 구변이 없는데다 음성도 작아 분위기 산만
- 자민투 이 O O 유세시
 - 도서관 6층에서 성불학생 핸드마이크로 불순구호 제창, 색종이 살포로 호응분위기 고조
 - 자민투 세력 절대 우세를 반영 분위기 진지, 긍정적 호응

* 당선 전망

(중 략)

3. 검토의견

- 문제권 입후보자의 과격발언 및 유인물 배포는 일반 학생 대정부의식화 확산책의 일환(공개적 합법투쟁 일환)
- 특히 동교 문제권 양태로 보아 이들 입후보자들은
 - 자파 세력 내 주요 인자로서 기히 정상적 졸업은 포기, 소위 혁명투사로 표면화
 - 당선될 경우 총학생회의 대정부투쟁 공식 기구화 필연시

* 따라서 민민투, 자민투 소속 입후보자 2명 지명수배 의법 조치로

- 문제권 핵심인자 조기 제거(자민투 소속 이 O O 는 3.30 작성된 유인물 내용에 근거 4.1 지명수배 조치 중)
- 당국의 좌경불용의지 천명 필요

(치안본부에 통보, 선거이전 검거에 주력토록 하겠음)

정보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자민투계열 후보 이 O O의 당선이 유력하였다. 이에 따라 이 O O는 이미 선거유세 당시에 사용했던 유인물의 내용에 근거해서 4월 1일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졌다. 만약 운동권 총학생회장 후보가 국보법 위반 활동을 했다면 사법처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건전학생 당선을 위해서 또는 운동권 후보의 당선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사법처리라는 방법을 활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학원망 및 프락치협이자 폭행사건 활용 사례

앞서 학원사찰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학원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망’을 통한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학원자율화 조치가 시행되었던 1984년 2월, 내무·문교장관, 보안사령관, 안기부장, 치안본부장 등 학원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연례회의⁶³⁾에서도 지적될 정도로 학원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망의 활용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학원 소요와 관련된 주요 일정·계획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운동권 핵심세력의 동향과약과 수배자 검거, 학원건전화 사업 등과 관련된 건전서클과 건전총학생회 육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업에 활용되었던 것이 학원 내 정보기관의 ‘망’ 조직이었다.

학원 내 망조직의 역할은 학원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수집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망’은 학생운동조직의 와해, 즉 ‘문제권 핵심인물’ 검거작전 등에도 활용되었다. 정보기관이 학원 망을 활용하여 수배자를 검거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없다. 다만 학원 망을 활용한 사례의 하나로서 이를 적시하고자 한다. 1988년 9월 5일 작성된 「좌경폭력세력 척결 수사대책 실무회의 결과보고」 문건에서는 망을 활용하여 핵심 수배자를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63) 안기부, 「1984년 신학기 학원대책추진상황보고」(1984.2.29) 문건에 따르면, 1984년 2월 22~2월 26일간 안기부장 주재로 5일에 걸쳐 내무장관, 문교장관, 치안본부장, 보안사령관, 청와대 민정수석·정무1·2수석·교문수석, 민정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등이 5차례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좌경폭력세력 척결 수사대책 실무회의 결과보고

1988.9.5

1. 올림픽 개최전 수배중인 좌경폭력세력의 전원검거를 위해 합동수사
본부 실무대책회의 개최

○ 체포수사 진행상황 점검, 수사독려 및 최근 발생한 대학신문 김일성
주체사상 게재 사건 수사대책 등을 협의하였음

○ 회의 일시 및 장소 : 88.9.2 15:00 안가

○ 참석자

- 대검 공안3과장(회의 주재), 서울지검 공안검사 / 치안본부 대공 1부장,
시경 5부장 / 보안사 대공수사단장 / 문교부 대학학사심의관 / 문공부
공보협력관, 출판 2과장 / 안기부 0국 0단장, 수사 0과장

(중 략)

나. 수사진행 상황 점검

○ 경찰은

- 지역책임수사제에 따른 체포수사 전담반 증원

- 학원가 지하핵심조직으로 각종 폭력행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중요
수배자를 별도선정, 전담경찰서 지정, 집중 추적 중

- 서총련의장 오 0 0(고대 법4)은 현재도 고대 학생회관에 은거중에 있어
부 오 0 0 등 가족들을 설득, 학내에 투입, 유인공작 계속 진행 중

※ 8.31 당부에서 지원한 “서총련 배후 및 체계” 등 수사자료 최대 활용

- 현재 학내에 은신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0 0(22세, 서총련 상임위원) 등
15명에 대해서는 운동권학생을 0망으로 활용, 학내출입 여부 등 동향
파악 및 유인공작 진행 중에 있음 (학내 은신 확인자 명단 첨부)

정보기관에서는 수배자 검거를 위해 가족 뿐 아니라 수배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운동권 학생을 0망으로 활용⁶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4) 안기부, 「좌경폭력세력 수사대책보고」(1988.8.22) 문건에 의하면 경찰은 학원 망을 활용하여
88.8.10 서울대총학생회장 전 0 0이 서울대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외출한다는 제보를 받고 정문
밖에서 잠복 중 현장에서 검거한 사실도 있음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대학 내 정보기관의 망 활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프락치공작’으로 인식하고 학원사찰 중지를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학원 내 프락치 문제는 이미 1985년에도 서울대에서 발생하여 결국 ‘서울대민추위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 1989년을 전후한 프락치혐의자 폭행사건⁶⁵⁾ 등으로 다시 한번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에서는 「최근 대학가, 프락치 조작관련 학원폭력 규탄계기 활용필요」(1989. 10.23)라는 문건을 통해서 프락치 혐의자에 대한 폭행 사건을 문제권 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격무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대학가 프락치 조작관련 학원폭력 규탄계기 활용필요

1989.10.23

1. 개황

- 최근 전대협 등 대학가 문제권 학생들은 임수경 사건 이후 위축되고 있는 국면 전환을 위해
 - 학원 프락치를 색출, 공안기관에 타격을 주어 소위 ‘공안정국’을 타파한다는 저의 하에 동료학생, 가짜대학생 등을 경찰, 안기부의 프락치로 자백을 강요하면서
 - 감금, 집단구타, 살인 등 학생신분을 벗어난 폭력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조성하여
- 운동권 학생들의 비도덕성 및 폭력성향에 대한 규탄과 차제에 학원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2. 관련동향

- 가짜 학생을 학원프락치로 매도, 집단폭행 치사 (사례 내용 생략)
- 경찰 가족을 프락치로 몰아 허위자백 강요 (사례 내용 생략)
- 일반시민을 프락치로 자백시킨 후 양심선언 강요 (사례 내용 생략)

65) 연대 설인중 치사사건 비롯 이 무렵 부울총협, 전남대 등에서 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위 문건에서 계속)

○ 각 대학별로 서클·학회 중심 프락치 일제 점검·색출 강화

- 서충련(의장 문 00, 수배중)에서는 학원프락치 용의자 색출을 위한 각 대학별 서클, 학회의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평소 거동이 이상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학생을 무조건 공안기관에 연계시켜 학원프락치로 매도하여
- 이들 내용을 소위 ‘대학가 프락치 실상 백서’로 작성하여 한겨레 등 비판성향 매체에 제공, 실상을 폭로코저 기도하고 있음

○ 동료학생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집단 구타 (사례 내용 생략)

3. 평가 및 대책

○ 이와 같이 문제권의 학원프락치 조작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 최근 학원내의 투쟁분위기가 위축되고 설인종 치사사건으로 학생운동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자
- 국민들에게 대학내에 학원프락치가 실재하고 있음을 입증시켜 공안기관을 궁지로 몰아넣고 학내외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해 보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유관기관에서는

- 설인종 치사사건, 부울총협 프락치사건 등의 수사를 철저히 파헤쳐 진상을 조기 발표하여 문제권의 기도를 봉쇄하고
- 민대련 등 학내 건전조직을 활용, 학원폭력 규탄내용의 유인물, 대자보 부착 등으로 학원내 문제권을 위축시키며
- 건전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지역별 소단위로 학원폭력 규탄 집회를 개최토록 하여 국민들의 규타여론을 확산시키며
- 학원프락치 관련 물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OO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공안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 언론기관 협조하에 각 사건에 대한 진상보도와 함께 여타 문제권 학생들의 폭력관련 특집기사 보도로 학원폭력행위에 대한 비판 공감대를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민정당·내무부·법무부·문교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안기부는 이 같은 학생들의 학원프락치 공세를 차단하고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언론기관 협조 하에 문제권 학생들의 폭력관련 특집 기사 보도로 비판 공감대를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과 아울러, “학원 프락치관련 물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OO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공안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정보기관은 이처럼 ‘문제권 학생’들이 프락치혐의자에게 가한 폭력 행위의 ‘범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학생운동을 위축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했으며, 또한 학원 내 정보 수집을 위한 망 조직 활용은 지속해 나가고자 했다.

그 외 집회와 시위를 무산시키는 활동이나 불법 유인물 등을 철거하거나 비판하는 ‘망’ 활동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성과와 활동범위를 알 수 있는 문서도 발견되었다.

「학원망 운용결과보고」(1983.5.24) 문건은 1983년도 상반기 동안 “학원망을 통해 예방 정보활동을 실시, 수집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 상호 협조 하에 사태 미연방지 및 확산 저지에 주력해 왔다”고 자평한다. 다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학원 망 운용결과 보고

1983.5.24

- 당부에서는 학원안정 대책에 따라 각종 학원 망을 활용
 - 학내외 소요 모의
 - 불순낙서 및 유인물 살포 징후
 - 문제서클 의식화 및 연계 상황 등에 대한 예방 정보활동을 실시, 수집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 상호 협조하에 사태 미연방지 및 확산 저지에 주력하여 왔는바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위 문건에서 계속)

<예방정보활동 결과>

- 소요징후포착 및 기도와해 : 9개대 11건
- 불순유인물 살포저지 : 2개대 2건
- 문제서클 의식화 저지 : 3개대 3건
- 잠복근무 실시 : 3회 연 392명 투입실시
- ※ 관계기관 학원사태 관련 정보지원 14개대 75건

가. 사태징후 사전 포착 및 기도 와해

<서울대>

- 3.16~3.18간 000 등 인문대, 사회대, 공대 문제학생 14명 연계하여 졸업정원제, 남북한 교차승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순유인물을 제작, 살포하며 대정부 시위를 전개한다는 정보를 입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전 격리 조치함으로써 사태무산 조치
- 4.15 학생들 간에 교내 4.19 탑에서 대규모 기념식 개최촉구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13:00 경 000 등 인문대 문제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내소요를 야기한다는 내용을 사전 입수, 관계기관 협조하에 교직원 A급 비상 발동, 영향력학생(150여명) 격리조치 등의 대처로 일부 소란은 있었으나 학내시위 확산 저지

<서강대>

- 5.11 11:50부터 문제학생 주동으로 과학관 앞에서 학내소요 야기 기도 정보를 입수, 당부 학원요원이 학내 위약지점을 점검중 과학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핸드마이크를 조작하고 있던 000을 적발, 검거하여 소요 기도 사전 와해

<연대>

- “무악축제” 마지막날인 5.14 17:00~17:30 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등 호국단 간부들이 불순유인물을 살포하며 참가학생들을 선동, 시위 야기 정보를 입수, 관계기관에 통보 총학생장, 문예부장 등 2명 격리조치

(위 문서에서 계속)

○ 이하 사례내용 생략

나. 불순유인물 살포 사전저지

<서울대>

○ 5.17 인문대 일부학과 중심 “폭력정권 타도하자” 제하의 불순유인물이 은밀히 배포(300장)되고 있는 사실을 입수 회수조치(사후 검거)

<충남대>

○ 5.6 학내에서 불순유인물 살포기도자 000를 검거, “충대 민주청년을 위한 양심선언” 제하의 유인물 150장 압수

다. 문제서클 의식화집회 적발 와해

○ 경북대 의식화주도 서클인 “000”(회원 19명)에 망원을 투입, 동 서클의 불순활동을 추적 중

- 지난 2월 경북 달성군 소재 00기도원에서 수련회 개최시, 핵심회원 000를 총책으로 3개조로 회원을 편성, 3단계에 걸친 대정부투쟁 방안을 모의한 사실을 입수

- 3.21 전원 연행 조사후 사태 미연 방지를 위해 제적(2명), 직권휴학(17명), 및 군입대(직권휴학자 중 10명) 등 조치

○ 서울대 문제서클 “0000”가 5.20~5.22간 경기 00산에서 불법의식화 수련회를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입수, 사전 견제조치로 와해

○ 계명대 문제서클 “000” 회원 9명이 82.7월~83.3.20간 대구 시내 등지에서 의식화 작업을 실시, 대정부 불순활동 전개방안 모의 정보를 입수, 관계 기관에 통보 상호 협조하에 전원 연행 조사후 직권휴학 및 군입대 조치

학원망을 통한 학내 시위와 집회의 무산·확산저지 등의 활동은 84년도에도 지속되어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84.2학기 대비 학원망 점검 결과보고」(1984.9.3) 문건에 이와 같은 성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84.2학기 대비 학원 망 점검결과 보고

1984.9.3

1. 84.2학기 학원사태를 대비 학원망을 일제히 점검 재정비

- 점검 책임자 : 각 분실장, 정보과장 등 분실 간부
- 점검기간 : 84.7.20~8.31
- 대상 망 : 총 502개 망

(중략)

○ 84. 1학기 중 학원 망 주요실적

학원사태 관련 불순징후 대부분은 학원 망을 통하여 입수, 사전대비책을 강구하였는바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 84.5월 서울대 학민추의 문익환 목사 초청 강연회 기도 저지(00망)
- 84.5월 서울대 교내 소요시 공청회 연사로 등단, 자율을 구실로 한 학내 폭력행위의 부당성을 역설, 집회 와해(00망)
- 84.6월 서울대 학민추의 총학생회 부활 불순집회 기도 와해(00망)
- 84.4월 서울농대(수원)의 김상진 추모식(4.11) 진행당시 문제학생 200여명이 교문 밖 진출을 기도하자 동료 건전학생 20여명을 규합, 주동학생 설득으로 교외진출을 저지(00망)
- 목원대(대전) 학내 장기농성사태(84.4.12~5.26)시 소요상황·주동자 명단·유인물 등 수집(00망)
- 84.5월 전남대 00000 협의회에 침투, 단체활동 약화 및 회원이탈 공작으로 동 단체 해체 성과(00망)
- 84.5월 전남대 일부 과격학생의 본부 학생과 난입 및 공문서 탈취 등의 폭력 사건 발생시 관련학생 명단 제보로 학교당국의 주동학생 징계 및 경찰수사가 가능(00망)
- 84.5월 이래 경북대에 0000론 강좌를 특별 개설, 건전사상 구심세력 육성을 위해 집중 교육(교직원 00망)

마) 운동권명의 서신 발송차단 대책 강구

운동권 총학생회가 학교 내의 우체국을 통해 서신을 발송하고 수신하는 것과 관련 “학내 우체국과 협조, 관련서신 접수시 일괄 수집 신고조치”⁶⁶⁾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권명의 서신은 원천적으로 정보당국에 의해 검열을 당하고 있었다. 나아가 때로는 학교 내 우체국 뿐 아니라 해당 대학 관내 모든 우체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서신검열을 진행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생들의 방학 중 의식화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작성된 한 문건에서는 “관내 8곳(수원, 평택, 의정부, 성남, 안양, 인천, 부평·부천, 과천 우체국) 주재 검열주재관 19명을 통해서 각 대학 학생회·서클 발송 우편물, 중고교 학생 수신 우편물, 발신자 불기재 우편물에 대한 우검 강화를 지시했다”고 되어 있다.⁶⁷⁾

또한 1987년 3월 27일자 「대학생 의식화 교육장소 제재조치 결과 (OO분실)」 문건에서 보듯, 엠티장소 안내우편물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이 검열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아 서클·문제권 학생들이 발신하는 우편물 뿐 아니라 수신우편물에 대해서도 검열을 시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운동권명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는 중정법 및 안기부법에 명시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조정·감독)규정’⁶⁸⁾이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록 서신검열의 목적이 의식화교육 확산 저지와 궁극적으로는 학원안정화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였다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66) 안기부, 「문제권대학생 중고생 대상 불순편지보내기 운동 추진에 따른 대책」(1986.6.25)

67) 안기부, 「학원 하계의식화활동 관련 경기, 인천지역 봉쇄대책」(1986.7.1)제하 문건의 비고란에는 “우정연구소 주재관협조(6.26)”를 받아 서신검열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의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68)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은 조정 대상기관 중 체신부와 관련 “우편검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시

바) 이념서클 등 통제 강화

◎ 농촌·공단 활동에 대한 통제

「86년 1학기 학원소요분석 및 하계 방학기간 중 대책」(1986.6.18) 문건에서는 방학 중에 예상되는 農活·工活에 대해서 ‘미승인 농촌활동을 일체불허’함은 물론이고 ‘반상회 등을 통해 사전계도’를 독려하면서 관련 기관인 내무부·경찰·문교부·검찰 등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노동자 해방학생연대 투쟁위’ 주관으로 “영등포, 경인공단지역에 100여명 규모의 위장취업학생 침투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대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당국에서는 문제권 학생들이 학생회 주최의 수련회나 서클 엠티 등을 통해서 집중적인 의식화교육이 진행된다고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교외활동과 엠티 등도 통제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동계방학 중 문제학생 의식화 집회실태 및 대처방안」(1986.1.16)이란 문건은 이처럼 대학가에서 연례적으로 열리던 각종 수련회 등에 대한 정보기관의 대응 방식을 잘 보여준다.

동계방학중 문제학생 의식화 집회실태 및 대처방안

1986.1.16

(전략)

2. 실태

가. 동계 캠프

-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경남대 등 5개대 총학생회에서는 학교당국의 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제인물 초청강연 및 토론회, 불순가요 실습 등 각종 의식화 프로그램을 내용을 한 동계 캠프 개설 기도
- 또한 이들은 캠프 개설기간을 2~3일간으로 설정, 토론회나 강연을 장기간 개설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의식화 획책

(중략)

(위 문건에서 계속)

나. 의식화 수련회

- 각 대학 문제학생들은 학내 서클룸, 학교부근 하숙·자취가 및 교외 사찰, 공단지역 등에서 의식화 교육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재경대 지하운동권 학생들은 동계방학 중 노학연대투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구로, 안양, 성남, 반월, 부평 등지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의식화 획책 (이하 내용 중략)

3. 평가

- (중략) 특히 금년을 개헌투쟁의 호기로 판단, 노학연대기반 확대를 위해 공단에 침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불순 의식화 오염도 획책하고 있어 대정부 비판 분위기의 사회확산이 우려
- (중략) 따라서 문제권 학생들의 이러한 의식화 집회를 방지할 경우 신학기 개강 이후 학원 및 사회안정 저해 요인화가 우려

4. 대책

가. 동계캠프

- 학교당국 책임하에 행사 일체 불허, 철저히 저지
 - 행사주동자에 대한 학부모연계지도 및 필요시 행사기간 중 격리조치
 - 초청대상 교수 불참종용, 행사강행 시 학내시설물 폐쇄 및 교문 차단

나. 불순의식화 수련회

- 지역별 유관기관 협조 하에 의식화과정 예상 취약지역(전국 88개 지역) 일제 수색점검
 - 수색시간은 학생들의 집결 및 토론이 예상되는 석식 후 7시 이후에 실시
 - 수색대상지는 각 지역별 유관기관 대책회의 통해 사전 선정 투망식 수색
 - (중략) 수색시는 정북경찰 포함, 사복 및 전경요원으로 혼성 편성
- 처리방안
 - 불순의식화 수련회 참석학생 전원 연행⁶⁹⁾
 - 주동자 및 핵심문제학생은 구류, 극렬의식학생으로 개선의 정이 없을 시 구속 검토

69) 동 문건에는 手記로 ‘필요시 구속’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정보기관은 방학 등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교외활동을 대학 외부의 불순 세력과 연계되는 주요 계기인 동시에 문제학생들을 양산하는 주된 통로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같은 수련회와 엠티 등을 원천적으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이었다. 저학년 등은 “학부모와 서클지도교수 등을 동원하여 사전에 참가치 못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행사 초청대상 교수 불참 종용, 행사 강행시 학내시설물 폐쇄 및 교문 차단”의 방법까지 동원하고자 했다.⁷⁰⁾ 공식적인 수련회나 공개행사⁷¹⁾ 외에 서클의 비밀의식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엠티나 야외수련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엠티나 캠프가 주로 열리는 대상지역을 원천봉쇄하는 방안⁷²⁾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의식화작업이 주로 야외엠티장소 등에서 개최되는 점에 착안, 지역분실에서는 관할지역 내의 문제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 및 예방 대책을 직접 작성 보고하기도 하였다. 안기부 OO분실이 1986. 7. 1 작성한 「학원 하계의식화활동 관련 OO·OO지역 봉쇄대책」에서는 농활, 공활, 하계수련회 등 대학생들의 방학 중 활동에 대한 종합점검 및 예방조치를 작성 보고하였다.

학원 하계의식화활동 관련 OO·OO지역 봉쇄대책

1986.7.1

1. 개요

○ (중략) 분실에서는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불순활동을 최대한 적출 봉쇄하여, 운동권의 투쟁역량강화 기도 저지 (중략) 국제행사 방해책동 근원을 봉쇄키 위한 대책 강구

70) 문교부가 작성한 「'86학년도 학원대책 보고」(1985.12.18)에 따르면 1985년도 “하계방학 중 14개 대학 캠프 행사 완전 저지”한 바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71) 안기부, 「동계방학중 문제학생 의식화 집회실태 및 대처방안(동계캠프 및 학외 아지트 중심)」(1986.1.16)에서는 이 같은 행사의 사례로 매년 1-2월 중 열리던 서울대의 민주광장, 고려대의 안암 겨울대학강좌, 연세대의 겨울백양강좌, 서강대의 학술문화제, 경남대의 겨울민속학교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72) 1987년 3월 26일자 「대학생 의식화교육 장소 제재조치 결과(OO분실)」 문건에서는 남양주 소재의 대학생 엠티장소였던 'OO의 집'이 대학 서클 대표 앞으로 보낸 안내문을 수검하여, 이를 근거로 남양주군청을 조치,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2. 예상문제점 (중략)

3. 대책

가. 기본대책

- 각 기관의 정보망 집중투입 및 주민신고체제를 통해 미승인 불순활동 철저히 차단
- 특별OO망을 투입, 의식화 활동계획 사전 파악 및 활동내용 심층 분석
- 유관기관 공제체제하 집중수색으로 의식화활동 저지 및 주동자 색출
- 우검강화 의식화 서신공세 차단, 공공건물 기습점거 철저히 저지

나. 세부추진대책

(1) 예방 정보활동 강화

- 미승인 농활 및 의식화 활동 포착 (12개 망)

(2) 취약지 아지트 일제 수색

- 합동 수색팀 편성(경찰·시군·교육청·정화위·분실)
- 불시 일제 수색 반복 실시(방학 초기단계 색출 위해 7월초 집중 수색)
- OO·OO지역 취약아지트 대상 (139개소)

(3) 주민신고체제 구축

- 행정조직 총동원 주민신고체제 확립
- 기타 신고 가능 조직 최대 활동(산화감시원 508, 그린벨트 감시원 202, 학도애향대 8,206대, 유원지 관광지부 변영회 258명 등)

* 신고의욕 고취를 위해 신고자에게는 경미 불법사항 목인 등 보상제공 홍보

(4) 위장취업 견제

- 신규취업자에 대한 특별 신원조회 실시,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노무 감독 강화 202개 사업장. 근로자 수신서한 철저히 점검

(이하 내용 생략)

OO분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정보기관이 대학 내에 부식·운영하던 ‘망조직’이 학원통제 및 개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보여준다. 관찰지역 내 대학(서울농대, 성균관대)의 방학중 농활 및 의식화활동 계획은 모두 30개 건이 포착되었는데, 이 정보는 모두 OO분실이 운영하던 ‘망’에 의해 보고된 것이었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를 토대로 예상되는 수련장소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협력, 수색팀을 편성하여 수색을 실시하고, 여기에 더해서 각종 공무원조직(하천감시원 등)과 심지어는 일반시민(하숙·자취방 등)까지도 대학생들의 야외활동의 감시자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감시·보고체계는 정보기관의 학원통제의 양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하겠다.

◎ 이념서클에 대한 통제

정보기관은 이념서클을 이른바 문제권 학생을 양성·배출하는 근거지로 규정하여 ‘이념서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대학별 문제단체 조직현황 및 명단(전학련 삼민투)」(1985.5.28)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당시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던 ‘이념서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u>전국 대학별 문제단체 조직현황 및 명단</u>	1985.5.28
○ 총 33개대 96개(2,762명)로 재경 20개대 62개(1930명), 지방 13개대 34개(832명)	
○ 서울대(5) : 알라성 영화연구회, 민요연구회, 민속가면극연구회, 유네스코학생회, 고전연구회	
○ 연대(8) : 평화문제연구회, 목하회, 성하회, 우리문화연구회, 인간연구회, 국제정치연구회, 현대문화연구회, 유네스코학생회	

(위 문건에서 계속)

- 고대(8) : 불교학생회, 사회과학연구회, 인간학연구회, 청년문제연구회, 인간학연구회, 여성문제연구회, 현대철학회, 민속학연구회
- 성대(8) : 휴머니스트학생회, 민속연구반, 心山연구회, 고전연구반, 민담연구반, 타임연구반, 소리사랑회 , 불교학생회
- 서강대(3) : 민속반, 국악반, 현대문학반
- 한양대(2) : 민속예술연구회, 실천문화연구회
- 외대(4) : 가면극연구회, 정치문화연구반, 민족사상연구반, 배달문화연구반
- 중대(2) : 민속가면극연구회, 전통예술반
- 경희대(4) : 백단, 예맥, 기독교학생회, 민속연구반
- 동대(2) : 농어촌연구부, 민속극연구부
- 건대(2) : 한국민족문화연구회, 민속연구회
- 단대(1) : 전통예술연구회
- 송전대(2) : 기독교학생회, 다형문학회
- 홍익대(2) : 전통문화반, 민속악반
- 국민대(2) : 탈춤반, 문예창작반
- 이대(2) : 노동문화연구회, 한국문화여성연구회
- 숙대(1) : 가면극연구반
- 세종대(1) : 카톨릭 학생회
- 시립대(2) : 민속문화연구반, 기독교학생회
- 광운대(1) : 카톨릭학생회
- 부산대(6) : 공동체연구회, 아카데미, 成我회, 전통예술연구회, 한소리회, 소리터
- 경북대(2) : 민속문단, 농촌문제연구반
- 동아대(2) : 물산장려회, 한두레
- 산업대(2) : 아카데미, 전통예술연구회

(위 문건에서 계속)

- 인하대(1) : 백범사상연구회
- 강원대(2) : 언론문화연구회, 角의모임
- 충북대(2) : 민속연구반, 카톨릭학생반
- 제주대(1) : 카톨릭학생회
- 제주사대(1) : 외동문학회
- 충남대(2) : 민요연구회, 탈춤연구회
- 전북대(4) : 흥사단, 한마당, 말쌈회, 진달래
- 전남대(7) : 기독교학생회, 모닥불, 사회조사연구회, 한국농촌연구회, 아리랑, 용봉문학회, 민속문화연구회
- 조선대(2) : YMCA, 전통문화연구회

동 문건은 비록 현황과약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작성된 문건에서는 문제서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동향과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서클(68개)>73)

○ 재경(49개)

대학별	서클명	등록여부	회장	회원수	핵심인물	문제활동상황	비고
서울대 (3)	총기독교학생회	등록	이OO	86	변OO 김OO	○ 문제교회 등에서 불순집회 개최 ○ 동 회원중 유OO 등이 학원사태 주동(78.10.12)	
	민속극연구회	등록	오OO	30	윤OO	○ 80.2 학원민주화 등 풍자극 현실 비판극 연출 학생 선동	
	사회경제학회	비등록	한O	15	박OO 한OO	○ 불순서적 탐독 문제의식 포지 ○ 학내 문제의식 고취를 위한 불순서클	

73) 안기부, 「전국대학별 문제서클 및 제적학생, 해직교수 현황」 (1981.3.20)

전대	홍사단아카데미	등록	김 0 0	27	곽 0 0 유 0 0	81.2.17 경기 양주소재 00농장에서 동계수련시 회원 유 0 0 등 불순언동	
경희대 (4)	기리기(홍사단)	비등록	이 0 0	15	오 0 0 윤 0 0	o 총장배척 주동 o 학원소요 주동	
	기독교학생회	비등록	김 0 0	80	정 0 0	80.9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 주동	
	백만학생회	등록	문 0	37	차 0 0	총장배척 주도	
	탈출반	비등록	안 0 0	15	조 0 0 주 0 0	총장배척 적극 가담	
고대 (8)	同民會	등록	박 0 0	25	임 0 0 이 0 0	75.4.3 사태 데모 가담	
	기독교학생연합회	등록	이 0 0	25	손 0 0	78.9.14 학내데모 주동	
	민속학연구회	등록	주 0 0	34	백 0 0 이 0 0	78.6.25 학내 데모 가담	
	한국농어촌문제연구회	등록	이 0 0	40	김 0 0	농어촌문제 세미나 개최, 회원 선동	
	홍사단아카데미	비등록	이 0 0	18	송 0 0 한 0 0	o 교련반대 데모 가담 o 78.12 불온유인물 살포사건 가담	
	民脈會	비등록	천 0 0	15	정 0 0 장 0 0	o 78.12 불온유인물 살포사건 가담 o 80.5 학원자율화 시위 가담	
	민족이념연구회	비등록	김 0 0	25	심 0 0 윤 0 0	o 75.4.3 사태 가담 o 80.5 학원자율화 시위 가담	
	겨레사랑회	비등록	박 0 0	10	박 0 0	o 78.6.25 데모 가담 o 80.5 학원자율화 시위 가담	
서강대 (4)	민속문화연구회	등록	김 0 0	27	김 0 0 이 0	77.12.12 회원 부 0 0 등이 구속 학생을 위한 “서강 학술세미나” 개최 기도	
	카톨릭학생회	등록	백 0 0	29	박 0 0	78.5 카톨릭반 중심 데모모의 기도 (당부 와해조치)	
	江 會	비등록	곽 0 0	15	김 0 0	80.4.9 강희서클 명의로 “병영집체 훈련반대” 벽보를 교내 각 게시판에 부착	
	홍사단 아카데미	비등록	박 0 0	15	권 0 0	o 74.4 동회원 권 0 0, 민청학련 서강대책으로 활동 o 78.9.30 동회원 홍 0 0 등이 청평 유원지에서 “유신철폐, 독재정권 타도”등 구호 제창	

성대 (5)	務室학생반	비등록	강 0 0	30	이 0 0 기 0 0	○ 평소 학원소요에 주도적 역할 ○ 10.26 이후 학원소요 주동으로 윤 0 0 등 제적
	동양사상연구반	비등록	신 0 0	50	정 0 0 이 0 0	80.3.25~3.27간 성대 총장배척 시위 등 주동
	언어문화연구반	비등록	정 0 0	38	우 0 0	80.11.6 핵심인물 강 0 0(구속) 주동으로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
	농촌문제연구반	비등록	이 0 0	32	정 0 0 노 0 0	○ 핵심회원 차 0 0은 남민전사건 으로 제적 ○ 핵심회원 이 0 0 등은 10.26 후 소요 주동으로 근신처분
	휴메니스트	비등록	손 0 0	59	이 0 0 백 0 0	80.9.18 핵심인물 이 0 0(수배중) 주동으로 “민족흡혈귀 000 타도 하자” 제하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
세종대	同學會	비등록	이 0 0	10	최 0 0 여 0 0	동서클 회장 이 0 0가 학내 데모 에 적극 가담하는 등 향후 문제성 야기가가능성 포지
숙대 (2)	기독교학생봉사반	등록	이 0 0	32	이 0 0 박 0 0	80.11.10 교내시위시 박정진 등 회원 5명이 적극 가담
	가면극연구반	등록	이 0 0	31	이 0 0	78.10.6 회원 이 0 0이 “4천 숙명인 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제하 불온 유인물 250장 살포
송전대 (2)	홍사단	등록	구 0 0	25	송 0 0 최 0 0	78.6.26 광화문 시위 참가
	우리말 사랑모임	비등록	박 0 0	20	임 0 0 홍 0 0	○ 77.9 대정부소요 가담 ○ 80.5 학원소요 가담
연대 (5)	인간연구회	등록	장 0 0	35	김 0 0	80.5 학원민주화 시위 적극 가담
	[뉴맨]회	등록	안 0 0	70	김 0 0 전 0 0	○ 75.4.5 천주교계 학내연합시위 가담 ○ 80.5 사태 가담
	기독교학생회	등록	이 0 0	30	백 0 0 김 0 0	○ 74.3 民靑 주도 ○ 77.10.12 불온유인물 살포
	탈춤연구회	비등록	최 0 0	40	최 0 0	79.11.27 학원민주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
	木下會	등록	최 0 0	30	최 0 0	75.4.3 사태 가담

외대 (2)	갈무리	비등록	이 0 0	33	김 0 0 최 0 0	80.5 학원 시위시 동 회원들이 적극 가담
	기독교학생회	등록	변 0 0	50	김 0 0	80.5 학원 시위시 동 회원들이 적극 가담
이대 (4)	참술	등록	허 0 0	12	최 0 0	80.1~5월 간 청계피복 노조원 등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요구 기도 회 개최
	민속극연구회	등록	최 0 0	20	김 0 0 구 0 0	77.10 불온유인물 배포 및 연좌 데모 감행
	기독교학생회	등록	유 0 0	20	이 0 0	80.5 불온유인물을 시내 일원에 살포
	불휘	비등록	홍 0 0	15	이 0 0	78.5 “8천 이화인이여” 제하 불온 유인물 배포 시위 기도
한양대 (1)	대학생선교회	등록	송 0 0	33	최 0 0	학내 포교활동을 병자하면서 학생 선동
홍익대 (3)	[카톨릭]반	등록	김 0 0	45	김 0 0	매년 농촌 봉사활동과 성경공부를 병자한 각종 수련회 개최, 문제의식 고취
	[예수]전도반	등록	김 0 0	42	김 0 0	회원들이 공동수련 목적으로 각 대학 예수전도회 회원들과 회합, 타대학과 연계 문제성 내포
	민속극반	비등록	조 0 0	41	양 0 0 김 0 0	o 80.4~5월 학원 자율화를 위한 교내외시위 주도 o 80.10.13 최 0 0 등이 교내 불온 유인물 살포사건 주동
명지대 (1)	홍사단 아카데미	등록	이 0 0	8	장 0 0 장 0 0	80.3.28~5.17간 학원 자율화 및 학내 소요 주동
한신대 (2)	사회과학회	등록	양 0 0	28	이 0 0 이 0 0	80.10.7 학내 시위 주동
	민속학회	등록	박 0 0	17	차 0 0 이 0 0	탈춤 등으로 각종 학내 행사시마다 문제성 야기

○ 지방(19)

※ 구체적 내용은 생략

이상과 같이 각 대학별 이념서클 현황과 더불어 회장 및 핵심인물 신원(성명, 학과, 학년), 회원 수, 그리고 문제활동 상황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보기관이 이념서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 대학신문 등 대학가 출판물 통제

정보기관에서는 대학생들이 발행하던 대학신문과 교지, 기타 각종 유인물들을 포함한 다양한 출판물들이 대학생의 좌경화와 반정부활동의 주재료가 된다는 점에 입각, 이러한 발행물들에 대해서 통제책을 포함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북한의 주장을 직접 인용한 경우나 반정부선동 내용의 발행물을 적발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대학신문은 학원가 출판물 가운데 발행부수도 가장 많았고, 또 학교 당국이 발행비용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인 통제·개입의 대상이 되었다.

1950년대에도 대학언론과 관련된 필화사건은 더러 존재했지만, 국정원 보관 문서들 중 최초의 사례는 1968년 서울대학신문에 수록된 북한관련 기사로 초래된 ‘필화사건’이었다.⁷⁴⁾ 당시 서울대학의 『대학신문』(719호, 68년 9월)에 수록된 “금주의 抄史”에 “9월 9일은 북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었는데, 이를 “소위 북괴정권수립일인 9.9절을 선전 선동”하였다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였다. 이 사건으로 대학신문 편집부장과 기자 등 3명이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고, O O O 교수와 O O 대학장 O O O 교수의 각서⁷⁵⁾도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은 담당수사관의 “훈계방면” 조치제안에 따라 별다른 사법처리 없이 훈방되는 것으로 끝났다.

74) 중정, 「서울대학신문 필화사건」(1968.9)

75) “본인은 이후 학생들로 하여금 불순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학장으로서 전력을 다할 것을 각서 하나이다”라고 제출

1960년대 대학언론이 관련된 필화사건은 산발적·개별적 형태였다면 1980년대 접어들면서 대학신문을 비롯한 대학가 언론은 반정부시위와 좌경화를 선동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 대책 역시 해당 기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사법처리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건전화 유도’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학언론의 체질을 바꾸고자 하였다.

개헌정국으로 혼란스럽던 1986년, 안기부는 「대학신문 비판기사 점증에 따른 대책 긴급요」(1986.5.29)라는 문건에서 5월 12일자 『고대신문』에 실린 “5.18 광주항쟁 6주년 기념” 특집 기사를 포함하여 송전대 5.14일자 광주관련 기사와 전북대 5.19일자 전방입소거부 기사, 연세춘추 등 10여개 대학언론 기사를 간략히 요약한 뒤에 근본적인 대학신문의 ‘건전화 유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학신문 비판기사 점증에 따른 대책 긴급요

1986.5.29

1. 상황

- 최근 일부 대학신문이 운동권 학생들의 압력, 학내 소요분위기에 편승, 불순 기사가 증가하고 또한 내용도 지하불순 유인물과 아주 유사한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어 학내 분위기를 급진 과격성향 오도 우려
- 이런 실정을 감안, 점차 비판성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대학신문을 본래의 기능인 학술 중심의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학내외에 횡행하는 지하 불순 유인물을 압도, 학내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

2. 실태

가. 보도성향

- 전반적 상황 (생략)
- 부분적 상황 (생략)

(위 문건에서 계속)

<사례>

- 고대신문은 5.12일자 6면 “5.18 광주항쟁 6주년 기념” 특집 기사중 ‘유족회’ 등 인터뷰 기사를 통해, 광주항쟁의 역사적 정통성 부여/ 당시 폭도를 민주열사로 부각 / 현정권을 폭력정권으로 매도

(중략)

나. 편집지도 실태 (생략)

다. 편집진 구성 (생략)

3. 전망 (생략)

4. 건전화 유도방안

- 문교부는 각 대학 총학장에게 대학신문 건전화 촉구 공한 발송
- 전국대학신문주간협의회 조정, 대처방안 협의 건전화 유도
- 대학 내 신문편집위원회 등 지도체제 강화
- 기자관리강화(성적우수자 기자채용, 중도탈락, 자진사퇴유도 등)
- 기자 인정감 부여(장학금지급, 산업시찰)
- 대학신문 운영예산 증액
- 학부형, 동창회, 교수 기고란 확대

또한 편집과정에서부터 문제소지가 있는 기사를 제외하고, 취재와 기사 작성을 담당하는 학생기자의 ‘건전화유도’는 대학언론에 대한 정보기관의 일관된 통제원칙으로 굳어졌다.

이는 「O대·OO대, 방학 중 학보사 편집진 건전학생으로 구성 계획」(1986.12.18)이란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안기부는 건국대사태와 관련하여 ‘불순기사’를 작성 게재하려다 학교당국에 의해 저지된 000대 학보의 사례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학교당국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임기만료 기자를 전원 해임하고 편집장 등 학보 간부에 건전학생을 임명하며, 향후 주간교수를 통해 책임지도, 학부모와 연계 철저순화 등 학생기자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대학신문의 근본적인 건전화를 위해 “졸업동문 중에서 편집 책임 조교 임명, 대학원생으로 편집 전임기자 임명, 일반 기자들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등 계획을 수립코 동계방학 중 추진하겠다고면서 “이를 문교부에 통보, 각 대학으로 하여금 학보사 기자 건전화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정보기관에서는 문교당국을 통하여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기자와 기사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학주변 서점가의 ‘불온이념서적’ 역시 정보기관의 주요 감시·통제 대상이었다. 소위 ‘문제서점 및 출판사 일제단속’을 통해서 “불순이념이나 불순세력의 선전”이 대학신문 등 대학가 발행물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시도하였다.

1986.8.25~7일간 4부(안기부·검·경·문공부) 합동 단속(76)을 비롯하여 문제서적과 서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는데, 이는 1990년대에까지 계속되었다.⁷⁷⁾ 또한 「불온서적 제작 판매 관련 수사상황」(1985.5.21) 문건은 당시 정보기관이 소위 ‘불온서적’이라고 명명한 책들을 출판하던 OO, OOO의 주요 관계자에 대한 신원내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은 이념서클 및 대학신문 등을 의식화교육의 진원지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책을 강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6) 안기부, 「대학가 특이동향 및 관련대책(2학기)」(1986.9.3)

77) 안기부, 「당부, 대학가주변 문제서점 운영실태 점검결과」(1991.2) 문건에서는 “이적성 문건 판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지하문건 제작자 색출 등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의 문제서점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 배후세력 및 연계조직에 대한 수사확대

◎ 삼민투 연계조직 수사확대

정보기관은 학원소요와 관련 학내시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맡기는 입장이었으나, 대학 간 연대행사나 연대조직 결성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여 강경하게 대응했다. 예컨대 연합시위가 발생할 경우 대학의 공권력 투입 요청 유무와 상관없이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원칙은 여러 문건에서 확인된다.⁷⁸⁾

1971년 4월 3일 작성된 「서울대학교 연극회 동향조사 및 조정보고」 문건은 사소한 대학간 연합행사도 정보기관의 대응이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서울대 총연극회장이 시내 각 대학 연극서클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연합행사를 개최하고자 시도했는데, 중정에서는 모임주도자를 소환하여 연합행사 자체를 취소시키는 동시에, 서울대의 서클 지도교수 등을 ‘조정’하여 총연극회의 연대행사 자체를 불허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당시 서울대 총연극회의 지도교수였던 000 교수도 같은 날 중정에 출두하여 방대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O 교수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추후 다시 발생할지 모를 ‘불순책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지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 간의 연합집회는 ‘초동 완전봉쇄’ 원칙에 따라 “공권력 투입으로 사전 무산조치”시키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연합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다른 대학으로 소요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이었다. 「대학가 학원소요 특징분석 및 예상전망·대처방안(주요 지방대 학내문제 쟁점)」(1987.4.23) 문건에서는 당시 여러 국립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던 학원자율화와 관련한 교내시위가 “소요발생 동기, 발전과정 및 양상 등에서 공통적 특징을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근거로 “배후조종 사령탑이 학외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8) 안기부, 「대학가 동향분석 및 대책(4.13담화 발표 이후)」(1987.5) 문건에서는 연합시위 뿐 아니라 “연합조직 결성기도 철저 저지, 조직 결성시 주동자 의법조치”라는 표현을 통해 정보기관은 대학 연대조직 결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사실 확인

최근 대학가 학원소요 특징분석 및 예상전망·대처방안

1987.4.23

1. 상황 (생략)

2. 소요특징 분석

가. 종합분석

○ 부산대, 경북대, 제주대의 소요발생 동기, 발전과정 및 양상 등에서 공통적 특징 노정

- 배후조종 사령탑 학외 존재 가능성

- 현안문제가 있는 대학부터 단계적 발생

- 성공대학(부산대) 선례화로 점차확산(“도미노”이론적용)

* 제주대에서 4.20 “부산대투쟁성공보고대회” 개최

- 학내자율권 쟁취, 일반학생 동원 용이 기반 구축 후 일정시기에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시켜 전국연합 획책키 위한 전략적 단계로 분석

나. 대학별 소요 특징상의 공통점 분석

○ 주도세력, 소요양상, 전술·전략 항목으로 구분 설명 (구체적 내용은 생략)

다. 향후 전망

○ 부산대는 4.24 전후하여 총장 학생간 합의사항 즉시이행 요구코 재연 전망이며, 경북대, 제주대는 명분 불투명한 이슈 주장으로 장기화 전망

○ 전국 유사여건 주요 지방대에 확산 전망

○ 전국적 투쟁여건 조성에 성공했다고 판단시 일정시점(5.18전후 추정)에는 재경 주요대에서 선도,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 전국적인 일제 소요 획책 전망

이상과 같이 지방의 국립대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내문제를 둘러싼 시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이후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내놓고 있다.

(위 문서에서 계속)

4. 대책방안

- 유사소요 전국확산 방지, 투쟁전략 분쇄를 위해 적정단계에서 이들 연결고리의 “맥”을 끊는 별도 조치 긴급
 - 부산대 : 소요 재연시
 - 경북대, 제주대 : 소요 장기화 또는 타대학 확산 징후 있을 시 가정학습 실시 등 대처
- * 경북대는 1주 간 소요 지속 중, 다음주에도 지속 장기화될 경우 가정학습 또는 휴업조치 검토
- 금번 소요의 주동학생은 학칙에 의거 징계조치로, 본인 및 배후조종세력에 불이익 감수와 일반학생 동조 차단
- 임시방편으로 학생요구사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버린 대학에 대하여는 교권수호, 지도력 회복차원에서
 - 관련 총학장 문책, 학생과의 이행불가능 협상내용 백지화조치 등 추후 검토 필요
- 현안 학내문제 잠재, 소요유발가능 대학에 대한 예방정보활동 강화 (주동예상학생 순화, 학내문제점 개선 등 선조치)
- 특히 학외 배후조종세력 색출 주력
 - 기존 발생대학(부산대, 경북대) 주동자의 모의단계 추적
 - 발생 예상대학 문제권 핵심부에 망 부식 강화

당시 안기부는 학내문제로 시위가 계속되던 국립대학이 서로 유사한 원인과 전개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통해 이들 대학들을 연계시키고 있는 배후 조종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휴업조치 검토와 함께 총학장 문책이라고 하는 강경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학원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연계조직을 와해시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삼민투’ 사건이다. 경찰은 85년 6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삼민투’조직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안기부는 경찰의 수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삼민투’와 ‘민청련’ 및 EYC(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의 연계관계를 집중 조사토록 수사자료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부가 작성한 「학원가 불순조직 삼민투 및 전학련 수사진행 상황보고」(1985.6) 문건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가 불순조직 3민투 및 전학련 수사진행 상황보고

1985.6

1. 개요

- 1985.4.17 결성된 전학련과 동 행동 전위대인 3민투는 마르크스 혁명 이념과 유사한 노동자 등 소위 피지배계급과 연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망상 하에 극렬폭력투쟁활동 전개
- 더 이상 방치, 조직 확산시는 정국안정은 물론 국가안보마저 위협하는 요인화 우려, 미문화원점거사건을 계기로 동 불순조직에 대해 과감한 척결, 수사 진행 중

2.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 개최 수사방침 확정

- 각 기관 공히 수사필연성 공통인식
- 수사대상자 25명(서울 8개대 14명, 지방 7개대 11명) 확정
- 86.6.14부터 수사본격 착수

<기본방침>

- 3민투 및 전학련 정체규명, 조직 발본 와해
- 핵심주동자는 전원 국가보안법 적용 엄단
- 검찰 지휘 하에 경찰전담수사, 관계기관 적극 지원
- 학원사범의 활동은신거점인 대학내 아지트 일제소탕 병행
- 과감한 대국민 홍보로 국민규탄 여론 조성

(위 문서에서 계속)

3. 수사진행 상황

- 수사대상자 25명 중 8명 검거
- 미검자 17명, 체포전담반 편성(17개조 101명) 수사력 집중
 - 3민 특별위원장 허 O O에 대하여는 별도 전담반 편성(37명), 은신 용의처 집중수사
- 기 구속 중인 미문화원 접거사건 주동자 함 O O, 전학련의장 김 O O 등 2명에 대해서는
 - 3민투 및 전학련 조직결성, 배후, 각 대학 연계관계
 -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계속 추궁

4. 향후 수사처리 방향

- 미검자 17명 조기 검거
- 검거자에 대하여는 일단 집시법 적용 구속후, 국가보안법 혐의 구증 재구속 장기합법수사
- 학내 아지트 은신자 학기말시험 종료시기(6.29 경)⁷⁹⁾에 맞추어 일제 소탕, 관련자 검거

5. 조치

-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긴밀 협조 계속 수사
- 학원가 불순조직 실체규명, 핵심극렬분자 엄단

당초 ‘삼민투’에 대한 수사는 미문화원 접거농성사건(85.5.23)을 계기로 착수되었는데, 상부조직인 ‘전학련’까지 수사 대상이 되어 핵심인물들을 사법처리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1985.7.11 안기부에서 작성한 수사상황 보고(21보)를 통해 ‘민청련’과

79) 경찰은 85년 6월 29일 새벽 4시 서울대 등 서울시내 9개 대학을 급습하여 삼민투사건으로 수배중이던 고려대 박O O 등을 비롯 66명의 수배자를 체포·연행하였고, 시위도구를 압수하였다. 이 조치는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경찰이 대학에 진입한 세 번째 사례였다. 『조선일보』 1985년 6월 30일자 기사 참조

‘EYC’ 등 연계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원 불순 조직 3민투 수사상황 보고(21보)」(1985.7.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불순조직 “3민투” 수사상황 보고(21보)

1985.7.11

(전략)

2. 수사상황

가. 0대 3민투 0000장 0 0 0(7.8 구속송치)

○ 0 0 0이 지난 6.27 15:00경 서울대 총학생회실에서 민청련 사무차장 및 집행부장, EYC 대표, 전학련 3민특별위원장 고대 허 0 0(수배), 전학련 부의장 성대 오 0 0(수배) 등 5명 참석리 ‘민중민주화운동 탄압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의거 동 참석자 신원을 확인코저

○ 당부 수사관이 85.7.10. 17:35~17:50 간 서울지검 고 0 0 검사실에서 동 검사 입회하에 민청련 상임위의장 김 0 0(서울대 경제 4 제적) 등 39명의 확대 사진을 고대 0 0 0에게 대조 확인한 바

○ 민청련 대표 중 1명은 민청련 상임위의장인 김 0 0이 확실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 여타 참석자 미확인

○ 동일 20:00 수사 전담기관인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동 김 0 0을 필포, 민청련, EYC 등 재야 단체 연계 및 배후 불순세력 색출 엄단토록 강력 지시하였음

(김 0 0 신원사항 및 주거지 약도 등 수사자료 제공)

(후략)

이와 같이 ‘민청련’을 ‘삼민투’와의 연계조직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사법 처리를 구상한 것은 수사실무선에서 추진되었으나, 그것을 적극 독려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과 당시 안기부장이란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삼민투’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발표⁸⁰⁾가 있기 직전에 작성된 「학원 불순조직 삼민투 수사상황 보고(22보)」(1985.7.12) 문건의 표지에는 보고자가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報告畢”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필서가 남아 있다.

閣下나 部長님의 최대관심사는 민청련, EYC 등과 삼민투의 연계관계임

동 보고서는 안기부 수사부서에서 경찰의 수사상황을 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當部 통보에 의거 민청련 상임의장 김 O O을 검거, 민청련 및 EYC 연계관계 집중 조사 중”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기부장이 동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이와 같은 지침이 수사부서에 하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안기부는 경찰로 하여금 ‘삼민투’ 수사와는 별도로 ‘민청련’ 핵심간부들에 대한 검거단서 및 수사자료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법처리에 더욱 주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학원 불순조직 3민투 수사상황 보고(22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불순조직 “3민투”수사상황 보고(22보)
1985.7.12

(전략)

2. 수사상황

가. 민민탄(민중민주화운동탄압공동대책위) 관련자 민청련 상임위원장 김 O O 검거 조사(7.11)

*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는 7.10 당부 통보에 의거 7.11 15:50 강서구 신정동 소재 자가에서 잠복 근무타 검거, 민청련·EYC 등 연계관계 집중 조사

80) 검찰은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것으로 알려진 삼민투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5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23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하였다.(『중앙일보』 1985년 7월 18일자 기사 참조). 삼민투에 대한 수사는 출발부터 안기부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는데, 안기부의 조정으로 ‘수사기관실무회의’가 개최되어 6월 14일경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안기부, 「학원 및 노조 배후조직 민청련수사진행 상황 보고」(1985.10)

(위 문건에서 계속)

(중략)

* 당부에서는

- 민민탄 회의 참석자 민청련 집행국장 이 〇 〇 및 EYC 사무국장 황 〇 〇 등 2명 연행, 민청련·EYC 등 관련 혐의 집중 추궁토록 조정하고

- 이 〇 〇, 황 〇 〇 신원자료와 허 〇 〇, 오 〇 〇, 정 〇 〇 사진 등 수사자료 지원

(후략)

한편 ‘서울대민추위사건’은 ‘삼민투’의 배후 불순조직으로 지목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서울대 민추위’ 배후 관련자 검거조사 상황 보고」(1985.9.3)에서는 “당부 조정으로 지난 6.14부터 경찰에서 수사 착수한 3민투 배후 불순조직인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라고 하여 안기부 조정에 의해서 ‘삼민투’ 연계조직으로 ‘서울대 민추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6월경부터 본격화된 삼민투·서울대민추위 수사는 9월경에 이르면 ‘민청련’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 9월 30일 창립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은 1985년 5월 들어 ‘전학련’ 등 대학생 조직과 함께 ‘광주학살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후 EYC 및 전학련과 함께 ‘민중민주화운동탄압에 대한 공동대책회의’(이하 ‘민민탄’)을 결성하기도 했다.

안기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민청련’을 ‘삼민투’ 및 ‘서울대 민추위’ 등 학생운동 조직의 배후조종 세력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집중하였다. 이런 점은 삼민투, 민추위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에 공히 등장하고 있다.

‘서울대 민주위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민청련’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는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전담하고 있었지만, 안기부는 관련 직원을 파견·상근 시키면서 동 사건의 진행방향과 처리방향 등 전반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학원소요 배후조직 ‘서울대민주위’ 등 수사진행 상황 보고」(1985.9.9)문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원소요 배후조직 ‘서울대민주위’ 등 수사진행 상황보고

1985.9.9

(전략)

3. 수사진행 상황

가. 수사개요

○ 요점

- 서울대 민주위 배후세력인 민청련 관련자 김근태, 이OO, 김OO 등 3명은 현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집중 수사 중

※ 당부(O국)는 수사관 상주, 수사조정 및 각종 자료지원

- 상기 관련자에 대한 불순세력 연계, 사상성분, 불순활동사항 등 대공 혐의점 집중조사

- 투쟁목적, 조직규모와 특히 재야, 종교, 노동 등 문제저항단체와의 연계 투쟁관계 추궁

○ 향후 수사처리 방향

- 금번 수사를 계기로 민청련 조직자체를 최소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이상수준으로 擬律 조직와해

-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 강력수사로 사건 실체 전모 규명

- 도주한 민청련 전 집행국장 이OO과 ‘서울대민주위’ 관련 수배자 박OO 등 검거주력

- 관련자 전원 법정중형으로 엄단,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차단

- 수사종료 후 적기에 사건전모 홍보로 학원 소요 배후실상 폭로

(후략)

당시 안기부는 ‘민청련’을 ‘서울대 민주위’의 배후조직으로 수사하면서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적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관의 의지를 반영하듯 당초 김근태를 비롯한 5명의 수사대상자에 더하여 한 O O 등 14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1985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민청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⁸¹⁾ 이들을 체포하고 강압수사를 했던 것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었지만, 앞선 문건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조율은 안기부의 역할이었다.

경찰이 고문이라는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김근태와 민청련을 압박했던 것은⁸²⁾ 당시 권위주의정부가 정국안정과 정권안보를 위해 학생조직의 배후에 좌경불순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정국안정과 정권안보를 위해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안기부는 김근태에 대한 고문시비가 일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민청련 수사에 안기부가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기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인 「‘고문·용공조작 공동대책위’의 허구적 주장에 대한 실상」(1985.11.8)⁸³⁾을 통해 김근태에 대한 고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동 문건에서는 민청련이 “민족민주주의혁명 이론 지원을 받아 민중연합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며 이를 지도하는 김근태는 “3민투,

81) 안기부, 「학원 및 노조 배후조직 민청련 수사진행상황 보고」(1985.10)

82) 민청련의장 김근태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근안은 1999년 11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고문사건 첫 공판에서 “내가 전기고문 기술을 터득해 첫 전기고문을 한 사람이 김근태다”라고 시인했다. (『조선일보』 1999년 11월 26일자 기사 참조)

83) 이 문건의 표지에는 문건 배포기관을 “외무, 내무, 법무, 문공→장관, 정무, 법무→수석, O·O·O국, 3특보” 등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아래에 “11.9, 08:00 朝餐(宮井)”이라고 모임 날짜와 장소로 보이는 표기가 있다, 그 아래에 1~5항에 걸쳐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手記로 간략히 기록해놓았는데, 아마도 11월 9일 오전 8시 궁정동 안기에서 개최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의 것으로 보인다.

깃발, 서울대민주위, 위장취업 노동투쟁으로 이어지는 학원소요 및 각종 노동분쟁 등 학·노 연대투쟁의 배후조종자로 판명되었다”는 것이 당국의 수사결과라며, 이에 대해 반박하는 소위 ‘고문·용공조작 공동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또한 김근태 고문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문·용공 조작 공동대책위’의 허구적 주장에 대한 실상

1985.11.8

(전략)

- 김근태의 ‘민청련’을 배후에서 활동방향 제시, 자금지원을 하면서 현 정권 타도를 궁극적 목표로 활동 중인 재야운동권 세력들은
 - 전위 투쟁전열이 붕괴된 데다 자신들의 배후추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모면, 자신들의 기도를 은폐, 합리화시키기 위해
 - 분명히 밝혀진 사실마저도 부인하고 “고문·용공 조작”이라는 사실무근한 허구적인 주장으로
 - 구속자의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대내외의 여론 환기로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발악적인 자구행위 자행
- 또한 김대중·김영삼 등 ‘민추협’을 중심으로 한 재야정치인들은 고문이라는 정치 외적인 인권문제를 이슈로 재야운동권 단체와 연계세력을 규합, 장외 개헌투쟁의 발판형성을 획책

안기부는 경찰이 전담했던 ‘민청련사건’ 조사 현장에 수사관을 상주시키면서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김근태에 대한 고문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본다. 정보기관이 고문실상에 대한 사실 보고를 통해 추후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를否認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당시 권위주의 정부 하의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할 것이다.

또한 안기부는 1985년 12월 ‘민청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민민련’(의장 문 O O)도 연계조직으로서 사법처리하는 계획을 단계별로 보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비상계엄 발령까지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985년 12월에 작성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계획」이란 문건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계획

1985.12

1. 상황 요약

- 당부 조정에 의해 “3민투, 서울대 민주위사건” 수사에 이어 민청련 수사결과
 - 함OO이 투쟁이론 교양, 문OO·이OO·권OO 등 저항세력과 불순책동 모의 (중략)
 - 민민련(의장 문 O O) 등 저항단체 연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 불순책동
- 혐의 규명, 대표적 대정부 저항 불순단체 적출
- 이와 관련 최근 문제권에서는 민청련 구속자 김근태, 이 O O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 ‘고문 및 용공조작 대책위’를 구성, 대정부 투쟁 전개타가
 - 개헌투쟁으로 전환, 개헌 서명운동 등 획책타 여의치 못할 경우
 - 86.3 대학가 개학과 동시 학원을 비롯한 전체 문제권이 연합, 공동투쟁, 사회안정 파괴책동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제5공화국 후반기 정국안정 도모는 물론
 -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등 국제행사 성공적 수행과
 - 88 평화적 정권교체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민민련’ 등에 대한 단계별 소탕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위 문건에서 계속)

2. 단계별 처리계획

단계별	구 분	시행계획	주요 조치사항	협조기관
1 단 계 85.12.1 ~ 86.2.28	민청련	① 수사종결	<p><기본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전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엄단 ○ 김근태 등 관련 구속자(7명) 관리철저, 공소유지 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묵비권 행사중인 김근태 공소사실 추가 보완 (중략) ○ 수배자 이 O O 등 9명 조기 필포, 공소사실 보완 	검찰 경찰 안기부
		② 홍보계획	<p><D-3, 관계기관 회의개최, 세부계획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시기→ 대학가 방학 후인 86.1월 중 ○ 발표기관→ 검찰(서울지검 공안부장) ○ 발표방법→ 기자회견 형식 발표 ○ 보도문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청련 수사상황 총괄 - 이적단체성 확대 보도 (중략) * 배후세력은 계속 수사중에 있다는 사실만 포함 ○ 보도문 작성방법→ 청와대 정무 1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에서 초안 작성, 관계기관(정무 1, 검찰, 문공부) 구성, 최종안 확정 ○ 홍보계획→ 확대홍보, 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MBC-TV 저녁뉴스 집중보도 및 특집 방영 - D 석간부터 1면 톱으로 확대보도 및 2일간 연속 특집 보도 * 당부 OO에서 지원 	문공부 검찰 정무 1 안기부

(위 문건에서 계속)

단계별	구 분	시행계획	주요 조치사항	협조기관
		③ 조직 완전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발표와 동시 민청련 간판 및 사무실 강제철거 조치 ○ 잔존 세력 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착 동향감시, 사법조치 자료 확보 및 활동 철저 견제 (중략) ○ 제2의 민청련 태동 저지 	검찰 경찰 안기부
		④ 공판대책	<p><D-5 공판대책회의 개최, 세부계획 결정></p> <p>[기본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전원 중형선고, 엄단 조치 - 86.3 개학 전 1심 공판 종료 - 피고인 등 공판정 대정부 규탄 장소화 획책 강력 저지 - 법정내의 소란 및 불순행위자 격리조치 <p>(중략)</p>	법무부 문공부 검찰 경찰 안기부
2 단계 86.1월 ~ 86.5월	민민련	① 조사착수	<p><철저한 보안유지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결정></p> <p>[기본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구속 엄단 조사 - 문제단체 척결 및 문제권 소탕 - 사안에 따라 국보법 적용 검토 - 사회안정 풍토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기→ 대학가 방학이용(85.1월중) ○ 조사기관→ 안기부, 경찰(치본, 시경) ○ 조사대상 (총 43명) <p>* 안기부 조사대상자 10명</p> <p>(중략)</p>	검찰 경찰 법무수석 안기부

(위 문건에서 계속)

단계별	구 분	시행계획	주요 조치사항	협조기관
		② 홍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3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결정 ○ 민청련 계획에 준하여 시행 	문공부 검찰 정무 1 안기부
		③ 예상상황 적극대처	<예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 문제권 연계, 농성·집회·가두 시위 등 투쟁 ○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 학원가 연계 극렬 시위 ○ 국외 인권단체와 연계, 구속자 규명 및 대정부 성토 지원 요청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렬저항 잔존세력 자가차단 조치 및 계속 불법 불순행위 자행시 의법조치 (중략) 	외무부 문공부 문교부 검찰 경찰 안기부
3 단계		위수령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 대처에도 불구하고 일부단체 또는 협소한 지역내에서 집단적 폭력 또는 극렬한 소요사태 발생으로 경찰력만으로는 진압 불가능한 경우 ○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의 요청으로 육군참모총장 승인하에 위수령발동 	문공부 국방부 정무 1
4 단계		경비계엄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지역내 다수 집단에 의한 극렬소요, 주민선동 획책 등 사회혼란이 장기간 지속되고 불순세력의 개입 또는 소요의 사회확산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경비계엄 선포(헌법 52조) 	문공부 국방부

(위 문건에서 계속)

단계별	구 분	시행계획	주요 조치사항	협조기관
5 단 계		비상계엄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순 사회불만 세력이 다수 주민을 선동하여 지속적인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내란으로의 발전이 우려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헌법 52조) 	문공부 국방부 문교부 정무 1 안기부
6 단 계		비상조치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순세력 준동으로 혼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내란 징후가 있거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상조치 발동(헌법 51조) 	문공부 국방부

3. 조 치

- 단계별 처리 계획대로 시행
- 사회안정 풍토 조성하겠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5공화국 정부는 민청련 수사를 계기로 이를 ‘민민련’ 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이른바 문제단체들을 와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일련의 수사를 통해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과 평화적 정권 교체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국안정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단계별 처리계획대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반발로 인한 사회혼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비상조치 등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노·학 연계활동 통제

‘문제권 학생’들과 노동운동 조직 간의 연계문제 역시 당시 정보기관의 주요 관심이 되기도 했다. 이른바 노·학 연계투쟁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1987년 8월 작성된 「최근 노사분규관련 외부 개입 불순세력 수사처리 대책」 문건은 그와 같은 사례를 잘 보여준다.

최근 노사분규 관련 외부개입 불순세력 수사처리대책

1987.8

(전략)

- 한편 노사분규의 일부 현장에서는 (중략) 학원가의 불법투쟁 양상이 재현되고 있는바
 - 이는 근로자들을 불순목적에 이용하려는 세력과 연계한 교계, 재야, 야당 정치권 등 외부 불순세력이 개입, 지원하고 있는 증거로서
 - 방치시는 노동계가 노학연대, 계급투쟁, 노동자 폭력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좌경용공 세력권이 장악, 국가경제 파국, 체제전복사태가 우려되는 국면이 예상
- 이에 대처키 위한 최근 노사분규의 외부개입 배후 불순세력 색출 수사처리 대책임

(중략)

- 한편 북괴는 남한 혁명에 있어 노동자, 농민을 주력군으로 청년 학생을 이들의 지원 보조 역량으로 설정하고
 - 먼저 청년학생을 ‘김일성 주체사상’, ‘대남 적화혁명이론’으로 의식화 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노동자, 농민을 각성, 조직화 시키는 ‘혁명의 교량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 노동자 농민에게 ‘혁명의 씨앗’을 전파할 것을 계속 선전, 선동해 오다가

(위 문건에서 계속)

○ 또한 노사분규와 관련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8.2 이후)

- 한국사회 변혁 운동의 귀추를 좌우하는 결정력이며 주력군인 노동자는 노동 3권, 생존권 수호 투쟁 전개
- 전국 노동자는 부산, 울산, 창원 등지의 노동자 투쟁에 적극 호응, 공동 연대투쟁 전개

(중략)

7. 수사대책

가. 기본방향

- 기업, 노사문제는 국가경제, 국민 생존에 직결된 중대사로 사업장에 대한 외부 개입 불순분자 및 좌경 용공세력은 전수사력을 총동원 대공 차원에서 발본색원, 척결
-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합동수사체제 구축, 검찰 수사 지휘 하에 노동 사업장 개입, 노사분규 선동 불순세력 집중 내·수사
- 위장취업자, 해고근로자, 노동현장 침투 좌경세력, 인노련 등 불순 노동조직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 심층 내사

(후략)

이에 따라 안기부 제1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사대책위원회’⁸⁴⁾를 설치하고, 대검공안부장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한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생운동 조직에 대한 배후세력 및 연계조직 와해는 통치권자의 주요 관심대상이기도 했으며, 정보기관 또한 이들 조직의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84) 이 수사대책위원회는 안기부 1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대검차장, 치안본부장, 보안사 참모장, 노동문공부 차관이며, 간사는 대검공안부장과 안기부 O국장이 담당하였다.

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조정권 행사

과거 중정 및 안기부가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사실 ‘정보조정협의회(정보위원회)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대책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어 각종 대책방안이 수립·시행되었다는 것을 국정원 보존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학원문제가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중정 시절에는 ‘정보위원회규정’에 의거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기관(외무·내무·법무·국방 등) 국장급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토록 했다. 그러나 1980년 안기부로 개명한 이후 ‘정보조정협의회규정’으로 개정되어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각 기관 장관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산하에 차장이 위원장이 되어 각 기관별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정보 및 보안업무 운영상 조정을 요하는 사항’ 등을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자료상에 ‘정보조정협의회’란 정식 용어를 사용한 문건은 없으나, 회의 주관자 및 참석자, 회의 안건 등을 통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정보조정협의회’ 형식으로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관계기관 대책회의관련 주요사례

예컨대 「신학기 학원대책 추진상황보고」(1984.2.29)에 의하면 1984년 2월 22일~26일 간 안기부장 주재 하에 내무·문교·문공 세 장관과 치안본부장, 보안사령관, 민정수석 등이 차례로 학원문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학내소요 발생시 대처방안, 학외 소요 확산시 대처방안, 학원 내 정보활동 방식, 언론을 통한 홍보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 10월 20일~21일 간에도 안기부장 주재로 학원문제 관계장관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는

내무장관, 법무장관, 문교장관, 문공장관, 서울대총장, 보안사령관, 청와대 정부1수석, 교문수석, 치안본부장, 안기부 1차장, 문교부 교육정책실장, 문공부 홍조실장, 안기부 국장(2명) 등으로 서울대 중간고사 거부행위에 대한 대책방안을 협의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정보조정협의회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최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학원문제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마련된 각 기관별 임무에 따라 총체적으로 학원 및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실제 학원사범 문제 등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주요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학기 학원대책 관련 공안기관 실무회의 개최결과」라는 문건을 보면 회의 참석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청와대 학원비서관, 민정당 전문위원, 총리실 정보비서관, 문교부 학사심의관, 문공부 공보기획관, 대검 공안검사, 치본 정보 2부장 및 경비부장, 시경 정보과장, O국 부국장, O국·O국·OO분실 OO과장 및 OO 연구관이 참석.⁸⁵⁾

위와 같은 공안기관 실무회의는 청와대, 여당, 경찰, 관련 정부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명실상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회의는 안기부 O국장 주재했으며, 특히 당시 중요사안이었던 박종철⁸⁶⁾ 49제 관련 불순활동 저지대책과, 학내건전세력 정착, 문제교수 관리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85) 안기부, 「신학기 학원대책 관련 공안기관 실무회의 개최결과」(1987.2.21)

86) 이른바 정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및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하여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국정원 존안자료에서 부천서사건과 관련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후속대책과 관련한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종철 사망 1년차 불순집회 관련 대책회의 결과」(1988.1.12) 문건이 있는데, 이 회의는 문교부 주관의 ‘학원대책 실무소위’로서 박종철 1주기와 관련하여 “사건 담당검사 및 부검의사 폭로기사에 자극, 집회규모 확대 및 대정부 불신조장으로 비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대책 일일 점검, 새로운 불씨 사전 제거에 주력”한다고 하면서 주로 학원에 미칠 과장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학기 학원대책관련 공안기관 실무회의 개최결과

1987.2.21

1. 개황 (생략)

2. 협의내용

가. 신학기 전망

- 인권문제, 개헌정국 등에 편승
 - 박종철 49재 악용, 사태 조기 유발
 - 4.19, 5.17 등 연례적 취약일 겨냥 소요 대규모화
 - 야권과의 연대투쟁 강화 등 획책
- 소요 이슈는
 - 개강직후 인권문제 집중 거론 후 정치적 이슈로 전환
 - 반미 좌경 이슈 지속 제기
- 소요 양상은 국내외 이목 집중을 위한 극렬행위 수시 자행하면서 야권과 연계, 연합활동도 전개
- 소요 조직은 민민투, 자민투, 전학련 건준위 등이 계속 전위대 역할 자행

3. 대책

- 박종철 49재 관련 불순책동 철저 저지
- 학교 당국 자구 능력 배양
- 학내 건전세력 정착
- 신입생 의식오염 차단
- 학부모 자녀간 대화 적극 유도
-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강화
- 경찰 과잉진압 개선
- 문제교수 관리 강화
- 사태 조기 예방체제 확립

한편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그 범위가 ‘정보조정협의회규정’에 명시된 ‘실무협의회’ 보다 확대되어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대학생 농활관련 대처방안」(1985.6) 문건에서 보듯 정보기관은 문교부나 경찰 외에 농림부, 내무부 등 대학생들의 활동에 관계된 다양한 부처들과 비상시적인 협조 체제도 구축하였다.

정례회의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을 빌려 정보기관이 관련자들을 초치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방식도 자주 이용되었다. 「대학가 특이동향 및 관련대책」(1986.9.3)에 따르면 안기부 0국장은 서울대 등 전국 11개 주요대학(재경 8개대, 지방 3개대) 학생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 2학기 개강대비 학원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이 회의는 개학을 앞둔 8월 26일 힐튼호텔에서 열렸는데 주요 안건은 “수배자(88명)에 대한 학부모 자수유도, 아시아대회 방해책동 관련대책, 개헌반대책동 관련 학교 측과 당국간 긴밀 협조” 등이었다.

이 외에도 건전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시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기부 0000장이 00지역 소재 5개 대학 총장을 초치하여 간담회를 주재했던 사례⁸⁷⁾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의 업무조정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정례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안건에 따라 이렇게 열렸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아마도 수사상의 업무 조정·협조를 위해 개최되었던 ‘수사기관 실무대책회의’⁸⁸⁾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민투·전학련 수사를 위해 개최되었던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가 그 중 하나이다.

「학원가 불순조직 삼민투 및 전학련 수사진행 상황보고」(1985)에 의하면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사방침을 확정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수사 필연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수사의

87) 안기부, 「전북지역 대학생 건전화 일환 산업시찰 지도급 대상계획」(1987.3.26)

88) 명칭은 작성된 문건마다 일치되지 않다.

기본방침을 “삼민투 및 전학련의 정체를 규명하고, 조직을 발본·와해” 시키는데 두었다. 또한 “핵심주동자는 전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엄단하고, 검찰 지휘 하에 경찰아 전담수사하고 관계기관에서 적극 지원”하며, “학원사범의 활동 거점인 대학 내 아지트에 대한 일제 소탕도 병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수사대상자 25명 중 8명이 검거된 상태였는데, 동 회의에서는 “미검자 17명에 대해서는 체포전담반(17개조 101명)을 편성하여 수사력을 집중”토록 하며, “특히 삼민특별위원장 허 O O에 대하여는 별도전담반을 편성(37명)하여 은신 용의처를 집중 수사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검거된 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집시법을 적용하여 구속한 다음, 국보법 혐의를 구증하여 재구속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합법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며, 삼민투와 전학련을 상대로 한 당시 안기부의 강력한 수사의지가 동 회의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수사과정뿐 아니라 수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효과까지 고려하여 “과감한 대국민 홍보로 국민규탄 여론을 조성토록 한다”고 결정하였다.

「6.10 이후 소요난동 주동 및 배후세력 수사처리대책」(1987.6.30) 역시 전형적인 ‘수사기관 실무대책회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6.10항쟁 주역들에 대한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분담 및 대처방안을 담고 있는데, 안기부를 비롯 보안사와 경찰 간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통해 수사대상자를 분담하고 있다. 「불법소요 주동 및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상황보고」(1987.7.9)는 업무분담에 따라 실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실무대책회의’관련 기록이다. 이 기록을 보면 앞선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분담이 안기부가 주관한 ‘수사실무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상자 158명을 각 기관별로 할당(안기부 35, 보안사 22, 경찰 101)하여 3개 기관 공조체제를 통해 배후세력을 색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학원관련 시국사건의 수사는 이처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실무자

들을 파견·구성되는 회의가 수시로 열려서 수사방침과 여론홍보 등의 문제를 토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사기관 실무대책회의’는 이듬해 1988년에도 계속되었다. 「좌경폭력세력 수사대책보고」(1988.8.22)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수배되어 있는 좌경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검거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안기부와 경찰, 보안사, 검찰 등의 업무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좌경폭력세력 수사대책보고

1988.8.22

(전략)

3. 수사대책

- 올림픽 안전확보 차원의 좌경폭력세력 조기검거를 위하여
 - 당부(0국) 주관으로 8.18 및 8.20 등 2차에 걸쳐 검찰, 경찰, 보안사, 안기부 등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수사대책 수립

(중략)

라. 수사관 및 경찰기동대 사기진작 방안검토

- 현재 경찰은 공개수배자(37명) 검거자에 대하여는 특별예산(86.12 대통령 특별지원금)에 따라 특진 및 상금(00만원) 등 실시중이나
 - 수·내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 없이 내무장관 지원금(00만원)으로 대상자의 중요도에 따라 00-00만원씩 지급다가 8.15 이후 자금부족으로 중단
- * 8.6 부장님의 전국 13개 시도경에 대한 수사경찰관 격려금(00만원) 지급으로 심기일전하여 검거실적(22명 검거)이 좋았다고 평가
 - 따라서 별도 포상예산 확보, 특진, 특별휴가 등 구체적인 사기진작 방안 강구, 현재 경찰에서 요청한 수배자검거 포상예산 00만원 심의중 (경제기획원)

이상과 같이 수배자검거 및 사법처리 등의 협의를 하기 위한 ‘수사기관 실무대책회의’가 안기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수배자 검거 독려 및 격려 목적으로 대통령 특별지원금이 책정되고, 내무장관 지원금과 안기부장의 경찰에 격려금을 전달 등 사기진작 방안도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가 출판물에 게재되던 주체사상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소집되었던 대책회의 역시 이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88년 9월 6일 안기부 안가에서는 O국 주관으로 6개 관계기관(검찰, 경찰, 보안사, 문교부, 문공부, 안기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담당해야 할 대책이 조율·조정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가 일부 대학신문 주체사상 등 게재관련 대책회의결과 보고

1988.9.6

1. 개요

- 최근 서울대를 비롯 일부 대학신문(학보)에 ‘김일성과 주체사상’과 항일무장투쟁사(민족해방운동) 및 북한의 조국통일론 등 북괴 찬양 기사를 게재, 점차 타 대학에도 확산 전망.

<문제기사 게재 현황>

OO대신문	○ 유물변증법과 주체사상(8.29자) ○ 항일무장투쟁사(9.5자)
OO여대학보	○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을 가다(8.27자)
OO대신문	○ 북한사회의 인식과 통일(8.25자) ○ 항일무장 투쟁(9.1 자)
O대 학보 “OO”지	○ 북한의 조국통일 방법론(8.31자)
OOOO	○ 주체사상의 형성과정(9.5자)

(위 문건에서 계속)

- 9.6 14:00-17:00 간 안가에서 당부(3국), 검찰, 경찰, 보안사, 문교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6개기관 10명) 합동수사본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처리대책을 협의하였음.

2. 회의결과

가. 불순기사 게재 배후 분석 (생략)

나. 수사대책 (생략)

다. 확산방지 대책

- 문교부에서 현재 각 대학 신문이 학교당국의 완전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 총장 보직교수 및 신문지도교수 등으로 하여금 불순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특별지도

- 불순기사 게재시는 체제수호와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므로 이념교수로 하여금 불순기사 내용을 비판 반박하는 기사를 계속 게재토록 유도

※ 9.5자 대학신문엔 전OO 교수의 주체사상 비판 기사 게재

- 총장, 보직교수 및 신문지도 교수들이 끝까지 예방노력 계속,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시, 신문발행 지원중단으로 대학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불법 유인물화

- 각 대학 신문 주간단 회의 개최, 대학신문 좌경화의 심각성을 인식케 하고 불순기사 게재 방지대책 강구토록 유도(이상 문교부)

라. 홍보대책

- 문공부에서 대학신문 논조를 분석한 생자료를 언론사에 제공 비판 및 특집기사화 유도

- 언론에 대한 최근 좌경세력의 체제전복 등 심각한 양상을 이해 비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문교부장관, 차관이 언론사 간부들과 좌담회 형식으로 최근 대학신문의 김일성 주체사상 등 찬양기사 내용과 좌경화의 심각성을 설명, 실상 보도 유도

(위 문서에서 계속)

○ 통일원 문공부 등 정부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선전과 북괴 체제 및 부자 세습체제의 허구성, 독재성 등을 비판하는 이념 홍보대책 강구

마. 재야 등 각 분야 좌경인물에 대한 처리 대책

○ 지난 9.3 KBS-TV 심야토론회에서 주체사상찬양 등 친북용공 불순 언동을 자행한 홍 ○ ○ 목사(○○교회) 및 친북괴 상습 용공발언 자행자 이 ○ ○ 교수(○○대) 등 좌경용공 인물에 대해서는

○ 현재 채증 확보한 범법자료와 향후 동향 철저 채증, 올림픽 후 엄격한 사법조치⁸⁹⁾

위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검거활동 외에도 대학가의 좌경세력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활동 등에 대해 정부기관간에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가의 주요 시국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가운데 주목을 요하는 또 다른 경우는 ‘전대협’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기관은 80년대 중반부터 학생운동을 반체제·친북활동으로 규정하여 시민사회와 국민 여론으로부터 학생운동을 떼어내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 왔는데, 이른바 ‘자민투계열’로 분류된 ‘전대협’의 출현은 적절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대학간의 연대조직이나 전국적 조직은 굳이 친북·좌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기관에서 적극 저지하고자 했던 점 역시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정보기관은 다른 학원관련 조직사건 수사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전대협’의 출범 이후에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조직·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89) 홍 ○ ○ 목사는 9월 14일 한국전 참전용사의 고발로 입건되었고, 이 ○ ○ 교수는 이듬해인 1989년 4월 14일 입북예비모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대협’ 집행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범당국의 수배·검거의 대상이 되었지만, 기수를 거듭하면서 조직은 유지·확대되어 갔다. 따라서 정보당국 으로서는 매번 집행부에 대해 구체적인 범법사실에 근거해 수배·검거할 것이 아니라, 단체 자체를 ‘불법화’하여 항구적으로 ‘전대협’을 와해시키는 구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안기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대협 처리대책 관련 유관기관 실무회의 결과」(1991.11.27)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대협 처리대책 관련 유관기관 실무회의 결과

1991.11.27

1. 개요

- 전대협은 당국(O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장, 정책위원, 조통위원 등 핵심 간부들을 검거함으로써 투쟁력이 약화되었으나
 - 최근 북한측과 빈번한 서신교류 및 이수경 통일문학상 행사를 빙자, 팩스 연락을 하고
 - 12.1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약칭 : 전국연합)’ 결성을 계기로 재야, 노동 등 각 분야와 연계, 내년도 정치일정에 편승하여 선거방해 등 불순책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 전대협 자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근원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 11.26 당부(O국) 주관으로 검찰·경찰·교육부 등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 전대협 처리대책을 협의하였음

2. 회의결과

- 전대협의 강령 및 총투쟁노선 등을 분석한 결과
 - 전대협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이론을 추종 반미,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고
 - 북한과 수시로 서신교류, 팩스연락을 하면서 ‘고려연방제’에 동조,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 문건에서 계속)

- 특히 반국가단체인 ‘자민통’ 등 지하혁명조직의 배후조종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므로
- o 각 기관 공히 법률상 이적단체 의율이 가능하며
 - 또한 이들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으므로
 - 전대협 자체를 근본적으로 와해, 소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o 검찰에서 조속 이적단체 의율에 따른 장단점, 시기 및 홍보방법 등을 정밀 검토키로 결정하였음

3. 조치

유관기관과 긴밀 협조, 전대협 와해 방안 강구하겠음.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문제는 ‘공안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조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1992년 1월 8일 작성된 「전대협 ‘이적단체’ 규정관련 유관기관 실무회의 결과」 문건을 통해 볼 때 이 회의에서 검찰 등의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이적단체 규정’을 관철시킨 것은 바로 안기부였다. 검찰(대검공안 O과장, 지검 안OO 검사), 경찰(경찰청 정보 O과장), 교육부(대학정책실 학사심의관), 안기부(O국 수사O과 계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그간 이 문제를 두고 각 기관별로 검토한 내용을 두고 토의를 벌였다. 법률적으로는 ‘전대협’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데에 공히 합의하였지만, 실제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공개적인 수사·홍보활동을 벌이는 데에 검찰·경찰·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안기부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이적단체 규정을 강력제시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의 반대논리와 이에 맞선 안기부의 설득논리는 다음 문건에서 잘 드러나 있다.

전대협 ‘이적단체’ 규정관련 유관기관 실무회의 결과

1992.1.8

1. 개요

- 92.1.8 10:00-12:30 간 대검(공안 3과) 주관으로 경찰, 교육부, 안기부 등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 전대협 자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수사처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였음

2. 회의결과

가. 전대협의 이적단체성

- 각 기관 공히 전대협이
 -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이론을 추종, 반미 반파쇼투쟁을 전개하고 연방제 통일론에 동조하고 있는 등 북한을 추종하는 조직임이 분명하고
 - 명칭은 ‘협의회’이나 실질적으로 각 지구대협과 집행국, 정책위원회, 조통위원회 등 산하기구를 두고 있는 단일 조직체계이므로 단체성도 인정할 수 있어
- 법률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데 의견일치

나. 이적단체로 규정, 홍보 및 수사처리문제

- 검찰, 경찰, 교육부 등 3개 기관은 전대협을 북한 추종단체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일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학원분위기가 일반 학생까지 가세, 극렬해질 것이 예상되며
 - 이적단체로 홍보해놓고 검거실적이 부진할 경우 야당, 재야 등으로부터 정치적 (선거일정 등)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위 문서에서 계속)

- 현 제5기 핵심간부 대부분이 구속 또는 수배 중이므로 전대협 자체를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제5기 임기가 92.1중 종료되어 이적단체로 규정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 현재 전대협의 활동이 부진하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적단체로 규정할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는 등 이유로 현시점에서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규정, 홍보하는데 반대

○ 당부는 이와같은 반대이론에 대해

- 전대협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이므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 전대협의 이적성을 확실히 인정하면서도 수사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안기관 스스로의 모순이며
 - 일반학생들이 일시적으로는 다소 반발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운동권과 일반학생들을 명확히 분리하는 효과가 있고
 - 제5기 전대협 간부 대부분이 구속되었다 하나 이는 집시법, 화염병처벌법 등으로 개별처리된 것이며 전대협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치 않을 경우 투쟁국 등 집행부 핵심세력 전원을 색출 처벌키 곤란하고
 - 제5기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구성될 제6기 전대협에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의 가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도 가입할 경우는 강력히 척결할 명분도 확보되므로, 금번 동계방학기간을 이용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규정, 수사처리하자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음
- ※대검은 위와 같은 혐의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정밀히 검토, 상부 보고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함

3. 조치

검찰과 긴밀 협의, 세부대책을 수립하겠음.

당시 안기부는 학원사범에 대해 사안별로 검거·수배를 통해 ‘전대협’의 활동을 사실상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타 기관과 달리,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원내 세력관계 (문제권vs건전학생) 등을 고려하여 ‘전대협’ 주도인물들을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 문제활동(학생회, 서클 등)이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그야말로 발본색원하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치의견을 통해 “검찰과 긴밀 협의, 세부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전대협’은 대법원의 판시에 의해 이적단체로 결정되었다.

대학생들의 전국조직에 대한 정보기관의 이 같은 강력한 대응사례는 이후 ‘한총련’ 사례에서도 확인된다.⁹⁰⁾ 위와 같은 수사협조나 현안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와 달리, 빈도는 낮았지만 성격상 전반적인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고위급의 대책회의 역시 주목을 요한다. 1984년 학원자율화조치의 경우 해당 정책은 대학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거의 모든 정부부처들과의 협력·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84년 2월 22일부터 26일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데 바로 이 같은 연쇄회의를 사실상 주도한 것은 안기부였다.

안기부는 1983년 연말 발표된 학원자율화조치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개학 이전 정부부처의 일사 분란한 대처와 여론 환기작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원대책부처 관계관회의’를 주도하였다. 다섯 차례의 회의는 모두 안기부 회의실에서 열렸고, 안기부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였다. 첫날 22일 회의에는 내무장관, 문교장관, 치안본부장이, 23일에는 보안사령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24일은 민정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무 제1수석, 25일에는 청와대 교문수석, 정무 제2수석, 26일 회의에는 문교장관, 문공장관,

90) 본 조사보고서는 90년대 초반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총련과 관련된 문건들은 참조만 하고 서술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한총련과 관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다음의 문건들을 참조할 수 있다. 안기부, 「한총련의 실체」(1994.8), 안기부, 「광주지역 공안기관장, 한총련집회 적극 대처방침 수립」(1997.4.4), 안기부, 「경남지역 공안기관, 한총련 와해 적극 대처 다짐」(1997.6.1)

정무 1수석, 민정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보안사령관, 치안본부장 등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다. 한편 24일과 25일에는 관계관 회의를 전후하여 안기부장이 OO일보 사장과 OO일보 명예회장을 따로 만나, 학원대책추진과 관련된 언론사의 협조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일련의 회의를 통해서 학내소요 발생시의 대처방식, 학외 소요 확산시 대처방식, 신학기 경찰병력 운용방식, 학원 내 정보활동 방식, 소요 주동자 처리, 홍보대책 추진방식, 학원 외로부터의 학생선동 방지대책 등 84년도 정부의 학원대책이 성공하기 위해 여러 정부부처 및 언론사 등의 협력체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소요대처 및 경찰운용, 소요주동자 처리 등은 모두 경찰, 문교부, 대학당국 등이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연쇄적인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업무분담과 정부 측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홍보대책이나 외부의 학생선동 방지대책 등은 언론사와 야당을 상대로 협조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언론사 社主와 청와대 및 여당 고위층의 협조를 필요로 한 사안이었다. 각 기관별로 제시된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내소요 발생시 일단 ‘학원의 자율처리원칙’을 세운만큼 경찰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말고 대학의 총학장, 교수, 직원 등이 설득, 순화로 저지 (문교, 경찰 등 전 관계관)
- 경찰 병력은 총학장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학내에 진입, 소요 진압 (문교, 경찰 등 전 관계관)
- 대학교수들이 소요현장에서 적극 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무성의, 무책임한 경우는 해당자 개인 또는 총학장을 엄중 문책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시혜 박탈 등과 같은 책임추궁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조치(문교, 교문)
- 학내소요가 극렬화하는 경우(방화, 파괴, 교수구타 등)에는 마스크를 통한 보도로 여론 일으킨 후 경찰이 진압(전 관계관)
- 학생들에 의한 파출소, 지구당사 등 공공기관 투석 등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마스크에 보도하도록 하고 규탄여론을 유도 (문공, 민정사무총장)

- 신학기 경찰병력 운용은, 정보활동을 위한 A요원(관할경찰서 정보과요원)만으로 수행하되 지면 있는 요원교체 등으로 비노출 활동, B·C 요원은 전원 철수(경찰). 경찰의 학내 CP는 일단 철수 또는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경찰)
- 소요발생시 학교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A·B·C 요원 및 진압요원을 전면 투입하여 진압하되, 이 경우 “학교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보도에도 명시. 무분별한 경찰투입요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병력 투입 요청 시에는 교수회의 등과 같이 신중한 절차를 밟도록 권장.(교문, 문교, 기타 관계관)
- 학원 내 정보활동방식은,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망 운영을 강화(안기부, 경찰, 보안사)
- 경찰대신 채증활동(녹화, 촬영)을 담당할 수 있는 채증 협조자를 확보(전 수사정보기관)
- 쉰 정보·수사기관 학원요원의 활동에 있어서 교수의 권위존중 등 신중한 처신으로 부작용을 방지(민정사무총장)
- 홍보대책 추진방식으로는 신학기 학원대책 성공의 관건은 국민적 지지여론을 선점하는 것이다. 교수의 사기양양과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마스크 홍보대책이 가장 중요한 대책(전 관계관)
- 홍보대책 추진을 위하여 문공부장관 책임하에서 Task Force를 구성하고, 각 기관 참여 지원 하에 1학기 간 상설 운영토록(정부1, 문공)
- 주요대 대학총장들을 상대로 언론기고를 강력히 유도(문교부)
- 언론의 자발적 협조유도를 위해 언론에 대한 성의 있는 설득과 협조를 강화토록(보안사, 민정, 민정관계자)
- 학원외부로부터의 학생선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21회 임시국회 시 학생선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인기 발언이 없도록 야당의원 등을 순화하고 각 정당간 합의를 유도(※ 안기부 조치 중)⁹¹⁾

위와 같이 안기부장 주재로 관계장관 등이 참석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한 사례에서 보듯이 권위주의정부 시절 학원문제와 관련한 중요사안 발생시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91) 안기부, 「1984년 신학기 학원대책추진상황보고」(1984.2.29)

◎ 학원사범 중형주의 원칙 고수 92)

권위주의정부 시절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들의 사범처리는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보다는 중형주의·엄벌주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선고가 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중형주의 원칙이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안기부에서 작성한 「학원 현안문제점 및 대처방안」(1983.12.1)이란 문건 내용을 보면 당시 현직 판사들은 ‘학원사범 처리와 관련 재량권 제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사법부가 학원관련 공안사건에서 외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학원현안 문제점 및 대처방안

1983.12.1

(전략)

4. 학원사태관련자 엄벌처리주의

1. 실태

- 83년 이후 검찰에서는 학원사범에 대해 최소 3년, 최고 5년형 구형으로 일관성 있는 엄벌처리 원칙
- ※ 검찰은 학원사범에 대한 경찰의견을 최대한 인정, 거의 100% 영장 발부, 구속기소 처리
- 법원은 검찰구형의 최소한 1/2 이상 선고원칙 하에 평균 징역 2년형 이상 선고
- ※ 83년부터 병역기피목적 학원사범은 반드시 3년형 이상 선고 원칙

92) 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 ‘사범분야 보고서’의 「제Ⅱ장 제2절 가항 ‘학생 시위에 중형 구형’」에 보다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 o 83년 학원사범(기결) 103명의 선고형량 분석(83년 11.29 현재)
 - 1년 : 6명, 1년 6개월 : 55명, 2년 : 23명, 2년 6개월 : 9명, 3년 : 9명, 5년 : 1명

* 1년 6개월이 전체의 53% 점유

2. 문제점

- o 사법처리의 경직성으로 학원의 대사법부 불신감, 대정부 불만감 조성
- o 어린 학생들을 최고형인 징역 5년형으로 구형, 중형 선고하는 현 사법처리에 대한 비판여론
- o 학원사범 엄벌원칙으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도 관용처리 회피경향
- o 일부 판사들의 학원사범처리의 재량권 제한에 노골적 불만 표시

동 문건에서는 학원사범에 대한 선고형량에 대해 “법원은 검찰구형의 최소한 1/2 이상 선고원칙 하에 평균 징역 2년형 이상을 선고하고 있으며, 특히 83년부터 병역기피목적 학원사범은 반드시 3년형 이상 선고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1983년 학원사범 103명에 대한 선고형량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97명이 1년 6개월 이상의 선고형량을 보이고 있다.

이 처럼 학원사범에 대한 중형선고 원칙 및 재량권 제한에 대해 판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학원사범에 대한 형량선고는 사법부의 자율에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경직성에 대한 판사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학원사범에 대한 중형선고의 원칙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입장이었다. 다만 안기부는 중형 엄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구속자 누증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대통령 특사조치를 건의하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 계속)

3. 개선방안

- 일단 구속된 학생사범들은 지속적 사후 순화에도 불구하고 반성 또는 의식 전환 사례가 별무하고 법원의 학원사범에 대한 현재의 중형선고원칙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확립
- 중형선고원칙이 무너지면 법원의 생리상 학원사범 재판에 대한 통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 따라서 현행 중형엄벌주의 처리원칙은 계속 고수하되 구속자 누증으로 인한 부담해소를 위해
 - 최초 구속단계에서 대상자 기록, 잔형 기간 등을 고려 1년에 1~2회 각하의 특사조치로 탄력성 있게 대처

한편 정보기관이 학원사범 처리와 관련하여 사법부에까지 조정권을 행사했다는 정황자료도 발견되었다. 「학원사태 관련자 공판조정」(1984.4)이란 문건에서는 “군 입대 기피 목적 사태유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처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5년 이상 구형, 3년 이상 선고원칙”, 즉 중형·엄벌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사건 할당도 공안부 쏠 검사에게 사건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안기부는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법원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중형주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관찰시키는데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83년 3월 11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학원사범에 대한 “조속기소, 조속공판 이행을 강조”했다는 언급내용도 발견된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은 사법부에 의해 학원사범에 대한 중형·엄벌주의 원칙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운동권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 언론 등을 활용한 反 운동권 여론 형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이 가진 역사적 정당성이나 세계사적 보편성 등은 정보기관이 학원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학생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정보기관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1980년대의 학생운동은 반체제 혹은 친북 활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수사초점이기도 했고 대국민홍보에 활용하는 주요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중요한 학원관련 공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같은 사항을 각 언론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해 줌으로써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홍보활동의 목적은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운동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 조성에도 활용했다.

◎ 운동권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

안기부는 반정부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문제권 학생’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국민정서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수단을 강구하였다. 특히 학원가에 ‘좌경이론’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당국의 대응 방법이 물리적, 법적 조치로 일관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학가에 전파되고 있던 이데올로기의 오류와 문제점을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비록 ‘대책의견’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이 같은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은 정보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개입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항은 「일부학생 문제권의 좌경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의견」(1986년 작성)⁹³⁾ 문건에 잘 나와 있다.

93) 이 문건은 작성년도만 나와 있을 뿐 정확한 일자도 확인할 수 없다.

일부학생 문제권의 좌경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의견

1. 문제의 제기

(전략)

좌경화 움직임에 대한 당국의 대응 방법이 물리적, 법적 조치에 일관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적 근절이 가능하느냐는 의문과 함께 정부가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다는 불안감마저 조성,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책의 강구 시행이 요망

2. 고려 가능한 대책방안

가. 보수·급진간 이념 논쟁 전개

○ 문제학생↔과거 4.19, 6.3세대 등 기성학생 운동권 인물 간의 대대적 이념논쟁 전개 유도

* 방법: TV좌담회, 공청회 / 지상특집(좌담회) / 세미나, 심포지엄 등

- 단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 추진

- 내용은 생생히 전달해 당국의 일방적 홍보라는 오해 불식

- 논쟁시 승부보다 '설득논리와 실제폭로'에 초점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판단에 일임

* 논쟁 장에서는 보수 측이 다소 열세에 놓인다 해도 심판하는 국민들이 안정, 보수 선호 경향이므로 문제권의 이상론과 과격주장에 대한 우려론으로 반전 가능

나. 자민투, 민민투와의 직간접 대화추진

○ 기존방침대로 불법행위는 의법 처리하되, 토론회 등을 통해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 학내 시국토론회 등에 여권도 과감히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

(중략)

다. 이념교수들에 대한 연구자료 제공

(위 문서에서 계속)

- 문제학생들은 불순서적을 비정상루트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현실에 반해, 교수들의 구입루트만 봉쇄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최근의 진보적 유행이론에 대해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교수들을 앞지르는 현상인바, 해외문제 이념서적을 당국이 먼저 입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전이념 교수들에게 배포, 또는 교수 요청시 국내반입 허용, 관련 정보자료 적기 공급, 이념교수들과의 대화창구 개설 유도 등 효과적 관리를 통하여 문제학생들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 무장 강화 요구

라. 단계적인 좌경 세력 고립화 유도

- 좌경학생에 대한 야당의 수렴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환기시켜 사회고립화 추진
- 민정당 주도에 의한 여야 해빙무드 조성으로 야당의 좌경세력 수용, 연계 가능성 배제. 민정당, 신한당 공히 좌경세력의 공동투쟁 대상화 유도
- 인천사건, 민통련사건 등을 일괄발표에 의해 홍보하기보다 문OO, 장OO, 백OO, 이OO 등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시차를 두고 발표해서 지속적 홍보소재로 활용
- 국내 혁신정당(사회민주당)이 우리 체제에 수용 가능한 논리를 개발, 정립하고 문제 이념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당체계가 보수 대 혁신으로 양분될 가능성에 대비, 혁신정당과의 대화, 육성방안 모색 필요
- 일반소요에 대해 관대하되 좌경인물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 적용, 강력 의법 조치 (중략)

바. 극우인물, 단체 관리 육성

- 평상시 극우인물과 단체를 선별 육성 관리하여 필요한 기회에 활용
- * 일본의 사상혼란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유사시 극우파가 극좌파를 공격(테러 등)하거나 우국을 위한 충격적 방법(천황에 대해 죽음도 불사하는 충성)으로 사회적 분위기 일신 및 경각심 촉구
- OO청년단 등 재건활용 방안 모색

이를 통해 학원소요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좌경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국민홍보에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1986년 10월 서울대 불온 벽보사건으로 촉발된 소위 ‘대학가의 좌경화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적시해서 패널(서울대 총장, 동창, 학생대표 등 20명)과 토의내용(서울대 문제권 학생들의 좌경실태 규탄)까지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한 사실도 있다.⁹⁴⁾

또한 안기부는 언론을 통해 대학생들의 좌경화에 대한 비판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운동권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987년 3월 4일 작성된 「건전목사 “대학가 신입생 면학당부” 글 언론게재 조정건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동 문건은 ‘전주 O O 장로 교회 당회장 건전목사 김 O O’의 언론기고문이 신문에 전량 게재될 수 있도록 안기부가 직접 문공부를 조정하여 시행하겠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건전목사 “대학가 신입생 면학당부” 글 언론게재 조정건의

1987.3.4

1. 개황

○ 건전목사 김 O O은 최근 대학가 좌경폭력 소요화와 관련,(중략) 대학 신입생들은 이에 빠지지 말고 면학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부모입장의 호소문 (원고 30매)을 작성, 언론(한국일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망

* 한국일보 측에 사전 요청한 바 있으나 전량 게재불가 통보를 받고 당부에 협조 요청

(중략)

3. 검토의견

○ 동 원고 내용도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들의 좌경화 위험 경고, 면학의 중요성, 사회·국가발전에 대학생의 기대감을 실감 있게 기술하고 있는 만큼 문공부를 조정, 전량 게재토록 함이 타당

94) 안기부, 「서울대 좌경사상 확산 저지방안 검토」(1986.10.20)

◎ 보도통제와 확대보도

학원소요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8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보도지침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정보기관은 학원소요의 존재는 가급적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대신, 간혹 발견되는 대학내 좌경·친북 문건이나 출판물 등은 적극적으로 확대보도 되는데 주력하였다.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검토」(1983.12.1) 문건에서 보듯 82년 초부터 일간지에 대해 “소요 주동자 구속사실 및 혐의내용만 보도토록 조정(1단 이하)”하였고, “졸업정원제, 해직교수 등 문교정책 분야는 별도의 지침 없이 수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언론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의 학원관련 기사에 대한 정보기관의 이해방식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잘 드러난다. 「학원현안문제점 및 대처방안」 문건에서는 “학원사태 관련 구속자에 대해 사실보도로 언론사가 자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타 문교부의 대학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학원현안문제점 및 대처방안

(전략)

○ 각 언론 공히

- 학원담당 취재 기자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기자들로서 학생의식 미탈피
- 일선 취재기자들 간의 과잉취재 경쟁에 의한 편집테스크의 제어력 부족
- 신문제작 과정에서 기사 부족시 타 분야보다 손쉽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문교분야 기사로 지면을 메우는 경향 노정

3. 대처방안

- 학원소요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조정 실시로 학내문제 보도금기 의식 체질화 유도 필요

(위 문건에서 계속)

- 다만 보도의 전면 통제시는 각종 억측과 유언비어 유포, 언론의 반발 등을 고려 개괄적인 상황보도는 허용
- * 현행보도는 1단의 기사이긴 하나 내용면에서는 구체성을 띄고 있어 시위사실만으로 축소필요
- 졸업정원제, 학기개선제 등 문교정책분야는 보도통제가 불가능하므로
 - 적극적인 홍보실시로 시책의 취지 부각에 치중
 - 왜곡 또는 부정적 측면 부각에 대해서는 보도조정
- 학원소요의 위해성 및 불순성에 대한 대국민 주지차원에서
 - 일부 극렬문제학생들의 의식화실태, 좌경화 경향 등과
 - 사태의 극렬화사례 등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 선별적으로 기사화 유도

정보기관은 학원소요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동조 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식아래 이를 축소보도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전면 보도통제를 할 경우에는 유언비어 유포와 언론의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개괄적인 상황보도는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보다 적극적인 언론 대책으로서 일반 국민의 비판여론을 불러올 수 있는 “극렬문제학생의 의식화실태, 좌경화 경향, 극렬한 사태 사례” 등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여 선별적으로 기사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기하였다. ‘통제와 유도’를 통해 학원관련 보도기사를 조정해 나갔던 정부당국의 언론조정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검토」(1983.12.1) 문건 중 ‘언론보도’ 분야에 잘 나와 있다.

학원사태양상 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

(전략)

카. 언론보도

○ 실 태

- 82년초부터 일간지에 소요 주동자 구속사실 및 혐의내용만 보도토록 조정 (1단 이하)
- 졸정제, 해직교수 등 문교정책분야는 별도의 지침 없이 수시 조정

○ 성과

- 유신 하 학원사태 보도가 민심자극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5.17 이후 당국의 강력한 보도조정에 의해 학원사태 보도가 일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
- 언론도 대체적으로 당국의 조치에 순응, 학원사태는 최소한으로 사실 보도에 국한
- 언론에서는 학원의 실상을 기획기사로 다루어 학원 부조리제거에 앞장서는 한편 좌경의식화 경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홍보효과 거양

○ 문제점

- 학원사태 보도에 대해 대체로 당국 조치에 순응하고 있으나 반면 무절제한 문교정책비판으로 언론의 부정적 단면 노정
- 일부 계층에는 유언비어와 언론불신의 요인으로 작용
- 일부학생들은 언론자유를 이슈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외신을 과신하는 경향

○ 개선방향

- 학원사태 완전통제 시 언론반발 유발, 유언비어 만연 등 부작용 예상
- 따라서 현 보도지침 고수, 유언비어 해소를 위해 사법적 조치에 한해 사실보도 허용
- 학원정책 관련기사는 언론기관과 사전 협조로 비판기사 게재 자제유발
- 대학생 좌경사상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 능동적 대처 필요

이와 같은 대책방안에서 제시된 방침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서는 “서울대 북괴 기관지 전채 벽보사건관련 대책” 내용이다. 1986년 10월 10일 서울대에서 북한 기관지 ‘민주조선’ 사설내용을 인용한 대자보 부착사건이 발생했는데, 10.14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자숙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안기부는 동 사건과 관련한 대책으로서 “전체교수명의 결의문 내용을 언론에 확대 보도”⁹⁵⁾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원소요 뿐 아니라 학원가의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에서는 관련 소문의 진위파악과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 홍보활동을 벌이고자 했다. 1986년 11월 27일 작성된 「학원가 유언비어 유포실태 및 대책방안」에 따르면 대학교수, 대학생 심지어는 중고학생층 사이에 퍼진 유언비어까지 제시하면서, 불순한 유언비어의 차단을 위해 각종 검열 및 적극적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원가 유언비어 유포실태 및 대책방안

1986.11.27

(전략)

2. 유언비어 내용

가. 현 시국관련 사항

(중략)

- 주한미대사로 부임한 OO는 기만책에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현 시국에 그가 한국에 오게된 것은 현 정부의 집권연장을 돕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다 (이상 대학교수층)
- 민정당에서는 의원내각제를 고수하는 방안으로 대통령에는 김영삼, 국무총리에는 노태우를 내정하고 있다 (초중등 교사층)

(중략)

95) 안기부, 「서울대 북괴기관지 전채 벽보사건 관련대책」 (1986.10.16)

(위 문건에서 계속)

나. 고위인사 관련사항

- 당국에서 영동살인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범인들인 OO 대학생들의 배후에 전OO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문제학생층)

(중략)

라. 건대사태 등 학원관련 사항

(중략)

- 각 학교에서 심야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은 대학생데모에 중고생들이 참여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중고학생층)

3. 평 가 (생략)

4. 대책방안

- 학내외 불순 간행물 제작 배포행위 엄단
- 학내 마스크姆 건전보도 자세 유도(학보사 기자 건전화공작 적극 추진)
- 우검강화 및 각종 통신수단 점검 관리 철저
- 언론기관의 홍보활동 적극화 유도
 - 추측기사 게재 불허 및 책임감 있는 보도자세 촉구(특히 신동아, 월간조선 등 비판성향 잡지)
 - 유언비어 소지 사안 발생시 반증자료 제시 등 신속대응 홍보체제 확립(신문 가십란, TV좌담회 및 특집구성 등 활용)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의 문제점을 확대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 정보기관에서는 ‘건전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도조정”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였다. 정보기관의 학원건전화 사업의 목표는 대학 내에서 문제권학생들에 대한 대항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지만, 건전세력의 행사나 건전유인물 배포동향을 대국민홍보에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북대학교를 비롯 주로 지방의 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건전화 사업은 지방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조정”을 통해서 지역신문과 지역 방송국의 주요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는데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00대 000 등 관내 14개 대학 반공서클에서는 5.2 00대 사대부고 운동장에서 500여명 참석리 반공정신 구현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이와 관련 00분실에서는 언론기관에 확대 보도조치⁹⁶⁾
- 당부 조정에 의거 00대 건전서클 00 등에서는 5.14 학내 일원에 학원 소요 과격성향 비난 내용의 유인물 2,000매 배포와 관련 00일보 등에 보도토록 조정.⁹⁷⁾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확대보도 또는 보도통제의 사례는 아니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학원대책과 관련하여 언론사주 등을 통한 협조사례 또한 확인되었다. 앞서도 나온 바 있는 문건인 「1984년 신학기 학원대책추진 상황보고」(1984.2.29)는 당시 정부가 ‘학원자율화조치’를 앞두고 개최되었던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에는 특별히 ‘홍보 대책 추진방식’이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신학기 학원대책 성공의 관건이 되는 국민적 지지여론의 선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984년 신학기 학원대책추진상황보고

1984.2.29

(전략)

7. 홍보대책 추진방식

- 신학기 학원대책 성공의 관건이 되는

96) 안기부, 「00, 학원 건전화 연합행사 개최」(1987.5.2)

97) 안기부, 「00대, 건전화 분위기 조성 건전유인물 배포」(1987.5.14)

(위 문건에서 계속)

- 국민적 지지여론 선점
- 교수의 사기양양과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마스크 홍보대책이 최중요 대책 (전 관계관)
- o 홍보대책 추진을 위하여 문공부장관 책임하에 Task Force구성, 각기관 참여 지원 하에 1학기 간 상설 운영(정무1, 문공)
- o 주요대 대학총장, 언론기고 강력 유도 (문교부)
- o 홍보 Task Force에 대한 상황전파 체제확립(팩시밀리 설치 운영)
- o 언론의 자발적 협조유도를 위해 언론에 대한 성의있는 설득, 협조 강화 (보안사, 민정, 민정관계자)

이 ‘관계기관 회의’의 경우 2월 22일부터 26일에 걸쳐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회의를 주재한 것은 안기부장이었다. “모든 관계관”들이 입을 모아 “마스크 홍보대책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지적한 것을 증명하듯 이 연례회동에서는 OO일보와 OO일보의 사주도 초청되었다. 문건에 따르면 OO일보 000 사장은 1984년 2월 24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면담이 이루어졌고, OO일보 000 명예회장의 경우 면담 종료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 2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면담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차례의 면담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984년 신학기 학원대책추진상황보고

(전략)

III. 주요언론경영주 면담결과

1. OO일보 000 사장

- o 협조약속

(위 문건에서 계속)

○ 근일 중 기획물연재 계획 하에 기사작성 중

※ 2.25 편집간부에게 지시畢

2. 00일보 000 명예회장

○ 협조약속

○ 00대 이사장이라는 입장초월, 지원의사 표명

※ 2.27 사장 등에게 지시 필

3. 기타 언론사도 근일 중 접촉예정

000 00일보 사장은 안기부장과의 면담이 있는 이튿날 편집간부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동 문건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00일보 역시 마찬가지로 만난지 이틀 만에 신문사 고위층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00일보에서는 1984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학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특별 기획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大學을 보는 눈 <1>, 하나의 實驗- 석방과 復校와 自律”(1984년 3월 7일)

○ “大學을 보는 눈 <2>, ‘우리가 방패냐’, 고민하는 교수들”(1984년 3월 9일)

○ “大學을 보는 눈 <3>, 禁忌에만 급급한 思想의 迷路”(1984년 3월 10일)

○ “大學을 보는 눈 <4>, 민족 외치면서 국가엔 등한”(1984년 3월 11일)

○ “大學을 보는 눈 <5>, 左傾, 얼마나 어디까지인가”(1984년 3월 13일)

○ “大學을 보는 눈 <6>, 이 難題 어떻게 풀어야 하나”(1984년 3월 14일)

기획물 연재 첫 회에 <편집자 주>를 통해서 “대학자율화 정책이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실험은 한국과 한국인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학, 그리고 학생 어느 쪽의 입장에 구애되지 않는

객관적 입장에서 대학 문제를 진단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첫 연재 기사에서부터 대학자율화정책은 “예전의 방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유보”한 것에 불과하며 “사회질서를 혼란케하는 경우 경찰은 학교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문교장관의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학원자율화정책이 무조건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는 것 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학생들 자신”이라며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잘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기획 연재물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이어진 연재기사 중 세 편(‘학원가의 급진사상’, ‘대학생들의 국가관’, ‘대학가의 좌경사상’)이 대학가의 급진좌경 사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보면 학원자율화정책에 관해서라기보다, 대학가의 좌경학생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 기획물은 결국 안기부장이 주재한 관계관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 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차) 운동권 학생 동향내사 및 순화활동 전개

정보기관에서는 야당정치인과 학생들의 연계여부를 내사하기도 했으며, 이른바 문제권 학생들에 대한 순화활동을 통해서 학원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기구와 제도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순화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당정치인과 학생들의 연계동향 내사

10.26 발발 직전 중정이 작성한 「서울대 000고·00고 등 호남출신 문제학생 KT 추종여부 불순동향 내사결과 보고」(1979.9.28)에 따르면 학원시위와는 상관없이 특정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야당정치인의 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내사활동의 초점이었다.

동 문건에서는 김대중과의 연계 혐의로 호남지역 학생들을 내사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8.12.27 김대중 사면(형 집행정지)과 이란 정변에 영향 받은 서울대 재학 000고 등 일부 호남출신 문제학생들이 김대중의 금요기도회 참석 및 외국인(코헨, 石井0) 접촉으로 인한 반정부 발언 등에 고무되어 학내 분위기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불순동향을 사전에 포착 사태 대처함에 있음

동 문건에는 또한 야당정치인 김대중과 연계 혐의가 있는 12명의 서울대생에 대한 내사결과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00은 망부 정00, 모 이00의 5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중략) 본명의 망백부 정00은 6.25 당시 리 자위대장으로 부역자로 아군에 사살되고, 가족은 전답 등 부동산 전무(중략)연 15,000원 사글세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모가 부락가마니공장 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사 대상학생 12명 모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친인척들의 이력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특히 한국전쟁을 전후한 좌익부역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다. 친인척 중 특이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의견을 내놓았다.

김대중 추종 호남출신 문제학생 정00 등 12명을 선정, 1979.1월~9월까지 동향내사결과, 정00은 군입대(4.6), 000·윤00은 구속(9.25), 그 외 정00 등 8명은 내사과정에서 받은 경고로 불순징후 발견되지 아니함으로 본건 내사 종결 처리코저 함

조치의견에서도 보이듯, 뚜렷한 불순징후가 없는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야당정치인과, 접촉 혐의점만 가지고서 내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경고를 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문제권학생’에 대한 동향내사

정보기관에서는 학원소요를 주도한다고 지목된 문제권 학생들에 대한 동향파악에 주력하였다. 특히 정국의 혼란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이 같은 ‘문제권’에 대한 동향점검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부마사태와 10.26으로 혼란스럽던 1979년 11월 15일 작성된 문건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적 및 문제학생 동향내사 결과보고」(1979.11.15)라는 문건에서는 197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26일간) 동안 서울대 49명을 비롯하여 고대, 연대 등 16개 대학 136명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학생 뿐 아니라 제적생과 해직교수, 출판사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반적인 상황은 표로 작성하여 자가독서, 재학가속, 문제종교집회, 과외지도, 출판사원, 구속, 귀향농업, 군입대, 도서관출입, 민청협, 기타 등으로 나누어 수치를 밝혀놓았으며, 뒤이어 개별 인물들의 특이동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제적 및 문제학생 동향내사 결과보고

1979.11.15

1. 79.10.16 부마사태와 관련하여 재경 제적 및 문제학생 136명에 대한 동향을 점검한 결과 보고입니다.
2. 점검내사기간 : 79.10.21~11.15(26일간)
3. 점검내사결과
(중략)
 - 고대 사학 2, 이 0 0는 매일 8:30경 등교, 18:00경 귀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특이점 발견치 못함
 - 고대경제2 김 00은 000학생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불쾌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물의 야기치 않겠다고 함

(위 문건에서 계속)

- 前 서울대생 심 O O은 79.7.17 형집행정지로 출소이후 특이동향 없이 자가에서 독서로 소일. 재가타 일요일에는 OOO교회에 나가는 외 최근 출타한 사실 등 발견치 못함

(중략)

- OOOO협의회 부회장, 백 O O은 창작과 비평사 편집위원으로 매일 출근 하면서 최근에는 『OOOO의 논리를 찾아서』 재판을 발간 예정으로 매일 창비사에서 분주하게 재판 정리작업 중이며 10월초에서 현재까지 외부 출타사실 발견치 못함
- 서울대 사회3, 양 O O은 서울대 “에이”급 문제학생으로 OO교회 대학생부 회장 등으로 활동. 현재 외부출타사실 등 특이동향 발견치 못함
- 전 서울대 사회계열 1, 여 O O은 79.10.13 서울대 영문 3, 김 O O 과 자가에서 접촉, 서울대 데모상황을 전달받았으나 자신은 별관심이 없고 복학만 기다릴 뿐이라고 언동
- 연대 경영 2, 김 O O은 문제 종교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서클 활동을 통해 현실비판과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중략)

- 전 서울대 정치 4, 이 O O은 OO출판사에서 번역을 하고 있으며, 각종 불순집회에 참석하여 오던자로서 문제성 내포
- 전 연대교수 김 O O은 근간 반체제 분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기도회 등 문제집회에 참가하는 자임

정보기관이 운동권활동 경력이 있는 제적생 등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동향내사를 한 것은 예방정보활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문건⁹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는 통상적인 업무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98) 이른바 ‘문제권’ 학생들에 대한 사찰·감시활동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안을 이번 조사활동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학원문제 중심 84 하반기 사회안정 저해요인 및 대책방안」(1984.8.21) 문건에서 “문제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순화와 동향 점검 철저”와 같은 언급처럼 이들에 대한 동향내사 활동이 통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학생 선도기구를 통한 순화활동

이른바 문제권 학생들을 선도하여 재차 학원소요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나 학교당국의 개별적인 학생순화를 조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기관이 주도한 이 작업의 전모는 1983년 학원자율화조치를 앞둔 시점에서 작성된 「문제대학생 선도기구 설치 추진 상황보고」(1983.12.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에서는 “학생들의 의식 구조를 진단하여 왜곡된 가치관을 교정하고, 국제정세와 안보현실, 이상적인 대학인상의 정립,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운동 및 학생 과외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생선도기구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동 계획은 문제학생의 선도책임을 1차적으로 대학 당국에 부여함으로써 “각 대학 총학장 책임 하에 학교의 자율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금후의 학원대책 기본방향과 부합”되며 “새로운 어용기구설치라는 의혹을 방지함으로써 선도기구에 참여할 교수들의 부담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었다. 정보기관이 문교당국 차원에서 진행될 대학교유의 학사업무에 사실상 개입했던 사례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동 문건에서는 이 같은 선도기관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제대학생 선도기구 설치 추진상황보고

1983.12.14

(전략)

II. 기구운영문제

○ 선도전담반 구성에 있어

- 대학의 핵상지도권한 및 처벌권한 등 고유권한 침해인상 배제
- 문제학생선도와 관련 대학의 책임감 부여
- 교육대상 학생들의 소속대학에 대한 소속감 부여

(위 문건에서 계속)

등 측면을 고려 선도위원 30명 외 교육대상학생의 지도교수, 학생주임 교수의 참여가 필요

○ 학생지도에 있어서는

- 학생의식구조 진단
- 왜곡된 가치관에 대한 교정작업
- 국제정세와 안보실현
- 이상적인 대학인상 정립
-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운동 및 학생과외활동 방향 제시, 학생설득을 위한 추가수단으로서 학부모 참여기회도 부여요망

○ 이에 따라 기구운영문제에 있어서는

- 신설될 선도담당기구는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책임자의 참여하에 운영되도록함으로써
- 각 대학 총학장 책임하에 학교의 자율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금후의 학원대책 기본방향과 부합되고
- 새로운 어용기구설치라는 의혹을 방지함으로써 선도기구에 참여할 교수들의 부담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하여 금후 선정될 선도기구 참여교수는 소속대학 총학장이 그 대학의 학생생활지도담당교수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 이들 담당교수들의 협의체로서 학생생활문제협의회를 구성
- 대학교수 아닌 선도담당인사는 동 협의회에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동 기구에 참여

III. 추진일정

○ 83.12.21 '전국대학 총학장회의' 개최, 문교부장관이

- 제적생을 구제한다는 정부방침을 발표하고

(위 문서에서 계속)

- 구속전 사전순화 위한 대학당국의 획기적 노력을 당부

※확대홍보

o 83.12.23 ‘전국대학 학생처(과)장회의’ 개최, 상기 발표에 따른 세부
절차 시달 및 협의

o 84.1.15 ‘협의회’ 위원 위촉(문교부, 안기부 및 추천부처)

o 84.1.18 각대학 총학장에 의한 생활지도 담당교수 임명조치, ‘협의회’
발족

o 84.1.30 ‘협의회’ 위원 세미나 개최(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관)

o 84.2.1 이후 활동체제 완비

(후략)

동 문건 말미에는 추천기관 별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인물 30인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로 대학교수들과 기타 관련단체 및 기업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선도기관의 필요성은 ‘학원 사범’을 사범처리라는 엄벌주의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후 시위관련 연행학생들을 등급화 하여 훈방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이 같은 선도기구로 하여금 순화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학원소요관련 연행학생 순화결과」(1984.12.18)에 따르면 구속(A급), 구류(B급) 외에 ‘대학 선도위 인계학생’을 C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당시 연행학생 644명 중 선도위에 인계한 학생은 158명으로 나와 있다. 이들 선도위 인계학생들은 국토건설현장이나 땅굴, 교도시설 등에 대한 견학의무가 주어졌고, “견학결과 많은 학생들이 뉘우쳤다”고 하여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하면서 견학코스 다양화 등을 보완하여 확대실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운동권 핵심인물에 대한 순화 및 활용공작

금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진 사실 가운데 하나는 과거 정보기관이 핵심운동권 학생에 대해 순화·역이용 공작을 실시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국보법 위반 학생을 단순히 사법처리하기 보다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 여건으로 활용하여 안보의식 제고라는 더 큰 효과를 거두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OO대 O O O 지하조직 총책 O O O 신병처리방안 검토보고」(1986.6.19) 문건은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된 O O O에 대해 “의법 조치”할 것이 아니라 “순화를 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OO대 OOO 지하조직 총책 OOO 신병처리방안 검토보고

1. 개요

(중략)

- 본명에 대해서는 의당 의술이 가능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적용, 엄단함이 마땅하겠으나
 - 본명이 학원가 및 재야의 급진 좌경이념에 정통하고 학원가 지하투쟁을 직접 배후조종한 점을 감안, 활용할 경우
 - 좌경이념의 실체, 조직체계, 투쟁실상 등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 본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 검토 보고임

(중략)

3. 신병처리 검토

가. 방안

- 제1방안 : 사법처리, 급진좌경분자 엄단차원에서 구속조치
- 제2 방안 : 사법조치 유보, 활용공작
 - O O O O의 투쟁지도이념 정립 등 학원가 급진 좌경 이론에 정통하고 실제 학원투쟁을 직접 지도한 전력 등을 활용

(위 문건에서 계속)

- 본명을 통해 학원가 등에 확산되고 있는 급진좌경 이론의 실상 및 실체를 규명
- 사계전문가, 대학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급진좌경 이론의 허구성 및 모순점 추출, 대응논리 구성, 학원대책 기여

나. 검토

- o 본명을 단순히 학원 좌경분자로 처리, 사법조치하기보다는
- o 적극 순화, 회유를 통하여 활용, 학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좌경혁명이론 실상과 조직실체 등을 규명, 대국민 홍보 학원대책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좋겠음

4. 관리방안

o 목적

- 학원가 및 재야의 급진좌경 이념 및 각종 혁명이론 규명
- 학원소요 조직 실체 파악
- 급진좌경이념 생성의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o 활용계획

- 기간 : 86.6.19-7.18(30일간)

- 관리장소 : 안가수용

- 신병관리 및 홍보책자 발간

* 수사관 2명 1개조 2교대로 합숙, 본명조사, 토론, 회유 등을 병행, 생생한 급진좌경이론 실체 추출

* 본명이 직접 “학원가 및 재야의 좌경이론 생성배경, 조직실체와 학원가 투쟁조직” 등에 대한 원고 작성

- 사계전문가 및 저명교수들이 본명과 직접 토론, 급진 좌경이론의 허구성 및 모순점 등을 추출, 대응논리 마련

* 초빙인사 : 00대 교수 윤 00, 00문화원 부원장 황 00, 00 연구소 강 00 등

안기부는 〇〇〇를 “급진좌경분자 엄단차원에서 구속조치”할 것이 아니라 “사법조치를 유보하고 활용공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 문건에는 구체적인 순화계획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정보기관이 어떤 방법을 통해 핵심 운동권에 대한 순화·활용공작을 추진하였는지 알 수 있다. 한편 〇〇〇의 순화·활용공작을 위해 함께 체포되었던 애인을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위 문서에서 계속)

5. 참고사항

〇〇〇〇의 애인 〇〇〇는 〇〇〇 순화 및 활용 유도 등을 위해

- 사법조치를 유보하고
- 현재 부산 〇〇서에 근무하는 부 〇〇〇에게 신병인계, 관리 조치

(중략)

6. 조치의견

〇〇〇〇 사법조치 유보, 검토 계획대로 활용

- 활용 후 본인이 회망할 경우 해외유학 등 주선조치

〇〇〇〇는 부 〇〇〇에게 신병인계, 관리

〇 관련자 체포수사 진력

첨부 : 〇〇〇가 초안 작성한 “소위 급진과경용공이론 비교표”

이 문건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권 학생들에 대한 순화활동은 이들이 출소 후 재차 학원소요의 주축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활용공작을 통해 운동권 이론의 모순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이용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안기부는 위에서 언급한바 있는 〇〇〇을 활용, 당시 학생운동 조직은 공산폭력혁명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등 내용의 책자를 발간, 언론사 및 대학에 배포하였다.

〇〇〇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국정원 존안자료 가운데 검거된 문제권 학생들을 망 혹은 프락치로 활용하려던 단서가 몇 가지 더 존재한다. 1987년 7월 ‘서대협’ 및 명동성당 농성 등과 관련된 합동수사회에서는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서 “공작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판단한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어 주목된다.

1987년 6월 21일 안기부 주관으로 경찰, 보안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불법 소요 주동 및 배후세력 척결을 위해 대상자 158명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사활동 중이다(7.9 현재 11명 검거). 3개 기관은 수시로 협의하여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선정한다. 검거자들의 수사처리 상황을 보면, 명동성당 불법소요 집행부인 〇〇대 3학년 김 〇 〇과 〇〇대 3학년 최 〇 〇은 훈방하여 공작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〇〇〇 핵심세력 중 한명인 박 〇 〇과 〇〇〇 간부 오 〇 〇 역시 공작원으로 활용한다.⁹⁹⁾

이 경우 ‘공작원 활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앞서 나왔던 망 활동 및 건전화사업 등과 연관지어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운동권 핵심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속상태’라는 취약점을 이용, 이들을 훈방해 주는 유화책을 통해 공작원으로 활용코자 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99) 안기부, 「불법소요 주동 및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상황 보고」(1987.7.9)

본 위원회의 학원분야에 대한 조사목표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정보기관이 반독재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였던 대학을 어떻게 통제해왔는가 하는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정보기관이 학원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중정법과 안기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활동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확대해석 된 측면이 없지 않다.

권위주의정부는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청와대·문교부·검찰·경찰·보안사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학원문제를 다루어왔다. 즉,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 당국은 학원소요의 과격화·전국화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내세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처했으며, 정보기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학원에 대한 정보수사 활동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위원회는 학원과 관련한 정보수사 활동 전체를 망라하여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 보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원에 대한 통제실상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만 학원관련 공안사건은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본 위원회에 주어진 제한된 조사기간과 부족한 자료, 그리고 정보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보안문제 등은 좀 더 충실한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개입·통제 의혹을 국정원에 보존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성과물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위원회의 학원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 의혹을 국정원에 보존된 문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증언이나 언론보도 등에 의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입증하게 되었다.

둘째, 학원에 대한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행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정 및 안기부 주도하에 중요한 학원문제 발생시마다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도 교련교육·학도호국단·교수 재임용제·졸업 정원제·제적생 및 해직교수 처리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통제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는 이른바 문제권 학생 및 이념서클·비판성향 교수 등에 대한 견제활동과 더불어 소위 건전학생이나 건전서클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대항하게 하는 공작을 추진하거나 언론을 활용한 反 운동권 여론 형성을 유도하는 등 학원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가 가해졌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셋째, 당시 정보기관의 학원통제 시스템을 확인하였다. 정보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원을 담당했던 구체적 조직체계나 인적구성 등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과거 대학 학생처 교직원 출신자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대학별 담당관 지정·운영, 정보망 등 협조자 활용, 대학 당국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정보활동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일정부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정보기관이 학원문제에 개입하고 통제된 구체적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분명한 것은 그러한 활동양태 중에는 법적 권한을 일탈한 과도한 통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은 법적 권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법한 활동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정법 및 안기부법에서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아무리 확대 해석하더라도 예컨대 비판성향 교수에 대한 인사권에 개입한 행위 등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경찰과 보안사의 경우 재야활동가나 학생운동권에 대해 사찰해왔음이 간헐적으로 폭로된 바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정 및 안기부 또한 지속적으로 사찰 및 감시활동을 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판성향 교수나 운동권 학생에 대한 동향내사를 한 것은 예방정보 활동 차원이지 학원사찰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1980년대 경찰병력이 학내에 상주한 것과 같은 사찰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학원사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적법한 내사활동은 국보법 위반 혐의자에 국한해야 하는 것이지만 단지 운동권 학생이나 비판성향 교수라는 이유로 동향내사를 하고 이를 통해 제적생의 복교를 제한하거나 교수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정보기관은 이들에 대한 동향과약을 위해 다양한 ‘학원 망’을 구축해 왔는데, 망(협조자)을 활용한 것 자체는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불법이라 할 수 없겠지만, 예컨대 1983년에 안기부·경찰·보안사에서 운영한 망이 총 684개에 달했다는 사실은 학원사찰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여섯째, 대학정책의 입안 및 학사행정 업무는 문교부 고유의 소관 사항임에도 정보기관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보기관은 학원문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이나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통치권을 보좌하는 임무에 의해 이것은 어찌면 당연한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원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대학 본연의 학사행정 업무에까지 개입하였다는 점은

과도한 통제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학원사태 관련 제적생에 대한 복교나 타 대학 입학 불허조치, 소요 극렬학과 정원감축, 비판성향 교수 승진불허 조치 등을 정보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실 등은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회의 조사에서 그동안 정확한 실체규명이 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통제실태를 국정원 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통제사례 중에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통제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보고서 내용 중에서 1970~80년대 집회·시위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수치, 구속자·수배자 등에 대한 정보기관의 평가와 분석, 6.10항쟁관련 시위상황 보고서 등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 자료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이번 조사활동이 안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 자료에 국한된 조사로 인해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학사개입, 학생·교수통제 등의 분야 외에 증언이나 기타 폭로기사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는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활동을 벌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교수해임, 연구비 통제, 사법부에 대한 조정, 학원안정법 제정문제, 건전학생회와 건전교수 양성 문제 등과 같이 정보기관의 개입의혹은 있지만 존안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도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1980년대와는 달리 중정 출범 직후인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조사활동을 벌이지 못하였다. 6.3사태나 3선개헌 반대 데모, 유신과 긴급조치, 광주민주화운동 등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둘째, 통제실태를 문서상에 나타난 사실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각 사안별 정보기관의 대책방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는지를 명확히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중정이나 안기부가 작성한 학원관련 대책은 많은 경우 ‘계획’이며 실제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계획(의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학원문제에 여러 정부 기관들이 각기 관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에서 결정되거나 논의된 학원 대책들은 국정원 존안 문건에서는 당연히 정보기관이 주도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다른 정부기관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서술되어 있는 정보기관의 다양한 학원개입 양상은 타 정부기관의 관련 자료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실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문교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중 국가 기록원에 이관된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경찰·검찰·법원·보안사·문교부·문공부·청와대 등의 자료를 거의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총체적인 통제실태를 확인하는 데는 미진한 점이 많을 것이다.

셋째, 일부 대학 학생처 직원에 대한 면담조사는 실시되었으나, 학원 대책 마련에 있어서 실무자였던 당시 문교부 교육정책실장, 보안사·중정(안기부) 학원과장, 경찰 학원과장, 청와대 교문수석 등 증언을 통해서 보다 입체적인 학원개입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 문교부장관, 안기부장(차장), 치안본부장, 보안사령관, 여당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정보기관의 프락치공작과 관련하여 면담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연락처 미확인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본 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1960년대~90년대 초까지의 학원문제와 관련한 정보기관의 개입·통제실태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현재의 국정원은 이미 학원에 대한 정보수사 활동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언한다.



-
1. 총론
 2. 중정 - 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의 사례검토
 3. 중정 - 안기부 간첩수사와 처리상의 문제
 4. 결론
-

I. 총 론 - 한국현대사와 간첩사건 -

1. 문제의 제기 · 245
 2. 조사방법 및 한계 · 258
 3. 간첩사건의 변화와 유형 · 263
-

- 가. 간첩사건 통계 / 263
 - 나. 직과간첩사건 / 270
 - 다. 월북자·행방불명자 가족관련 간첩사건 / 272
 - 라. 해외와 관련된 간첩사건(우회간첩) / 279
 - 마.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 294
 - 바. 친북 급진운동세력의 북한 연계 조직 관련 간첩사건 / 305
-

II. 중정-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의 사례 검토

1. 중정-안기부와 공소사실중 간첩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간첩사건 · 308
 2. 월북자 가족 간첩사건 - 송씨 일가 간첩사건 · 328
-

- 가. 사건개요 / 328
 - 나. 의혹 및 쟁점사항 / 331
 - 다. 조사경과 / 333
 - 라. 수사과정 / 333
 - 1) 안기부의 수사착수 경위 / 333
 - 2) 불법연행 및 장기 불법구금 / 339
 - 3) 고문 및 가혹행위 / 341
 - 마. 수사내용(주요 혐의사실의 재검토) / 350
 - 1) 송창섭은 8회 남파되었는가? / 350
 - 2) 한경희는 간첩인가? / 367
 - 3) 송지섭·송기준의 입북여부 / 374
 - 4) 허위자백 강요 및 증거조작 / 385
 - 바. 안기부 발표의 문제점 / 400
 - 사.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안기부의 개입 / 403
 - 아. 결 론 / 409
-

3. 월북자 가족 간첩사건 - 진도 박동운 일가 간첩사건 · 412
-

- 가. 사건의 개요 / 412
- 나. 의혹사항 / 414
- 다. 조사대상 선정경위 및 조사경과 / 415
- 라. 조사결과 / 417

- 1) 안기부의 내사과정 및 수사착수 경위 / 417
 - 2)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 여부 / 421
 - 3) 수사서류 허위 기재 여부 / 426
 - 4)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 427
 - 5) 허위자백 강요와 범죄사실 및 증거조작 여부 / 437
 - 6) 박동운 등 관련자들의 간첩행위 여부 / 445
 - 7) 검찰수사 과정 / 458
 - 8) 재판진행 과정 / 462
- 마. 결 론 / 463

4.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 정영 등 미법도 남북 귀환어부 사건 · 467

- 가. 사건개요 / 467
- 나. 조사선정 이유 / 469
- 다. 조사현황 / 470
- 라. 의혹사항 및 쟁점사항 / 470
- 마. 수사과정 / 471
 - 1) 오랜 내·수사에서 검거까지 / 471
 - 2) 황용운 사건의 경우 / 473
 - 3) 정영 사건의 경우 / 475
 - 4) 수사계획 및 진행 / 488
 - 5) 불법연행 및 장기구금 / 490
 - 6) 고문 및 가혹행위 / 492
 - 7) 허위자백 강요 / 494
 - 8) 직접증거의 부재 / 498

- 바. 주요 혐의사실의 재검토 / 500
 - 1) 1965년 남북귀환 상황 / 500
 - 2) 1965년 체북당시 상황 / 501
 - 3) 1965년 남북시 정영의 정진구 접선여부 / 503
 - 4) 월북자 정진구 / 506
 - 5) 최부희 등 미법도·교동도 침투 간첩 / 512
 - 6) 정진구 남파관련 의혹 / 513
 - 7) 정영 밀입국 여부 / 517
 - 8) 간첩활동 / 522
- 사. 안기부 발표문 문제 / 525
- 아.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문제 / 529
 - 1) 검찰 취조과정에서의 문제 / 529
 - 2) 재판과정에서의 문제 / 532
 - 3) 비공개 재판과 공판조서의 신빙성 문제 / 534
- 자. 결 론 / 538

5. 일본 취업 간첩사건 - 차풍길 간첩사건 · 551

- 가. 조사현황 / 551
- 나. 사건개요 / 551
 - 1) 사건내용 / 551
 - 2) 재판과정 / 553
 - 3) 주요 의혹사항 / 553
- 다. 조사내용 / 554
 - 1) 차풍길의 ‘포섭’ 및 요시무라와 이재혁의 동일인 여부 / 554
 - 2) 차풍길의 간첩행위 여부 / 577
 - 3) 불법수사 여부 / 585
- 라. 결 론 / 593

6. 위장 귀순 김진모 사건 · 596

7. 윤태식 사건 · 606

8. 조직 사건 · 619

가. 동백림 사건 / 619

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 621

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 630

Ⅲ. 중정-안기부 간첩수사와 처리상의 문제

1. 수사 및 발표 과정 · 637

가. 내사에서 수사의 착수까지 / 637

나.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 / 639

다. 고 문 / 641

라. 수사서류의 허위 작성 / 644

마. 증거의 조작 또는 위증의 교사 / 648

바.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 침해 : 변호인 접견권 등 / 653

사. 누설 · 제공된 국가기밀의 성격 / 658

아. 발표의 문제 : 피의사실 공표 및 확대 · 과장 / 660

자. 대통령 보고와 ‘분부 사항’ / 662

Ⅳ. 결론 · 666

I 총론 - 한국현대사와 간첩사건 -

1 문제의 제기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은 치열한 첩보와 침투활동을 벌였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상대방 지역에 수많은 공작원을 침투시켜 정보 수집, 반정부 지하조직 구축, 파괴, 납치 등의 활동을 시도했다. 사실 남한과 북한이 분단상황에서 각각을 상대로 벌인 첩보와 파괴활동은 아주 은밀한 부분으로서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 진영에 침투시킨 공작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숫자가 매우 많은 것만은 분명하다.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검거간첩의 검거형태와 숫자는 아래 표와 같다.

【검거형태별 분류】 1)

구분	생포	사살	자수	계
1951-1959	1494	62	118	1674
1960-1969	825	762	99	1686
1970-1979	448	208	25	681
1980-1989	238	77	25	340
1990-1996	70	29	15	114
총계	3075	1138	282	4495
1951	118	2	5	125
1952	346	3	25	374
1953	233	-	21	254
1954	126	-	8	134
1955	178	8	9	195
1956	97	-	8	105
1957	131	5	16	152
1958	172	25	18	215

1) 1951-1979는 김성호, 『우리가 지운 얼굴-북파공작원, 찬란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숨겨진 눈물의 기록』, 2006, 한겨레출판, p.292에 의거했고, 1980-1996은 국가안전기획부, 『검거간첩 연도별 기관별 통계(51-96년)』에 의거해서 작성했다. 원본에 일부 착오가 있어 숫자의 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1959	93	19	8	120
1960	91	7	9	107
1961	157	9	8	174
1962	88	30	13	131
1963	64	16	8	88
1964	63	6	9	78
1965	85	14	9	108
1966	60	33	13	106
1967	92	233	21	346
1968	62	319	3	384
1969	63	95	6	164
1970	60	87	3	150
1971	56	67	4	127
1972	59	-	1	60
1973	60	3	1	64
1974	73	11	2	86
1975	41	19	3	63
1976	27	7	5	39
1977	23	0	1	24
1978	14	7	2	23
1979	35	7	3	45
1980	24	33	1	58
1981	32	1	2	35
1982	39	2	2	43
1983	28	32	3	63
1984	29	1(사망)	3	33
1985	47	7	6	60
1986	25	0	1	26
1987	6	0	3	9
1988	3	1(자살)	3	7
1989	5	0	1	6
1990	5	0	4	9
1991	3	0	0	3
1992	25	3	1	29
1993	3	0	3	6
1994	13	0	2	15
1995	11	2	3	16
1996	10	24	2	36

위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으로 1951년부터 1996년 사이에 검거, 사살, 자수 등의 형태로 당국에 파악된 북측 공작원의 숫자는 무려 4,495명에 이른다.

북한도 엄청나게 많은 공작원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쪽으로 침투시켰지만, 남한 역시 많은 숫자의 대북공작원을 양성하여 그들을 북한지역에 파견하였다.²⁾

남한에서 북한으로 침투시킨 북과요원은 정보사 요원만 보더라도 생환자를 포함하여 11,273명이다. 물론 남한에서 정보사 소속이 가장 많이 북파되었지만, 정보사 이외에도 중앙정보부, 보안사, 또는 미군 첩보기관 등이 보낸 북과공작원이나 휴전선 부근의 일반 부대에서도 적지 않은 공작원을 북한지역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남한이 파견한 북과공작원의 숫자는 11,273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물론 이 숫자를 북한이 보낸 공작원 4,495명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선 남한 측 숫자는 파견된 인원의 숫자이고, 북한 측 숫자는 적발된 인원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낸 간첩 중에서 남한 당국에 적발된 간첩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침투가 가장 빈발했던 1950년대 말 대표적인 공안 검사였던 오제도는 확실한 검거율은 알 수 없지만, 60% 이상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³⁾

또한 북한의 남과공작원과 남한의 북과공작원은 그 임무와 활동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북과공작원들이 주로 군사정찰과 파괴활동 등 단기적인 임무를 띤 반면, 남과공작원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절반가량이 지하당 구축과 동조자 포섭 등의 토대 구축을 사명으로 한 간첩으로서 장기매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남과 북이 각각 얼마나 많은 공작원을 상대 지역에 침투시켰는지는 통일 이후에나 밝혀지겠지만 남과 북이 각각 많은 수의 공작원을 침투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2) 김성호, 『우리가 지운 얼굴 - 북과공작원, 찬란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숨겨진 눈물의 기록』, 2006, 한겨레출판, p.292.

3) 『조선일보』 1958년 5월 18일자.

【사명 별 간첩 분류】 4)

구분	당조직	정보수집	조사정찰	연락호송	대동월북	테러폭파	선전선동	토대구축	기타	계
1951-1959	572	179		223	9	6	71	112	0	1674
1960-1969	499	68	502	254	74	29	105	284	1	1686
1970-1979	387	121	372	109	0	13	8	0	3	681
1980-1989	101	126	3	59	11	3	14	3	20	340
1990-1996	38	47	25	0	1	1	2	0	0	114
총계	1597	541	902	645	35	52	200	399	24	4495
1980	12	13	0	22	11	0	0	0	0	58
1981	18	9	0	3	1	0	4	0	0	35
1982	31	9	0	2	0	0	1	0	0	43
1983	9	23	3	26	0	1	2	0	0	63
1984	7	24	0	0	0	0	0	0	1	33
1985	9	28	0	6	0	0	3	0	14	60
1986	7	8	0	0	0	0	4	3	4	26
1987	4	4	0	0	0	0	0	0	1	9
1988	3	2	0	0	0	2	0	0	0	7
1989	0	6	0	0	0	0	0	0	0	6
1990	4	5	0	0	0	0	0	0	0	9
1991	0	3	0	0	0	0	0	0	0	3
1992	22	6	0	0	1	0	2	0	0	31
1993	1	3	0	0	0	1	0	0	0	5
1994	8	6	0	0	0	0	0	0	0	14
1995	2	14	0	0	0	0	0	0	0	16
1996	1	10	25	0	0	0	0	0	0	36

【사명 별 간첩 분류 : 1970-1979】 5)

구분	지하당 조직	정보 수집	접선 공작	군사 정찰	루트개척 및 호송	요인 암살	선전 선동	산간부락 혁명화	기타	대동 월북	대동 도일	계
1951-1969	1349	1121	111	0	366	36	176	118	0	83	1	3360
1970	84	19	0	0	18	8	2	0	0	19	0	150
1971	55	22	2	0	38	5	0	0	0	5	0	127
1972	51	5	2	0	1	0	0	0	0	1	0	60
1973	36	22	0	0	4	0	0	0	0	2	0	64
1974	69	7	0	0	7	0	0	0	0	3	0	86
1975	25	14	2	0	18	0	2	0	0	2	0	63
1976	21	12	0	0	0	0	3	0	0	3	0	39
1977	13	3	1	0	0	0	1	0	0	3	0	24
1978	5	3	1	0	7	0	0	0	0	2	3	23
1979	28	9	1	0	7	0	0	0	0	0	0	45
1970-1979	387	116	9	0	100	13	9	0	0	40	4	681

4) 국가안전기획부, 『검거간첩 연도별 기관별 통계(51-96년)』.

5) 육군본부, 『대공판단』 1981년판.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많은 인원의 공작원을 침투시키다보니 각각 상대방 지역으로 침투시킬 공작원을 양성하는 기관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침투시킨 간첩들을 적발하는 방첩기구 역시 팽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의 경우 군의 역량과 작전 개념의 상당 부분이 대간첩 작전에 맞춰져 있으며, 특무대-방첩대-보안사-기무사로 이어지는 방첩 기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중추로 작용했다. 경찰에서도 대공·보안 분야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으며,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최고정보기관 내에서도 간첩에 대한 적발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는 핵심기구로 꼽혀 왔다. 요컨대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간첩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국가기구 내에서 규모도 방대할 뿐 아니라, 일종의 성역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간첩의 문제는 국가기구 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느 문인이 지적한 것처럼 1960-7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글자란 담벼락에 커다랗게 써 붙인 ‘반공방첩’ 네 글자였다.⁶⁾ 1960년 국가보안법에 도입된 불고지죄는 전국민에게 간첩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법적인 의무로 부과했다. 아직도 해안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철조망은 미관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면서 분단국가의 슬픈 상징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였고, 국민 모두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국가대사였다. 실제로 다양한 형태와 사명을 띤 간첩들의 침투는 대한민국의 안위에 중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기에 방첩의 최일선에서 활약해 온 군인, 대공 정보 및 수사기관원들의 노고와 기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래의 표는 각 기관별 간첩 적발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6) 김명인, 「간첩의 추억」, 『한겨레21』 497호, 2004년 2월 18일자.

【시기별 각 기관 간첩 검거 현황】 7)

구분	중정/안기부	경찰	보안사	육군	해군/해병	공군	합동	기타	계	누계
1951-1959	0	852	0	748	67	7	0	0	1674	1674
1960-1969	167	635	0	705	111	1	59	8	1686	3360
1970-1979	140	206	0	176	35	0	122	2	681	4041
1980-1989	135	67	64	9	29	0	35	1	340	4381
1990-1996	66	12	2	4	0	0	30	0	114	4495
합계	508	1772	66	1642	242	8	246	11	4495	4495

* 1969년 이전의 보안사 검거 간첩은 육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각 기관 간첩 검거 현황 : 1970-1996】 8)

구분	안기부	경찰	육군	보안사	해군/해병	공군	합동	기타	계
1970	4	42	47	0	20	0	36	1	150
1971	9	27	42	0	0	0	48	1	127
1972	10	24	26	0	0	0	0	0	60
1973	15	26	20	0	3	0	0	0	64
1974	32	24	20	0	10	0	0	0	86
1975	27	5	5	0	1	0	25	0	63
1976	9	19	10	0	1	0	0	0	39
1977	9	12	3	0	0	0	0	0	24
1978	9	7	0	0	0	0	7	0	23
1979	16	20	3	0	0	0	6	0	45
1980	11	14	4	2	8	0	19	0	58
1981	16	13	1	5	0	0	0	0	35
1982	28	8	1	6	0	0	0	0	43
1983	18	3	3	8	21	0	10	0	63
1984	12	8	0	12	0	0	0	1	33
1985	29	10	0	15	0	0	6	0	60
1986	6	9	0	11	0	0	0	0	26
1987	4	0	0	5	0	0	0	0	9
1988	7	0	0	0	0	0	0	0	7
1989	4	2	0	0	0	0	0	0	6
1990	9	0	0	0	0	0	0	0	9
1991	3	0	0	0	0	0	0	0	3
1992	25	0	3	1	0	0	0	0	29
1993	5	1	0	0	0	0	0	0	6
1994	7	3	0	0	0	0	5	0	15
1995	6	8	1	1	0	0	0	0	16
1996	11	0	0	0	0	0	25	0	36
계	341	285	189	66	64	0	187	3	1135

7) 국가안전기획부, 『검거간첩 연도별 기관별 통계(51-96년)』

8) 1970부터 1979는 육군본부, 『대공판단기관』 1981년판을, 1980년 이후는 국가안전기획부, 『검거간첩 연도별 기관별 통계(51-96년)』 을 참조하여 작성.

방첩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정보수사기관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정보수사기관들이 간첩의 적발과 체포에 대한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화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등의 예를 들면서 중요한 정치적 고비에는 반드시 조직사건이 터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⁹⁾ 한편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에서는 주로 198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다수의 간첩 사건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들은 지식인, 학생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이 관련된 굵직한 조직사건과는 달리, 그 중심인물들이 월북자 가족, 납북귀환 어부, 해외취업자 등 소시민이었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자백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의 상황에서 간첩으로 몰렸다 하면 그 누구도 손길을 내밀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인권변호사들조차 간첩사건 변론을 맡기를 꺼려할 정도였다고 한다.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엄청난 주장은 한국에서는 1987년 6월항쟁 무렵에야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의 도움에 힘입어 조금씩 사회에 전달될 수 있었다.

저희들은 간첩 마누라요, 자식이요,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유로 해서 체념과 눈물 속에 오랫동안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의 차가운 눈총 때문에 그리고 수사기관의 협박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전형적인 조작사건들을 발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많은 가족들이 발표하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간첩가족들은 가장을 빼앗기고 생계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장을 빼앗긴 정신적인 타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¹⁰⁾

9)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북측도 대남공작활동을 활발히 벌인 것도 사실이다.

10) 서준식, 「간첩조작이란 무엇인가」, 『간첩조작, 이제는 그만! - 간첩사건 조작증언자료집』,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1989년 12월, p.12.

한 시인은 이른바 조작 간첩으로 몰린 이들의 가족들이 지닌 고통을 이렇게 대변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간첩 사건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인권단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확대적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문제와도 맞물린 민감한 문제였다. 한편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과거청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대표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사회에서 간첩이란 낙인이 갖는 의미가 치명적인 것이었기에,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린 사례가 있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단지 과거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지속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차로 7대 사건에 대한 조사에 이어 2차로 영역별 조사 분야의 하나로 <간첩죄

“당신들은 아는가 / 영장도 없이 어디론가 끌려간 뒤 / 열흘이 가고 한달이 넘어도 행방조차 알 수 없는 / 아들 딸과 지아비 지어미를 찾아 / 이 기관 저 기관의 철문을 두드리며 / 안타까이 몸부림치던 우리들의 심사를

당신들은 아는가 / 그토록 헤매어도 찾을 길 없던 /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지아비 지어미가 / 어느 날 갑자기 신문과 텔레비의 이상스런 도표 속에 / 초췌한 몰골로 판박이 된 채 / 극악무도한 좌경용공 적색분자로 매도될 때 / 억장이 무너지던 우리들의 가슴을

당신들은 아는가 /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 온몸을 짓이기고 / 엄청난 물을 강제로 먹이고 전기로 지지대는 등 / 인간XX들한테 종철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 종철이가 당한 고문보다 훨씬 더 악독스런 고문을 당한 끝에 /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지아비 지어미가 / 그렇듯 흉측한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까무러치다가는 숫구치고 / 숫구치다가 까무러치던 우리들의 심사를

(...)

당신들은 아는가 / 오로지 거꾸러진 민주의 깃대를 바로 세우고 / 찢어진 통일의 깃발을 곱게 기우려던 / 우리들이 사랑 이 나라의 자랑스런 꽃들에게 / 5년 10년 20년 무기형을 때리는 가증스런 꼭두각시 재판놀음을 지켜보며 / 치를 떨던 우리들의 가슴을 / 당신들은 아는가

기나긴 세월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돌아올 줄 모르는 / 아들 딸과 지아비 지어미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 강이 되고 바다가 된 우리들의 피눈물 / 피가 되고 산맥이 된 우리들의 원한을”,

채광석, 「우리들의 사랑, 민족의 꽃들을 전원 석방하라」, 『민주가족6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87년 8월 1일, p.4. (박원순, 『국가보안법』 2, 1992, 역사비평사, p.383에서 재인용).

확대적용> 분야를 설정했다. <간첩죄 확대적용>이라 이름붙인 까닭은 물론 인권단체와 관련 처음부터 조작간첩 사건이라 할 경우 진실위가 어떤 결론을 갖고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단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수사 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실제적인 진실까지 밝혀 관련 당사자의 억울함을 푸는 동시에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쓰라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나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사건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수사절차 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할지라도 피의자가 실제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한 사건을 ‘조작간첩사건’이라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작 간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간첩사건은 중앙정보부-안기부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도, 한국에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다. 중앙정보부 창설 이전에도 1954년 야당의 대표최고위원인 신익희가 북한의 밀사 조소앙과 만나 한국의 중립화를 논의했다는 뉴델리 밀담설이나 1958년의 진보당 사건 등은 간첩 혐의 또는 대북 접촉 혐의가 적용된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서방 세계의 경우, 멀리는 중세 말 - 근세 초 유럽의 마녀사냥에서부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 아니, 전 유럽의 지식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드레퓌스 사건, 세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하였다는 미국에서 1950년대를 뒤흔든 매카시즘 열풍은 인간 사회가 간첩 침투의 불안감에 얼마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같은 양상이 더욱 심하여 스탈린 시대의 대공포, 그리고 1950년대 동구 각 나라와 북한에서 인민정권 시절의 파트너였던 민주파 인사나 토착공산주의자들을 서방 부르조아 진영의 첩자로 몰아 숙청한 사건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다. 북한정권의

핵심들도 역시 만주에서 중국공산당 산하의 빨치산으로 활동을 할 당시 민생단이라는 일제간첩들이 대열 내에 침투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에 빠져 흑심한 상호 숙청과정을 겪은 바 있다.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조작간첩 사건 의혹을 제기해 온 학생운동 또는 민주화운동 진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나, 1997년 한양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이석 씨 치사 사건은 학생운동 진영 역시 프락치라는 의심을 갖고, 본인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폭력을 자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 주변에 간첩이 침투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공포는 특별한 ‘악의적인 조작’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인간의 이성이 쉽게 극복하기 힘든 역사적 과제였는지도 모른다.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세계지성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루터나 칼빈 역시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열렬한 마녀사냥꾼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적대국가와 인접한 것도 아닌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1950년대에 너무나 쉽게 매카시즘의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갔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1970년대나 80년대처럼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수 천 명의 공작원을 침투시켜 온 상황에서 남북한의 공안당국이 누구보다도 더 상대측의 간첩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아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도 수 천 명이 넘는 북한 공작원의 침투를 적발해 내는 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죄 확대 적용의 피해를 보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도 북송 재일동포와 월남자 가족들 중에서 그 수를 가늠하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남한이나 미제의 스파이로 몰려 필설로 형용하기 힘든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첩의 적발과 색출이 ‘혁명 보위’의 이름으로 남한 사회에서보다 더 정당화되었으나 망첩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적 견제도 결여된 북한 사회에도 치열한 남북간의 직간접 침략·침투의 역사속에서

그 부산물로 억울한 간첩 혐의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분단이 가져 온 시대의 비극이었다.

남한에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청산 차원에서 과거의 간첩 사건 중 일부나마 간첩혐의가 과도하게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과 북의 억울한 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불행한 분단시대가 낳은 씻기 힘든 상처였다. 이 보고서가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총론에서는 본 절의 문제의 제기에 이어 조사의 범위와 이용자료에 대한 소개를 한 뒤, 간첩 사건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간첩 사건의 유형으로는 ① 직과간첩 사건, ② 월북자·행방불명자 가족관련 간첩사건, ③ 해외와 관련된 간첩사건(우회간첩), ④ 남북귀환어부 간첩 사건, ⑤ 친북 급진운동세력의 북한 연계 조직 관련 간첩사건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먼저 중정-안기부가 조사한 사건 중에서 공소사실 중 간첩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간첩 사건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간첩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인데, 이는 한편으로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하였음이 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을 말한다. 2장에서는 각 유형 별 사건 중에서 월북자 가족 간첩사건으로는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오가다가 결국 유죄로 확정된 1982년의 송씨 일가 간첩 사건, 1981년 진도 박동운 일가 간첩사건을 살펴 볼 것이다.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는 1983년도의 정영 사건 등 강화도에 딸린 작은 섬인 미법도에서 연이어 발생한 4건의 남북귀환어부간첩사건을 살펴 볼 것이다. 한편 일본 관련 사건으로는 1982년의 차풍길 간첩사건을 살펴 볼 것이다. 이들 3가지 유형의 사건들은 안기부 내부수사자료와 검찰수사자료, 공판자료 등 관련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하였다. 진실위의 인력부족과 활동시한의 제약 등으로 인해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 중에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건만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밖에 2장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사형이 집행된 억울한 조작간첩 사건으로 꼽히는 김진모 위장 귀순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밖에서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안기부가 단순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허위로 발표한 윤태식 사건(일명 수지김 사건)을 간략히 소개했다. 또한 진실위가 7대 사건에서 조사한 동백림 공작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도 ‘간첩죄의 확대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간단히 짚어 보았다.

2장의 결론으로는 위의 사례 검토에 기초하여 중앙정보부-안기부의 간첩수사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처음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간첩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 보고, 다음으로 모든 조작의혹 간첩사건에서 제기되는 불법연행과 불법 구금 문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고문과 가혹행위의 문제를 짚어 보았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동행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점검하여 수사서류에 중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바가 없는지 살펴보고,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는 간첩행위를 얼마나 입증해 주는가, 증언을 하게 될 주요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안기부가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핵심 내용을 왜곡한 바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간첩으로 몰린 피의자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변호사들의 접견권이 간첩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신문과 방송에서 요란하게 보도되는 간첩사건 발표의 내용과 형식이 피의사실 공표 또는 나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았다.

간첩죄 확대적용 또는 조작 의혹은 분단과 치열한 남북대치가 낳은 불행한 부산물이었다. 실제로 남과 북은 수많은 간첩을 서로 보냈으며,

남과 북 당국은 간첩을 적발하고 막아내는 것을 생존의 제일 과제로 삼았다. 중앙정보부-안기부 등 남한의 공안당국은 북한 간첩을 막아내고 적발하는 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에서 조작 의혹 내지는 간첩죄 확대적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남한당국에 적발된 간첩들이 각각 1,600명대로 무척 많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적발된 간첩의 숫자가 600명대로 떨어졌고, 1980년대에는 300명대로 떨어졌다. 더구나 양적인 면에서 1970년대 이후 적발된 간첩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내용을 살펴봐도 북한이 직접 파견한 직과 공작원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70년대 이후 사법부와 정권 또는 정보기관의 요구에 쉽게 흔들리면서,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나쁜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북한이 직접 보낸 공작원 중 지하당 구축을 사명으로 한 공작원들은 군사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탐지와 수집, 전달이라는 통상적인 의미의 간첩과는 다른 임무를 띤 자들인데, 이들을 역시 간첩죄로 의율하다 보니 간첩의 개념이 넓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국가기밀이 신문에 난 공지사항이라도 적에게 알려지면 적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대법원의 판례로 자리 잡고, 피의자가 기밀을 북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만 해도 ‘목적수행’으로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되자 사실상 무전기나 난수표도 없는 함량 미달의 간첩이 나오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간첩이 1980년대에 양산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상실하여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외면하고, 간첩과 국가기밀의 개념을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간첩사건도 그만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법부 역시 간첩죄의 확대적용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나, 그 근본원인은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사법부에 여러 형태의 외압을 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2 조사방법 및 한계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 중 그동안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 1차적인 조사대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인력, 관련자들의 생존 여부 등으로 인해 제한된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간첩사건의 다양한 유형들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간첩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월북자가족에서 2건, 납북귀한어부 사건에서 1건, 해외와 관련된 사건에서 1건 등 4건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만, 간첩사건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유형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경찰, 보안사가 수사한 간첩사건들도 참고했으며, 이 사건들의 내용은 본격적인 조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선정된 사건들에 대한 조사는 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기부 수사결과에 나타난 범죄사실의 진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수사결과 발표내용의 확대과장 여부 등이 주된 조사내용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조사사항들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사건들의 주된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각종 자료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병행했다.

자료조사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수용자신분장, 기타 공개자료 그리고 현재 국정원이 존안하고 있는 사건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기부 수사기록은 공식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서·의견서·증거관련 기록들이다. 또 검찰 수사기록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이다. 이와 같은 공식 수사기록들은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과 증거들을

근거로 입증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분석하는데 주요 자료가 되었다. 나아가 안기부 수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의 차이점과 그 근거를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재판기록으로서의 공판조서, 추송서, 항소·상고이유서, 판결문들을 검토·분석했다. 이 재판기록들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피의자가 어떤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또 공판정에서의 피의자들의 진술과 항소·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수사과정상의 고문, 구타, 가혹행위에 내용들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였다. 또 수용자 신분장에 기재된 피의자 접견내용과 진료내용 등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피의자접견권 보장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공식 수사·재판기록 외에 현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사건 기록들을 검토·분석했다. 이 자료들은 주로 수사착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수사과정에 작성된 각종 첩보 및 수사보고서들로서 안기부 수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들은 피의자들의 진술내용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첩보보고와 수사보고들은 증거조사의 과정과 참고인들의 진술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특히, 몇몇 보고서들은 당시 안기부가 검찰 또는 재판부와 사건처리문제에 대해 협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 당시 작성돼 언론에 배포된 사건발표문들을 통해서도 실제 당시 수사결과 또는 사건의 실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부분 과장된 내용이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관련 기록들은 공식 수사·재판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었고, 전체적으로는 공식 수사·재판기록과 비교·분석하면서 사건의 실체와 조작 또는 과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사건기록들의 검토와 분석도 필요했다. 정영사건의 경우, 정영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오형근, 안장영, 안희천, 황용윤 사건들의 수사결과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기록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수적이었고, 송씨일가간첩단 사건의 경우도 ‘흑룡공작’과 박종덕사건에 대한 기록검토가 필요했다.

조사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과 단행본 등 각종 공개자료들은 위 자료들에 대한 검토·분석 내용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데 활용되었으며, 때로는 효과적인 면담을 위한 준비자료이자 쟁점 조사의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관련자 면담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하고자 했다. 사건 대상자는 물론 참고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받은 사람들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나, 소재파악의 어려움과 갑작스런 사망으로 면담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건조사 기간에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당사자인 송지섭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면담조사는 과거 사실을 다시 확인하거나 일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오히려 사건기록만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점은 한계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관들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검진했던 안기부 소속 의료진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고자 했다. 수사관은 범죄사실 및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구타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당사자이고, 의료진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및 구타 등에 대해 수사관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진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사 대상자이다. 그러나 수사관과 의료진의 경우 면담을 강제할 만한 법적 권한이 없어 면담에 응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같이 관련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면담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선정된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의 문제점이자 결과의 한계이기도 하고, 본 보고서의 제한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는 당시 안기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이 모두 남아 있지 않은 점이다. 안기부 수사기록의 경우 오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의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가공된 자료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반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들은 이와 같은 공식 수사기록이 작성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자료다. 현재 남아 있는 수사기록으로도 의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록들로 볼 때 더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없었다.

둘째는 각 사건과 연관된 사건들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경우 첩보의 출처라고 기록돼 있는 ‘도원1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도원1호가 실제로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는 각 사건담당 안기부 수사관과 의료진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진실위의 권한으로는 면담 대상자의 동의 없이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위가 국정원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보였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넷째는 위와 같은 한계와 함께 보고서에 소개되고 있는 적은 사례 수로부터 비롯되는 한계다. 중정과 안기부가 수사한 대공사건들에 비해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다. 따라서 보고서에 제시된 사건들의 실체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정과 안기부가 수사한 모든 대공사건들에 적용해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본 보고서가 중정과 안기부의 간첩수사에 대한 일정한 경향과 추이를

보여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정과 안기부가 수사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 사회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아니었고, 이 또한 전체 사건 수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중정·안기부 관련 사건들에서 본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3 간첩사건의 변화와 유형

가 간첩사건 통계

간첩사건의 세부적인 유형을 파악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간첩 관련 통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유형별 간첩 분류】 11)

구분	직파	일본우회	3국우회	납북귀환어부	강제송환	재남	기타	계
1951-1959	1522	8	0	2	0	142	0	1674
1960-1969	1280	82	30	39		253	2	1686
1970-1979	287	183	13	37	5	156	0	681
1980-1989	95	138	23	19	0	65	0	340
1990-1996	32	19	19	0	0	6	38	114
총계	3216	430	85	0	0	622	40	4495
1980	39	7	4	0	0	8	0	58
1981	6	15	1	3	0	10	0	35
1982	7	19	0	3	0	14	0	43
1983	36	19	2	2	0	4	0	63
1984	1	23	1	6	0	2	0	33
1985	6	22	5	3	0	24	0	60
1986	0	20	2	2	0	2	0	26
1987	0	7	2	0	0	0	0	9
1988	0	4	3	0	0	0	0	7
1989	0	2	3	0	0	1	0	6
1990	0	8	1	0	0	0	0	9
1991	0	0	3	0	0	0	0	3
1992	3	2	2	0	0	0	22	29
1993	0	3	3	0	0	0	0	6
1994	0	2	5	0	0	0	8	15
1995	3	4	1	0	0	0	8	16
1996	26	0	4	0	0	6	0	36

11) 이하의 통계는 국가안전기획부, 『검거간첩 연도별 기관별 통계(51-96년)』와 육군본부가 간행한 『대공판단』 각 연도판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유형 별 간첩 분류 : 1970-1979】

구분	남파	일방 후 남파	대동 일방 후 남파	재남	한반 도일 후 남파	일방 도일 후 남파	일방도일 일방 후 남파	일방도일 일방 후 일본경우 남파	남북 귀환	제3국 우회	위장 귀순	도구 일방 후 남파	일방 우회 남파	중공 남파	강제 송환	계
1951-69	1523	1243	34	393	17	73	3	0	40	26	1	4	1	2	0	3360
1970	87	21	4	12	3	10	4	6	2	0	0	0	1	0	0	150
1971	70	12	2	8	2	13	1	12	3	1	0	0	3	0	0	127
1972	0	6	1	26	7	5	2	5	6	1	0	0	0	0	1	60
1973	4	2	3	11	7	2	0	26	5	2	0	0	0	0	2	64
1974	8	2	5	39	8	2	0	6	6	1	0	0	7	0	2	86
1975	21	3	0	14	19	2	0	3	1	0	0	0	0	0	0	63
1976	4	2	1	17	3	1	0	2	5	4	0	0	0	0	0	39
1977	0	1	1	4	9	3	0	1	4	0	0	0	1	0	0	24
1978	7	0	1	5	5	0	1	0	2	1	0	1	0	0	0	23
1979	7	2	0	20	5	4	2	0	3	2	0	0	0	0	0	45

이들 간첩들이 침투해 온 경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침투루트별 간첩 분류】

구분	육상	해상				우회 (공항만)	남북 귀환	재남	기타	계
		동해	서해	남해	소계					
1951-1959	359	89	361	36	486	9	0	142	678	1674
1960-1969	526	298	338	55	691	124	0	251	94	1686
1970-1979	75	79	95	60	233	213	3	156	1	681
1980-1989	9	36	14	30	80	161	19	70	1	340
1990-1996	4	25	2	0	27	34	0	49	0	114
총계	973	527	810	181	1492	541	22	668	0	4495
1970	34	33	38	9	80	24	0	12	0	150
1971	27	22	19	19	60	32	0	8	0	127
1972	1	4	5	3	12	21	0	26	0	60
1973	5	0	6	3	9	39	0	11	0	64
1974	0	7	12	2	21	26	0	39	0	86
1975	1	8	10	4	22	26	0	14	0	63
1976	4	2	3	3	8	10	0	17	0	39
1977	2	1	2	2	4	14	2	4	0	24

1978	0	2	0	8	10	8		5	0	23
1979	1	2	1	7	10	13	1	20	0	45
1980	4	8	10	14	32	11	0	10	1	58
1981	1	0	1	1	2	16	3	13	0	35
1982	1	2	3	1	6	19	3	14	0	43
1983	3	26	0	7	33	21	2	1	0	63
1984	0	0	0	1	1	24	6	2	0	33
1985	0	0	0	6	6	27	3	24	0	60
1986	0	0	0	0	0	22	2	2	0	26
1987	0	0	0	0	0	9	0	0	0	9
1988	0	0	0	0	0	7	0	0	0	7
1989	0	0	0	0	0	5	0	1	0	6
1990	0	0	0	0	0	9	0	0	0	9
1991	0	0	0	0	0	3	0	0	0	3
1992	3	0	0	0	0	4	0	22	0	29
1993	0	0	0	0	0	6	0	0	0	6
1994	0	0	0	0	0	7	0	8	0	15
1995	1	0	2	0	2	0	0	13	0	16
1996	0	25	0	0	25	5	0	6	0	36

당국이 이들 간첩들을 적발해 낸 계기를 단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거단서별 간첩 분류】

구분	인지	공작	신고	검문	자수	계
1951-1959	1103	49	92	312	118	1674
1960-1969	419	86	471	539	99	1686
1970-1979	360	33	104	161	23	681
1980-1989	145	77	61	36	21	340
1990-1996	50	19	5	25	15	114
총계	2149	264	733	1073	276	4495
1970	43	0	34	70	3	150
1971	44	0	19	60	4	127
1972	53	0	2	4	1	60
1973	59	0	1	3	1	64
1974	75	0	2	7	2	86
1975	36	0	7	17	3	63
1976	21	4	9	0	5	39
1977	11	9	3	0	1	24

1978	12	3	7	0	1	23
1979	6	17	20	0	2	45
1980	16	15	27	0	0	58
1981	23	8	3	0	1	35
1982	32	4	4	1	2	43
1983	13	11	7	29	3	63
1984	12	10	8	0	3	33
1985	20	18	10	6	6	60
1986	19	5	1	0	1	26
1987	2	4	0	0	3	9
1988	4	2	0	0	1	7
1989	4	0	1	0	1	6
1990	5	0	0	0	4	9
1991	3	0	0	0	0	3
1992	27	0	1	0	1	29
1993	2	0	1	0	3	6
1994	2	10	1	0	2	15
1995	10	1	1	1	3	16
1996	1	8	1	24	2	36
총계	2149	264	733	1073	276	4495

당국이 파악한 이들 간첩의 소속을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소속별 분류】

구분	노동당	인민 무력부	사회 안전부	내무성	정치 보위부	조총련	일공	구국 투위	중공	계
1951- 1975	2353	901	268	118	33	214	1	2	20	3910
1951- 1969	1955	857	265	118	25	117	1	2	20	3360
1970	120	21	0	0	0	9	0	0	0	150
1971	93	17	3	6	0	14	0	0	0	127
1972	46	0	0	0	0	14	0	0	0	60
1973	31	4	0	0	0	29	0	0	0	64
1974	77	0	0	0	0	9	0	0	0	86
1975	31	2	0	0	8	22	0	0	0	63
1976	29	3	0	0	0	7	0	0	0	39
1977	15	0	0	0	0	9	0	0	0	24
1978	9	8	0	0	0	6	0	0	0	23

1979	30	1	0	0	0	14	0	0	0	45
1980	47	5	0	0	0	6	0	0	0	58
1981	16	4	0	0	0	15(재일간 첩)	0	0	0	
1982	()	()	0	0	0	()	0	0	0	
1983	38	8	0	0	0	17	0	0	0	63
1984	10	0	0	0	0	23	0	0	0	33
1985	43	0	0	0	0	17	0	0	0	60
1986	10	0	0	0	0	14	0	0	기타 2	26
1987	3	0	0	0	0	6	0	0	0	9
1988	6	0	0	0	0	1	0	0	0	7
1989	4	0	0	0	0	2	0	0	0	6

이들 검거 간첩의 성별과 연령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 별】

구분	성별		계
	남	여	
1951-1969	3208	152	3360
1970	145	5	150
1971	125	2	127
1972	56	4	60
1973	59	5	64
1974	83	3	86
1975	57	6	63
1976	34	5	39
1977	21	3	24
1978	23	0	23
1979	39	6	45
총계	3850	191	4046

【연령별 간첩 분류】

구분	20세이하	21-30	31-40	41-50	51-60	61이상	불상	계
1951-1959	2	7	194	633	547	237	54	1694
1960-1969	5	706	374	360	173	43	25	1686
1970-1979	3	174	222	155	80	27	20	681

1980-1989	11	72	64	58	37	18	80	340
1990-1996		37	38	6	8	14	11	114
총계	21	996	892	1212	845	339	190	4495
1980	1	3	4	9	2	4	35	58
1981	2	4	9	11	6	1	2	35
1982	3	16	11	7	4	1	1	43
1983	0	13	8	4	4	2	32	63
1984	3	13	6	5	6	0	0	33
1985	2	14	11	12	7	6	8	60
1986	0	8	8	5	2	1	2	26
1987	0	0	4	2	3	0	0	9
1988	0	1	1	3	0	2	0	7
1989	0	0	2	0	3	1	0	6
1990	0	2	0	0	2	2	3	9
1991	0	1	0	0	0	0	2	3
1992	0	14	8	0	4	2	1	29
1993	0	1	2	0	0	1	2	6
1994	0	3	9	0	0	2	1	15
1995	0	3	7	0	1	3	2	16
1996	0	13	12	6	1	4	0	36

이들의 학력과 경력은 다음과 같다.

【학력별】

연도	무학	한학	국퇴	국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퇴	전졸	대재	대퇴	대졸	대학원	대원재	대원졸	불상	계
1951-1969	188	43	128	816	145	692	46	100	12	28	5	102	201	0	0	0	854	3369
1970	3	2	7	14	0	9	2	7	2	0	0	1	8	0	0	0	95	150
1971	1	1	9	6	7	15	3	6	1	3	3	8	6	0	0	5	53	127
1972	4	2	4	5	1	3	2	9	1	2	1	8	9	0	0	0	9	60
1973	3	0	1	9	1	3	3	5	0	3	0	2	10	0	0	9	15	64
1974	5	0	5	9	6	4	0	5	0	0	1	6	25	40	0	4	16	86
1975	0	0	3	5	1	2	2	3	0	0	14	2	9	4	0	0	18	63
1976	2	0	4	7	2	4	0	1	0	2	4	2	4	0	1	1	5	39
1977	2	0	5	3	2	0	2	3	0	0	1	4	1	0	1	0	0	24
1978	2	2	1	1	2	0	0	1	0	0	0	2	3	1	1	0	7	23
1979	3	0	6	5	0	6	3	2	0	0	0	5	6	0	0	1	8	45

【경력별】

구분	병·역	상업	노동	공무원	교원	학생	공무원	단체인	선원	연인	회사원	군인	정치인	유전수	군속	의사	예술인	접객업	무직	기타	불상	계
1951-1969	262	148	162	124	113	5	107	123	156	16	162	701	1	2	16	13	1	1	51	76	1120	3360
1970	3	7	10	4	0	0	3	12	7	0	4	18	0	2	0	0	0	0	4	3	73	150
1971	3	3	3	0	6	0	1	8	18	1	2	52	0	1	0	0	0	0	5	9	15	127
1972	5	2	1	2	3	0	2	4	8	0	8	0	0	2	0	0	0	0	11	6	6	60
1973	8	8	4	0	7	0	3	0	9	0	10	0	0	3	0	0	0	0	5	4	3	64
1974	10	12	4	0	7	0	2	2	9	0	13	3	0	1	0	0	0	0	9	4	10	86
1975	2	4	0	0	4	18	1	1	1	1	5	0	0	0	0	0	0	0	1	1	24	63
1976	8	4	0	1	0	6	0	1	3	0	3	3	0	0	1	0	0	0	6	3	0	39
1977	2	1	2	0	1	2	0	0	6	0	5	0	0	0	0	0	0	3	2	0	0	24
1978	7	0	1	0	1	1	0	0	1	0	5	7	0	0	0	0	0	0	0	0	0	23
1979	8	5	1	1	1	0	0	1	2	1	6	4	0	0	0	0	0	1	7	0	7	45

이들이 남한에 침투하여 적발될 때까지 활동한 기간 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활동기간별】

구분	당일	4일	15일	1월	6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	불상	계
1951-1969	733	335	253	508	368	220	136	85	77	97	71	21	2	0	454	3360
1970	55	22	7	11	12	9	3	3	0	2	10	5	5	0	6	150
1971	34	7	23	7	3	21	4	2	3	2	3	7	2	9	0	127
1972	2	1	1	0	3	1	5	5	4	3	8	12	0	4	11	60
1973	0	3	0	1	1	1	5	7	5	11	26	3	0	1	0	64
1974	1	7	0	2	3	2	1	5	6	14	19	25	0	1	0	86
1975	17	3	3	3	2	0	5	3	2	3	8	0	1	0	13	63
1976	3	0	2	3	0	0	3	3	3	3	6	2	6	0	5	39
1977	2	0	0	0	0	2	0	0	2	6	6	4	2	0	0	24
1978	8	0	0	0	0	1	1	1	2	1	5	2	0	2	0	23
1979	6	2	1	0	1	1	2	0	1	6	14	6	5	0	0	45

흔히 민가협 등의 자료를 보면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한이 공작원의 남파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원 직파는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니며, 공작의 중심이 우회침투로 옮겨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도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직파 공작원의 남파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1970년대 이후 주요 직파간첩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주요 직파간첩】

구분	남파일자	검거일자	검거기관	신고	비 고
김숙양	50년대	73.3	중앙정보부		우도간첩사건 /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 후 월북
채수정	74.2	74.4	치안국		71.10, 73.11, 74.2 3회 남파, 고첩 7개망
박복순	75.4.27	75.4.29	중정 발표	신고	4촌형 박모 변호사 만난 뒤 신고우려 도주
김득영	75.4.27	75.5.3	중정 발표	신고	박복순 조원
김용규	76.9.19	76.9.20	여수경찰서	자수	거문도 상륙 후 조원 2명 사살 후 자수
홍종수	80.5.16	80.5.23	서울시경	신고	72.11, 74.5, 75.6, 80.5 등 총 4회 남파
이연중	61.9	80.6.28	경찰		홍종수가 접선하려던 73년 단선된 남파공작원
정해권	82.10.20	-	안기부발표	신고	75.2, 82.10 2회 남파, 위장취업 시도 중 검거
성명미상	-	-	-	자살	대구미문화원 / 시민 살해 후 자살
신광수	85.2.24	85.2.26	안기부	신고	일본인 납치 관련 / 자수간첩 방원정 신고
김승일	-	87.12.15	안기부		KAL기 폭파 사건, 바레인에서 자살
김현희	-	87.12.15	안기부		KAL기 폭파 사건, 바레인에서 검거
김낙효	1989	미검거	-		고영복 교수가 편지 제공
이선실	-	미검거	-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권OO	-	미검거	-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김동식	95.10	95.10	안기부	신고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 부여간첩사건
정수일	84.4.29	96.7.3	안기부		아랍계 대학교수 위장
성명 미상	-	미검거	-		이한영 살해
최정남	97.8.2	97.11	안기부, 경찰 합동	신고	부부간첩, 울산연합 간부 정모씨 등에 신분노출하고 접근하다 신고로 검거/강연정은 안기부 수사초기 자살
강연정					
진운방 등	-	98.12.18	국정원		여수해안 반잠수정 격침 / 민혁당 사건
정경학	-	2006.7	국정원		3회 침투, 국적 세탁

북한이 남파한 공작원은 위의 표에 정리한 것이 물론 전부가 아니다. 검거 간첩 또는 자수 간첩 중에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사례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침입 단계에서 휴전선 부근이나 해상 또는 해안선에서 군경에 의해 적발되어 사살 또는 도주한 자들도 많으며, 남쪽 사회에 잠입하여 암약하다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자들, 또는 아직도 암약하고 있는 자들도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의 표는 북한의 대남공작에서 직파공작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 그 흐름은 일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1976년 이후 간첩으로 체포-자수-사살된 사람은 약 700여명인데 그 중 침투 단계에서 사살된 자가 130여명이고, 검거된 직파 공작원은 1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재일동포나 해외 취업 등 우회간첩, 월북자가족 관련 간첩, 납북어부 간첩 등이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친북 성향의 급진운동 세력 일부가 북과 직접 연결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이다. 더구나 1980년대까지 직파 간첩으로 검거된 북한공작원들도 대공수사당국의 치밀한 과학수사에 의해 적발되었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다. 직파 간첩의 검거는 극히 적고, 국가보안법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도저히 간첩으로 공소유지가 될 수 없는 납북어부나 재일동포 등 간첩사건만 늘어나다 보니 인권단체나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안기부의 수사관행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차별적인 확대해석도 여러 가지 안팎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면서 안기부의 대공수사에서 수사절차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과학수사를 통해 간수 교수 사건, 민혁당 사건, 정경학 사건 등 북한의 직파 공작원이나 직파 공작원과 관련된 간첩 사건을 적발했으며, 최근 일심회 사건의 경우 간첩단이나 개별 간첩이냐의 해석을 두고 논란은 있지만, 그 실체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두고 잡음이 일지 않은 것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나 간첩죄의 확대적용의 문제점을 상당한 수준에서 개선한 것이라 하겠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대남침투공작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연고선을 이용한 공작이었다. 분단 직후 또는 한국 전쟁 중에 월북한 사람들이 아직 젊었고, 이들이 월북한 후 시간도 많이 경과하지 않아 남쪽 사회의 변화도 그 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전쟁 직후에 북이 남과 공작원의 선발에서 남쪽 환경을 잘 알고 공작토대가 유지되고 있는 남쪽 출신을 선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4월혁명이후인 1960년 6월의 국가보안법 개정에서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없었던 불고지죄가 신설된 것은 북측의 대남공작에서 연고선을 통한 공작이 주를 이루었던 사실을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연고자 중심의 공작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쪽사회의 반공의식은 상당히 공고해졌다. 부모형제 혹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의 집을 찾아갔다가 쫓겨나거나 신고를 당하는 일도 빈발했다. 김영천 법무차관은 6·25 당시 월북하였다가 10년 만에 찾아온 친동생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¹²⁾ 유명한 영문학자인 오화섭 연세대 교수는 매부인 정연철이 남파되어 찾아오자 “나가라고 내쫓았을 뿐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던 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 1심에서는 선고유예,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언도되었다.¹³⁾ 북쪽 당국도 남로당계의 숙청을 거치면서 남쪽 출신들에 대해 일정한 불신을 갖게 되는데다, 남쪽 사회의 간첩 신고율도 높아지면서 남쪽 출신보다는 당성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북로당 계열을 남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¹⁴⁾

196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베트남전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북한은 1968년 1월 21일 124군

12) 『조선일보』 1960년 10월 8일자.

13) 『조선일보』 1960년 10월 28일, 1961년 3월 30일, 10월 5일자.

14)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1978, p.198.

부대 특수요원 31명을 침투시켜 청와대 기습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이런 무모한 시도가 좌절되었음에도 농촌혁명근거지 전략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 울진·삼척 지구에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작원 120명을 1개조 15명씩 8개조로 편성하여 3차에 걸쳐 침투시켰다가 군·경의 작전에 의해 섬멸되었다.

이와 같은 유격대 전략과 아울러 북은 과거의 한국전쟁 이전의 남로당 등 좌익역량 잔존 세력과 학생운동 등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운동진영의 선진분자들을 결합하여 남한 사회 내에 지하당을 구축하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8년 8월의 “세칭 통일혁명당 사건”이다. 유격대 파견이나 통일혁명당 형태의 지하당 구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북은 유격대 파견 노선은 확실하게 폐기한 반면, 통일혁명당과 같은 지하당 구축의 꿈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였다.

1970년 조선로동당 제5차당대회를 거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에 따른 유일체제를 공고히 하게 되는데, 이 같은 변화는 대남전략에서는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손으로”라는 구호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 입장이 북이 대남 침투활동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북이 직접 침투시키는 남파공작원의 숫자는 1970년대 들어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민가협 자료에 따르면 1989년 당시 북역 중인 비전향 장기수는 모두 216명인데, 그 중 남파간첩은 모두 61명이었다. 이들 중 1951년-1960년 사이에 검거된 사람이 21명, 1961년-1970년 사이에 검거된 사람이 30명, 1971년-1980년 사이에 검거된 사람이 6명, 1981년 이후에 검거된 사람이 2명, 미확인이 2명이다. 이 중 1970년대에 검거된 사람들도 대체로 1960년대에 남파된 사람들이다.¹⁵⁾

1970년대 들어와 북에서 직접 공작원을 남파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연고선 공작의 효용은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안사령부는 울진·삼척 지구 무장간첩 침투 사건 이후 북의 대남전술에 대해 “이 시기의 전술의 특징은 지하당 구축에 있어서 과거에

15) 박원순, 『국가보안법』 2, p.387.

나타났던 연고자 중심의 공작방향을 탈피해서 도시 또는 항구지대의 하층 계급을 대상으로 한 무연고자를 중심으로 한 공작전술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¹⁶⁾

한편 남쪽의 방첩당국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북은 1975년 경 연고선 공작을 중단하고, 그 동안 양성한 남쪽 출신 공작원들을 모두 사회로 복귀시켰다고 한다. 왜냐하면 “남한출신 공작원들에 의한 연고선 공작은 ▷ 연고자들의 자수 권유 ▷ 주민들의 신고 ▷ 공작원의 심경변화로 인한 자수 등으로 인해 공작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1975년 경부터 연고선 공작을 지양”했다는 것이다. 이 때부터 북한 당국은 “남한 출신 공작원들을 대량 제대시킴과 동시에 잔여 공작원들을 무연고지에 침투”시키는데 주력하였는데, 조선로동당 연락부장 정경희는 연고지 공작의 부작용 때문에 남한 출신 공작원들이 무연고지에 남파될 경우 “고향출입을 절대 금지”시켰다고 한다.¹⁷⁾

북한이 연고선 공작을 포기한 이유는 공작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계속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 내의 대공수사의 방향이 연고자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남파예상자들의 연고자들은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고, 남한 공안당국으로부터 밀착 감시를 받게 되었다. 보안사령부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70년 초반까지의 고첩 색출 방향은 남파예상자 사찰에 총력을 집중한 시기”였다고 한다.¹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송씨 일가 사건 관련자들은 1963년 이래 당국의 중점 사찰대상자가 되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21사건 이후 국민들의 대공의식이 급속히 강화되고 신고정신이 투철해짐에 따라 연고선 공작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더구나 당국이 남파 가능성이 있는 월북자들의 재남 연고자들에 대해 밀착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과거의 연고선 공작 대신 일본

16)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p.428.

17) 『대공관단(84-85, 1985.4)』, 공군본부, p.86.

18)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p.433.

우회 등 새로운 형식의 침투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북한이 연고선 공작을 아주 포기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나, 확실히 대남 공작의 무게중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조작의혹이 제기 되는 월북자 가족 간첩 사건은 1980년대 초반에 안기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적발된 사건들이다. 일부에서는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사살사건으로 인해 입지가 축소된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진도 간첩단 사건이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연속 터뜨렸다고 하나,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발생한 간첩 사건을 안기부가 입지 회복에 충분히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입지 회복을 위해 간첩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

1980년대 초반에 발생한 월북자·행불자 가족 간첩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1980년대 초반의 주요 월북자·행불자 가족 간첩 사건】

구분	검거일	검거기관	월북자와의관계	대동입북	남파횟수	활동지	증거
김정인(42세)	80.8.14	중정	외숙 박양민	3회		전남 진도	21만원, 암호문
석달윤(47세)	80.8		외10촌형 박양민				
정재현(49세)	80.10.7	경찰	형 정동헌			충북 음성	
정춘상(56세)	80.11.10	중정	숙부 정해진				기관총 등
정종희	80.11.10		종조부				
박동운(37세)	81.3.9	안기부	부 박영준	2회	5차	전남 진도	무전기 부시는데 썼다는 자귀
박경준(49세)	81.3		박동운 숙부				
이수례(58세)	81.3		박동운 모				
박근홍(35세)	81.3		박동운 동생				
나진(48세)	81.6.9	치안본부	동향인 김주상(김송무:통혁당 핵심)				
나수연(53세)							
안승윤(51세)	82.2.25	안기부	형 안승술	1회	5회	안동,서울	무전기2대, 암호표 2매, 라디오3대,

안승익(47세)			형 안승술				한화 2,795만원 상당
김근연(59세)							
김귀해(48세)			안승윤 처				
송씨 일가 사건	82.3	안기부	송창섭	2회 (송지섭, 송기준)	8회	청주,서울	
이준호	85.1.11	시경 대공분실	숙부 이한수			강화,인천	남파간첩 홍중수 증언/진화위 조작 결정
배병희	85.1.11	상동	이준호의 모				
이창국(63세)	84.7.4	안기부	형			인천	
나종인(47세)	84.10.5	보안사	누나 나경혜	2회			
나종갑(42세)							
이곤	84.10.8						나종인과 연결

1980년대 초반에 월북자 가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은 ‘도원 1호’라는 북한의 고위 공작원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도원 1호’는 북한의 부부장급 고위공작원으로 그를 체포한 것은 남쪽의 대공활동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작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10·26사건 이후 남쪽의 고위공직자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동요하는 고위공직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특수공작계획을 세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도는 과거에도 4·19혁명과 5·16군사정변과 같은 정치적 격동기에 자주 일어났다. 4·19 후에는 본 보고서 송씨 일가 간첩 사건의 송창섭이 남파되어 친구인 민주당 중진 김영선(곧 재무장관 취임)을 접촉한 것을 비롯하여 김영천 법무장관에게 친동생이, 유명한公安검사인 한○○ 부산지검 정보부장에게 4촌 동생이 파견되었다. 5·16군사정변 후에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겨냥하여 황태성이 내려 온 것을 비롯하여, 육군참모차장 김○○ 중장을 포섭하기 위해 4촌동생이, 최고위원인 8사단장 최○○ 장군을 포섭하기 위해 조카가, 국방부 총무국장 이○○ 장군을 포섭하기 위해 조카가 남파되는 등 북한은 정치적 격동기에 핵심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작원을 남파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은 북한 간첩과 접촉한

협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¹⁹⁾

10·26사건 이후에는 군 고위장성 출신으로 우방국의 대사로 나가 있던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2명의 고위 공작원을 잠입시켰다가 역공작에 걸려 두 명 모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중 전향한 ‘도원 1호’는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로서²⁰⁾ 북의 대남사업과 관련하여 아주 고급의 정보를 엄청난 양으로 제공했다. 그는 특히 남파 공작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이 정보가 단초가 되어 남파가능성이 높은 월북자들과 그들의 연고자들에 대한 내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진실위는 문서조사에서 1980년도에 「월북자 연고인 조사」나 「월북 및 행불자 명단」 작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개인에 대한 자료만 찾았을 뿐 월북자 전체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결과보고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도원 1호’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적발된 월북자 가족 간첩 사건으로는 김정인·석달윤 사건(1980), 정춘상 사건(1980), 박동운 사건(1981), 송씨 일가 사건(1982) 등이 있다. 이 중 정춘상 사건은 증거물로 소련제 기관단총과 실탄이 나오는 등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물이 나온 사건이지만, 다른 세 사건은 중앙정보부-안기부의 대표적인 조작의혹 간첩 사건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6월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정인·석달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사건에 대한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²¹⁾

한편 안기부는 1983년 ‘흑룡공작’이란 공작을 통해 남파되었다는 첩보가 있는 월북자들의 연고자들에 대해 내사 수준을 넘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역시 앞의 도원 1호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²²⁾

19) 『조선일보』 1962년 1월 10일자.

20) 그의 회고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하 (1992-1993 중앙일보사)는 해방 직후의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의 지적 공백을 메워 학계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21) 그러나 김정인 씨는 1985년 10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현재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80년대의 간첩 사건에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김정인 씨가 유일하다.

22) 안기부 자료, 『흑룡공작철』.

이 때 조선로동당 연락부장 정경희의 조카인 정은복 씨가 1983년 8월 31일 경 안기부에 연행되어 간첩 관련 혐의에 대해 약 20여 일 간 조사를 받고 9월 20일 경 석방되었는데, 그는 석방 직후 자살을 시도 하였다가 살아났지만, 3개월 후인 12월 15일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²³⁾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월북자 (또는 행불자) 가족 간첩 사건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간첩으로 검거되었지만, 정작 월북자는 재북간첩이라 표시될 뿐 검거되지 않았다.

둘째, 일부 사건들이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가혹행위로 얻어진 자백에 기초할 뿐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지 않다. 박동운 사건의 경우는 무전기를 부수는데 사용했다는 자귀가 증거물로 제출되기도 했다.

셋째, 김정인 사건의 박양민을 제외하고는 월북자(또는 행불자)가 남파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박동운 사건의 경우, 안기부가 수사에 착수한 과정을 보면 박영준의 월북에 대한 확실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진도 출신 행불자 박영준은 월북한 것임에 틀림없고, 진도 출신 박씨가 남파되었다는 첩보가 있는데 그 박씨가 박영준일 가능성이 있고, ‘박영준이 남파되었다면 아들 박동운과 부인 이수례 등과 접촉하였을 것이다’ 라는 가정(假定)에 가정이 꼬리를 문 상태에서 박동운 일가족을 연행하여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월북자가 만약 남파되었다면 누구를 접촉했을까 하는 추정으로 사건을 만들어낸 또 다른 사례로는 보안사가 조사한 나종인 사건이 있다.²⁴⁾

넷째, 월북자의 남파 시점이 빠르면 50년대 후반, 늦어도 1960년대 초반으로 설정되어 수십 년 간 암약한 고정간첩단으로 발표된다.

23) 「정은복 사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2000.10 - 2002.10), 제3권, pp.709-720.

24) 나종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기암약 고정간첩 나종인 일당 사건」, 국군보안사령부, 『대공활동사』 1, 1988, pp.451-460에 나와 있다.

다섯째, 수십 년 간 암약해 온 고정간첩단이라는 거창한 발표와 긴 활동기간에 비해 간첩 혐의는 아주 빈약하고 오래된 것이다. 수십 년 간 암약한 고정간첩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송도에 바람 쐬러 갔다가 정박해 있는 배를 보았다는 정도이다.

여섯째, 연고자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보니 대부분 일가·친척을 포함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되곤 한다. 그 일가족이 쑥대밭이 됨은 물론이다.

일곱째, 당국이 오래 지켜본 사건이 많다. 남북귀환어부 사건인 동시에 월북자 가족 사건이기도 한 정영 사건의 경우, 정진영·정영 등은 오징어 공작, 래왕선 공작, 미나리공작 등 술한 공작의 대상이었다.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도 일가족들은 1960년대 초반 이래 당국의 요시찰인물로 밀착감시를 받아왔다. 정영 사건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정진영은 구속되기 1년 전에도 안기부에 끌려와 ‘엄문’을 당했다. 그는 그 때도 월북한 동생이 남파되었을 때 접촉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안기부가 이를 허위자백으로 보고 그 이유를 추궁하자 그는 “월북한 동생 때문에 과거에도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항상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다”면서 “이번에 또 가족들과 함께 와서 여러 날 조사를 받게 되니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친구를 만났다고 해야 가족들이라도 풀려날 것 같고 허위진술이라도 하여 형을 받게 되면 당국의 감시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죄를 만들기 위해 허위진술했다”고 말했다.²⁵⁾ 허위증언을 해서라도 차라리 감옥에 한 번 가고 털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은 장기간 공안당국의 감시와 사찰을 받아야 했던 월북자 가족들의 심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⁶⁾

라

해외와 관련된 간첩사건 (우회간첩)

일반적으로 간첩이라면 북에서 파견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검거된

25) 안기부 자료, 「(정진영)일일신문사향」 6호, 1982년 2월 14일,

26) 월북자 가족들의 고통과 심리는 조은, 『침묵으로 지은 집』(2003, 문학동네)에 잘 묘사되어 있다.

간첩을 분석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북에서 직접 내려 보낸 간첩은 숫적으로 많지 않다. 간첩을 침투유형별로 분류한다면 첫째, 북에서 직접 파견한 남파간첩 또는 직파간첩, 둘째, 남파간첩이 연고선 등을 이용하여 포섭한 고정간첩, 셋째, 일본 등 제 3국을 통해 침투한 우회간첩 등으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이 중 1970년대 이후, 특히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간첩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회간첩이다. 1970년대 이후 직파간첩의 남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직파간첩이 연고선을 이용해 부식한 고정간첩의 숫자도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우회간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북한이 1970년대 이후 공작원 직파보다 우회침투 전술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보안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68년 1·21사태 및 울진·삼척 사건 이후 휴전선과 해안경계가 강화됨으로 인해 북괴는 비합법침투로 인한 희생과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6·25 이후 20여 년 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생활여건이 상이해짐으로 인해서 한국에 남파된 간첩이 적응문제로 인해 간첩 임무수행보다는 신분위장에 더욱 주력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소극적인 활동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하게 되자 북괴는 침투수법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²⁷⁾

우회간첩 사건 내에서는 역시 일본 관련 사건이 압도적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을 우회한 주요 간첩 사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요 일본 우회 간첩 · 조총련 관련 사건】

구분	검거일시	검거기관	형량	분야	경로
강신팔(62세)	77.12.31	중정			
김창규(43세)	78.1.10	중정			
조상록(32세)	78.1.28	중정			
김동필(55세)	78.5.20	중정			
신영만(56세)	80.3.5자수	중정			북한간첩으로 일본에 밀파, 경시청 자수후 자진입국

27)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p.435.

신귀영(43세)	80.4.14	경찰			외항선원
서성철(47세)	80.4.14	경찰			외항선원
신춘석(42세)	80.4.14	경찰			외항선원
김현규(66세)	80.4.16	중정			대일화물선선원
여석조(61세)	81.4.26	보안사			위장전향/구명운동
장현우(45세)	81.4.27	보안사			
박창석(43세)	81.4.27	안기부			한민통 관련
김장길(41세)	81.5.12	안기부			
진이척(24세)	81.5.17	안기부	학원		재일동포유학생
최홍전(51세)	81.5.18	경찰			
김평강(41세)	81.7.14	경찰			밀항 체일, 강제송환
허간희(43세)	81.7.14	경찰			밀항 체일
손유형(52세)	81.4	안기부			민단 위장전향
김태홍(25세)	81.9.20	보안사	학원		재일동포유학생
이주광(30세)	81.10.7	보안사	학원		재일동포유학생
이헌치(29세)	81.10.18	보안사			재일동포 국내취업
김양수(46세)	82.4.20	안기부			
박영식(31세)	82.5.19	보안사	학원		재일동포유학생
김희봉(57세)	82.9.11	보안사			위장전향/구명운동
이종수(24세)	82.11.6	보안사	학원		재일동포유학생
최양준(43세)	82.11.17	보안사			
하원차량(41세)	83.7.4	보안사			일본 취업
김상순(28세)	83.7.20	1002보안대			일본 방문
박박(28세)	83.8.10	보안사			재일동포유학생
서성수(32세)	83.8.15	보안사			재일동포유학생 배후
김병진(28세)		보안사			재일동포유학생/보안사 근무 후 책 발간하여 조작간첩 실상폭로
이성우(59세)	84.1.4	안기부			
김병주(59세)	84.1.9	안기부			
고창표(51세)	84.1.9	안기부			
정영범(46세)	84.1.9	안기부			
김혜승(23세)	84.2.14	안기부			

허철중(31세)	84.3.6	보안사			
여수동(57세)	84.4.6	안기부			
오규수(59세)	84.2.6 자수	안기부			
정금란(34세)	84.4.28	안기부			
이장형(52세)	84.6.15	치안본부			
고원일(66세)	84.6.15	치안본부			
김두현(61세)	84.6.27	안기부			
김용우(30세)	84.6.21자수	안기부			
서경윤(39세)	84.7.4	보안사			
김창규(55세)	84.7.22	치안본부			
조신치(28세)	84.9.3	보안사			
조일지(28세)	84.9.1	보안사			
윤정현(31세)	84.9.5	보안사			
조봉수(42세)	84.10.5	치안본부			
신상봉(56세)	85.2.26				
김계수(48세)	85.4.22	보안사			
최해보(57세)	85.5.9	치안본부	부산근해시설		
유종안(53세)	85.5.9	치안본부	부산근해시설		
유한기(63세)	85.5.9	치안본부	부산근해시설		
정상금(42세)	85.5.24	보안사			
유지길(43세)	85.6.8	보안사	학원		
김윤수(47세)	85.6.10	보안사	군부		
이영자(45세)	85.6.25	보안사	군부		
문영석(25세)	85.8.14	안기부			
김철준(50세)	85.8.12	보안사	군부		
장용석(32세)	85.8.20	보안사(자수)			
이나바유다카	85.9.9	안기부	학원	일본인	한국유학생
구명서(34세)	85.10.11	안기부	학원		
김병련(60세)	85.10.24	안기부			
안인철(68세)	85.12.14	보안사			
강광보(45세)	86.1.24	보안사			
진영자(46세)	86.1.31	치안본부			

김양기(36세)	86.2.21	보안사			
심한식(67세)	86.3.11	보안사			
구명우(29세)	86.3.18	보안사	학원		
이경석(64세)	86.3.27	치안본부			
오재선(45세)	86.4.28	치안본부			
양승선(54세)	86.4.20	치안본부			
최영덕(38세)	86.5.6	안기부	학원		
노정화(41세)	86.6.13	치안본부	노동		
강희철(28세)	86.5.17	치안본부			
김기문(562세)	86.6.17	안기부			
김순일(28세)	86.6.28	보안사			
이병설(48세)	86.7.7	안기부	학원	서울대교수	
이동기(38세)	86.8.23	보안사	군부		
고찬호(46세)	86.9.8	보안사			
백마강(33세)	88.9.21	안기부			
김철(58세)	89.4.30	치안본부			조총련 연계 재미간첩
황찬수(67세)	89.10.30	안기부			85.5검거 최해보상부
서순택(61세)	90.1.19	안기부	무기		72년까지 4회 북한방문
김현규(46세)	90.9.4	안기부(지수)			
김익현(42세)	90.11.13	안기부			
정형배(43세)	91.9.12	안기부			
김효섭(432세)	92.7.21	안기부			
김삼석(42세)	93.9.8	안기부			
김은주(38세)	93.9.8	안기부			
이윤정(52세)	94.8.22	안기부			
이화춘(49세)	94.8.26	안기부			
박창희(75세)	95.4.2	경찰			
강순정(77세)	96.6.5	안기부			
유용범(50세)	97.7.28	안기부 · 기무사 합동			
한단석(79세)	00.1.25	국정원 · 경찰 · 기무사 합동			

* 보안상 공개되지 않은 간첩 · 조총련 사건 관련자료는 未포함

- * 검거일자는 안기부 등 공안당국 간행자료 속의 검거일자인데 민가협 등 피해자 측 자료의 검거일자보다 길게는 두 달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불법연행 일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는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있을 뿐 아니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라는 북한의 거대한 조직이 내놓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별다른 재일동포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보니, 재일동포의 98%가 남쪽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 이상이 조총련 소속이 되었고, 조총련의 세가 오랜 기간 민단을 압도했다. 그러다 보니 민단 소속 동포들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을 통해 이런 저런 끈으로 조총련 소속 동포들과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일본 사회는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합법화되어 의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문헌들이 합법적으로 서점에서 얼마든지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재일동포 청년들은 일찍부터 일본 사회의 민족적 차별을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 남다른 민족의식을 갖게 마련이었다. 이들은 군사독재 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당하는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였으며, 특히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재일동포 청년층 내에는 반유신·반박정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런 재일동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그 자신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으로 몰렸으며, 17년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뒤 한국의 인권운동과 조작 간첩 사건의 진실규명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서준식은 이렇게 지적했다.

1960-70년대 이런 자유와 진보의 사회적 분위기를 몸에 익히며 살았던 민족 의식이 강한 젊은 동포 지식인들이 설령 그가 ‘민단’에 소속을 두고 있었다 할지라도 시대에 뒤떨어져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는 조국의 반공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조총련’이나 ‘간첩’과는 애초에 관계없는 자유, 진보성향의 ‘민단’계 지식인들이 70-80년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²⁸⁾

28) 서준식, 「조작간첩 사건과 일본사회」,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분단조국의 희생양, 조작간첩』, 1994년 11월, p.11.

서준식은 일본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150명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이는 전체 조작간첩 사건의 반수를 차지할 만큼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까지 주장한다.

이제 일본 없이는 간첩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감케 한다. 1970-80년대에 간첩조작의 ‘황금어장’이었던 일본은, 역시 ‘황금어장’이었던 남북 귀환어부들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적 조건이 지나가버린 이제 간첩조작의 거의 ‘유일한 어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²⁹⁾

실제로 1984년도 간첩 검거 통계를 보면 검거간첩 33명 중 24명이 일본 우회침투 간첩이었을 정도로 1980년대의 검거간첩에서 일본 우회간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³⁰⁾

일본과 관련된 간첩 사건에서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측이 일본을 대남 침투의 전초기지로 사용한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공안당국에 의해 북한의 간첩으로 체포된 사람만 해도 1950.9~1985.3 사이에 98명에 달한다.³¹⁾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남측의 공안당국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지리적 조건과 60여만 명의 재일동포, 조총련 조직과 간첩활동 등에 관한 법제상의 미비, 그리고 잠입·탈출의 용이와 일본 핵신세력과 친북한 조직의 지원 등을 이용하여 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남침투공작을 수없이 기도했다.³²⁾

일본과 관련된 간첩 사건의 유형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나는 재일동포가 유학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체포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국인이 일본에 유학이나 취업, 친지방문 등을 이유로 건너갔다가 귀국한 뒤에 간첩으로 체포되는 경우이다. 이들 각각의 경우에서 비교적 숫자가 많은 유학생을 ‘재일동포 모국유학생’과 ‘한국인 일본유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9) 같은 책, pp.9-10.

30) 안기부, 『대공판단』(1984년 종합판), 1985.2, p.94.

31) 국정원측이 제공한 통계수치다.

32) 치안본부, 『조총련』, 1975, p. 271.

【일본 관련 간첩 사건의 유형 및 검거기관별 분류】

재 일 동 포	1)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증정- 안기부	임청조(71), 김승효(74), 김달남(75), 학원침투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 사건(75), 진이척(81),
		보안사	서승, 서준식 형제간첩단 사건(71), 강종현(75), 김정사(77), 김태홍(81), 이주광(81), 이종수(82), 서성수(83), 박박(83), 윤정현(84), 조신치(84), 조일지(84), 허철중(84)
		경찰	
	2) 재일동포의 한국에 대한 취업, 방문 등	증정- 안기부	강철순(72), 박창석(81), 손유형(81), 김양수(82), 이성우(84), 김길옥(85), 서순택(90)
		보안사	최창일(73), 박선정(73), 김철우(73), 진두현(74), 최철교·최 태교(74), 여석조(81), 이현치(81), 정상금(85), 유지길(85), 김윤슈(85), 이영자(85)
		경찰	
내 국 인	3) 한국인 일본유학생	증정- 안기부	최상룡(73), 유정식(75), 조상록(78), 이병설(86), 장의균(87)
		보안사	김영작(74), 김주태(74),
		경찰	양희선(73), 양승선(86),
	4) 한국인의 일본 에 대한 취업, 방 문, 밀항 등	증정- 안기부	김현규(80), 김장길(81), 김영희·양정이·김영준·김영추(82), 김준보(82), 김동주(83), 차풍길(83), 김성규(83), 오주석(83), 김병주·고창표(84), 정금란(84),
		보안사	김양기(86), 강광보(86)
		경찰	신귀영·서성철·신춘석(80), 김평강·허간희(81), 이순희 (82), 이장형(84), 고원일(84), 구명우(86), 조봉수(84), 서경 윤(84), 최해보(85), 유종안(85), 유한기(85), 강희철(86), 김 철(89)

일본 관련 간첩사건의 네 가지 유형, 즉 1)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간첩사건, 2) 재일동포의 한국에 대한 취업, 방문 등 관련 간첩사건, 3) 한국인 일본유학생 간첩사건, 4)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취업, 방문, 밀항 등 관련 간첩사건 중에서, 숫자는 가장 많은 반면 사회적으로 가장 덜 알려지고 주목을 적게 받은 유형은 네 번째 유형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취업, 방문, 밀항 등 관련 간첩사건이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특징은 경찰의 경우 내국인의 일본 취업 관련 사건은 많지만,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이나 국내 취업 재일동포가 관련된 간첩

사건은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 보안사는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이나 국내 취업 재일동포가 관련된 간첩사건의 적발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보안사는 재일동포 관련 사건에서 많은 간첩을 적발한 것에 대해 “1971년부터 1974년말까지 공작과 부활과 대일공작계의 신설에 따라 ‘공작근원 발굴 작업’에 착수하여 총 384명의 대상을 선정하여 집요한 공작활동을 진행한 결과”이며, “1975년부터는 교포유학생을 대상으로 737명을 선발하여 공작활동을 전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³³⁾ 재일동포 유학생으로 1983년 보안사에 의해 간첩으로 검거되었다가 공소보류된 뒤 보안사에서 문관으로 1984년과 1985년 2년 간 일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보안사의 간첩 조작을 폭로한 김병진은 “수사과 2계는 원칙적으로 재일교포 유학생을 전담했으며, ‘재일교포 모국유학생 위장간첩 근원발굴계획’이란 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 보안사는 매일같이 치안본부 신원조사과에 가서 재일동포들이 여권을 만들 때 민단에 제출하여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거쳐 외무부에 가 있어야 할 서류를 뒤지며 대상자를 골라내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³⁴⁾ 또 보안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모국유학생을 가장해 학원에 침투한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거쳐가는 재외국민교육원이나 대학교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한편, 땅을 부식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한다.³⁵⁾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일본 관련 사건에서 각 분야 고르게 성과를 거두었다. 한 가지 흥미 있는 것은 안기부와 보안사 간에 일정한 역할 분담 비슷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80년 이후에는 보안사는 한국에 와 있는 재일동포 유학생 사건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안기부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취업, 방문, 밀항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33)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p.435.

34) 김병진, 『보안사』, 1988, pp.181-182.

35) 국군보안사령부, 『대공활동사』1, 1987, p.108.

친척에 대한 단기방문이 아니라 취업이나 밀항의 경우 일본에의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하는데, 자연스럽게 조총련 소속 동포들을 접할 기회도 많아진다. 또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 언어문제 때문에 의사소통이 쉬운 직장을 찾다보면 민단체에 비해 모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조총련계 동포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귀국 후 간첩사건으로 체포되어도 “유학생 경우와는 달리 체포된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대중매체도 없고 규모 있는 석방운동도 없다.”³⁶⁾

재일동포 사건의 경우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일본에 후원회가 결성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아래 박스 참조), 내국인으로 일본유학을 하고 귀국 후 간첩 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주변의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구원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일본에 취업 또는 밀항했다가 간첩으로 몰린 사건들에서 몇몇 사건의 경우는 이렇다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꼼짝없이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만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인권변호사나 재야민주단체에서조차 간첩 사건에 대해 감히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고, 구명운동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박원순 변호사는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말했다.

심지어는 변호사들조차 간첩이라는 혐의가 붙은 낯선 재일동포들을 변론하는 데는 몸을 사리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학생운동권이나 재야민주단체들 그들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이들 재일동포들을 경원시하였다.³⁷⁾

36) 서준식, 앞글, pp.12-13.

37) 박원순, 『국가보안법』 2, p.435. 실제로 재일동포 간첩 사건을 14건이나 수입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남달리 힘을 써 온 태윤기 변호사는 손유형 사건의 공판기록을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사해주었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압력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3년 간 박탈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분야 보고서의 <간첩사건과 법원> 항목을 참조할 것. 한편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황대권은 민주화운동 진영조차 간첩사건을 외면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이렇게 토로했다. “소위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역량을 보존한다는 전술상 이유로 그런 문제는 손대지 않기로 한다던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세월이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한정 없는 징역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나는 이대로 소리 없이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한평생 한 평짜리 독방에서 법무부 교화자료 <자유의 길>이나 뒤적거리고 살아야만 하는가? 황대권, 「나는 어떻게 하여 간첩이 되었는가? - 안기부의 간첩조작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DB.

주요 재일동포 간첩 사건 관련 석방운동 단체 및 후원회

서순택 선생을 지원하는 회
유정식 선생을 지원하는 회
장의균 선생을 구원하는 회
손유형 씨를 구원하는 회
최철교 선생을 구원하는 회
염종현 선생을 구원하는 회
강우규 선생을 구원하는 회
김병주 선생을 구원하는 회
김태홍 군을 구원하는 회
이헌치 군을 지원하는 회
울릉도사건 관련자(이성희, 최규식, 김영복, 서화수 씨)후원회
서승형제를 지원하는 회
서씨 형제를 지키는 회
서군 형제를 지키는 문학창작자와 독자의 회
서군 형제를 지키는 학우회
교토 YMCA 서군 형제를 지키는 회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피탄압자를 구원하는 회
박송식 선생 무죄석방을 쟁취하는 회
김형일씨를 구원하는 회
부산미화원방화 사건 구원회
구미유학생사건 구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한 일본 관련 간첩사건들에서 조작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부모형제·친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회합·통신죄, 의례적으로 주고받은 여비가 금품수수죄, 우연히 대화한 내용이나 전달한 일간신문, 잡지 등이 간첩활동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³⁸⁾ 보안사의 문관직원으로 근무했던 김병진은 심지어 이렇게 주장한다.

38) 박원순, 『국가보안법』 2, p.434.

예를 들면, 어떤 재일 한국인의 주변인물에 조총련 분회 정도의 말단 조직의 간부가 있고, 그 인물이 사업 관계의 고객이었다고 하자. 고객이니까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도 “공화국(북조선)은 세금이 없어 좋은 나라예요” 정도의 ‘북괴 찬양’ (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의 말에 호감어린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그것 참 좋으시겠군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은 본의가 어디에 있건 극히 자연스런 일인데 이것은 ‘고무·찬양·회합’ 그리고 “이번에 한국의 친척한테 갔다오는데 결제를 며칠 늦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다행이네요. 남조선에 다녀오시는 겁니까? 나는 조총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상 남조선에 있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저의 고향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보고 와서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 “그거야 쉬운 일이죠” 라고 하면 ‘지령 사항,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에 방문하면 ‘잠입, 친척방문을 돌아다니며 조총련의 말단 간부의 고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관해 알아보면 ‘탐문 수집, 방한 중의 스케줄을 잘 소화시켜 일본행 비행기에 타면 ‘탈출, 훗날 거래상의 결제 때문에 그 조총련의 말단 간부에게 전화를 걸면 ‘통신 연락’ 이란 것이 되며, 다음 날 결산을 마치면서 “당신의 고향도 도로가 깨끗하게 포장되어 좋아졌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보고’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것으로 간첩죄의 풀코스가 성립되는 것이다.³⁹⁾

일본 관련 간첩사건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재일 북한 공작원’이다. 이들은 대개 조총련 소속인데,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종현의 어머니 김영애 여사는 “만약 한국정부가 조총련계 인사와의 접촉을 꼬투리로 잡는다면 60만 재일동포가 모두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⁴⁰⁾ 일본 관련 간첩 사건에서 재일 북한공작원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조총련 소속이 아닌데, 이들은 대개 한민통-한통련 계열의 사람들이다. 한민통-한통련은 원래 뿌리가 민단이지만, 민단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분리되어 김대중 납치사건 등을 거치면서 공안당국에 의해 ‘반한단체’로 낙인찍혔는데, 당시에는 이른바 베트콩파라 불리었다. 한민통은 1977년 김정사 사건(보안사 검거)의 판결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는데, 1980년 세칭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내란음모 때문이

39) 김병진, 『보안사』, 1988, 소나무, p.79.

40)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산하 장기수가족협의회, 『간첩조작, 이제는 그만!』 제2부, p.101.

아니다. 내란음모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의 의장이라는 혐의 때문이었다.

한민통과 관련된 간첩 사건들은 초기에는 일본 내에서 민단에서 이탈해 나와 김대중을 지원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삼아 김대중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 1990년대의 사건들은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이 고양되어가는 조건 속에서 남쪽 출신들이 일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벌인 한통련에 접근했다가 간첩으로 몰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80년대 후반 통일운동이 고양되면서 한통련 의장을 지낸 배동호의 『애국론』이 『애국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운동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통련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민주화운동 출신들이 일본을 방문하였다가 한통련 인사들은 조총련 소속이 아니냐고 생각하여 접촉하였다가 귀국 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여 지령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곤 했다.

【한민통-한통련 관련 주요 사건】

사건명	연도	검거기관	내용
윤효동(자수)	1977	중앙정보부	한민통 사무국장 광동의 대동입북 간첩교육 주장
김정사	1977	보안사	한민통 반국가단체 판결 / 그러나 김정사는 한민통과 상관 없는 인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1980	합동수사본부	광동의, 배동호, 김재화 등을 영사증명에 의거, 북한간첩, 하수인으로 규정
박창석·곽영우	1981	안기부	일본방문 중 한민통 접촉
김현장	1990		한통련에 전민련 회의 결과 팩스 보냄/ 징자7년
남매간첩단	1993	안기부	한통련으로부터 금품수수
박창희 교수 사건	1994	안기부	사건 제보 박OO교수가 한통련관련 지하당 혐의
이윤정 광주시 의원	1994	안기부광주지부	한통련으로부터 자금지원
이화춘	1994.9	안기부전주지부	한통련회원인 숙부로부터 금품 수수
모녀 간첩 사건	1999	경찰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인 딸 통해 한통련 부의장과 접촉 / 예비역 장군에게 “해병대가 뛰하는 곳이나” 질문하는 등 ‘기밀’ 탐지

일본 우회 침투 간첩 사건에 등장하는 재일북한공작원이 조총련 소속이든 한통련 소속이든 간에 조작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작원’과의 접촉사실을 ‘입증’할 부담이 수사관에게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인권단체에서는 “국내사건인 경우 국내에서 일반인이 남과 공작원을 접촉할 기회라는 것은 극히 희박할 수밖에 없”지만, “재일동포 사건인 경우 그가 접촉한 ‘조총련’ 사람 내지는 소속 불명인 사람을 손쉽게 ‘대남공작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¹⁾

간첩으로 몰린 재일동포나 내국인이 일본에서 만난 정체불명, 신원 미상의 사람이 북한공작원인지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주일대사관에 나가 있는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직원이 발행하는 ‘영사증명서’ 또는 신원확인서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된다. 영사증명서는 문제의 인물을 북한공작원으로 단정하는데, 북한공작원이라면 정확한 소속이나 북한당국과의 지시·명령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영사증명서’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영사 개인의 단정적인 견해를 서술하거나, “일본 공안당국의 통보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매우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뒤의 차풍길 사건의 영사증명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본공안당국의 통보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기재되어 사실을 심하게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내포한 영사증명서는 당시의 법원에 의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고,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기능하였다. 영사증명서라는 마법지팡이가 없었다면 그 수많은 일본 우회 간첩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우회침투 공작에서 가장 중요한 루트였지만, 북한은 일본 이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남 우회침투를 시도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루트는 독일이었다. 진실위에서 조사한 <동백림 공작단 사건>은 북측이 남쪽 출신의 해외동포와 유학생들에 대해 본격적인 공작을 전개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남쪽 출신 지식인들은 유럽의 자유분방한 분위기

41) 서준식, 앞글, p.13.

속에서 북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그리움 또는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동베를린으로 건너가 북측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북측 인사와 접촉했고, 일부는 비밀리에 북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의 일탈적 행동을 회합통신 이나 잠입-탈출 정도로 처벌하지 않고 이들을 우방국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무리하게 납치해 와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다.⁴²⁾

독일은 일찍이 광부와 간호원이 파견되어 유럽에서 우리 교민사회가 제일 먼저 건설된 곳으로, 동서가 나뉘어진 베를린의 지리적 특성상 북한의 대유럽 우회침투의 전초기지이기도 했다. 독일의 교민사회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온상이기도 했는데, 때로 반정부 성향의 일부 지식인이나 유학생들은 북에 포섭되거나 자진해서 북에 협조하기도 했다. 이들의 일부는 자수하였다. (김진모 사건은 뒤에서 따로 언급할 것이다.)

【독일 관련 간첩사건】

구분	연도	검거기관	내용	결과	비고
김진모(43세)	82.3.30	안기부	서독	사형집행	의사행세 위장귀순
안상근(35세)	85	안기부	서독	자수	학원
오길남	92.5	안기부	독일	자수	
한병훈(31세)	94.10	안기부	독일	자수, 무혐의방면	유학생부부
박소형(30세)	94.10	안기부	독일	자수	유학생부부

1994년 10월의 유학생 부부 간첩 자수 사건의 경우 안기부는 이들 “부부의 진술만을 토대로 아무런 뚜렷한 방증도 없이 현직 교수 3명과 유학생 1명을 전격 강제연행”하여 긴급구속하였다가 무혐의로 방면하여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강압적 수사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⁴³⁾ 일본·독일 이외 지역을 통한 주요 우회침투 간첩 사건은 아래와 같다.

42) 자세한 것은 본 보고서 동백림 사건 편 참조.

43) 『조선일보』 1994년 10월 8일자 5면.

【일본·독일 이외 지역을 통한 주요 우회침투 간첩 사건】

구분	검거일시	검거기관	우회국명	증거물	비고
장경환(41세)	80.3.30	중정	미국		장도영 등 재미교포 대동 입북
김우장	80.8.19	중정	싱가폴	43만엔	조총련원인 친척 통해 월북한 형 접촉시도, 서신교환
홍선길(50세)	81.7.19	안기부	미국		재미교포/ 위 장경환 주선으로 재북가족 방문 후 입국
김상호(25세)	82.2.17	안기부	싱가폴		노무갈등 월북기도
김동현(25세)	82.5.5	안기부	스웨덴		망명기도 좌절 후 자수
김인환(31세)	84.3.2	안기부	싱가폴		
김성환(64세)	88.10.29	안기부	말레이		

마 남북귀환어부 간첩 사건

1970년대-1980년대에 발생한 간첩사건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남북귀환 어부들이 간첩으로 적발된 경우이다. 남북어부 간첩사건은 안기부와 경찰, 보안사에 의해 고루 적발되었다. 민가협 자료에 따르면 1989년말 현재 북역 중인 장기수 가운데 북에서 직접 남파된 공작원을 제외한 장기수는 모두 128명인데, 그 중 어로 작업 중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남북귀환어부 사건이 16명이다. 이는 당시 북역 중인 ‘비남파’ 장기수에서 여행, 유학, 취업 등으로 일본의 조총련(재일 조선인총연합회)계 가족, 친지를 접촉한 경우와 재일동포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남북어부 간첩사건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주요 남북 어부 간첩 사건 (사건 관련자 중 납북 어부만 기록)】

성명(나이)	검거일시	수사기관	납북일시	귀환일시	구금일수	형량	비고
김대옥 외8명	62	합동수사본부					김재춘 발표, 조선620623
김호섭 외	69	보안사	64.11.25				조선690226
백학래	69	보안사					조선690226
고정길	69	보안사					조선690226
이동근	69	보안사					조선690226
이수구	69	보안사					조선690226

김이남(37세)	76.4.1	목포경찰서	71.8.30	72.9.7	72일	무기	어부 4명 1-3년
오형근	76.9.10	경기도경	65.10.29	65.11.20			강화
김홍수(41세)	77.8.24	경기도경대공분실	59.5/63.6		2개월	15년	인천/이근안/2회납북
강대광	78	부안경찰서	68.7				진화위조사:조작판명
박우룡(42세)	78.7.18	경찰	68.10.30	69.5.29			고성
안장영(41세)	77.4	경기도경대공분실	65.10.29	65.11.20		4년	미법(강화)이근안
안희천(43세)	77.9.21	경기도경대공분실	65.10.29	65.11.20			미법(강화)
배일규(43세)	79					5년	주문진
이성국(27세)	81.7.6	서산경찰서	71.10.25	72.9.7	89일	10년	강근하 외손/속초
강경하(66세)	81.7.6	서산경찰서	71.10.25	72.9.7		무기	이성국 외조/속초/옥사
김홍규(60세)	81.10.15	경찰	68.7.2	68.10.31			고성
황용윤(65세)	82.1.25	안기부	65.10.29	65.11.20			미법(강화)
김영일	82.4.23	광주보안대	71.5.20	72.5.11	40일	10년	71년 집유 /거문도
김정목	82	서울서부경찰서	58.5		40일	무기	강화/98.8.15 특사
정영(42세)	83.9.13	안기부인천분실	65.10.29	65.11.20			미법(강화)
이상철	83.12.21	경남보안대	71.9.21	72.9.7	37일		98.8.15석방
김진용(39세)	84.1.1	506보안부대	71.9.21	72.9.7			84.2.24서울지검 기소유예
윤질규(28세)	84.1.16	치안본부	76.8.30	76.10		10년	91년가석방/고성
김용태(27세)	84.4.12	301보안부대	71.9.21	72.9.7			강릉
서창덕(37세)	84.5.26	전주510보안대	67.5.28	67.9.28	4개월	10년	개야도
이민호(36세)	84.8.30	제주508보안대	80.11.29	81.7.31	30일		제주
김용이(42세)	84.10.5	치안본부				7년	영일
안정호(30세)	85.2.21	치안본부	80.9				고성
이병규(36세)	85.5.17	강릉301보안대	69.5.5	69.11.2		7년	장성탄광노조파업 때 구속
정삼근	85.5.24	전주510보안대	68.6.2	68.11.1	52일		69.2 반공법징역1년
김성학	85.12.2	경기도경대공분실	71.8.30	72.9.7	72일		이근안 / 1심 무죄
여덕현(52세)	86.4.16	보안사	71.12	71.12			경남 / 2심 무죄
강종배(32세)	86		80.9.6	81.5.20	87일		고성/간첩죄1,2심무죄44)
이상국(22세)			81.5?			7년	제주제일공영호?
이재룡							2000년 비전향장기수로 복송
이길부			67.5.28				납북10년 뒤 납파후 바로 지수
최만춘		군산경찰서					개야도
박춘완		군산경찰서					개야도
정영철		군산경찰서					개야도

* 나이는 검거 당시의 나이임

* 귀환 즉시 간첩죄 적용된 사례는 생략하였음

44) 강종배는 제2남진호 선원으로 1980년 9월 8일 동해 해상에서 납북되었다가 254일만인 81년 5월 20일 속초항으로 귀환하였다. 제2남진호 선원 19명 중 2명이 북한측으로부터 개별적인 간첩활동 지령을 받았는데, 강종배는 귀환 당시 조사 받을 때 자신이 받은 지령을 남한 당국에 진술하였다. 육군본부, 『대공정보 (81.7.1-12.31)』, p.57.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철책이 세워져 경계가 뚜렷한 육상과는 달리 바다에는 가시적인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다. 영세한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물고기 떼를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로저지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때로는 모르게 넘고, 때로는 알고도 넘는다. 이러다가 북한 경비선이 나타나 월선을 이유로 우리 어선을 납치해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1981년까지 납북된 어선과 선원을 보면 모두 454척 3568명으로 그 중 422척 3162명이 귀환한 반면, 34척 442명이 돌아오지 못한 채 북에 억류되어 있다. 통일부의 자료를 이용한 2006년도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모두 3,790명이며 이 중 3,305명이 귀환했고, 미귀환자는 485명이고, 미귀환자의 85%가 납북어부들이라고 한다.⁴⁵⁾

【납북, 귀환어부 현황 (척/명)】

구분	납북			귀환			미귀환		
	계	동해	서해	계	동해	서해	계	동해	서해
79년도이전	449/3487	163/1473	286/2014	417/3082	153/1310	264/1772	32/405	10/163	22/242
1980	4/60	1/19	3/41	2/23	0	2/23	2/37	1/19	1/18
1981	1/21	0	1/21	3/57	1/19	2/38	0	0	0
누계	454/3568	164/1492	290/2076	422/3162	154/1329	268/1833	34/442	11/182	23/260

* 출처: 대공판단(1981년도), 육군본부, 1981.1.20. 팜플레트 pp355-391

납북어부들은 북에서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다. 한 예로 1974년 2월에는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인 우리 어선 2척에 대해 북측이 포격을 가해 1척을 격침시키고, 1척을 끌고 갔는데 북은 이 어선을 간첩선이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2월 16일 15만 시민이 집결한 가운데 만행규탄대회가 열렸고, 서울에서는 2월 22일 장충공원에 100만 시민이 모여 규탄대회를 가졌다.⁴⁶⁾

45) 『연합뉴스』 2006년 7월 18일자.

46) 『조선일보』, 1974년 2월 17일, 22일자. 100만 시민 규탄대회가 열린 시점은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되었음에도 유신헌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번져가던 그런 때였다. 3월의 개혁에 이어 4월 3일에는 긴급조치 4호가 공표되었다.

북측은 납북어부들이 대북 간첩행위를 하기 위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억지를 쓰기도 했지만, 실제로 납북어부를 남측에 보내는 간첩으로 육성하려고도 했다. 분단이 장기화되고, 한국전쟁 당시의 월북자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남한 사회는 경제성장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게 되자 북한은 남한의 변화된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북으로 끌려온 납북어부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납북어부로서 북에 억류되었다가 2000년에 탈북한 이재근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납북어부를 대남 간첩 요원으로 양성하려 하기도 했는데⁴⁷⁾ 실제로 납북어부 이재룡은 1970년에 남파되어 체포된 후 비전향으로 있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송될 때 북쪽을 택하여 송환되는 일도 있었다.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경위야 어쨌든 공산집단의 통치 지역에 직접 발을 딛고, 북측 사람들을 짧게는 한 달 여,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나고 돌아온 귀환 어부들은 표면 상의 환영분위기와는 달리 엄중한 경계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아래의 인용문에 보이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정의는 그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당국이 국방상 기타 공익적 견지에서 설정하여 놓은 동서 양해의 어로작업 할 수 있는 최북단 어로저지선 내지는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다가 북한의 무장선에 의하려 예인 납북, 북한지역 내에 장기간 억류되어 북한의 소위 평화통일지도원 등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우월성 등의 학습과 공장견학 등의 세뇌공작에 의하여 교육받으며, 그 기간 중 자기들이 취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반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소위 북한의 평화통일방안과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조직 구축, 반미·반정부사상 유포 등의 지령과 함께 다량의 금품을 받고 일정기간 후 대한민국 지역 내로 귀환한 자”⁴⁸⁾

공안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납북귀환어부란 북에 장기간 억류된 채 공산주의 선전에 노출되었는데, 북이 남측에 비해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1960년대에 북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당한 환대를 받은 어부들이 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공안당국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47) 『조선일보』 2000년 6월 3일자, <북한 탈출한 납북어부 이재근 씨>

48) 임상현, 「납북어부의 죄책」, 『검찰』 1969년 9월호, p.162, 박원순, 『국가보안법』 2, p.463에서 재인용.

더구나 그들은 감금당한 불가항력 상태였지만, 공안당국이 보기에 해안 일대의 군부대 배치나 경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북에 제공했고, 또 효과는 어쨌든 간에 남조선 혁명과 조국해방에 앞장서라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상당한 양의 선물을 받고 남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철저한 심사와 엄중한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남북귀환어부들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본격적으로 엄격해진 것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사고가 빈발하는 1968년부터이다. 당국은 남북되었던 어부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구속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 근본 목적은 휴전선 부근의 어로작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려는 것과 남북어부를 가장한 간첩의 침투를 막는다는 것이었다. 당국은 남북어부 45명을 무더기로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선의 선장·기관장 등 책임자들이거나 두 번 이상 납북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불법지역 왕래(국가보안법 6조), 반국가단체로의 탈출·잠입(반공법 6조)였으며, 수산업법 위반을 적용하여 “어업제한, 정지, 계선, 또는 어로허가 취소” 조치가 취해졌으며, “입출항 때 관계 당국에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정부는 “어로저지선을 넘었다가 납북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북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며, 납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로저지선만을 넘어도 어로허가권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⁴⁹⁾

그러나 법원은 이들 남북귀환어부들의 월선과 피납을 반국가단체 지역으로의 의도적인 탈출로, 그리고 귀환을 반국가단체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의도적인 잠입으로 보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데 제동을 걸었다. 1968년 4월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임OO 판사는 남북귀환어부 48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⁵⁰⁾

49) 『중앙일보』 1968년 1월 16일자.

50) 『중앙일보』 1968년 4월 11일자.

이 때 공안당국이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적용하려 한 간첩죄는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귀환(공안당국의 시각에서는 ‘잠입’) 후의 일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 피납되어 북에 억류되어 있는 기간 중에 북측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취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반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이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던 사법부는 이러한 공안당국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북에 억류된 상태에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돌아올 때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형법상의 이른바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⁵¹⁾

1968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북한은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어선 3척과 어부 288명,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어선 4척 어부 51명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10월 31일에는 동해에서 어선 7척을 또 납치했다.⁵²⁾ 이들의 처리 문제로 고심하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어로저지선을 5마일 남하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는 어부들에게 간첩죄·이적행위죄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 대장의 보고에 따르면 “어로저지선을 넘어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괴 무장경비정에 납치된 어부들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⁵³⁾ 이어 대검찰청은 11월 24일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납북되었다가 귀환된 후 재납북된 어부에 대해서는 반공법(9조2항), 국가보안법(10조2항) 상의 특수가중죄를 적용,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고 관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납북된 어부들이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돌아온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51) “이러한 행위는 북괴에게 납치·억류된 피고인들이 북괴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거나 또는 북괴구성원의 심문에 대하여 서로 틀린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 대법원 1968년 11월 5일 선고, 68도 제1334호 판결문 (박원순, 『국가보안법』 2, p.467에서 재인용)

52) 『중앙일보』 1968년 10월 31일, 11월 1일자.

53) 『중앙일보』 1968년 11월 23일자.

않았을 때는 간첩죄 또는 간첩미수죄를 적용, 기소하라”는 지시를 아울러 내렸다.⁵⁴⁾

이런 지시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업을 핑계로 저지선을 월선, 반국가단체인 괴뢰지구로 불법탈출, 국가기밀을 누설, 이적행위를 했고 소위 북괴평화통일위원회로부터 간첩이 나타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말고 북괴에 협조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1968년 10월 31일 귀환한 납북어부 94명에게 탈출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구형했고, 1969년 5월 28일 귀환한 납북어부 100명 전원을 “북괴를 찬양·고무하고 우리나라 군사기밀과 경제동향 등을 적에게 알려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⁵⁵⁾ 법원도 이제 태도를 바꿔 납북어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⁵⁶⁾ 그리고 1973년 9월 12일 대법원 형사부(주심 한OO 대법원 판사)는 납북어선 선장 신평옥 피고인에 대해 “북한지역임을 알고 군사분계선 북쪽에 스스로 넘어간 이상, 북한의 기관원과 만날 것을 예측했을 것”이므로, 북한에서 예비군 활동상황이나 군사시설 등에 대해 정보제공을 한 행위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간첩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⁵⁷⁾ 간첩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납북어부들이 북한지역에서 보고들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옮길 경우, 예컨대 “북에 가보니 기계로 농사를 짓더라”나 “농촌에도 전기가 들어와 있더라” 등의 이야기를 하면 반공법 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하는 일은 빈발했다.⁵⁸⁾

납북어부가 귀환 즉시 간첩죄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잠복기’를 갖다가 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적발되는 사건은 1969년 2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여진 속에서 보안사가 발표한 김호섭 일당 사건

54) 『중앙일보』 1968년 12월 24일자.

55) 『중앙일보』 1969년 3월 20일, 6월 23일자.

56) 『중앙일보』 1969년 4월 17일, 6월 10일, 9월 10일자.

57) 『중앙일보』 1973년 9월 13일자.

58) 1981년 10월 15일 치안본부에 의해 체포된 김홍규의 경우, 1968년 7월 1일 납북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31일 귀환한 뒤 재판에 계류 중 주민들에게 북한에 대해 선전한 혐의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5년 형을 받았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또다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⁵⁹⁾ 한동안 뜸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주로 경찰에 의해 여러 건이 적발되었다. 그 첫 번째 목포경찰서가 납북귀환 4년 여 만에 간첩으로 구속한 김이남 사건이다. 김이남은 1971년 8월 30일 승해호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72년 9월 7일 귀환하였다. 그는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인척 및 민주인사 포섭 등의 지령을 받고 귀환 후 조사받을 때 이 같은 내용을 자백하지 않고 간첩활동을 한 자로서, “이북의 농촌가정집에 놀러갔더니 진수성찬으로 이남농민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등의 찬양발언을 하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에서 20년으로 감형되었다. 김이남과 같은 승해호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1985년 12월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이근안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은 경찰이 김이남 사건을 들먹이며 사건 내용을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사건을 조작했다고 회고했다.⁶⁰⁾

김이남 사건은 귀환한 뒤 다시 밀입북한 것도 아니고, 남과공작원과 접선한 것도 아니고, 무전을 수신한 것도 아니고, 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장기구금과 고문에 의해 납북귀환어부들이 간첩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기 시작한 것을 의미했다. 이런 면에서 지방의 경찰서에서 시작된 김이남 사건 이후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수많은 납북어부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뒤를 이어 1976년 9월 경기도경이 1965년 함박도 부근에서 납북된 오형근을 구속한 데 이어 1977년에 역시 경기도경 대공분실이 안장영, 안희천, 김홍수 등 납북귀환어부를 간첩혐의로 구속했다. 1978년에도 부안경찰서가 강대광을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구속했으며, 고성의 귀환어부 박우룡도 경찰에 의해 간첩으로 구속되었다.

59)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1978, pp.456-460; 『조선일보』 1969년 2월 26일자.

60) 김성학, 「간첩으로 조작된 72일 간의 고문 - 간첩사건에서 무죄로 풀려난 김성학 씨의 고백」, 『신동아』1988년 10월호, p.97.

초기에 경찰이 주로 다루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찰은 물론이고 보안사와 안기부에 의해서도 적발되었다. 보안사는 1982년 김영일 사건을 시발로, 1983년 이상철 사건, 1984년 김진용 사건, 김용태 사건, 서창덕 사건, 이민호 사건 등을 적발했고, 1985년에는 이병규 사건, 정삼근 사건을, 1986년에는 여덕현 사건을 적발했다. 보안사는 1981년부터 “납귀(拉歸)어부·납과예상자 연고가족·6.25 당시의 부역자 가족·미전향 좌익수·조총련계 연고자 등에 대한 시찰활동을 강화”하여 “납귀어부는 A, B, C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1개월에 1회 이상 시찰을 하여 근원발굴에 주력”하였는데, “이 활동에서 납귀어부로서 북괴로부터 특수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장기간 활동을 하던 간첩을 검거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⁶¹⁾ 경찰 역시 1980년대에 들어서도 납북어부 간첩을 계속 적발했는데, 강경하·이성국 사건(서산경찰서), 김홍규 사건, 김정묵 사건(서울 서부경찰서), 윤질규 사건(치안본부), 김용이 사건(치안본부), 안정호 사건(치안본부), 이상국 사건, 강종배 사건, 김성학 사건 등을 연이어 적발했다. 보안사와 경찰의 경우 지방 보안부대와 각 지역의 경찰서가 납북어부들을 밀착감시하면서 사건을 많이 적발했음을 알 수 있다. 안기부는 보안사나 경찰에 비해 사건 수가 적어 본부에서 1982년 황용윤 사건, 인천지부에서 1983년 정영 사건 등 2건 만을 적발하였다.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은 납과간첩 사건, 무장공비 사건, 조총련 간첩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다양한 우회간첩 사건, 월북자 가족 사건 등 간첩 사건의 다양한 유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유형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간첩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은 의문의 여지없는 사실로 확인된다.

61) 국군보안사령부, 『대공활동사』 1, 1987, p.109, p.302.

둘째, 납북귀환어부들은 대부분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섬 출신들인데, 사회적 연결망에서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어 사건이 일어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약점이 있다. 경위야 어쨌든 북한이라는 금단의 땅에 갔다 왔다는 사실은 반공국가 대한민국에서 원죄와도 같이 작용했다. 두 번 이상 납북되었다든지, 이북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어 만났다는든지, 북한이 내린 ‘지령’을 재북 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귀환 직후의 심사 때 다 털어놓지 못했다면 이는 당시 상황에서 대공수사관들의 의심을 살만한 충분조건이 되고도 남았다. 게다가 북한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남쪽에 와서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를 피해갈 수 없었다.

넷째,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공통점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수집했다는 군사기밀이 기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미미한 것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납북되어 귀환한 뒤 다시 밀입북하였다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였다거나, 무선으로라도 지령을 받았다거나 함이 없으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북에 전달할 수단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간첩이 되었다.

다섯째, 같이 납북되었던 납북 동기들이 각각 다른 간첩 사건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쪼여 들어가는 일이 빈발했다. 위의 ‘주요 납북어부 사건’ 관련 표에 적시된 납북어부 간첩들 중 절반 이상이 그런 경우인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선박명	납북일자	귀환일자	성명	검거일자	검거기관	비고
행영호	66.11		백학래	69.2	보안사	속초
			고정길			속초
			이동근			속초

용인호	65.10.29	65.11.20	오형근	76.9.10	경기도경	강화 불음도
			안장영	77.4	경기도경	강화 미법도 / 이근안
			안희천	77.9.21	경기도경	강화 미법도 / 이근안
			황용윤	82.1.25	안기부	강화 미법도
			정영	83.9.13	인천안기부	강화 미법도
승룡호	67.5.28	67.9.28	서창덕	84.5.26	전주보안대	옥구 개야도
			이길부			옥구 개야도
승해호	71.8.30	72.9.7	김이남	76.4.1	목포경찰서	속초
			김성학	85.12.2	경기도경	속초 / 이근안 / 무죄
제3명성호	71.10.25	72.9.7	강경하	81.7.6	서산경찰서	외조-외손 관계
			이성국			
대북호	71.9.21	72.9.7	이상철	83.12.21	경남보안대	
			김진용	84.1.1	506보안대	기소유예
			김용태	84.4.12	301보안대	

1965년 10월 29일 납북되었던 용인호의 경우 무려 5건의 간첩 사건이 줄줄이 발생했다. 그 중 4건은 강화도에 딸린 미법도라는 인구 100여 명의 작은 섬에서 일어났는데, 안장영과 안희천, 황용윤과 정영은 납북 되었을 당시 같은 방에 묵은 사람들이었다. 이들 사건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뒤의 납북귀환어부 사례 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북 옥구군 개야도의 경우 서창덕, 이길부 이외에 같은 배로 납북된 것은 아니지만 정삼근이 전주보안대에 의해 구속되었고, 최만춘, 박춘완, 정영철 등은 군산경찰서에 의해 간첩으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인구 1천 여 명 안팎의 개야도에서도 6명의 간첩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김성학 사건이 김이남 사건의 틀을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같은 배로 납북된 이들의 간첩 사건은 인적사항과 성장과정만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

1981년 2건, 1982년 3건, 1983년 2건이던 납북어부 간첩사건은 1984년 6건, 1985년 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간첩사건이라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미약하고 수사절차도 엉성하였던 까닭에, 5공화국 하의 사법기관에서도 일정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1984년 초에 보안사가 송치한 김진용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은 간첩사건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범정이 미약하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다. 1986년 7월 이근안에 의해 고문으로 조작된 김성학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OO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자백에만 의존하는 남북어부 간첩사건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전기를 마련했다. 1987년 1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법원 역시 고문 근절의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종배, 여덕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남북어부가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해 얻어진 허위자백에 의해 간첩으로 기소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바

친북 급진운동세력의 북한 연계 조직 관련 간첩사건

1980년대의 간첩 사건에서는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일본을 통한 우회침투 간첩 사건이나 고정간첩 사건, 남북어부 사건이 주축을 이루었다면, 1990년대에는 간첩사건에서도 아주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한의 급진운동 세력내에 극히 일부이지만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 속에서 북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벗어나, 남한 혁명의 지도부로 북을 상징하고 그 지도를 받으려고 연계를 모색하는 집단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 역시 남한 사회 내의 이런 움직임에 한껏 고무되어, 그 의미와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들과의 연계 또는 지도를 위해 직파 간첩을 다시 내려 보내기 시작했다.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의 이선실, 1995년 부여 간첩사건의 김동식, 1997년 북한 직파 부부간첩 사건의 최정남, 강연정 등은 북이 남쪽의 운동권 일각의 친북 성향에 고무되어 공작원을 보내 운동권 일부 인사를

포섭하려 한 새로운 유형의 직과간첩이라 할 것이다. 이들 조직사건들은 개별 사건의 관련자 수가 많아 민주화 이후 고문과 불법감금이 어려워지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해석에 제동이 걸리면서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일동포 간첩사건, 일본 우회 간첩사건 등의 발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간첩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검거된 간첩은 모두 180명인데 그 중 강릉 잠수함 사건의 25명을 제외하면 전체 155명 중 이들 조직 사건 관련 ‘간첩’이 39명으로 무려 25%가 된다.

【친북 급진운동세력의 북한 연계 조직사건】

사건명	연도	검거기관	내용	남파공작원	확대적용문제
남한조선로동당 사건 (중부지역당사건)	1992	안기부	남한 중부 지역에 조선로동당 하부조직 건설	이선실 등	상층부의 북한 연계를 모르는 하부 조직원들 문제
구국전위 사건	1994	안기부	남파간첩은 없으나 대북 보고문 등 작성 혐의	일본우회	총책은 무기징역 받은 실체 있는 사건이나 구속자 다수가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남 / 북한연계여부가 쟁점이 됨
민족혁명당 사건	1999	안기부	주사파 핵심 조직	잠수정	지도부는 공소보류/하부선만 처벌

1990년대에 발생한 조직사건들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처럼 조작된 사건이라 할 수 없는,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는 사건들이다. 진실위가 이미 ‘남한조선로동당 사건’에 대한 조사발표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이 조직의 지도부는 분명하게 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 다만 상층부의 이런 은밀한 활동을 모른 채,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고 하부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대해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이나, 수사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 등이 행해진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진실위의 조사결과 발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운동진영 일부가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꾀하고자 한 무모한 행위”와 “남한사회 내에 친북세력의 운동권이 등장하고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아지자” 북한이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벌인 공세적인 대남공작”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데 안기부는 서로 관련이 없는 “3개의 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부풀려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실체가 분명한 공안사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조차 의혹을 사게 되고 반면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특히,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62명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 62명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1 중정-안기부와 공소사실중 간첩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간첩사건

간첩사건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실제로 북한이 끊임없이 간첩을 파견하여 간첩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나 그런 정권이 육성한 대공수사기관은 때로 진보당 사건처럼 정치적 논란이 많은 간첩사건을 만들어냈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여 피의자들을 간첩혐의로 일단 구속시켰다가 법원에 의해 무죄로 방면되는 일도 속출했다. 중앙정보부 설립 이전인 1950년대 후반의 한 통계를 보면 1958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간첩죄로 재판받은 50명 중 34%에 해당하는 17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2명이었다. 특히 정치적 사건으로 논란이 컸던 박정호 사건, 장건상, 김성숙 사건, 류근일 사건 등이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⁶²⁾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진보당 사건에서도 조봉암 등에게 적용된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에 바람막이 역할을 하던 김병로 대법원장 퇴임 이후, 간첩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958년 10월 25일 진보당 사건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사흘 후인 10월 28일에는 역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세칭 용산고 교감 이태순 사건에서 1심과는 달리 간첩죄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되었다. 1958년 말 법관 재임용 과정에서 진보당 사건과 용산고 교감 사건에서 1심에서 간첩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유병진 판사 등 간첩 사건에 대해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던 양심적인 법관들이 대거 탈락된 이후,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신문에 보도된 주요 사건만 하더라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남파간첩 고정길이 2심에서

62) 『조선일보』, 1958년 6월 26일자.

사형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간첩 무장호송원 박경준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월 26일에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언도받았던 김장수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10월 31일에도 대법원은 무장간첩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언도했다.⁶³⁾

간첩사건과 관련해서 최초로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일찍이 1962년, 그러니까 5·16정변 이후 아직 군정이 실시되던 때 일어났다. 1962년 8월 25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부(유○○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16살 어린 나이에 불심검문에서 시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0년 간 복역 중이던 김성구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고, 11월 22일 동재판부는 무기수 김성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이 전쟁 중에 실종된 것으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그의 시민증을 집에 보관하고 있고, “증거로 내세운 당시의 특무대, 검찰 법원의 공판조서 등 내용은 특정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전후 모순된 피고인의 진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혹심한 고문에 못이겨 가공인물을 만들어 허위자백한 것이고, 증인들도 피고인이 나이도 어리고 지능도 열등하여 간첩활동을 할만한 위인이 못된다고 증언하는 등이 그 이유였다.⁶⁴⁾ 김성구 사건은 조작의혹 간첩 사건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힌 선구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공수사기관은 속성상 적발된 대공혐의자의 범죄사실을 하나라도 더 밝혀내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 의욕이 지나치다보면 대공수사기관이 법적인 엄밀성이나,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법적용을 하게 되고, 이런 무리한 법적용을 검찰이나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이 무리한 법적용이 관행으로, 판례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대공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간첩죄를 확대적용하다보니, 1980년대의 사법부가 정보기관의 위세에 눌려 제 기능을

63) 『조선일보』 1959년 1월 22일자, 2월 27일자, 11월 1일자.

64) 『조선일보』 1962년 8월 26일, 11월 23일; 『법조50년야사』, 법률신문사, pp.627-632.

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⁶⁵⁾ 적지 않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발행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법부가 일정하게 독립성을 회복해 가면서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을 가능케 했던 상식에 반하는 판례들이 바뀌어 가면서, 무죄사건이 속출하게 된다. 아래의 표는 중정·안기부에서 수사한 간첩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간첩죄 관련 부분이 무죄로 선고된 주요한 사건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중정·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간첩죄 부분 무죄판결난 주요 사건】

사건명	검거	판결	무죄취지	비고
이준구				경향신문사장 / 신문사 탈취 수단으로 간첩 사건 이용
동백림사건	67			
무전간첩단	68	서울형사(조○○)		1명만 실형, 2명 무죄, 24명 집행유예
홍선길	81	대법원(이○○)		재미교포의 북한가족 방북 후 한국의 가족방문: 형제집 가는 길에 김문소 등 본 것을 군사 기밀 탐지로 기소
김준보	82	대구지법(이○○)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자백의 임의성	
송씨 일가	83	대법원(이○○)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자백의 임의성	대법에서 두 번 무죄, 그러나 안기부의 개입으로 결국 유죄
김현장·김영애 부부	89	서울고법	유럽민협을 반국가단체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홍성담사건	90	대법원(이○○)	변호인없는 자백은 임의성 없어 유죄증거 될 수 없음	평양축전에 걸개그림 슬라이드 보낸 혐의
노중선	92	대법원(김○○)	간첩 인지 못했으면 간첩방조 성립 안 됨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김낙중 관련 / 간첩방조 무죄 국보법 유죄
이광철 등	94	서울고법(김○○)	공지사실 '기밀누설죄' 불가: 현재 결정 반영	구국전위 사건 간첩혐의 무죄 / 국가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강순정	9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	공지사실 '기밀누설죄' 불가: 현재 결정 반영	대법원 국가기밀 관련 판례변경
박충렬	95	서울지법(유○○)	헌법 범위 내 표현	간첩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이적표현물로 기소되어 무죄
박창희	95			외대교수 / 노동당 입당 및 간첩죄 무죄 / 편지교환 등 회합-통신 유죄

65) 이에 대해서는 사법분야 보고서의 <간첩사건과 법원> 항목 참조.

관수	96	대법원(김○○)	공지사실 보고는 국가 기밀탐지수집-전달죄 차별불가	일부 무죄
고영복	97	1심 간첩죄 무죄	회합-통신은 유죄	
		2심 간첩방조무죄	단순 은신처 제공	
송유진	97	서울지법(민○○)	국가기밀범위엄격적용	『월간 무역』, 『무역진흥』 등 경제전문지 전달은 간첩죄 아님 / 가족상봉위해 입북한 기업인 간첩죄 무죄
동아대 자주대오	98	부산고법(박○○)	간첩혐의 무죄 / 이적단체 유죄	
		대법	무죄	

* 위 표에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지만 송씨 일가 사건의 송기준 입북 부분처럼 핵심적인 공소사실이 무죄가 난 경우가 다수 있다.

동백림 사건은 간첩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제기하면서 과거환송과 재상고심을 거치면서 공소사실 중 간첩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때문에 정체불명의 집단이 대법원을 김일성의 하수인으로 비난하는 괴벽보와 대법관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동백림 사건은 1960년대의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건과 그 이틀 후에 북한이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간 사건을 벌여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 진 때였던 2월 2일 중앙정보부는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 지하당을 조직한 김연규 등 무전간첩단 32명을 검거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압수된 증거물만 해도 수류탄 2발, 소제 권총 1정, 실탄 50발, 무전기 3대, 암호문 10장, 난수표 5조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한다.⁶⁶⁾ 그러나 김연규는 사실 검거된 것이 아니라 자수한 것이다. 7월 20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조○○ 부장판사)는 사형을 구형받은 주범 김연규에게 자수했다는 정상을 참작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26명의 피고에 대해서는 2명에게 무죄, 24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⁶⁷⁾ 27명의

66) 『조선일보』 1968년 2월 2일자.

피고인 중 단 1명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26명을 모두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중앙정보부가 긴박한 정세를 이용하여 별 것 아닌 자수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과동 이후 1970년대에는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사법권의 독립성은 1970년대에 비해 오히려 더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의혹 간첩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한 까닭인지, 무죄가 선고된 간첩사건이 눈에 띈다.

1980년대의 간첩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981년도에 발생한 홍선길 사건이다. 안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재미교포인 홍선길은 재미교포 간첩 폴 장(본명: 장경환)에게 포섭되어 재미교포 목사 김성락 등과 함께 폴 장의 안내로 1981년 6월 13일 미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 그곳 주재 북괴공관요원의 안내로 프라하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여 입북, 김일성 주체사상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받고 남한에 잠입하여 동조자를 도미시켜 입북케 하고 정세를 수집·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에 잠입하여, 형제, 친척, 친지 등에게 북한의 우월성과 발전상을 찬양, 선전하고, 친구 백○○을 대동월북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와 위장결혼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각종 국내사정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⁶⁸⁾

그런데 1981년 6월 홍선길의 입북을 안내했고, 홍선길이 남한에 올 때 또다시 접선했다는 폴장은 이미 1980년 3월 30일 간첩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된 인물이다.⁶⁹⁾ 그렇다면 폴장은 불과 1년 정도의 시일 내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동조자를 포섭하여 입북케 하였다는 것인데 그 경위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홍선길에게 적용된 혐의란 것도 실은 홍선길은 재미동포 노동자로서 노모를 만나기 위해

67) 『조선일보』 1968년 7월 21일자.

68) 『조선일보』 1981년 11월 7일자.

69) 『대공판단(1981년도)』, 육군본부, 1981. 1. 20, 판플레트 355-91.

고향을 방문한 것이며, 노모를 만난 직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하기 위해 고국을 방문하였다가 간첩으로 검거된 것이다. 그가 수집한 첩보란 것도 형과 누나를 만나기 위해 의정부로 가면서 검문소를 보았다는 것과, 인천 부두에서 배를 타면서 검문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가 포섭하여 미국을 통해 대동입북하려 하였다는 친구 백OO는 같은 마을 출신으로 홍이 북에 갔을 때 그의 노모 역시 생존해 계신 것을 보고 그의 미국 이민을 주선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재미동포들의 미국 가족방문이 시작되고 북의 가족을 상봉한 재미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전하게 되자, 안기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폴장 역시 전 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수반인 장도영과 남창우(앤드류 남) 등 웨스트미시건대학에 재직 중인 두 명의 동포 교수의 입북을 주선하여 1976년부터 당국과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⁷⁰⁾ 대법원(주심 이OO 대법원 판사)은 홍선길에게 적용된 간첩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잠입-탈출 등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홍선길은 6월항쟁 이후인 1988년 6월 남북어부 김성학,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허철중·조일지, 고정간첩 혐의 이수연, 일본우회 김우장 등과 함께 석방되었다.⁷¹⁾

한편 하급심에서도 드물지만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1982년 대구지법 형사3부(이OO 부장판사)는 안기부가 검찰에 송치한 김준보 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장기간의 불법구속과 고문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보는 1967년 포항제철에 기중기 운전공으로 근무 당시 일본으로 밀항하여 조총련 간부인 아버지를 만난 뒤 지하당 구축과 군사기밀 탐지 등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15년간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전달하고 지하당 구축 등의

70) 이 때 폴 장은 두 동포 교수를 유인하기 위해 미국 CIA공작원임을 사칭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1976년 6월 4, 5, 9, 11, 8월 3일, 8월 14일자 참조.

71) 홍선길의 석방은 『중앙일보』 1988년 6월 30일자에 실린 시국사범 석방자 명단을 통해 확인된다.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OO 판사는 “피고인이 3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당한 탓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OO 판사는 2004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해 진보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이OO 대법관인데, 이 판결로 인해 “문제판사로 찍혀 후배보다 승진이 뒤처지는 등 불이익”을 받았지만 민주화 이후 대법관에 올랐다.⁷²⁾

1980년대의 간첩사건으로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만 두 번이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나 고등법원이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의 원칙과는 달리 이른바 상급심의 판결을 ‘치받는’ 유죄판결을 거듭 내려 마침내 대법원에서 3번째 재판(재재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핑퐁 재판’으로도 유명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송씨일가간첩단사건에 대한 사례연구와 사법분야 보고서의 ‘간첩사건과 법원’ 항목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판례가 쌓여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이 홍성담 사건이다. 민중미술의 판화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홍성담은 1989년 임수경 양의 평양축전 방문 당시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걸개그림의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냈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뒤, 간첩 등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간첩죄가 인정되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부터 공안 당국이 당시의 공안정국을 이용하여 간첩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1990년 9월 25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OO 대법관)는 “피고인이 유럽민협 간부인 성낙영씨가 북한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적용된 간첩·회합죄 등 7개의 죄목 중 이적표현물 제작·찬양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죄목에 대해서는 공소

72) 『조선일보』 2004년 9월 11일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종전보다 엄격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간첩행위를 자백한 홍성담씨의 자백이 변호인 접견권이 박탈당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공소사실중 북한지령을 받은 사람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한적인 자로 알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혀, 그 동안 모호하기 짝이 없었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지령수수’관계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비록 국내에서 시판되는 잡지나 책자를 국가기밀로 본 원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근거가 모호한 영사증명 등에 기초해 해외인사를 북한공작원으로 인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당시 언론으로부터 “안기부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만들어 온’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⁷³⁾

한편 이보다 조금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OO 부장판사)는 유럽민협과 한통련 등 해외동포단체에 전민련 회의 결과를 팩스로 보낸 혐의로 국가보안법 상의 국가기밀 누설 및 통신·연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된 김현장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통련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팩스로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⁷⁴⁾

73) 『한겨레신문』 1990년 9월 26일자. 한편 홍성담 자신은 「항소이유서」에서 “최초에 조사받았던 내용을 종합하면, 애초 그들(안기부 수사관들)의 목적은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건준위’ 동지들과 나를 묶어세워 화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안기부의 사건 발표 당시 정하수, 백은일, 차일환 등에게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뿐 아니라 화합통신 혐의까지 포함되었다가 검찰 단계에서 이 혐의가 빠지게 된 점을 들었다. 홍성담은 항소이유서에 자신이 당한 고문과 입북 등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등 사건의 ‘조작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그의 항소이유서는 홍희담, 윤정모 엮음, 『오월에서 통일로 - 통일화가 홍성담 문집』(1990, 청년사) pp.65-202에 실려 있다.

74) 『한겨레신문』 1990년 6월 19일자.

한편 김현장의 부인 김영애씨는 임수경 사건 직후 『역사비평』, 『사회와 사상』을 비롯한 국내 간행물과 신문스크랩을 유럽민협에 보낸 혐의로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간첩)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남편 김현장의 판결에서 “김영애가 유럽민협을 반국가단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김영애의 항소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이례적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영애는 1989년 12월 15일 진행된 1심 2차 공판에서 “임신 중인 것 같으니 제발 구타만은 말아 달라고 호소했는데도 안기부 수사관들이 각목으로 온몸을 때려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뒤 보름간 하혈을 했다”며 고문에 의해 유산되었다고 주장했다.⁷⁵⁾

접촉한 인물 또는 단체가 북한의지령을 받아 행동하고 있다거나,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OO 대법관)는 간첩방조죄로 구속기소된 노중선 피고인에 대하여 “김낙중과 함께 평화통일연구회를 설립하여 김낙중의 국가기밀 탐지행위를 사실 상 도왔을지라도 김낙중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간첩방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원심대로 유죄) 이 판결은 간첩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람의 간첩행위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간첩방조죄를 엄격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⁷⁶⁾

1990년대 이후 간첩 사건의 중심은 남파간첩이나 우회간첩, 고정간첩보다는 남한 사회의 진보적 통일운동 세력이 간첩사건으로 걸려드는 사례로 변화해갔는데, 이런 유형의 간첩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안당국의 무리한 간첩죄 적용으로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75) 『한겨레신문』 1990년 2월 11일, 15일, 6월 20일자; 『동아일보』 1990년 6월 20일자.

76) 『동아일보』 1994년 3월 13일자.

빈발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국전위 사건이다. 안기부는 1994년 7월 2일 북한 ‘간첩단’ <구국전위> 23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⁷⁷⁾ 안기부는 이들 23명이 “△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려 했고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았으며, △ 북한에 남한의 학원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발표했으나, 기소단계에서는 이중 7명에게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도 23명 중 16명은 구국전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판단”한 것이다. 구국전위와 비슷한 시기, 즉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이른바 조문파동과 관련하여 조성된 공안 분위기 속에서 대거 구속된 각종 주사파 사건에서도 관련자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일부 언론과 재야단체들은 “공안기관들이 ‘뺨뺨기식 수사’와 발표를 통해 공안 분위기를 확대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이를 활용했다”는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⁷⁸⁾

1997년 2월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OO 부장판사)는 구국전위에 가입하여 전북 지역책으로 활동하면서 순창농민회의 활동사항을 구국전위 조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철 피고인에 대해 “순창농민회의 활동사항은 농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기밀누설죄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1997년 1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적용된 것이다.⁷⁹⁾

국가기밀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입장은 곧이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었다. 1997년 7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OO 대법관)는 1992년 1월부터 1994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범민련 캐나다 본부 중앙위원 강병연의 지시에 따라 국내정세와 재야동향 등을 탐지·수집해

77) 『조선일보』 1994년 7월 3일자.

78) 『한겨레신문』 1994년 12월 24일자; 『조선일보』 2003년 2월 27일자.

79) 『세계일보』 1997년 2월 23일자.

강병연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된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강순정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⁸⁰⁾ 이 판결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북한에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국가기밀을 폭넓게 인정해 온 기존의 판례를 깬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유추·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 판결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제한, 사법기관의 법률남용 소지를 막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⁸¹⁾

이 판결 직후인 7월 26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OO 대법관)은 아랍인 교수로 위장,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수일(일명 깐수) 피고의 상고심에서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피고인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금품수수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⁸²⁾

안기부는 1997년 8월 제3국을 통해 밀입북하여 어머니 등 가족을 만나고 귀국한 후 구속되기 전까지 국내정세 자료를 국제사서함을 통해 북한에 보고한 기업인 송유진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⁸³⁾ 송유진이 북에 전달한 자료는 『월간 무역』, 『무역진흥』, 「중소기업진흥」, 「월간 발명특허」, 「코리아 익스포트」 등 무역협회 등이 정부·유관기관과 회원들에게

80) 『한겨레신문』 1997년 7월 18일자.

81) 『동아일보』 1997년 7월 18일자

82) 『경향신문』 1997년 7월 26일자.

83) 『문화일보』 1997년 8월 12일자.

배포하는 경제전문지였다. 1998년 1월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OO 부장판사)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엔 무죄를 선고하고 회합통신 등의 죄만 인정하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⁸⁴⁾ 대중매체 아닌 간행물도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본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최근 이른바 ‘생계형 간첩’ 논란을 가져 온 화교 정수평씨의 사례도 국가기밀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6년 4월 국가정보원은 영세규모로 한-중 중계무역을 하는 타이완계 화교 정수평을 간첩 및 간첩미수혐의로 구속했다.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국내의 최신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였다. 정수평은 1심에서 일반 책자나 영화 테이프를 전달한 것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연합연감』 2001년 판과 『정보보호학회회지』 등을 전달한 것은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007년 5월 31일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심OO 부장판사)는 “1심에서 국가기밀로 본 언론사 연감과 전자공학회지·논문지 등은 일반인이 쉽게 수집할 수 있어,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공지의 물건에 속하므로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가 북한 쪽에 넘기려고 한 전자해도(항해용 지도)나 잠수용 심해전지(수중용 배터리) 등은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해상침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등 군사용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간첩미수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⁸⁵⁾

사실 기존의 간첩사건 대부분은 국가기밀을 북에 알려지면 북에 이로울 것이라고 너무나 폭넓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84) 『한겨레신문』 1998년 1월 21일자.

85) 『한겨레신문』 2007년 6월 1일자.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장윤선, 「중국에 상품 보냈더니 ‘생계형 간첩’ 옥살이 - 화교 정수평씨가 감옥에 간 까닭」,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8일자 참조.

기밀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는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줘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판례를 변경한 것은 "일선수사기관의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⁸⁶⁾ 반면 안기부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안기부는 1997년 11월 20일 '북한직과 부부 간첩 및 연계고첩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간첩죄의 핵심인 '국가기밀'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최근의 경향으로 지능적인 간첩 색출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관계자는 "현재의 결정은 국가보안법 조항을 왜곡해석해 온 종전의 판례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인데, "헌법기관의 판단을 놓고 안기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현재를 모독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말했으며,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 판례는 현재의 시대상황과 안보상황,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확립된 판례인 이상 안기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의당 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본분"이라고 비판했다.⁸⁷⁾

안기부가 수사한 사건 중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공소사실중 간첩죄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로 선고된 또 다른 사건으로는 외국어대학교 박창희 교수 사건이 있다. '국민학교' 이름 고치기 등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 선 역사학자인 박창희 교수는 1995년 4월 26일 안기부에 의해 구속되었다. 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교수는 1989년 8월 일본에서 서태수라는 북한 대남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되어 일본과 중국을 30여 회 왕래하며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노동당에 입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당 입당 부분은 기소내용에서 제외되었고, 1심 선고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탐지수집과 누설,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의 핵심내용은 모두 무죄의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박교수가 선배 사학자(서태수)를 통해 6·25때 헤어져 북한에 살아 있다는 친형의 소식을

86) 『한겨레신문』 1997년 7월 18일자.

87) 『한겨레신문』 1997년 11월 22일자.

접할 수” 있었던 것이 간첩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⁸⁾

한편 1995년 11월 발생한 부여간첩 사건은 북한이 직접 남파한 공작원이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공공연히 신분을 밝히고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생포된 김동식이 1992년 세칭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암약한 남파공작원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당시 함운경, 허인회 등 386 출신 핵심 인사들은 김동식을 만난 뒤 그를 정신이상자로 보거나 안기부의 공작으로 여겨 신고하지 않았다가 불고지죄로 몰려 곤욕을 치렀다. 이들은 단순 불고지죄였지만, 전국연합 박충렬 사무차장과 성남미래준비위 김태년 대표 등은 안기부가 생포간첩 김동식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면서 북한 쪽이 박충렬과 김태년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 했다는 등의 불확실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러 공개하여 큰 논란을 불러왔다. 박충렬 사무차장과 김태년 대표는 1990년부터 남파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았는데, 안기부는 이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포섭되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성명불상의 공작원으로부터 내용불명의 지령을 받아 행동한 혐의”를 씌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⁸⁹⁾ 박씨 등은 구속된 뒤 남파간첩과 접촉했다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구속만기 30일을 꼬박 채우며 수사했지만, 안기부가 제기한 박씨의 간첩 혐의는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이들은 안기부에 의해 부여간첩 김동식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됐으나, 1996년 1월 8일 검찰에 의해 기소될 때는 이 부분은 빠지고 재야단체 활동과 관련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만 적용돼, 안기부가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죄목을 변경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OO 판

88) 「역사학 교수의 간첩혐의 사건」,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7, 2006, 범우사, pp.245-246.

89) 「안기부의 고문수사, 조작간첩은 만들어진다 - 성남미래 김태년 준비위원장의 구속사태를 바라 보며」, 1995년 11월 21일 제2호, p.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DB.

사는 1996년 7월 12일 박충렬 사무차장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고무·찬양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대해서 피고인이 만든 자료집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며 “헌법 범위 내의 표현”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⁹⁰⁾ 한편 김태년은 재야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⁹¹⁾

1997년 11월 20일 안기부는 서울대 고영복 명예교수가 1961년 북한에 포섭된 이후 36년간 북한 공작원 6명을 상대로 고정간첩 활동을 해온 사실을 확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고영복 교수는 월북한 삼촌 고정옥의 부탁을 받고 남파된 공작원을 통해 “서울대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청년학생들 속에 조직사업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포섭되었고, 공작원들에게 은신처와 공작장비 은닉을 위한 ‘드보크’를 제공해 주었고, 1973년 3월과 7월의 남북적십자회담 당시 남측 자문위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 측 회담전략을 알려달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측에서 이산가족 확인 및 상봉 등을 위해 면회소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는 메모를 전달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영복 교수는 10월에 검거된 직파 부부간첩과 7차에 걸쳐 접촉하면서 남한정세를 보고하고 전자주민증 입수 등의 새로운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다.⁹²⁾

고영복은 이런 어마어마한 혐의로 간첩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1심(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최OO 부장판사)에서는 고씨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 등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을 인정해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공소사실 중 회합·통신 부분과 1989년 7월 남파공작원 김낙효의 은신처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간첩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을

90) 『조선일보』 1996년 7월 13일자 ;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5일, 7월 13일, 12월 20일자.

91) 『한겨레신문』 1996년 8월 27일자.

92) 『조선일보』 1997년 11월 21일자.

선고했다.⁹³⁾ 이어 2심(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OO 부장판사)에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고피고인의 경우 단지 남파간첩 김낙호에게 은신처만 제공한 데다 간첩 김도 적극적인 간첩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간첩방조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합·통신죄만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⁹⁴⁾ 이어 대법원(형사3부 주심 송OO 대법관)도 국가기밀누설 및 간첩방조 혐의에 대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국내정세 자료를 전달하고 단순히 은신처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⁹⁵⁾ 36년간 암약한 고정간첩이라는 안기부의 발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태산명동에 서 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끝났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1997년 9월 29일 안기부와 부산경찰청은 동아대 재학생과 졸업생 7명이 북한노동당에 입당한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학 졸업생인 배O주와 지O주가 일본 연수 중 조총련에 포섭되어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귀국 후 후배 5명을 포섭해 교내에서 노동당 입당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안기부와 경찰은 조직원 5명에게 간첩혐의를 추가해 구속송치하고 2명은 수배했다고 밝혔다.⁹⁶⁾ 구속자 중에는 동아대 총학생회장 도O훈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은 공안당국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 학생운동의 지도부를 장악, 배후조종하여 학생운동의 친북·폭력투쟁을 주도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 역시 고문에 의한 조작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다.⁹⁷⁾ 일부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하여

93) 『한겨레신문』 1998년 4월 10일자.

94) 『경향신문』 1998년 7월 24일자.

95) 『조선일보』 1998년 11월 14일자.

96) 『조선일보』 1997년 9월 30일자; 『한겨레신문』 1997년 9월 30일자.

97)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간첩단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199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DB.

“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뒤 활동자금을 받아 한총련에 침투, 간첩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학원가를 혁명기지화하려는 북한의 음모가 드러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이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기는 했으나 북한에 포섭돼 활동자금을 지원받고 간첩활동을 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98)

“그동안 우리는 한총련 등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공작과 침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학생들의 완강한 부인을 믿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볼 때 운동권 내부에 북한 공작에 포섭된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학생들의 사상적 오류를 막고 건전한 길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9)

라고 대서특필했다. 1심재판부는 이들 중 4명에게 간첩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과 자격정지 3년 6월 씩을 선고했고, 이적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총학생회장 도O훈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¹⁰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 박OO 부장판사)는 “범행의 단서가 수사기록상의 자백뿐이나,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백 내용도 객관적 상황과 주요 부분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밝힌 뒤 “정황을 판단하건대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거나 간첩행위를 할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주범으로 기소된 배O윤주에게는 완전무죄를, 나머지 3명에게는 이적단체 가입은 인정했으나 간첩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이는 물증 없는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¹⁰¹⁾ 이어 대법원도 1999년 1월 27일 이 사건에 대해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¹⁰²⁾

98) 『국민일보』 1997년 9월 30일자.

99) 『서울신문』 1997년 9월 30일자.

100) 『한겨레신문』 1998년 2월 17일자.

101) 『한겨레신문』 1998년 7월 3일자.

102) 『조선일보』 1999년 1월 28일자.

이상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간첩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간첩사건에서 무죄가 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무죄가 선고된 간첩 사건에서 보안사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아래 표와 같다.

【보안사와 경찰이 수사한 간첩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간첩죄 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

사건명	검거	기관	판결	무죄취지	비고
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	71	보안사	대법원 형사부		이성무, 한상진, 김을석, 이병화, 정봉기, 부태삼 등 무죄
산업간첩단	73	보안사	대법원	강태중 간첩방조죄 무죄	발표시는 거물간첩, 기소는 간첩방조이나 대법에서 무죄 확정
이종수	82	보안사	대법원		공작지도원 신원 문제 / 파기환송후 재항소심 10년/ 재상고기각
김진용	84	보안사	서울지검	범정미약, 반성	기소유예 / 미보도
심한식	86	보안사	서울고법형사2부(김○○부장)	증거불충분, 불법감금, 자백의 임의성	
강종배	86	경찰	서울고법형사2부(김○○부장)	87일간의 장기구금상태의 자백, 신빙성 없음	납북어부
여덕현	86	보안사	대구고법(송○○부장)	강압에 의한 자백의 신빙성	납북어부
김성학	86	경찰		고문에 의한 자백	납북어부 / 이근안 고문 / 기소단계에서 간첩죄 빠짐
모녀간첩	99	경찰	서울고법 형사5부(이○○부장)	변호인 도움 받지 못했고 자백의 신빙성 없음	1심 집유

간첩 사건은 1971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 3인에게는 간첩죄가 인정되었지만,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 중에서 6명이 무더기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73년 산업간첩단 사건 당시 방위산업인 OO화약의 운영실태를 재일북한지도원에게 보고하고, OO화약 내에 지하당을 구축하려 했다는 거물간첩으로 발표된 강태중 OO화약 상무도 기소단계에선 간첩죄는 사라지고 간첩방조죄만이 적용되었고, 간첩방조죄 마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1985년의 김근태 민청련 의장 고문 사건과 1986년 부천시 문귀동 형사의 성고문 사건에 이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자, 고문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고문이나 불법구금으로 얻어진 자백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¹⁰³⁾ 이런 가운데 1987년 1월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OO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고문받은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를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¹⁰⁴⁾ 이 판결을 내린 김OO 부장판사는 1982년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원효로 윤노파 살해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고숙종 피고인에 대해 고문으로 얻어진 증거 없는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¹⁰⁵⁾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해 얻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서는 고문을 근절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간첩 사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제일동포 간첩으로 기소된 심한식 사건에 대해 서울 고법 김OO 부장판사는 1987년 2월 10일 그가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을 34일 간 불법 감금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 보안사 수사관이 입회하여 검찰조서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¹⁰⁶⁾ 같은 재판부는 이어 3월 2일에도 남북어부 간첩 사건의 강중배 피고인에 대해 87일 간의 장기불법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간첩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86년 10월 강릉지원에서도 간첩죄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¹⁰⁷⁾

103) 「'고문자백',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 『중앙일보』 1987년 1월 22일자.

104) 『중앙일보』 1989년 1월 28일자.

105) 『중앙일보』, 1982년 2월 2일자. 그러나 3개월 전 같은 재판부는 간첩혐의로 기소된 박동운 사건에 대해 박동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06) 안기부, 「간첩 심한식에 대한 항소심, 간첩혐의 무죄선고 경위 등 확인보고」, 1987년 2월.

107) 『중앙일보』 1987년 3월 2일자.

심한식과 강종배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이 연이어 나온 직후, 대구고법에서도 납북어부 여덕현 피고인에 대해 강압에 의한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간첩죄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¹⁰⁸⁾ 간첩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이 시점은 아직 한국사회가 민주화되기 이전이었지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고문 근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법부도 이에 힘입어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라 하겠다.

108) 조갑제, 「판사들의 고민」, 『월간 조선』 1987년 5월호.

1) 국가안전기획부 발표

1982.9.10 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6.25때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 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한 후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간첩활동을 해 온 그의 처와 아들을 포함한 28명의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 재북간첩 송창섭은 1957.5부터 1977.2까지 8차례에 걸쳐 남파, 북괴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 서울 거주 간첩 처 한경희, 6촌제 송지섭, 5촌질 송기준, 6촌제 송기섭, 4촌처남 한광수, 장녀 송기복, 장남 송기홍, 2남 송기수, 처남 한용수, 6촌제 송오섭 등 16명을 포섭하여 광고회사, 암딸라상, 운수업 등 위장업체 설립 운영, 지하망을 구축하였으며, ▷ 송지섭과 송기준을 대동입북, 간첩교육 후 재남파 시키고 송기섭, 한광수, 한경희 등에 대해서는 현지 간첩교육, 암호문건과 공작금 제공하고, ▷ 사회적 신분을 이용하여 한경희는 정계, 송지섭은 군사, 송기준은 산업계, 송기섭은 공무원 층, 한광수·송기복은 학원 등에 침투케 하여 국가기밀을 수집·보고하고, ▷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들까지 간첩조직에 끌어들이 학원 동향을 수집 보고하는 한편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학생들을 자극, 선동하였고, ▷ 이들 일당은 1982.5. 체포시까지 사회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종친계, 88회, 성우회 등 불순단체를 조직하여 부마, 광주, 10.26 사태 등 중요사건시 마다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동조세력을 규합, 대정부 투쟁을 유도하는 등 25년간 장기암약한 고정간첩단이라는 것이다.

2) 재판과정

1982.9.28 1심 첫 공판에서부터 관련자들은 1960년 송창섭이 남파되었을 때 친척들과 만난 사실 이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8차례나 남파된 송창섭을 만나 간첩활동 도모하였다는 기소내용은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송지섭 등 2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된 2명의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감하는 등 일부 형량을 감경하였지만 여전히 중형이었다.

그러나 1983.8.23 대법원(상고심)에서 주심인 이OO 대법원판사는 본 사건은 피의자들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 최소 75일 최대 116일의 장기 불법구금이 인정되고 기록상 검취전 안기부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수시로 면접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12.23. 파기환송심에서는 ‘상급심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 8조에 반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¹⁰⁹⁾하였다.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1984.4.24)에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되자, 다시 서울고법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세 번째 대법원에서 열린 재재파기환송심(1984.11.27.)에서 유죄로 형이 확정됨으로써 공안 사건으로는 드물게 총 7차례의 재판이 진행된 ‘핑퐁재판’으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109) 안기부 수사관들의 구치소 면접시 협박이나 회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교도관들의 증언, 간첩통신지령카드 기술신문결과결과 보고서, 박종덕, 박정수, 박혜영, 황보삼순의 증언을 인정.

【재판 결과】

구분	① 1심: 서울형사지법(82 고합800)	② 항소심: 서울고법 (83노484)	③ 상고심: 대법원 (83도1578)	④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83노2329)	⑤ 재상고심: 대법원 (84도135)	⑥ 재파기환송심: 서울고법 (84노1172)	⑦ 재재상고심: 대법원 (84도2252)
재판 일자	82.12.24	83.4.25	83.8.23	83.12.23	84.4.24	84.8.24	84.11.27
재판부	이00 장00 한00	이00 김00 김00	전00 이00 이00 이00	오00 박00 김00	정00 윤00 김00 오00	김00 박00 유00	이00 정00 신00 김00
송지섭	사형 및 무기 (간첩)	징25 및 자정25 (간첩)	유죄부분 파기 - 임의성 결여로 검찰조서 증거능력 부인	징10년6 및 자정 10년6 *일부 공소사실 (일반 이적죄) 무죄	유죄부분 파기	징역7년6월 및 자정 7년 6월 *일부 공소사실 (일반 이적죄) 무죄	상고기각
송기준	사형 및 무기 (간첩)	징25 및 자정25 (간첩)		징10년 및 자정10 *일부 공소사실 (일반 이적죄) 무죄		징역 6 및 자정 6 *일부 공소사실 (일반 이적죄) 무죄	
송기섭	무기징역 (간첩)	징15 및 자정15 (간첩)		징7 및 자정7 *일부 공소사실 무죄		징4 및 자정 4	
한광수	징15및 자정15 (간첩)	징10 및 자정10 (간첩)		징5 및 자정5 *일부 공소사실 무죄		징 3년6월 및 자정 3년6월	
송기복	징10 및 자정10 (간첩)	징2 및 자정 2 *일부 공소사실 무죄		징1년6월, 집유3 및 자정 1년6월 *일부 공소사실 무죄		징1, 집유2 및 자정1	
송기홍	징 5년6월 및 자정 5년 6월 (간첩)	징4년6월 및 자정 4년6월	파기	징역1, 집유3 및 자정 1 *일부 공소사실 무죄	유죄부분 파기	징1, 집유2 및 자정 1	상고기각
송기수	징 5년6월 및 자정 5년 6월	징4년6월 및 자정 4년6월		징4 및 자정 4년6월		징6월, 집유2 및 자정 1 *일부 공소사실 무죄	
한용수	징3, 집유 5 및 자정 3 (편의제공)	항소기각		징1년6월, 집유 3 및 자정 1년6월		징1, 집유2 및 자정 1	

송오섭	징1년6월 집유 3 및 자정 1년6월 (회합)	항소 포기		
송광섭	징1, 집유 2 및 자정 1 (회합)			
김춘순	징1, 집유 2 및 자정 1 (회합)	항소기각	상고 포기	
한영희	징1, 집유 2 및 자정 1 (편의제공)			

나 | 의혹 및 쟁점사항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송씨일가간첩단 사건에 대한 의혹은 수없이 많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피의자들은 최대 116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안기부의 수사를 받았다. 관련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안기부의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면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 피의자들의 주요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은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안기부의 불법장기구금과 고문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묵인 또는 공모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수사기간을 훨씬 뛰어 넘는 최대 116일 동안의 장기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송창섭이 8차례나 납과되어 친인척들을 포섭하고 지하망을 구축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재북간첩 송창섭은 1960년 4·19 직후 남파되었을 당시 김영선 전 재무장관을 접촉했으나 동인의 신고로 남파사실이 드러남으로써 1961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세간에 알려져 수사기관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던 인물인데, 그이후로도 8차례나 남파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이런 관계로 가족들 또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내사를 받아왔었는데 간첩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송창섭의 8차례 남파와 관련된 공소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나 진술이 있느냐는 문제다.

셋째, 송지섭 등의 피의자들이 한경희를 재남망책으로 하여 간첩활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와 진술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넷째, 송지섭과 송기준의 월북내용이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섯째, A-3 지령수신 여부다. 검찰신문조서에 A-3 지령수신을 한 것으로 돼 있는 관련자들로부터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고 난수표와 해독문도 제시되지 않았다.

여섯째, 대법원에서의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이후 검찰이 보강하여 제출한 증거와 증언의 조작 여부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당시 안기부와 검찰은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고자 했는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점이 없는가 하는 문제다.

일곱째, 안기부 발표문 상에 공소내용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가 하는 문제다.

여덟째, 재판과정에서 안기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7차례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대법원의 2번에 걸친 무죄취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거의 추가 없이 7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당시 안기부가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1) 자료조사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기무사의 박종덕 관련자료,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흑룡공작철」, 사건 수사초기 안기부 청주분실에서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와 안기부 본부에서 작성했던 수사보고서, 사건 관련 각종 서적 및 언론보도문 등 모두 20만여쪽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2) 면담조사

한경희의 장녀 송기복과 당시 증인으로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동원되었던 박종덕 등 사건 관련자와 증인 등 모두 1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1) 안기부의 수사착수 경위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창섭은 1960년 4·19 직후 남파되어 민주당 정권하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김영선과 자신의 가족 및 친척 몇 사람을 만나고 복귀하였다¹¹⁰⁾. 그런데 김영선이 10여일 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의 처 한경희 등 연고자들이 그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1961년 ‘민주당정권의 용공조작 음모’제하의 신문기사에 대서특필됨으로써 그의

110) 1960년도 송창섭의 남파사실은 사건관련자 모두 인정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관련자들은 ‘집안 어른들이 친척끼리 신고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며 쉬쉬하여 신고치 못하였고, 이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몇 차례 연행조사를 받았으나 1960년에 송창섭 만난 것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남파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한경희 등은 처벌이 두려워 송창섭을 만났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당시 수사를 담당 하였던 경찰도 무혐의 종결처리 하였다. 이때부터 한경희 등은 1982년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시찰 대상이 되어 경찰, 방첩대, 중앙정보 부의 지속적인 내사 및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 주요 내사과정은 아래와 같다.

【한경희 등에 관한 주요 내사과정】

수사연도	수사 기관	관련자	내용	조치 (비고)	내용출처
1958.7.	경찰	한경수	검거간첩 박종덕 접선행의	무혐의 방면	82.4.29 청주분실보고서
1960.4.	충북 도경	한경희	김영선이 송창섭을 목격하였 다는 첩보 입수 2개월간 미행감시	혐의 없어 종결	한경희내사결과보고(72.3)
1960.6	경찰	한경희, 등 조사	송창섭 남파 접선행의	무혐의 방면	82.4.29 청주분실보고서
1960.10 중순	서울 시경	한광수	"		공판진술
1963. 초	중앙 정보부	한경희	송창섭 남파접선행의, 민정당 부녀부장직을 둘러싼 모략 제보라고 판단 무혐의 종결	경찰에 첩보 이첩	82.4.29 청주분실보고서
1964.1.13	서울 시경		공개수사실시 혐의사실 발견무	중점사찰 중	기무사자료 내사결과보고(중언급(72.4.29))
1965.5	경찰	한경수	송창섭 남파접선행의	무혐의 방면	82.4.29 청주분실보고서
1966.9.23 내사보고	방첩대	한경희, 한경수, 한진수, 한영희, 한옥희, 등	1958.8.28 대남간첩 박남용의 제보, 내사지시	남침 흔적 발견무	기무사자료 남침예상자에 대한 내사 (결과)보고
1966.11.7 내사 결과보고					
1971.8.	보안 부대	한경수, 한진수, 김영택 조사	송창섭 접선행의	무혐의 방면	82.4.29 청주분실보고서
1972. 3.14 내사지시	방첩대	한경희 등 내사	검거간첩 전O복의 제보	72.4.27. 중앙정 보부 대공분실 주 관 대공실무자회의...	기무사자료 남파 예상자 내사지시 남파예상자 송창섭 내사 결과보고
1972.5.24 내사 결과보고					
1972. 3.	중앙 정보부	한경희내사	1960년 남파 후 행불	집중관찰토록 조 치	
1973년 봄	보안사 최장환	송기홍	송창섭 접선여부 질문		공판진술
1979년 가을	범진사 (서울지구 보안대)	송기복 내사			송영섭 진술서

특이한 점은 1972년 3월 14일 방첩대는 사형수 간첩 전O복으로부터 입수한 첩보(111)를 바탕으로 송창섭을 남파예상자로 지목, 내사·공작을 추진하는데, ‘재침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종결(112)하였고, 이 사실을 당시 중앙정보부도 인지(113)하였으며, 각 수사기관들은 공히 조치의견으로 ‘중점 사찰 대상으로 하여 감시토록 한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본 사건은 ‘박정수’의 첩보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정수(114)는 중앙정보부의 창설 이래 최대의 역공작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자로써 그의 진술에 의해 실제 간첩이 검거(115)된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당시 안기부 내부에는 동인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116)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111) 1972.3.14 <남파예상자 내사지시> ·본적 : 충북 청원군 · 성명 : 宋명불상(50세가람), ·정보요지 : 6.25전 남노당 활동, 6.25당시 충북 인민위원회 상업부장역임, 중앙당 연락부 부부장으로 1958년 이전에 남파 공작후 복귀한 자임, 1969.1월경 재북중 행불 (행불 후 준정보 제보간첩 전정복이 초대소에서 득문한 바에 의하면 본명이 중심이 되어 남조선 지도부를 조직한다는 설이 있었음)
- 112) 김영선의 신고를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진 점, 연고 가족들에 대한 2차례 공개수사에도 불구하고 접선용의점 발견치 못하여 경찰의 사찰 대상자 편입, 수년간 중점 감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 113) 위 기무사 자료, 72.4.29 <내사결과보고> ...72.4.27 중앙정보부 주관 대공실무자회의에서 본건 당 부대에서 취급중인 공작대상이라하여 그들(경찰)로부터 양보받았다. 72.3. ‘월북자 가족 내사 결과보고’에서 ‘경찰로 하여금 계속 시찰함과 동시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였다고 보고했다.
- 114) 박정수에 대해 당시 안기부는 ‘도원1호’라 칭하였는데 박정수는 도원1호의 본명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한 가명이다.
- 115) 내부자료, 김정인, 정춘상 등을 검거하였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거론된 ‘김정인 사건’은 민가협 등 관련단체에서 지속적인 조작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이며, 정춘상 사건 기록에는 첩보유출 경위에 도원1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또한 의문점이 없지 않아, 실제 도원1호가 검거될 당시 진술내용과 동인으로부터 유출된 첩보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동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통제자료’로 분류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이 온 바, 동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없다.
- 116) 2007.3.8 당시 안기부 직원 박OO은 진실위 면담에서 “도원이 제보하는 첩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100%의 신빙성이 있었다” 고 하여 당시 도원1호에 대한 안기부 내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 청주분실은 “충북출신 월북자 ‘송충건’¹¹⁷⁾이 남파, 연고선을 접촉코 복귀하였다는 제보로 1981년 12월 5일부터 충북 일원의 송씨 중 월북자 22명 및 연고자 324명을 대상으로 집중 내사한 결과, ‘송충건’이 충북 음성출신의 송창섭일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공작을 전개¹¹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동인으로부터 송창섭이 남파되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 송충건이라는 공작명에 근거해 송씨 성을 가진 충북출신 월북자들을 조사한 후 송충건을 ‘송창섭으로 추정’하고 연고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이다.

한편, 안기부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파기환송심 재판 대비에 고심하게 되고¹¹⁹⁾ 새로운 보강증거라며 박정수, 박혜영, 박종덕, 황보삼순의 진술을 추송하고 법정증언케 하였다¹²⁰⁾. 그런데 법정에서 박정수는 기존의 모호하던 제보내용과는 달리 송창섭을 잘 알고 있고, 그가 남파된 연도까지 확실히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안기부가 조선로동당 연락부장 정경희의 재남연고선을 내사한 ‘흑룡공작’에 관한 내부자료를 보면 정경희가 남파되었다면 송창섭의 처인 한경희 등과 접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정수(흑룡공작철에서는 다른이름으로 나와 있음)의 진술을 토대로 송창섭 관련 사항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송씨일가 간첩사건 발표 이후임에도 안기부의 발표 내용과는 크게 다르다. 박정수로부터 유출 되었다는 첩보내용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정수 진술의 변화】

수사초기 (안기부 청주분실 보고서)	항소심(2심)전 보고서 ¹²¹⁾	파기환송심 진술내용	흑룡공작철
○ 충북출신 월북자 ‘송충건’이 남파 연고선 접촉코 복귀	○ 80.12 남파 자수간첩 김철수 (가명, 58세) 제보	○ 81.4 자수하였음 ○ 강동학원 교육시 3개월간	○ 57-58 중앙당 소환, 58-59 1차 남파, 60

117) ‘송충건’은 ‘송씨에 충청도에 지하당을 건설한다’는 뜻임.

118) 국가보안법위반등 피의사건(간첩송지섭 등 16명), 충북 지하당 지도부 형성 고정간첩단사건 수사상황보고 (82.4.29. 청주분실).

119) 자세한 사항은 재판과정에서 상세히 서술.

120) 박종덕의 진술은 ‘고문 및 가혹행위’ 부분에서 그리고 박혜영, 황보삼순의 진술은 ‘송창섭은 8회 남파되었는가?’ 부분에서 각각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지역 송씨중 월북자 22명내사 송창섭일 것으로 판단, 연고선 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출신 '송충건' 1956년경 교육 후 1차 남파 ○ 60.4.19직후 2차 남파 ○ 70년경 재차 수용, '70년대 남한정세 대비 공작원'으로 교육 재남파 ○ 충북 지역 송씨중 월북자 22명내사 송창섭일 것으로 판단, 연고선 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교육 받았고, 1963년 4~5년간 같은 청사에 근무하면서 자주 접촉하면서 알고 지냈음 ○ 이달근으로부터 송창섭이 57년, 60년, 68년 남파되었다고 들었고 ○ 서정필로부터 71년, 70년대 후반까지 남파되었다고 들었으며 ○ 이효순으로부터 '송충건'이라는 공작명을 부여 받았다고 들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4·19 전후 2차 남파 김영선 접촉 ○ 63년 경 대남공작 성과를 인정받아 부부장급으로 승진 ○ 68년 남한혁명지도부 구성을 위해 소위 "70년대 남한정세대비 공작원 교육"중 "왜 우리만이 남한혁명을 해야하느냐"는 등 불평을 토로한 것이 발고되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탄광으로 좌천.
---------------------------------------------------------------------------------------------	-------------------------------------------------------------------------------------------------------------------------------------------------------------------------------------------------------------------	----------------------------------------------------------------------------------------------------------------------------------------------------------------------------------------------------------------------------------------------------	-----------------------------------------------------------------------------------------------------------------------------------------------------------------------------------------------------------------------------------------

만약 박정수가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증언한대로 송창섭이 '송충건'이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다면 안기부가 송충건을 특정해 내기 위해 충북 지역의 월북한 송씨 22명을 추려 연고자 324명을 내사하는 헛수고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착수경위에서 밝힌 첩보내용과 파기환송심 증언 내용마저도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박정수의 증언내용이 최초 보고 내용과 달리 확대되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자, 다급해진 안기부가 송창섭이 196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파되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기부의 관리 하에 있던 박정수를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수는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 송씨일가간첩단사건에 대한 조사가 안기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마당에 안기부의 관리 하에 있던 그가 자신이 기억하는 송창섭에 관한 내용을 안기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파기환송심 단계에 가서야 새로운 내용을 내어 놓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121) 안기부가 작성(내부에 동일한 자료 있음)하고 임OO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착수경위에 관한 보고서.

한편 안기부는 조선로동당 연락부장 정경희가 남쪽에서 활동할 때 한경희의 도움을 받았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정경희의 재남 연고자 내사에 관한 흑룡공작 자료에는 송씨일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경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파될 때 정원도라는 재일교포의 도움을 받는데, 그는 전 공화당 의장으로 송창섭의 처 한경희를 공화당 중앙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기 때문에 안기부는 정경희-정원도-정구영-한경희로 이어지는 연고선을 상정했다.¹²²⁾

그런데 여기서도 박정수의 진술은 중요한 근거로 이용되는데, 흑룡공작이 진행될 당시는 안기부가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후임에도 흑룡공작에 관한 자료의 송창섭에 관한 항목은 안기부의 송씨일가간첩단사건 수사결과에 나오는 송창섭의 행적이 아니라, 박정수가 원래 안기부에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흑룡공작 자료에 따르면 송창섭은 “1968년 남한혁명지도부 구성을 위해 소위 ‘1970년대 남한정세대비 공작원 교육’중 ‘왜 우리만이 남한혁명을 해야 하느냐’는 등 불평을 토로한 것이 발고되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탄광으로 좌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충청도 관련 지하당 책임자 이달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송창섭이 1970년대에 남파되었다는 것을 박정수에게 이야기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연락부 지도원 서정필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북한 정권의 속성 상 김일성의 지시로 숙청된 인물이 김일성의 지시가 없이 다시 남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수의 진술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과 재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증언이나 파기환송심에서의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안기부는 내사 단계에 송창섭이 이미 알려진 1960년 남파 이외에 추가로 남파된 바 있는지, 1960년 남파 당시나 그 이후에 송창섭이 가족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첩보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한경희 등 관련자들이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범증에 관한 확실한 단서를

122) 『흑룡공작철(5)』

입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존안기록상, 본 사건과 관련된 최초 일자의 진술서는 윤순자의 진술¹²³⁾인데, 동 진술서에서 그녀는 한경희 주변인물에 대한 설명과 몇 가지 점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 의심스럽다’라고 진술¹²⁴⁾했는데 이를 통해 범증을 포착하였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미흡한 내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1982년 3월 2일 송기복과 한경수를 연행하였다. 당시 신광여고 교사였던 송기복은 안기부 청주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1960년에 부 송창섭을 만났던 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방면되었다. 그런데 이모 한영희가 연행되어 1960년도에 송창섭을 만난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는 급진전, 송기복은 다시 연행 되고, 1960년 송창섭이 남파되었을 당시 관련되었던 자들이 차례로 연행되면서 4개월이 넘는 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경희, 송기복 등 가족들은 1960년 이래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마다 1960년에 송창섭을 만난 것을 완강히 부인하였는데, 이 점은 그들이 송창섭을 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불고지죄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들이 송창섭을 만난 것을 숨긴 것을 단순한 불고지로 보지 않고 간첩에 포섭된 것으로 보고 강압수사를 벌인 것이다.

2) 불법연행 및 장기 불법구금

안기부는 당시 검찰에 송치한 수사자료 상의 “임의동행보고”에 “1982.6.15. 임의동행했다”고 적시하고 피의자들의 자필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1982년 6월15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기재했다.

123) 윤순자는 1959년에서 1968년 년까지 한경희의 집 가정부로 있었던 사람이며, 1982.2.18 작성한 윤순자의 자필 진술서가 존안되어 있다. 동 진술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송치 단계에서는 제외되었고, 82.6.23 새로운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추송한 바 있다. 동인은 진실위 면담에서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한바 있다.

124) ‘당시 어려운 살림이었는데 한경희가 1967년에 집 산 것, 밤에 레시바를 꺾고 뭔가 들었다, 지관을 따르고 존경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의심스럽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인은 면담에서 한경희가 귀에 레시바를 꺾고 듣는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송기복¹²⁵⁾은 “1982.3.2 수업도중 교장실 호출로 갔더니 검정 옷을 입은 수사관 2~3명이 친정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였고, 송기준¹²⁶⁾은 “1982.3.7 새벽 6시에 안기부에서 왔으며 3명이 들어와 가자고 하여 짚차를 타고 갔는데 차에 타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가렸다”고 하였으며, 송기홍¹²⁷⁾은 “1982.3.10. 아침 8시에 처음에는 누구라고 말도 않고 아버지에 대해 좀 물어볼게 있다고 하며 차에 태우더니, 차에 타니까 안기부에서 왔다고 하더니 어느 지점에서 눈을 가렸다”고 하는 등 관련자들은 1982.3.2 경부터 연행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불법연행을 당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2년 7월 2일까지 100여 일 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족들은 물론 변호인 접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82년 3월 31일자 안기부 청주분실의 보고서¹²⁸⁾에는 피의자들의 연행일에 대해 「송기복(82.3.2), 송기준(82.3.7), 한영희(82.3.7), 송기섭(82.3.10), 송기홍(82.3.10), 김춘순(82.3.14), 한용수(82.3.22), 한광수(82.3.25), 오금영(82.3.25), 송기수(82.3.27), 송지섭(82.4.12)」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4년 8월 재파기환송심공판 전에 작성된 공판대책 자료¹²⁹⁾에는 본 사건의 수사기간에 대해 “1982. 3. 2.에서 4. 12 사이에 관련 피고인들을 청주분실로 임의동행하여 4. 27 까지 수사를 하다가 본부 수사단에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사건의 피의자들은 공식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1982년 6월 15일이 아닌, 1982년 3월 2일부터 차례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2년 7월 2일 까지 최대 116일, 최소 75일간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전혀

125) 2006년 12월 7일 면담.

126) 2006년 11월 17일 면담.

127) 2006년 12월 1일 면담.

128) 청주분실, 재북간첩 송창섭 연고선 수사상황(1982.3.31).

129) 간첩 송지섭 사건, 공판대책 상황보고(84.8), 안기부 직원 조OO 증언내용 예상문답.

보장 받지 못한 채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당시 안기부의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안기부는 각종 수사서류(인지동행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일시(日時)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는 바, 피의자들의 인지동행보고는 연행일에 관계없이 일제히 1982년 6월 15일로 기재되어 있다.¹³⁰⁾

이는 장기불법구금 사실을 은폐하여 안기부에서 작성한 피의자들의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명백한 조작행위이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당시 수사상의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있으나, 이는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국가보안법의 특별규정으로 구속기간을 최장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배려마저도 무시한 처사이다.

한편, 본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대법원(주심판사 이○○)이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은 적게는 75일 많게는 116일의 장기 불법구속을 당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불법구금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관들도 불법구금사실을 부인하지 못하였고, 당시 상고심 이후의 재판에서 장기불법구금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이 된 상태에서 자백의 임의성만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따라서 본사건 관련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의 장기불법구금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위법행위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고문 및 가혹행위

고문이란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위협, 제지, 징벌과 같은 잔인한 수단을 동원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UNCAT)¹³¹⁾ 이다.

130) 82.6.15 송기준 인지동행 보고서.

131) 고문의 정의는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방지에 관한 선언 제1조에 규정.

1970, 80년대 ‘조작의혹이 제기된 간첩사건’의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런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들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물적 증거가 아닌 자백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 진술 조서를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²⁾

본 사건 관련자들 중 안기부의 밀실에 116일 동안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던 송기복은 항소이유서에서 100여일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온몸구타’, ‘손바닥 발바닥 등 특정부위 때리기’, ‘물고문’, ‘거꾸로 매달기’, ‘고압전구 노려보기’, ‘손가락 사이에 각목 끼우기’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그때마다 허위진술을 강요받았으며 그 허위진술로 인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가) 피의자들

송지섭은 안기부 밀실에서 부인할 때 마다 발가벗기고 두드리기, 손과 다리를 모아 묶고 그사이에 침대봉을 끼워 공중에 매달고 물을 먹이고, 고광도 조명을 눈앞에 들이대어 잠을 안재우는 고문을 받아 1982.5.17 서울 필동 중대부속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¹³³⁾고 하였다.

항소심에서 송지섭의 담당 변호인은 고문의 증거로 동 병원의 응급실 기록지¹³⁴⁾를 제출하였는데, 동 기록에 따르면 “과거병력 없고” 주소(主訴)¹³⁵⁾로 “음낭이 부풀어 아프고 타박상이 있”으며, 비뇨기과의 소견으로 “음낭이 심하게 붓고 표제성 출혈(피멍)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송지섭의 진술과 같은 고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이다.

132)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p412.

133) 서중석, 「한국판 ‘25시’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전말: 80년대 최대의 법정공방 공안사건」, 『신동아』 1988년 8월호.

134) 1982년 5월 17일 9시 30분의 응급실 기록지. 송지섭은 1982년 4월 12일 안기부에 연행 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극히 이례적으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135) 주소(主訴) : 주된 호소란 뜻으로 환자가 어디가 아픈가 말한 것.

송기복을 안기부 청주분실에서 서울본부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¹³⁶⁾에는 방침으로 “엄정한 신문분위기를 조성, 임의진술 유도”라고 적고 있는데, 송기복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당시 안기부에서의 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엔 일방적으로.. 어딜 맞았다고 얘길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 맞으니까.. 그렇게 몰매 맞듯이 맞는 거 영화에서나 보고 그런 거지. 내가 그랬다는 거를 정말 표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며 밀실수사 때 받은 고문 내용¹³⁷⁾을 비교적 자세히 말하였는데, “그럴 때 마다 아버지 만났다 누구 만났다 쓰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하도 맞아서 잇몸이 다 붓고 그러는 데요.. 멍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나중엔 계란 보라색 같다는 걸 내 눈으로 처음 보았어요.. 안기부 있을 때 여직원 아이가 야간학교 다니는 사환 아인가봐.. 그 아이가 목욕시켜 주면서 붙들고 울드라구요”라고 하며 흐느꼈다.

송기복은 두 번째 연행¹³⁸⁾되었을 때, 강OO 수사관에게 몹시 맞았는데 “내가 이렇게(손을 뒤로하고) 묶여 있는데 그 남자가 들어오더니 자기 옷을 다 벗어요...(그래서)이게 성폭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자기 허리띠를 푸르더니 있는대로 욕을 하면서 여기서 부터(머리) 밑에까지 그렇게 후려치는데...”하면서 당시의 공포가 떠오르는지 몸을 떨며 통곡하여 한동안 얘기를 잊지 못하였다.

송기복은 본 사건에서 최장기간(116일)동안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136) 1982년 4월 19일, 남파북귀간첩 연계혐의자 수사계획 보고.

137) 뺨 맞기는 기본이고, 핀침으로 손톱밑 찌르기, 손가락 사이에 불펜 끼워 누르기, 손바닥, 발바닥 때리기, 둥그른 나무위에 앉혀놓고(스케이트같이) 모래주머니로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하기, 드러누워서 발바닥 때리기, 얼굴에다 천같은 것 석워놓고 고춧가루물 먹이기, 벽에 조명을 켜놓고 계속 보게하기 등.

138) 송기복은 1982년 3월 2일 처음 연행되어 일주일간 조사를 받을 당시 1960년에 아버지 송창섭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여 방면되었다가 3월 7일 다시 연행되었다.

당했는데, 안기부 내부 보고서¹³⁹⁾에 의하면 송치 후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홍성우 변호사(송기준의 담당 변호인)는 진실 위와의 면담¹⁴⁰⁾에서 본 사건을 회상하며, “엄청나게 고문당해서 만들어 낸 것, 송기복도 엄청 당했지... 재판장에 어그적거리며 나왔어요”라고 말하여 수사기간 동안 안기부의 고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송기복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남편 송영섭도 안기부에서 40여일 조사를 받았고, 자신이 풀려난 뒤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왔는데, 이 때는 안기부 조사가 끝난지 2-3개월이 지난 뒤였음에도 몸이 좋지 않아 사망에서 면회실 가는데 걸음을 옮기기 힘들어 주저앉기를 되풀이하여 근 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남편은 그래도 운동을 시켜야 한다며 매일 면회를 왔다고 한다.

송기섭은 안기부에 연행될 당시 중풍¹⁴¹⁾의 후유증으로 몸이 부자유스러웠던 환자였다. 송기섭은 면담에서 “첫날부터 두드려 패니까 그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깐 매도 정이 들더라...매일 두드려 패는 게 일이고 맞는 게 일”, “나중에는 병어리가 돼.. 하라는대로 안하면 못견뎌.. 그거는...”이라고 하며 당시 중풍환자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다면서 “나는 그 당시 중풍환자 아니야.. 그니까 세워놓고 궁둥이 때리면 중풍 맞은 데가 더 아픈 거야.. 그러다가 인제 아까 무슨 포스트(무인포스트)? 뭐 이런데

139) 당시 안기부는 송치 후, 송기복의 남편 송영섭과 변호인 김성기의 동향을 일자별로 파악하여 보고하였는데, 1982년 8월 16일 변호인 접견기록이 그대로 보고 되어있다. 동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면

김성기 : 아버지 얘기는 어머니로부터 몇 번 들었는가

송기복 : 61년도에 1번 밖에 들은 적이 없다.

김성기 :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송기복 :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북에서 숙청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한다. 나는 당시 여고 3년생이었다. 그 후에도 형사들이 학교를 찾아오곤 했기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였는데 맹장염이 터지는 바람에 살았다.

김성기 :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 법정에서는 말하라. 그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

송기복 : 안기부에서 조사 받을 때 때 맞은 얘기를 법정에서 해도 되는가

김성기 : 그 문제는 법정에서 얘기하되 재판장이 체지하면 하지 말라

송기복 : 다리를 절고 몸이 좋지 않다.

140) 06.10.18 진실위 사법분야 면담.

141) 송기섭은 동대문구 전농 3동 사무소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74년 6월 15일경 퇴근길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6월 20일 경희의료원 중풍센터에 입원한 바 있으나 완치되지 않아 사건 몸이 불편한 중풍환자였다. 송기섭, 「(자필)상고이유서」, 1983년 4월 25일.

찾아 널려고 얘기할 땐.... 옆드려 놓고 패는 거야.. 거기다 옆드려 놓고 패니까 도망갈 수는 없고.. 기는 거지 기어..”하며 어이없어 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김춘순(송기섭의 처)은 면담에서 송기복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많이 당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얘기하자 “에그... 그런소리 마라, 너는 안 당했냐,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눈물나서 말도 못한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째... 기복이 맞는 소리 내 방에 다 들렸어 그때.. 니가 맞는 소리를 듣다가 내가 다 까무라쳤어, 니가 무슨 죄가 있니”라며 공판정에서 헤어지고 24년 만에 처음 만난 송기복을 끌어안고 울먹였고, “중풍든 남편을 갖다 놓고 저쪽에서 두들겨 패잖아, 이 사람을... 아이고 소리가 다 들려요.. 이 방에 기복이 맞는가 부다 저 우리영감 맞는가 부다.. 저 기준이 맞는가 부다 그것만 생각나요 나는..”하면서 자신이 받은 고문에 대해서 “아휴,, 머리 다빠졌어요.. 머리를 요렇게 요렇게 해서 뽑아...손가락을 이..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잡아당겨요.. 이 앞이 (머리가)허했었어.. 저저 볼펜을 요기 손가락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 이렇게 비틀고.. 따구를...(때렸다).” 라고 말하였다.

한광수는 안기부에 연행될 당시 70세였다. 그러나 안기부 조사실에서의 고문은 70세 노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광수는 면담에서 현재 9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상세히 당시 상황을 말하였다. 1960년 송창섭 만난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거짓말이라고 하며 “... 몽둥이하고 밧줄을 갖다 놓고서는 아.. 칠십먹은 늙은이를 몽둥이로 막 때려요.. 그 즈음 신문에서 서울대학 최고순가 누군가 죽었던 얘기를(들어서).. 어휴,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맞아죽게 생겨서.. 겁이 덜컥 나더라, 나 혼자가 아니라 늙은 마누라도 같이 가뉘 버리더라고 말이야...안맞을 도리를 생각하고 저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맞지 않겠어요?”라고 반문하면서 “여러분이 와서 고맙지만 말이야.. 나 아주 그 얘기만 나오면 진저리가 나, 진저리가..”라고 하며 고통스러워하였다.

송기준은 면담에서 안기부에 연행되니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연행된 당일에는 ‘진종일’ 맞았다면서 “일절 묻는 것도 없고 때리고 고백하라는 거여...그날 하여튼 얼마나 맞았는지 녹초가 되다시피 했어요..(중략) 세 명이 뺐는데, 그날로 기절하다시피 했어요. 앞정갱이를 주로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거동을 못하게 되니까 설레 두 사람이 양쪽에 부축해가지고 숙직실 같은 데로 데리고 갔어요...”, “거꾸로 매달려 주전자 물 먹이는 거. 발길로 앞정갱이 수시로 차는 거 나중엔 아프지도 않아요..이렇게 부어가지고서네.. 나중엔 이게(바지) 벗겨지지 않으니깐 짜를 적에 가세(가위)로 잘랐어요.”, “(직접 일어나 재현하며) 벽에 요결(등)을 대고선 서있으라고 하고는 중심을 잃으며는 그냥 두드려 패는거야.. 이 새끼 엄살 부린다고 두드려 패고...”라면서 안기부에서 ‘당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송기홍은 면담에서 안기부에 연행되니 “아버지 송창섭에 대해 아는 걸 다 말하라 하기에 얼굴도 모를뿐더러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얘길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딴 사람은 다 봤다고 하는데 너는 못봤느냐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니까 무조건 때리는 거여..”, “벽을 보구서 무조건 벽을 쳐다보는 거야.. 어디도 못쳐다 봐.. 막 꿰어앉으라 하구는 각꾸목(각목)을 여기다(오금) 딱 집어놓고 꿰어 앉으라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를(허벅지)를 막 치는 거야..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야...(중략) 손가락 사이에 아주 딱 맞는 굵기의 각목인가.. 두개를 양쪽에 딱 끼우고, 여기를 쪼이는데 아.. 뭐 으스러지는 거 같애.. 그래서 ‘아이고 나 죽고 싶다. 지금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나 죽고 싶고, 당신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니까 수갑을 채우더라고....”, “ 조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애가 그렇게 말을 안들어? 차렷해! 이 악물어’ 그러더니 느닷없이 주먹을 날려서 치더라고...이쪽 치고 저쪽치고.. 그 이후 이상하게 이가 하나둘씩 다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다 갈았어요”라고 말하였다.

송기수는 면담에서 “어떻게 몇시간을 계속해서 때릴 수가 있어.. 그것도 여기만(양쪽 볼).. 이게 이게 다 너털너털 해지는 거지.... 무슨 죄로 밤새도록 이렇게 맞아야 하느냐 이거야...” , “저녁을 먹고 나면 10시, 11시

부터 시작되는 거야, 새벽까지.. 허참.. 이 사람 목적이 뭔지.. 왜 이리 때리는지..난 참 이상해...(이상하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여기다 (불펜을) 끼워가지고 그냥 막.. 그러구 낮에는 이러구(손들고 벽을 보고) 있어야 돼, 벌서는 거...생각을 해봐요.. 자존심이며 뭐며 다 무너지는 거..그 나이에 가서..”라고 말하였다.

송오섭은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문 후유증으로 1984년경 석방된 지 1년 만에 사망하였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고통이 심하니 밥도 못 먹고 술만 마셨다’고 한다¹⁴²⁾.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송오섭은 안기부 청주 분실에서 극심한 고문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송기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피 붙은 로프, 그걸 내 침대 밑에다 놓는데. 아~ 정말, 그리고 이 로프가 누가 당한 것 까지 내가 느낌이 오더라고. 화장실을 지나가면서 그 개 끌어나가는 소리를 들었거든. 입을 틀어막아 놓고 하는 소리, 비명소리 우~우~.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형사 애들이 와서는 그 밧줄 놓으면서 새끼 꼭 개 끌어나가는 소리를 하는데, 아 그거구나, 피가 그거야. 아~ 그 양반 결국은 나와서 죽었잖아요. 오섭이 아저씨였어요”

송광섭은 면담에서 진술서 내용¹⁴³⁾에 대해 질문하자 “아니... 그게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썼어요... ”라고 하면서 “안쓰면 안돼요.. 왜냐문.. 자구일어나면 글씨니께...”(동생 송희섭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끝이 안나요” 하자)“그러니 나도 북에도 갔다 오고 그거 인정 다 했지...(중략) 작은형(송오섭)이 그런 약도를 가져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그렸어요.. 바위에 돈 숨겼다고...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이요.. 이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형이 더 맞을 거고 나는 나대로 또 당할 꺼고... 어차피 시인을 한거지...”라고 말하였다.

142) 송광섭(송오섭의 동생)의 면담 진술.

143) 형 송지섭이 북에도 갔다 오고 송창섭이 내려오면 길 안내도 해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송희섭은 면담에서 안기부에서 고통스럽게 고문당한 건 없으면서 “내가 몸이 안 좋잖아요... 무릎을 꿇을래야 꿇을 수가 있나...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무릎을 툅 차더라고... 이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혼났지... 내 이게 불구잔데...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왜 안 꿇겠냐고...”라고 하면서, 나중에 방송출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거부하자 “너 내일도 거부하면 뜯뜯 말아 유치장에서 못 나오게 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서 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중략) 내가 이 사건에 (방송출현으로) 최후의 도장을 찍은 건데... 죄는 제일 가볍게 받았지만, 마음은 제일 무겁다”고 말하였다.

나) 참 고 인

안기부는 이미 사망한 한경희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동향인이며 검거간첩인 박종덕을 연행하여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였다.

박종덕은 면담에서 한경희 남편을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고 하자 “이름 모른다고 두드려 패는겨... 한집에서 한술밥을 먹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지게 두드려 맞았지 뭐...송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았지”라고 하며, “지령이니 뭐니 서류를 어떻게 맨들었는지 난 몰라... 정신이 빠져서리.”라고 하면서, 진술서 상의 내용을 묻자 “거짓말이라니까.. 나도 거짓말 해야지.. 나도 살아야겠거든... 침에 막 두드려 패고... 자기네들이 꾸며가지고 왔으니까” 라며 “내가 정신이 없지.. 그렇게 맞았으니까... 빠따방망이야... 그때는”, 맞은 얘길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질문에 “아이구 그걸 어떻게 얘길해요... 꾸부러 앓혀놓고 여기 다(오금) 빠따 방망이를 넣더라고... 발을 눌러가지고 두 놈이서... 정신이... 이게 뿌러졌는지... 지금도 여기가 아파.”, “자술서는 자기네들이 다 해놓으며는 뭘... 그 얘기를 옆에서 불르다시피하고 그럼 나는 쓰고...” 하였다면서, 구타 이외에 협박받은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 그건 취조과정에서 노다지죠... 뭐... 그 사람들 입버릇인데 뭐... 협박이라는 것은... 니가 살라며는 제대로 얘기해라 이거요...” 라고 말하였다.

다) 피의자 측 증인

안기부는 피의자 송기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재철을 연행, 조사하고 위증죄로 구속시키기 까지 하였는데, 동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폭행과 협박이 동원되었다.

김재철은 면담에서 조사받을 때 구타는 없었냐는 질문에 “옷 훌쩍 벗기고 발로 한두번 차고, ‘니가 뭘 알아 14년전 일을 어떻게 알아 이 자식이’...”하면서, “왜 한번 서지 두 번씩 서냐고... 한번만 했으면 안잡아 널건데 왜 두 번씩 증언을 했냐 이거야... 두번씩 증언을 썼기 때문에 잡으러 왔다 그러더라고...”라고 말하였다.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해 묻자 “(1968년)9월 14일 그간을 자꾸 묻길래... 어차피 번복이 안 될 것 같아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어...”라고 하며, 검찰에서 안기부 직원이 검찰 서기한테 “다 끝났으니 알아서 처리해”라고 얘기하기에 내보내란 얘긴 줄 알았는데 구속되었다면서 그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고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사건 관련자들은 안기부 수사관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검찰 수사시와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한 항소·상고 이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호소하였고, 사건이 발생한지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문 받을 당시를 회상하며 몸을 떨고 울먹이는 등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도중 외부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송지섭의 진료기록, 변호인 접견시 송기복과 김성기 변호사 간의 대화, 무엇보다 장기간의 불법구금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고문 주장에 귀 기울인 이OO 대법관의 판결 내용¹⁴⁴⁾을 종합하였을 때 본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대로 수사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와같이 피의자들의 고문주장이 있는 반면, 담당 수사관들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144)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후에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거나 앓을 까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하에서 한 임의성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

1) 송창섭은 8회 남파되었는가?

안기부 진술과 공소내용상 재북간첩 송창섭은 1957년부터 1977년까지 총 8차례 남파되어 가족 및 친인척들을 접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기 및 체류기간, 접선자는 아래의 표와 같다.

【발표문에 따른 송창섭의 남파 시기와 주요 접선자】

	남파시기(발표문)	접선자
1차	57.5~58.7 (1년 2개월체류)	한경희, 송지섭, 송기섭, 송영홍, 최발귀
2차	60.4 하순~60.5.초순 (15일간)	피의자 대부분
3차	63.10. 중순 ~ 63.11.초 (15일간)	한경희, 송기섭, 한광수
4차	68.1초순~68.1.하순 (20일간)	한경희, 한광수, 송지섭, 송기섭, 송기복, 송기홍, 송기수, 송기성 등
5차	71.3. ~ 71.10. 71.10.초순~71.10.중순 (10일간) ¹⁴⁵⁾	한경희, 송지섭, 한광수,
6차	72.10.초~72.10.중순 (10일간)	한경희, 송기섭, 송기복,
7차	74.4.중순~74.4.하순 (10일간)	한경희, 송기섭
8차	77.2.중순~77.3.하순 (15일간)	한경희, 송기섭, 송기홍, 송기수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방대한 수사기록에서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사실 중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제시되는 것은 1960년 4월 주요 피의자들이 송기섭 집에서 북에서 온 송창섭을 만났다는 점뿐이다. 이는 안기부에 따르면 송창섭의 2차 남파에 해당된다. 이 2차 남파를 전후한 7차례의 남파에 대하여 관련 피의자들의 자백과 증인 박혜영의 건물 등이 있으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피의자들은 1960년 4·19 직후 송창섭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집안 어른의 당부로 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함구해 왔을 뿐이고, 그 이외의 남파사실은 100여 일 간의 장기불법구금 상태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어진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5) 발표문에는 5차 남파 시기가 71.10초(10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안기부 피의자신문 조서 상에는 71.3에도 남파되어 송지섭을 접선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각 남파시기별 의혹사항에서 설명하겠음.

송창섭이 1960년도 남파된 사실은 그가 접촉했던 김영선 의원 (민주당 정권에서 재무부 장관,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 주일대사 역임)이 약 15일 정도 지나 당국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5·16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민주당 정권의 용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1961년 7월 4일 “민주당 정권 요인들의 용공음모를 예의 수사”한 결과 “그 천인 공노할 진상”을 발표하면서 그 첫 머리에 1960년 4월 26일 오전 7시 송창섭이 김영선의 집으로 찾아 온 사실을 꼽았다. 이 사실은 7월 5일자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즉 송창섭은 남파되어 장관급 고위 공직자와 접촉을 한 북측 공작원으로 이미 남측의 공안당국에 신상이 파악된 자이다. 만일 안기부의 발표가 진실이라면 이미 남측의 공안당국에 노출된 자가 신문에 대서특필된 이후에도 무려 6차례나 방첩망을 뚫고 서울에 잠입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간첩 사례를 볼 때 그 같은 행위는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송창섭의 연고선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중앙정보부, 경찰, 보안사 등에서 중점적으로 사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장’ 급의 거물공작원이라는 송창섭이 6번이나 남북을 오갔다면 남쪽의 물샐 틈 없는 방대한 방첩 조직의 역량을 고려할 때 송씨일가 이외의 다른 목격자나 증거, 또는 조직망의 흔적 등이 잡혔어야 할 터인데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

당시 안기부는 송창섭의 8차례에 걸친 남파를 입증키 위해 윤순자, 김건주 등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송치하였으나, 이들이 본 낮 선 남자가 송창섭이라는 점은 전혀 입증을 못하였다. 안기부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전 간첩 박종덕·박정수 등과 참고인 박혜영·황보삼순의 진술을 확보하여 추송하였다.

이 절에서는 송창섭의 8차례 남파 사실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초한 수사기록 내용, 공식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안기부의 내부 보고서의 내용,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추송된 박종덕·박정수·박혜영·

황보삼순 진술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송창섭이 전후 8차례에 걸쳐 남파되었다는 점이 입증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1차 남파 : 1957년 5월 - 1958년 7월 (1년 2개월 체류)

안기부와 검찰에 따르면 송창섭은 1957년 5월 남파되어 충북 음성군의 생가와 서울 송인동 소재 송지섭 부친 송영범 가에 은신하면서 한경희와 접선하고 송지섭·송기섭을 포섭하였으며, 1958년 7월 송지섭을 대동하고 월북·북귀했다고 한다. 송창섭이 1957년 5월 남파되었다는 것은 송지섭·송기섭의 자백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송창섭의 1차 남파에 대한 안기부 등의 수사기록을 살펴 보면, 그 내용은 조작된 것이 분명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한 예로 송창섭은 한 번도 검거된 바가 없고, 한경희는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안기부가 두 사람의 진술을 받아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작성 <의견서>를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문답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¹⁴⁶⁾ 이 대화 내용은 안기부의 수사관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차 남파 기간이 길게 설정된 것은 아마도 안기부 수사관들이 송창섭이 김정제(金正濟) 사건 당시 경찰에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한경희로부터 들었다는 박혜영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제 간첩 사건이 발생한 것이 1957년 8월이고, 안기부 수사관들이 송창섭이 송지섭을 대동하여 월북했다고 생각한 것이 1958년 7월이기

146) (한경희는) 1957.5 중순 19:00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81번지 소재 피의자 시집에서 간첩으로 남파된 송창섭과 상면, 그로부터 “그동안 혼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수고가 많다. 이제 곧 잘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니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지내라”
“이북은 진정피해를 완전히 복구해서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되었다”
“나는 잘 지내고 있고 남조선 해방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등의 북괴우월성에 대한 선전 교양과 함께
“앞으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남조선 해방 혁명투쟁에 앞장서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하루 빨리 적화통일이 되어 당신과 함께 살수 있는 날이 오도록 나도 당신이 하는 일을 같이 하겠어요”라고 결의를 표명하는 등 남편 위 송창섭이 6.25당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괴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가 소정의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를 내왕하면서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때문에, 송창섭의 남파 일자를 김정제 사건 발생 몇 달 전인 1957년 5월경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송창섭이 정말로 김정제 사건 당시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탈출하였다면 안기부는 마땅히 김정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과 기록 분석을 통해 송창섭의 행적을 추궁했어야 하나, 수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제 사건에 연루된 듯한 미확인 진술을 맹신하여 송창섭이 남쪽에서 은거활동한 기간을 길게 잡아보니 수사기록상에 허점이 발생할 소지도 매우 커졌다. 먼저 송창섭이 장기간 어디에 은거하였나 하는 점인데 당국은 송창섭의 은신처를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생가와 서울 송인동 소재 송지섭의 아버지 송영범의 집으로 발표하였다. 이 두 곳에 송창섭이 1년이 넘는 기간을 은신하였다면 당연히 이 두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송창섭의 남파 기간 중의 행적에 대하여 수사하였어야 할 터이나, 안기부가 고향일대에서 송창섭을 이 당시 보았다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없다. 또 송인동 송영범의 집에는 송기준의 고모이자 송지섭의 6촌 누나가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송기준의 고모와 그 자녀에 대해 송창섭의 은거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했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기록도 없다. 송창섭이 이 집에 은신하거나 송지섭과 여러 차례 만나며 무시로 드나들었다면 이 집에 실제 거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간첩 송창섭의 간첩 행위를 방조했거나, 그의 은신을 도왔거나, 최소한 월북했던 그를 보았거나 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조사한 기록이 없다.

안기부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송인동 집의 소유주인 송영범은 이 때 송창섭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송지섭은 비록 부친 소유이기는 하나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집에 간첩을 숨겨준 것이 된다. 그런데 송지섭은 송창섭을 숨겨주면서 실제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나 송기준의 고모나 그 자녀들 등 동거인 어느 누구에게도 협조나 입단속

등 당부를 하지 않고 그저 간첩에게 “여기 이 집에 묵으시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떠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기부에 따르면 송창섭은 1958년 송지섭이 군 부대 후생사업에 이용하는 군용트럭을 타고 미군 7사단 등 군부대 일대를 돌아다니며 군사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58년 7월 월북할 때도 이 군용트럭을 타고 동두천까지 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트럭의 운전병은 송창섭을 여러 차례 목격한 것이 된다. 이 운전병은 특히 미아리와 의정부의 검문소에서 송창섭과 송지섭을 태운 상태에서 헌병이 송창섭 등을 가리키며 “무엇하는 사람이나”고 묻자 “이 차량은 후생 차량으로서 옆에 있는 민간인 2명은 화주로서 동두천 방향에 화물을 실으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하여 무사히 검문소를 통과하게 한 바 있다. 이 운전병은 송창섭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송창섭의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짙은 자이나 그를 조사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상 안기부가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송창섭이 1차 남파 당시 접촉하였던 사람이 다수 있으나, 안기부는 이런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송창섭의 1차 남파는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부인한 경희를 비롯하여 친척인 송지섭, 송기섭 등을 이 때 포섭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송창섭의 1차 남파시기는 한경희 사후에 간첩단의 총책이라고 안기부가 발표한 송지섭이 송창섭과 대동 입북하여 간첩 교육을 받고 복귀한 시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안기부는 이 시기와 관련하여 당연히 수사하여야 할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송지섭은 1958년 입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하였다는, 자신의 혐의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기부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의 사건과 관련 인물들에 대하여 조사를 게을리 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로서, 송창섭의 1차 남파와 간첩망 조직, 송지섭 대동 입북이 모두 허구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기부에 따르면 송창섭이 1960년 남파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광수를 찾아가 처 한경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만약 송창섭이 1957년 남파되어 한경희와 선을 대었다면, 한경희를 통해서 한광수를 만나야지 한광수를 찾아가 한경희의 거처를 수소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2차 남파: 1960년 4월 하순 - 1960년 5월 초순 (15일간)

송창섭이 1960년 4·19 직후 남파되어 서울 성동구 신당동 소재 송기섭 가에서 한경희, 송기복 등 가족과 친척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들과 변호인들도 다툼이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송기준은 신당동 송기섭 가에 다녀가라는 송영홍의 기별을 받고 송기섭 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 송창섭이 이미 그 집을 떠나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3차 남파: 1963년 10월 중순 - 1963년 11월 초순 (15일간)

안기부에 따르면 1960년 남파되었다가 복귀한 송창섭은 1963년 10월 중순 다시 서울에 남파되었다고 한다. 송창섭의 사촌 처남으로 1960년 남파시 포섭된 것으로 되어 있는 한광수는 1963년 10월 5일 24:00 평양방송을 통해 송창섭과 접선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 1963년 10월 11일 밤 8시 경 송창섭이 집으로 찾아 와 접선하였고, 송기섭은 1963년 10월 중순 종로구청 징수과에 근무할 당시 송창섭이 전화로 연락해 와서 그를 만나 30분 간 대화하면서 종친계, 친목계 등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한광수는 송창섭을 만난 것은 1960년 단 한 번뿐이고, 그 당시 받은 난수표는 곧 태워버렸기 때문에 1963년에 방송을 듣고 난수표로 지령을 해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광수는 항소이유서에서 1963년 10월 5일 자 방송청취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방송 청취한 내용을 대라면서 ‘그때 평양방송은 몹시 길었는데 내용이 무엇이나’고 추궁하였는데, 수사관들이 준 자료를 보고 ‘정당·사회단체에 침투하라’고 대답했더니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그것뿐이냐고 추궁하여 그렇다면 송창섭을 등장시켜보자는 마음이 생겨 ‘정당·사회단체에 침투하고 송창섭의 지시를 받으라. 10월 11일 20시경에 본인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다시 그와 만나서 한 대화내용을 대라 하여 ‘김활란이 물러나고 김옥길총장이 등장’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기부는 한광수가 송창섭을 만나 이 때 “이화여대 학적과장 한광수”라고 인쇄된 명함 1매를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한광수가 학적과장에서 해임된 것은 1962년 3월 초순으로 그로부터 1년 반 이상 지난 1963년 10월에 학적과장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송기섭은 자신이 1963년도에 성동구청에서 종로구청으로 전보되어 징수와 징수2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은 당시로서는 일반인들도 전보 사실과 보직을 정확하게 알아 전화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간첩 송창섭이 남파되어 바로 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창섭은 한광수에게는 교직원에서 동조자를 포섭하고, 송창섭에게는 종친계, 친목계 등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한광수는 15년 동안 대상자에게 접근 중이고, 송기섭은 1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77년에 가서야 종친계를 조직하고, 1978년에야 성우회를 조직하는데, 공소장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여도 25년간 암약한 간첩단의 실체는 15년간 여전히 포섭대상자에게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접근 중이거나, 15년 만에 종친계나 친목회를 조직하는 정도가 된다.

라) 4차 남파: 1968년 1월 초순 - 1968년 1월 하순 (20일간)

안기부에 따르면 송창섭은 1968년 1월 초순 서울에 나타나 20여일간

머물며 주요 피의자들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송창섭이 1968년 1월 남파되었다는 것 역시 관련자의 자백 이외에는 아무런 물증이 없다. 송창섭의 남파와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가 된 것은 아마도 당시 한경희의 동향 지인으로 한경희 집에 같이 살며 집안일을 해 주던 윤순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안기부 내부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순자는 한경희의 집에 1959년부터 1968년까지 가정부로 있던 사람인데, “당시 송창섭 및 한경희 등에게 포섭되어 간첩방조 및 편의제공 혐의 농후”하다는 것이다.¹⁴⁷⁾ 안기부는 윤순자를 데려와 한경희의 주변에 대한 진술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55세 가량의 지관이 등장한다. 윤순자의 진술에서 이 지관을 제외하고는 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다. 안기부는 이 남성을 송창섭으로 설정하면서 수사를 불법구금 상태의 피의자들에게 고문 등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윤순자가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82년 2월 18일에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이 지관은 한경희가 데려왔는데, 1982년 7월 23일 진술에서는 이 지관은 사라지고 송창섭의 장남인 송기홍이 40-50세 쯤의 중년남자를 데려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윤순자는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낯선 남자를 데려왔다는 진술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불러주는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¹⁴⁸⁾ 송기홍의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자신이 장태 할아버지와 지관을 데려왔는데, 수사관들이 이 지관이 아버지라고 우기면서 무조건 때렸다고 한다.

한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송지섭의 아버지 송영범(일명 장태할아버지)은 안기부에서 한 진술에서 건축 일을 하던 자신이 한경희의 모래내 집을 증축해 준 일이 있는데, 그 무렵(196-년으로 연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경희의 집을 방문했는데 송창섭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 자고 왔다고 말했다. 이 진술은 장기간 불법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송창섭을

147) 복귀간첩 송창섭 연고선 수사계획.

148) 2006년 11월 8일 자택에서 행한 면담.

직접 목격하였다는 중요한 진술인데, 안기부는 이 중요한 진술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송치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안기부는 송창섭이 한경희의 집에서 주요 피의자들을 대부분 만난 것으로 사건을 짜 맞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몇가지 모순되는 점이 발견된다. 안기부가 송창섭이 일가친척들을 만난 것으로 설정한 날은 윤순자의 진술에서는 “한경희가 집안 가족들을 불러 무슨 잔치를 하던 날”로 윤순자가 기억하는 친척들은 “외사촌 올케 동생 남편인 김영택을 비롯하여 한영희와 그 집 아이들, 한용수 내외, 한옥희 내외와 그 집 아이들, 한광수 내외, 그리고 몇 사람 더”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그날 모인 친척들은 송씨 쪽 친척들이 아니라 한경희의 친정 쪽 친척들이었다. 이 당시 윤순자는 한경희가 송씨라면 이가 갈린다라고 하면서 송씨 쪽 친척들과 별 내왕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

송기복은 <항소이유서>에서 수사관이 “1967년 장태할아버지(송영범), 송창섭, 한경희, 송기복, 송기홍, 송기수가 남가좌동에서 만나다”라는 쪽지를 보여주며 시인하기를 강요하며 갖은 고문을 하여 이를 시인하였는데, 나중에는 장태할아버지는 동생 송기성으로, 1967년도는 1968년으로 변경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지섭은 자신이 한경희의 집에 가 본 것은 송창섭의 아버지인 송영주의 소상 제사 때 한 번 가봤다고 했는데, 이 때 한경희가 송창섭이 와 있다며 만나 볼 것을 권유했으나 시간이 늦어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고 송기섭과 송기준은 한경희의 집에 남아 송창섭을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송기섭과 송기준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

안기부는 1968년 초 송창섭이 남파되어 서울로 와서 일가친척들을 만난 것으로 설정했으나, 사돈지간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어색하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송씨 친척 위주의 모임으로 설정했다가 나중에 한씨 친척 중심으로 모임의 성격을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날의 모임에 장태 할아버지 송영범이나 송지섭, 송기준, 송기섭 등이 처음에는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삭제되는데, 송지섭의 기록은 교차확인 과정에서 제대로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68년 1월이라는 시기는 사건이 발생한 1982년에서 14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간첩죄의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이다. 즉 안기부가 주장하는 1차-3차 남파까지는 안기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송창섭을 만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피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반면, 1968년 이후부터는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안기부는 55세 가량의 지관 또는 40-50세 가량의 낮선 남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송창섭이 나타난 것으로 설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송창섭의 남파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안기부가 짜 맞추기 방식에 의해 작성한 수사기록은 너무나 많은 상호모순점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마) 5차 남파: 71.10초순 - 1중순(15일간)¹⁴⁹⁾

송창섭의 5차 남파 부분은 안기부의 수사와 발표에서 가장 영성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5차 남파와 관련해서 안기부는 송창섭의 남파 일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기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송창섭은 1971년 10월 초에 남파되어 중순까지 약 15일 간 남쪽에 체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송지섭의 안기부와 검찰 신문조서에는 송지섭이 배밭골 시장 공사현장에서 송창섭을 접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송지섭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자신이 배밭골 공사현장에서 일한 때에 송창섭과 접선한 것으로 무리하게 꾸미다가 발생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영성함 때문에 파기환송심과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송지섭이 1971년 3월과 10월 송창섭을 접선하고 무인포스트를 설정,

149) 안기부는 발표문에서 5차남파는 “위수령발동 및 국회의원선거상황 수집, 71.10초순~1중순(15일간)”으로 기재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관련자중 유일하게 송지섭만 안기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에서 71.3에 남파한 송창섭을 접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송창섭의 5차 남파는 71.3부터 71.10 7개월 간이거나, 남파 횟수가 총 9회가 되어야 한다.

정세동향을 수집 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안기부는 한광수가 1968년 1월 송창섭과 만났을 때 ‘김남섭’ 명의의 서신을 통해 연락하기로 약정했는데, 1971년 10월 초에 이 서신을 받고 송창섭과 접선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광수는 과거 환송심에서 1968년 1월 초순 송창섭과 만나 새로운 연락방법으로 김남섭 명의의 암호서신을 보내기로 한 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만일 1968년에 김남섭 명의의 암호서신을 보내기로 한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때 약정된 방식에 기초하여 1971년에 김남섭 명의의 서신을 보낸 사실 역시 성립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안기부가 주장하는 바, 송창섭이 5차 남파 당시 접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송지섭과 한광수의 혐의사실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

바) 6차 남파: 1972년 10월 초 - 1972년 10월 중순 (10일간)

안기부에 따르면 송창섭은 1972년 10월 초부터 1972년 10월 중순까지 약 10일 간 여섯 번 째 남파되어 송기섭, 한광수, 송기복 등과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송기복에 따르면 안기부 청주분실에서는 친정 아버지 송창섭이 4번 남파되었으니까 장녀라면 두 번은 만났을 것 아니냐며 추궁을 받다가. 서울 본부로 이송된 뒤 송창섭의 남파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송기복에게 송기섭과 함께 송창섭을 만났다는 진술을 강요하였는데, 송기복이 송기섭과의 대질을 요구하자 TV를 통해 송기섭이 수사관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송창섭을 만난 장소에 관하여 송창섭을 ‘사당동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토록 강요하였는데 당시 송기복은 아직 연희동에 살 때인지라 사당동이라 쓰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허위임을 밝힐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썼는데, 나중에 안기부 수사관이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당동이 아닌 연희동임을 알고 정정토록 했다고 한다. 실제로

청주분실의 4월 29일 자 보고서에는 송기섭이 송창섭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를 만난 곳이 ‘사당동’ 한경희의 집으로 되어 있으나, 공식 진술서 상에는 ‘모래네’ 한경희의 집으로 바뀌어 있다.

한편 송기섭은 당시 자신은 용산구청에서 영등포로 전보되어 구청이 아닌 신길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북에서 남파된 송창섭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연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했다. 송기섭에 따르면 안기부 수사관들이 다른 피의자들에게서는 1970년대에 송창섭과 접선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왜 없냐며 엄문하여 할 수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광수의 경우는 1972년의 접선에서도 역시 김남섭 명의의 편지를 이용하여 송창섭과 접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남섭 명의의 편지는 1968년에 처음 약정된 것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를 토대로 접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송창섭의 6차 남파에 대해서도 역시 피의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피의자들은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자백 내용을 부인할 뿐 아니라, 어떤 경로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사) 7차 남파: 1974년 4월 중순 - 1974년 4월 하순 (10일 간)

송창섭의 7차 남파와 관련된 안기부의 주장을 보면 관련인물로는 송기섭과 그의 사촌인 송오섭 두 사람이 나온다. 7차 남파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증거는 역시 전혀 없고, 이 두 사람의 자백만이 있을 뿐이다. 송지섭과 송오섭의 아버지인 송영범(장터 할아버지)은 사건 초기에 청주분실에 연행되었다가 10여일 만에 풀려나왔는데, 그 때 자식들을 모아 놓고 “이번 사건에 오섭이가 제일 의심을 받고 있으니 아마도 불려갈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한 바 있다.¹⁵⁰⁾ 안기부의 의견서에는 송오섭이

150) 송지섭에 대한 검찰의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1982년 7월 26일, 서울구치소); 송광섭에 대한 7회 공판조서 (1982년 11월 9일).

1960년 4월 송창섭이 남파되었을 때, 그로부터 입북 권유를 받았으나 입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송오섭이 당국의 의심을 받았다면 바로 이 입북권유 때문이며, 안기부의 인지보고를 보면 송지섭 등의 간첩 행위에 대한 첩보는 당국이 송오섭을 엄문하여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다. 피의자들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송오섭이 가장 많이 고문을 당하였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7차 남파에서 송창섭은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고 송기섭 만을 만나 누군가를 데리고 북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년 전에 송창섭으로부터 입북 권유를 받았으나 입북하지 않았던 송오섭이 이 대목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공소장을 보면 송기섭은 1974년 4월 송기섭의 사무실 부근인 전농4동 동사무소 앞 대포집에서 송오섭을 만나 송오섭에게 며칠 전 송창섭을 만났는데 누구를 데려갈 모양이라면서, “이북에 가면 호강도 시켜주고 돌아올 때 돈도 받고” 할 터이니 함께 이북에 갔다 오도록 하라고 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무리 4촌간이라지만, 별 내왕이 없던 처지에 수 년 만에 만나 14년 전 송창섭이 한 말을 떠올리며 입북을 권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작성된 안기부 내부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입북 권유는 송기섭이 송오섭에게 한 것이 아니고, 송기섭이 송오섭에게 “창섭형이 이북에 가자는데 어찌면 좋으냐”고 묻고, 송오섭은 “의향이 있으면 한번 가보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⁵¹⁾ 송기섭은 송창섭이 1960년 남파되었을 때 일가친척들을 만난 집의 주인으로서, 고위직은 아니지만 지방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송씨일가간첩단사건 관련자들 중에 그래도 ‘기밀’ 비슷한 것이라도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안기부는 송기섭을 간첩단 사건의 주요 인물로 보고 송기섭 본인과 다른

151) 서울충북중심 장기잠복고정간첩사건 간첩송지섭 등 일당 12명, 1982.5.18. 추가진술내용 보고.

피의자들에게 그의 입북을 추궁했으나, 송기섭이 공무원으로 출퇴근 사실이 확실하여 입북혐의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송기섭 대신 송오섭의 입북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송창섭의 남파가 1974년 4월로 설정된 것은 송기섭이 1974년 6월 15일 고혈압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송창섭, 송오섭 등과 접촉한 것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창섭의 7차 남파와 관련된 혐의 내용은 송기섭과 송오섭의 진술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송기섭이 법정 진술과 항소이유서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과 강요에 의해 허위자백 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아) 8차 남파: 1977년 2월 중순 - 1977년 2월 하순 (15일 간)

안기부가 주장하는 8차 남파는 ‘재남망책’이라는 한경희가 사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서, 안기부가 제시한 송창섭의 대남침투에서 마지막 남파에 해당한다. 8차 남파에 관하여 안기부가 제시하는 근거는 당시 한경희의 암달라상에서 일하던 김건주의 진술과 송기홍, 송기수 등 피의자들의 자백 뿐이다.

김건주는 수사 초기인 1982년 3월 안기부 청주분실에, 기소 직전인 1982년 5월 23일¹⁵²⁾ 안기부 서울 본부에 두차례 소환되어 1977년 2월 초 암달라상 사무실 부근 성보다방에서 한경희, 송기홍, 송기수 등이 키 170cm 가량의 50대 중년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1심 공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바 있다.

안기부는 이 중년 남자를 송창섭이라 추정하고 한경희, 송기홍, 송기수 등이 그와 회합하였다고 기소한 것이다. 김건주는 진실위와 행한 면담(2006년 12월 17일)에서 “수사관들이 가족들이 한 번에 모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977년 2월이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경희 사망 이전에

152) 김건주 서약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 진술하였고, 그 중년 남자에 대해서는 한경희가 OO 회사의 O부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나, 그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즉 앞의 4차 남파에서의 윤순자의 진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고인이 말한 신원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가족들이 만난 남자는 신원미상의 남자로, 다시 송창섭으로 바뀌어간 것이다. 또 안기부가 파악한 송창섭의 신원자료를 보면 송창섭은 5척 단신으로 되어 있어¹⁵³⁾ 1970년대의 기준으로 볼 때 작은 키가 결코 아닌 170cm 가량의 김건주가 보았다는 중년남자는 송창섭일 수 없다.

한편 1982년 5월 일자미상의 안기부 보고서¹⁵⁴⁾에 따르면 송기수는 자신의 생일인 1977년 3월 20일 대전에서 상경하여 송창섭과 접선하였는데, 송창섭이 송기수에게 골수염 치료를 위해 입북하라고 권유하자 “그렇게 할수 없다”고 강력히 거절하고, “한시라도 여기에 있기 싫다”며 각각 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안기부의 ‘업문’을 거쳐 공소장에 가서는 송기홍, 송기수 등은 아버지 송창섭을 만나 입북권유를 받고 아버지, 어머니 일을 도울 것을 적극 결의한 것으로 발전되었다.

또 1심 공판에서 송기수의 변호인들은 안기부가 송기수가 송창섭을 만난 것으로 설정한 1977년 2월 초순에 ‘우측 대퇴골 만성 골수염’으로 대전 성모병원에서 1977년 1월 18일 수술을 받고, 2월 16일까지 입원중이었음을 진단서를 통해 증명했다.¹⁵⁵⁾ 우측 대퇴골 만성 골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대전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한 다리로 서울에 올라가 명동의 다방에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다.

안기부의 1982년 5월 18일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송지섭, 송기섭, 송기준 등 3인은 1977년 12월 14일 종친계 전에 미리 만나 대화했는데,

153) 2007년 1월 5일 기무사로부터 입수한 “송창섭내사 자료”, 1972년 5월 12일, ‘치안국 기록 열람 결과 보고.

154) 서울충북중심 장기잠복고정간첩사건 간첩 송지섭 등 일당 12명, 5월. 일자미상의 보고서

155) 1심 9차 공판(82.11.9)에서 제출.

이 때 송기섭은 “금년 봄에 창섭형 왔을 때 단합된 단체를 만들어 유사시 봉기할 수 있도록 규합”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송지섭은 “우리에게도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라고 하였고 수고한다면서 식사와 술 한 잔 사주더라”고 말하여 송창섭과 접선한 사실을 발설하였고, 송기준은 “나에게는 민심동향과 사회가 혼란한 상태가 도래하면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보고서의 내용은 송지섭, 송기섭, 송기준 등 3인이 각각 1977년 3월 전후 송창섭과 접선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정작 공소장에서는 빠져 있다. 이는 안기부가 송창섭이 1977년 봄 8차 남파된 것으로 상정하면서 이 때 다른 피의자들과도 접선한 것으로 상정하고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었다가 공소유지에 무리라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송창섭의 8차 남파와 관련하여 안기부가 제시한 근거는 물증은 전혀 없고 피의자들의 자백 이외에는 김건주의 진술 뿐인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건주가 진술한 것은 한경희 등이 50대의 중년남자와 만났다는 것이지, 그가 남파간첩 송창섭이라는 것은 아니다. 송창섭의 8차 남파에 관한 안기부의 주장은 관련 피의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과 강요에 의해 허위자백 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볼 때 안기부는 송창섭이 모두 8차례 남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가능한 것은 오직 1960년의 2차 남파뿐이다. 이 사건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들이 1960년 4월에 송창섭을 1회 접촉한 것에 그친다면, 그들은 단순히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위반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국가보안법에 불고지죄가 신설된 것이 1960년 6월 10일의 4차 개정이므로, 피의자들이 송창섭을 만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불고지죄조차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안기부는 ‘송충건’이라는 공작명을 가진 충북출신의 월북자가 남파되었다는 제보 하나만으로 이를 송창섭으로 특정하고, 사망한 한경희를 남편에게 포섭된 간첩이라고 단정한 후, 송창섭이 남파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과 피의자들이 한경희를 만났거나 관련된 행적을 맞추어 한 사람이 고문으로 인해 시인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시인했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하느냐’하는 방식으로 강제 자백케 하고, 한경희의 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정부 윤순자와 암달라상 직원 김건주를 소환하여 한경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 내어 ‘낮선 사람’을 송창섭으로 몰고 갔으나, 안기부는 정작 사건의 단서가 된 송충건의 실체와 충북 지역의 지하당 건설 공작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진실위가 재조사하여 과장과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실체 자체를 인정한 중부지역당 사건의 경우, 남파 공작원들이 책임 구역을 갖고 지하당을 건설하였는데 송충건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당연히 충청도에서의 지하당 건설공작에 집중하였어야 할 것이나, 안기부가 송충건이라고 주장하는 송창섭의 8차에 걸친 남파의 행적 어디에도 충청도에서의 지하당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서울·충북 중심 고정간첩단사건’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가 충북 출신일 뿐, 관련자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자들로 충북의 지하당 건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송창섭의 8차 남파 내용은 고문과 장기구금으로 피의자들로부터 강제자백 받은 것일 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당시 안기부 내부 보고서상으로도 관련자들의 항소이유서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허위진술된 것이 명백하여 당시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수사는 박정수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흑룡공작철」에는 송씨일가간첩단사건 발표 후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송창섭의 1, 2차 남파만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철에 수록되어 있는 박정수의 송창섭에 관한 진술을 보면 송창섭은 1968년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탄광으로 쫓겨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은 앞서 간첩 사건의 유형 항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한 출신 공작원들에 의한 연고선 공작을 포기했으며, 노동당 연락부장 정경희는 남한 출신 공작원들을 남파할 때 연고선을 찾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송창섭이 1970년대에도 꾸준히 남파되어 가족과 친척들과 접촉하였다는 안기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정황과도 배치된다.

2) 한경희는 간첩인가?

가) 문제의 제기

송창섭의 처인 한경희는 안기부 발표문 등에 의하면 서울과 충북을 거점으로 암약한 송씨일가 간첩단에서 20년 간 재남 망책을 지낸 것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송씨일가 간첩단은 사실 송창섭과 한경희의 자녀인 송기복, 송기홍, 송기수, 한경희의 시가 친척인 송지섭(6촌 시숙), 송기준(5촌 시당질), 송기섭(6촌 시숙), 김춘순(송기섭 처), 친정 형제·친척인 한용수(동생), 한영희(동생), 한광수(4촌 오빠), 오금영(한광수 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송기복 3남매를 제외한다면 다른 송씨들과 한씨들은 서로 남남이나 다를 바 없는 사돈의 5촌, 6촌으로, 한경희는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데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이다. 이는 곧 한경희가 간첩이 아니라면 한경희를 연결고리(간첩단에서는 재남망책, 사회적으로는 사돈지간을 엮어 줄 수 있는 위치)로 하는 간첩단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희가 간첩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재검토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한경희가 사건 발생 5년 전인 1977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특이성은 안기부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창섭이나 한경희를 직접 수사하지 못했고, 송창섭의 남파, 송지섭, 송기준 등의 입북, 그리고 피의자 모두에 대해 간첩활동을 입증하는 물증을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28명을 간첩단으로 기소했다는 점이다. 한경희의 세 자녀와 친정 식구, 친척들은 물론이고, 송지섭, 송기섭, 송기준 등 시가쪽 친척들의 혐의 내용은 대부분 ‘재망남책’이라 발표된 한경희의 ‘지령’이나 한경희와의 ‘회합통신’, 또는 한경희에게 보내는 ‘보고’와 관련된 것이다. 만일 한경희가 ‘재남망책’ 간첩이 아니라면 안기부의 수사는 그 체계가 바닥부터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근거에 대한 재검토

(1) 송창섭에 의한 포섭 과정

안기부의 의견서에 따르면 한경희는 1957년 5월 중순 19:00에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81번지의 시집에서 간첩으로 남파된 남편 송창섭을 만나 그로부터

“그동안 혼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수고가 많다. 이제 곧 잘살 수 있는 날이 오게되니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지내라”

“이북은 전쟁피해를 완전히 복구해서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되었다”

“나는 잘지내고 있고 남조선 해방을 위해 일하고 있다”

“앞으로 내가 지시하는대로 남조선 해방 혁명투쟁에 앞장서라”

는 등의 말을 듣고 그에게

“하루빨리 적화통일이 되어 당신과 함께 살수 있는 날이 오도록 나도 당신이 하는 일을 같이 하겠어요”

라고 답하는 등 간첩으로 남파된 남편 송창섭에게 포섭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기부는 북에 있는 송창섭을 조사한 바 없고, 또 이미 사망한 한경희를 조사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런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조사관들이 날조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2) 전향간첩 박종덕의 진술 및 증언 (수사단계)

안기부와 검찰에서 작성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서와 신문조서는 모두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전제 하에, 한경희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그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꾸며져 있다. 이 때문에 안기부는 한경희 본인이 간첩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해야 했다.

참고인 중에서 한경희가 간첩이라고 직접 진술한 사람은 박종덕이다. 박종덕은 한경희의 동생인 한경수와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사이로, 1950년 월북하였다가 1957년 8월 남파되었다가 이듬해 4월 검거되어 간첩미수죄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1973년 8월에 만기출소했다.

박종덕은 1982년 6월 26일자 안기부 참고인 진술과 1982년 11월 23일 1심 재판의 증언에서 1957년 8월 남파 시 “모든 연락과 대남 사업실적 보고는 이미 남조선에서 한경희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안착신호와 과업실적을 잡지 <아리랑> 2월호에 우유로 점을 찍어 암서화(暗書化)하여 한경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는데, 북에서 한경희를 통하여 연락하라고 지시를 받고 남파되면서 한경희의 집 위치나 주소를 몰라서 신분노출 우려가 있음에도 고향에 가서 물어보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또 박종덕이 1958년 검거되어 조사받을 당시의 기록 어디에도 한경희를 통한 보고 운운한 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종덕은 2006년 11월 7일 진실위 면담에서 1958년 검거되어 조사받을 당시에 안착신호 및 보고 방법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불었다고 했는데, 한경희를 통해 보고한다는 내용은 그 당시의 기록에 존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박종덕은 2006년 11월 7일 진실위 면담에서 위와 같은 진술과 증언 내용은 다 거짓말로 “다리 사이에 뺏다 방망이 넣고” 때리는 등 안기부의 구타와 강요에 못견뎌 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박종덕의 진술처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경희를 간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 또다른 진술로는 이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내사단계였던 1982년 2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안기부 청주분실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윤순자의 진술이 있다.

(3) 가정부 윤순자의 진술

윤순자는 “한경희가 밤늦게 리시버를 쫓고 라디오를 듣”는 등 “지금 생각해 보니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¹⁵⁶⁾, 윤순자는 2006년 11월 8일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한경희가 밤늦게 리시버를 쫓고 라디오를 들었다거나 한경희를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으며, 안기부에서의 진술은 자신은 모르는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썼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순자가 한경희가 밤늦게 리시버를 쫓고 라디오를 들었다는 진술은 설혹 사실이었다 해도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확증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수사관들이 내사 단계에서 이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은 내사단계에서 아무런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안기부가 송씨일가가 간첩이라 맹신한 채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순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1983년 8월 23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안기부는 장기불법구금에 따라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받게 된다면 앞으로 간첩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초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된다. 안기부는 한편으로는 법원 상층부와 재판부에 압력을 가해 장기불법구금에도 불구하고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송씨일가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여 추송(追送) 준비를 하였다.¹⁵⁷⁾ 추송단계에서 안기부는 북에 있는 송창섭이나 이미 사망한 한경희처럼 본인이 안기부나 검찰의 추송 내용을 반박할 수 없는 이들에 관한 혐의 내용의 보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56) 복귀간첩 송창섭 연고선 수사계획, 1982년 2월 18일, 윤순자 자필 진술조서.

157) 본 보고서 ‘안기부의 수사착수 경위’ 및 ‘송창섭은 8회 남파되었는가?’ 부분 참조.

(4) 전향간첩 박종덕의 진술 및 증언 (추송단계)

안기부는 ‘재남망책’ 한경희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미 허위 자백을 받아낸 바 있는 검거간첩 박종덕을 다시 내세웠다. 안기부는 박종덕을 다시 안기부로 잡아다가, “1974년 출소 후 한경희에게 편지 하여 ‘사업에 실패한 제 처지로 누님을 찾아가면 누님 입장이 곤란하여 부담을 줄 것 같아 편지를 보낸다며’, ‘제 처지로 동업할 수는 없는지 회답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약 10여 일 후 한경희가 답장을 보내어 ‘매형이 지난 번 사업차 다녀갔다’며 ‘동생과 사업을 해도 좋을지 물어 보았더니 요즈음 경기도 나쁘고 또 동생은 본디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동업하다가는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조용히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단념하라’고 하였으며, 이 편지는 바로 부엌에서 소각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추송의 핵심 내용의 하나로 삼고, 박종덕은 1983년 11월 21일 과거환송심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다.

그러나 박종덕은 2006년 11월 7일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한경희에게 편지 보낸 사실도 없고, 답장 받은 적도 없고, 편지를 태운 적도 없다”며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내가 살려니까 그들(안기부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박종덕은 또 추송 이후 증언을 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안기부 수사관들이 법원으로 나오라고 해놓고 “그 때 얘기한대로 그대로 안하고 탄소리하면 또 들어간다”고 협박하여 “잘못했다가는 또 들어가는구나” 싶어 시키는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5) 한경희의 A-3 호출부호 문제

안기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1983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취지로 과거환송되자 안기부는 1984년 8월 1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과거환송심 12차 공판과정에서에서 한경희의 간첩

활동에 대한 증거라며 간첩통신지령카드와 기술신문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한경희의 A3 통신 호출부호가 ‘남산 42호’로 되어 있고, 안기부 수사관 통신분석 전문가라는 한OO도 1984년 8월 16일 법정에서 ‘남산 42호’가 한경희의 호출부호라고 증언하였다.

호출 부호 문제는 북으로부터의 지령 수수를 입증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간첩 여부를 판명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사항인데, 안기부는 100여일의 장기구금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송치내용에 넣지 못하다가,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다급하게 호출부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진실위가 확인한 안기부 내부 보고서(송치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음)¹⁵⁸⁾에 따르면 ‘남산 42호’는 한경희가 아니라 송지섭의 호출부호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송지섭은 양정중학교 30회 졸업생으로 송인동 12번지에 살고 있는 바, 30과 12를 더 한 42를 호출부호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호출부호가 만들어진 경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 호출부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식기록상에는 “낙산”¹⁵⁹⁾으로 되어 있고 공식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재파기환송심에서 한경희의 호출 부호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한경희는 안기부의 수사를 받기 훨씬 전에 사망하여 자신의 호출부호에 대해 진술한 바 없고, 설혹 피의자들이 간첩이라 하여도 재남망책인 한경희가 다른 간첩망원의 호출부호를 알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부조 직원이 상부인 망책의 호출부호를 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에 관한 안기부 내부자료나 수사기록 어디에도 ‘남산 42호’가 한경희의 호출부호라고 단정할만한 단서는 전혀 찾을 수

158) 서울충북중심 장기잠복고정간첩사건 간첩송지섭 등 일당 12명, 5월. 일자미상의 보고서.

159) 송지섭은 상고이유서에서 “낙산이라는 말에는 그저 좋다 하고 남산30호는 아니라고 하며 그런 부호는 수신기록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절 부터 위의 A-통신지령문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으로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저 좋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기록에 의해 ‘그것은 기다, 아니다’라고 맞추어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한경희의 호출부호로 ‘남산 42호’를 제시한 것이다.

다) 평 가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안기부가 한경희가 송씨일가 간첩단의 재남 망책이라며 제시한 주요 근거를 검토해 볼 때 ①한경희가 송창섭에게 포섭되는 장면을 묘사한 안기부의 <의견서>는 송창섭과 한경희가 모두 안기부에서 신문 받지 않았음에도 둘의 대화가 대화체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의 날조임이 분명하고, ②박종덕의 수사 초기의 진술 및 증언과 추송에서의 진술 및 증언은 모두 가혹행위 등에 의한 허위이며, ③윤순자의 내사 단계에서의 진술 역시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며 (설혹 이 진술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한경희가 간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④한경희의 호출부호라고 제시된 ‘남산 42호’에 대해서도 안기부의 수사기록과 내부자료 어디에도 한경희와 연관지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등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안기부의 입론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한경희가 간첩이 아니라면 한경희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한경희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피의자들은 모두 무고한 피해자라 아니할 수 없다.

안기부는 내사단계에서는 윤순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여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의심이 갈만한 진술을 끌어내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 착수 이후에는 박종덕으로부터 한경희가 1957년에 이미 간첩이었다는 허위진술을 받아내는 한편,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한경희를 중심으로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아내어 사건을 송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다시 박종덕을 내세워 한경희가 1974년 당시 간첩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만들어 냈으나 다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이 번에는 이미 단선된 호출부호 하나를 아무 근거 없이 한경희의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한경희를 간첩이라 단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불법감금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하였으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폭행, 협박, 위증 및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3) 송지섭 · 송기준의 입북여부

가) 송지섭의 입북 혐의

송지섭이 입북하였다는 시기는 1958년 7월 중순에서 8월초 사이의 20일 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무리 수사 당시에 시일이 25년 가까이 흘렀고, 이미 공소시효 경과했다고 하나 송지섭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사항이며, 아무런 물적 증거 없는 부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수사가 허술했다. 이러한 이유로 송지섭의 입북혐의는 재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¹⁶⁰⁾되었다.

입북이란 이른바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간첩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라 할 수 있다. 송씨일가간첩단사건에서 신문에 간첩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채 보도된 사람은 재북 간첩 송창섭을 제외하면 한경희, 송지섭, 송기준 등 8명인데 이 중 입북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송지섭과 송기준 둘 뿐이다. 그만큼 입북이란 간첩단 내에서도 아주 무거운 혐의이며, 한 개인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사실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혐의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경우, 이들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혐의라 할 수 있는 입북혐의에 대해 법원이 송기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송지섭에게는 입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160) 재파기환송심(6심) 재판부는 “제1사실 중 피고인이 1958.7경 북한지역으로 탈출하였다가 1958.8경 잠입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을 삭제하고,(이 부분에 관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전시 송기준의 무죄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경위로 자백되었다고 극력 변호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증거도 극히 정황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1) 송창섭 접선 및 목격 예상자 수사미비

㉠ 1957년 김정제 사건 관련자

송지섭은 송창섭이 1차 남파되었다가 복귀 시에 대동월북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안기부는 박혜영으로부터 송창섭이 김정제 사건 당시 경찰에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도망갔다는 진술을 받아내었는데, 만일 송창섭이 김정제 사건의 포위망에 들었다면 김정제 사건 당시에 송창섭의 행적이 나와 있어야하나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 안기부는 김정제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송창섭의 행적을 추궁하지도 않았다.

또 안기부는 이 사건을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간첩사건 보도자료 촬영지시>라는 문건에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에 자리잡은 송창섭의 생가와 그의 어머니가 경영하던 정미소를 간첩 송창섭이 장기 은신하였던 곳이라고 적시하여 보도하게 했으나, 안기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 바 없다. 안기부 작성 「의견서」의 한경희 항목에 보면 송창섭은 1957년 5월 중순 충북 음성 소재 본가에서 아내 한경희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송창섭이 고향에 은거하였다면 당연히 고향 일대에서 송창섭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안기부는 그와 관련한 조사를 전혀 한 바 없다.

공식기록상 송창섭은 1957년 5월부터 1958년 7월 까지 약 1년 2개월간 남한에 체류하면서 송지섭의 송인동 본가를 은신처로 하여 체류하였다고 되어 있다. 공식진술서 상에도 송인동 집은 송지섭의 아버지 송영범의 집으로 송영범은 ‘고향과 본가를 오가며 일을 하였고, 6촌 누나 송모씨(송기준의 고모)가 기거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동 기간 중 동소에서 송지섭이 송창섭을 만나 회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은 총 9회¹⁶¹⁾이고, ‘1958년 3월경부터

161) ① 57.5하순 15:00 동대문구 송인동 소재 송지섭가 ② 그 다음날 15:00 송인동 집 ③ 약 1주일후, 17:00 본인집 끝방④ 58.3 14:00 송인동 집 ⑤ 몇일 후 5.중순 19:00 송인동 본가 ⑥ 며칠 후 같은해 5.하순. 19:00 송인동 본가 ⑦ 같은해 6.중순 15:00 송인동 본가 ⑧ 다음날 13:00 송인동 본가 ⑨ 같은해 7. 중순 12:00 송인동 본가 끝방.

5월경까지 송인동 본가 뒤 청용사 뒷산에서 수시 회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전약속'에 의해 만난 것은 3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연히' 나 '약속 없이 들렀다가' 송창섭을 접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송창섭이 이 집에 은신하거나 송지섭과 여러 차례 만나며 무시로 드나 들었다면 이 집에 실제 거주했던 송영범과 송기준의 고모는 당연히 간첩 송창섭의 간첩행위를 방조했거나, 은신을 돕는 등 편의제공 했을 것이고, 최소한 남파된 송창섭을 보았을 것이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송지섭이 6차례나 우연히, 약속 없이 만났다면 실제 동소에 기거한 사람들이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송창섭의 남파와 은신에 대해 유력한 증인이자 은신을 방조한 혐의가 농후한 송지섭의 6촌 누이(송기준 고모)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송영범을 연행하여 조사하였으면서도 동사실에 대해서는 신문조서상에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¹⁶²⁾.

송지섭이 송창섭과 최초 접선 시 송기준의 고모는 부재중이었고 송지섭의 장녀 송수분, 차녀 송정순은 어렸다고 하나¹⁶³⁾ 송창섭이 만일 안기부 주장처럼 이 집에서 1년여를 은거하며 암약하였다면 당연히 송기준의 고모와 그 자녀에 대해 송창섭의 은거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하여 송창섭의 남파 및 은거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전혀 그런 흔적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㉔ 후생사업용 트럭과 운전병

송창섭이 송지섭을 대동 입북할 당시 안기부 자료에 의하면 송창섭은 송지섭이 사용하고 있던 후생사업용 군용트럭을 타고 월북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군사기밀 수집 당시 이 트럭을 이용하였다는데, 그렇다면 그

162) 아버지 송영범이 방면된 이후 송지섭이 연행되어 이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송영범의 진술상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부 송영범을 재소환하여 송창섭이 기거한 기간에 행적에 대해서 재조사 했어야 했다.

163)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병은 송창섭을 여러 번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전병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군용트럭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운행일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흔적이 없다.

당시 송지섭은 자신이 사용하던 후생사업용 군추력 (군 운전병이 운전)에 송창섭을 태우고 8사단과 미7사단 일대를 다니며 군부대를 살피게 하였으며, 이 운전병은 검문소에서 헌병에게 거짓으로 꾸며대어 무사히 검문소를 통과하게까지 하였고, 월북 당일인 1958년 7월 중순운전병에게 지시하여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며칠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였다는 것인 바, 이 운전병은 송창섭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월북 당일에도 보았으며, 송지섭이 20여일 이상 서울을 비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인인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렇게 중요한 참고인, 만일 안기부가 얻어낸 송지섭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어찌면 송창섭에게 포섭되어 그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을지도 모를 중요 혐의자라 할 수 있는 이 운전병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를 소환조사하지도 않았다.

만약 송창섭이 진실로 1957년에 납파되어 암약하다가 북으로 복귀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안기부는 증거를 찾거나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수사하지 않았고, 결국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는 수사 의지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안기부가 처음부터 송지섭, 송기섭 등의 진술이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㉔ 송지섭 입북 시기의 알리바이 문제

배시화(송지섭의 후처 배시룡의 언니)는 향소심 공판¹⁶⁴⁾에서 송지섭이 입북하였다는 1958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20일간이나 장기출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시기가 둘째 송미선의 출산 직전의 시기¹⁶⁵⁾로 본인이

164) 1983.4.13 향소심 2차 공판, 증인신문조서.

165) 1957.5.28 장남 송기호를 출산하고 다음해인 1958.8.20. 장녀 미선을 출산.

동생과 함께 기거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송지섭이 20일간 장기간 집을 비운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증언하였으나, 안기부는 이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하였다. 즉, 송지섭이 1958년 7-8월에 걸쳐 20일 이상 서울을 비웠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배시화는 안기부 수사관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현재 안기부에 남아 있는 자료에는 이런 진술이 남아 있지 않다. 배시화는 제부인 송지섭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사실을 당연히 안기부 수사관에게 말했을 것이기 때문에 안기부 수사관들이 이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면, 안기부가 송지섭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무시한 것이 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안기부는 송창섭을 목격하거나, 송지섭이 장장 20일간을 후생사업을 버려두고 부재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안기부는 송지섭의 후생사업을 지원해준 이OO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마땅했을 것이나 이에 대한 흔적이 없다. 송지섭은 이OO의 후원으로 군용트럭을 제공받아 후생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월북 시에도 이 트럭을 사용하였다. 안기부는 송지섭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 이OO가 “송지섭이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의 후생사업을 지원하였거나, 혹은 CID의 기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졌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송지섭의 월북이 사실이고 범증이 확실했다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한 흔적이 없고, 송지섭의 탈출·잠입지점에 대한 <실황조사서>만으로 송치한 결과 송지섭의 입북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안기부가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당연히 수사했어야 할 사항을 수사하지도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가장 중요한 입북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게 한 것은 역으로 송지섭의 월북내용이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된 내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입북 시 상황 및 행적

㉠ 주체사상 교육

송지섭은 안기부 및 검찰진술에서 입북 시 1958년 7월 중순경부터 7월 하순 경까지 10일동안 정치·사상교양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교양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이란 말이 이북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이후로 ‘주체’란 용어는 1955년 처음 사용되었으나, ‘주체사상’이란 말은 1964-65년경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방문시 처음 사용하였으며,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여 연구하고, 교육시킨 것은 1970년 (5차당 대회)대 이후의 일로 송지섭이 입북하였다는 시기에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관광지에 대한 진술의 변경

송지섭은 공식기록상 입북기간 동안 “대동강, 모란봉, 김일성 대학, 방직공장, 탁아소, 아파트, 집단농장, 진남포 제철제련소, 모란봉 시장, 을밀대, 모란봉 공원”등을 견학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안기부 내부 보고서¹⁶⁶⁾에는 “모란봉, 모란봉 대극장, 집단농장, 탁아소, 김일성대학, 혁명박물관, 평양시인민위원회, 평양백화점, 방직공장, 진남포 제련소”등을 관광시찰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혁명박물관은 1948년에 세워졌지만, 1961년 이전에는 국립 중앙해방투쟁박물관이라 불리어졌기 때문에 혁명박물관이란 이름은 사용되지 않았고, 일제 때 평양에 화신백화점이 있었는데 공산정권수립 후 자본주의 산물이라 없앴다가 1982년에 그 자리에 평양제일백화점을 지었으므로 1958년에 ‘평양백화점’을 보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마치 송지섭이 위와 같은 곳을 견학하였다고 진술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 안기부의 보고서 내용과 달리 공식수사서류에는 문제의

166) ‘서울충북중심 장기잠복고정간첩사건 간첩송지섭 등 일당 12명’ 5월 일자미상의 보고서.

‘혁명박물관’이나 ‘평양백화점’이 삭제되어 있는 바, 본 사건 수사시기가 1982년으로 당시 기준으로 유명한 곳을 기재하였다가, 이후 공식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북시기에 맞추어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㉔ 입북 날짜 확정 노력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면 해당 사실의 전·후 또는 특이한 사항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안기부는 송지섭의 입북 날짜를 특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1958년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의 20일간으로 지정하였다.

7월 중순 이후 입북해서 8월 사이에 복귀했다면 북한 사회에서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7.27 행사”나 “8.15행사” 어느 하나는 참관시켰을 것인 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나 진술내용이 일체 없는 것은 월북시 운전병이나 이00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자백에 의한 강요된 진술이기에 수사의 기본 상식을 무시한 채 추상적인 수준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송지섭의 장녀 송미선은 1958년 8월 20일 생으로 아이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북과 복귀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안기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㉕ 복귀루트의 문제

송지섭은 안기부 진술서에서 잠입 당시 복귀 경로에 대해 ‘먼동이 틀 무렵 남방한계선 부근에 도착’하여, ‘소로를 따라 30분 걸으니 차도(평소에 다니던 덕정리 부근)’였으며, ‘아침 5시 40분 경 전곡 방면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1시간 지나니 의정부 시내 정류장 도착’이 라고 진술하였으나, 잠입 복귀 경로와 시간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1958년 8월 10일 동두천시의 일출 시간은 5시 41분 47초, 시민박명 시간은 5시 13분 03초’, ‘1958년 8월

15일 동두천시의 일출 시간은 5시 46분 08초, 시민박명 시간은 5시 18분 03초’, ‘1958년 8월 20일 동두천시의 일출 시간은 5시 50분 20초, 시민박명 시간은 5시 22분 46초’이다.

안기부에서의 진술대로라면 8월 10일 경 복귀라 할 때, 일반인이 박명을 느끼는 시간인 5시 10분 경에 남방한계선에 도착하여 30분 간 이동 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버스 승차할 경우 오전 5시 40분 승차 가능하다.

그러나, 남방한계선에서도 5-20Km의 민통선 설정되어 있고 엄중한 감시가 있어 민통선 밖으로 나와야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인데, 덕정리는 동두천보다도 남쪽에 위치하고 남방한계선에서 최소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로, 1950년대의 도로사정상 차량을 이용해도 30분은 족히 걸릴 거리인데 남방한계선에서 30분 만에 도보로 덕정리에 도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송지섭은 환경희 사망 이후 간첩단의 총책을 승계하였다는 인물로서, 망원인 조카 송기준이 1968년 9월 입북한 것으로 의견서와 공소장이 작성된 사실과 견주어 볼 때, 입북한 사실조차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총책으로 임명되었는지 그 근거가 불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안기부 입장에서는 송지섭이 누구보다도 먼저 송창섭을 만나 그와 협조하고 입북하여 밀봉교육을 받은 정도는 되어야 환경희 사망 후 간첩단의 총책을 승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송지섭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한 달 이상 늦은 4월 12일에야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당시에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시기인 1968년에 입북한 것으로 혐의를 설정했던 송기준과는 달리, 송지섭의 입북은 공소시효가 이미 오래 전에 소멸된 시기이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송창섭과 연결된 것으로 하기 위해 일가친척들이 송창섭과 만나는 1960년 4월 이전에 입북한 것으로 설정했다. 안기부의 송지섭 입북에 대한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유는 송지섭이 늦게 등장한데다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시점의 일이기 때문에 안기부가 안이하게 접근한 탓으로 보인다.

나) 송기준의 입북혐의

송기준의 경우도 간첩의 입북이라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대해 서울 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에서부터 “안기부 수사원의 구치소방문 면담사실(안기부 수사관의 위협) 인정돼 검찰신문에서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도 피고인의 입북과 잠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안기부는 송기준이 한경희의 지령으로 1968년 9월 인천 만석동 부두에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북하여 7일간 밀봉교육을 받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후 10월 초순 다시 북한 공작선을 타고 만석동 부두로 귀환하였다고 발표했다. 1980년대 초반과 같은 상황에서 송기준의 입북 관련 혐의사실이 무죄판결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송기준이 일관되게 이 혐의를 부인했으며,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내용이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이다.

송기준은 1982년 7월 9일 서울구치소내에서 작성된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의자의 본건 피의사실에 관한 사법경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사실과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모두 같습니다만 제가 이북에 갔다왔다는 사실만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송기준이 안기부에서의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였다가, 송치 이후 구치소로 찾아온 안기부 수사관들이 검사 면전에서 부인하면 다시 안기부로 데려간다는 협박¹⁶⁷⁾ 속에서도 “월북 사실만은 종전의 허위자백을 부인하겠다는 비상한 각오 아래 그 부분을 부인”한 것이다.¹⁶⁸⁾ 그러나 송기준은 다시 안기부 수사관들의 협박을 받고 1982년 7월 12일 작성된 2회 신문조서부터는 다시 입북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후 공판과정에서 송기준은 다시 일관되게 입북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송기준은 9월 15-16일 경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1박을 한 후 다음날 오전 11시 경 한경희를 만나 여름 장사가

167) 당시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원의 구치소방문 면담사실(안기부 수사관의 위협) 인정돼 검찰신문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에 대한 변소는 일용 수궁”이 간다고 인정했다.

168) 변호사 홍성우 등이 작성한 피고인 송기준에 대한 <상고이유서>

끝나 9월이 가장 한가하며, 김만형과의 동업을 끝내게 되어 자금난에 허덕인다는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한경희는 이날 저녁 7시 경 송기준을 다시 만나 “네가 사업자금이 달려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아저씨한테 이야기 했더니 기회를 보아 너를 북에 보내라하더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북에 한번 다녀오너라. 아저씨도 만나보고 갔다오면 사업도 잘되도록 자금을 충분히 줄 것이다” 하며 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전 11시 경 송기준을 만나 그의 사정을 들은 한경희가 저녁 7시까지 사이에 북에 있는 송창섭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여 송기준의 입북 문제를 상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저씨가 너를 북에 보내라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아무리 북한이 신출귀몰한 수법을 쓴다 하더라도, 인천 만석동 부두에 버젓이 공작선을 대고 간첩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데려다 준다는 것 역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5공화국 하의 범원이었다 하더라도 인천 부두에 공작선을 대고 간첩을 태우고 이북으로 갔다가 다시 인천부두에 공작선을 대고 간첩을 내려주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니 송기준의 입북 부분에 무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안기부의 주장대로 송기준이 1960년 송창섭에게 포섭되어 검거될 때까지 20여년을 간첩으로 암약하였다면, 안기부는 송기준의 입북 시기를 왜 하필 1968년 9월 말 경으로 잡았을까? 박동운 사건에서 박동운의 입북 시기, 또 같은 송씨일가간첩단사건에서 송지섭의 입북 시기와 송기준의 입북 시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의 입북 시기가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시기라는 점이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최소 1주일 정도가 걸리는 입북을 하였다가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입북의 진위를 두고 공방이 있는 간첩 사건의 경우 직장을 옮기는 시기가 입북 시기로 자주 등장한다.

안기부는 이 일주일을 확보하기 위해 여름장사가 끝난 9월이 가장 한가한 시기라서 시간상 입북이 가능하고, 당시 동업해 오던 음료 대리점

사업을 혼자 경영하게 된 시기라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송기준 본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진술을 끌어냈고, 송기준의 4촌 동생으로 음료대리점에 같이 근무하던 이규현으로부터 동일한 증언을 받아냈다. 반면 송기준은 당시 고등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등 각종 서류에서 일관되게 9월은 여름 장사의 수금을 해야 하는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시기이고, 당시 동업 해제를 하긴 했으나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실위 면담에서는 자금난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서울 상도동 집(건평25평, 대지100평)을 팔고, 동생 송기홍한테 빌리고, 처를 통해 사채를 빌리고, 매부한테도 빌리고 하여 간신히 김만형의 돈을 빼주었다”며 자금난을 해결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송기준은 본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출소 후 이규현이 찾아와 무릎꿇고 울면서 안기부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과하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당시 송기준의 음료대리점에서 경리로 근무했던 김재철은 1982년 11월 30일, 12월 7일 두차례 재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안기부가 송기준이 입북하였다고 했던 기간 동안 송기준은 출장 등을 이유로 이틀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이 없으며, 9월은 매우 바쁜 시기이고, 당시 송기준이 집을 판 돈이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송기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안기부는 김재철이 송기준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자 그를 위증죄로 구속해 버렸다.¹⁶⁹⁾

한편 송기준의 변호인들은 송기준이 안기부가 입북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100여 평의 토지를 마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등기를 하였음을 입증했다. 송기준은 이 토지를 1968년 9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10월 4일 처 이금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가 사법서사에게 이전등기를 접수시킨 것은 10월 2일임이 토지등기부권리증 이면에 찍힌 사법서사 접수인에 나타나 있다.

169) 이에 대해서는 본서 p392 (다) '피의자측 증인(김재철)에 대한 위증처벌'에서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재철이 위증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인용하고 검찰 측의 증거와 증인을 배척하여 송기준의 입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재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두 번이나 내린 무죄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지만, 송기준의 입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기준의 입북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송기준이 검찰신문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은 안기부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하여 송기준을 면담한 것이 검찰신문에서의 허위자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김재철의 증언과 등기부 등본의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입북, 잠입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할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4) 허위자백 개요 및 증거조작

가) 허위 자백 개요

(1) ‘쪽지돌리기’ 를 통한 진술 맞추기

피의자 간에 상호 진술이 엇갈리거나 어떤 것이 진실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동원되는 것이 소위 ‘대질신문’이다. 그러나 당시 안기부에서는 관련자 상호간의 진술을 대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쪽지’에 의해서 상호 진술을 확인하였다.

김춘순은 면담에서 안기부에서 조사 받을 때 하얀 쪽지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얘기 안하냐’ 하여 혼이 났다면서 “하얀 쪽지 보면 난 지금도 무서워”라고 하여 관련자들의 기억 속에 “쪽지=허위진술강요”라는 등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쪽지에 의해서 허위진술이 강요된 대표적인 사례를 송기복의 항소 이유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송기복은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서 아버지 송창섭을 만났다는 진술이 변해가는 과정을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안기부의 수사보고와 존안 되어 있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와 같은 경로로 허위진술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기복은 안기부 수사관이 “송영범(장태할아버지)이 송창섭을 데리고 와 함께 만났다”는 쪽지를 보여주며 갖은 고문을 동원하여 자백하기를 강요하여 이를 시인하였는데, 나중에는 함께 만났다는 장태할아버지는 빠지고 동생 송기성이 함께 만난 것으로 되었고, 그 시기도 1967년에서 1968년으로 변경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과 관련된 당시 안기부 내부 보고서¹⁷⁰⁾에는 송기복이 “부 송창섭, 모 한경희, 남동생 송기수, 재종조부 송영범 등과 함께 회합, 부 송창섭, 모 한경희, 재종조부 송영범은 새벽에 뒷문으로 빠져나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존안 되어 있는 ‘송영범’¹⁷¹⁾의 자필 진술서에도 함께 송창섭을 만났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존안 되어 있는 송영섭¹⁷²⁾의 진술서에는 처제 송기성이 안기부에

170) 청주분실, 충북 지하당 지도부 형성 고정간첩단사건 수사상황보고(1982.4.29).

171) 송영범 진술조서, 제 1피의자 송지섭의 아버지로, 송지섭이 연행되기 전인 1982년 3월중순경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방면되었다. 송영범의 자필 진술서 원문을 살펴보면 남가좌동 한경희 집에 방문한 기간과 횡수에 대해 “내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대략 말하자면 그 시기가 19-부터 19-(정확한 연도부분 블랭크) 경 까지”, “여섯 번째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그때 마침 깜짝 놀랜 것이 이복에 있는 송창섭이가 집에 와서 하루밤 자고 온 일이 있습니다.”, 송창섭 만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질문에 “내가 그때 시간이 저녁때였는데 창섭처의 안내를 받아 안방들어가니 뜻밖에도 복에 있는 줄만 알았던 송창섭이가 몇 10년 만에 만나게 되어 서로가 말문이 막혀서 잠시 동안 말을 못하고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가고 물었더니 창섭은 잘 지냈습니다. 대답하고 아저씨와 식구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안부인사를 나눈 후 창섭, 그의 처 아이들과 한자리에 같이 앉아서 나는 창섭에게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동안 애미에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당국에 자수하여 가족들과 같이 여기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라고 강력히 권유하였던바 창섭이 놀이 하는 말이 아저씨 내가 이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남북통일이 되어 살기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세요 하고 나의 자수권유를 반대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기홍, 기수도 같이 아버지에게 자수하여 이곳에서 같이 살자고 권유하였습시다마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섭이 부부만 그 방에 남겨두고 나는 기홍, 기수를 다리고 옆방으로 기복이는 제방으로 가서 잤으며 이튿날 아침 일찍이 창섭부부와 같이 집을 나와서 나는 집으로 가고 그들은 딴 곳으로 같이 감으로 써 헤어졌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172) 송기복의 남편으로 사건 당시 현역공군중령이었으며, 1982년 9월 한달 동안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동 진술서가 현재 존안되어 있다. 송영섭의 진술서를 보면 처 송기복이 연행된 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알수 있다.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나와 ‘자신은 아버지를 본적도 없는데 오빠 송기수가 만나지 않았느냐’고 하여 할 수 없이 만났다고 하고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송기성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그때 오빠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송창섭을 만났다는 진술은 빠지고 안 만났다는 사람은 만난 것으로 진술서를 작성케 하여 송치하였는 바, 당시 안기부가 송창섭을 만났다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방면할 이유가 없다고 봤을 때 위 진술은 송기복의 주장대로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허위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타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보여주며 강요하기

한 피의자의 자필, 혹은 진술하는 녹화 테이프를 보여주며 다른 피의자에게 똑같은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송기준은 항소이유서에서 수사관들이 어릴 때 보고 한번도 보지 못한 송창섭을 만났다면 연일 고문하면서 만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여 대질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기준아 보아라. 4.19때 이북에 있는 시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에 너도 오지 않았느냐. 아줌마 김춘순’ 이라는 김춘순의 자필 메모쪽지를 보여주며 고문하여 수사관들이 부르는 대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소 김춘순은 7촌 숙모이긴 하나 자신보다 한살 아래여서 하대하지 않아 김춘순 자의로 쓴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안기부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송기준은 송창섭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¹⁷³⁾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 달 후인 4월 29일 보고서에서 아버지 송동섭과 함께 만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과정으로 허위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다¹⁷⁴⁾.

173) 1982.3.31. 청주분실. 재북간첩 송창섭 연고선 수사상황. (원문) 60.4.19 직후 삼양사 근무 당시 송기섭 부 송영홍의 전화연락 받고 그 다음날 신당동 송기섭가를 방문하였으나 송창섭 외출중으로 접선치 못하였다고 극구 주장.

송기복은 항소이유서에서 서울 본부로 이송 후에 송창섭을 접선하였다는 횃수가 늘어났는데, 안기부 수사관이 TV로 “송창섭을 사당동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송기섭과 수사관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송창섭, 송기섭을 함께 만났다고 시인하기를 강요하였는데, 그때는 사당동 살 때가 아니라 나중에 밝히려는 목적으로 수사관 요구대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엔 주민등록표를 보고 연희동으로 바꾸어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4월 29일 보고서까지는 1972년에 송기섭, 한광수만 송창섭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서울본부로 이송 후인 5월 18일 추가진술 보고서에서부터 송기복이 송기섭과 함께 송창섭을 만났다고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송기섭은 송창섭을 ‘사당동’으로 안내¹⁷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송기복의 항소이유서와 같은 경로로 허위자백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3) 공식기록에서 삭제된 자백

당시 안기부는 관련자들에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를 동원하여 강제 자백케 하였다가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정황에 맞추어 공식진술서 작성 시에 삭제시키기도 하였다.

㉔ 입북진술

본 사건 피고인 중 공소사실에 입북혐의가 포함된 사람은 송지섭, 송기준 두사람 뿐이다. 그런데, 송기복, 송기홍, 송기수, 송광섭 등은 진실 위와의 면담에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연일 고문하며 입북여부를 추궁

174) 송기준의 진술과 관련하여, 과거환송심 1983.11.7.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 김00은 송기준이 서울로 이송된 후 수사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 송기준은 범행사실을 처음부터 순순히 자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안기부 내부 보고서 상 송기준은 4월 29일 청주분실보고서까지는 ‘간첩방조혐의자’로 분류되었다가, 1982년 5월 28일 수사계획부터 ‘입북, 간첩’으로 보고되어 있어 처음부터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증언은 고문사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증언으로 판단된다.

175) 1982.4.29. 청주분실. 주요피의자별 활동사항. 신길2동 사무장 재직시 송창섭의 전화연락 받고 제과점 접선, 사당동 33-21 소재 한경희집으로 안내회합.

당하여 ‘시인하지 않으면 (고문이) 끝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갔다 왔다’고 시인하였고, 송기복은 그와 관련한 진술서까지 작성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안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안기부는 주요관련자들에게 입북여부를 추궁하였고,¹⁷⁶⁾ 이에 관한 관련자들의 항소·상고 이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련자들에게 일단 ‘입북’의 혐의를 두고 고문을 동원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낸 후, 입북한 정황과 관련자들의 여건 등을 고려 공식 진술서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송기복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북한에 갔다 온 것을 자백하라는 고문에 못 이겨 갔다 왔다고 진술했더니 어디로 갔느냐고 해서 어떻게 입북을 하는지 경로를 몰라 판문점을 통해 갔다고 진술하였더니 “이 년아, 네가 뭘 데 판문점으로 가냐”며 몹시 맞았고,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갔다고 말했다가 또 몹시 맞아 나중에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라고 수사관들에게 애원했다고 울먹였다.

㉔ 송창섭을 접선하였다는 자백

공식기록 외에 ‘송창섭을 만났다’고 자백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기록에서 삭제된 내용도 있다. 송기섭, 송기준 송기섭 3인이 종친계시 별도 회합을 갖고 1977년 3월 송창섭을 만난 사실을 상호 발설하는 내용¹⁷⁷⁾이다. 공식기록상 1977년 3월에 송창섭을 접선한 사람은 한경희와

176) 1982.5.28. 남파북귀 간첩 송창섭 관련혐의자 추가수사계획(2차), 가. 기 연행자 수사기간 연장 및 여죄추궁(12명)사항, 한광수, 송기복, 송기홍, 송기수에 대한 여죄추궁 사항에 “입북 여부”라고 기재.

177) 1982.5.18. 추가진술내용 보고, 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7.12.4 송양섭가 송씨 종친계, 회합 1시간 전에 3인 별도 회합

- 송기섭 : 금년분(77.3 송창섭 8차 남파)에 창섭형 왔을 때 단합된 단체를 만들어 유사시 봉기할 수 있도록 규합강조했다.
- 송지섭 : 우리에게도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중요성을 다시 인식 하라고 하였고 수고한다면서 식사와 술한잔 사주더라 며 송창섭 접선사실 발설
- 송기준 : 나에게는 민심동향과 사회가 혼란한 상태가 도래하면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갔 습니다 송창섭 접선사실 발설.
- 송기섭 :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4~5년 내에 철수한다고 했고, 11월에는 이리역 폭발사고가 있었고 이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기에 포섭 대상자에게 주지시켜 호감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라고 하는 등 포섭방법 제시

두 아들, 그리고 송기섭 뿐이며, 이 내용은 공식기록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는 공소내용상 1960년에 송창섭을 만난 이후에는 한번도 송창섭을 만나지 못하고 한경희를 통해서 대북보고 및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는 송기준이 송창섭을 만났다고 발설하는 내용으로 당시 안기부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공식기록에서 삭제되는데, 이는 관련자들에게 계속 입북혐의를 추궁하던 중 1982.5 중순 이후 송기준이 입북혐의를 자백¹⁷⁸⁾하면서 삭제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기록상 송기준은 7일간의 밀봉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한경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고민하다가 1971년 한경희에게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1977년 송창섭이 송기준을 만나 ‘지시’하고 갔다는 것은 내용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식 진술서 작성 시에 삭제 된 것이다.

(4) 재남망책을 승계하였다는 진술

안기부 발표문과 관련자들에게 송기섭은 한경희 사망 이후 재남망책을 승계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공식 수사기록 어디에도 송기섭이 재남망책으로 활동한 내용이 없는데 이와 관련된 ‘자백’이 안기부 내부 보고서¹⁷⁹⁾에 기록되어 있다. 공식기록상 이 간첩단은 1977년 한경희의 사망 이후 1982년 사건발생 전까지 거의 와해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간첩단으로써 한 일이 없다. 그런데 위 보고서의 내용은 ‘와해된 조직 정비하라’는 지령과 이를 공유하고 결의하였다는 내용¹⁸⁰⁾으로

178) 송기준은 청주분실의 보고서에서부터 줄곧 ‘간첩방조’로 보고 되고 있다가, 1982년 5월 28일 수사계획에서부터 추궁사항에 ‘입북상황’이 기재되어 있어 동 보고서가 작성되기 직전에 입북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179) 1982.5.14. 추가진술내용 보고, 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81.9.16. 01:00경 천호동 자가 골방, 북괴평양방송(노들강변 경음악 1절 나온후 서울에 계신 111호 손님에게 드리는 편지)A-3 지령 수신, “한경희 사망이후 각 세포가 이탈,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규합, 정비 강화하라”, A-3 지령 수신후 난수표와 기본암호표를 소각, 75.9~81.9 간 6회 A-3 지령 수신했다고 진술(수신지령 내용 추궁중).

사건발생 직전까지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중요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공식기록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위 보고서 상에만 존재하는 ‘호출부호 111’의 문제¹⁸¹⁾로 인해 삭제된 것으로 판단되며, 송기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 자백 된 내용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나) 참고인(박종덕, 윤순자)에 대한 허위진술 개요 및 위증교사

조작의혹이 제기된 간첩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는 없고, 피의자들 간의 진술이 상호 보강증거가 되도록 맞추거나 피의자의 혐의를 ‘정황적’으로 입증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사건 송치단계에서 안기부가 제시된 핵심 참고인¹⁸²⁾은 박종덕, 윤순자, 김만형, 이규현¹⁸³⁾, 김건주이다. 이들은 각각 한경희, 송기준, 송기섭의 간첩혐의를 직·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윤순자를 제외하고 모두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였다.

박종덕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안기부 청주본실과 서울 본부로 두차례 불려가 가혹행위를 당했고 ‘살기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180) 1982. 5. 14 추가진술내용 보고, 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81.9.하순 송기섭에게 전화로 “내가 너와 기준이에게 이야기할것이 있으니 기준이에게 연락하여 3일후 12:00 너(기섭)의 집에서 만나자”, 송기섭가에서 3인이 회합. 위의 지령내용 설명. 한경희 생전과 마찬가지로 지령에 충실하고 결사항전 결의. 송기섭, 송기준 “계속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하겠습니다”대답 (송기섭, 송기준 부인).

181) A-3 관련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함.

182) 여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거나, ‘어디에 갔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들의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183) 안기부는 송기준의 입북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만형(82.6.19), 이규현(82.6.27)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케 하였다. 양인은 진실위 조사개시 전에 사망하여 면담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김만형은 변호인의 반대질문에 안기부에서의 진술이 다소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였고, 이규현도 안기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송기준이 서울에 상경하여 머문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서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송기준은 진실위와의 면담시 본인이 출소한 직후 이규현이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면서 ‘안기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였던 바, 김만형, 이규현 양인도 안기부가 요구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성해 주었다’고 하였고, 윤순자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박종덕은 한경희의 간첩혐의를 직접적으로 증언한 유일한 사람으로, 두 차례¹⁸⁴⁾나 안기부에서 진술서를 작성, 두 차례 법정 증언할 정도로 당시 안기부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참고인이다. 본 사건은 사망한 한경희가 재남망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바, 사망한 한경희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핵심 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동원하여 허위자백케 하고 협박을 통해 동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케 한 행위으로써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 피의자측 증인(김재철)에 대한 위증처벌

김재철은 ‘송기준이 입북하였다는 1968년 9월 송기준은 장기간 외부 출타한 사실이 없으며, 그 기간동안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접촉하였다’고 두 차례 증언하여 입북혐의가 최종 무죄판결¹⁸⁵⁾을 받는 데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안기부는 김재철을 연행 위증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증죄로 구속¹⁸⁶⁾시키기에 이른다.

같은 시기 송기준의 처 이금수도 안기부에서 김재철의 위증에 관한 조사를 받고 1982년 12월 16일자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국정원이

184) 박종덕의 1차 진술은 ‘57년 남파시 한경희를 통해 대북보고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1982년 6월 26일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인 진술내용은 1982년 4월 29일 안기부 청주분실의 보고서에서 이미 같은 내용이 보고 되고 있어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서의 날짜 기재는 송치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차 진술은 ‘출소후에 한경희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한경희로부터 매형에게 물어보니 사업에 실패하였으니 단념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1983년 9월 7일 작성되었다.

185) 재파기환송심(6심) 재판부는 ‘원심증인 김재철의 증언과 등기부 등본¹⁾ 3통에 의하면 당시 사업에 분망하였고 생사를 걸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으며 장기간 출타할 여가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송기준의 입북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김재철 위증죄 처벌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186) 김재철 출장 수사결과 보고, 조사기간 82.12.14~12.16 82.12.16 김재철 신병 서울로 연행, 12.17 공안부 임OO에게 신병 인계, 12.20 위증죄로 구속.

보유하고 있는 이금수의 진술서에는 이금수가 김재철에게 증언을 부탁한 상황과 김재철과 홍성우 변호사가 만나 법정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대화하는 내용¹⁸⁷⁾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김재철의 법정증언이 홍성우 변호사의 유도대로 증언 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¹⁸⁸⁾하고 있다.

소위 ‘간첩’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김재철의 사례는 송기섭이 탄원서에서 호소한 바와 같이 피의자들의 무죄 입증을 위해 증언해줘야 할 주변 사람들마저도 증인으로 증언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라) A-3 지령 수신 문제

본 사건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확실한 물증은 없고 오직 정황증거에 불과한 여러 수사보고서와 피의자들의 자백 진술 밖에 없다. 물증 없는 간첩 사건에서 ‘간첩통신지령카드’가 확실한 증거였다면 송치단계에서 제출했어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기부는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1차 파기환송심(4심)에서 뒤늦게 피의자들의 것이라며 ‘간첩통신지령카드 4매’를 증거로 제출하고, 재파기환송심(6심)

187) 이금수 진술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홍성우 변호사와 김재철과의 1차 면담
 - 홍변호사(이하 홍): 68.9.14 돈을 그날로 전부 다 주고 받고 했는가?
 - 김재철(이하 김) : 돈은 그 이전에 이미 거래가 끝났고 다만 잔금이 남아서 나의 봉급과 퇴직금 5만원을 나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산서를 작성했다,
 - 홍: 그러면 그 후 부산에 며칠가량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왔느냐
 - 김 : 일주일 가량이거나 적어도 4,5일은 더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왔다, 그리고 그때 매일 사무실에서 송기준을 보았다.
 - 홍: 그러면 사실대로 법정에서 얘기해 달라.
- 2차 면담시
 - 홍 : 68.9.14 송기준과 계산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부산에 머물러 있었느냐,
 - 김: 먼저 공판에 다녀간 뒤에 집에 가서 생각하니 계산이 끝나고 3일 뒤 송기준이 송별회를 해주어 먹고 그때 집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하느라고 2,3일 더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다. 약 7일정도 있는 동안 부산에서 송기준을 사무실에서 매일 만났다.
 - 홍: 재판에서 당신이 그대로 대답하라

188) 김재철 진술에 관해서는 송기준 입북혐의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

에서는 이에 더하여 통신분석 전문가라는 전·현직 수사기관원의 분석표 및 증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재파기환송심(6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다.¹⁸⁹⁾

A-3지령 수신에 관한 쟁점은 수사관들이 먼저 존안카드에 의하여 그것이 피의자들의 것이라고 추궁하여 허위자백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피의자들이 호출부호 등 A-3 청취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자백을 하여 수사관이 그 자백에 의하여 수많은 통신카드 중에서 찾아냈는가에 있다.

그런데, 재파기환송심(6심)에서 안기부는 A-3지령통신과 관련하여 전·현직 수사기관원 및 검거간첩들의 진술 및 증언을 근거로 제출된 간첩통신지령카드가 피의자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사관이 간첩지령 통신카드를 일방적으로 특정 관련자들의 것이라고 할 경우 나중에 같은 통신망이 출현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들의 경우 각각의 통신망이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산이나 강 이름들이고, 호출부호의 숫자와 수신일자가 관련자들의 양·음력 생일 또는 원적지·주소지의 번지수와 관련돼 있어 같은 간첩망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재파기환송심(6심) 증인으로 출석한 한OO은 1982년 3월 30일 청주 분실 조OO 수사과장이 전화하여 ‘속리산 100단위가 있느냐’라고 하기에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속리산114”, “한강 125”가 있느냐고 하기에 보관중인 존안카드에서 확인한 후, 1982년 4월 1일부터 5일까지 송기섭 등 5인을 기술신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OO의 증언은 A-3에 관한 피의자들이 임의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계획된 진술로, 1982년 3월 31일자 안기부 청주

189) 1차 파기환송심 A-3 통신지령카드 검증조서(1983.11.24)에도 “동 4매의 카드가 피고인 송기섭, 동 송기섭, 동 한광수와 한경희 등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기록 카드만 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적고 있어 지령카드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증거가치가 없다. 하물며 간첩통신지령카드를 ‘분석’한 진술내용은 수사관의 의견에 불과할 뿐인데 ‘새로운 증거’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재판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당시 안기부의 법원에 대한 압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당시 안기부가 본 사건의 재판과정에 개입한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분실의 보고서에 이미 ‘속리산114호’의 출현 시기, 횡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에서,¹⁹⁰⁾ 조OO 과장이 호출부호를 특정하지 못하고 확인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기술신문을 하였다는 동인의 진술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조OO과장이 피의자들의 자백에 따라 호출부호만 확인한 상태였다면 동 보고서 상에 “1961. 10. 10 ~ 1966. 10. 10 간 8회 583조 수신”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OO 등 통신전문 수사기관원들은 사망한 한경희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산 42호”를 한경희의 호출부호라고 단정, 그 경위에 대해 한경희의 장녀 송기복의 출생년도(1942년생)에서 적용하였다고 분석, 증언하였다. 그러나, 1982년 5월 일자미상의 보고서¹⁹¹⁾에 따르면 “남산42호”는 송지섭이 월북하여 밀봉교육시 부여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호출부호 숫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송지섭의 양정중 학교 졸업회수 30과 송인동 집번지 12를 합한 수”¹⁹²⁾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각 개개인에게 부여된 호출부호의 숫자마저도 어떤 식으로든 사후적으로 조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라 아니할 수 없다.

안기부 진술서나 검찰진술에는 1971년 10월초 송창섭으로부터 새로운 호출부호를 지정받았다는 진술이 없다. 송창섭으로부터 ‘삼양동 311번 지니 숫자와 관련된 것을 지정해 줄 것이다’라고 들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새로운 호출부호의 지정이나 새로운 난수표도 없이 1975.9.16. “동무의 건강회복을 기원한다. 앞으로 열심히 투쟁하라. 그간 사업보고 바람”, 1979. 9.16. “동무의 건투를 빈다. 최근 신민당 총재 김영삼과 관련 농성하고 있는 학원가 데모상황을 수집보고하라”라는 지령수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0) 1982.3.31. 청주대공분실. 재북간첩 송창섭 연고선 수사상황. “속리산 114호, 61년부터 매해 10월 10일 수신. 114호는 본명 생년월일 32. 1. 14. 수신월일 10. 10은 송창섭의 생년월일 20. 10. 10로 약정. 61. 10. 10 ~ 66. 10. 10 간 8회 583 수신”.

191) 1982. 5. 서울충북중심 장기잠복고정간첩사건 간첩송지섭 등 일당 12명.

192) 서울·충북중심 장기잠복 고정간첩사건.

돌연 검찰진술에서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다소의 추궁을 받고 마치 전문을 수신 해독한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안기부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당시 안기부의 1982년 5월 14일자 추가진술 내용보고에 따르면 송지섭은 1971년 10월초 송창섭을 접선하였을 때 변경된 호출부호를 부여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호출부호 111호”¹⁹³⁾이다. 동 보고서에는 변경된 호출부호 뿐만 아니라 “1975년 9월부터 1981년 9월까지 6회 지령전문 수신”했고, “1981년 9월 16일. ‘한경희 사망 이후 각 세포가 이탈,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규합, 정비 강화하라’라는 내용으로 수신” 심지어 송기섭, 송기준 등을 만나 수신내용을 공유하고 결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호출부호 111호”는 공식기록이나 추송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상을 보았을 때 “호출부호 111호”는 삼양동 번지수와 관련지어 송창섭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지정되었다가, “호출부호 111호”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¹⁹⁴⁾에 의해 공식 수사기록에서 삭제 시켰으나, 중간에 삽입된 수신기록 진술을 미처 삭제시키지 못함으로써 전후 내용에 심각한 모순이 발생 - 이 내용 대로라면 호출부호와 난수표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지령을 수신한 것이 되어버린다 - 하자 검찰진술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간첩통신지령카드’라는 물증을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급조하여 제출한 점,

193) 위 자료, p1114.

194) 이 같이 된 이유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송지섭이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호출부호 ‘111호’에 대한 간첩지령통신카드와 암호표가 없었을 경우인데, 이것은 그동안 많은 것을 ‘자백’한 것으로 돼 있는 송지섭에게 다른 한 가지를 더 허위 진술할 이유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안기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강요 문제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호출부호 ‘111호’의 간첩지령통신카드가 있었으나 - 호출부호를 변경하고 4년이 지나고 수신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기간과 회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이것이 송지섭의 것이라는 확증을 잡지 못한 이유와 제출된 간첩지령통신카드 모두가 이미 단선된 통신조직들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982.9 이후에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그리고 실제로 1984.7.10 추송하기 전 출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안기부가 이미 출현했거나 현재 출현하고 있는 호출부호들에 맞춰 A-3지령전문 수신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강요한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통신전문 수사관 한OO의 진술의 문제, “남산42호”의 문제에서 알 수 있는바, 호출부호의 숫자가 수사관의 임의로 조합이 가능한 점, “호출부호 111호”가 공식기록에서 삭제된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련자들의 간첩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간첩통신 지령카드가 각각 모두 관련자들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장기불법구금과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을 고려했을 때 A-3지령수신에 관한 문제는 안기부가 이미 존재하는 단선된 통신조직의 간첩통신지령카드에 맞춰 피의자들의 진술을 유도, 강요하여 허위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마) 파기환송심 증언의 문제

안기부는 피의자 상호간의 보강 진술과 윤순자, 김건주의 참고인 진술까지 확보하여 송치하였다가, 예기치 않은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직면하였다. 파기환송심을 대비¹⁹⁵⁾하여 법원 상층부를 접촉함과 동시에 송창섭의 남파와 한경희의 간첩활동 입증을 위한 보강증거 제시에 노력하는데 그 결과물이 박정수, 박혜영, 박종덕¹⁹⁶⁾, 황보삼순의 ‘들었다’ 진술이다.

박정수, 박혜영, 황보삼순이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원진술인이 각각 재북 중이며 사망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박정수는 검거 간첩으로서 그 신분상 제약이 있다는 점과, 박혜영은 한경희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경쟁관계에 있어 사망한 한경희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정수¹⁹⁷⁾는 이 사건의 최초의 제보자이고 박혜영, 황보삼순은 이 사건의 내사단계

195) 안기부가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재판과정에 개입한 내용은 이후 관련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96) 박종덕 진술의 문제점은 p369, p371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197) 동인의 진술에 관한 문제점은 본 보고서 IV-1 안기부의 수사착수 경위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에서부터 찾아가 조사하였거나, 초기 안기부 청주분실에서부터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안기부 내부 기록상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황보삼순은 안기부 진술조서에서는 ‘죽은 박노영으로부터 1968년경 송창섭이 남파되어 한경희 모래내 집에서 자고 갔다고 들었다’고 분명히 기재하였다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집요한 질문에 ‘1960년에 신문에 난 얘기를 왜 또하는가 생각했다’고 하였다가 자신의 안기부 진술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박혜영은 안기부 진술서에는 없는 내용(1963년 이후로 몇 번 더 내려왔다고 들었는가)을 질문하자 ‘그 후로도 4,5차례 더 왔다 갔다고 들었다’¹⁹⁸⁾고 하여 동인이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들은 것인지 의심케 한다.

특히, 항소심(2심)전 보고서¹⁹⁹⁾에는 내사과정에서 박종덕, 박혜영, 박정수의 진술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면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과거환송심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보다 극히 적은 내용이거나 상이하기까지 하다.

박종덕이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밝힌 바대로 두 차례의 진술 및 증언이 안기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및 협박에 의해 진술된 내용이라는 점, 박정수의 진술내용이 흑룡공작철에 기재된 첩보내용과 다른 점을 감안했을 때, 박혜영, 황보삼순의 진술도 당시 안기부가 유죄판결 유도를 위해 실제 알고 있는 내용보다 확대 또는 허위진술케 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198) 공소내용상 송창섭은 1963년 이후 4,5차례(68년, 71년, 72년, 74년, 77년) 더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혜영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박노영이 1968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동인의 진술대로 하면 송창섭은 1963년 이후 매년 남파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공소내용과 맞지 않을뿐더러 당시 한경희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내사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199) 항소심(2심)전 안기부가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 임OO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보고서.

【파기환송심 증인들의 증언 변화】

	수사초기 (안기부 청주분실 보고서)	항소심(2심)전 보고서	파기환송심(4심) 진술내용
박종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3 간첩밀봉 교육당시 한경희 통해 과업보고하라는 지령. ○ 58.3 청주에서 한경희접선, 비밀서법으로 과업실적(안전도대구축 및 포섭대상자 명단 등)을 수록한 아리랑 잡지 2월호를 한경희에게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 청주분실 내용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8 출소이후 한경희에게 간첩 활동 재개의 뜻이 담긴 편지를 전달 ○ 한경희로부터 매형(송창섭)이 얼마전 다녀갔는데 물어보니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박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출신 월북자 '송충건'이 남파 연고선 접촉고 복귀 ○ 충북 지역 송씨중 월북자 22명내사 송창섭일 것으로 판단, 연고선 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12 남파 자수간첩 김철수(가명, 58세) 제보 ○ 청주출신 '송충건' 1956년경 교육후 1차 남파 ○ 60.4.19직후 2차 남파 ○ 70년경 재차 수용, '70년대 남한 정세 대비 공작원'으로 교육 재남파 ○ 충북 지역 송씨중 월북자 22명 내사 송창섭일 것으로 판단, 연고선 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4 자수하였음 ○ 이달근으로부터 송창섭이 57년, 60년, 68년 남파되었다고 들었고 ○ 서정필로부터 71년, 70년대 후반까지 남파되었다고 들었고 ○ 이효순으로부터 '송충건'이라는 공작명을 부여 받았다고 들었다
박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박혜영 신고로 한경희 수사하였으나 무혐의 방면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63년 한경희 송창섭 접선, 민정당 부녀국장 박노영과 수시 한화교환했었다고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년 김정재 사건때 있었다고 들었고 ○ 60년은 신문에서 보았고 ○ 63년은 한경희와 박노영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신고했고 ○ 죽은 박노영으로부터 68년 남파되었다고 들었고 ○ 63년 이후로도 4,5차례 남파되었다고 들었다.
황보삼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내용 없고, 무혐의 방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은 박노영으로부터 68년경 들었으나 60년 얘기인지 68년 얘기인지 헷갈린다 ○ 그 얘기 듣고 무서워서 그뒤로 한경희 만나지 않았다.

송씨일가간첩단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점이 가장 증폭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발표문과 보도자료이다.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경우 안기부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한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도자료에 방대한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보도자료를 보면 “한경희는 정계, 송지섭 군사, 송기준은 산업계, 송기섭은 공무원, 속 한광수·송기복은 학원 등에 침투, 국가기밀을 수집” 하였으며,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까지 간첩조직에 끌어들여 학원동향을 수집 보고해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피의자들의 직업을 마치 이들이 관련 분야에 조직적으로 침투한 것처럼 부풀린 것으로, 발표문을 보면 이들이 해당 분야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체계적으로 관련분야의 기밀을 빼 낸 것과 같은 인상을 주나, 실제 공소장이나 의견서에 제시된 혐의사실은 이런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들까지 간첩조직에 끌어들여 학원동향을 수집 보고해왔다”는 대목이다. 당시 송기준의 4자녀 중 3인이 각각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송기준의 수사기록 어디에도 송기준이 이들 자녀들을 통하여 학원가의 동향을 수집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또 발표문은 피의자들이 “국내에 소요 및 주요 사건 발생시마다 유언 비어를 날조 유포, 학생, 근로자 등의 대정부 투쟁을 선동”해 왔다고 강조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도 공소장과 의견서의 내용을 다 받아들인다 하여도 종계 모임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한 두 마디 한 정도이지,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조직적으로 학생, 근로자들에게 유포하였다는 이야기는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소시민인 이들 피의자들이 대규모 간첩단으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까지 간첩조직에 끌어들여 학원동향을 수집 보고”해 왔으며 “학생, 근로자 등의 대정부 투쟁을 선동”했다고 크게 과장하여 발표한 것은 당시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과 근로자들의 저항이 마치 간첩단의 부추김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송기준은 간첩 송창섭을 따라 대동입북하여 간첩 교육을 받고 재남파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이 혐의사실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송기준의 수사기록에도 송기준은 단독 입북하였고 북에서도 송창섭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발표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송씨 문중의 종친계, 성동구청 퇴직 공무원의 모임인 성우회, 등산 모임인 88회 등과 같은 단체에서 송기섭은 평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마치 그가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이들 “불순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단순한 친목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발표로 인해 불순단체로 낙인 찍혔고,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이 사건은 TV 등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간첩사건 보도자료 촬영지시>라는 문건을 보면 안기부가 KBS와 MBC를 동원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안기부는 이 문건에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에 자리잡은 송창섭의 생가와 그의 어머니가 경영하던 정미소를 간첩 송창섭이 장기 은신하였던 곳이라 보도했으나, 안기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 바 없다. 안기부는 1957년 송창섭이 1차 남파 때 이 곳에 장기 은신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1957년 무렵 송창섭을 숨겨주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안기부의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안기부가 송창섭의 남파와 은신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은신처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창섭의 은신처를 특정하여 일방적으로 촬영하여 발표한 것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안기부의 수사가 마치 제대로 진행된 것인 듯한 잘못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기부는 또 “이들 간첩단은 송창섭 등 남파간첩을 1개월 내지 1년 간씩 장기간 은신시키면서 이들 남파간첩들의 재남간첩 활동을 엄호”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송창섭은 그렇다 치더라도, 송창섭 이외에 다른 간첩을 1개월 이상 은신시켰다는 내용은 수사기록 어디에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보도문은 한경희가 “1965년부터 1977년까지 12년간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모(66세), 이모(65세)와 은밀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 정치인을 포섭코자 기도”하였고, “12년동안 이들 정치인들에게 몸을 받쳐가며 정계동향을 수집”하는 등 “미인계로 정계와 경제계에 침투 국회의원, 회사중역 등 정치인들과 접촉 각종 정치정보와 경제관계 정보를 수집, 보고토록 해왔다”고 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의견서나 공소장은 물론이고 문모, 이모의 신문조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안기부는 이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신문, TV, 라디오 등 전 언론매체”에 대하여 “각 언론사의 특성별로 뉴스기사, 사설, 해설, 논단 등 확대 보도조정”하도록 한다는 일련의 보도계획안을 수립했다.²⁰⁰⁾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안기부는 KBS, MBC 지방국 기사를 대동 VTR로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1982.7.10까지 각 본사로 우송, 사전 편집에 차질 없도록 할 것”과 “본 사건 현장 촬영 취재는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사건 심층취재 지원형식으로 하고, 부산·청주의 범죠헌장 촬영은 지방국의

200) <간첩사건 보도자료 촬영지시> 1982년 6월; <촬영계획서>; <서울, 충북 거점 간첩사건 보도 계획>, 1982년 7월.

지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원래 사건의 발표는 1982년 8월 6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건의 발표는 수사가 차질을 빚은 탓인지 원래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미뤄져 9월 10일에 행해졌다. 당시는 언론이 안기부의 보도지침에 철저히 속박되어 있던 때인데, 간첩 분야의 보도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 그야말로 ‘받아쓰기’ 수준의 보도와 해설이 이루어졌다.

송씨일가간첩단사건 발표 당시의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첩죄에 대한 무고·날조는 간첩죄와 똑같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사 |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안기부의 개입

1) 검찰수사과정

검찰수사과정에서 검사는 본 사건 안기부 수사기록상으로도 명백하게 장기간의 불법부금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와 유지의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검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였다.

본 사건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검찰청이 아닌 밀실의 성격이 강한 구치소에서 진행되었다. 구치소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전후로

안기부 수사관들이 송지섭²⁰¹⁾과 송기준²⁰²⁾을 면담하였던 사실이 서울 구치소 면담기록부에 의해 확인되고, 동 기록부상에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을 위협하였던 기록이 확인되면서 이후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은 검찰조서의 임의성을 배척하면서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 후에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거나 앓을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 하에서 한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형소법 제309조에 따라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재판과정에서의 쟁점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당시 검찰은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차이점을 분석한 논고문 등을 통해 검찰조서의 임의성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 송기섭의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증제 6호 트란지스타 라디오’²⁰³⁾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했다.

201) 송지섭의 검사 신문은 1982년 7월 9일 1회를 시작으로 동년 8월 26일 9회 걸쳐 진행되는 데 그 기간을 전후로 안기부 수사관이 5회에 걸쳐 송지섭을 면담하였다. 제 1, 2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7월 9일 접견기록에는 안기부 수사관이 구치소에 방문하여 “김검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는 모든걸 시인하고 이제와서 번복을해”, “듣기로는 사실을 자꾸 부인한다는데 안기부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왜 또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나요” 하는 검찰에서의 혐의사실 부인을 힐난하는 구절이 확인되었다.

202) 송기준은 1982년 7월 9일부터 7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조사를 받는데, 동 기간동안 7월 9일과 7월 12일에 안기부 수사관들이 접견한 기록이 있다. 송기준에 대한 접견기록에서도 “다른생각 마시고 어떻게 내가 진실 되게 보여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까만 생각하세요”라는 자백유지를 권고하는 구절이 확인 된 점과 7월 9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입북부분을 부인하였던 송기준이 7월 12일 안기부 수사관의 접견 이후 입북부분을 비롯한 혐의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3) 1982년 7월 20일 작성된 송기섭의 제 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문 : 피의자가 1960.4.월 하순 피의자의 집에서 송창섭으로부터 받은 라디오와 난수표, 압호표 등을 어떻게 하였나요
 답 : 난수표와 압호표 등은 1967년도에 소각하여 버렸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 상세히 설명하겠고 라디오는 최근까지 집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수사관에게 압수되었습니다.
 문 : 이것이 피의자가 송창섭으로부터 받았다가 이번에 압수한 바로 그 라디오 인가요 (이때에 압수된 증제 6호 트란지스타라디오를 제시한 바)
 답 : 이 라디오가 제가 송창섭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1982년 9월 9일자로 작성된 안기부 내부 수사보고²⁰⁴)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송창섭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동 라디오에 대해 조치의견으로 “확인결과 동일형의 라디오는 1964. 8 이후 생산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동 라디오를 증거물에서 제외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송기수의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²⁰⁵)에 기재된 라디오에 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²⁰⁶)하고 있다.

송기복 등 관련자들은 검사 신문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무시 혹은 회유하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강제로 무인케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라디오’에 관하여 인정하였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수사보고서를 이유로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4) 1982년 9월 9일 수사보고, 원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82.7.6 당부에서 구속 송치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자 송기섭은 동 범행의 증거물로 송치(증제 6호)한 일제 내셔널 트랜지스타 라디오에 대하여 당부에서는 조사당시 60.4 남파간첩 송창섭으로부터 공작금품으로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조사시에는 64년경 서울 신문 성명미상 기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므로 동 라디오의 제작일자를 확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5) 1982년 7월 21일에 작성된 송기수의 제 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문 : 1967.10.하순 평양 방송으로부터 나오는 숫자를 받아쓰게된 경위, 내용을 상술하시오
 답 : 전술과 같이 어머니가 이북방송에서 나오는 숫자를 받아 쓰라고 하여 저의 집에서 평소 사용 하던 검은 일제 쏘니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어머니가 맞추어 놓은 평양 방송을 통해 나오는 숫자를 16절지 깡지에 적어 어머니에게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라디오가 이번에 압수된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206) 1982년 9월 10일 수사보고, 원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82.7.6 당부에서 구속송치한 피의자 송기수는 “67.10하순 일자미상 피의자 가에서 상피의자 한경희와 같이 일제 소니 트랜지스타 라디오로 북괴지령을 청취한 사실이 있고, 75.9. 중순 일자미상 서울 남가좌동 소재 영동아파트 17동 108호에서 위 한경희가 위 라디오로 북괴 A-3 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 하였는바”, “동 라디오 모델인 ICF-110형은 69.1~70.2 간(13개월)생산한 것이며”, 조치의견으로 “동 라디오는 69.1 이후에 생산된 것이므로 67.10 범행의 증거로는 부적하다 사료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재판과정에서의 개입

1983년 8월 23일 대법원이 검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안기부는 장기간의 구금 등을 이유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받게 될 경우 향후 간첩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후 재판과정에 대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1983년 8월 24일부터 1984년 11월 28일 재재상고심(7심)판결까지 안기부에서 작성한 ‘공판 대책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안기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 다음날인 1983년 8월 24일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유OO 대법원장²⁰⁷⁾과 가OO 대법원 비서실장 등을 접촉, 대법원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책’으로 “재심리 기간 중 법원 및 검찰과 협조, 증거 보강 등으로 필히 유죄토록 유도”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안보사건에 대한 태도가 선명하지 못한 이OO 판사에 대하여는 배후와 동향을 내사, 인사에 반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이OO 대법원 판사뿐 아니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재판부 모두의 ‘인물조사서’를 작성하였고, 안기부는 1983년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OO 판사를 미행 감시한 결과와 사진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법관 이OO 신원 및 동향감시 결과보고’를 작성하였다. 이는 사건 담당 판사의 배후와 동향을 내사하고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압력이 되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본 사건의 담당 변호인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발견되는데, 변호인 접견 시 피의자들에게 ‘법정에서는 사실대로만 대답하라’고 했다²⁰⁸⁾는

207)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및 대책보고(1983.8.24) 대법원 동향으로 유OO 대법원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판결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 “그런사람(이OO 판사)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므로 가만 둘 수 없다고 흥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8) 본 사건의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들의 검찰조사가 끝난 이후인 1982년 8월 13일부터 시작되는데, 안기부는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 한OO 및 김OO으로부터 변호인과 피의자들 간의

이유로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82년 8월 23일 김성기 변호사를 소환, ‘각서를 징구’하고 향후 ‘공판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순화, 활용하겠다’고 기록되어 있고,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 조준희 변호사에 대해 ‘반정부 활동가’이며 ‘본명에 대해 동향내사, 비위사실 수집하겠음’이라고 기록²⁰⁹⁾되어 있다.

안기부는 유OO 대법원장을 접촉해 본 사건의 향후 재판과정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²¹⁰⁾하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건을 원심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그 처리방안으로 ‘장기구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가 없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입증하면 검사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책으로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 이를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실투쟁을 명백히 진술토록 하여 검찰작성 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있다고 판결 후 재상고하면 사건을 특별 배당 기각 판결토록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1차 파기환송심은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84년 4월 24일 재상고심은 이후 범조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판결로써 이른바 ‘보충설시’²¹¹⁾가 들어 있다. 동 판결 직후 작성된 보고서²¹²⁾에는 동 판결의 보충설시를 적은 후 “이후 2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재판(판결문 실시)하면 상고심 유죄판결은 가능”이라고 적고 있고, 대법원 동향으로 “대법원측(비서실장 가OO)에서는 이OO 대법관의 체면유지 등 대내 사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사전 양해

접견 내용을 일일이 보고 받았다. 이 보고를 통해 김성기 변호사와 송기복 간의 대화내용을 인지하고 김성기 변호사를 소환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209) ‘간첩 송지섭 사건 관련 변호인 동향보고(1982.11.24)

210) ‘유OO 대법원장, 송지섭 등 간첩사건 파기환송에 따른 처리방안 확정’(1983.9.1)

211) 재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환송 판결의 판단은 환송후의 원심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1차 대법원의 무죄 판결 취지와 같은 취지로 환송하면서,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면 유죄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충설시를 포함하고 있다.

212)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공판상황 보고(날짜미상)

하에 정책적으로 파기한 것임으로 다음 상고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니 관계기관의 큰 오해 없기를 바라고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작성된 보고서²¹³⁾에는 “파기환송시 대법원 측에서 언급한 바 있는 차후 유죄 판결 보장설을 뒷받침하는 대법원과 고법의 공작차원에서 작업여부 확인”이라고 기재, 대법원장 협조 부분에 “위와 같은 대책장구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의 전망이 희박할 경우, 당부 부장,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의 고위층에게 대법원장과 협조, 정책적인 차원에서 유죄판결을 유도”라고 기록되어 있어, 동 판결이 안기부와 법원 상층부 간의 묵계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이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안기부는 법원 상층부와 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유죄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판사들을 조직적으로 접촉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²¹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파기환송심 담당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압력행사】

일시	청탁인	피청탁인	장소	청탁내용
1984.6.29	안기부 수사관	담당재판부		- 간첩수사의 애로점 설명 - 유죄판결유도
1984.7.13	안기부 수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가OO		- 공판대책협의 - 유죄판결 유도
1984.8.3	안기부 수사관	김OO 대법관	자택방문	- 공판대책자료 제출 - 유죄판결 유도
1984.8.4	안기부 수사관	김OO 부장판사	자택방문	- 공판대책자료 제출 - 유죄판결 유도
1984.8.12	안기부 수사관	김OO 부장판사	중식제공	-
1984.8.13	안기부 수사관	법원(김OO 부장판사)	중식제공	-
1984.8.15	안기부 수사관	법원측 (박OO, 유OO 담당판사)	골프	-

213) 간첩 송지섭 사건 공판 대책 자료(날짜미상)

214) 송지섭 사건 2차 파기환송 후 공판대책 진행상황 보고(날짜미상)

이상과 같이 안기부는 판사와 변호인들을 내사하고 변호인을 소환하여 각서를 징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을 가했고, 한편으로는 법원 상층부 및 담당 판사들을 접촉해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유죄판결 보장설’과 ‘정책적 차원에서 유죄판결을 유도’라는 위 보고서의 표현에서 보듯이 증거와 증언 확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자 노력해야 할 수사기관이 부당한 영향력과 부적절한 논리로 ‘유죄판결’을 유도하려 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판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아 | 결 론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은 송창섭이 모두 8차례 남파되어 한경희 등 가족들을 포섭하여 한경희를 중심으로 하는 재남간첩망을 구축했고 한경희 사후에는 1958년 송창섭과 입북한 바 있는 송지섭이 총책을 승계하여 재남간첩망을 유지하면서 1982년 관련자들이 연행된 시점까지 활동을 지속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 박종덕, 황보삼순, 김건주 등의 참고인 증언, A-3지령통신카드 등이다.

그러나 진실위 조사결과 송창섭이 8차례 남파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1960년 남파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송씨일가간첩단사건 발표 후에 작성된 「흑룡공작철」에 송창섭의 1, 2차 남파만 기록되어 있고 1968년에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탄광으로 좌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적어도 1968년 이후에는 송창섭이 남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경희의 경우도 송창섭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

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다.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박종덕, 김건주, 윤순자 등의 진술과 A-3지령 통신카드였으나 김건주와 윤순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진술을 한 바 없고 박종덕은 당시 허위진술했으며 이들은 모두 안기부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받았다. 또 A-3지령통신카드도 한경희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데다, 한경희는 1977년 사망했기 때문에 안기부는 한경희를 직접 수사하지도 못했다.

이처럼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송창섭의 8차 남파와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점이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송지섭의 입북혐의는 재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고 송기준의 경우도 파기환송심에서부터 “안기부 수사원의 구치소방문 면담 사실(안기부 수사관의 위협) 인정돼 검찰신문에서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도 피고인의 입북과 잠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일부 관련자들이 북한에 지령을 받은 근거로 제출한 ‘간첩통신지령카드’도 이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사건 관련자들은 안기부 수사관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항소·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문 받을 당시를 회상하며 몸을 떨고 울먹이는 등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사도중 외부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송지섭의 진료기록, 변호인 접견시 송기복과 김성기 변호사 간의 대화, 무엇보다 장기간의 불법구금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고문 주장에 귀 기울인 이OO 대법관의 판결 내용²¹⁵⁾ 등은 관련자들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215)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 후에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거나 앓을 까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 하에서 한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

한편 당시 안기부는 수사결과의 허점, 불법장기구금 사실, 고문과 가혹행위의 문제 등이 불거지고 대법원이 2차례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사건담당 재판부에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유죄판결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상과 같이 당시 공소사실의 핵심전제가 사실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참고인들의 증언이나 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혹독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 또는 강요에 의한 허위진술임이 밝혀졌다. 또한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을 유도하고자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은 사건 관련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진술 강요와 증거의 조작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안기부의 유죄판결유도 공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반인권적 ‘간첩조작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가

사건의 개요

1) 국가안전기획부의 언론 발표 내용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81.7.31 언론 발표를 통해 “24년 동안 전남 진도지역을 중심으로 암약해온 고정간첩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면서²¹⁶⁾ “이 고정간첩망은 해방직후부터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다가 6·25때 서울에서 우익 인사 등을 학살한 후 북괴의용군에 입대, 자진 월북한 진도군 출신 박영준(60세)이 대남간첩으로 선발돼 1957년5월부터 1976년10월까지 6차례에²¹⁷⁾ 걸쳐 고향인 진도에 침투하여 조직한 것”이었으며 “박영준은 큰아들 박동운(36세, 농협 서무)과 두 차례 대동입북, 간첩밀봉교육을 받게 한 후 잠입시켜 다른 가족 및 친척들을 포섭하여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지하망을 구축해왔다”면서 “북괴 노동당 연락부 소속인 박영준에게 포섭된 동운과 차남 근홍(34세, 수원연초제조창 직원), 처 이수례(57세), 동생 경준(48세, 前 진도군 고군면 부면장), 매제 허 현(43세, 해태양식업)등은 박영준의 지령에 따라 합법신분을 쟁취한 후, 각기 근무처 및 주거지를 무대로 국가기밀을 탐지 보고하고 친목계 등을 조직하여 지하조직 확대를 시도하는 등 약 24년간 암약해왔다”고 밝혔다.²¹⁸⁾

216) 안기부는 81.7.10 <진도거점 간첩단 사건 보도계획>을 마련, 81.7.13자로 <진도거점 고정간첩 박동운 일당 사건 보도자료(81.7.14)>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언론의 발표는 81.7.31이다.

217) 안기부는 앞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준이 1차:57.5, 2차:63.5, 3차:65.5 4차:71.9, 5차:74.9, 6차:76.10 총 6차례 납파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안기부의 의견서에는 5차:74.9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218) 조선일보 1981.8.1자 보도내용과 안기부 발표문 「고정간첩 박동운 보도자료」 중 <진도거점 박동운일당 체계도> 참조

2) 재판 진행 경과

당시 1심(서울지방법원)에서부터 박동운 등 관련자들은 “안기부 수사관들의 잔인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사건이며, 자귀와 현 라디오가 간첩이라는 증거일 수 있는가”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박동운에게 사형, 박경준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이수례 및 박근홍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허 현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²¹⁹⁾

2심(서울고등법원)은 일부 금품수수와 회합에 관해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한 모든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각각 형만 감형하였다.

대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 형이 최종 확정되어 박경준²²⁰⁾, 이수례, 박근홍, 허 현은 복역 후 만기 출소하였고, 박동운은 무기징역으로 18년간 복역하다가 1998.8.15. 가석방되었다.

구분	서울지방법원 81.11.3(81고합567호)	서울고등법원 82.3.6(81노3421호)	대법원 82.6.22(82도1092호)
박동운	사형	무기징역	상고기각
박경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이수례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박근홍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4년	
허 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향소기각	

한편, 2007.4 박동운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19) 박미심, 한등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였다.

220) 간첩죄로 7년형을 선고 받고 1988.5.18. 만기 출소하였고 1998.5 사망하였다.

1) 강제 연행 및 불법 구금 여부

안기부는 당시 수사기록에 박동운 등 관련자 7명을 “1981.5.1 임의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박동운과 이수례는 1981.3.7, 박경준과 박근홍은 1981.3.9, 박미심과 허 현은 1981.3.14, 한등자는 1981.4.16에 각각 강제 연행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받거나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1.5.8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0~60여 일간 불법 구금을 당한 채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박동운은 재판 당시 진술 및 항소·상고 이유서 등을 통해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벽에 붙은 세면기에 성기를 올려놓게 하고 신발짝으로 세차게 내려쳤고 그때마다 까무러치면 찬물을 끼얹고, 발가벗긴 채 철창에 손목을 묶고 라이터 불로 온몸을 지지고 체모를 태워 고통과 수치심을 주고, 족쇄를 채운 채 무릎에 경찰 곤봉을 올려놓고 짓밟고 손·발바닥, 머리, 온몸을 야전침대 몽둥이로 마구 때려 몇 번을 기절하고, 입고 있던 군복이 피로 물들었는데 송치 되기 일주일 전쯤 매일 ‘안티프라민’ 마사지와 온수 목욕을 시키고, 발가벗겨 공중에 매달고 구타하면서 ‘시인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와 아내를 너와 같은 모습으로 옷을 벗겨 매달아 놓겠다. 너 같은 놈 하나쯤 사살 해도 염려될 것 없다. 불러주는 대로 유서를 쓰라’고 협박하고, 부인 앞으로 보내는 유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어느 날은 눈을 형검으로 가린 채 권총으로 위협하며 밖으로 끌고나가 표적삼아 사격연습을 하려하는 등

극심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범죄행위를 시인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²²¹⁾

3) 범죄사실 조작 여부

박동운 등은 재판 당시 증언 및 항소·상고 이유서를 통해 “모든 혐의사실은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이겨내지 못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동운은 “자신이 안기부에서 1965년 아버지 박영준을 만나 1차 월북, 1971년 2차 월북하였다고 자백했지만, 이는 고문 및 가혹행위에 못 이겨 진술한 허위 자백일 뿐이고, 현재까지도 박영준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고, 1979.8 농협 인사카드 등을 복사하여 박영준과 함께 만난 未詳男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에는 진도 농협지점에는 전자복사기 자체가 없었고, 가족간 경조사 모임이 간첩활동을 위한 회합으로, 동창회와 친목계가 지하조직으로, 면사무소 업무를 본 것은 국가기밀탐지 수집으로 각각 탈바꿈되었으며, 간첩활동을 위해 난수표와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집에 있는 자귀로 때려 부셔서 버렸다고 진술을 조작하여 자귀가 간첩활동의 증거물로 채택되는 등 범죄사실이 조작되었고, 안기부의 범죄사실 조작에 항의했으나 고문 및 가혹행위가 너무 고통스러워 인간으로서 이겨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 조사대상 선정경위 및 조사경과

1) 조사대상 선정 경위

진실위는 「간첩죄 확대적용 사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70년대 이후 중정·안기부에 의해 발표된 간첩사건중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21) 박동운 외에도 당시 사건 관련자 전원이 안기부 수사관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월북자·납북귀환 어부·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주요 유형별 간첩사건을 선정하여, 수사과정상 불법연행·장기구금·인권탄압 및 피의사실 공표, 발표시기의 정치적 고려 등 의혹사항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1981.7.31. 안기부가 언론에 발표한 일명 「박동운 사건(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을 ‘월북자 관련 유형 사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조사 및 면담 조사

자료 조사는 검찰 보유 수사·공판 자료(총 14권 4946매)와 국가 기록원 및 대구교도소 보유 수용자 신분장을 입수하였고 국가정보원이 보존하고 있는 자료 중 박동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정보원 보관 박동운 사건 관련자료】

자료 제목	매수
남파예상자 박영준 등 참고철	4매
남파 예상자 이영준 등 접선형의자	212매
박동운 연고자 호제적부, 남파 예상자 박영준 연고자 및 접촉형의자 내사보고	246매
남파 예상자 박영준 및 곽씨 일가 등 관련자 내사·첩보 보고	569매
박동운 관계철	4매
박동운 공판상황 및 재소동향 보고	44매
박동운 관계철	462매
박동운 관련자 조사결과 보고	164매
박동운 관계철	1매
박동운 사건송치 서류	356매
간첩 박경준 사건철	175매
박동운 관계철	2매
고정간첩 박동운 보도자료	2매
고정간첩 박동운 보도자료	22매

면담조사는 당시 피의자 및 참고인이었던 박동운, 이수례, 박미심, 한등자, 박근홍, 안금자를 면담하였다.

다만, 본 사건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답을 해야 할 핵심관계자인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라 | 조사결과

1) 안기부의 내사과정 및 수사착수 경위

가) 조사내용

동 사건은 1980년대 초 6·25 당시 월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내사과정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진실위는 「검거간첩 연도별 기관별 통계(1951-1996년)」 및 「검거간첩 사건별 현황(1980-1993년)」 등을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사담당 부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 월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안기부 자료에 당시의 수사계획서 일부가 남아 있어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안기부는 1980.10.14부터 「남파예상자 이영준²²²⁾ 등 접선혐의자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는데 안기부는 1차로 「재북간첩 이영준 등 접선 혐의자 수사계획(81.3.2)」(1981.3.2)을 마련하여 이영준, 박영준, 이상국, 곽재술, 곽재필을 남파예상자로 추정하고 이영남, 이수례, 박경준, 이상용, 박동운, 곽재정, 곽재량, 곽상현, 이면자, 박근홍, 이관희, 곽경순을

222) 이영준은 박영준의 처 이수례의 동생으로 6.25 당시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월북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

접선혐의자로 추정하면서 1981.3.9부터 각각 미행감시 후 연행하여 3.18까지 10일간 수사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 수사계획에 적시된 수사대상자들의 주요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³⁾

- 이영준, 박영준 및 이상국 등은 6·25 당시 서울에서 부역타가 재북간첩 박양민과 같이 북괴의용군에 입대, 자진 월북 1965-80년간 간첩으로 남파, 연고지(진도등지) 친인척 중심으로 엄호 거점 및 지하망 구축 혐의 농후
- 1980.10 간첩 김정인 사건 관련으로 검거한 박○○(여, 43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송치) 진술
 - 위 이영준은 6·25 당시 서울공고 4학년 재학 중 위 박영준, 이상국 등과 같이 서울에서 부역타가 재북간첩 박양민과 같이 북괴의용군에 입대 자진 월북하였고
 - 1960.8경 진도군 거주 당시 20대의 성명미상 청년이 위 박양민의 모 석○○에게 박양민의 생존 소식을 전달하였다하며
 - 1966.4 간첩으로 남파된 오빠 박양민으로부터 위 이영준, 박영준 및 이상국 등이 년도 미상경 북괴중앙당에 소환되어 소정의 간첩 교육을 받고 남파되었다가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는 제언에 따라²²⁴⁾
- 1980.10.27-11.1 간 진도현지 출장 내사 결과
 - 위 박양민의 생존소식을 박양민의 모 석○○에게 전달하였다는 20대의 청년은 당시 21세 및 17세였던 위 이영준의 實弟 이영남(42세)이거나 위 박영준의 장남인 박동운(36세)일 것으로 추정되고

223) 수사대상자들의 압송방법은 안기부 「재북간첩 이영준 등 접선혐의자 수사계획(1차, 1981.3.2)」 참조

224) 김정인·석달윤 사건 기록 중 박○○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 1회 : (박○○은 오빠 박양민을 만나) “ ‘혹시 지산면 인지리에 오빠 아는 분이 있어요’ 하니까 양민 오빠는 ‘그래 거기 사촌 처남이 하나있다’고 하여 제가 ‘어머니에게 지산면 인지리에 산다는 청년이 와 오빠가 이북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니까 오빠는 ‘지산면 인지리에서 왔다면 사촌처남 아들일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 올케 용심으로부터 들은 말이 생각나 ‘6.25때 언니에게 들으니 자기 친정 조카 3명과 오빠가 월북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살아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오빠는 ‘그 사람들도 다 한번씩 넘어왔었다’라고 하였음”. 이상의 진술에서 보듯이 박○○은 오빠 박양민으로부터 남파되었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이영준과 박영준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안기부는 월북했다가 남파한 사람을 이영준과 박영준이라고 특정하고 내사를 진행하였다.

- 박영준의 實弟 박경준은 고군면 부면장으로 재직 중 1979.7-80.7간 간경화증 치료차 병가 휴양하였다고 하나, 행적이 모호하고 처외가인 곽재능의 가족 및 친인척 등이 6.25 당시 부역타가 월북한 사실이 있는 등 위 이영준, 박영준 및 이상국 등이 남파되었다면 이영준의 누이이며 박영준의 처인 이수례, 이상국의 형인 이상용 등 가족 및 친인척들과 접선이 가능하고
- 도원 1호²²⁵⁾의 진술에 의하면 진도출신 차명미상이 중앙당에 소환당한 사실이 있는데 차은 진도 출신 박현수(예비역장성,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재북간첩 곽재필(진도군 군내면 세등리 출신 월북자)의 친척이라고 하며,
- 진도출신 곽재술은 서울대 법대(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 6·25 당시 처 및 자식 2명, 弟 2명 등과 함께 월북, 현재 김일성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곽재술의 장남 郭명미상(40세 가량)은 69년경 복고 695 정치대학 공작원으로 소환되었다는 설이 있는 바,
- 1981.1.20-2.5 간 진도 현지 출장 내사 결과 위 곽재필은 해방 후 남노당 진도군당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여순반란사건에 가담하였고 6·25 당시 광주에서 부역타 월북한 후 1958.5 간첩으로 남파, 6·25 당시 진도군 인민위 상공과장으로 부역한 동향인인 조병근 (68세, 67.4 자수)를 포섭,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 위 곽재필은 박영준의 實弟 박경준의 장모 곽죽림의 친척으로 박영준과는 사돈간이며 박현수와 박경준의 친척관계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아니함.

안기부는 2차로 「재북간첩 이영준 등 접선혐의자 추가 수사계획 보고」(1981.3.16)를 마련하여, 이수례 등 7명 연행자에 대한 수사기간을 1981.3.19-4.2(15일간)까지 연장하고, 곽재성, 박선준, 박원택, 한옥자 등 9명에 대해 출장 및 연행하여 신문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안기부는 3차로 「간첩 박경준 등 추가 수사계획 보고」(3차, 1981.4.2)를 마련하여, 박경준 등 6명 연행자에 대한 수사기간을 1981.4.3-5.8(36일간)까지 연장하고, 추가 대상자 박미심, 한등자, 박선준에 대해 1981.4.5-5.8(34일간) 연행하여 신문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1.5.12 박동운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25) 1980년 초 안기부에 의해 체포된 북한의 고위 간부

나) 소결

동 사건은 1980년대 초 6·25 당시 월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안기부의 대대적인 내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지 못하여, 그 당시 어떤 이유로 월북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안기부의 수사 자료 중 수사계획보고(1, 2, 3차)가 발견되어 이를 분석한 결과, 안기부는 1980.10 ‘김정인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박○○의 ‘인지리 20대 청년’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을 토대로 1980.10.27부터 진도 현지 출장 내사를 한 결과, ‘인지리 20대 청년은 이영남 또는 박동운으로 추정’하였으나 별다른 간첩 남파 및 접선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영준, 박영준 등이 남파하였을 시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접선혐의자’를 수사관 임의로 선정하여, 1981.3.9 경부터 안기부로 강제 연행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더구나, 장기간의 불법 구금 수사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이영남의 용공혐의를 발견치 못하였고²²⁶⁾, 박동운의 진술서 등에는 ‘인지리 20대 청년’에 대한 질의응답조차도 없다는 점²²⁷⁾에 비추어 보면, 안기부는 ‘이영준, 박영준 등이 간첩으로 남파했다’는 미확인 첩보를 사실로 규정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강제 연행과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안기부는 ‘월북자가 남파하였다’는 첩보의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황, 즉 명백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월북자가 남파되었다면 가족을 접선했을 것이다’고 혐의를 추정한 후,

226) 이영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항의 (2)불법 연행 및 불법 구금 여부’ 항목 참조

227) 안기부는 박동운에게 ‘인지리 청년’에 대해 조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박동운의 안기부 진술서, 진술조서 등에 이에 관한 사항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뒷부분에 나오는 박동운의 ‘방대한 분량의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더한다.

그 가족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2)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 여부

가) 당사자 주장내용²²⁸⁾

박동운 등은 1981.3.7경부터 안기부로 연행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는 등 불법 연행을 당했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된 1981.5.8까지 50~60여 일간 불법 구금을 당한 채 가족들은 물론 변호인도 접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조사내용

(1) 당사자 면담내용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1981.3.7 05:00경 건장한 남자 2명이 수갑하고 권총을 보여주면서 광주까지 가서 할 얘기가 있다며 어머니 이수례와 함께 가자고 하여 따라 나갔다가, 당일 서울 안기부로 연행되었고 검찰로 송치된 5.8까지 63일간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박근홍은 진실위 면담에서 “1981.3.9 05:00경 수원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남자 2명이 본인을 밀치고 들어와 누구라고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무작정 뒤킨 후, ‘아무 말 말고 따라 와라’면서 집 밖에 있던 검은 지프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거기가 남산 안기부 조사실이였다”고 주장한다.

228) 박동운 등 관련자들은 당시 재판 도중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항소·상고이유서 등에서 일관되게 안기부의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에 대해 호소하였는데, 안기부 내부 자료에 의해 불법 연행과 불법 구금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므로 관련자들의 주장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다.

(2) 타 간첩 사건 재판 중 관련 자료 분석

동 사건 당시 안기부에서 대공통신업무를 담당했던 이○○²²⁹⁾은 ‘송씨 일가 간첩사건’²³⁰⁾과 관련하여 1984.7.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간첩지령 통신 관련기록>, <검거간첩의 호출부호 조직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진술하면서, ‘주소지의 번지를 호출부호로 조직한 사례’ 중 ‘1981.3.9 검거’된 박동운은 ‘27번째’ 호출부호를 사용했다고 사례를 밝혀, 박동운이 1981.3.9 검거된 기록이 있음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²³¹⁾

또한,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1984.7.24 서울고등검찰청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안기부가 작성한 「간첩통신부호 조직 경위 및 1960년대 이후 지령통신 단선간첩 활동 사례분석」, 「북괴간첩 호출부호 조직 및 지령수신일자 약정 특성」, 「60년대 이후 지령통신 단절 후 간첩사례」가 있는데, 「간첩통신부호 조직경위 및 1960년대 이후 지령통신 단선 간첩활동 사례분석」에 의하면, ‘재남 고첩 호출부호 조직 사례’ 중 ‘주소지 번지 적용사례’로 “1981.3 피검된 간첩 박동운은 주소지인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512를 이용 호출부호 ‘27번째’를 조직”했다고 적시되어 있고, 「1960년대 이후 지령통신 단절 후 간첩사례」에 의하면, “박동운은 1981.3 검거되었으며 호출부호는 27번째로 1965.8.5 최초 출현하여 1966.8.5 단선”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는 등 박동운이 안기부에 피검된 시기는 당시 안기부의 수사기록이 밝히고 있는 1981.5.1이 아니라 1981.3.9경²³²⁾임을 알 수 있다.

229) 안기부 직원 이○○, 송씨일가 간첩사건으로 1984.7.9 서울지검에서 안기부에서 검거 송치한 간첩 송치섭 등 일당의 간첩지령 통신 관련기록과 치안본부의 존안기록 및 과거 검거간첩의 호출부호 조직경위 등을 대조 종합 분석하여 진술하였다.

230) 1982.9.안기부는 6.25 당시 월북한 후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간첩활동을 해 온 송씨 일가족 28명의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2번이나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재파기환송심(6심)에서 유죄, 세 번째 대법원에서 유죄로 형이 확정되어 당시 공안사건으로는 드물게 총 7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어 소위 ‘핑퐁재판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231) 안기부 직원 이○○의 검찰 진술서

232) 박동운은 재판당시의 탄원서 등과 진실위의 면담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연행된 날이 1981.3.7이라고 주장하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안기부의 1차 수사계획서에도 ‘1981.3.7-9 소재 및 동향 감시 후 현지 출장 연행’이라는 기록이 있어, 박동운의 연행일이 1981.3.7이라고

(3) 국정원 보관 자료 등 분석

당시 안기부가 검찰에 송치한 수사기록에는 “(박동운 등 7명을) 1981.5.1 임의동행했다”고 적시되어 있고, 피의자들의 진술서와 신문 조서는 모두 1981.5.1 이후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안기부의 내부수사자료(수사계획보고, 체계도, 실황조사서 등)를 통해 “1981.3.7경 부터 감시조 및 연행조를 편성하여 체포형식으로 연행”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²³³⁾

1981.3.16자로 작성된 안기부의 「수사계획보고」 중, ‘수사대상자 명단’에 연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²³⁴⁾

1981.4.2자로 작성된 안기부의 「수사계획보고」 중, ‘세부계획’에는 “박경준 등 6명 수사기간 연장 1981.4.3-5.8”, “추가 대상자 3명(박미심, 한등자, 박선준) 연행 신문 1981.4.5-5.8”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은 없는 상태였다.²³⁵⁾

작성일자 미상인(1981.3월 또는 4월경으로 추정됨) 「진도거점 간첩사건 진행상황(체계도)」에 “1981.3.9부터 관련자 8명을 주거지에서 각각 검거 조사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당시 안기부 수사기록 중, 박근홍의 실제 연행일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박근홍이 연행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수원연초제조창’에서 1981.4.25자로 안기부에 보낸 ‘소재확인의회’ 공문에, “박근홍은 1981.3.9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근태처리에 문제가 되어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행방불명임으로 신원특이자이기에 소재확인을 의뢰”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박근홍이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시기는 1981.5.1 이라는 안기부의 공식기록과 달리 1981.3.9경으로 확인된다.

볼 수도 있지만, 안기부의 2차 수사계획서 이후에는 연행일이 1981.3.9로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현존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박동운의 연행일을 ‘1981.3.9경’으로 판단한다.

233) 「재북간첩 이영준 등 접선협이자 수사계획」 (1차, 1981.3.2)

234) 「재북간첩 이영준 등 접선협이자 추가 수사계획 보고」 (2차, 1981.3.16)

235) 「간첩 박경준 등 추가 수사계획 보고」 (3차, 1981.4.2)

【안기부 수사대상자 명단과 실제 구금 기간 현황】

연 번	성명	안기부 수사계획보고(국정원 보관자료)			안기부의 검찰 송치 자료 (검찰 보관 자료)	구속영장 청구까지 실제 구금 기간
		1차계획 (81.3.2자)	2차계획 (81.3.16자)	3차계획 (81.4.2자)		
1	이수례	3.9-3.18	3.19-4.2	4.3-5.8	5.1-5.8	3.9-5.8
2	박근홍	"	"	"	"	"
3	이영남	"	"	"	"	"
4	박경준	"	"	"	"	"
5	박동운	"	"	"	"	"
6	허현		3.14-3.18	"	"	3.14-5.8
7	박미심		"	4.5-5.8	"	"
8	박선준		"	4.5-5.8	기록 없음	?
9	한옥자		3.15-3.22		기록 없음	?
10	한등자			4.5-5.8	5.1-5.8	4.5-5.8
11	김광훈				기록 없음	?
12	이영익				기록 없음	?
13	박원택		3.14-3.20		기록 없음	?

한편, 안기부는 박동운 등 7명의 피의자 외에 참고인 신분의 사람들도 불법구금하였는데, 안기부 내부 보고서(‘이영남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이영남(박동운의 외삼촌)의 경우, “박영준이 간첩으로 남파되어 이수례와 접선 회합하였다는 상황적 심증은 충분하여 범행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나 이를 극구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보충증거 발견되지 아니하며, 본명을 방면할 시 타 연루자 및 피의자들과 통모하여 부재증명의 날조 및 증거인멸 등 공소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신병확보하였다가 관련 피의자 기소 후 신병처리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기부는 실제로 관련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인 1981.5.12

이영남에 대해 ‘각서 및 서약서’를 징수하고 방면한 기록이 존재하여, 이영남의 혐의를 밝히지 못하였음에도 1981.3.9-5.12까지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소 결

안기부가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제출한 공식 수사자료에는 “(박동운 등 관련자 7명을) 1981.5.1 임의 동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안기부 내부 수사자료(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1·2·3차 수사계획서, 체계도 등)에는 “1981.3.9경부터 연행”했으며, 2차에 걸쳐 불법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한 기록이 발견되어, 박동운 등 관련자 7명은 1981.3.9경부터 영장 없이 불법연행되었으며, 60여 일간 불법 감금된 상태로 변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차단된 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박동운 등이 안기부에서의 진술은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박동운의 외삼촌 이영남의 경우, 1981.3.9경 안기부에 연행되었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실체 공소되지도 않았고, 안기부 내부 수사보고에도 혐의입증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재) 불구하고, 안기부는 박동운 등을 검찰에 송치한 후인 1981.5.12 이영남에게 ‘각서 및 서약서’를 받고 방면하는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구금을 행하였다.

더구나, 박동운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81.5.4. 발부되어 같은 달 8일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안기부의 기록대로 ‘1981.5.1 임의 동행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박동운 등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통상의 구속영장으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불법 감금에 해당하므로 박동운 등에 대한 구금은 1981.5.1.부터 모두 불법이다.

박동운 등 관련자들에 대한 60여 일간의 불법구금은, 당시 안기부 수사부서의 수사계획(1, 2, 3차)에 의하여 결재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부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안기부의 장기간 불법 구금이 지휘라인 차원에서 묵인되어 관례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불법연행과 불법구금은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기관 스스로가 수사권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3) 수사서류 허위 기재 여부

가) 조사내용

(1) 안기부의 「인지 및 동행보고서」

안기부의 공식 수사기록중 각 연행자별로 작성된 「인지 및 동행보고서」에 의하면, “(박동운 등 관련자 7명을) 1981.5.1. 임의동행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박동운 등 관련자들이 1981.3.9.경부터 불법 연행되어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안기부는 공식 수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불법적인 수사를 은폐하였던 것이다.

(2) 안기부의 「실황조사서」

안기부 수사기록에는 혐의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범행현장을 현지답사 후 조사보고한 「실황조사서」라는 것이 있는데, 안기부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제출한 공식 수사서류에는 「실황조사서」 작성일이 각각 1981.5.4 / 1981.5.6 / 1981.5.7자로 적시되어 있으나, 안기부 내부 보고서에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작성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각각 1981.4.9 / 1981.4.20 / 1981.4.22자로 적시된 기록이 발견되었고, 이는 안기부가 수사서류의 일시(日時)를 조작하여 불법 구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나) 소 결

안기부는 검찰 송치 시에 실제 연행일 및 구금일수와 달리 모든 수사서류의 작성일자를 검찰 송치 시점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동운 등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안기부의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에 대해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안기부의 수사서류 허위기재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과거 공안사건의 경우, 이러한 수사서류 허위기재는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불법연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한 진술의 임의성 부재를 주장함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하는 이유가 되어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4)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가) 관련자 주장내용

박동운 등은 장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내용을 당시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항소·상고 이유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다.

박동운은 1981.9.26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81.5.8 서울 구치소에 올 때까지 ...(중략)... 고문을 받는 동안 저는 두 번이나 ‘유서를 쓰라’해서

썼으며 세 번이나 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이북에도 갔다 왔다고 만들어서 하도 억울하고 겁이 나서 아니라고 하니 고문을 하다 말고는 ‘집에서 입고 온 옷으로 갈아입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밖에 차에 총에 실탄을 장진하고 삼도 함께 갔다가 놓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수사관이 하는 말이 ‘수사하다가 한 사람 죽여도 문제가 없고 또 자기는 한 사람쯤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박경준은 1981.9.21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수사관들은 첫날부터 당장 고문으로 시작하여 ‘이북을 몇 차례 갔다 왔느냐? 박영준을 몇 번 만났느냐? 무전기, 라디오, 난수표, 암호문, 호출부호 등을 내놓아라.’고 매일과 같이 고문을 가하였으며 ...(중략)...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으며 매일 시간마다 죽고 싶은 일념뿐이었으며 ‘차라리 죽여 주라’고 수사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사관 말이 ‘너 같은 것은 여기에서 죽어보았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시체만 집으로 보내버리면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고문이 심하였던지 목욕탕에서 기절하였고 전신이 부어서 바지를 벗을 수가 없었으며 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벽을 잡고 뭉치다시피 움직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는 “밤과 낮을 분별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고문을 가하는데 인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너 같은 것은 여기에서 죽여도 도망치다가 총살당했다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송장만 집으로 보내버리면 그것으로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병든 몸을 나체로 온몸을 구타당하였고 거꾸로 수십 차례 물을 썼으며 몸을 결박하여 목욕탕에 집어넣어서 완전 기절하였고 두꺼운 발바닥이 부르터 터지고 무릎과 오금에서 상처의 농이 나오고 발이 부어서 바지를 벗지도 못하고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다니는 등 수다한 고문을 2개월 동안 매일 같이 당하는 등 도살장 짐승처럼 생지옥 그대로였으며 생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일념뿐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홍은 1981.10 작성한 탄원서에서 “(안기부에 연행된 지) 10여일이 지나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는지 5명의 수사관이 교대로 잠도 재우지 않고 손에 수갑까지 채우고 몽둥이와 주먹 발길 온몸은 시퍼렇게 변했고 감각도 없었으며 기진맥진해 쓰러져 있으면 물도 퍼다 붓고 옷을 벗겨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수건을 덮어 계속 물을 부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쓰고 틀렸다고 하면 다시 쓰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으며 수사관이 ‘진즉 이렇게 했으면 맞지 않지 한국 사람은 두들겨 맞아야 돼’하면서 야릇하게 웃던 모습은 지금까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허 현은 1981.9.26 작성한 탄원서에서 “수사관이 ‘우리나라 정보국이 세계에서든 수사를 제일 잘하고 미국이나 소련 정보국보다 더 무서운 곳인데 여기는 한 번 오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고 여기서 고문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유서를 쓰라’고 하여서 유서를 몇 번 썼습니다. 그러면서 양발을 묶어서 공중에 달고 ‘박영준이 진도에 와서 만났느냐’고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여하튼 만났다고 할 때까지 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몸이 원채 많이 붓고 가죽은 터지고 살은 찢어지고 뼈는 부서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의 육신을 상체부터 하체까지 커다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목뼈와 머리를 이제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수례는 항소이유서에서 “박영준이가 진도를 왔다고 하는데 말을 바로 해야 안 죽이고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저는 만난 일이 절대 없다고 해도 제 말은 소용이 없고 수사관 말들만 옳고 우리말은 들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만난 일이 없다고 하면 때리기 시작을 하고 정신없이 쓰러져 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하두 못 견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신이 나면 온 일이 없는데 어찌할까 하면 ‘좋아 너 멋대로 하라’고 하면서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등자는 탄원서에서 “제가 정보부에서 꼭 한달을 지냈는데 매일같이 몽둥이로 맞자, 처음에는 너무도 억울하여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법이냐’며 곡을 하고 울었더니 좀 더 지내보라며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때리더군요. 굶기기를 밥 먹듯 하고 사흘을 계속해서 굶긴 뒤 책상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자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적도 있습니다. 아주 악질년이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고 다른 사람은 다 말했는데 너만 안했다하며 가장 질기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뺨을 치기도 하며 구둣발로 차서 이리저리 굴리기도 하였습니다. 세면대에 얼굴을 처박게 하고는 그 물을 다 마셔서 다 없어질 때까지 위에서 머리를 누르고 있다가 물이 없어지면 다시 처박게 하여 물을 먹이고 옷을 다 벗기고서 몽둥이 사이에 다리를 끼어 조이기도 하였으며 다리가 너무 부어서 내의를 벗을 수가 없어 찢어버리고 거기에 약을 바르라며 갖다 주더군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방에 데려가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 푸줏간에 고기 매달려 있는 듯 매달리게 하고는 주전자로 물을 먹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조사내용

(1) 당사자 면담 내용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안기부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 (81.3.7 서울 안기부로 연행되어)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6-7명이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데 북한 출신이라는 이 계장이 ‘니 애비(박영준)가 서울 구치소에 붙잡혀 있고 다 이야기했으니까 언제 아버지를 만났고, 언제 북한을 따라갔다 왔는지 이실직고하라’고 하여 ‘아버지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니 밤낮으로 잠도 안재우고 고문을 했다.
- 손바닥을 하도 맞아 손을 안쪽으로 굽힐 수도, 손등 쪽으로 굽힐 수도

없었고, 발바닥도 맞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화장실도 기어서 다닐 정도였고 옷을 다 벗기고 수건에 물을 적혀 야전침대 봉으로 엉덩이를 때려 피도 터지고 했고 무릎을 꿇린 상태로 허벅지와 장단지에 경찰 곤봉 같은 것을 끼우고 양쪽에서 밟았다.

- 기절하면 바깥(양동이)로 갔다가 물을 붓고 다시 깨어나면 다시 그 짓거리를 했다. 발에 수갑을 채우고 정강이에 경찰곤봉을 굴려 지금도 상처가 있다. 3-4명이 1개조로 해서 4교대인가 하는데 총 책임자가 그 이 계장이었다. 당시 거기에는 조 계장, 박 계장, 신 계장들도 있었는데 이 계장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했다.
- 씨를 말린다고 시멘트벽에 성기를 올려놓고 눈감은 상태에서 신발로 때리는 짓을 하면 기절하고 그러면 찬물로 깨우고 그랬다. 요즘도 자다 일어나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인데 26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그 고문당 했던 것을 하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아닌 것을 ‘맞다’ 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상태로 경찰 곤봉보다 긴 봉을 손과 발 사이에 끼우고 탁자 2개에 봉을 걸쳐 놓고 머리가 뒤로 딱 젖혀 물을 붓는 물고문을 했다.
- 내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이 계장이라는 사람이 총을 든 경비원을 불러 ‘이 놈 사살해버려’ 라고도 했는데 그 때 정신이 나가 어떻게 살아 있는지는 모르겠다.
- 하루는 ‘니가 간첩이라는 것을 시인 안하면, 어머니를 불러다가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기고 고문을 할 것이고 그래도 시인 안하면 처(당시 임신상태로 만삭이었음)도 잡아올 것이고 그래도 안하면 아이들도 잡아오겠다고 하고 그래도 안하면 뱀 굴에 집어넣겠다.’ 고 하였다.
- 이 계장이 ‘여기 안기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곳이다. 니가 여기서 죽어도 종이 한 장 쓰면 끝난다. 니가 별스럽게 해도 다 쓸데없다’ 고 하였고, 어머니, 처, 아이들 있는 곳에서 이런 짓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첩질 했다’ 고 하니 고문을 멈추었다.

박미심²³⁶⁾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안기부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236) 박미심은 박동운의 고모, 박영준의 여동생. 허 현의 처로 81.3.14 안기부에 연행되어 감금된 채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남자들을 따라 남편 허 현과 같이 진도경찰서로 갔고 그 뒷날 안기부 직원 2명이 버스를 태워서 광주로 데리고 가더니 가둬놓고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
- 남편은 서울로 가고 본인은 진도로 내려왔는데 얼마 후 수사관들이 다시 데리러 와서 서울로 데리고 가더니 어딘지는 모르는데 눈감고 엎드려 있으라고 하더니 터널 같은 곳에 데리고 갔다.
-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몽둥이로 때리고 어떤 때는 의자에다 묶어놓고 때렸고, 심지어 여자 아래까지 꼭꼭 지르고 3명이 교대로 문초를 했다.
- 수사관이 ‘너희 오빠가 너희 집 마루에서 네 이름을 불러서 네가 나가 오빠를 만났다’ 고 하였다. 본인은 오빠 얼굴도 모르는데 날마다 때리고 친척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고 잠도 안 재우고 때렸다.
- 살아나온다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징헌 고문을 안 당할까? 죽어 불면 안 맞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거기에는 죽을 방법이 없었다.

한등자²³⁷⁾는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안기부에서 고문 및 가혹 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 어느 날 느닷없이 잠자는데 젊은 사람 3명이 들어오더니 남편 박경준을 데리고 갔고 한달 넘어서 진도 경찰서로 오라고 하여 가보니 ‘남편이 간첩으로 잡혀갔다’ 고 하였다.
- 한 달 동안을 일주일에 한번씩 (진도)경찰서에서 정보부 직원들이 조사 하면서 ‘시숙(박영준) 도시락 싸줬다, 집에 와서 재워줬다’ 고 하여 ‘안 그랬다’ 고 하니 그렇게 때렸다.
- 네 번째 잡혀가던 날, ‘내가 진짜 간첩이라면 날 죽여주소’ 라고 하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 고 하였는데 집에 돌아온 후, 한식날 젊은 사람 2명이 남산 정보부로 데려갔다.
- 고문 받았다는 얘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한달 열흘을 사는 동안에 오후 5시가 되면 꼭 열대씩을 때렸다.

237) 한등자는 박동운의 숙모, 박영준의 동생인 박경준의 처로 1981.4.5 안기부에 연행되어 감금된 채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무릎을 꿇리고 때리고, 발바닥을 펴 놓고 때리고 팬티만 입혀놓고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천장에다 달아놓고 물을 먹였다. 거기까지만 내가 알고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 나중에는 몽둥이를 안 맞으려고 나도 모르게 ‘시숙(박영준)을 봤다’ 고 했고 심지어 ‘이복을 갖다 왔다’ 고 했다. 수사관들이 다 써주면서 ‘베끼라’ 고 하고 ‘써준 것도 못 베끼냐’ 고 했다. 보고 그리기라도 할 테니까 때리지 말라고 했다.
- 구타한 사람이 (진도) 동외리에 사는 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내가 이수례를 담당할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니 내가 경준이 각시를 담당하련다고 그랬다’ 고 하였다.

박근홍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안기부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 (1981.3.9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질문이고 뭐고 없었으며 처음 하루 동안은 무조건 실컷 맞고 난 다음 군복으로 갈아 입혔다.
- 하루는 안기부 수사관이 ‘너희 아버지 박영준이 간첩으로 서대문형무소에 붙잡혀있다. 간첩한 행동을 그대로 말하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니가 말하는 것이 틀리면 너는 여기서 죽는다’ 라고 협박하였으나 본인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 양손을 묶은 다음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으면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면 손을 까딱까딱해라’ 며 고문을 하였으며, 양발은 묶은 채로 경찰 곤봉 같은 것으로 정강이를 문지르기도 하였다.
- 어떤 수사관은 종이에 불을 붙여 본인의 음모를 태우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였다.
- 가장 악독한 수사관은 ○○○라는 사람으로 수사관들끼리 부르던 별명이 늑대였으며, 불칼, 쌍칼, 간첩이라는 별명의 수사관들도 있었다. ○○○는 언젠가 소설가 황석영씨가 김포공항에서 체포될 때 TV 화면에 얼굴이 비쳤던 사실이 있다.
- 일주일 정도 지나자 밤과 낮이 구분이 안 되었고, 보름 정도 지나 안기부 수사관이 종이와 펜을 주면서 태어나서부터 안기부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일은 하나도 빠지 말고, 년도 순으로 작성하라고 하여 몇 백 장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 20일 정도가 지나서는 안기부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원가를 작성하였는데, 그대로 안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으며, 수사관이 ‘진작 이렇게 했으면 맞지 않지. 한국 사람은 두들겨 맞아야 돼’ 하면서 야릇하게 웃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박경준은 1998년 사망하여 면담할 수 없어 생전에 작성한 탄원서 등을 참조하였다.

이수례는 진실위 면담에서 조사관의 ‘(안기부 수사기록에) 남편 몇 번 만났다고 되어 있는가?’ 등의 질의에 “그런 거 안 물어봤어. 당시 나를 조사 했던 사람이 나보고 나이도 같고 친구라고 하대?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라고 진술하는 등 조사관의 질문에 정상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정신상태였는데, 질의응답 도중 “안기부 수사관들과 정이 들었어. 그 당시는 내가 맞았어도 지금은 그 사람들 너무 보고 싶어. 오늘 같이 안 왔어?”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2) 관련자들의 신체감정신청

박동운 등 관련자들은 제1심 재판 당시부터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의 상처가 남아 있다”면서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신청하기도 하고 직접 몸에만 상처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입증하려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 변호인 박종창 : 피고인들에게 안전기획부에서 고문 받은 흔적이 있으면 재판장께 보이려고 진술하다.

재판장 : 변호인의 신문을 계속할 것을 명하다.(제5차 공판조서, 공판 기록 500-502쪽)²³⁸⁾

238) 2006년 1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동운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상민 위원)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판사에게도 그 상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참고인 박동운) 예,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랬더니 그 당시 판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참고인 박동운) 판사님은 본 체도 안하고 그리고 또 상처가 남아있을 때 고법 때 박종창 변호사와 박준 변호사, 황석연 변호사가 신체감정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법에서 기각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200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회의록, 70쪽)

(3) 관련자들을 치료했던 의사의 진술

박미심, 한등자, 허 현, 박경준이 석방된 후, 고문의 상처 등을 치료했던 의사 오OO(1964년~2003년경까지 진도에서 OO병원 운영)은 박동운 등의 재심청구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허 현씨 부인(박미심)하고 경준씨 부인(한등자)이 병원에 왔습니다. ... 첫 번째 아주 피로하게 보이고 두 번째 몸 전체가 심하게 부어있었습니다. 세 번째, 반점, 까만 점처럼 시커멓게 보이는 멍인데 그걸 보여주더군요. 왜 그러느냐 하니깐 거기서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몸 전체가 쭈시고 아프고 관절 이런 데가 아주 죽었습니다’라고 전신통, 관절통을 호소하더군요. 특히 무릎 쪽이 너무 많아 아프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은 믿기 힘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중정에서 너무나 심하게 당했다. 두 달 가차이 갇혀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물고문도 당했다. 심지어는 옷도 벗겨 놓고 때리더라면서 많이 울더군요. ... 이 가족들은 항상 죽고 싶다 했어요.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기가 막히고 억울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 그 말이 입에 붙어서 레코드 모양으로 자꾸 했습니다. ... 여자들을 그렇게까지 때리고 했을까 싶었지만, 그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자세히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몸에 반점, 멍이 그걸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약은 주로 관절염에 대한 것으로 대개 오라덱스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부어있는 경우는 진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다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나니까 허 현씨가 병원에 왔더군요. ... 기억나는 것은 엉덩이를 보여주는데 그게 딱딱하고 여기저기 멍이 있어서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 허 현씨도 아주 명철한 사람이고 면에서 제일가는 청년이어서 부락 이장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흐리네 어찌네 하는데 아주 이상스럽게 변했더군요. 심하게 그럴 때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해주기도 했습니다. 허현이는 여러달을 치료했으나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걷기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견서를 떼주며 해남에 있는 우석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박경준씨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느 날 저에게 거기 중정에서 당한 일을 털어놓더군요. 비행기 태우는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도 묶어 놓고 그 사이로 몽둥이를 끼워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남자 성기에다가 종이를 씌워갖고 그걸 불로 태웠다. 물고문도 당했다.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다는 것을 말해 주더군요. 허 현씨가 당했다는 것하고 비슷한 고문이었습니다. 여하튼 도저히 사람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한테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007.4 박동운 외 4인 재심청구서 48-49쪽)

(4) 연세대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의 진술

장신환(현 원광 디지털대학 교수)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간부로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1981.3.31 안기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박동운 등 관련자들이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던 시기와 일치함),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1981.3.31 연행되어 4.23 구치소로 송치되기까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옆에 간첩사건으로 끌려 들어온 일가가 있었다.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가 진도에선가 잡힌 일가족 간첩사건이라고 했으며 본인보다 훨씬 심하게 고문을 받는 듯 했다.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한 아주머니(간첩사건 피의자 중 한 명)는 걸음도 제대로 걸지 못할 정도였으며 정말 그 사람들은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닐 정도였다.

다) 소 결

사건 당사자 박동운, 박미심, 한등자, 박근홍이 검찰 수사 당시와 재판당시 법원에 제출한 항소·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안기부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호소한 점과 사건이 발생한지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임의동행이 아닌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되어 외부와 단절된 채로 60여 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점, 각종 혐의가 구체적 물증 없이 관련자들의 자백만으로 구성되었고, 그러한 진술에 임의성이 없는 점, 박동운이 재판정에

고문당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직도 몸에 상처가 남아 있으니 옷을 벗어 보여주겠다.”며 신체감정 신청을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박동운 등이 안기부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신체감정신청을 하는 등 안기부 고문 및 가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

진실위는 동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당시 관련자들이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당시 안기부 수사관의 명단을 요청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5) 허위자백 강요와 범죄사실 및 증거조작 여부

가) 관련자 주장내용

(1)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박동운 등 관련자들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항소·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다.

박동운은 항소이유서에서 “고문에 또 기절하여 한참 후에 깨어나니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북에 갔다 온 것은 똑같다 하면서 계속된 고문에 견디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인데 수사관은 10명이 넘는 인원이

교대로 잠을 채우지 않고 고문을 하니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일념으로 또 두 번째로 (북한을) 갔다 왔다고 했으며 이북에 올라간 경위나 이북에 가서 구경한 것 교육한 것 등 저에게 말을 하라고 하지만 이북에 가보지 않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독한 고문에 그저 정신이 나가고 몸만 남아서 하나의 시체와 다른 바 없어서 ‘예, 예’ 대답만 하고 눈은 수사관들의 손에 든 몽둥이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보고 수사관들이 진술서를 만들어서 불러주면 저는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여 저의 진술서를 만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박경준은 탄원서에서 “조서가 완성되면 하향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다른 수사관이 완성된 조서를 보고 부르는 대로 받아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청천벽력과도 같이 전체가 허위사실로 너무도가공할 엄청난 것들이어서 수삽 질 낭떨어지에 굴러 떨어진 심정이어서 글씨를 쓰지 못하고 멍하니 정신을 놓고 앉아 있으니 빨리 쓰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불가항력이라 하는 수 없이 눈물과 한숨을 집어 삼키고 부르는 대로 받아썼습니다. 수사관이 내용을 검토한 후 반성문을 쓰라면서 진술서를 그대로 베끼라고 해서 전부 쓰고 나니까 또 검토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수례는 항소이유서에서 “박영준이가 진도를 왔다고 하는데 말을 바로 해야 안 죽이고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저는 만난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해도 제 말은 소용이 없고 수사관 말들만 옳고 우리말은 들어주지를 않았습시다. 저도 만난 일이 없다고 하면 때리기 시작을 하고 정신없이 쓰러져 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하도 못 견뎌 만났다고 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홍은 탄원서에서 “그때부터는 불러주는 대로 쓰고 틀렸다고 하면 다시 쓰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으며 ... 그리고 또 ‘무전기도 내 놓아라’ 얼마나 무섭게 맞았는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수사관에게 ‘지금이라도 한 시간만 내보내면

서울에 있는 고물상 전부 뒤져 사다 주겠습니다.’ 저는 참지 못해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허 현은 탄원서에서 “오늘 날까지도 6·25 당시 서울에서 행방불명 되었다고 듣고 있으며 더는 아는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정보국에서는 본인이 직접 월북을 했다고 갖가지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문에 못 이겨 월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월북 동기와 이북을 갔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동해안으로 해서 함흥으로 갔다고 하니깐 간첩은 동해안으로 가지 않고 서해안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으로 갔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금강산도 구경하고 했다고 하였더니 마이태자의 묘가 어디 있더냐고 묻기에 하도 여러 곳을 구경하여서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북에서 가지고 온 장비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하기에 저의 집 마루 밑에다가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더 갖은 고문이 시작되어서 또 갔다 왔으니 꼭 믿어 달라고 수사관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등자는 탄원서에서 “그네들(안기부 수사관들)이 써 준 자백서를 내가 자백한 것처럼 내 필체로 베껴 썼지요. 그네들이 말하면서 받아쓰라고 해서 받아썼으니 속도가 느리고 맞춤법이 틀리다며 자기들이 써주면서 베껴 쓰라고 하더군요. 그 자백서에는 내가 이북을 여러 번 다녀왔으며 박영준을 만났고 라디오를 받았다는 등 지금은 기억조차 어려운 여러 가지가 쓰여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2)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한 증거조작

안기부는 박동운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수첩, 라디오, 자귀 등을 제시하였으나, 박동운은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증거물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 [수첩 관련] : 본인은 그 수첩을 어디에 두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가택 수사하여 그 수첩이 나왔는데 안전기획부에서 10.30까지 대구에서 근무한 기재를 보고 혹독한 고문을 하여 본인에게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그런 기재를 하였다 강제로 진술 기재케 한 것이고 검찰에서도 그와 똑같이 진술기재 된 것입니다.(제2차 공판 조서, 공판기록 777-778쪽)
- [라디오, 자귀 관련] : 고문해도 안 되겠는지 무전기를 (자귀로) 파괴한 걸로 하고, 난수표는 태운 걸로 하고 이북방송은 집에 있는 라디오로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라디오는 듣지도 않고 또 저의 집에 라디오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있는 고장난 오래된 라디오를 증거물로 채택했습니다.(항소이유서)

나) 조사내용

(1) 관련 면담 내용²³⁹⁾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안기부 수사관이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면서 자술서, 반성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작성 경위를 진술하였다.

- 고문 끝에 간첩질했다고 자백하고 나니 2살 때부터 기억나는 것을 모두 다 쓰라고 하였고 자술서를 쓸 때는 안 때리니까 거짓말을 막 쓰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무덤을 내가 파고 있는 것이었다.
- 그것을 보고 언제, 언제 간첩질했다고 안기부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썼는데 그 내용이 안기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 자술서를 가지고 수사관들 맘대로 정하였는데, 처음에는 북한에 15-16번 정도 갔다 왔다고 했고 어머니, 동생, 작은 아버지, 고모부도 가고 심지어는 작은 어머니, 고모까지도 북한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
- 3.7 잡혀가서 5.8 송치되었으니까 아마도 4월 중순경이나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이나 본인이 북한을 15-16번 갔다 왔다는 것을 싹 빼고 두 번으로 압축을 했다.
- 처음에는 가족들 전부 아버지를 따라 월북했다고 몰아가다가 나중에는

239) 고문 및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앞의 <4) 고문 및 가혹행위>를 참조

다른 가족들은 다 빼고 나만 2번 갔다 왔다고 했고 아버지를 만난 것도 처음에는 중학교 3학년 때로 하다가, 너무 어리다며 자기들 맘대로 동생 근화가 죽은 해인 63년으로 바꿔버렸다.

- 호출부호가 뭔지도 몰라 엄청 혼났는데, 통신담당 전문가라는 사람을 데려와 3일간인가 생각나는 숫자를 막 쓰라고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호출부호라는 것을 만들었다. 난수표라는 것도 본 적이 없다.
- 수사관이 군 생활에 대해 물어보아서 '20사단 60연대 작전과에서 군 생활했다' 고 하니 '교안작성을 해 봤냐, 교안작성을 해봐라' 고 하여 생각나는 대로 대충 적어주니 육군교본인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재판에 제출되었다.
- 북에 오고 갈 때 조도, 전두리 해안 등을 통해서 갔다는데, 사실 그곳은 농협 재직시 출장 다녔던 곳이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라고 한 것 가운데 조도, 전두리 해안 등을 가봤다고 적은 것이다.
- 그런데, 이 계장이 '거기가 북에 올라가고 북에서 내려온 지역이다, 약도를 그리라' 고 하면서 지도를 가져다주고 '너무 자세하게 그리면 안 되니까 대충 그려라' 라고 했고 그래서(지도를 보고 그려서) 등고선까지 그리게 된 것이다.

박미심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안기부 수사관이 고문 및 가혹 행위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진술하였다.

- 박영준을 6·25 때 헤어진 이후 본 적이 없는데도 만난 사실을 불라고 하면서 수사관들이 저녁에 술을 먹고 와서 구타하였고, 박영준을 잡아 왔다고 하여 '제발 내 앞에 데려와 달라, 간첩으로 내려왔다면 내가 죽이겠다' 고 하였는데 데려오지도 않았다.
- '네 식구들이 모두 이북을 갔다 왔다고 다 말했는데 너는 안했다고 하느냐?' 고 하면서 마구 때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의사가 옆에 와 있었는데 수사관이 '이 거지같은 년이, 하는 행동도 거지같이 한다' 고 야단쳤다.
- (검찰 조사시에) 검사에게 '나는 사실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밥이 나 알고 일이나 아요. 오빠는 내가 2살 때인가 3살 때 나가서 얼굴도 기억이 안나요. 정보부에서는 전부 글로 써서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쓰라고 해서 안하면 맞으니깐 그대로 했다' 고 했다.

한등자는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안기부 수사관이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진술하였다.

- 나중에는 몽둥이를 안 맞으려고 나도 모르게 시숙(박영준)을 봤다고 했고 심지어 이복을 갔다 왔다고 했다. 수사관들이 다 써주고 베끼라고 하고 써준 것도 못 베끼냐고 했다. 보고 그리기라도 할 테니까 때리지 말라고 했다.
- 자술서는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했는데 배운 게 없어서 못쓰니까 보고 베껴 쓰라고 했다. 이복에 갔다 왔다는 것과 시숙 도시락을 싸준 것 등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보고 베끼라고 해서 보고 베낀 것이다.
- 박영준이 내려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수사관이 박영준이 잡혀 있다고 하길래 내가 ‘데리고 와라. 간첩이라면 내가 보는 자리에서 죽이겠다’ 고 했으나 데리고 오지 않았다.
- (문초에 못 이겨) 이복에도 다녀왔다고 하자 ‘이복에서 무슨 책을 봤느냐’ 고 묻길래, ‘꼬부랭이 글씨도 있고, 한문도 있고 그렇디다’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사람을 데려다 고문하는 우리들이 그렇다’ 고 하였다.

박근홍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안기부 수사관이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일주일 정도 지나자 밤과 낮이 구분이 안 되었고, 보름 정도 지나 안기부 수사관이 종지와 펜을 주면서 태어나서부터 안기부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일은 하나도 빼지 말고, 년도 순으로 작성하라고 하여 몇 백 장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 20일 정도가 지나서는 안기부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원가를 작성하였는데, 그대로 안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으며, 수사관이 “진작 이렇게 했으면 맞지 않지. 한국 사람은 두들겨 맞아야 돼” 하면서 야릇하게 웃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 안기부 수사관들은 아버지가 본인의 수원 하숙집에 찾아와 본인이 아버지와 같이 해안가에 가서 배를 타고 해주로 갔다면서 본인의 암호

(호출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가 628이라고 알려주었고, 무슨 초대소에서 김일성 교육을 받았고, 라디오 청취요령, 수원 화성 해안가로 돌아왔다는 것 등을 불러주었으며, 고문에 못 이겨 불러주는 대로 다 작성하였다.

-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다음에는 써 놓은 것을 머리에 주입시키기 위해 거꾸로 매달았다가 놔주다가를 수십 번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여러 번 쓰도록 하면서 날짜(월복 등 간첩 행위 일시)를 조정하였다.
- 안기부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무렵, 수사관들이 투덜거리면서 들어오더니 본인이 복에 올라간 것은 모두 다 뺐다.

박근홍의 처 안금자는 진실위 면담에서 안기부 수사관의 기만과 강요에 의해 자술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남편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정도가 지난 81.5.초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남자들이 찾아와 “남편은 아주 편안하게 잘 있으니 글 하나만 써주면 남편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면서 미리 작성해 온 종이를 제시하고 그대로 작성할 것을 강요했으며, 남편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2) 간첩 행위 증거 조작 관련 면담 내용

【안기부가 제시한 박동운의 간첩행위 관련 증거물과 박동운의 주장】

증거물	증거 내용	박동운의 주장
수첩	박동운이 1971.10. 2차 월복 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풍국제지 근무기간을 71.10.말까지 기재	오히려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월복했다는 시기에 대구에 있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라디오	박동운이 북한방송 청취에 사용	북한방송을 청취하기 위한 무전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호출부호 등은 전혀 모르는 것
자귀	박동운이 북한과 통신한 무전기를 파괴했을 때 사용	
농협 대차 대조표 등	박동운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기밀 제공	당시 농협에는 전자복사기가 없었음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안기부가 제시한 간첩 행위 증거물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로 조작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첩 관련] : 안기부가 왜 1971.10.3에 북한을 갔다 온 것으로 잡았는가 생각을 해보니 10.3이 추석이었는데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추석과 설은 진도로 내려가니까 추석을 지내러 진도에 온 것을 대구로 가지 않고 바로 북한을 갔다고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수사관이 압수된 수첩에 적어놓은 풍곡제지 대구사무소 근무 날짜(1969.12.25경-1971.10.하순)를 발견하고 본인이 그것을 거짓으로 적어냈다고 하여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버렸다.
- [라디오, 자귀 관련] : 재판과정에서도 (내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었고 자귀하고 현 라디오가 나온 것인데, 자귀는 외할아버지가 연장으로 쓰던 거였고, 라디오도 외할아버지가 연속극을 듣던 것이다.
- [농협 대차대조표 등 관련] : 1979년 진도농협 대차대조표 등을 본인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해서 (북한공작원에게) 줬다고 했는데, 당시 진도농협에는 복사기가 없었고 목지를 사용하던 시절이다. 재심청구시 원본(당시 진도농협에 복사기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을 제출할 것이다.

다) 소 결

박동운 등 관련자들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항고·상고 이유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고, 면담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즉, 안기부 수사관들이 박동운 등 관련자들에게 고문 및 가혹 행위를 가하여 자술서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들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여 범죄 사실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안기부가 박동운의 간첩 행위 증거물로 제시한 자귀, 고장난 라디오, 농협 대차대조표, 수첩은 범죄사실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던 것이며, 안기부가 제시한 증거물에 대한 박동운의 진술은 고문 및 가혹행위를 이겨내지 못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 주장한다.

자귀와 관련하여 안기부는 박동운이 북한과 통신한 무전기 등을 파기할 때 사용하였다고 하나 적용된 범죄사실이 증거인멸이 아닌 이상 자귀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박동운의 수첩에는 박동운이 1971.10. 말까지 대구 풍국제지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북한으로 탈출하여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될 수 있으나 박동운의 수첩 내용이 허위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이는 박동운의 알리바이를 탄핵할 수 있을 뿐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박동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하여 월북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동운 등이 안기부에 의해 불법연행되어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한 자술서, 반성문,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임의성이 없다는 점, 뒤에서 살펴볼 ‘박동운이 라디오를 이용하여 A-3 방송을 청취하였는가?’²⁴⁰⁾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소내용과 다르다는 사실, 간첩 행위를 위한 무전기 등 공작물품을 자귀로 파괴하였으므로 자귀가 간첩 행위의 증거물이라는 안기부의 모순되는 주장을 역으로 추정한다면, 위와 같은 박동운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6) 박동운 등 관련자들의 간첩행위 여부

【 박영준은 간첩으로 남파되었는가? 】

동 사건은 6·25 이후 자진 월북한 북한노동당 연락부 소속 재북간첩 박영준이 수차례에 걸쳐 남파되어 박경준 등 가족들을 접선한 후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240) ‘박동운의 통신호출부호 관련’ 부분 참조

내리는 등 간첩활동을 하였고, 박경준 등은 박영준의 지령에 의해 국가 기밀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박동운은 2차례에 걸쳐 박영준과 함께 월북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박영준의 간첩 남파 여부와 가족 접선 여부가 동 사건의 여러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이다.

안기부는 관련자들의 자백을 근거로 재북간첩 박영준이 1957~1976년까지 5차례²⁴¹⁾ 남파되었다고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박동운 등 관련자들은 6·25 이후 박영준의 생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면서 안기부에서의 자백은 수사관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북간첩이라는 박영준이 남파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박동운의 일가족은 허위자백에 의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동조했다는 죄로 처벌 받은 것이다.

(1) 안기부 의견서에 나타난 박영준의 남파

안기부 의견서와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박영준은 1957~1976년까지 5차례 남파되어 박화룡²⁴²⁾, 이수례, 박경준, 박동운, 박근홍을 접선하고, 박동운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동반 입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기부 의견서와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박영준의 남파내용】

차수	일자	접선 장소	접선 인물
1차	1957.7. 초순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박화룡의 집	이수례, 박화룡
2차	1963.8. 하순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영호비각 뒤	박경준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박화룡의 집	이수례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태성들	박경준, 박근홍
		목포시 죽동 박동운의 자취방	박동운

241) 안기부는 언론 발표문에서는 박영준이 6차례 남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42) 박영준의 父

3차	1965.5. 중순	목포시 연동 박동운의 자취방	박동운(동반 입북)
4차	1971.9. 하순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당너머재	박경준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태성들	이수례
		대구시 중구 풍곡제지 대구사무소	박동운(10.3 동반 입북)
5차	1976.10. 중순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도살장	박동운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 석현재	이수례

(2) 안기부 언론보도 자료에 나타난 박영준의 남파

안기부 의견서와 언론 발표문을 비교해보면 박영준이 남파됐다는 횟수와 시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안기부의 의견서에서는 박영준이 총 5차례에 걸쳐 남파되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문인 「진도 거점 고정간첩 박동운 일당 사건 보도자료」에서는 6차례 남파되었다고 발표²⁴³⁾하였다. 발표문에서 “박영준은 1차 : 1957.5, 2차 : 1963.5, 3차 : 1965.5, 4차 : 1971.9, 5차 : 1974.9, 6차 : 1976.10 침투하였다”고 하였으나, 의견서에는 박영준이 5차인 1974.9 남파되었다는 사실이나 연고자들을 접선하였다는 사실이 없다.

(3) 안기부의 박동운 진술서 등에 나타난 박영준의 남파

박동운의 안기부 진술서 1회와 피의자신문조서 1회에는 “1974년 父 박영준과 38세 가량의 성명미상 남자를 함께 만났다”는 내용의 언급²⁴⁴⁾이

243) 해방직후부터 남노당원으로 활동하다가 6.25 당시 서울에서 우익인사 등을 학살 후 북괴 의용군에 입대, 자진 월북한 진도출신 박영준(60세)이 대남 간첩으로 선발되어 57.5경부터 76.10까지 6회에 걸쳐 고향인 전남진도에 침투했다고 발표했다.

244) 박동운 안기부 진술서 1회 및 피신 1회 : 1976.10 중순 진도 아내의 화장품 가게로 38세 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찾아왔다. 2년 전 쌍정리 외가로 찾아와 아버지에 대한 연락을 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도살장에서 박영준을 접선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네 번째(다섯번째에서 수정) 뵈는 셈이었다. 다음날 아침 포섭대상자 4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농협 정문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37-38세 가량의 남자를 만나 그에게 전해주었다. 그 남자는 74년에 아버지를 만났을 당시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들었을 뿐 그 사람에 관하여는 자세한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있으나, 이후의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안기부 의견서’와 ‘검찰 공소장’에도 일체 언급이 없다. 또한 박동운은 진술서 1회와 피의자신문조서 1회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은 총 다섯 번이었다”고 작성했다가 “네 번”으로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다.²⁴⁵⁾

또한 안기부의 수사자료 중 「진도거점 간첩 사건 진행 상황(체계도)」에는 ‘박영준이 1974년에 남파되었다’는 것과 ‘박동운이 1974년에 박영준을 접선하였다’는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거짓말탐지검사결과보고」에 ‘검사경위’ 중 “1974.9 일자미상 21:00경 진도읍 쌍정리 뒷등에서 박영준을 접촉”(74년 포함 박영준과 5회 접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황조사서」에 ‘대상 장소’ 중 “진도읍 쌍정리 뒷등²⁴⁶⁾ : 재북간첩 박영준과박동운 접선 회합 장소”라고 기재하고 ‘박동운 접선 지점(뒷등) 약도’ 1매와 ‘뒷등 전경’ 사진 4매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안기부 의견서나 검찰 공소장에는 1974년에 박영준과 접선한 피의자가 1명도 없으며, 박영준의 다른 남파활동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4) 박동운 면담 내용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박영준의 남파에 대해 “(본인의) 안기부에서의 진술은 각종 고문 및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6·25 이후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 얼굴을 모르겠다고 하고 나도 아버지 얼굴이 그려지지도 않는다.
- 안기부는 1963년인가 겨울에 아버지를 목포 죽동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안기부 말대로 한다면 아버지는 神하고 똑같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245) (박동운 진술서 1회 > 참조). 안기부의 발표문 상으로는 박동운이 박영준을 ‘다섯 번’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의견서에는 ‘네 번’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246) 안기부 수사자료 「체계도」, 「거짓말탐지결과보고」, 「실황조사서」에는 74년 박동운이 박영준과 접촉한 장소가 “진도읍 쌍정리 뒷등”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박동운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어디에도 “쌍정리 뒷등”에서의 접선을 진술한 부분이 없어 안기부 수사관의 강압 수사에 의해 진술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박동운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한다.

- 당시 자취하면서 이사를 하면 옆 집 사는 사람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꼭 잘 찾아왔고 당시 통금시간도 있는데 꼭 밤 12시 넘어서 잘도 찾아왔다는 것이다.
- 그것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진도에 열 몇 번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었는데, 농촌에는 밤에 눈에 물을 대야하기 때문에 통금이 없었고 아버지가 왔다갔다하면 동네사람들 중 누군가 봤을 텐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1974년 접선 혐의 등과 관련하여) 자술서를 가지고 수사관들 맘대로 정하였는데, 처음에는 북한에 15-16번 정도 갔다 왔다고 했다. 어머니, 동생, 작은 아버지, 고모부도 가고 심지어는 작은 어머니, 고모까지도 북한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며, 3.7 잡혀가서 5.8 송치되었으니 아마도 4월 중순경이나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이나 본인이 북한을 15-16번 갔다 왔다는 것을 싹 빼고 두 번으로 압축을 했다.

(5) 소 결

동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에서 분석하였던 바와 같이 안기부는 박영준의 남파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박영준의 남파가능성을 염두하고 박영준이 남파하였을 시에 접선 가능한 혐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준을 접선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자백을 받아낸 것이고, 결국 안기부가 내세운 박영준의 남파사실 입증 증거는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없다.

안기부 의견서와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의하면 북한 노동당 연락부 소속 재북간첩 박영준은 1957~1976년까지 5차례 남파되었다고 하나,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박영준이 북한노동당 연락부 소속이라는 근거와 수차례 남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안기부는 동 사건 수사를 착수함에 있어 박영준의 남파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박영준의 남파가능성을 상정하였던 것으로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박영준의 남파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안기부 수사 당시 박영준을 만났다고 자백한 관련자들은 모든 혐의사실이 안기부 수사관의 고문 등 강압수사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기부의 강압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관련자들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더구나, 안기부 의견서와 언론 발표문에 박영준의 남과 시기 및 횡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사내용 분석 결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박동운 등 관련자들의 주장처럼 안기부 임의로 혐의를 추가·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

박동운의 ‘1974년 박영준 접선 혐의’에 대해, 박동운은 안기부 1회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1976년 박영준 접선 사항을 진술하는 과정에 “아버지와 같이 만난 남자는 37-8세 가량으로 1974년에 아버지를 만났을 당시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1974년에 성명 미상의 남자와 함께 아버지 박영준을 만났다고 진술했고, 당시 안기부의 초기 수사자료(거짓말탐지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체계도)에는 ‘박영준이 1974년에 남과되었다’는 것과 ‘박동운이 1974년에 박영준을 접선하였다’는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의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안기부 의견서와 검찰 공소장에도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은, 안기부가 공식적인 진술서와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1981.5.1 이전)에는 ‘박동운이 박영준을 5회 접선하였으며, 1974년과 1976년에는 성명 미상의 남자와 같이 접선했다’고 정리하였다가 1981.5.1 이후 공식적인 진술서와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부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974년 접선 혐의’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안기부는 박동운의 1976년 접선 내용 진술 중 ‘성명미상의 남자는 2년 전 아버지와 같이 만난 사람이다’라는 진술은 수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당시 피의자의 진술서와 신문조서 등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판단된다.

【 박동운은 월북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는가? 】

안기부는 박영준의 남파사실을 확정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동운이 박영준을 따라 2차례 월북하는 등 각종 간첩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영준의 남파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으며, 증거도 全無한 상태에서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만으로 일가족이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 사건에서 안기부가 주장하는 박동운의 공소내용이 사실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안기부 의견서에 나타난 박동운의 간첩행위와 사실여부

㉠ 1971.10 월북 이전 간첩행위 관련

안기부는 의견서를 통해 박동운의 간첩 행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963.8. 하순, 전남 목포시 죽동 자취방에서 남파간첩인 부 박영준과 접촉, 5,000원을 수수
- 1965.5. 중순, 전남 목포시 연동 자취방에서 박영준과 회합, 목포시 죽교동 뒷개해안에서 북괴 공작선을 이용 월북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판건식 무전기 타전법, 에이-3 지령수신 방법, 암호해문 및 조립방법 등을 교육받고 통신호출부호는 27번째를 교부받고, 한화 30,000원, 판건식 무전기 및 부속일체, 난수표(발수신용) 1조, 기본 암호표 등을 수령한 후 출발시와 동일지점인 목포 뒷개해안에 상륙하여 간첩으로 잠입
- 1965.8.5.과 9.5. 자취방에서 에이-3방송 청취

이에 대하여, 먼저 안기부가 박동운 등을 검찰에 송치한 시기(1981.5.12)에 위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박동운 등 관련자들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㉔ 1971.10 월북 혐의 관련

안기부는 의견서를 통해 박동운의 간첩행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971.9 하순,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에서 박영준과 회합 후, 1971.10.3. 진도군 하조도 선착장에서 입북
- 군복무 경력과 부대인원, 장비, 위치 및 훈련내용 등 군복무시 지득한 군사에 관한 군사기밀을 누설
- 1차 입북시와 같은 지하당 조직방법 및 관광시찰 등의 세뇌교양을 받고, 호출부호 6599호를 교부받고, 10.21. 조선노동당에 입당
- 1971.10.21. 한화 70,000원을 수령한 후 북괴공작선에 승선, 진도읍 전두리 해안에 도착하여 잠입

이에 대하여,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①안기부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이기지 못한 허위자백이며, ②월북했다는 1971.10 에는 풍국제지 대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③안기부에서 군복무 경력을 말하라고 하여 진술한 것이 군사기밀 누설이 되었고, ④호출부호는 무엇인지도 모르며, ⑤진도 하조도와 전두리 해안 등은 농협에 근무할 때 다니던 곳을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회 밀입북도 본인이 1965년도인가 상고 졸업하고 목포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로 알리바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점을 가지고 북한을 갔다 왔다고 만들었고 그 다음은 1971.10.3 부터 21일간 밀입북한 것으로 만들었다.
- 안기부가 왜 1971.10.3 에 북한을 갔다 온 것으로 잡았는가 생각을 해보니 10.3 이 추석이었는데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추석과 설은 진도로 내려가니까 추석을 지내러 진도에 온 것을 대구로 가지 않고 바로 북한을 갔다고 만들어버린 것이다.
- 그런데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수사관이 압수된 수첩에 적어놓은 풍 국제지 대구사무소 근무 날짜(1969.12.25경-1971.10.하순)를 발견하고 본인이 그것을 거짓으로 적어냈다고 하여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버렸다.

- 진도에서 추석을 지내고 10.5 경 대구 가서 근무하다가 10월 하순경에 풍국제지를 그만 두었는데, 하는 일이 종이를 취급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서 기관지가 안 좋았고, 추석 때 진도에 오니 농협시험이 있다고 하여 이송열(대구 풍국제지 사무소장)에게 얘기하고 그때 대구에서 진도로 주민등록을 되거했다.
- 당시 이송열 집에 동거인으로 살았고 1971.10 경에 되거를 한 것이 복역 중에 생각이 나서 출소 후에 이송열을 만나 동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떼어 보니 1971.10.14 진도로 되거한 것이 나왔다. 이송열이 네 번째인가 재판 때 와서 옳게 이야기 안했는데 '추적 60분²⁴⁷⁾'에 나와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동운이라는 사람이 추석 때 진도를 갔다 와서 농협에 취직한다고 하길래 잘 가거라고 했다' 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안기부 얘기가 맞다면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대구로 가서 진도로 되거한 것이라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 수사관이 군 생활에 대해 물어보아서 '20사단 60연대 작전과에서 군 생활했다' 고 하니 '교안작성을 해 봤냐? 교안작성을 해봐라' 고 하여 생각나는 대로 대충 적어주니 육군교본인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재판에 제출되었다.
- 북에 오고 갈 때 조도, 전두리 해안 등을 통해서 갔다는데, 사실 그곳은 농협 재직시 출장 다녔던 곳이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라고 한 것 가운데 조도, 전두리 해안 등을 가봤다고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계장(안기부 수사관)이 '거기가 북에 올라가고 북에서 내려온 지역이다, 약도를 그리라' 고 하면서 지도를 가져다주고 '너무 자세하게 그리면 안 되니까 대충 그려라' 라고 했고 그래서 등고선까지 그리게 된 것이다.

박동운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는 일관된 진술, 안기부의 장기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의 수사, 근거 없는 호출부호²⁴⁸⁾, 풍국제지 근무기간이 적혀있던 수첩, 이송열의 증언, 등고선까지 그린 지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71.10.3 박동운이 월북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선

247) 「사면 논란 장기수,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KBS 추적 60분, 1998. 2. 22. 방영. 박동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취제한 것으로 박경준, 이송열 등의 인터뷰 내용이 있으며, 안기부의 불법 구금 관련 사실, 농협 진도군 지부의 전자복사기는 1984년 도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었으며, 특히 이송열은 박동운이 1971년10월3일 추석을 고향에서 지낸 후 대구로 돌아와 진도 농협 취직을 위하여 사직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248) 박동운의 호출부호의 문제는 다음 항에서 다루었다.

노동당에 입당한 후 다시 잠입하였다는 안기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에 의해 조작된 혐의라 하겠다.

한편, 수사자료에 의하면 안기부는 박동운 뿐만 아니라 수사초기에는 박경준 등도 월북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당시 수사관들의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여 어떤 과정에 의해 박경준 등의 월북 혐의를 임의로 삭제하였는지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자술서를 가지고 수사관들 맘대로 정하였는데, 처음에는 북한에 15-16번 정도 갔다 왔다고 했다. 어머니, 동생, 작은 아버지, 고모부도 가고 심지어는 작은 어머니, 고모까지도 북한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 3.7 잡혀가서 5.8 송치되었으니까 아마도 4월 중순경이나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이나 본인이 북한을 15-16번 갔다 왔다는 것을 싹 빼고 두 번으로 압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박근홍은 진실위 면담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아버지가 본인의 수원 하숙집에 찾아와 본인이 아버지와 같이 해안가에 가서 배를 타고 해주로 갔다면서, 본인의 암호(호출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가 628이라고 알려주었으며, 무슨 초대소에서 김일성 교육을 받았으며, 라디오 청취요령, 수원 화성 해안가로 돌아왔다는 것 등을 불러주었으며, 고문에 못 이겨 불러주는 대로 다 작성하였다.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다음에는 써 놓은 것을 머리에 주입시키기 위해 거꾸로 매달았다가 놔주다가를 수십 번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여러 번 쓰도록 하면서 날짜(월북 등 간첩 행위 일시)를 조정하였다. 안기부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무렵, 수사관들이 투덜거리면서 들어오더니 본인이 북에 올라간 것은 모두 다 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내부 수사자료 「사건체계도」에는 박경준의 혐의로 “이수례, 박동운, 박근홍 등은 박경준의 입북(1973-1974년) 사실 진술하나 본인은 부인,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안기부 수사기록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어, 위 박동운 진술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결국 안기부는 박동운 등 관련자들을 장기 구금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이끌어 냈으며, 공식수사기록을 작성할 때는 임의로 혐의를 넣거나 빼는 등 혐의 사실을 조작하였다.

㉔ 박동운의 통신호출부호 관련

‘통신호출부호’란 북한의 남파간첩 또는 고정간첩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와 무선을 이용하여 통신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고유한 부호를 말하는데, 안기부는 박동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 차례 월북하여 두개의 호출부호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 1차 월북(1965.5) 당시 부여받은 호출부호 : 27번째
- 2차 월북(1971.10) 당시 부여받은 호출부호 : 6599호

그러나, 안기부 내부 수사자료(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자료) 중, <사건 체계도>에는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호출부호가 명시되어 있다.

- 1차 월북 당시 부여받은 호출부호 : 992호
- 2차 월북 당시 부여받은 호출부호 : 592호

박동운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로부터 고유한 호출부호를 부여받았는가?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 박동운의 고유한 호출부호가 안기부의 수사과정에서 바뀐 것인가? 박동운의 진실위 면담시 진술과 수사기록을 통해 추정해보면, 다음 경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째, 박동운이 월북을 한 사실과 호출부호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월북한 혐의와 호출부호는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한다.

- 처음에는 가족들 전부 아버지를 따라 월북했다고 몰아가다가 나중에는 다른 가족들은 다 빼고 나만 2번 갔다 왔다고 했고 아버지를 만난 것도 처음에는 중학교 3학년 때로 하다가 너무 어리다며 자기들 맘대로 동생 근화가 죽은 해인 63년으로 바꿔버렸다.

- 호출부호가 원지도 몰라 엄청 혼났는데, 통신담당 전문가라는 사람을 데려와 3일간인가 생각나는 숫자를 막 쓰라고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호출부호라는 것을 만들었다. 난수표라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둘째, 박동운이 수사초기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다른 호출부호를 자신의 호출부호인양 대답했다가 실체가 드러나자 자신의 호출부호를 자백하여 호출부호가 바뀌었을 경우이다. 그러나 박동운은 안기부 진술서 1회에서부터 자신의 호출부호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박동운의 호출부호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인 「통신관계 기술신문 조사보고」(1981.5.3)에서도 박동운의 호출부호 번복 등이 언급된 사실이 없다. 만약, 공식 수사기록 작성 전에 박동운이 호출부호에 대한 진술을 바꾼 것이고, 안기부는 최종으로 자백한 내용만 수사기록에 남겼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박동운의 진술 번복에 관한 자료 등을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기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더불어 호출부호와 관련한 조사결과 박동운은 월복을 하였거나 북한으로부터 간첩으로 활동하기 위한 호출부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㉔ 1979.8 국가기밀 누설 관련

안기부는 의견서를 통해 박동운의 간첩행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979.8. 중순 박영준의 일행인 성명미상과 농협 진도군 지부 정문 앞에서 접선
- 동인에게 농협 진도군 지부 직원 인사기록카드 35매, 78년 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전자복사기로 복사) 각 1부씩을 보고하는 등 국가기밀을 누설

안기부의 주장대로 박동운이 농협 진도지부 직원 인사기록카드 등을 남파간첩에게 전달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자료가 필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반드시 전자복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1979년 인사기록카드 등을 본인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해서 줬다고 했는데 당시 진도 농협에는 복사기가 없었고 목지를 사용하던 시절이다.”라고 하여 복사 자체가 불가하였다고 진술하여, 박동운이 전자복사기를 이용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안기부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도 남는다.

㉞ 공작물품 소각, 파기 관련

안기부는 의견서를 통해 박동운의 간첩 행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980.10. 초순 외조부 이정우 家에서 이정우 家 뒷담 옆 감나무 밑에 은익 보관중이던 무전기 및 부속일체와 난수표, 기본 암호표 등을 꺼내어 난수표와 기본 암호표는 아궁이에 넣어 소각하고, 무전기와 부속일체는 이수례가 사용하던 자귀로 파괴한 후 진도읍내 공용쓰레기장에 분산 파기함으로써 증거를 인멸

안기부는 위와 같이 밝히면서 ‘자귀’가 박동운의 간첩 활동 증거물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박동운의 자백뿐이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강압에 의한 자백이고, 위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귀’는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수는 있으나 간첩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부적절하다.

(2) 소 결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박동운의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해 보면,

① 1971.10 월북 이전 간첩행위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원에서도 위법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동운 등 관련자들의 허위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되는 등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② 1971.10 월북 혐의와 관련하여 박동운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로부터 받았다는 호출부호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에 의해 조작된 점, 박동운이 월북했다는 시기에 국내 있었음을 증빙하는 수첩내용(박동운의 풍국제지 근무기간 적시)과 이송열의 증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월북 등 간첩행위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③ 1979.8 국가기밀 누설과 관련하여 박동운이 농협 진도지부 직원 인사기록카드 등을 전자복사기를 이용 남과간첩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인데, 박동운의 “당시 진도 농협에는 복사기가 없었고 목지를 사용하던 시절이다.”고 진술하고 있어, 박동운이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안기부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④ 공작물품 소각 및 파기와 관련하여 박동운이 월북 시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관련자로부터 지급받았던 난수표 등을 소각하고 무전기 등을 ‘자귀’로 파기하였다는 것인데, 간첩행위의 증거물이 ‘자귀’라는 것도 비상식적이며 이에 대한 근거 또한 박동운의 허위자백뿐이어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7) 검찰수사 과정

안기부는 박동운 등 관련자 7명을 구속의견으로 1981.5.12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1981.6.9 박동운, 박경준, 이수례, 박근홍, 허 현을 구속 기소하고 박미심, 한등자는 불구속 처분하였는데, 박동운, 이수례, 박근홍은 안기부에서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을 검찰에서 그대로 반복하였으며,²⁴⁹⁾ 박경준, 허 현, 박미심, 한등자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박동운은 검찰에서 반성문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49) 그러나, 이들은 제1심 제1회 공판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변호인 박종창

피고인 박동운에게

문 : 기록에 편철된 1981.6.9 자의 반성문은 어떻게 하여 쓰게 됐나요.

답 : 검사님이 그 전에 안전기획부에서 썼던 1981.5.19 자의 반성문을 그대로 읽어주기도 하고, 보고 베끼라고 해서 그대로 보고 쓴 것뿐이고 안전기획부 과장이라는 사람이 괜히 고생하지 말고 부인할 생각도 말고 순순히 시인 해라, 그러면 10년 정도 살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시인하고 말았습니다.(제5차 공판조서, 공판기록 502-503쪽)

박미심과 한등자도 재판과정에서 안기부의 불법 수사와 그로 인한 허위자백의 경위를 진술하였다.

문 : 전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 받은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 때 사실대로 진술했나요.

답 : 사실대로 진술치 않았습니다.

문 : 왜 그랬나요.

답 : 수사기관에서 없는 사실을 진술하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진술서 등을 써주면서 그대로 베껴 쓰라고 해서 고문에 못 이겨 베껴 쓰고 없는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리고 그곳에서 반성문도 썼지요.

답 : 예, 반성문을 써주면서 베껴 쓰라고 해서 그대로 보고 쓴 것입니다.
(박미심의 증언, 공판기록 297-298쪽)

문 : 증인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 받은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 곳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지요.

답 : 예.

문 : 그것은 사실대로 증인이 쓴 것인가요 그랬나요.

답 : 수사관이 써준 것을 보고 베껴 쓴 것입니다.

문 :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어떤가요.

답 : 고문에 못 이겨서 그렇게 진술된 것입니다.

문 : 반성문도 썼지요.

답 : 예.

문 : 그것은 어떻게 하여 쓰게 됐나요.

답 : 수사관들이 써주면서 베껴 쓰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한등자의 증언, 공판기록 306쪽)

박화룡(박동운의 祖父)는 재판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문 : 금년 5월 초순경에 수사관들이 증인의 집에 와서 조사해 간 적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때 손도장 찍은 일이 있나요.

답 : 수사관들이 무엇인가 써놓고 지장을 찍으라고 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 주지도 않고 증인의 손을 꼬집어다 손도장을 찍었습니다.(제1심 제4차 공판조서, 공판기록 459-461쪽)

박동운과 박근홍은 재판과정과 진실위 면담을 통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안기부 수사관들의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안기부로) 불려올 것이다’라는 협박과 ‘자백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기부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검사의 위협 때문이다”면서 “검찰에서 작성한 반성문 등은 안기부에서 허위 자백한 것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동운은 공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

변호인 박종창

피고인 박동운에게

문 : 피고인이 본 변호인과 면접했을 때 검찰에서 고문당한 사실은 없으나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만약 부인하면 안전기획부로 다시 데려다가 조사한다고 하더라는 말을 했었지요.

답 : 예. 거기서 고문을 다시 당하느니 차라리 징역 살고 말아버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제5차 공판조서, 공판기록 500쪽)

박동운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검찰)송치 전 두 번인가? 이 계장(안기부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시인한 것을 검찰에 가서도, 판사 앞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다시 와서 죽도록 맞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였다.
- 5.8 서울구치소로 가니 10여일 쯤 지나 안○○ 검사가 구치소로 찾아왔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상처를 보이면서 고문을 받았다고 하였더니 안○○이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이고 소리쳤다.
-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기부 직원 2명이 들어와 ‘동운이 니네 식구들에게 니가 맞는 장면을 보여줄래? 아니면 시인하고 한 징역 10년만 살래?’ 하였다.
- 안○○ 검사가 이미 조서를 만들어 왔고, 구타당하지 않았지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안기부 직원에 의해 강제로 날인을 하게 되었다.
- 나중에 안○○ 검사 사무실로 2번인가 가서 조사받았고 그 때도 안기부 직원이 같이 있었음. 당시 작성한 반성문은 안○○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²⁵⁰⁾

박근홍은 진실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1981.5.8 서대문구치소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되기 전에 안기부 수사관이 “다시 여기(안기부)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라” 며 협박하였고,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제 정신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안기부 직원처럼 보여 처음에는 피하였으며,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안기부 직원들처럼 보여 힘들었다.
- 검찰에서는 3번 정도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조사받을 때마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검사 옆에 있었으며, 공포증 때문인지 머리를 너무 맞아 정신 이상자가 되어 버린 것인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검찰에서 작성한 반성문은 안기부에서 작성한 반성문을 보고 옮겨 적으라고 하여 그대로 보고 작성하였다.

250) 박동운은 2006.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중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박동운이 안기부에서 작성한 반성문과 검찰에서 작성한 반성문을 비교해보면 안기부에서 반성문을 1회 작성하였으며 검찰에서는 2회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는데, 검찰에서 작성한 반성문 1·2회 총 72쪽 중에서 도입부 2쪽을 제외한 70쪽이 안기부에서 작성한 반성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박근홍의 경우도 안기부에서 작성한 반성문과 검찰에서 작성한 반성문이 거의 일치하여 ‘보고 베껴 쓰거나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박동운과 박근홍의 반성문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²⁵¹⁾

8) 재판진행 과정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안기부는 1심 1회 공판(1981.9.7)부터 3심 선고공판(1982.6.22)까지 공판시에 관련자들과 변호인의 주장 등 공판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공판 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변호인은 1심 1회 공판(1981.9.7)에서 박동운이 1971.10.3 월북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동운과 풍국제지 대구 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월북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려 하였으나, 안기부는 변호인의 증인신청 직후 이택열을 안기부로 연행하여 “71.7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동운이를 만났다가거나 소식조차 들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날짜도 없는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지득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1981.9.23)하게 하였다.

251) “불법적 장기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이루어지고 검찰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 929 판결)

이택열은 안기부에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인 1981.10.5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70.10-71.7경까지 풍곡제지 대구출장소에서 박동운과 같이 근무했으나, 71.10 초순 동운이와 같이 이리에 가서 숙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박동운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오히려 박동운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결국 안기부 수사관들이 1심 1회 공판부터 재판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한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박동운 등 관련자들이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면 미리 파악하여 진실증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무죄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 | 결 론

동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1981.7.31 언론을 통해 “24년 동안 전남 진도지역을 중심으로 암약해온 고정간첩 일당 7명을 검거했다”면서 “6.25때 월북한 박영준이 대남간첩으로 선발돼 고향인 진도에 침투하여 큰아들 박동운을 두 차례 대동 입북하는 등 가족 및 친척들을 포섭하여 지하망을 구축해왔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박동운이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는 등 일가족 5명이 실형을 받은 이른바 「박동운 사건(또는 진도가족간첩단사건)」으로 알려져 왔다.

진실위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당사자 및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조작의혹이 제기되어왔던 동 사건을 ‘간첩죄 확대적용 분야’ 중 ‘월북자 관련 유형 사건’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수사자료중 「수사계획보고(1, 2, 3차)」를 발견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안기부는 박동운의父 박영준이 남파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박영준 등이 남파하였을 시에 접촉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선혐의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1981.3.9 경부터 안기부로 강제 연행하여 60여 일간 불법 감금한 상태로 변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차단한 채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동운 등 관련자들에 대한 60여 일간의 불법 구금은, 당시 안기부 수사부서의 수사계획(1, 2, 3차)에 의하여 결재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부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안기부의 장기간 불법 구금이 지휘라인 차원에서 묵인되어 관례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안기부가 간첩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국민을 '일단 연행해서 수사하다보면 다 나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연행하고 수사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한 것은, 범죄사실 유무를 떠나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주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안기부가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인지 및 동행보고서」의 연행일시 및 방법과 「실황조사서」의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불법 연행 및 불법 구금 등의 불법 행위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박동운 등이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의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에 대해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안기부의 수사서류 허위기재에 의한 것이다. 과거 공안사건의 경우, 이러한 수사서류 허위기재는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불법연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한 진술의 임의성 부재를 주장함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하는 이유가 되어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박동운 등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안기부에서 고문 및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① 임의동행이 아닌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되어 외부와 단절된 채로 60여 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② 사건 당사자 박동운, 박미심, 한등자, 박근홍은 안기부 수사관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검찰 수사 시와 재판당시 법원에 제출한 항소·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호소한 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지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각종 혐의가 구체적 물증없이 관련자들의 자백만으로 구성되었고, 수사서류 등이 조작되어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

④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고문 흔적을 보이는 등 안기부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적극 호소하였다.

특히, 박동운이 재판과정에서 고문당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직도 몸에 상처가 남아 있으니 옷을 벗어 보여주겠다.”며 신체감정 신청을 할 정도라면, 이 같은 주장은 신뢰할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진실위는 동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당시 관련자들이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당시 안기부의 수사관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거부하여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안기부는 의견서를 통해 “북한 노동당 연락부 소속 재북간첩 박영준은 1957~1976년까지 5차례 남파되었다”고 하지만, 관련자들의 자백 외에 박영준이 노동당 소속이라는 것과 남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다. 안기부에서 박영준을 만났다고 자백한 관련자들은 모든 혐의사실이 안기부 수사관의 고문 등 강압수사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기부의 강압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관련자들의 안기부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안기부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동운과 박근홍이 검찰 수사 과정에 안기부 직원이 배석하는 등 안기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으며, 그 결과 안기부에서 작성한 반성문과 검찰에서 작성한 반성문이 거의 일치한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1심 1회 공판부터 재판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는 박동운 등 관련자들이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면 미리 파악하여 진실된 증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무죄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적절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동 사건은 안기부가 ‘박영준이 남파되었다’는 미확인 첩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동운 등을 무리하게 불법연행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로 인해 박동운 등은 간첩행위를 하거나 동조했다는 죄로 처벌받았으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례로 판단된다.

4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 정영 등 미법도 남북 귀환어부 사건

가 사건개요

서해 휴전선 인접 도서지역인 강화군 미법도에서 6.25당시 월북한 정진구를 중심으로 정영(1941.2.25생), 정진영(1916.1.20생), 황정임(1921.11.30생)이 연루된 이 사건은 월북자 가족 간첩 사건과 남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내·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검거된 사건이다. 우선 정영은 1965년 10월 29일 서해 비무장지대에서 조개잡이하다 납북되어 그해 11월 20일 귀환한 남북귀환어부이자 월북자 정진구의 7촌 조카로 경찰, 안기부 등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를 받았다. 또 정진영과 그의 처 황정임은 정씨의 친동생인 정진구가 강화군 교동도에서 부역활동을 하다 9.28수복시 월북한 이래 수십여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와 감시를 받았다.

1982년 2월에는 정진영과 정영이 안기부 본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무혐의 방면되기도 했다. 이어 1983년 9월 6일²⁵²⁾ 정진영과 황정임이, 그 일주일 뒤인 9월 13일 정영이 안기부 인천분실로 연행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간첩 및 간첩방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어 안기부는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을 간첩 및 간첩방조죄로 1983년 11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 송치했다. 임OO 검사에 의해 1983년 12월 2일 기소되어 1심 인천지방법원(판사 이OO, 송OO, 신OO)에서 1984년 4월 4일 정영은 무기징역, 정진영은 징자 5년, 황정임은 징자 3년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판사 오OO, 박OO, 김OO/검사 성OO)에서 진행되어 1984.7.6 정영은 무기징역,

²⁵²⁾ 정영, 정진영, 황정임의 실제 연행일. 이는 당시 안기부 공식 기록상의 연행일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정진영은 징역 3년 6월, 황정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정진영과 황정임은 상고를 포기하고 정영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1984년 9월 25일 대법원(판사 이OO, 이OO, 이OO, 전OO)에서 상고가 기각되었고 1998년 8월 15일 가석방되었다.

한편 월북자 가족 간첩 사건과 남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정영 사건은 같은 미법도에서 한해 전인 1982년 1월 발생한 황용윤 사건 및 1976년의 오형근(미법도 인접 불음도) 사건, 1977년의 안장영(미법도) 사건, 같은 해의 안희천(미법도)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우선 정영, 황용윤, 오형근, 안장영, 안희천은 모두 1965년 함께 남북귀환된 바 있고, 이중 오형근을 제외한 네 명이 미법도 주민인 데다가 황용윤은 4촌 동생인 황용익이 9.28수복시 정진구와 함께 월북한 바 있다. 즉 1965년 남북귀환어부 중 5건의 간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미법도에서 4건의 간첩 사건이, 그리고 남북귀환어부이자 월북자 가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간첩 사건이 2건 발생한 셈이다²⁵³⁾.

이들 네 사건의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황용윤 사건은 1982년 6월 21일 1심(판사 김OO, 최OO, 김OO/검사 박OO)에서 황용윤은 징역 7년, 한금분은 징역5년, 황순애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82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판사 천OO, 이OO, OO/검사 조OO)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또 안장영 사건은 1977년 11월 18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판사 최OO, 김OO, 이OO/검사 김OO)에서 안장영은 사형, 최정순(안장영의 처)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판사 박OO, 안OO, 김OO/검사 박OO)에서 안장영은 징역 15년, 최정순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1977년 9월 16일 경기도경 정보2과에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안희천 사건의 경우 안희천은 1977년 12월 30일 1심(판사 최OO/검사 김OO)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판사 박OO, 안OO,

253) 이를 두고 정진영의 사위이자 안기부의 내사공작 대상이기도 했던 장영환은 진실위와의 면담(2007.5)에서 “동네에서 북한 뉘새라도 맡고 온 사람은 다 잡혀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OO/검사 박OO)과 3심 모두 기각됐다. 1976년 10월 7일 송치된 오형근 사건의 재판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²⁵⁴⁾

나

조사선정 이유

진실위 간첩죄 확대적용 분야 조사에서는 과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에서 수사한 간첩 사건을 크게 세 가지 유형-해외동포 관련 간첩 사건, 월북가족 간첩사건, 납북어부 간첩사건-으로 분류해서 각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들을 조사해왔다. 이중 납북어부 간첩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민가협 등 인권단체에서 조작의혹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던 1983년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구속수사한 정영 사건을 선정했다.

제5공화국 초기인 1980년대 초반 납북어부 간첩사건이 주로 발표, 보고되었는데 특이하게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안기부가 수사한 납북어부 간첩사건은 1982년 안기부 본부에서 한 황용운 사건과 1983년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진행한 정영 사건 등 두 건 뿐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 이 두 사건은 한 동네에서 한 배를 타고 납북, 귀환한 어부 간첩사건인 동시에 6.25전쟁 당시 함께 월북한 두 인물의 연고자 간첩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정영 사건은 황용운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온 첩보에 근거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황용운 사건은 경기도경이 검거한 안장영에게서 첩보가 나왔고 안장영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납북귀환어부 내사 과정에서 안희천 사건이 적발되고²⁵⁵⁾, 다시 안장영 관련 첩보는 오형근

254) 이 재판과정 기록을 보면 각 사건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 예로 안장영과 안희천은 1심과 2심의 판사, 검사가 모두 일치하며 앞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장영의 1심, 2심 국선변호사는 정영의 국선변호사이기도 했다. 이 5건의 사건이 모두 미법도와 여기에 인접한 서검도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는 특이한 점은 아닐 수 있으나 다만 각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지극히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까.

255) 안장영 사건과 안희천 사건은 이처럼 안장영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내사 과정에서 안희천이 적발되었다는 점 외에도 공소사실 상에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안장영의 간첩활동 내용 중에는 “1975.12. 같은 배 선원이며 같은 안씨라 하여 형제와 같이 지내던 안희천과 함께 귀가기 위해 미법도를 출발하여 도선으로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하리 선착장에

사건에서 나오는 등 다섯 개의 사건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어 진실위의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조사에서는 안기부에서 수사한 정영 사건과 황용운 사건을 하나로 다루는 동시에 안기부가 아닌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오형근, 안장영, 안희천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사해보고자 했다.

다 | 조사현황

1) 자료조사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정영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2,200여 쪽과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정영 사건 관련자료 2,000여 쪽 그리고 정영 신분장 100여 쪽 등을 검토·분석했다.

2) 면담조사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 사건 당사자 3명, 정영의 처 황문자 등 관련자 및 참고인 6명 등 모두 9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라 | 의혹사항 및 쟁점사항

정영 사건과 황용운 사건은 안기부에서 검거, 송치한 단 두 건의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인 동시에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하선하자 같이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집에 기숙중인 동인의 아들인 공소의 안기운(17세)을 대동입북시킬 목적 하에 관심을 사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울 테니 보태어쓰라고 말하며 금 12만원을 교부한 후 귀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안장영이 안희천의 아들을 대동입북시키기 위해 안희천을 포섭, 공작금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 사실일 것임에도 안장영이 검거된 지 석달 만에 검거된 안희천의 공소사실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간첩’이 다른 ‘간첩의 아들’을 포섭하려 했다는 황당한 사건이 되는 셈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영과 황용운 모두 각각 7촌 당숙 정진구, 4촌 동생 황용익이 6.25당시 월북하였으며 두 사람은 1965년 조개잡이하다 함께 납북되어 평양여관 수용시 같은 방을 사용했다. 또한 두 사람은 각각 1981년과 1972년 고향 미법도를 떠나 인천과 김포로 이주했으며 토지를 매입하거나 전마선을 매입하는 비용의 출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월북자 정진구, 황용익이 6.25전 함께 부역하다 9.28수복시 함께 월북했으며 미법도에 함께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황용운 사건 수사착수 계기와 정영 사건 수사착수 계기가 된 것은 공히 1965년 함께 납북되었던 이옥분의 진술로, 그 내용이 황용운 사건 때는 황용익을 만난 것으로, 정영 사건 때는 정진구를 만난 것으로 바뀐 점도 확인된다.

한편 정영 사건과 황용운 사건 뿐만 아니라 미법도에서 발생한 다른 간첩 사건(안장영, 안희천)과 1965년 함께 납북되었던 어민들 중 발생한 다른 간첩 사건(오형근) 등에서 포섭방식이나 접선방법, 밀입북 루트 등이 서로 교차,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 다섯 건의 간첩 사건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정영 사건과 황용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에 따라 미법도의 역사·사회·지리·정치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미법도 간첩 사건, 1965년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정영, 황용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다.

마 | 수사과정

1) 오랜 내·수사에서 검거까지

1965년 조개잡이 중 납북됐던 109명의 어부들 중 첫 번째 간첩 사건인 오형근 사건 기록은 거의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형근 사건과 관련

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안장영, 안희천, 황용운, 정영 사건 관련자들은 1965년 납북귀환된 이래 수십년에 걸쳐서 여러 대공수사기관에서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 내·수사를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황용운 사건, 정영 사건 관련자들은 월북 가족 때문에도 끊임없는 내·수사 대상이 되었다.

1965년 이래 이근안을 비롯한 경기도경 소속 형사들이 수시로 미법도를 찾아와 납북귀환여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미법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경기도경 정보3과 소속의 형사 한 명이 일년 가까이 미법도 정영의 집에 거주하면서 내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실제로 공식 기록상으로도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내사 및 공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1970년 1월 미법도 해안에서 간첩선으로 추정되는 쾌속선이 목격되고 인근 새우젓 창고에서 괴한의 흔적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1970년에 미법도 내 납북귀환여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 안장영 사건 관련 기록에 보면 경기도 경찰국 정보2과에서 ‘다람쥐 공작’을 진행한 결과로 안장영을 구속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납북귀환어부이자 월북자 가족을 둔 황용운 사건과 정영 사건 관련자들은 이중으로 내·수사를 받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작만 해도 1978년 10월부터 1979년 2월까지 경기도경에서 진행한 「미나리 공작: 황용운 등」, 1978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역시 경기도경에서 진행한 「오징어 공작: 정진영 등」과 1982년 3월부터 1983년 9월까지 정진영의 사위 장영환을 중심으로 안기부 인천지부에서 진행, 정영 등을 구속수사하게 되는 「래왕선 공작 : 장영환」이 있다. 이와 함께 정영, 정진영 등은 1982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안기부 본부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무혐의 방면되기도 했다²⁵⁶⁾.

미법도에 간첩 침투(혹은 침투 의혹) 사건이 날 때마다, 혹은 재산상의 변화나 거주지 변화 등이 있을 때마다, 이들과 관련한 어떤 첩보나 제보가

256) 공식 수사기록 상에 나타난 황용운 사건 관련자 내·수사 기록 및 정영 사건 관련자 내·수사 기록은 첨부 1과 첨부 2를 참조.

입수될 때마다 내사나 수사를 받으면서 이들이 받은 정신적 물리적 고통은 상당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수사의 고통이 간첩죄로 검거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2) 황용윤 사건의 경우 : 안장영 유출 첩보

1981년 12월 9일 안기부에 연행된 황용윤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내·수사 중에서도 1979년 2월 당시 광주교도소에 간첩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안장영에게서 입수된 첩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²⁵⁷⁾.

1979년 2월 작성된 당시 중앙정보부의 「간첩 용의자에 대한 첩보보고」에 따르면 1979년 2월 8일 중정으로 안장영을 소환해 관련 첩보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안장영이 1965년 10월 함께 납북되었던 미법도 주민 이옥분²⁵⁸⁾에게서 1965년 체북 당시 “북괴 군인 복장을 한 남자 1명이 당시 미법도 거주 황용윤을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그 북괴 군인이 6.25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얼굴이 익은 황용윤의 형인 것 같았다²⁵⁹⁾”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황용윤이 1970년 1월 미법도에 간첩선으로 추정되는 쾌속선이 나타나고 새우젓갈 보관창고에 수상한 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색에 나섰으나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던 때에 미법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57) 한편 1976년 오형근 사건 이래로 1, 2년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미법도 간첩사건은 1983년 정영 사건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납북귀환어부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오형근에게서 안장영 첩보를, 안장영에게서 황용윤 첩보를, 황용윤에게서 정영 첩보를 얻어내는 식으로 사건이 이어져왔으나 정영에게서는 또 다른 사건을 이끌어낼만한 첩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영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대구교도소에 있을 때 수사관들이 찾아왔기에 ‘이제 무기징역 받고 마음 잡아서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왔냐’고 했더니 ‘아직 뭔가 또 남았다’면서 바른 대로 대라고 하기에 이제 더 이상 댈 것도 없다고 딱 잡아땀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간 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로 정영의 ‘신분장’에는 86.2.27 대구교도소에 “안기부 대구분실 지OO 수사관 및 인천분실 박OO 수사관 수신자료 수집차 집견 협조”라고 기록되어 있다.

258) 한편 정영 사건에서 이옥분은 1965년 납북 당시 정진구가 자신을 찾아와 만났다고 진술했다.

259) 실제로는 황용윤(1917.5.5생)이 황용익(1928.2.5생)의 사촌형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나는 데다가 황용윤과 이옥분(1918.1.13생)은 거의 동년배로 6.25이전 황용윤, 황용익과 한 동네에 같이 살았다는 이옥분이 황용윤과 황용익의 관계를 착각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1973년경 생활수준이 하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김포에 땅을 사서²⁶⁰⁾ 전가족이 이사했던 점 등이 이상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안장영은 1965년 10월 조개잡이하러 갈 때 황용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조개잡이를 가자고 선동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²⁶¹⁾.

중정은 검거간첩 안장영²⁶²⁾에게서 나온 이 첩보를 중심으로 1979년 3월 5일부터 7일간 황용윤을 연행심사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²⁶³⁾. 그러나 당시 이 계획은 ‘상부’에서 “연행심사하지 말고 어렵다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의심을 받지 않고 아측공작(동 부락 사람보다 외지에서 포섭)을 침투시켜 동향 파악하도록 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폐기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당시 중정은 연행심사 계획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황용윤의 혐의에 대해 “혐의내용 부인시 구증자료 희박”하고 “결정적인 범증포착되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등 사실상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1979년 8월 28일자로 중정에서 작성한 「간첩용의자 황용윤 내사 종합검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황용윤의 황용익 연계 혐의에 관한 ‘부정적인 면’으로 “용의사실 중 1965.11 남북, 평양여관 수용 당시 같이 남북되어 동 여관에 분리수용중이던 동리 거주 이옥분(61세)이 전시 황용익이 본명을 방문, 접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북괴의 비밀공작원칙에 위배(보안노출)되고” “미법도에서는 이미 본명이 거동 수상자로 황용익과 접선하였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공작원으로서의 자격이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1979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내사 및 수사계획을 세운 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재검토했던 황용윤 사건은 그 2년

260) 이 보고서에는 당시 황용윤이 김포에 매입한 땅의 가격이 당시 시가 140만원 상당이라고 하였으나 공소장에는 69년 11월경 18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음

261) 정영의 공소사실 상에는 1965년 조개잡이는 안장영의 권유로 가게 된 것으로 나와 있다.

262) 한편 안장영을 검거하게 된 결정적인 첩보는 그 한해 전 검거된 오형근이 1965년 남북시 자신 외에도 안장영이 별도 수용되어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63) 중정, 「간첩용의자 심사계획」(날짜 미상)

뒤인 1981년 12월 9일 동일한 첩보를 근거로 황용운 등을 전격적으로 연행 수사하기에 이른다.

3) 정영 사건의 경우 : 1982년 무혐의 방면에서 1983년 재수사까지

1979년 황용운 연행심사계획이 ‘상부’에 의해 파기된 것과는 달리 정영, 정진영 등은 1983년 9월 이전인 1982년 2월에도 안기부 본부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방면되는 일이 있었다. 1982년 2월에 정영, 정진영 등이 연행되는 계기가 되는 첩보중에는 “1970년 1월 미법도에 북괴 공작선 및 공작원이 침투했을 때 외진 곳에 위치한 상여보관 창고에서 정진영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것이 있다. 이 첩보의 최초 출처는 안장영으로 앞의 1979년 2월 작성 「간첩 용의자에 대한 첩보보고」에 따르면 1979년 2월 8일 안장영이 “‘정사만의 딸(정정심)’이 1970년 1월 상여막 부근에서 정진영을 봤다”는 이야기를 고흥기에게서 듣고 제보한 것이다.²⁶⁴⁾

그 외에도 월북자 정진구의 아들 정광영과 정진구의 친형 정진영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1978.10.16 승인되어 1979.7.12 무혐의 종결된 치안본부의 「오징어 공작」은 공작 실패 이유로 “1977.5.10. 검거한 고정간첩 안장영의 심문과정에서 유출된 첩보로서 첩보 내용을 과신공작 진행한데 기인 실패한 것”이라고 들고 있어 오징어 공작 역시 안장영의 첩보를 근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 1982년 무혐의 방면

1982년 2월 안기부 본부는 정진영, 황정임, 정정희, 정세환, 정진삼, 정영, 정광영, 정명순, 백성기, 박용배 등 10명을 연행, 최소 4일에서

264) 이에 경기도경과 안기부가 각각 79년 3월과 82년 2월에 정정심을 조사한 후 신빙성이 없는 첩보로 와전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대 12일까지 조사한 후 무혐의 방면 처리했다. 현재 국정원에는 이 1982년 수사 기록이 매우 상세히 남아있는데 1982년 2월 안기부장에게 올린 「수사결과보고」에는 “1982.1 검거간첩 한금분이 1961년 5월 재북간첩 황용익이 미법도 소재 4촌형 황용운 가에 남파시 ‘정진구와 함께 남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미법도 거주 이옥분(64세)은 1965.10.29 서해 함박도 북방 은점벌에서 조개 채취중 북괴군에 피랍, 평양여관 수용 당시 위 정진구가 찾아와 아들 정광영을 형 정진영이 양육하고 있는 사실과 위 황용익이 형 처형된 사실 및 전에 강화에 남파·복귀 사실 등을 언동하여, 득문하고 65.11.20 귀환후 정진영에게 정진구 접촉사실을 전하자 정진영은 ‘그런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 등을 혐의로 정영 등을 수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1961년 5월 황용익과 정진구가 함께 남파되었다는 한금분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5월 정진구 남파는 1982년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물론 1983년 안기부 의견서 및 공소장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 이옥분은 황용운 사건과 정영 사건 모두에 등장하는데 황용운 사건에서는 황용운 내사 및 수사계획의 바탕이 된 안장영의 첩보에서부터 1979년 3월 16일자로 중정에서 작성한 「미법도 주민 현황 입수 보고」에 이르기까지 이옥분은 “체북중 내사공작 대상자 황용운의 4촌제 황용익 접촉 사실”을 언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옥분은 1978년 오징어공작 진행 초기부터 평양에서 정진구를 봤다고 진술했다. 즉 황용운 사건 때와 정영 사건 때 이옥분의 첩보가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안기부 인천지부는 물론 본부에서도 아무런 언급이나 해명이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다.²⁶⁵⁾ 더군다나 1982년 2월 정진영 등을 연행 수사한 후 무혐의

265)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 사건 당사자들과 미법도 주민들이 공히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이옥분이 1965년 납북시 정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진영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경의 「오징어 공작」에서도 일관되게 이옥분이 65년 체북시 정진구를 보았다는 진술을 주요 혐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1982년 황용운 사건에서의 이옥분의 첩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즉 황용운 사건이 미확인 혹은 거짓 첩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이옥분은 1983년 9월 27일 삼산지서에서 한 진술조서에서 안기부 수사관 김OO이 평양에서

방면 처분한 수사관들은 바로 그해 2월 3일 기소한 황용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로 이옥분의 첩보가 황용운 사건과 정영 사건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1982년 수사와 관련해서는 1982년 2월 조사과정에서 정영, 정진영 등이 정진구 남파 및 밀입북 사실을 자백했다가 곧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안기부 내부 보고서인 「일일신문사항」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는 정진구 접선 및 밀입북에 관한 정영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정영이 심리적 압박감에 못이겨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정진영이 허위자백한 것과 관련해서도 1982년 2월 14일 「일일신문사항」에서 정진영이 “월북한 동생 때문에 과거에도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항상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번에 또 가족들과 함께 와서 여러 날 조사를 받게 되니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친구를 만났다고 해야 가족들이라도 풀려날 것 같고 허위진술이라도 하여 형을 받게 되면 당국의 감시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죄를 만들기 위해 허위진술했다”고 허위진술한 이유를 밝혔다고 기록²⁶⁶⁾하는 등 정영, 정진영 등이 ‘자백’을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본건 수사결과 대상자 등은 재북간첩 정진구 남파시

정진구에게 황용익에 관해 무슨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정진구는 진회에 진술한 내용의 가족 안부 등을 묻더니 황용익은 6.25당시 넘어가다 총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으며 김OO 수사관이 다시 황용익이 죽었다면 미법에 간첩이 다녀갔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글쎄요, 미법에서는 황용익과 정진구가 월북하였으니 둘 중에 1명이 래왕한 것으로 부락에서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진구의 말을 듣고보니 정진구가 왔다간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답한 바 있다. 즉 1983년 이옥분의 진술에 따르면, 1982년 황용운 사건은 유명간첩 사건인 셈이다.

266) <남파예상자 정진구 연고자>

정진영의 진술을 허위진술로 판단한 근거로 “가족들이 가족들이 동시 연행되었기에 자신이 적당히 말하면 다른 가족들은 방면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진술했다고 실토, 반복신문시-實性 결여 / 譚船 접선 정황의 신빙성 결여 / * 정진구의 자 정광영, 정명순도 재북 父 남파 사실 不知”

정영의 진술을 허위진술로 판단한 근거로 “譚船 접선 경로와 3일간 입북 간첩 교육 정황 등이 공작 원칙에 위배 / 처 황문자 조사 결과 정진구 남파사실 不知 / 68.8 매입한 전담 대금 출처는 공작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을 들고 있다.

접선, 연락 사실 발견되지 않으므로 방면조치 후 서해대공취약지역 대 공협조자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나) 1983년 재수사 착수경위

그런데 정영 등은 이렇게 1982년 1, 2, 3 계장 등 윗선에서 검토 후 무혐의 방면되어 모든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²⁶⁷⁾ 그 1년 후 안기부 인천지부에 연행돼 간첩으로 구속되게 된다. 안기부 본부 단위에서 완전히 종결, 마무리한 사건을 어떻게 해서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다시 터뜨리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 검찰, 법원에 제출한 안기부 수사기록 상의 1983년 10월자 「인지동행보고」에 따르면 “협조자인 경기도 강화 삼산면 이OO으로부터 피의자 등은 6.25 당시 월북한 정진구(65세)와 수년전부터 연락되어 주소지에서 암약 중에 있는 자로 의심된다는 첩보에 의하여 1982.3.8 - 1983.9.25경간 피의자 등의 동향을 내사 관찰하여 오던 중 범증을 포착하고 전시일시 장소에서 임의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⁶⁸⁾. 이 1982년 3월 8일부터 1983년 9월 25일까지 진행된 내사 공작은 안기부 본부의 승인을 받아 안기부 인천지부에서 진행한 「래왕선 공작」으로 이 래왕선 공작 및 1983년 수사계획 승인 문서는 “발신: (국가안전기획부)부장”이라 명시되어 있다. 즉 안기부 본부는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 방면한 용의자들을 안기부 인천분실이 바로 재수사하도록 승인해준 셈이 된다.

267) 황정임은 2007.5.29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1982년 조사받고 나올 때 당시 수사관이 “우리가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불러올 일 없을 테니 아무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1983년 9월 갑자기 안기부 인천분실로 끌려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68) 한편 래왕선 공작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첩보를 제공한 이OO은 이미 1979년 오징어 공작 때부터 안기부 및 치안본부의 ‘충실한 협조자’로 활용됐던 인물로 민OO과 더불어 ‘협조자’로서 공작금을 지원받기까지 했다. 79.3.31일자 「오징어 공작비 소요 예산서」에는 망원(이OO)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83.11.7일자 「래왕선 공작 수사결과보고」에 보면 82.5-82.8월까지 4개월간 공작망원 1명(민OO)에게 공작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82.3 수집, 보고된 「북괴연계협이자 첩보보고」에는 첩보 제공자 이OO에 대해 “계속 대상자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부의 업무에 협조 지대한 자로 첩보내용의 진실성이 확인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정원에 1983년 정영 사건 관련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2007년 6월 21일자로 인천지부에서 보내온 「인천지부 재수사 경위 및 처분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자료들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1982년 3월 7일 강화군 삼산면 거주 협조자 이OO이 당시 인천분실 수사관에게 1970-75년간 미법리 일원에 “월북자 정진구가 삼산면 미법리 이장 장영환(당시 46세)가를 은밀 내왕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동 이장이 순시 중인 경찰서장에게 “이곳은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다”라고 언동한 바 있다는 첩보를 제공, “인천지부는 동 첩보 등에 따라 1982.3.8-83.9.25일(17개월)간 정진구 국내 연고자인 장영환 및 정진영, 황정임, 정점분, 황문자, 장영환 등 6명 대상 정진구 접선, 연계 혐의에 대해 집중 내사(래왕선 공작)” “내사 결과 미법도 주민들로부터 정진구가 미법도에 수차 침투했고, 위 정영 등이 남파간첩 정진구와 연계된 정황진술 등을 확보, 1983.9.6-12일간 정영 등 상기 대상자 6명을 검거 수사”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1983.9.8일자 「수사 승인 상신」을 보면 정진영, 황정임 부부에 대한 ‘환문수사’를 상신하면서 이들의 혐의내용이 이옥분의 진술에 의거 정진구 남파시 정진영 접선 혐의, 정진영의 처가 1970년경 “밤이 되는 것이 원수같다”고 한 말, 정진영 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1964년부터 1971년까지 많은 농토 구입 등 ‘자금 출처 의심’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검찰에 제출된 안기부 수사기록상에는 정진영의 농토 구입 문제 등은 전혀 조사한 바 없으며 오히려 농토 구입 문제가 제기되어 공작금 수수의 정황적 증거로 확정된 것은 정영의 경우였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안기부 인천분실의 1982년 3월 8일 래왕선 공작을, 그리고 1983년 9월 초 수사계획을 안기부 본부가 승인 해준 것은 그것이 자신들이 무혐의 방면 처분한 정영, 정진영 등의 기존 혐의에 관한 수사가 아니라 정진영의 사위인 ‘장영환’에 관한 새로운 첩보이자 수사라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처럼 황용운, 정영 등의 내·수사 과정을 살펴볼 때 안기부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오형근, 안장영, 안희천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서가 아니라 ‘월북 가족’ 사건으로 접근하고 수사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 등에 발표할 때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보완 요청

이렇게 안기부 인천분실이 1983년 정영 등에 관한 수사를 추진하면서 본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기존 안기부 본부의 수사와는 달리 ‘장영환’ 등에 관한 새로운 공작, 새로운 수사라고 강조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은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올린 검거보고 및 수사보고에 안기부 본부가 상당히 부정적인 검토 보고를 내려보내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3년 10월 17일자 「간첩 정영 등 수사결과 검토 의견 통보」 및 일자미상 「인천분실, 간첩 등 혐의자 수사상황보고」 등 안기부 본부가 인천분실에서 올린 수사결과에 붙인 의견을 보면 정영, 정진영 등의 진술이 1982년 안기부 본부에서 했던 진술과 달라지는 점, 피의자들의 자백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공소유지 가능성에 대해 안기부 본부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보고서는 당시 안기부 인천분실의 수사에 대해 안기부 본부가 어떤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간첩 정영 등에 대한 수사결과 검토 의견】 269)

1. 상황

- 83.10.11 인천분실은 정영(42세)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를 본부에 보고, 조정요청함에 따라
- 본건 당과에서 82.2.8-2.20(13일)간 기히 수사, 무혐의 종결하였던 사안임을 감안

269) 안기부, 「간첩 정영 등에 대한 수사결과 검토 의견」

○ 인천분실에서 수사한 각 피의자 주요 범죄사실의 신빙성 여부 및 수사보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2. 수사결과 내용 검토

가. 정영(42세)

(1) 진술요지

안기부 본부	인천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10.29 북괴지역인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은점별에서 조개잡이중 북괴군에 피납, 평양 여관에 수용 중 ○ 11.10경 6.25당시 월북한 7촌숙 정진구와 접촉, 국내가족 현황, 미법도 내의 주민실태 및 미법도 소재 자가 약도 등을 제공하는 등 포섭 -군경 경비실태 등을 기록, 보고하라는 지령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10.29 북괴지역인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은점별에서 조개잡이중 북괴군에 피납, 평양 여관에 수용 중 ○ 11.10. 6.25당시 월북한 7촌숙 정진구와 접촉 -국내가족 현황, 미법도 내의 주민실태 및 미법도 소재 자가 약도 등을 제공하는 등 포섭 ○ 11.13 동 여관에서 북괴지도원으로부터 3일간 간첩교육 수 -군경 경비실태 등 국가기밀 탐지 수집 보고할 것 -4년 후인 69.9.2(음) 01:00-02:00간 미법도 소재 닭바위 앞 해변에서 접선할 것. △ 접선신호 방법 안전신호: 9.1. 14:00-15:00간 닭바위 뒷산에서 모닥불 1개를 피워 5분간 연기 신호 위험신호: 9.1. 14:00-15:00 닭바위 정상에서 모닥불 2개를 피워 5분간 연기 신호 (65.11.20. 판문점 경유 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8 일자미상 01:00 미법도 소재 자가에 침투한 정진구 1차 접선 -65.11-68.7까지 미법도 경찰이동사항 등 군사기밀을 수집, 농약병에 은의보관하였던 문건 제공, 군사기밀 누설 -공작금 7만원 수수(공작금 출처 처 황문자에게 발설) -동 자금으로 미법도에 논 550평, 밭670평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9.1(음) 14:00 미법도 닭바위 뒷산에서 모닥불 1개를 피워 접선 안전신호 9.2(음) 01:50 닭바위 앞 해변에서 정진구 1차 접선 -65.11-68.7 군경 경비실태 등 탐지 농약병에 은의보관하였던 문건제공 군사기밀 누설 -공작금 20만원 수수 -2년 후인 71.7.2(음) 전과 동일 방법으로 접선 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 여름 일자미상 02:00경 미법도 자가에 침투한 정진구 2차 접선, 기간 중 군경 경비실태 등을 수집, 기록해둔 종이를 제공하고 동도 입북 -04:00경 고무보트에 승선 출발, 동일 05:00경 연백군 해성면 은점별 인접 영전에 도착(1시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7.1(음) 14:00 접선 안전신호 후 7.2(음) 02:15 닭바위 해변에서 정진구 2차 접선, 군경 경비실태 등을 탐지기록한 종이를 제공하고 동도 입북 -02:30 고무보트에 승선 출발, 중간 해상에서 공작선에 옮겨타고 동일 05:00 연백군 해성면 은점별 인접 영전에 도착(2시간 30분 소요)

<p>-3/4톤 트럭 비슷한 차량으로 평양 도착 65.10 납북시 수용되었던 평양여관에 재수용 복괴간부 접촉 등 간첩교육 수</p> <p>-3일째인 새벽 02:00 입북시와 동일한 장소 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출발, 03:00경 미법도 닭바위에 도착, 귀환 잠입(총 48시간 체류)</p>	<p>-승용차편 평양 도착, 65.10 납북시 수용된 평양여관에 재수용, 평양트랙트 공장 등 4 개소 견학하는 등 간첩교육 수</p> <p>-7.3(음) 23:00 입북시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출발</p> <p>7.4(음) 03:00 미법도 닭바위에 도착 귀환 잠입(총 48시간 체류)</p>
<p>o 76.10.4-10.7 미법도 자가에 침투한 정진구 3차 접선</p> <p>-정진구 및 안내원 대동, 정진영가까지 안내, 접선 주선</p>	<p>o 73.9 일자미상 04:00 미법도 자가에 침투한 정진구와 3차 접선</p> <p>-군경 경비실태 보고, 군사기밀 누설</p> <p>-정진구 및 안내원 대동, 정진영가까지 안내 접선 주선</p> <p>o 75.9 일자미상 24:00 자가 뒤편 굴뚝 옆에서 정진구 4차 접선</p> <p>-군경 경비실태 등 보고, 군사기밀 누설</p> <p>-공작금 10만원 수수 하는 등 암약 중인 간첩</p>

(2) 보완할 사항

- o 주요 범죄사실이 1차 당과에서 진술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일시 및 장소 등 일부만 상이하므로 수사 반복 진술이 없도록 정황증거라도 명백하게 보완
- o 65.10 피납시 상황 변동에 따른 아무런 구체적 접선조직도 없이 단순히 4년 후인 69.9.22 차기 접선일을 약정한 점 등은 객관적 사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복괴의 대남전술 등을 고려하여 실질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보완
- o 대낮에 산정상에서 모닥불 연기로 신호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접선 신호 방법이므로 간첩들의 통상접선 방법 채택 보완
- o 가족들에게 아무런 가장 구실도 없이 3일간이나 행불(입북귀환)되었다는 사실은 가족들의 법정 참고인 진술시 사건 반복될 우려 있음으로 상호 정황 증거 보완
- o 입북시 미법도에서 최단거리(10km)에 있는 복괴공작기지인 ‘불당포’로 입북치 않고 고무보트 및 공작선을 번갈아 타고 갯벌지역을 우회, 연백군 해성면 영번으로 입북한 점(3시간 소요)은 지형적으로 불합리함으로 과거 사건을 참고 보완
- * 61.11 황순애(간첩 황용윤 사건 관련자)는 고무보트만을 이용, 불당포로 입북(1시간 소요)
- o 입북시 초대소에 수용되지 않고 일반여관인 평양여관(65.10 피납시 수용)에 재수용되었다면 65.10 당시 상황을 재연 진술했다는 여지가 있으므로 재확인

- 짧은 입북기간 중 제반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65.10 피납시 기히 견학한 평양트랙터 공장 등 4개소를 재견학하였다는 것은 48시간의 체북시간으로는 무리하므로 당야공작 등의 특성을 재고 합리적으로 보완

나. 정진영(67세)

(1) 진술요지

안기부 본부	인천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9(음) 일자미상 18:00경 미법도 소재 당너머 고개에 나무하러 가는 도중 덩불 속에서 은신 중인 정진구 1차 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진구의 자 정광영(39세), 정명순(43세) 등 가족동향 및 주민동향 제보 -64.7.22(음) 미법도 소재 '세반낭'에서 접선 약속 -공작금 5만원 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9 일자미상 19:00경 교동도 거주 매 정점분의 연락(정진구가 정점분 접선, 2일간 교동도에 잠복 대기)으로 경기 강화군 교동면 양갈리 소재 '빈장산 우물터'에서 정진구 1차 접선, 포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진구의 자 정광영, 정명순 등 가족동향 및 6.25시 월북자, 부역자 가족 처벌상황 등 국가기밀 누설 -미법도 근방 해상 경비상황 등 탐지 수집 보고 지령 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7.22(음) 오후경 약정된 접선장소인 '세반낭'에서 정진구 2차 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안부 등 제공 -69.10.22. 21:00 자존뱅이 상여집에서 접선기로 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9 일자미상 20:00경 미법도 자가에 침투한 정진구와 2차 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중 탐지한 경찰 경비상황 등 국가기밀 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10.22 약정된 시간에 접선할 목적으로 상여집에 나갔으나 정진구 미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9 일자미상 21:00경 미법도 자가에서 처황정임과 함께 정진구 3차 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중 탐지수집한 군경 경비상황 등 보고 국가기밀 누설 -공작금 3만원 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1 중순 새벽 흑시 정진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상여집 부근을 배회중 정진구 3차 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작금 50만원 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11. 일자미상 24:00경 미법도 자가에서 정진구 4차 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경 경비상황 등 보고, 국가기밀 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9 중순 21:00경 미법도 자가에서 황용익(6.25시 월북, 간첩 황용윤 사건 상부선)과 함께 침투한 정진구 4차 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에서 오는 길인데 황용윤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언동 득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9 일자미상 21:00경 미법도 자가에서 정영이 안내해온 정진구와 5차 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정보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암약중인 간첩

(2) 보완할 사항

- 56.9. 1차 접선시 교동도에 침투한 정진구가 정점분을 접촉, 정진영에게 연락을 부탁하고 2일간이나 적지인 교동도에 잠복, 대기하였다가 접선하였다는 점은 전후 상황이 불합리함으로 설득력 있게 진술 보완

- 정진구는 목숨을 걸고 적지에 뚜렷한 공작성과도 없이 5차에 걸쳐 남파하여 정진영을 접선 미법도 경비상황 등만을 거듭 입수 후 복귀하는 등 공작목적이 결여되므로 이를 보완
- 전시 정영이 정진구를 정진영가에 안내 접선을 주선하였다는 것은 공작차단 원칙을 무시한 예이므로 재확인
- 정진영이 직접 양육한 정진구의 자 정광영, 정명순 등은 정진구 남파사실을 일체 모르고 있다면 앞뒤 정황으로 보아 정진영의 진술 임의성이 결여됨으로 이를 확인 보완

다. 황정임(62세, 정진영의 처)

(1) 진술요지

안기부 본부	인천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11 정영과 함께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동리 주민 이옥분(64세)으로부터 “체복시 평양여관에서 6.25때 월북한 정진구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진구가 재북 중인 사실은 알았으나 ○ 정진구가 남파하여 남편 정진영이나 다른 연고자를 접선했다면 자신이 필히 알아야 될 상황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9. 21:00경 미법도 자가에서 남편 정진영과 함께 정진구 1차 접선, 은신처 및 식사 제공 ○ 72.3. 03:00경 남편 정진영 부재 중 자가에서 정진구 2차 접선 은신처 제공 -미법도 내 경찰 경비상황 누설 -공작금 5만원 수수 등 간첩 방조

- * 간첩 정진구는 54.4-75.9간 도합 9차에 걸쳐 21년이나 남파하였으며, 특히 동기간 중 각 피의자로부터 유출한 진술내용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을 감안, 구체적으로 내용 보완

라. 황문자(40세, 정영의 처)

(1) 진술요지

안기부 본부	인천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8 구입한 전답(총 550평, 밭 670평)은 부부가 열심히 일해 저축한 돈으로 구입하였고 ○ 남편 정영으로부터 정진구 남파 접선 사실 일체 득문치 못하였다고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9. 18:00경 미법도 자가에서 남편 정영으로부터 정진구 접선 사실을 득문하고 -정진구로부터 수수한 공작금 20만원을 정영으로부터 받아 은닉 보관 ○ 71.7.4(음) 04:00 입북후 귀가한 남편 정영으로부터 입북사실 득문 ○ 73.9 자가에서 정영으로부터 정진구를 접선, 정진영가까지 안내 사실 득문

3. 의견

본건 진술내용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됨으로 구속수사에 대비 구증자료 및 정황증거를 보완, 인천지검과 사전협의 공소유지 가능하도록 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인천분실, 간첩 등 혐의자 수사상황보고】 270)

3. 사건내용 검토

가. 긍정적인 면

○ 피의자 상호 연계 구증 입증

- 정 영: 73.9 재북간첩 정진구 접선, 7촌숙 정진영 가에 안내 진술
- 정진영: 정영 안내로 래방한 정진구 접선 진술
- 황정임: 재북간첩 정진구 음식 등 편의제공 진술
- 정점분: 54.4-60.4간 4회 교동에서 오빠 정진구 접선, 큰오빠 정진영과 접선 주선 진술
- *56년 교동 빙장산 우물터에서의 접선 사실을 남편 한기덕에게 발각, 부부싸움(입증 필요)
- 황문자: 남편 정영이 간첩 정진구로부터 20만원 수수 및 정진구를 정진영가에 안내사실 진술

○ 정영이 공작금으로 전답 4,000평 구입 사실 입증

- 최초 친지에게서 돈을 빌려 전답구입 주장하였으나, 대질 등으로 자금 출처 상세 추적 결과 번복 진술
- 69년 정진구로부터 공작금 20만원 구입 병거지속에 은익타, 72년 전답 구입사실 실토(정영, 황문자)
- * 참고인 확보

나. 부정적인 면

○ 피의자들의 범법사실 인정 외 물증 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방증자료 전무)

○ 정영의 범증내용상 의문점 내재

- 인천분실에서 진술한 범증내용이 본부에서 조사시 진술내용과 상이(위증 가능성)
- 북괴대남공작 전술과 상치

270) 안기부, 「인천분실, 간첩 등 혐의자 수사상황보고」

- . 3일간 체복(71.8경)
 - . 체복 진술사항이 65년 납북귀환(22일간) 당시 체득 범주에 국한
 - . 체복 중 기거한 평양여관은 과거 납북시 기거 장소
 - . 지리상 고무보트-목선 환선 입북 필요가 없는 지역(당부 검거간첩 황순애도 간첩 목선만을 이용 입북)
 - . 시기상의 차이는 있으나, 최초 재복간첩 정진구가 누이 정점분을 통해 형 정진영 접선 후, 7촌 조카 정영을 통해 정진영을 접선함은 공작 논리상 모순(정진영 직접 접선 순리)
- 정영 체복시 “난수 등 통신교육을 받았으나 우둔하여 실패했다” 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복귀가 미법도 간첩에게 통신지령한 사실 전무

4. 향후 수사방향(본부 조정)

- o 범행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점검 확인, 진술의 임의성 입증(직접 증거 확보 노력)
- o 정점분의 남편 한기덕 환문조사, 범증 구증
- o 대상자들에 대한 강압수사 및 과도한 법적용 지양

여기서 더 나아가 「인천분실, 간첩 등 혐의자 검거보고」²⁷¹⁾에도 안기부 본부는 “간첩 혐의자로 검거보고한 정진영, 황정임 등 2명은 범죄내용상 간첩활동(국가기밀 탐지수집) 사항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분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구체적 간첩활동 범증을 보완하고 사건 송치시 법적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이 가하겠음”을 검토 의견으로 밝히면서 “정영 등 3명을 구속수사, 범증 보완토록 하되 사건 송치시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기부 본부는 인천지부에서 올린 정진영, 황정임의 적용법조가 어떻게 미흡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 「정진영, 황정임의 범죄내용과 간첩죄 적용 문제」 보고서는 안기부가 당시 간첩 사건 관련 법원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공소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역시 여기에 전문을 첨부한다.

271) 안기부, 「인천분실, 간첩 등 혐의자 검거보고」

【정진영, 황정임의 범죄내용과 간첩죄 적용 문제】 272)

1. 분실보고 내용

혐의자	범죄내용	적용법조
정진영	○ 56.9 남파간첩 정진구와 접선 지령 받고 ○ 71.9-73.9간 3회에 걸쳐 정진구 접선, 미법도내 군, 경 경비상황 누설 및 3만원 수수	○ 형법 98조 1항(간첩) ○ 형법 98조 2항(군사기밀 누설)
황정임	○ 71.9 남파간첩 정진구 접선, 은신시키고 식사 제공 ○ 72.3 정진구 접선, 미법도 내 군, 경 경비상황 누설 및 5만원 수수	○ 형법98조 1항(간첩방조) ○ 형법 98조 2항

2. 간첩죄 및 군사기밀 누설죄의 구성요건과 혐의자 범죄 내용

- 형법 98조 1항(간첩, 간첩방조)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가 그 구성요건으로 되어있는 바
 - 정진영의 범죄내용에는 국가기밀탐지, 수집행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고
 - 황정임의 범죄내용에는 간첩 정진구의 국가기밀탐지, 수집과 관련한 방조 행위가 구체적으로 실시되어 있지 않으며
- 형법 98조 2항(군사기밀누설)은, 직무상 군사기밀을 지득한 자가 그 기밀을 적국(북괴공작원)에 누설하는 행위가 그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바
 - 정진영 및 황정임의 누설기밀은 직무상 지득한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 기밀내용 또한 접선 당시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황(요즘 해상경비가 강화되고 있으니 조심하게 등)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 현 정진영, 황정임의 범죄사실은 간첩, 간첩방조 및 군사기밀 누설죄의 구성요건 충족에는 미흡한 상태임

* 최근 법원의 간첩죄 관련법 적용에 대한 태도
 ○ 국내에서의 간첩활동 범행에 대하여 엄격한 보강증거 요구
 ○ 간첩행위는 국가기밀 탐지 수집행위로 종료되고 기탐지 수집한 행위의 누설은 직무상 취득 여부를 가려 군사기밀 누설이나 일반 이적죄 적용

특히 안기부 본부의 인천지부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단순히 미흡하거나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간첩들의 통상 접선 방법’이나 ‘과거 사건’ ‘당야공작의 특성’ 등을 참조해서 ‘수정 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데다가 인천지검과 협의하여 공소유지에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는 등 정영 등의 혐의가 유죄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272) 안기부, 「정진영, 황정임의 범죄내용과 간첩죄 적용 문제」

4) 수사계획 및 진행

황용운 사건 및 정영 사건은 이렇게 오랜 내·수사 공작 끝에 전격적인 구속 수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정영 사건과 관련해서는 1983년 사건철이 국정원에 존안되어 있지 않거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황용운 수사계획서는 6건(81.12.7/81.12.8/81.12.14/81.12.17/81.12.22/82.1.5)이 국정원에 남아있어 수사 착수 이후 실제 안기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중 특히 언제 진술서를 받을 것이며 언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등의 세부계획이 수사 초기부터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두 가지를 여기에 인용한다.

【고첩 황용운 및 관련자 수사계획】 273)

5. 세부계획

- 가. 기간: 1981.12.16-1982.1.25
- 나. 장소: 조사실
- 다. 인원: 한00 외 10명
- 라. 수사일정

일자	내용	담당관
81.12.16-12.31(1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신문(피의자 3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사실 녹취 정리 -상피의자간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첩보유출 신문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필진술서 작성 -신문조서 	한00 주00, 이00, 변00 이00
81.12.21-12.22(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조사 및 사실확인 조사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의자 황용운이 공작금으로 매입한 토지 전 소유자 2명, 중개인 1명 -황용운이 구입한 토지 경작자 1명 -토지 등기부등본 입수(수리조합, 면사무소) -피의자 주민등록 이동사항 확인 -피의자가 납북귀환 사항 확인 	경기 김포군 대곶면 대벽리 1박2일 출장

273) 안기부, 「고첩 황용운 및 관련자 수사계획」(1982.12.17)

81.12.28-12.29(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선 장소 실황 조사 및 참고인 조사 출장 -피의자 황용운이 재북간첩 황용익과 접선하였다는 미법도 소재 선친묘소 등 실황조사 -참고인 정명영 등 2명 조사 -기타 참고자료 수집 	경기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	-----------------------------------------------------------------------------------------------------------------------------------------------------------------------------------	----------------

【납북귀환어부 간첩 황용운 및 관련자 수사계획서】 274)

5. 세부계획

가. 기간: 1982.1.1-1.20(20일간)

나. 장소: 조사실

다. 인원: 한00 외 11명

라. 수사일정

구분	내용	기간	비고
1. 피의자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사실 신문 ○ 관련 첩보 유출 	81.1.1-1.10	한00 외 10명
2. 수사서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진술서 ○ 인지동행 보고서 ○ 수사결과 보고서 ○ 황용운 납북귀환 사항 수사보고서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의견서 작성 ○ 피의자 환경조사서 및 지문조회 ○ 구속영장 신청서 작성 	1.10-1.20	
3. 구속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영장 발부 	82.1.20	서울구치소
4. 사건송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사범 등에 대한 전산 자료 작성 ○ 사건 송치서 ○ 의견서 발간 ○ 결재 	82.1.21-1.25	서울지검
5. 실황조사 및 참고인조사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황용운 거주 가 ○ 재북간첩 황용익 남파접선장소 선친묘소 ○ 황용익 침투해안 및 황순애 대동월북 지역 ○ 황용익 남파 은신장소인 행여집 ○ 재북간첩 황용익 남파사실에 대한 미법도 주민 여론 ○ 참고인 정명영 등 2명 	82.1.14-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미법도 한00 주00 이00 이00
6. 참고인 조사 출장	74.4경 간첩 황용운이 배를 구입, 야간에 출항타 황정익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각 저지된 사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	82.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김포. 대 곳. 대벽 주00 한00

274) 안기부, 「납북귀환어부 간첩 황용운 및 관련자 수사계획서」(1982.1.5)

5) 불법연행 및 장기구금

한편 이 황용운 관련 수사계획서와 정영 사건 관련 여러 내부 보고서들은 검찰 법원 등 외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기록과 달리 실제 관련자들이 언제 어떻게 연행되었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단서를 제공해 주어 간첩 사건 수사에서 흔히 제기되는 불법 연행 및 장기구금 여부 및 안기부가 불법 연행이나 장기구금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어떻게 공식 서류를 허위조작하는지를 보여준다.

가) 황용운 사건의 경우

황용운 사건의 경우 검찰, 법원 등에 제출된 자료상의 연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공식 연행일자와 실제 연행일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내부 자료를 통해 황용운 등이 1982년 1월 25일 구속되기까지 최대 47일까지 불법 장기 구금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황용운 사건에서는 총 14명이 불법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²⁷⁵⁾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되었는데 1982년 2월 작성된 안기부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에 보면 1981.12.9-1982.1.25간 조사실에서 황용운 등을 수사했다는 사실과 각각의 연행, 구속 및 방면 일자가 자세하게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황용운은 1981년 12월 9일에, 한금분은 1981년 12월 12일에, 황순애는 1981년 12월 19일에 연행되어 각각 47일, 44일, 37일간 불법 구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정영 사건의 경우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안기부 수사기록 상의 「임의동행보고」는 정영, 정진영, 황정임, 정점분, 황문자 등 5명의 피의자를 1983년 10월 15일

275) 6건의 황용운 수사계획서를 보면 황용운, 한금분, 조건열, 조옥순을 81.12.9부터 12.15까지 7일간 연행 수사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후 계속 추가로 관련 혐의자를 연행하여 82년 1월 25일 작성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총 14명을 연행 수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피의자 자택 등에서 임의동행했으며 10월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영은 상고이유서 등에서 자신이 1983년 9월 13일 당시 직장인 삼오기업으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찾아와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며 안기부 인천분실로 끌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문자는 1983년 추석이 지난 후 회사에서 낯선 이들에게 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안기부 내부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이들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2007년 6월 21일 인천지부에서 보내온 「인천지부 재수사 경위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 인천지부는 정영, 정진영, 황정임, 정점분, 황문자, 장영환 등 6명을 1983.9.6-22일 사이에 검거했다. 구체적으로 1983년 9월 8일자로 올린 「수사승인 상신」 보고서에는 손으로 쓴 메모들이 적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13일 정영, 22일 정강명, 정명영, 정정진, 황문자’라 되어 있어 9월 6일에 정진영, 황정임 부부와 장영환이, 9월 13일에 정영이, 그리고 정강명, 정명영, 정정진, 황문자가 9월 22일에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⁶⁾. 실제로 이 수사승인 상신 서류에는 ‘환문조사 계획’으로 대상자 임의동행 그간의 혐의점 추궁, 가택수색, 증거물품 압수, 참고인 등 진술서 정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대로 수사가 승인, 진행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1983년 10월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정진영, 황정임은 45일, 정영은 38일간 불법 구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장영환은 9월 6일 연행된 것으로 보이나 수사 후 훈방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히 언제 훈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1983년 조사와 관련, 특별한 진술을 한 바 없어 그렇게 오랜 기간 조사를 받았던 것 같지는 않다. 또한 황문자는 대법원장 진정서 및 진실위와의

276) 한편 정진영과 황정임의 진술 외에 남파간첩 정진구를 직접 만났다는 유일한 인물인 정진영의 막내동생 정점분은 1983년 이전까지 단 한번도 수사선상에 올랐던 적이 없으며 래왕선 공작에서조차도 대상자에 오르지 않았던 데다가 안기부 내부 기록상 연행 및 방면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면담에서 ‘10여일 후’ 풀려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10월 초에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²⁷⁷⁾

한편 1983년 10월 11일자 안기부 내부 보고서 「정보사범 발생 및 검거보고」 및 「인천분실, 간첩 등 혐의자 검거보고」에는 정영 등을 1983년 9월 25일 각 주소지에서 검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검찰, 법원 등 외부에 제출하는 기록에서만 아니라 안기부 내부 기록에서까지도 피의자들의 연행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고문 및 가혹행위

피의자의 자백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딱히 없는 간첩사건의 경우 특히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는데 황용운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의 주장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정영 사건 관련자들은 상고이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의 문서 및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1982년 안기부 본부에서의 수사 및 1983년 인천지부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주장했다²⁷⁸⁾.

277) 이와 관련 상식적으로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공식기록보다 오랜 기간 불법 구금되었음을 주장하는 일은 있어도 공식기록보다 더 적게 조사받았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황용운 사건 기록을 보면 후에 불구속 기소되는 황인복, 고남순 등이 각각 5일(81.12.19-12.24)과 당일(82.1.16) 풀려난 것으로 되어 있어 황문자 역시 불구속 기소되에도 불구하고 10여일 만에 풀려났다는 본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황문자는 안기부의 공식 「임의동행보고」 상의 임의동행일자인 83년 10월 15일에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상태였으며 따라서 10월 16일자부터 기록된 안기부의 황문자 자필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그 날짜가 허위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78)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직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1982년 정영, 정진영에 관한 「일일신문사항」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다. 이 「일일신문사항」에는 거의 매일 각 피의자들에 대해 의사/군의관/간호사 등이 혈압을 재는 등 건강검진을 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으며 정영과 정진영이 정진구를 만났다고 허위자백한 이후인 1982년 2월 18일자 「일일신문사항」 보고서에는 “10:30-12:00간 강력수사로 피의자는 ‘납북기간 중 정진구 접촉시 약도(자신의 집)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뢰성 희박”이라 적혀있으며 같은 날 정진영에 대한 「일일신문사항」 보고서에는 정진영이 전에 자신이 했던 자백이 허위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반복하자 “회유 병행 신문 계속”이라고 적혀있어 ‘강력수사’의 의미와 어떤 방식의 수사와 ‘회유’ 방식을 ‘병행’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

정영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82년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비군복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짜고짜 구타해서 코피가 터졌고 ‘왜 때리냐’고 했더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반항하느냐’며 더 때렸다. 세면기에 물 부어놓고 얼굴을 찍어누르는 고문도 받았다. 약 10여일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잠깐 동안 무차별 구타를 당했으나 그후에는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1983년에는 수시로 발가벗겨서 구타, 잠 안재우고 별 세우기, 야전 침대 다리로 구타 등 별의별 고문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반항하자 두 사람이 팔을 붙잡고 엎드려놓고 구타해서 엉덩이가 터져서 팬티가 다 물들도록 피를 흘리기도 했다. 나중에는 손바닥이고 발바닥이고 다 통통 붓고 진물이 흘러서 제대로 걸지도 못했다. 견디다 못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소변 보러 가는 척하다가 옥상으로 기어올라가다가 잡혀온 적도 있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수갑을 채워놓아서 밥도 개밥 먹듯이 먹고 소변도 소변통 가져다줘서 안에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고이유서에서는 7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했으며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해서 수사관들이 시키는대로 허위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황문자(정영의 처)는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1983년 조사받을 때)어느 날인가는 각목을 사이에 끼우고 무릎을 꿇려놓고 손을 들고 있게 했고 안기부 수사관이 ‘최아무개(안장영의 처)는 너만 못해서 저러고 있는 줄 아느냐. 여기는 국회의원도 한번 들어오면 그냥은 못 나가는 곳이다’라면서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4.8.1일자 대법원장 진상서에서는 며칠이 지나도록 정진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양해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 하면서 양쪽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놓고 양손은 위로 올리고 마구 때렸으며 쓰러지면 머리채를 잡고 다시 일으켜 앉혀놓고 때렸다”고 주장했다.

황정임(정진영의 처)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수사관들이 나한테 와서는 정진영은 바른 말 다 했는데 너는 왜 말 안하냐면서 독한 년, 무슨 년, 옷을 벗겨라, 거꾸로 매달아라, 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겁 안 났다. 그래

실컷 해봐라 그랬는데 주먹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묻는 대로 다 그렇다고 대답했다...그 지하실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 신발 소리만 나도 소름이 쪽 끼쳤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두 명이 서서 손 네 개로 볼따구니를 막 때리는데 뚱뚱한 사람 하나가 들어오더니 ‘아, 그년 발칙한 게 아직도 말 안해’ 그러더니 달려들어 셋이서 때렸다. 금방 얼굴이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툭툭 부었는데 그걸 보면서 ‘꼴 좋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정희(정진영의 딸)는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수사관들이 뺨 때리고 팔 올리고 벌을 서라고 해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또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7) 허위자백 개요

많은 간첩사건 피해자들이 이러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해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주장하는데 정영 사건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영의 경우 상고이유서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허위조작으로 불러주는 대로 받아썼으며 “받아쓰지 않을 경우 폭력으로 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으며 상고 제기 이후 제출한 일자미상 탄원서에서는 “(일자미상 언젠가) 안기부 수사관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해준대로 말하라’ 라고 하였으며 시키는 대로 하면 징역을 4-5년 주도록 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영은 또한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1983년에 집사람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해서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했다. 그러자 수사관이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왜 이렇게 매 실컷 맞고 고통받고 나서야 털어놓느냐고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사람도 잡아다가 고문을 했다고 하더라”고 진술했다.

또한 1996년 작성된 민가협 자료에 따르면 정영이 수사관들의 집중 구타를 견딜 수 없어 수사관들이 강요한 허위진술을 작성하고자 했지만 간첩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해매자 수사관들이 정영이 작성할 간첩내용을 불러주었다고 한다. 정영 역시 옥중에서 작성한 일자미상 탄원서에서 “수사관들은 간첩이 되는 가정을 아시켜주면서 나는 따라하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간첩이 되는 증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수사관들이 하라는 대로 무전교육은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고 하며 밤에 접선은 후라쉬로 깜박거리서 접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허위자백 과정을 진술했다.

황정임은 항소이유서에서 “수사관의 고문에 못이겨 하지 않은 것을 하였다고 거짓자백을 했다”면서 수사관이 “자식까지 데려다놓고 바른말을 할 때까지 가두어놓는다기에” “실토를 하면 집으로 보내준다기에” “내가 하는 짓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정임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도 수사관들이 “나에게 와서는 정진영이 다 말했는데 너는 왜 거짓말 하느냐고 뉘달하고 정진영에게 가서는 반대로 황정임은 다 말했는데 너는 왜 거짓말 하느냐고 뉘달하는 식으로 허위자백이 만들어졌다”면서 현재 큰 병을 앓고 난 정진영은 그때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막 출소하고 나와서 “정진영도 수사관들이 정진구 왔다갔다고 말만 하면 내보내 줄 텐데 왜 말을 안하냐 그러니까 그걸 어리석게 믿고서 허위자백이라도 하면 내보내주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정영의 처 황문자는 1984.8.1일자 대법원장 진상서에서 수사관들이 매일 같이 정영과 관련된 새로운 진술을 가지고와서 시인할 것을 강요했으며 “너는 말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보내준다, 말 안 하면 정영과 똑같이 가두어 두겠다”면서 때리고 재촉하여 “고문에 못이겨 정영의 진술서대로 모두 그랬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자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황문자는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종이를 주면서 거기에 써어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뉘달하면서 잠을 한숨도 재우지 않았다...정영의 목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틀어주면서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풀어주겠다고 해서 어린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나왔다. 그런데 풀려난 후에도 ‘툽니바퀴가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서’ 맞춰야 한다면서 두 번 더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고문 등 가혹행위와 강압에 의해 일단 허위자백을 한 후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서로의 진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며 자필진술서를 몇 번이고 고쳐쓰는 과정이 이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손가락에 못이 박히도록, 나중에는 스스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수십 수백번씩 써서 틀이 잡힌 이후에 비로소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2007년 6월 21일 국정원 인천지부에서 보내온 정영의 피의자 신문조서 1, 2, 3회와 진술서 2회는 그렇게 큰 틀에서 동일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가 어떻게 세부적인 수정을 거쳐 최종 형태를 갖추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2007년 6월 21일 인천지부에서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작성일자없이 1회, 2회, 3회의 순서만 적혀 있으며 각 회차별 주요 서술 내용은 검찰에 제출한 각 회차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는데 한 예로 안기부 의견서에까지 기록된 ‘약이 다 닳아서 붉은 색이 나는 후레쉬’에 대한 언급이 인천지부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없으며 인천지부 진술서 2회에는 69년 정진구와 동행한 총을 가진 간첩의 나이가 25세 가량이라고 되어 있으나 검찰 제출 피신 2회에는 약 30세쯤 된다고 되어 있고 인천지부 피신 2회에는 밀입북시 타고간 목선의 길이가 약 4m라고 적혀 있는데 검찰 제출 피신 2회에는 약 10m라고 적혀있는 식이다²⁷⁹⁾.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가 한번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279) 1983년 10월 19일자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에 보면 정영이 1971년 밀입북시 타고 간 배와 비슷한 사진을 찾아서 지적,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에 지적한 것처럼 목선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가 정영의 기억의 착오 때문이라면 정영이 어떻게 비슷한 배의 사진을 찾아서 지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작성, 수정되어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까지는 당시의 ‘관행’이자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인천지부에서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제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서 정진구에게서 받았다는 공작금이 몇 원 권 지폐였는지가 달라지는 부분만큼은 단순히 실수나 기억의 문제로 넘어가기 어렵다. 인천지부에서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1회부터 3회까지 일관되게 정영이 정진구에게 받은 공작금이 1000원권 지폐 몇 장, 몇 묶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 제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이것이 공작금의 액수는 동일하나 500원권 지폐 몇 장, 몇 묶음이라고 다 수정되어 있다. 기억의 오류 때문이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몇 장짜리 몇 묶음이라고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검찰 제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1000원권 지폐가 500원권 지폐로 바뀌는 것일까. 정영이 정진구를 접선, 공작금을 수수한 것은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세차례이다. 그런데 1000원권 지폐가 발행된 것은 1975년에 이르러서였다. 다시 말해 최소한 1969년과 1971년 정영이 받은 공작금은 결코 1000원권 지폐일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정영의 정진구 접선 및 금품수수 혐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지폐 발행 역사를 고려치 않은 채 짜맞췄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일괄 수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즉 이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1000원권 지폐를 500원권 지폐로 수정한 흔적은 황문자의 안기부에서의 자필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나타난다. 황문자의 안기부 자필 진술서 1회에는 1969년 정영이 가져다준 공작금은 원래 ‘천원권 두 뭉치’라 써어있던 것을 ‘천원’을 ‘오백원’으로 바꾼 흔적이 남아있는데 덕분에 보통 한 뭉치를 지폐 100장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할 때 1000원권이 500원권으로 바뀌면서 공작금 총액이 10만원이 되어버렸다. 또한 황문자의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 1회에도 숫자로 1000원권 두 뭉치라 쓴 것을 지우고 500원권으로 다시 쓴 흔적이 남아있으며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

3회에는 아예 몇원권인지가 명시되지 않은 채 ‘두 뭉치’라고만 되어 있어 ‘천원권’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것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에 제출한 황문자의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는 10월 16일부터 매일 3회에 걸쳐 10월 18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지적했듯 그 기간 황문자는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 공식 임의동행 일자 및 구속영장 청구일에 맞추기 위해 모두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날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부분은 또 있다. 1983년 10월 17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황문자의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는 1회 진술에서 정명영, 정영남 등에게 돈을 빌려서 땅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2회 진술에서 공작금으로 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에 수사관이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고 묻자 황문자가 “수사관들이 정명영, 정명영 등의 진술내용을 전부 알려주기에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자백한다”고 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공식 수사기록상 정명영, 정명영 등의 진술조서 작성일은 그 다음날인 1983년 10월 18일로 이 기록만으로 본다면 황문자가 정명영, 정명영의 진술 내용을 듣고 자백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 안기부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OO, 박OO 등 두 명의 안기부 수사관이 1983년 10월 18일 하루 동안에 정명영, 정강명을 안기부에 소환해서 조서를 받고, 인천 거주 정영남, 이연화를 출장 면담하고, 또 강화도 외포리에서 배타고 석모도까지 들어가 이OO를 출장 면담한 것으로 되는데 이 역시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정영 등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필요와 계획에 맞춰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직접증거의 부재

이렇게 안기부가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무리하게 이끌어 내고 심지어 조작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용운 사건과 정영 사건 모두에서 수사검토 보고서에 이들 사건의 ‘부정적인 면’으로 ‘물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²⁸⁰⁾

미법도를 거점으로 한 안장영, 안희천, 황용운, 정영 등 남북귀환어부 사건은 모두 무전기나 난수표, 통신부호가 발견되기는 커녕, 직접적으로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안희천 사건과 황용운 사건은 현재 진실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²⁸¹⁾ 단 하나의 물증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수사, 기소, 판결했다.

‘관련’ 물증이 제시된 정영 사건과 안장영 사건은 그런 점에서 앞의 두 사건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인데, 이 물증이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영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자백 이외에 정영이 정진구를 접선, 금품 수수, 밀입북했다는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것은 1969년 정진구에게서 받은 공작금을 앞에 놓고 절을 한 후 안에 싸서 보관했다는 강화도 미신인 별상마님 모자와 별상마님 옷, 이를 찢던 한지 한 장,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100원권 지폐 한 장 뿐이었다. 게다가 이 별상마님 옷은 1969년 당시 사용했던 것은 낡아서 버리고 새로 마련한 것이며 이를 찢 한지 역시 최근에 같은 것이고 정영이 정진구에게 받은 공작금은 공소 사실에서 500원권 지폐로 명시되어 있어 별상마님 모자 안에 들어있던 100원권 지폐는 공작금의 ‘일부’조차 아니다.

한편 1977년 안장영 사건에서 안장영의 북한 공작원 접선, 밀입북,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는 무인포스트용으로 사용됐다는

280) 정영 사건 관련-「인천분실, 간첩 등 혐의자 수사상황보고」중 ‘부정적인 면: 피의자들의 범법 사실 인정 의 물증 무(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방증자료 전무)’
황용운 사건 관련-「간첩용의 남북귀환어부 심사계획서」중 ‘부정적인 면: 대상자 연행 심사 과정 혐의내용 부인시 구증 자료 희박’

281) 안희천 사건과 황용운 사건에서 증거로 제시된 물품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입수,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임

종근당 제약 공병 하나와 역시 무인포스트용으로 사용됐다는 납작한 돌 1개, 그리고 1975년 인천 만석우체국에 15만원을 1년 정액 저금한 정액 우편저금 증서 1개 뿐으로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빈병과 사방에 널린 돌이 어떻게 특정 ‘무인포스트’ 설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마 | 주요 혐의사실의 재검토

1) 1965년 납북귀환 상황

1965년 조개잡이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된 어부들 중 미법도 출신이 총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1965년 귀환 직후 조사 기록 및 그 이후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진행된 내·수사 과정에서 10여명에서 30여명까지 그 숫자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 65년 귀환 직후 명단을 작성, 확인하여 고향으로 송환했던 당시의 기록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미법도 출신은 총 14명으로 이 중 남성은 황용운(당시 49세), 정영(당시 26세), 안희천(당시 31세), 안장영(당시 35세), 그리고 고행기(당시 16세) 등 5명²⁸²⁾이다. 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고행기를 제외한 4명이 모두 각각 네 건의 간첩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 또한 1965년 납북된 강화도 어부들 중 미법도 외 지역 출신까지 포함할 경우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 출신 오형근을 포함 5건의 간첩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납북되었던 사람들 중 간황엽 역시 간첩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당시 이미 사망한 관계(1967.6 익사)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장영의 공소사실에 보면 안장영이 1962년 새우잡이 도중 오팔호 태풍으로 처음 납북되었을 당시 선장이 간황엽이었으며 1965년 10월 3일 북한 공작원을

282) 당시 조개잡이에 나섰던 미법도 남성 주민으로는 정영남(당시 40세)도 있었으나 정영남은 납북 당시 북한군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어 다른 이들이 귀환된 후 약 한달 여 후인 65.12.29 다른 부상자 2명(김O임, 문O순)과 함께 귀환되었다.

접선했을 때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조개잡이를 가자고 하면 주민들을 대동 월북하자는 신호로 알고 가면 된다”는 지령을 북에서부터 받았으며 이때 간황엽이 와서 조개잡이를 가자고 하기에 그 ‘잘 아는 사람’이 간황엽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볼 때 간황엽이 안장영 검거 당시 생존해있었다면 1965년 남북귀환 어부 중 간첩사건은 최소한 6건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²⁸³⁾

2) 1965년 체북당시 상황

정영, 황용운 등은 남북귀환어부인 동시에 월북가족 연고자로 ‘순수’ 남북귀환어부인 오형근, 안장영, 안희천 등의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 5건의 사건의 공통점은 1965년 남북 당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특수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안장영과 황용운은 1965년 남북 이전 이미 북한 공작원과 접선, 포섭되어 1965년에는 재교육을 받았으며 오형근, 안희천, 정영은 1965년 평양에서 처음으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 간첩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65년 평양여관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중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선 1965.11.23 치안국에서 작성한 「귀환어부 심문결과보고」²⁸⁴⁾에 따르면 체북 기간 “남, 녀 구분 평양여관 4, 5층에 1개방에 각각 2명씩

283) 한편 안장영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장영은 1965년 남북되기 이전에도 1962년 8월 8일 및 1964년 7월 29일 조업 중 납북되었다 귀환한 일이 있는데 안장영의 두 번째 납북인 1964년 7월 29일 함께 납북되었던 이들 중 일찍이 간첩죄로 구속된 사람이 있었다. 강화도 서도면 주문리에 거주하던 백O국(1924.4.6생)이 그 사람으로 83년 10월 22일 작성된 정영 관련 수사보고는 “1964.7.29 함박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태풍으로 납북, 평양여관 2층 12호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경기도 강화군 관내 군 주둔 상황 등을 누설하고 동년 9.16경 귀환된 후 강화경찰서에 피검되어 조사를 받고 1965.9.18 간첩죄로 인천지서에 구속 송치된” 자로 ‘전지로 3회 꺾벽꺾벽하거나 장장불을 3-4회 오른쪽으로 돌리는’ 접선 방법이 정영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284) 한편 이 보고서는 조O완 등이 국제여관에 분리 수용되어 특수지령을 받은 사실 등과 함께 ‘참고사항’으로 “제약된 시간으로 상당수의 용의 대상이 있으나 심문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귀가조치 후 별도 계획에 의하여 현 지서로 하여금 재심조치 함”이라 적었고 이에 따라 정영 등 미법도 남북귀환어부들은 귀환 후 미법도에 출장조사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용되고 식사는 2층 식당에서 공동식사하였으며 일체의 외출은 금지되고 단체행동을 하였”고 재북 기간 중 4회에 공하여 평양여관 5층에서 북한 심문관으로부터 연4-5시간씩 개별심문을 하였다고 한다.

1965.11.21 작성된 「황용윤 남북귀환어부 심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황용윤과 정영이 한 방에, 안장영과 안희천이 한 방에 수용되었다. 또한 화장실에 갈 때까지 안내원이 따라오는 등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 단체행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황용윤은 또한 1965.11.21 작성된 「황용윤 남북귀환어부 심사 보고서」에서 평양여관에서 심사를 받을 때 2인1조로 투숙된 방에서 한 명씩만 따로 심문을 받았으며 당시 정영이 심문을 받고 와서 심문 받은 내용을 이야기해주었을 뿐 자신은 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영과 황용윤은 각각 평양여관 체류시 정진구와 황용익을 접선했으며 북한 공작 지도원과 별도의 방에서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 한방에 지내면서 단체행동을 하던 이들이 서로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역시 같은 방을 사용한 안희천과 안장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평양여관 5층에 10일간과 7일간씩 단독수용되어 조국평화통일촉진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이모 지도원으로부터 교양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 서로의 부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안희천과 오형근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는 계기가 정확하게 동일한데 평양여관 수용 중 이모 지도원이 북한에서 보고 느낀 소감을 말하라고 했고 이에 두 사람 모두 “이 북이야말로 남한에 비해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다, 목숨을 걸고 혁명과업을 하겠다”고 하여 “북괴의 대남 공작사업에 적극 참여할 결의를 밝”혔다고 한다. 북한 공작원 이모 지도원의 질문이야 동일할 수 있으나 서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닌 이상 안희천과 오형근의 대답이 정확하게 똑 같고 그것이 포섭 계기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1965년 11월 20일 귀환한 어민 104명 중 귀환 직후 심사에서 특수지령을 받았음을 자백한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1965년 11월 18일 평양시내 국제여관으로 따로 불러가 평화통일위원회 지도원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 실제 특수지령을 받은 이들은 평양여관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⁸⁵⁾ 그렇다면 1965년 체북 당시 처음으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 특수지령을 받았다는 오형근, 안희천, 정영이 평양여관 내에서 심문 및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국제여관에서 특수지령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즉 특수지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또 오형근, 안장영, 안희천, 정영²⁸⁶⁾은 1969년 11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때 북에서 선물로 받은 인삼주 병 등을 던지며 북한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것이 공히 북한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특수지령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 공작이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3) 1965년 납북시 정영의 정진구 접선여부

정영 사건에서 7촌 숙부로 강화도 교동에 살다 정영이 9살 때 월북,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 정진구와 정영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정영이 1965년 조개잡이하다 납북되었을 때 정진구를 만났다는 것인데 정영은 상고이유서 및 탄원서에서 일관되게 납북시 정진구를 만난 적이 없다고

285) 특수지령을 받은 사실을 귀환 후 자백한 2명이 당시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1965년 당시 남북귀환어부 조사 보고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세 어부 관용 정책'에 따라 훈방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286) 안희천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영의 경우 그 자신이 위장 방식에 대한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러한 위장 지령을 받은 안희천이 한 동네에 사는 정영을 꼬여서 함께 인삼주 병을 던지며 북한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안희천이 오형근, 안장영 등이 옆에서 똑 같이 인삼주 병 등을 던지며 욕을 하는데 굳이 정영을 끌어들이어 함께 행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주장하고 있으며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정진영, 황정임 등 관련자들과 미법도 주민들 역시 일관되게 이옥분이 남북시 정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정영이 정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 평양에서 정영이 정진구를 만났다는 혐의 사실의 증거는 이옥분의 진술과 정영의 자백이 유일하나 이옥분의 진술은 그 자신이 정진구를 접촉했다는 것일 뿐 정영이 접촉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옥분은 1965년 트랙터 공장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정진구를 처음 만났고 그날 밤 정진구가 찾아왔다는 것인데, 이옥분이 1978년 8월 30일 강화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1965년 “미법도 주민으로서 소개잡이에 간 사람이 약 30명쯤 되나 거의가 피난민들이었고 정진구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옥분의 정진구 접촉 사실이 그대로 정영의 정진구 접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정영의 경우 정진구 접선 시기, 장소, 방식 등에 대해 여러 차례의 내·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엇갈리는 진술을 한 바 있으며 그 외 정영이 정진구를 만난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로는 1982년 안기부 수사 당시 정세환의 진술이 유일하다.

한편 1982년 2월 「수사결과보고」는 정영을 수사한 결과 정영이 1965년 11월 중순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정진구를 만났으며 정진구는 재남 가족 안부만을 묻고 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정영이 정진구의 인상을 “50세를 조금 넘어 보였고 검은 안색의 길쭉한 인상으로 더부룩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정확하게 진술하여서 안기부는 정영이 정진구를 본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²⁸⁷⁾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287) 그러나 2007년 6월 21일 인천지부에서 입수한 정영 피의자신문조서 1회에는 1965.11.10 만난 정진구가 “뒹수룩한 머리에 신사복을 입었는데 그리 깨끗지 못한 차림”이었다고 했다가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4회에서는 65년 만난 정진구가 “짧은 하이칼라 머리에 위웃은 가다마이 같은 곤색 색깔의 옷을 입었고 바지는 쥐색 색깔의 쓰봉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거칠고 마른 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영이 기억하고 진술한 정진구의 인상은 서로 일관되지 않아 정영이 ‘정진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상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논리는 들어맞지 않는다.

정영은 정진구를 만난 사실을 1982년 1월 정세환의 집에서 정세환에게 “북에서 정진구를 보았는데 광영이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라고 이야기한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1982년 수사 당시 정세환 역시 정영이 트랙터 공장 앞에서 우연히 정진구를 보았는데 광영이하고 똑같이 생겨서 정진구인 줄 알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정영 자신의 자백 외에 정영이 정진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법한 유일한 제3자의 진술인 정세환의 진술은 1983년 수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영이 1965년 체북시 정진구를 접선, 포섭되었다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나 증언은 정영의 자백 외에는 전혀 없었다.

한편 이옥분이 1965년 남북시 정진구를 만났으며 그가 황용익네 식구들은 다 어떻게 죽었느냐고 물어 정진구가 전에 강화에 다녀간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황용윤 사건과 정영 사건의 기본 토대를 상당히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우선 황용윤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 황용익은 황용윤이 1965년 남북되기 이전부터 황용윤을 접선, 포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 황용윤에게 형 황용암과 황용승의 소식을 들은 바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1965년 체북시 황용익은 다시 한번 직접 황용윤을 찾아와 포섭 상황을 재확인한다. 다시 말해 황용익이 재북 간첩이고 황용윤을 이미 여러 차례 만난 상태라면, 굳이 정진구가 이옥분을 찾아와 황용익 친척들의 안부를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영 사건에서도 전제는 동일하다. 정영은 1965년 처음 정진구를 접선, 포섭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정진영의 공소사실에 보면 정진영은 1956년부터 정진구를 접선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접선 때 이미 정진구에게 황용익 가족들의 안부를 다 전한 바 있다. 물론 여기에서 대남공작의 비밀성 때문에 정진구와 황용익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정진구가 황용익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1963년 정진구와 황용익이 함께 남파되어 여간첩 최부희를 대동 북귀했다²⁸⁸)는 공소사실을 미루어볼 때 두 사람이 상당부분 함께 활동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혹 함께 활동했어도 그러한 ‘사적인’ 정보를 나눌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옥분에게 다른 재북간첩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공작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아닐까.

게다가 앞서 설명했듯 안기부 인천분실이 본부에서 진행한 사건을 치받을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황용익 자신이 바로 그 평양여관에서 황용윤과 만나고 있는데 정진구가 뜬금없이 이옥분에게 황용익 식구들의 소식을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물론 황용익이 이미 황용윤을, 그리고 정진구가 이미 정진영을 포섭한 상태에서 이옥분을 포섭한다거나 이옥분에게 어떤 지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목적도 없이 오직 황용익 식구들의 소식을 묻고 형 정진영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다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있는 방에 정진구가 굳이 자기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옥분을 찾아온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옥분이 1965년 체북시 정진구를 만났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영이 1965년 정진구에게 포섭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황용익의 황용윤 포섭, 정진구의 정진영 포섭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4) 월북자 정진구

황용윤과 정영 사건이 여타 남북귀환어부 사건과 다른 부분이 바로 각각 황용익과 정진구라는 월북 가족이 핵심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사건에서 황용익과 정진구가 과연 재북 대남간첩인지, 이들이 수

288) 황용익과 정진구가 1963년 최부희와 대동북귀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사건 당사자 정진영 외 가장 ‘신빙성’있는 진술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최부희가 그의 집에 묵었던 조옥순의 진술인데, 황용윤 사건 때도 조옥순이 1981년 12월 안기부에서 최부희를 데리고 간 것이 황용익과 정진구인 듯 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용윤 공소사실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나 조옥순은 1983년 정영 사건 때도 최부희가 미법도에 침투했다는 연도만 다르고(황용윤 사건 때는 최부희가 1968년 미법도에 침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영 사건 때는 최부희가 침투한 것은 1963년인 것으로 나오며, 군사정보부대의 <신문조서> 등의 기록에 따르면 최부희의 미법도 침투는 1963년 9월인 것으로 확인된다)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며 이 내용은 정진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차례에 걸쳐 남파, 황용윤, 정영, 정진영 등을 포섭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법도와 인근 교동도²⁸⁹⁾는 휴전선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6.25전쟁 당시 부역자도 유난히 많았고 9.28수복때 월북한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황용윤 사건과 정영 사건에서 황용익과 정진구를 제외하고도 이들과 이러저러하게 관계가 있는 월북자들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다.

먼저 황용윤 사건에서 황용익이 한금분에게 대동입북하도록 대기시켜 달라고 했다는 박00의 사촌형 박용후와 고종4촌형 이기명이 강화군 교동면에서 부역하다 9.28 수복시 월북했다고 하며 박00의 친형 박용성은 미법도 인민위원장으로 부역하다 9.28수복시 아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되었다고 한다.

정영 사건에서는 우선 정점분이 거주하던 교동 고구리의 주택의 옛 주인인 한호석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월북했으며 공소사실에서 정진구가 54년 처음 정점분을 찾아와 “한호석이 여기 왔다 갔느냐”고 물었다는 것으로 보아 한호석 역시 정진구와 함께 활동하는 대남간첩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진구와 10촌 형제로 미법도에 거주하는 정정진의 친형 정호진 역시 9.28수복시 정진구와 함께 월북했으며 1960년대 정정진은 일본에서 온 정호진의 편지를 받고 지서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안장영 사건에서 안장영이 포섭하려고 했던 대상이라는 나효창 역시 그의 6촌 동생 나봉근이 서검도 소재 첩보부대에서 종사하다가 1953년 전마선을 절취해서 월북한 월북 연고자 가족이었다.

이처럼 미법도와 인근 교동도에 부역자 및 월북자 가족이 많다보니 대공수사기관에서는 미법도 등을 ‘대공취약지역’으로 간주, 끊임없이 관련 내·수사가 진행되었다. 1979년 3월 9일에 작성된 「미법도 대공현황

289) 정영 사건의 경우 정진영의 막내동생 정점분이 교동에 거주하면서 정진구를 접선했다고 공소사실에 명시되어 있으며 황용윤 사건에서도 황용익이 교동 거주 박00을 대동입북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달라고 한금분(황용윤의 처)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 교동은 이 두 사건에서 주요한 현장이다.

입수보고」는 “미법도는 현재 대부분이 하류생활을 영위하고 이고 복지 등 국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벽지 도서로서 주민 성분도 월북자 및 남북귀환어부 등 인적취약요소가 많고 휴전선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북괴의 당야공작에 유리하고 적 침투시 협조 요인 내포되어 있는 서해 취약도서 중의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법도에서는 1963년 간첩 최부희가 침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상한 사람이나 배가 나타났다는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실위가 면담한 대부분의 미법도 주민들은 부정했지만 간첩이 나타났다는 신고와 수색이 이어질 때마다 혹시 미법도나 인근 섬에서 월북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침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소문이 돌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최부희를 제외하면 수상한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해도 간첩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법도와 인근 섬에 침투한 괴한이 누구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 소문은 소문에 불과했다.

또한 미법도 주민들은 1963년 9월 9일 간첩 최부희가 나타났을 때 즉각 예비군이 동원되어 삼산면 하리 경찰초소에 최부희를 인계했던 일에서도 알 수 있듯 반공의식이 투철했으며 경찰초소나 군부대는 없었지만 마을 청년들이 예비군을 구성, 마을의 치안유지에 힘썼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6.25전쟁 전후 좌익과 우익의 첨예한 갈등 와중에 가족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인적,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대북 적대감이 컸다.

특히 불취학자로 무식하였으며 ‘평범한 부역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정진구와 달리 삼산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한 황용익은 미법도와 인근 삼산면에서 원성이 높았다. 정명영, 황정임 등의 진실위 면담 진술에 따르면 미법도에는 정씨와 황씨가 양대 거대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황용익이 정씨의 씨를 말리겠다고 모든 청년들을 인민군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한다. 황정임은 면담에서 심지어 황용익이 “6.25당시 숨찬 병이 있어서 몸도 성치 않았던 정진삼(정진영의 셋째 동생)을 비롯해서 마을 청년들을 다 끌고가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사정

사정해서 간신히 뜯어말렸더니 황용익이 ‘내가 아래윗집에 다 불을 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참았다’면서 사라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렇게 악독하게 부역하다 황용익이 월북해버리자 마을 주민들의 분노는 남은 황씨 일가에게 향했다. 황용운의 큰형 황용암과 작은형 황용승은 6.25당시 황용익에 편승하여 부역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9.28수복 후 황용암은 우익 진영에게 미법도 장모루에서 맞아죽었고 황용승은 처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한다. 황용익의 고종사촌 최원순도 1981년 12월 18일 안기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황용익이 월북한 이후 삼산면 치안대원들이 집에 찾아와 황용익이 삼산면 사람들을 돌로 때려죽이고 도망갔다면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황씨 일가는 월북 연고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요시찰 대상이 되어 내사를 당했다. 다시 말해 황용익 때문에 황씨 일가가 거의 몰락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진구 일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월북자 정진구 때문에 이들은 미법도나 인근에서 간첩이 침투했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끊임없이 내사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했다. 정진영은 1982년 안기부에서 정진구를 접선했노라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이후 거짓진술한 경위에 대해 “월북한 동생 때문에 과거에도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항상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번에 또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조사를 받게 되니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친구를 만났다고 해야 가족들이라도 풀려날 것 같고 허위진술이라도 하여 형을 받게 되면 당국의 감시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죄를 만들기 위해 허위진술했다”²⁹⁰⁾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정진구와 황용익은 과연 대남간첩이었을까. 정진구에 관한 공식기록은 미법도 출신으로 어렸을 때 교동도 한씨 집안으로 처가살이 하러 들어갔으며 6.25 당시 부역하다 수복 직후 월북,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 사건 당사자 외에 사건

290) 1982.2.14일자 「일일신문사향」

당시 생존인물로 정진구를 만났다는 사람은 이옥분²⁹¹⁾ 밖에 없으며 그것도 1965년 당시 정진구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정진구가 대남간첩으로 남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조옥순과 이연화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진술 당시 이미 사망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정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그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간접 전문증거에 지나지 않는다.²⁹²⁾ 조옥순과 이연화의 진술은 이처럼 전문 증거라는 점 외에도 각각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조옥순은 1983년 정영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진술을 할 때는 사망한 남편 김장득과 시어머니에게서 “정진구와 황용익이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못 살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1963년 최부희 침투 사건 때 황용익과 정진구가 대동복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982년 2월 작성된 「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에 보면 황용윤 사건과 관련, 1982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옥순을 연행조사 하였으나 “미법도 소재 재북간첩 황용익이 월북 전 거주 가옥을 매입, 거주하던 김장득(1961.12 병사)의 처로 1960년부터 1977.2간 위 황용익 가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황용익 남파시 접선한 사실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적혀 있으며 실제로 황용윤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김장득이나 최부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처럼 조옥순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²⁹³⁾

한편 이연화는 1983년 8월 29일 안기부 수사관에게 '사망한 남편 유상운이 1962년 8월에 납북되었을 때 그를 신문했던 북한 사람이 정진구인 것 같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²⁹⁴⁾ 그러나 이 전문증언에도

291) 이옥분의 정진구 접촉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292) 1983년 8월에 작성된 안기부의 「참고인 면접상황보고」조차도 이연화의 진술에 대해 “면접자 이연화의 언동으로는 정진구와 정진영, 장영환 등과 연계되었다고 심증은 가나 이연화의 언동은 간접 전언 증거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93) 노환으로 인해 진실위에서는 조옥순과 직접 면담하지는 못했으나 황정임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조옥순이 당시 많이 불려가서 많이 조사받고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의혹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유상운이 1962년 8월에 납북되었다면, 이는 안장영의 두 번째 납북과 동일한 사건이다. 안장영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장영은 1962년 8월 8일 간황엽 소유 용인호로 새우잡이 나갔다가 오팔호 태풍으로 납북되었는데 평양여관과 평양제1여관 등에 수용되어 성명불상 지도원에게 신문과 교육을 받고 귀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유상운과 비슷한 시기에 미법도로 피난온 안장영 역시 정진영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안장영의 공소사실에는 당시 평양에서 정진영을 닮은 사람을 만났다는 진술이 없다. 또한 이 진술에 따르면 유상운을 신문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이 교동이라고 했다고 하나 정진구는 미법이 고향으로 그 인적사항 역시 정진구와 다르다. 무엇보다도 이연화의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진구가 대남공작원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검찰에 이연화의 진술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안기부는 정영 사건을 발표하면서 정진구가 ‘조선노동당 연락부 부부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고위 공작원을 높이 대우하는 차원에서 ‘부부장급’으로 대우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진구의 경우 대남공작원 여부조차 입증할 증거가 희박하다.²⁹⁵⁾

294) 1983년 8월에 작성된 안기부의 「참고인 면접상황보고」

마. 면접자의 亡夫 유상운은 62.8경 강화도 서도면 해안에서 새우잡이 조업 중 납북되어 약 20일간 체포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이때 유상운은 북괴인물로부터 심문을 당할 시 강화도 서도면에 살고 있다고 대답하자 “당신은 미법도리에 있는 큰회나무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6.25전쟁 당시 반동으로 사실된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교동이 고향이고 미법에 갔을 때 내가 당신을 본 기억이 난다. 당신은 미법에 ‘갯고랑’이 몇 개 있는지 아느냐. 나는 전부 알고 있다”라는 추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이때 당시 심문하는 사람을 보니 정진영이와 모습이 비슷하여 정진영의 동생인 정진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는데 남편 유상운이가 사망한 것이 아쉽다고 하는 언동을 들었음

295) 정영 등을 수십년간 조사한 경기지방경찰청 및 안기부 수사기록,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정진구가 조선노동당 연락부 부부장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강화경찰서에서 1983년 10월에 작성, 안기부에 제출한 사실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진구는 ‘불취학자로 무식한’ 사람으로 연락부 부부장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진구, 황용익 등이 월북했다 하여 ‘납과 공작원’으로 활동했을 것이라 단정짓는 것은 모든 월북자 혹은 재남 연고지나 연고 가족을 두고 있는 모든 북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간주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5) 최부희 등 미법도·교동도 침투 간첩

월북자도 많고 황용윤 사건, 정영 사건 등 간첩 사건도 많이 벌어지다 보니 관련 기록에 존재하는 미법도·교동도 간첩 침투 기록만 해도 30건이 훨씬 넘는다²⁹⁶⁾. 그런데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 미법도와 교동도에 드나든 간첩이 한 일이나 수집한 정보라는 것이 너무도 미비하다. 오형근에서 정영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접선한 간첩들은 기껏해야 가족 중 한 명을 대동입북시킨다거나 동사무소며 경찰초소 위치를 수십년에 걸쳐 탐지하는데 그친다. 물론 미법도를 경유, 서울로 침투를 시도한 여간첩 최부희의 사례에서 보듯 휴전선 인접지역인 미법도와 교동도 등이 간첩 잠입 루트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먼저 최부희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최부희는 1967년 10월 31일 경기도 경찰국 정보과에 체포되는데²⁹⁷⁾ 1968년 3월 21일 군사정보부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제40호」에는 최부희의 1963년 미법도 침투 사실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최부희는 1963년 9월 9일 배편으로 강화를 거쳐 인천으로 침투할 계획으로 미법도에 들어온다. 그러나 “밤늦게 지형도 모르니 하룻밤 재워달라”며 찾아들어간 집(조옥순의 집)에서 바로 배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심한 마을 청년들에 의해 다음날 새벽 삼산면 하리 경찰초소로 인계된다. 그러나 최부희가 소지한 간첩 장비를 알아보지 못한 경찰을 속여 이곳에서 탈출, 미법도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최부희는 다시 마을 청년들에게 발각되어 조옥순의 집에

296) 오형근, 안장영, 안희천, 황용윤, 정영 사건 등에서 발췌한 간첩 침투, 접선과 관련해서는 첨부 3을 참고

297) 위 최부희는 63년 잠입 직후 노출된 것 외에도 직과 간첩으로서는 상당히 어설픈 면을 많이 보인다. 1965년 재남파되어 서울 구로동에 잠복했던 최부희는 ‘연고선을 접촉하지 말고 단독 활동하라’는 지령을 어기고 본격지에 거주하는 친척과 계속 왕래하다가 노출되어 체포되는데, 이때 최부희는 가지고 내려온 공작금 1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사기당한 상태였으며 난수표, 암호해독문 등은 집 아궁이에 숨겼다가 집주인이 불을 때는 바람에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 군사정보부대에서 1968.3.21 작성한 「신문조서 제40호」에는 최부희에 대한 평가로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무식한 편이며 독도력 기억력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혀 있다.

끌려가게 되고 그날 밤 23시경 성명불상 청년 2명이 신사복에 칼빈총을 휴대하고 나타나 “이 집에 빨갱이가 들어왔는데 내놓아라”면서 자신을 끌고 갔는데 보니 남과할 때 안내해준 이들이었으며 이들을 따라 다시 보트로 복귀했다고 한다.

이러한 최부희의 미법도 침투 및 대동복귀 사실에 관해서는 미법도 주민들의 증언이 대부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이 최부희 사건은 미법도가 실제로 간첩이 서울 등으로 잠입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법도에서 발생한 다른 간첩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사건이기도 하다. 먼저 설혹 최부희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미법도가 잠입 루트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낮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신고가 되는 상황을 한번 겪고 나서도 계속 미법도를 간첩의 잠입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최부희만 해도 똑같이 서울로 잠입하기 위해 미법도에서 노출된 2년 후인 1965년에는 8일간 주간에는 산속에서 숙영하고 야간에만 행군하는 험한 경로를 감수하고도 동해안 산악지대를 이용, 춘천으로 잠입했다. 즉 최소한 최부희 사건이 터지면서 미법도는 ‘노출된’ 혹은 ‘실패한’ 루트였던 셈이다.

6) 정진구 남파관련 의혹

정영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진구는 1954년부터 1975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미법도와 교동도에 드나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상의 정진구 남파 상황】

남파 횟수	시기	남파 장소	접촉 인물	비고
1차	1954.4. 일자불상	강화군 교동도	정점분	
2차	1956.9. 일자불상	강화군 교동도	정진영, 정점분	
3차	1958.10.24(음)	강화군 교동도	정점분	
4차	1960.4. 일자불상	강화군 교동도	정점분	
5차	1963.9. 일자불상	강화군 미법도	정진영	황용익 대동, 여간첩 최부희 대동 입북
6차	1969.10.11	강화군 미법도	정영	
7차	1971.8.21	강화군 미법도	정영	정영 대동 입북
8차	1971.9. 일자불상	강화군 미법도	정진영, 황정임	
9차	1972.3. 일자불상	강화군 미법도, 서검도	황정임	
10차	1972.11. 일자불상	강화군 미법도	정진영	
11차	1973.9. 일자불상	강화군 미법도 등	정영 · 정진영	
12차	1975.9. 일자불상	강화군 미법도	정영	

그런데 정진구 남파 및 접선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 관련 피의자의 진술과 1963년 9월 김장득의 집에 여간첩 최부희가 나타났다가 밤에 두 명의 공작원과 함께 대동입북했는데 그들이 정진구와 황용익인 것 같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조옥순 등 마을 주민들의 진술²⁹⁸⁾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참고인들의 진술 및 다른 검거간첩의 관련 진술 등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먼저 1963년경 사망한 김장득의 처 조옥순²⁹⁹⁾은 1983년 9월 28일자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1960년 초겨울 정진구와 황용익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298) 최부희 사건 관련 의혹은 앞부분 참조

299) 조옥순의 진술 및 조옥순에게서 들었다는 서춘화, 이옥분, 김정옥 등의 진술에 따르면 정진구와 황용익이 계속 김장득의 집에 찾아와 김장득과 김장득의 모친이 두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것이나 조옥순은 정진구나 황용익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다만 김장득의 모친으로부터 정진구, 황용익 남파 사실을 들었다는 것인데, 정진구와 황용익을 직접 접선했다는 김장득과 그의 모친은 사건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정진구, 황용익의 남파 여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언 및 자료는 없었다.

듣고 황정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당시 황정임이 “며칠 전 우리 집에도 정진구가 다녀갔다”고 답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960년 초겨울에 정진구가 정진영 가에 다녀갔는지에 관해 조사를 했어야 하나 안기부 수사기록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한 기록은 없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그 즈음의 정진구 남파는 1960년 4월 강화군 교동도에 정진구가 나타나 정점분을 만났다는 것 뿐이다.

또 1982년 2월 안기부에서 정영 등을 연행, 조사한 계기가 되었던 한금분의 “1961.5 정진구와 황용익이 남파되었다”는 진술에 대해 정영, 정진영 등에게 관련 사실을 신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공소사실에 따르면 1961년에는 정진구가 남파된 사실이 없다.

관련 첩보나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안기부가 수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정진구 남파 횡수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공소사실 상의 정진구 남파기록을 보면 1954년부터 1960년까지는 강화군 교동도에 남파되어 정점분을 접선하고, 그 이후에는 미법도에 남파되어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을 접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정진구를 만났다는 정점분의 진술은 1983년 수사착수 직후까지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 데다가 안기부 본부에서도 1956년 정점분이 정진구와 정진영의 접선을 도와주었다는 점 등에 대해 「간첩 정영 등에 대한 수사결과 검토 의견」에서 “1956.9 1차 접선시 교동도에 침투한 정진구가 정점분을 접촉, 정진영에게 연락을 부탁하고 2일간이나 적지인 교동도에 잠복, 대기하였다가 접선하였다는 점은 전후 상황이 불합리함으로 설득력 있게 진술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안기부 수사보고 및 관련자 진술에서 친척 접선 외에 정진구의 활동 상황을 암시하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정진구의 미법도 외 기타 지역 남파 및 활동에 관한 진술 중에 1954년 4월 정진구가 정점분을 만나 강화도 교동 고구리에서 농사짓다 월북한 한호석을 봤느

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1983년 10월 19일자 「수사보고」에서 한호석 잠입 사실 등을 수사했다고 하나 친척 한공우를 만나 몇 가지 질문한 후 “득문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해 버렸다. 또 공소사실에 따르면 1956년 9월 빈장산 우물터에서 정진영을 만난 정진구가 “이곳(교동)에는 동산리 쪽에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닌다”고 말한데 이어 1960년 4월에는 정점분을 만나 교동 지식리에서 오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971년 9월에는 정진구가 정진영에게 ‘생설미부락 김모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쳐줄 것을 부탁했고 1972년 11월에는 역시 정진영에게 “검디(서검도)에 갔다가 물때가 맞지 않아 잠깐 들렀다”면서 “강화 거르네와 생설미에 다니지만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진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진구는 자신의 친형이나 친동생, 7촌 조카 외에도 접선하고 있는 다수의 ‘친한 사람들’이 강화 교동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이른바 ‘지하망’ 부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조사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³⁰⁰⁾

정진구의 남파 시기 및 활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우선 1983년 안기부 본부에서도 지적했듯 1965년 남북시 정영을 포섭한 후 “상황 변동에 따른 아무런 구체적 접선조직도 없이 단순히 4년 후인 1969년 9월 22일 차기 접선일을 약정한 점 등은 객관적 사리에 부합되지 않는다.”³⁰¹⁾ 정영이 정진구를 따라 대동입북했다는 1971년의 상황은 정진구의 정진영 접선과 맞물리면서 의혹을 낳는데, 우선 정영의

300) 한편 정정진이 1983년 10월 19일 안기부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월북한 친형 정호진에게서 1960년 4월 일본에서 엽서가 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정호진에 대해 조사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301) 「간첩 정영 등에 대한 수사결과 검토 의견」 이 보고서에서 안기부 본부는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북괴의 대남전술 등을 고려하여 실질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안기부 인천분실은 이를 수정하지 않는데 남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귀환 직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가 심하므로 잠복하고 있다가 합법적, 안정적 토대가 구축된 후에 활동을 시작하라는 지령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혐의내용을 고수한 듯 하다. 실제로 2007년 6월 21일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보내온 정영의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에는 간첩교육 받은 후 바로 활동하면 발각되기 쉬우니 1969년 9월 1일부터 접선하자고 북한 지도원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밀입북은 1971년 8월 22일이고 정진구의 정진영 접선은 같은 해 9월로 이에 따르면 정진구는 정영을 데리고 평양으로 대동입북한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미법도에 침투, 정진영을 만난 셈이다. 또 정진구는 정영을 만나서 아들 정광영이 인천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들을 데려 오려 하였으나 사정이 안 되어서” 정영을 데리고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얼마 후 정진영을 찾아와서는 다시 아들 정광영을 행방을 묻고 “광영이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채 한달도 되지 않는 기간 사이에 두 번이나 납과되어 동일한 내용(정광영의 소재지)을 묻고 동일한 목적(정광영 대동입북)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그 외에도 정진구가 1963년과 1973년 9월, 아직 사위가 훗날 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인 밤 8시에서 9시에 총을 멘 공작원까지 대동한 채 정진영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점이나 1973년 9월 일을 보다 늦었다면 총을 멘 공작원을 대동한 정진구가 새벽 4시에 자식들이 다 인천 등으로 나가 있어 부부만 생활하는 정진영의 집이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한번도 접선하거나 포섭하지 못한 황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정영의 집에 찾아갔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다행히도 그때 정영의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정영이 혼자 있었다고 한다.

7) 정영 밀입북 여부

정영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영은 1971년 8월, 정진구를 따라 대동입북, 밀봉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한 후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밀입북(잠입, 탈출) 혐의 때문에 정진영, 황정임 등에 비해 무거운 형(1심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을 받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영이 1971년 8월 22일 밀입북했다는 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은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거의 없다. 즉 사건 당사자인 정영과 정영의 처 황문자의 진술, 그리고 참고인 김정옥의 진술뿐인데 정영과 황문자는

안기부의 고문 및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밀입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²⁾. 또 김정옥의 진술³⁰³⁾은 정영이 집에 안 들어왔다며 가끔 황문자가 찾아와서 걱정한 일이 있었다는 단순한 정황 증언으로 1971년 8월 22일 정영이 밀입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은 아니다.

이처럼 정영의 밀입북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그 시기에 정영이 2박3일간 집을 비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밀입북 루트와 밀입북시 평양에서의 활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우선 정영의 밀입북 루트에 대해 살펴보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영은 “1971년 8월 22일 새벽 2시 30분경, 닭바위 앞 해상에 정박되어 있는 공작선 고무보트에 정진구 외 30대 가량 공작원 2명과 함께 타고 기관장 1명 포함 도합 5명이 즉시 닭바위 해안을 출발, 약 20분간 항해하여 괴리섬과 서검도 사이 해상에 돌출된 서검도에 있는 속칭 곱뿌리라는 산기슭 뒤 움푹 들어간 해상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과 같은 선박(길이 약 10미터)에 도착, 그 배에 옮겨타고 고무보트를 인양, 목선에 싣고 그곳을 출발, 서검도 서쪽해상 남섬 앞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일 5시경 북괴지역인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은점별과 연해있는 ‘반이도’ 방향 염전해안에 도착하여 정진구 외 2명의 안내로 동염전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며 북귀 시에도 동일한 루트를 이용했다.

한편 정영은 1982년 2월 안기부 본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새벽4시에 닭바위에서 고무보트로 출발, 서검도를 왼쪽으로 돌면서 북으로 항했으며 약 1시간 후인 새벽 5시경 연백군 해성면 염전에 도착했다고

302) 정영은 상고이유서, 탄원서 등에서 8월은 농사일이 한참 바쁜 농번기로 아무런 말도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03) 김정옥은 2007.5.1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한 기억이 없으며 당시 미법도는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외부로 나갔다가 배가 뜨지 못해 며칠씩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설사 정영이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진술한 바 있다. 이렇게 밀입북 방법에서 1982년과 1983년이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안기부 본부는 1983년 인천분실로 보낸 검토의견에서 1961년 11월 황순애가 고무보트만을 이용해서 1시간 만에 불당포로 입북했던 점을 들면서 “입북시 미법도에서 최단거리(10km)에 있는 북괴 공작기지인 ‘불당포’로 입북치 않고 고무보트 및 공작선을 번갈아 타고 갯벌지역을 우회, 연백군 해성면 염전으로 입북한 점(3시간 소요)은 지형적으로 불합리함으로 과거사건을 참고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황용운 사건 공소사실에 보면 황순애는 닭바위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좌측으로 서검도, 우측으로 교동도를 빠져 약 1시간 후 북한측 갯벌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안기부 본부에서 수정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분실이 이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인천분실에서 당시 실제로 정영이 그렇게 자백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정영은 진실위와의 면담과 미법도 현장 조사에서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물떼’와 ‘초소의 위치’까지 감안해서 그와 같은 밀입북 루트를 만들어 내어 진술했다고 말한 바 있어 ‘보통 사람이라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직선거리로 갔다고 이야기할 텐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가보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지 않았다면 저렇게 복잡한 밀입북 루트를 생각해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이 1977년 안장영 사건 당시 이근안의 요청으로 현장검증에 다 참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³⁰⁴⁾ 당시 정영은 안장영이 무인포스트를 설치했다는 장소며 밀입북했다는 장소 등을 이근안과 함께 다니며 검증했는데, 안장영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장영은 1973년 11월 15일 밀입북했고, 그 밀입북 루트는

304) 1982년 2월 안기부 연행조사 당시 안기부는 정영의 정진구 접선 및 밀입북 관련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검토한 바 있는데 당시 “미법내 군경상황 정보지를 박카스 병 속에 은닉, 이0한 상황”을 긍정적 측면으로 기술했다가 “재확인 결과 안장희 간첩 사건 시 현장 검증 장면 목격”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으며 이어서 “대동입북시 승선했다는 고무보트는 강화 외포리에서 경비정과 UDT의 해양 훈련시 목격한 것을 진술”이라고 기술하는 등 정영이 과거 다른 간첩 사건이나 해양 훈련시 목격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물골 돌부리에서 고무보트를 가지고 대기 중인 다른 안내원 1명과 합류하여 고무보트에 동승 후 약 50미터 떨어진 해상에 이르러 그곳에 대기중인 모선에 승선하고 즉시 출발하여 같은 날 03:00경 북괴지역인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지명불상 해안에 상륙했다”는 것으로 정영이 1983년 진술한 밀입북 루트와 동일하다. 정영 등 미법도 주민들은 또한 황용윤 사건 때 미법도에 취재온 기자들과 함께 황용윤이 황용익을 접선했다는 장소나 황순애가 밀입북했다는 경로 등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황순애, 안장영, 정영의 밀입북 시점과 관련이 있는데 군사정보부대 「신문조서 제40호」에 보면 1963년 미법도에 침투했던 최부희 역시 당시 목조보트에 5명이 승선, 배를 갈아타지 않고 해안을 따라 남하, 미법도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런데 1983년 3월 16일 법원에서 작성한 현장검증조서에 보면 “서검도 부근의 해상은 비무장지대와 접해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선박이나 어부, 기타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므로 간첩의 잠입탈출이 용이한 곳이지만 첨부사진 2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진표시 3과 5 지점에는 아군 초소가 있으므로 4(미법도에서 직선방향)로 가지 못하고 1쪽 즉 곱뿌리 해안을 돌아 4쪽으로 탈출 잠입하는 경우 아군측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또 안장영 사건 공소사실 및 정영의 공소사실에 보면 “아군 초소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곱뿌리를 거쳐 우회해서 밀입북했다”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 1963년까지만 해도 아군 초소가 없어 직선거리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³⁰⁵⁾ 서검도 등에 초소가 설치되면서 직선으로 북한에 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인천분실은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이렇게 정영의 밀입북 루트는 완전히 새로운,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장영 사건에서 등장했던 것이었으며 인천

305) 미법도에는 1971년 1월 간첩선이 목격되어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진 바 있으며 그 직후 초소가 설치되었다는 진술 등이 있어 서검도 앞 해상을 감시하는 아군 초소는 이 무렵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기부 수사관도 이 루트가 “전에 간첩이 탈출했던 곳”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정영이 정진구를 두 차례에 걸쳐 접선했다는 닭바위 역시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황용윤 사건에서 이미 등장했던 바 있는 곳으로 황용윤 사건 관련 안기부는 미법도 실황조사시 황순애의 밀입북 출발 및 상륙지점인 당너머 해안과 닭바위에 다녀와 이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는 실황조사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정영 사건 증인으로 나온 안기부 수사관은 전에도 닭바위를 간첩 접선 신호위치로 생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 정영의 진술에 의하여 새로 발견한 곳입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영이 1971년 밀입북해서 2박3일간 한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안기부 본부는 1983년 의문을 제기했다. 안기부 본부는 “입북시 초대소에 수용되지 않고 일반여관인 평양여관(1965.10 피납시 수용)에 재수용되었다면 1965.10 당시 상황을 재연 진술했다는 여지가 있으므로 재확인”할 것과 “짧은 입북기간 중 제반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1965.10 피납시 기히 견학한 평양트랙터 공장 등 4개소를 재견학하였다는 것은 48시간의 체북 시간으로는 무리하므로 당야공작 등의 특성을 재고 합리적으로 보완”할 것을 인천분실에 지시했던 것이다. 실제로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 4회를 보면 정영은 “당시(1971년) 트랙터 공장을 갔는데 지도원이 ‘북조선에는 이렇게 좋은 농사짓는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전부 기계화되어 농사짓기가 좋소’ 함으로 ‘참 좋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기계입니다’라고 구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기부 인천분실은 본부의 지적을 받고도 정영의 혐의사실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영 사건 보도 자료에서는 정영이 밀입북시 ‘초대소’에 ‘7일간’ 묵으면서 밀봉교육을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8) 간첩활동

가) 군사기밀 누설

미법도에서 발생한 다른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인 안장영, 안희천 사건의 경우, 이들에게 내려진 주요 임무는 지역 군경 경비상황 등 탐지와 북한 공작원의 남파시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선원을 포섭, 월선조업하여 납북을 가장 입북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장영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장영은 실제로 이 지령을 충실하게 수행, 1962년 처음 납북되어 포섭된 이후 1964년과 1965년 두 번의 월선조업을 조직, 납북을 유발한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에게는 특별한 포섭지령 등이 없다. 이들 세 명의 고정간첩이 20여년간 한 간첩활동이란 그래서 오로지 미법도 인근 군·경 경비상황을 남파공작원에게 전달해준 ‘군사기밀 누설’과 공작금 수수,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 그리고 남파공작원에게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한 것 뿐이다.

이들이 제공했다는 군사기밀 역시 미법도 근방 해안과 도서지역 내의 군·경의 해상경비 상황, 군·경의 주둔지역 및 경비초소 위치, 지서와 면사무소의 위치 등으로 미법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³⁰⁶⁾

실제로 1982년 2월 정영 등을 연행, 수사한 안기부에서도 2월 16일경 작성한 메모에서 정진구 납파, 접선 관련 정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정적 측면’의 하나로 “1965.11 귀환 후 재북시 접촉했던 정진구의 지령대로 미법 내 군·경상황 정보문을 작성해왔다”고 하나 “1965.11-68.8 간은 미법 내에 군·경 배치가 없을 때이고 1968.8. 정(진구)이 1차 납파되어 본명에게 미법내 군·경 상황을 물어 본명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

306) 물론 ‘국가기밀’과 관련한 당시의 판례는 “공지의 사실일지라도 북한에 누설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롭다면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했다.

으로 “없는 군경상황을 어떻게 정보화할 수 있었는지 상반된 진술내용”이라 판단했을 정도였다. 또한 정영도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인이 무장공비라 기밀을 누설했다 할지라도 무장공비들은 자그만한 면소재지를 파악하는 무장공비들인지 접선할시마다 면소재지 파악하라 초소를 파악하라는 무장공비도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이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정진영과 황정임의 경우는 정진구에게 누설했다는 정보의 가치가 정영보다도 떨어져서 1983년 안기부 본부는 「정진영, 황정임의 범죄내용과 간첩죄 적용 문제」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 인천분실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정진영과 황정임에게 적용된 간첩, 간첩방조(형법 98조 1항) 혐의 및 군사기밀누설(형법 98조 2항)의 구성요건을 적시한 후 인천분실에서 작성한 “현 정진영, 황정임의 범죄 사실은 간첩, 간첩방조 및 군사기밀 누설죄의 구성요건 충족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나) 공작금 수수

다음으로 남파 간첩에게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황용윤 사건의 경우 황용윤이 김포에서 땅과 전마선을 구입한 사실이 공작금을 받았다는 정황증거로, 정영 사건의 경우 정영이 1969년, 1971년 2차례에 걸쳐 땅을 구입한 사실이 공작금을 받았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사실 황용윤, 정영 등에 관한 초기 첩보 자체가 공통적으로 ‘출처 불상의 돈으로 땅이나 집을 매입’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이나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남북귀환어부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³⁰⁷⁾

정영의 경우 땅 구입 대금 출처와 관련 1982년 안기부 본부에서 조사

307) <연합뉴스> 2003.01.10 1967년 5월 승용호를 타다 납북된 이성일 씨로 인해 수시로 보안대에 끌려가 조사받았던 이광일 씨는 “돈 벌어서 좀 쓰면 어디서 났느냐고 조사하고, 배 사면 그것도 조사했다”고 말했으며 휘영37호를 타다 납북된 박동순 씨의 부인 임희순 씨는 “큰 딸의 결혼을 앞두고 경찰에서 혼수비용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받을 당시, 그리고 1983년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과 이후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탄원서 그리고 진실위와의 면담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의혹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한 차용금액 등에서 차이가 날 뿐 정영의 주장의 큰 틀은 “유상운, 정명영 등에게 빌린 돈과 정영과 정강명 두 형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땅을 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영은 1969년과 1971년에 매입한 땅의 정확한 가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한 금액이 얼마이며 저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1982년 2월 수사 때도 이러한 기억의 오류가 문제가 되어 안기부 수사관이 정영의 처 황문자를 찾아가 면담하는데 황문자는 당시 “정강명과 정영이 모은 돈에 동네 친지로부터 ‘일부’를 차용한 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며 장영환³⁰⁸⁾을 비롯한 다른 마을 주민들도 “정영 부부가 합심하여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소작도 하였으며 소도 키우는 등 생활력이 강하였으므로 수년간 모은 자금으로 동 농토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안기부 본부는 1982년 공작금 수수, 토지 매입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83년 인천분실은 정영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부에서 2007년 6월 21일 보내온 「인천지부 재수사 경위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정영이 1970년경 전답 3천여평을 정명영과 이연화(유상운의 처)에게 차용 매입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양인 확인 결과 차용 사실 없다는 것”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구증’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안기부 수사 기록 중에는 1983년 10월 18일 안기부 수사관이 이연화를 면담한 후 작성한 면담 결과보고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연화는 “정영이 정영남의 땅을 산다고 했을 때 2만원을 꾸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대금을 빌려준 일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308) 장영환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1983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정영이 어떻게 땅을 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영이 상고이유서 제기 이후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연화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연화의 진술이 정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진술임에도 이연화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지도,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한편, 황용윤 사건에서도 땅 구입 대금이나 전마선 구입 대금 출처가 문제되는 상황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1971년 정영이 매입한 땅이 바로 황용윤의 땅이었음에도 땅 판매 시기 등과 관련 공소사실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의구심이 든다. 관련 진술조서나 신문조서를 입수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현재 확보된 자료 중 황용윤 사건 의견서와 1981년 12월 24일 작성된 「간첩 황용윤 등 범죄 개요」의 내용 등에는 황용윤이 땅을 판 시기가 정영 사건에서와 다르게 나타난다. 정영은 1971년 12월 28일 황용윤의 땅을 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황용윤 의견서에는 황용윤이 “1972년 12월 초순 한금분에게 미법도에서 사용하던 어구류 및 피의자 소유 전답 등을 정리 매각처분한 금액 20만6천원과 공작금 5만원 등 도합 25만6천원을 주고 황용익을 만난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 1년의 시차가 난다. 더군다나 1981년 12월 24일 작성된 「간첩 황용윤 등 범죄 개요」에는 황용윤이 1974.3 전마선을 구입할 때 황용익에게 받은 15만원, 배 판돈 13만원, 땅 판돈 12만원을 합쳐서 31만원에 전마선을 1척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무려 3년 가까운 시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황용윤이 1974년 3월 전마선을 구입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구입 비용의 일부가 공작금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미법도 소재 전답의 판매 시기를 끼워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사 | 안기부 발표문 문제

안기부는 간첩 사건을 수사, 검찰에 송치할 때마다 각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홍보 활동을 벌였으며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확인 작업 없이 기사로 내보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기부의 보도자료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발표하기보다는 ‘대공 경각심 고취’ 등과 같은 어떤 필요에 의해 확대되거나 왜곡되기도 했다.

안기부가 황용윤 사건과 관련 어떻게 홍보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했는지를 살펴보면 안기부의 간첩 사건 홍보 전략의 단면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기부는 황용윤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홍보 및 보도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에 맞춰 일을 추진했는데, 사건 송치(1982.2.3) 이전에 이미 KBS와의 취재 계획까지 마련해놓았을 정도였다. 1982년 2월 작성된 「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에는 ‘사건 보도용 현장 사진 촬영(출장)’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 1982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안기부에서 한OO 수사관 외 5명, KBS TV 국방부 출입기자 마권수 외 사진기사 2명 등 9명이 미법도, 김포군 대곶면 대벽 3리 등을 다니며 촬영했다고 적혀 있다. 또 1982년 1월 5일자 「납북귀환어부 간첩 황용윤 및 관련자 수사」 계획서에 보면 “사건 홍보를 통하여 대공 경각심 고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안기부가 어떤 목적으로 보도자료와 홍보에 힘썼는지를 알 수 있으며 1982년 1월 작성된 「미법도 거점 어부간첩 일당 검거보고」에 보면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부터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이전”인 1982년 2월 12일에 사건을 발표하겠다는 계획까지 미리 세워놓았고, 황용윤 사건은 실제로 1982년 2월 12일에 발표되었다.

한편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는 황용윤 사건 보도자료로 ‘보도 자료’, ‘보도문안’, ‘보도문’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어 안기부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보도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보도문>이라는 문서 앞에 붙어있는 메모에는 ‘수신: 담당관’ 앞으로 “본 내용은 범죄사실 중심의 기록인 바, 본 문안 작성시 가감 삭제가 가능하며 안기부 본부에서도 시일을 두고 더 정리 보완해야 할 사항임을 첨언”한다고 적혀 있을 정도다.

‘대공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안기부가 사용한 홍보 전략은 주로 간첩활동 내용을 확대·왜곡하는 것이었던 듯, 황용윤 사건 보도자료에서도 공소 사실 상 8차례의 납파가 10차례로 바뀌고 “(수사관들이)황순애가 입북시 차안에서 초경을 경험, 당황했었다는 진술을 듣고 간첩들의 악랄한 소행에 치를 떨었다”는 등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황용윤 등이 무학의 어부로 과연 이런 사람이 간첩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문제제기가 있을 것을 우려한 듯 겉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노련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보도문안>의 관련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

간첩 황용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식하고 순박한 농어민처럼 보이지만 여우처럼 약고, 늑은 너구리처럼 음흉한 천부적인 간첩 소질을 갖고 있는 일급 첩자였다는 것이 그를 수사한 수사관의 뒷 이야기이다. …수사기관에서는 65년 10월 황용윤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뒤 여러 차례 그의 미심쩍은 점을 조사도 하고 내사도 해보았으나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박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그의 표정과 어물어물하면서도 꼬투리 하나 잡히지 않는 그의 말솜씨에 수사관들은 털끝만치도 그가 간첩일 것으로 의심치 않았었다고 털어놓았다. 생활이 어려운 어부가 어떻게 해서 비싼 1.5톤짜리 전마선을 쉽게 사고팔 수 있었으며, 또 어부는 어부로 바다에서 죽는다는 생리를 벗어나 농사꾼이 될 수 있었으며, 더구나 1천4백평이란 논을 살 수 있던 말인가. 수사관은 ‘황’의 이런 점에 끝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수사관은 “수사기관에서 여러번씩이나 조사를 받았어 노라”고 말하며 “나는 무식해서 죄가 없다”는 황용윤과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황용윤도 노련한 대공수사관 앞에서 잘못 던진 말 한마디에 덜미가 잡혀 그의 20년간 간첩 암약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납북되었을 때 평양에서 사촌동생 황용익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묻지 않는 부분을 미리 변명한 이 한 마디가 간첩 황용윤의 끝장을 가져오게 했다. 복귀는 납북된 사람에게는 친척이나 친지를 반드시 만나도록 해서 그들의 김일성 유일사상을 선전한다는 것을 대공수사관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황용윤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상당 부분 왜곡된 것으로 우선 황용윤 사건 내사 및 수사 착수 계기가 된 첩보 자체가 “1965년 황용윤이 납북시 황용익을

만났다”라는 것이었으며 황용윤 사건 안기부의 의견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황용윤은 1973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받았으나 ‘무사히 모면’한 바 있다. 따라서 황용윤이 수사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 실수를 해서 덜미가 잡혔다는 것은 왜곡이다. 또한 황용윤은 김포로 이사가기 전 미법도에 살 때에도 1600여평의 전답을 소유하고 농사와 어업을 병행했던 사람이었다.

황용윤 사건 보도자료만큼 구체적인 문서 자료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정영 사건 보도자료에서도 유사한 왜곡과 확대·과장이 발견된다. 정영 사건의 경우 안기부는 공소 제기 후 20여일이 지난 1983년 12월 19일 정계 및 군부침투기도간첩 유재선, 서울·경북 예천 거점 일본우회 침투 간첩 김상원 사건 등과 함께 “간첩 3개망 12명을 검거”했다면서 정영 사건을 발표했다.

그런데 안기부가 당시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에는 안기부 의견서 및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 및 기록에서 한번도 언급된 적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정진구가 북괴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공소사실 및 안기부·검찰 수사기록 어디에도 정진구의 지위에 대해서는 언급되거나 조사된 적이 없어 정영 사건의 규모와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정진구=노동당 연락부 부부장’이라고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소사실에는 정영이 1971년 8월 입북했을 때 3일간 평양여관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도자료에는 평양 근교 초대소에서 7일간 교육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영이 정진구로부터 수수한 공작금은 세 차례에 걸쳐 총 40만원 인데 보도자료에는 10배나 뺏기해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3만원과 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진영, 황정임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수수했다고 나온다. 설혹 정영이 수수한 공작금 액수는 실수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넣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3만원이 100만원으로, 5만원이 50만원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안기부가 어떤 필요에 의해 정영 사건을 확대, 과장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왜곡한 것이라 판단된다.

아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문제

1) 검찰 취조과정에서의 문제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은 1983년 10월 21일 구속되어 안기부에서 인천교도소로 이송됐다. 그리고 11월 4일 검찰로 송치되어 12월 2일 구속기소될 때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장기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안기부에서 당했던 고문으로 인한 공포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검찰에 가서 다른 소리 하면 다시 잡아와 고문하겠다”는 안기부 수사관의 협박 때문에 안기부에서 작성했던 진술 내용을 검찰에서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검사나 판사는 안기부 수사관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해서 처음에는 검사나 판사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하고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안기부 진술조서 상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을 강요해서 분노하고 좌절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영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정영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검찰 취조시에도 역시 고문이 두려워 그대로 허위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상고 이유서에서는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님은 문답이 없이 취조한 후 상고인에게 읽어 주지도 않고 무인을 찍으라 하여 무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사가 자신의 처 황문자를 소환해 남편이 진술한 대로 이야기할 것을

강요했다면서 “검사님도 억압적으로 취조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황정임 역시 항소이유서에서 “조사과정에서 저의 진실을 밝히려고 무던히 애를 썼으나 검사님과 판사님께서 믿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검사는 1심 1회 공판에서 안기부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퇴장당한 정영을 따로 불러 “왜 안 했다고 그러나, 이러면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한다.³⁰⁹⁾

이처럼 피고인들이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에 의한 공포가 검찰 취조때까지 이어진 데다가 검사가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했고 자신들은 조서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채 강제로 무인만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 조서의 임의성 문제가 대두된다. 물론 공판조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1심 1회 공판 등에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자 검사가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을 신문할 때 화기애애하게 신문했지, 어떤 억압수단을 쓴 사실은 없지요”라고 물었고 피고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에서는 폭력 등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황문자는 1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에게 조사받을 때 힘이 들거나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적은 없지만 검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정도로” 추궁을 많이 했다고 증언, 검찰조서 작성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1심 4차 공판에서 ‘검찰조서의 임의성’ 문제와 관련된 검사와 황문자의 문답은 검찰조서의 임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다. 공판기록에 보면 당시 황문자가 재판장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을 정도로 검사가 추궁을 많이 했다”고 말하자 검사는

309) 정영.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실제로 안기부와 검찰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기부 내부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 1983년 인천분실에서 올린 수사보고에 대해 안기부 본부가 작성한 「간첩 정영 등에 대한 수사결과 검토 의견」에는 “본건 진술내용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됨으로 구속수사에 대비 구증자료 및 정황증거를 보완, 인천지검과 사전협의 공소유지 가능하도록 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이라면서 검찰과 사전협의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자신이 피고인들의 말에 충실히 귀를 기울이고 이를 조서에 반영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검 사: 증인은 1973.9. 피고 안장영이 정진구를 만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고 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시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

황문자: 예, 있습니다.

검 사: 그 진술사실은 검사의 조사시에는 부인하여 조서에 적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요

황문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³¹⁰⁾

그런데 문제는 안기부 수사기록 어디에도(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물론 당시 제출하지 않은 안기부 내부 보고서에도) 황문자가 안장영으로부터 정진구를 만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공판조서상의 문답이 사실이라면, 검사는 기록에도 없는 내용인, 황문자가 안기부에서 안장영과 정진구의 접선에 대해 진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황문자에게 그 사실에 대해 물을 수 있었던 것일까.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는 안장영과 정진구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술일 것임에도 황문자에 대한 검찰조서 어디에도 위와 같은 문답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설혹 실제로 검찰조서 작성과정에서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판에서의 검사와 황문자의 위의 문답 내용은 검사가 황문자의 주장을 조서에 반영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검찰조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 셈이다.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문맹으로 검찰 주사가 대신 이름을 쓰고 무인하게 한 정점분의 검찰 진술조서는 검찰조서의 임의성 문제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1983년 11월 14일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검찰 진술조서에서 정점분은 1958년 정진구 접선 일자에 대해 정확하게 음력 10월 24일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그런데 그 날이 ‘시아버지 제사’인지

310) 공판기록 1심 4차 공판 황문자 증인신문

‘시아주버니 제사’인지 헛갈린다고 말한 후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 시아주버니 제삿날”이라고 확정했다고 나온다. 그런데 그 한달 전에 작성된 안기부 진술조서에서도 정점분은 똑같이 ‘시아버지 제사’였는지 ‘시아주버니 제사’였는지 헛갈려하다가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 시아주버니 제삿날”이라고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25년 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한달 전에 확인해서 의견서에 까지 명시된 사실을, 그것도 ‘간첩 접선일’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그렇게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동일하게 헛갈리고 동일하게 확정짓는 상황은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 검사가 “문답 없이 안기부 진술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2) 재판과정에서의 문제

이렇게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이 과연 검찰이 주장하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하에서 임의롭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안기부 수사기록을 전제로 피의자들에게 이를 인정할 것을 강제하거나 검사가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식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 피의자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은 안기부 수사과정, 검찰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조차도 변호인의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 정영, 정진영, 황정임은 1심(이00, 송00, 신00 판사. 84.4.4 선고)과 2심(오00, 박00, 김00 판사. 84.7.6 선고)을 거쳐 대법원(이00, 이00, 이00 판사. 84.9.25 선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당해 가족의 면회조차 하지 못했고 비공개재판 때문에 피고인들끼리 마주칠 일조차 거의 없었다.

정영 등은 1심 1회 공판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지정된 국선 변호사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영의 교도소 신분장에는 변호인 접견 기록이 단 1회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당시는 ‘간첩’ 사건이라고 하면 이른바 인권변호사들조차도 꺼려하던 때였다. 정영의

처 황문자가 빛까지 얻어서 선임한 변호사는 정영의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임료를 돌려주고 사임해버렸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피고인들 편에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을 권했다. 심지어 정영, 정진영, 황정임의 1심 국선 변호사는 안장영 사건의 1심과 2심 국선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로 그가 조금만 피고인들의 호소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두 사건이 너무나 유사한 동시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혹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사였음에도 그를 비롯한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을 믿기보다 공소사실만을 기정사실화했고 법정에서는 물론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간첩 행위’가 ‘무식의 소치’라며 선처를 구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정영은 상고이유서에서 처음에는 법정에 나가서 안기부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시인을 하지 않으면 사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에 공포를 느껴 “억울한 누명이라도 동정을 받아야겠다”는 판단에 범죄를 시인했지만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³¹¹⁾ 또한 정영은 대법원 상고 제기 이후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안기부 수사관이 찾아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징역을 4~5년만 주겠다”고 하고 국선 변호인도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하고 동정을 받으라”고 하여 그 말만 믿고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했다면서 자신이 “악독한 해독제를 주는 것도 모르는 무식자”라서 그것이 “죽음의 길을 재촉했을 뿐이며 죄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교활한 관계를 꾸며서 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살행위를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검찰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과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안기부 조서를 수정했던 사례들을 들어 ‘검찰 조서의 임의성’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밀어붙이고 국선 변호인마저도

311) 정영, 정진영, 황정임은 1심 1차 공판에서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진영이 2차 공판에서, 황정임이 4차 공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영이 5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 선처를 구함

“사형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고 설득하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정진영, 황정임, 정영은 차례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들 ‘고정간첩’들에게 그에 부응하는 형량을 선고했던 것이다.

1심 배석판사였던 신평 교수는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정영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이 사건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또 안기부나 보안사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감히 뭐라고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1984년 4월 4일자 「정영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고사건 1심 선고공판결과보고」는 1심 주심 판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한 정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커녕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악질 간첩’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심 이OO 판사는 정영이 “공소사실을 4회 공판시까지 재판장에게 부인하여 현장검증 및 증인 출령 구증케”하는 수고를 하게 하는 등 “피고가 잘못을 반성치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가족은 물론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이 1심 공판에서 안기부,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한 것은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이나 간첩의 법정투쟁전술에 따라 “다른 물증이 없으니 우리가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면 된다”는 고도의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설마 판사는 안기부나 검찰과는 다르겠지’라는 순진한 믿음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들의 애절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해 재판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꾀죄죄를 물어 단죄했던 것이다.

3) 비공개 재판과 공판조서의 신빙성 문제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경찰력을 동원하여 방청객을 검문하고

방청을 제한하는가 하면 사전에 방청을 제한함으로써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참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비공개 재판을 할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증인을 법정으로 부르지 않고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등에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공중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³¹²⁾ 그러나 이는 “형사 피고인은 지체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3항 및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제109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다.

정영 사건도 1심 2차 공판부터 4차 공판까지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 피고인들이 모두 안기부 진술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1심 1차 공판(1984.1.14) 이후 공판 공개 정지 신청이 이루어져 주요 증인 신문이 진행된 2차 공판부터 4차 공판까지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³¹³⁾. 1심 2차 공판(1984.1.28) 바로 전날인 1984년 1월 27일 임OO 검사는 ‘국가안보상 중요사건’이라는 이유로 “증인 심문시에는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을 퇴정시키고 피고인 신문시에는 상피고인들을 퇴정시키고 진술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부가 “신문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판 공개정지를 신청, 다음날 열린 2차 공판부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영 등이 정진구에게 제공했다는 정보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위치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3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2003년도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p463

313) 정영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재판할 때마다 나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나와서 지키고 서 있었다”고 주장, 정영 등에 대한 재판이 가족 등 방청객의 방청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안기부·검찰 수사 당시와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역시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김정옥이 왜 “법정에 나간 기억은 없는데 인천에 불려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온 기억은 있다”며 “나오는 길에 언뜻 정영을 봤다”고 진술했는지도 설명해 준다. 재판정에 다른 피고인들, 증인들, 방청객은 없고 이전에 자신을 조사했던 안기부 수사관만 함께 한 상태에서 역시 전에 자신을 조사했던 검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김정옥은 자신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은 간첩통신부호를 부여받거나 무전통신 등을 한 적조차 없어 이 신문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재판은 단순히 가족을 비롯한 방청객들에게 공개가 제한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증인들, 피고인들이 모두 각각 개별적으로 신문을 받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재판의 비공개 조치는 ‘국가안전보장’ 문제 때문이 아니라 1심 1회 공판에서 정영은 ‘고문’ 등을 주장해 법정 소란으로 퇴장당하는 등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이들이 서로 ‘공모’해 결백을 주장하거나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더욱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

한편 이렇게 피고인들은 서로의 진술은 물론 어떤 증인이 법정에서 나와 무슨 증언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공판조서’ 기록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공판조서가 과연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심하게끔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나 검찰 진술조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판조서의 신빙성은 거의 인정되는 편이며 피고인 진술없이 기록만을 검토하는 상고심에 이르면 공판조서 기록은 거의 절대적인 자료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홀로 신문을 받는 가운데 2차 공판에서 정진영이, 3차 공판에서 황정임이 차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고 하는, 따라서 대법원에서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 공판조서가 왜곡 혹은 심지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정영과 정영의 처 황문자는 탄원서 및 2007년 4월 15일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1심 1차 공판에서 정영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법정소란으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공판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비공개 재판으로 피고인들이 서로의 진술을 전혀 지켜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할 때나 다시 혐의를 시인할 때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다. 즉 공판조서에 따르면 정영, 정진영, 황정임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닙니다. 검사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었으나 그것은 제가 꾸며서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으며 2차에서 5차 공판에 걸쳐 정진영, 황정임, 정영의 순으로 각각 다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들은 “전에 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은 피고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모든 공소사실을 시인”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상호간에 접촉도, 대화도, 서로의 진술을 들을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세 명이 완전히 동일하게 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공판조서가 법원주사보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공판조서 상의 증인신문의 문답내용이 안기부 진술조서나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토씨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 부분도 발견된다. 한 예로 공판조서에는 1984년 2월 11일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서춘화는 “지금부터 한달 전쯤 11:30경 황정임의 바로 윗집에 살고 있는 백계심과 같이 저의 집 벼를 베고 있는데…”라고 진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월 11일에서 한달 전이면 1월 초로 1월 초에 “벼를 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 내용은 토씨 하나까지 1983년 11월 23일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와 동일해 이 공판조서가 검찰에서의 서춘화의 진술조서를 그대로 베껴적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춘화의 공판증인신문조서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의 검사와 서춘화의 문답 부분이다. 기록에 따르면 검사가 “여자 간첩이 증인의 집에 왔을 때 그를 데리고 간 사람들은 황용익과 정진구가 아닌가요?”라고 묻자 서춘화가 “누가 데리고 간 것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정진구와 황용익이가 데리고 갔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 간첩’이 침투했던 것은 서춘화가 아니라 조옥순의 집으로, 이 문답내용은 조옥순의 공판증인신문조서에도 가장 마지막 문답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춘화에게 검사가

착오로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했다면 서춘화가 이를 부인했을 것이나 기록상으로는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문답은 실제로는 없었으나 검찰조서를 그냥 베껴서 공판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진술조서와 문답이 거의 동일한 조옥순의 공판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라 쓴 것을 ‘증인’으로 수정한 부분까지 발견되어 검찰 진술조서를 그대로 옮겼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러 부분에서 공판조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의혹들이 제기 되는 바 공판조서 기록상에 피고인들 및 증인들이 안기부 및 검찰 진술 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적혀있다 해서 이들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공판조서 왜곡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이 기록 등을 근거로 정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³¹⁴⁾의 오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

자 | 결 론

1965년 10월 29일 서해 비무장지대에서 조개잡이 중 100여 명의 어민들이 납북됐다가 한달 만에 귀환한 사건은 이후 1976년 오형근 간첩사건, 1977년 안장영 간첩사건, 1977년 안희천 간첩사건, 1981년 황용윤 간첩사건, 1983년 정영 간첩사건 등 무려 5건의 간첩사건을 낳았다. 이 사건들은 또한 오형근 수사과정에서 안장영에 대한 첩보가, 안장영 수사과정에서 안희천에 대한 첩보가, 역시 안장영의 진술에서 황용윤에 대한 첩보가, 마지막으로 황용윤 수사과정에서 정영에 대한 첩보가 나오는 등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다. 한편 정영은 1986년 안기부 수사관이 당시 자신이 복역 중이던 대구교도소로 찾아왔을 때 “더 이상

314) 1984.9.25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특히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할 얘기가 없다”며 입을 닫았다고 하는데, 정영이 무언가 한 마디라도 했다면 1986년 이후에도 미법도에서 또 다른 간첩사건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진실위가 민가협 등 인권단체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면서 정영 사건 선정 여부를 두고 논의할 때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영 사건이 ‘간첩이 체보한 사건’이라는 점이 었다. 불법 장기구금 문제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증거부재 등 이른바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간첩 사건들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이 정영 사건에서도 나타나긴 했지만 다른 검거간첩이 체보했다면, 일단 첩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의 첩보가 나온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인구 100여 명의 작은 섬 미법도의 한 동네 사람으로 1965년 함께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는 오히려 정영 사건의 ‘조작 의혹’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네 건의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결과가 되었다.

오형근, 안장영, 안희천 사건은 경기도경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해 많은 검토를 하지는 못했지만 안기부에서 수사한 황용윤, 정영 사건은 상당한 양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제기됐던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황용윤, 정영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사 착수 부분에서 부터 이 사건이 불확실한 혹은 조작된 첩보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용윤과 정영 사건은 안기부에서 수사한 단 두 건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인데, 실제로는 각각 황용익과 정진구라는 월북자 가족이 있어 월북자 가족 사건에 가깝다. 이들은 다른 월북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월북한 황용익, 정진구가 간첩으로 납파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오랜 기간 내·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1977년 검거

되어 간첩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안장영이 1979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1965년 남북 당시 황용익과 황용윤이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이옥분에게 들었다”고 제보하면서 황용윤에 대한 내사가 시작됐고 1981년 12월 황용윤이 검거되게 된다. 그런데 황용익과 황용윤이 만나는 것을 봤다는 이옥분은 1983년 정영 사건 때에는 정진구를 만난 중요 증인으로 등장한다. 또한 정영 등이 1982년 안기부 본부에 연행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 결정적 첩보가 된 황용윤의 처 한금분의 ‘정진구가 1961년 5월 납파됐다’는 진술이었는데 정작 정영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정진구의 1961년 납파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미확인·부정확한 정보로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사계획서’ 등 국정원 내부 문서들을 통해 황용윤 사건과 정영 사건에서 모두 장기 불법구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용윤 사건의 경우, 1982년 2월 안기부의 「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황용윤은 47일, 한금분은 44일, 황용윤의 딸 황순애는 37일간 불법구금되었다. 정영 사건의 경우,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안기부 수사기록상의 「임의동행보고」에는 정영, 정진영, 황정임 등을 1983년 10월 15일 임의동행했으며 10월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기록과는 달리 「인천지부 재수사 경위 및 처분 결과」와 「수사승인 상신」(1983.9.8) 등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진영, 황정임은 1983년 9월 6일, 정영은 9월 13일 연행되어 각각 45일, 38일간 불법 구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정영 등이 주장한 대로 수사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당시 안기부 공식문서는 찾을 수 없었으나 1982년 정영 등이 안기부 본부에서 연행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일일신문 사항」 등에 정영, 정진영 등이 허위자백을 하자 ‘강력수사’로 인한 자백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거나 ‘회유’를 ‘병행’해야겠다는 의견 등이 적혀 있어 어느 정도의 가혹행위나 심한 강압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고문 및 가혹행위는 대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부족할 때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행해지며 이렇게 받아낸 허위자백을 상황에 맞춰 고쳐쓰거나 피의자들 간의 진술의 불일치를 수정하는 작업이 뒤따른다고 하는데 정영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피의자 진술이 수정되는 과정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정영 사건의 경우, 검찰 및 법원에 제출된 공식 수사기록 외에 1983년 인천분실 수사관련철이 국정원에 남아있지 않아 이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2007년 6월 21일 인천지부에서 관련 자료를 일부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인천지부에서 이송한 자료 중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가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안기부 공식 수사기록상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인천지부에서 제공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정영이 정진구에게 받은 공작금이 1000원권 지폐였다고 적혀 있으나 공식 수사기록상에는 모두 500원권 지폐로 적혀 있는 것은 1000원권 지폐가 발행된 것이 1975년으로 1969년과 1971년 정영이 공작금을 받을 때는 1000원권 지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수정한 것이라고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또한 연행 10여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기소된 정영의 처 황문자의 경우 안기부 피의자신문조서 상에 기록된 작성일자인 1983년 10월 16~18일에는 안기부에 구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조작된 것이었다. 즉 정영 등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필요와 계획에 맞춰 조작,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정영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의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유일하게 증거로 제출된 별상마님 모자와 옷, 100원권 지폐 한 장은 정영 등이 강화도 미신에 따라 돈이 생길 때마다 별상마님 모자에 돈을 넣고 절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 정영이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결코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황용윤 사건의 경우 그러한 ‘간접’ 증거물조차도 전혀 없었으며 1977년 검거된 안장영 사건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넘적한

돌 하나와 빈병이 ‘무인포스트’의 증거라고 제시되기도 했다. 이들의 경우 공소사실에서 ‘무식해서’ 무전기 사용법을 배우지 못해 간첩통신부호를 부여받거나 무전기, 난수표 등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북과 통신한 증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황용운 사건과 정영 사건이 성립하려면 월북자 황용익과 정진구의 남파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황용익과 정진구의 남파나 황용운, 정영과의 접선 여부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었다. 또 사건 관련자들과 두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인 이옥분 외에는 월북자 황용익과 정진구를 직접 봤다거나 만났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사건 관련자들은 안기부에서의 장기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옥분의 경우 황용운 사건 때와 정영 사건 때 동일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 외에 정진구나 황용익에 대해 진술한 조옥순, 이연화 등은 이미 사망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입증이 불가능한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처럼 사건 당사자 진술 외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황용운 사건과 정영 사건에서 공히 안기부 스스로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영 사건의 경우 1982년 이들을 연행수사한 후 무혐의 방면한 안기부 본부 측에서 1983년 이 사건 수사보고를 올린 인천분실에 대해 ‘보완’요구를 했을 정도였다. 당시 안기부 본부는 정영과 정진영의 정진구 접선방식이나 정영의 밀입북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공작원칙상 맞지 않는다”며 수정보완 지시를 했다. 안기부 본부는 또한 “미법도에는 군대가 없다”는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정영 등의 주요 간첩활동인 ‘국가기밀 누설’에 대해서도 안기부 스스로 부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처럼 물증도 없고 모순 투성이인 황용운 사건과 정영 사건의 유죄판결을 위해 ‘검찰과 사전협조’하고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사법부와 긴밀히 협조한데 이어

‘대공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언론에 확대·과장·왜곡 보도하기까지 했다. 진실위는 당시 언론보도와 안기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등과 이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비교함으로써 안기부가 정영 등이 받았다는 공작금 액수를 10배 가까이 부풀리는 등 사건을 확대·왜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안기부 내부 자료와 공식 수사기록, 검찰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진실위는 황용운 사건과 정영 사건에 관한 그간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미법도와 그 인근에서 발생한 다섯 건의 간첩 사건 모두에 상당한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즉 1965년 남북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미법도 상황, 각 사건의 ‘간첩행위’상의 모순 등 각각 개별 사건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의혹들이 이 다섯 건의 사건을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 건의 간첩 사건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많아 이들이 경찰 및 안기부의 주장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재조 및 재야 법조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정영 사건의 경우 1심 공판조서의 여러 부분에서 공판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안기부와 검찰 수사기록 상의 혐의에 맞춰 왜곡·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를 안기부 및 검찰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은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황용운 내·수사 기록]

내·수사 연도	내·수사 기관	관련자	내용	조치(비고)	내용 출처
70.		미법도 내 납북귀환 어부	70년 미법도 새우젓 막에 괴한 출현을 계 기로 미법도 내 납북 귀환어부 조사		
73.10경		황용운	월북 가족 황용익 연계 접선 혐의 관련		의견서 상 73.10 중순 황용운, 한금 분, 황순애가 나눈 대화 중
77.9하순		황용운	월북 가족 황용익 연계 접선 혐의 관련		의견서 상 77.9하순 황용운, 한금분, 황 순애와 나눈 대화 중에서.
1978.10 -79.2	경기도경 <미나리 공작>	황용운	77.5 안장영에게서 나온 첩보에 근거, 황용운의 황용익 접선 혐의 내사	담당자: 경장 경무현은 정진영 등을 대상으로 한 <오징어공작> 담당자 중의 한 명임 ○ 이 <미나리공작>은 78.10 치안본부 승인을 받아 경기 도경에서 자체 진행 중이던 내사공작으로 79.2 중정 수사공작과와 '경합'된 사실을 알고 공작 중지 상태였다 함	79.8.11 중정 작성 <간첩용의자 출장 동향 내사 결과보고>
1981.10	안기부	미법도 내 납북귀환 어부	납북어부에 대한 일제 실태점검/대공 내사 활동		82.2 작성 <간첩 등 정보사범 검거 및 처리결과 통보>

[정영 사건 내·수사 기록]

내·수사 연도	내·수사 기관	관련자	내용	조치(비고)	내용 출처
66.8-9 월경	강화경찰 서	미법도 거 주 납북귀 환어부		이옥분이 정진구 접선 사실 자백	정영 탄원서
70.		미법도 거 주 납북귀 환어부	미법도 새우젓막에 괴한 출현 계기로 미법도내 납북귀환 어부 조사	당시 이옥분이 65년 정진구 만남 사실 자백	83.8.30 안기부 인천지부 작성 <이연화 참고인 면접 상황보고>
72.8	인천 보안 대	정광영, 정명순	정진구 접선, 연계 혐의	1시간 조사받고 방면	82.2.19일자 작성 <수사결과보고>

73		정진영, 장영환		형사가 마을회관에 묵으면서 조사 황정임 범죄사실 상에서는 이때가 72년.	82년 수사자료
78.10.16-79.7.12	경기도경 <오징어 공작>	정진영 등	월북자 정진구 접선희의자 내사 공작	중정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경에서 진행하였으며 무형의 공작 종결함	<오징어공작> 관련철 등
78.10.경		정진영	2박3일간 삼산면 지서에서 정진구 관련 조사 받음		82.2 수사기록
79.2	안기부	정진영	70. 미법도 간첩 출현시 상여 보관소 근처에서 정진영을 목격했다는 첩보에 의거 미법도 출장 첩보 내용 확인 및 정진영에 대한 내사 구증 수집		
79.6.23	경기도경 <오징어 공작>	정진영	강화경찰서 삼산지서에서 진술조서 작성	이옥분에게서 정진구 접촉 사실 지실 여부 및 70년 상여막 인근에서 서성거렸다는 첩보 관련	
80.7		정진영	강화도 삼산지서에서 1박2일간 정진구 남파출현 여부 조사받음		82.2 수사기록
1981.10	안기부	미법도 내 남북귀환 여부	남북어부에 대한 일제 실태 점검/대공 내사활동		82.2 작성 <간첩 등 정보사범 검거 및 처리결과 통보>
82.2.8-2.20	안기부	정진영 등 10명	정진구 연계 접선희의	정진영, 황정임, 정영 등 10명을 연행, 수사 후 무형의 방면	
1982.3.8-83.9.25	안기부 인천지부 <래왕선 공작>	장영환 등 6명	정진구 국내 연고자 대상, 정진구 접선, 연계 형의 집중 내사		

[강화군 미법도, 교동도 간첩 침투 및 접선 기록]

순번	간첩 침투 및 접선 연도	남파자	접선자	접선장소	내용	비고	출처
1	1954.4 일자불상	정진구	정점분	강화군 교동정자가	한호석을 찾음	한호석은 교동 출신 월북자로 당시 정점분이 한호석의 옛 집에 살고 있었음	
2	1956.9 일자불상	정진구	정진영, 정영	강화군 교동도	정점분에게 정진영에게 연락 해줄 것을 부탁, 정진영 접선		

			점분	양 갑 리 친척 잔 치집, 빈 장산 우 물터			
3	1958.10. 24(음)	정진구 외 1인	정점분	강 화 군 교 동 도 정 점 분 자가	안부 묻고 편지 전달 요청했 으나 소각		
4	58. 가을 경	박용후	이기명 의 처?	강 화 군 양 사 면 인화리	박용후가 인화리에 다녀갔음	박용후는 교동면에서 정 진구와 함께 북한에 부역 하다 9.28 수복시 월북했 으며 그 사촌동생 박용배 는 황용익이 61.5 한금분 에게 대동월북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줄 것을 부탁한 대상자임. 또한 박용배의 형인 박용성은 6.25당시 상산면 미법리 인민위원 장으로 부역하다 9.28수 복시 아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됨	82.2작성 <간첩용의 자 수사결 과보고>
5	1960.4 일자불상	정진구	정점분	강 화 군 교 동 도 정 점 분 자가	교동 지식리에 다녀오는 길에 배가 고파 들렀다고 함		
6	1960.겨 울	황용익	김장득	미 법 도 김 장 득 자 가 (황 용 익 의 옛 집)	“상산에서 온 순경인데 김장 득씨 좀 나오시오”라는 말에 나갔다 온 남편 김장득이 처 조옥순에게 황용익이 어디 다녀오는 길에 잠깐 들렀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함		
7	1961.5. 일자미상	황용익	한금분	황 용 윤 자가	황용윤 출타 중 한금분 접선, 공작금 10만원 전달, 다음 남파시 교동 거주 박용배 대 동월북할 수 있도록 대기 시켜줄 것을 부탁		의견서. * 81.12.24 <간첩 황 용윤 등 범 죄 개요> 에는 61.3로 되어 있음
8	1961.7 초순 일 자미상	황용익 외 무 장간첩	황 용 윤, 한 금분	황 용 윤 자가 및 자 진 배	박용배 포섭 실패에 화를 내 고 물때를 놓쳐 복귀할 수 없다 하여 자진배 상여보관소		의견서. * 81.12.24

		1인		상여보관 소	에 은닉시켜 증		<간첩 황용 윤 등 범죄 개요>에는 61.5 하순 으로 되어 있음
9	1961.가 을 일자 미상	황용익	황용례	강 화 군 내 가 면 황 용 례 자가	황용익이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안된 다고 거절했다 함	한금분은 황순애와의 대화 에서 황용익이 황용례의 집을 찾아가 황용윤의 집 주소를 알고 황용윤을 찾 아온 것이라고 설명	의견서
10	1961.11 하순 일 자미상	황용익 외 무 장간첩 1인	황 용 윤, 한 금분, 황순애	황 용 윤 자가 인근 작 은 당 야산 숲속	공작금 8만원 전달 후 황순애 대동입북		의견서. * 81.12.24 <간첩 황 용윤 등 범죄 개 요 > 에 는 61.10로 되어 있음
11	1961.11 하순 일 자미상	황용익	황 용 윤, 한 금분, 황순애	황 용 윤 자가 인 근 작 은 당 야산 숲속	5일만에 돌아온 황순애 인 계받음		의견서. * 81.12.24 <간첩 황 용윤 등 범죄 개 요 > 에 는 황 순 애 가 3박4일 체 북후 귀환 으로 되어 있음
12	1963.9.9	최부희	조옥순 등	미 법 도 김 장 득 자가	서울 침투 경로로 미법도에 잠입한 간첩을 주민들이 삼 산면 하리 경찰서로 넘겼으나 미법도로 되돌아옴	북한에서 미법도로 안내 해준 북한 공작원 2명이 최부희가 있던 김장득의 집으로 찾아와 대동 복귀	
13	1963.9 일자불상	정 진 구, 황 용익	정진영	정 진 영 자가	여간첩 최부희 대동 복귀		
14	64.11 하 순 일자 미상	황용익 외 1인	황 용 윤, 한 금분	황 용 윤 자가, 작 은당 야	화폐개혁으로 사용하지 못한 공작금 잔액 7만여환 반납 하고 공작금 10만원 수수		의견서 * 81.12.24

				산 숲속			<간첩 황용운 등 범 죄 개요>에는 이 남과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음
15	65.10.3	성명불상 공작원 2인	안장영	미법도 그물골	미법도 경비사항 및 동조세력 포섭 사업보고, 대동월북자 물색 및 접선 등 지령 수수, 공작금 10만원(500원권 200매) 수수		
16	67.11.4	성명불상 공작원 2인	안장영	미법도 그물골	미법도 경비사항 및 동조세력 포섭 사업보고, 대동월북자 물색 및 접선 등 지령, 공작금 30만원 수령		
17	68.12초순 일자 미상	황용운의	황용운, 한금분	황용운 자가 작은 당 숲속	69년 음력5월 황용운의 선친 묘소 앞에서 접선하기로 약정	황용운이 정명영 가에서 도박 중, 한금분이 집에 황용운이 와 있다면서 불러와서 접선케 함	의견서.* 81.12.24 <간첩 황용운 등 범 죄 개요>에는 68.10로 되어 있음
18	69.9.1-2	정진구 외 2인	정영	미법도 닭바위	공작금 20만원 수수, 정진구에게 자신의 집 위치 안내		
19	69.7초순	황용운 외 1인	황용운	황용운 선친 묘소 앞	새우잡이배 구입 비용으로 공작금 10만원 수수	전마선은 구입하지 않고 69.11월경 김포군 대곶면 대벽리에 논 1300평 구입	
20	70.1.20 04:30분 경	북괴 공작원	안희천	안희천 자가	차기 접선 약속, 공작금 5만원(500원권 100매 1묶음) 수수	당시 미법도 해안을 지나 가는 쾌속선 주민들이 목격, 새우젓갈 보관창고에서 수상한 사람 발견으로 수색	
21	1971.8.21	정진구 외 2인	정영	닭바위	정영 대동 입북, 사흘 체류하며 교육받고 공작금 10만원 수수 후 복귀		
22	1971.9 일자불상	정진구	정진영, 황정임	정진영 자가	정진구에게 식사 제공, 정광영 등을 대동입북했으면 좋겠다는 청을 거절, 강화군 양사면 생설미부락 김씨 앞으로 되어 있는 서신 발송 부탁받고 3만원 수수		

23	71.11.30	성명불상 공직원 2인	안장영	미법도 안장영 자가 및 뒷산	미법도 경비사항 및 동조세력 포섭 사업보고, 대동월북자 물색 및 접선 등 지령 수수, 공작금 20만원 수수		
24	1972.3 일자불상	정진구	황정임	정진영 자가 및 서검도	정진영 출타 중 방문, 공작 금 5만원 전달		
25	72.9하순 일자미상	황용익	황용운	황용운 자가(?)	73.음8.25 조카 황인환을 대동월북할 수 있도록 데리고 황용익 선친 묘소 앞에서 만 나자는 지령 및 공작금 5만원 수수	사전 접선 약속이 없던 상태에서 김포로 이사갔던 황용운, 황용익을 접선하기 위해 혼자 미법도에 남아서 기다림	의견서. * 81.12.24 <간첩 황 용운 등 범죄 개 요> 에 는 72.음력 8.25 접선 한 것으로 되어 있음
26	1972.11 일자불상	정진구 외 1인	정진영	정진영 자가	서검도에서 오는 길인데 물 때가 맞지 않아 들렀다고 함		
27	1973.9 일자불상	정진구 외 1인	정영, 정진영	정영 자 가 및 정 진영 자가	정영이 정진구 외 1인 자가에 1박 은신시킨 후 정진영 집 으로 안내		
28	73.음 8.25	황용익 외 1인	황용운	황용익 선친 묘 소 앞	황인환 포섭 실패 소식에 화 를 내며 전마선 구입 비용으 로 공작금 10만원 전달, 74. 음4.25 황인환 대동 입북할 수 있도록 미법도에 와서 대 기하라는 지령 수수	74.3 0.5톤급 전마선 1척 31만원에 구입	
29	73.11.15	성명불상 공직원 2 인	안장영	미법도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해안 으로 대동입북, 11.23까지 체복 중 독립가옥에 수용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11.23 해주 용당포 경유 미법도로 잠입		
30	74.6하순	성명불상 공직원 1 인	최정순 (안장영의 처)	미법도 안장영 자가	안장영이 배를 타고 나간 동안 성명불상 공작원이 안장영의 집에 찾아왔으며 최정순은 안장영이 지시한 대로 아무 일 없이 활동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31	75.9 일 자불상	정진구 외 1인	정영	정영 자 가	미법도 군경 경비상황 및 서울과 인천으로 가는 방법 전달 후 10만원 수수		
32	75.12.28	성명불 상공 직원 1 인	안장영	강 화 군 내 가 면 외 포 리 버스주차 장	사업 보고 및 지령 수여		

5 일본 취업 간첩사건 - 차풍길 간첩사건

가 | 조사현황

1) 자료조사

서울중앙지검에 존안하고 있던 차풍길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2,600여쪽과 ‘차풍길사건 수사계획’, ‘조총련 간첩(차풍길)사건 대일 지시 및 결과 보고 상황’ 등 국가정보원이 존안하고 있던 차풍길사건 관련자료 600여쪽 그리고 차풍길 신분장 100여쪽 등을 검토·분석했다.

2) 면담조사

차풍길사건 당사자인 차풍길, 자양회 회원 오OO 등 5명, 신분장을 작성한 교도관 고OO 등 2명, 차풍길의 4촌 누나인 차기순 등 모두 9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나 | 사건개요

1) 사건내용³¹⁵⁾

차풍길은 1975.5.9 아버지인 차관열의 초청으로 도일하여 공사장 인부로 일하면서 조총련 오오따지부 열성 맹원인 숙부 차삼열 등으로부터 북괴의 상투적 허위선전 내용을 듣는 등 교양을 받고 동년 11.5 귀국(1차 도일)했다.

1976.6.15 다시 도일하여(2차 도일) 1976.6.18경 조총련 맹원 가가와

315) 서울지검 공소장(1982.11.15) 참조

후미오(香川文夫, 이하 가가와)가 경영하는 쓰레기수거업체 고베고교 주식회사(香都興業, 이하 향부흥업)에 야스다란 별명으로 취업한 후, 가가와의 지원 하에 1976.8 중순경 회사 운전원으로 위장 취업한 조총련 동경본부 대남공작 지도원 요시무라(吉村)와 처음 접촉했다.

1976.9-11 사이에 요시무라와 작업도중 그리고 도쿄 교외 유원지 및 빠징고 등에서 접촉하면서 북괴의 선전화보인 “조선화보” 1권과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등의 책자를 교부받고, 만경봉호의 원거리관람을 안내 받는 등 북괴의 상투적 허위 선전을 듣고 포섭됐다. 동년 12월 초순 차풍길이 귀국한다는 것을 탐지한 요시무라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해 일하자는 제의를 받는 동시, 남한 제반 정세를 수집·탐지하여 다음 도일시 보고하되 그 보고방법은 향부흥업에서 연락되도록 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년 12.12 귀국하여 잠입했다.

1978.1부터 동년 3월 사이에 피고인의 안방에서 고향 친구인 김정신과 박석종의 집에서 각각 발견한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기사 중 ‘1978년도의 경제지표(한국일보 1.26)’, ‘탐스피리트78(경향신문 2.15)’, ‘대졸초임 17만원(한국일보 3.24)’이란 기사의 내용을 발췌하고 의견을 붙여 편지지에 옮겨 적는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각 간섭하며 1978.9.29 3차 도일시(3차 도일) 10월 초순 향부흥업에서 위 신문기사 발췌기록을 요시무라에게 인계 보고했다.

1979.3 중순 요시무라로부터 대남적화통일의 과업을 합심하여 추진하기로 약속한 징표로 제공하는 일제 은색 가스라이타, 세탁비누, 수건 각각 1개를 받은 후, 민심 동향 등을 탐지·수집하여 다음 도일시 향부흥업에 취업한 후 보고하고 비밀을 엄수하라는 지령 받고 동년 3.28 귀국했다.

귀국 후, 1979.4.1 자양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총련 활동을 찬양하고, 1979.6.24부터 1981.11경까지 동두천에서 앰파이어 양복점을 경영하면서 양복점에 출입하는 주한 미2사단 미군 등으로부터 사단의

규모, 동향 등과 신문기사 ‘YH 여자 근로자 농성(한국일보 1979.8.12)’, ‘사북탄광 광부 3,500여명 집단난동(경향신문 1980.4.24)’들을 탐지·수집했다.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보고하고 요시무라 및 가가와 등과 회합할 목적으로 1982.7.3경 외무부에서 위 조총련 맹원인 차삼열의 신원보증 하에 차판열이 초청하여 일반여권과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도일절차 및 회합 준비를 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예비 했다는 것이다³¹⁶⁾.

2) 재판과정

1심(1983.3.31)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2심(1983.8.11) 재판부는 “안기부에서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안기부에서의 부당한 구속 또는 진술의 강요들의 사정이 검찰수사과정에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안기부 직원이 구치소에 와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다시 상고하였지만, 3심(1983.11.8)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³¹⁷⁾.

3) 주요 의혹사항

차풍길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316) 조선일보는 안기부가 1983.3.11 차풍길사건을 발표했다며 “차풍길은 75년 5월 일본에 건너가 조총련맹원인 숙모에게 영향받고 76년 6월 북괴의 재일공작지도원 이재혁(44, 일명 요시무라)으로부터 미인계와 향응을 받고 포섭됐다. 동경교외의 비밀아지트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차는 76년 12월초 귀국, 한·미연합작전 규모와 훈련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일본을 왕래하며 보고했고, 79년 6월 동두천 oo 부대 앞에 위장 거점으로 ‘엠펜이어양복점’을 차려 놓고 이 부대의 병력 훈련상황 장비 등 주한미군의 동향을 수집, 재일 북괴지도원에게 보고 하려다 검거됐다”고 보도했음. “일본우회 간첩 2명 구속”, 「조선일보」(1983.3.12)

317) 차풍길은 1990.4 석방되었다.

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차풍길을 포섭한 요시무라와 이재혁이 동일 인물로서 조총련 공작지도원이며, 차풍길이 포섭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차풍길이 요시무라와 1979.3까지 접촉하면서 그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수집하여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차풍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연행·불법구금·고문·접견금지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 | 조사내용

1) 차풍길의 ‘포섭’ 및 요시무라와 이재혁의 동일인 여부

가) 문제제기

차풍길사건에서 실제로 ‘요시무라³¹⁸⁾’가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이재혁’으로 ‘차풍길을 포섭’했는가 그리고 ‘조총련 흑색거점’으로 규정된 향부홍업의 사장 가가와 또한 ‘조총련 열성 맹원’으로 요시무라가 차풍길을 포섭하는데 관여³¹⁹⁾했는가 여부는 핵심 의혹이다.

왜냐하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76.6 차풍길이 2차 도일하여 향부홍업에서 만난 운전원 요시무라를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으로 규정하고, 이때 ‘차풍길이 요시무라에게 포섭’돼 1976.12 귀국 직전 간첩지령을 받고 귀국한 이래로 ‘간첩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안기부는 요시무라가 위와 같이 차풍길을 포섭하는 등 공작을

318) 차풍길은 ‘요시무라’라는 이름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이 말했다고 안기부 수사관이 말해 준 것이며, 1976.6-12 근무할 당시 ‘요시무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976년 향부홍업에서 만난 사람이 ‘요시무라’인지 ‘요시다’인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요시무라’를 차풍길이 향부홍업에서 만난 운전원이라는 한정된 의미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상고이유서(1983.9.30)” 참조

319) 가가와와 접촉한 것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및 회합통신 예비음모’(제8조 제1항과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총련 열성맹원’이었던 향부흥업의 가가와 사장의 도움이 있었고, 향부흥업은 실제로 요시무라와 차풍길의 연락거점으로 활용되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차풍길은 1976.9 중순경 ‘요시무라(요시다인지 불확실)’와 인사한 후, 도쿄 교외 유원지(9월경) 등을 놀러간 사실은 있으나, 그가 남한의 ‘장기집권’에 대해 비방하여 ‘조총련이 아닌가’ 생각했을 뿐 그에 동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요시무라와 가가와와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³²⁰⁾ 나아가, 안기부는 ‘요시무라’를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이재혁’이라고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안기부는 ‘요시무라와 가가와와의 신원성분’과 ‘요시무라와 이재혁의 동일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주일 대사관에 근무하는 안기부 직원이 작성한 ‘영사증명’과 차풍길의 진술만을 제시했다.

따라서, 차풍길이 만난 ‘요시무라’가 차풍길을 포섭했는지, ‘요시무라’가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이재혁’인지, ‘가가와가 조총련 열성맹원’으로 요시무라의 공작활동을 도왔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문제다.

나) 첩보입수 및 수사착수 경위

차풍길사건은 1982.1.28 해외부서에서 수사부서로 관련 첩보가 이첩³²¹⁾ 되면서 본격적으로 내사가 시작되었다³²²⁾. 1981.7.28³²³⁾ 일본에서 근무

320) 1심 2차 공판조서(1983.1.10) ; 「항소이유서」(1983.5.24) 참조

321) 1982.1.28 해외부서에서 수사부서로 보낸 문서에 ‘간첩 용의자 차풍길에 대한 첩보를 이첩하오니 적의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첩보이첩(82.1.28)”

322) “첩보이첩(82.1.28)”, ; 「조총련 연계혐의자 내사결과 보고」(1982.2.10), 「간첩 용의자 차풍길 첩보보고서」(1982.1.28 이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 「차풍길 내사상황 종합검토」(1982.2)

323) 1982.2.10 수사부서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81.6 이후 해외부서에서는 본건 용의자의 신원 및 동향을 내사타가 82.1.28 당국에 사건 이첩’되었다고 기재돼 있어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해외부서에서 작성한 다른 문서에 ‘7.28’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것이 ‘6월 이후’

하던 당시 직원이 첩망 ‘조총련 동경본부 오오따지부 정치부장(신뢰성 양호)³²⁴⁾’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했다.

그 내용을 보면, 1976.3-6경 차풍길이 민단계 재일 부 차관열의 초청으로 2차 도일시 동경소재 폐기물 처리장 노동자로 취업 중, 조총련 동경도본부 이모 정치지도원(전 조총련 체육협회장 이호연의 자)이 차풍길을 포섭하기 위해 상기 처리장 노동자로 위장 침투하여 3개월간에 걸쳐 포섭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1976.6말경 차풍길 귀국 후 제보자가 이지도원에게 포섭여부를 문의한 바 귀국시 약 70% 포섭되었다고 언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차풍길의 신원 및 동향’을 내사하다가 1982.1.28 관련부서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수사부서는 내사를 통해 197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차풍길이 국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첩보출처의 신뢰성으로 판단’할 때, 차풍길이 이모 지도원에게 포섭된 시기는 ‘1975.5.9 - 11.5 또는 1976.6.15 - 12.12’일 것이며 1978.9.29부터 1979.3.28까지 일본에 머무른 사실이 있어 ‘포섭된 이후의 연계활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³²⁵⁾.

그 후, 수사부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는데, 1982.6 “대상자 검거 수사로 혐의사실 규명, 국내관련망 일망타진 및 재일공작조치 와해, 새로운 수사공작여건 발굴”을 목표로 처음 수사계획을 세웠다³²⁶⁾. 그러나 ‘차풍길이 도일 수속 중에 있고 차정자와 전대량 등 차풍길 관련자들이 체일 중이며, 차풍길이 도일하면 재일 상부선 이모 지도원과 접선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이번 출국을 방임하였다가 10.4 귀국 차제 연행조사’하겠다고 수사계획을 변경했다³²⁷⁾, 위 차정자와

라는 점에서 첩보가 입수된 날짜는 ‘7.28’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조총련 연계혐의자 내사결과 보고(1982.2.10)” “간첩 용의자 차풍길 첩보보고서(1982.1.28 이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

324) 안기부, 「조총련 연계혐의자 수사계획 보고」(1982.6)

325) 안기부, 「차풍길 내사상황 종합검토」(1982.2)

326) 안기부, 「조총련 연계혐의자 수사계획 보고」(1982.6)

전대량이 귀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³²⁸⁾.

요컨대, 안기부는 일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부식(扶植)’한 조총련 정치부 ‘첩망(諜罔)’으로부터 ‘조총련 체육연합회장 이호연의 아들이 차풍길을 포섭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공작활동을 했고 약 70%정도 포섭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당시 첩보 내용은 구체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첩보가 제보된 시기(1981.7.28)가 안기부 수사상 나타난 차풍길의 간첩행위가 이뤄지던 중(1976.12-1982.8.7연행시까지)이라는 점 그리고 첩망이 실질적으로는 1976.12 전후 조총련 오오따지부 정치부장이었다는³²⁹⁾ 점을 고려할 때, ‘포섭을 시도’한 이후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첩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가가와 후미오’의 실체

안기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가가와는 ‘제주출신 조총련 열성 맹원’으로 차풍길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요시무라를 소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요시무라에게 향부흥업을 ‘흑색거점’으로 제공하여 차풍길과의 연락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요시무라가 차풍길을 포섭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차풍길은 향부흥업 모든 직원이 회식하던 중에 가가와가 자신에게 잘 해 주었던 사실에 대해 말을 했더니, 안기부 수사관이 ‘일본 사람들은 돈을 무척 아끼는데 그렇게 한 것을 보니 아마 조총련인가’라며

327) 안기부, 「조총련 연계혐의자 수사 변경 보고」(1982.7)

328) 안기부, 「조총련 연계혐의자 차풍길 수사계획 보고」(1982.8), 「조총련 연계혐의자 추가 수사계획 보고」(1982.8)

329) 당시 안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1976.6경 첩망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고 되어 있으나, 첩보 내용으로 볼 때 차풍길이 입국하기 전후라고 판단된다.

‘진술서에 일본인을 조총련으로 몰아 작성케 했다’면서, 가가와가 조총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³³⁰⁾.

실제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가가와가 “제주출신으로 조총련 열성맹원”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가와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다수 주변사람들의 증언과 일본공안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³³¹⁾.

당시 안기부는 1982.8.9 파견관에게 가가와의 인적사항과 조총련 여부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처음 했고³³²⁾ 이에 대해 1982.8.17 ‘일본 공안당국에 확인한 바, 일본인으로 공부상 특이사항 미발견’이라고 보고 받은 후³³³⁾, 다시 ‘가와가에 대해 재차 공안당국에 확인하였으나 1978.5.11 취적 확인 소송에 의하여 일본인으로 취적된 자로 취적경위 및 자료상 일체 하자 없었고 동인이 한국인이었다는 자료는 전연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³³⁴⁾.

이처럼 일본공안당국을 통해 가가와가 ‘제주출신 조총련 맹원’이 아니고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안기부는 가가와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의도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1976년 당시 향부흥업의 작업반장 데루이는 ‘사장은 순수한 일본사람이다. 차풍길에게 사장이 한국 또는 조선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 어디서 사장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당시 종업원 중 외국인은 차판열 부자뿐이었다’ 말한 것으로 보고됐다³³⁵⁾. 또 차판열을 통해 1976년경 향부흥업 상무였던 아베와

330) “상고이유서(1983.9.30)” ; “1심2차 공판조서(1983.1.10)”, “2심1차 공판조서(1983.6.15)”

331) 차풍길은 2심1차(1983.6.15)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4촌 매형 서막동으로부터 후미오사장이 조총련에 협조하는 맹원이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한편 1982.9.11 파견관의 보고에 따르면 차기순은 “남편 서막동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가와가 제주출신 한국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332) 전보(1982.8.9)

333) 전보(1982.8.17)

334) 전보(1982.8.31)

향부흥업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 1976년 당시 향부흥업 종사원은 사장, 임시 운전수 이마이즈미, 다구아, 미즈가미 등이 있었으나 차판열 부자를 제외한 자들은 전부 일본인이며 요시무라라는 사람은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고, 가가와 사장에게 직접 본적지 등을 문의하자 가가와는 '나는 순수한 일본사람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대사관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등 일응 항의 의사 표시'했다고 보고했다³³⁶⁾. 한편, 같은 보고서에서 차기순도 '차풍길로부터 가가와 사장이 친절하게 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남편 서막동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가와가 제주출신 한국 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즉 파견관은 가가와가 '제주출신 한국인으로 조총련 열성맹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가와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일본공안당국과 가가와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했던 것이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차풍길 변호인 설동훈은 도쿄가정재판소에서 내린 가가와에 대한 '취적허가심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위 재판소는 1978.5.11 "당청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신청인의 주민표, 지문조회서, 시즈오카 시청, 시나가와 구청의 회답서를 포함), 신청인 및 오카베 하루코의 각 심문결과에 따라 조사"한 후, "신청인이 일본인이 아니라고 추측할 자료는 없다"면서 "무적인 일본인으로 인정하여 취적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³³⁷⁾.

결론적으로, 당시 안기부는 일본공안당국과 가가와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가가와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내용으로 영사증명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근거로 '가가와가 조총련 열성맹원으로서 요시무라의 차풍길에 대한 포섭공작을 지원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따라서 당시 안기부가 '조총련 공작원이 차풍길을 포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제시했던 가가와의 실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335) 긴급조사보고(1982.9.11)

336) 긴급조사보고(1982.9.11)

337) 참고자료제출(1983.8.10)

라) ‘요시무라’와 ‘이재혁’의 동일인 여부

안기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요시무라는 차풍길에게 ‘북괴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교양함으로써 포섭한 후, ‘남한의 제반 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고할 것을 지시’한 인물이다. 또 이재혁은 조총련 체육연합회장의 장남으로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이자 조선청년동맹 오오따지부 위원장이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요시무라와 이재혁을 동일인물로 규정함으로써 차풍길은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에게 포섭되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던 것이다. 따라서 요시무라와 이재혁이 동일인물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당시 안기부가 요시무라와 이재혁을 동일인물로 규정한 것은 네 가지 수사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근무한 바 있는 당시 직원이 입수한 ‘조총련 체육연합회장 이호연의 아들이 차풍길을 포섭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공작활동을 했고 약 70%정도 포섭됐다’는 첩보내용이다. 두 번째는 차풍길이 요시무라로부터 선전·교양을 받고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는 수사결과다. 세 번째는 이재혁이 조총련 체육연합회 이호연의 장남으로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이고 조선청년동맹 오오따지부 위원장이라는 영사증명이다. 네 번째는 파견관이 입수한 이재혁의 사진에 대해 요시무라와 동일인물이라고 인정한 차풍길의 진술이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수사내용들이 ‘차풍길이 조총련 정치부 지도원에게 포섭된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데에는 최초 입수한 첩보내용과 사진과 관련한 차풍길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위 네 가지 각각의 수사내용이 신뢰할 만한 수사과정을 통해 구체적 증거로 입증된 것이 아닐 뿐더러, 네 가지 수사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만한 타당한 논리나 증거도 부족하다.

수사착수 경위’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첩보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첩보의 출처가 1976.12 전후 당시 조총련 오오따지부 정치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섭을 시도’한 이후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첩보’ 그 자체로만 취급되어 ‘수사착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첩보내용이 구체적 증거와 신뢰할 수 있는 진술로서 증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론’을 내리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³³⁸⁾.

또한 ‘불법수사 여부’ 부분에서 살펴보듯이 차풍길이 안기부에서 수사 받던 조건은 피의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술한 내용은 결과적인 진실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차풍길은 이재혁의 사진에 대해 1982.10.19 “평소에는 항상 썬그라스를 쓰고 다녔는데 이 사진은 안경을 벗고 있는 것이고 썬그라스를 끼고 있는 이유가 자기 얼굴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³³⁹⁾, 공판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³⁴⁰⁾. 그러나 차풍길은

338) 영사증명 작성 지시에 대해 안기부 직원이 “지시중, 2항 다의 (2)항 중 협조자 조총련 오오따지부 정치부 공작원과 업무협의를, 동 내용과 동(3)항 중 협조자에 의해 확인제보된 사실 등 내용이 있는 바 동 내용이 영사증명에 포함될시 추후 이에 협조 공작원의 자필진술서 정구가 요구되어 질 수 있고 이 경우 대처방안이 없는데 이에 대한 본부의견 하지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문의에 회답하면서 “82.9.30 문의한 (2)(3)항에 대하여는 이후 자필진술서 요구, 재문의, 재확인, 등 일체의 요구사항 없으므로 불필요한 기우하지 말고 (1982.9.20자 전문) 내용대로 확인 10.5 한 보고할 것”이라고 다시 지시했다. “의견문의 회답(날짜미상)”

339) “추송서(1982.10.29)” 참조

340) 차풍길은 1심5차 공판(1983.3.14)에서 “본건 수사기록의 영사증명에 첨부된 요시무라가 공소 사실에 적시한 그 요시무라인가요(이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본건 수사기록 제1381정의 사진을 제시한 즉)”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고, 2심1차 공판(1983.6.15)에서 “피고인은 요시무라 본명 이재혁을 쓰레기 수거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차풍길이 외포상태에 있었던 점, 차풍길이 향소이유서에서 요시무라와 이재혁을 동일인물로 규정된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점, 차풍길 스스로 향소·상고이유서 및 진술서 등에서 이재혁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2심1차 공판에서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요시무라’로 통칭하여 질문하고 있어 착각의 가능성도 있는 점, 위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요시무라와 이재혁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 차풍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사실만으로 차풍길이 이재혁과 요시무라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그 반대의 근거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

“사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오래돼서 그럴 것이라며 법정에서 부인하면 다시 안기부에 연행하겠다고 협박했고 법정에서 수사관이 주시하고 있어 공포증에 걸려 요시무라라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며, 요시무라가 이재혁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³⁴¹⁾. 또 진실위 면담에서 ‘요시무라는 썬그라스를 쓰고 다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썬그라스를 썼다’고 진술했다.

안기부 수사결과에 나타난 차풍길과 요시무라의 접촉 회수에 차풍길이 요시무라와 같은 조가 일한 회수를 합하면 모두 17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썬그라스’를 언급한 위 차풍길의 진술서는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게다가, 요시무라와 이재혁이 동일인물로 확인되기 전에 ‘동일인물로 추정’하는 것을 넘어 이미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안기부 수사결과에 따르더라도, 요시무라와 이재혁이 동일인물로 확인된 것은 1982.10.14경이다³⁴²⁾. 그러나 김정신을 만난 결과보고(1982.8.25)에서 “조총련 공작책 이재혁으로부터 받은 은색까쓰라이타를 본명에게 보여 주었다”고 기재하고 있고³⁴³⁾, 같은 날 다른 보고에서는 요시무라와 이재혁을 동일인물로 단정하고 ‘본명은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공작원으로

341) “상고이유서(1983.9.30)” 참조

342) 이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은 안기부가 1982.10.4 입수한 이재혁의 인물사진을 차풍길에게 확인하여 “요시무라”와 동일인물이라는 진술을 받은 후, 1982.10.14 안기부 직원에게 “영사 증명 송부 지시”를 내려 1982.10.18 회신 받은 영사증명이다. 그러나 이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차풍길의 진술서는 1982.10.19에 작성된 것으로 돼 있고, 영사증명의 내용은 198.10.14 영사증명 송부 지시에 첨부된 ‘영사증명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안기부가 공식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1982.10.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처럼 안기부가 이재혁과 요시무라의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파견관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안기부 본부에서 확인한 내용을 안기부 직원이 영사증명이라는 형식으로 확인해 준 것이며, 안기부에서 확인한 것도 차풍길의 진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영사증명 송부 지시(1982.10.14)”, “영사증명서 작성보고(1982.10.18)”.

343) 안기부, 「조총련 연계 혐의자 관련자 첩보보고」(1982.8.25)

북괴의 우월성을 선전·교양하고 차풍길을 포섭한 자'라고 기재하고 있다³⁴⁴). 이 같은 사실은 '중점신문사항'으로 차풍길이 진술한 바 없는 '조총련 동경본부 이모 지도원'과의 '접촉여부'를 기재하고 있는 '조총련연계혐의자 차풍길 신문사항(신문자료)'³⁴⁵에서도 엿 보인다³⁴⁶).

한편, 당시 안기부 파견관은 “아베상무, 가가와의 딸(경리사원), 데루이 등에 확인한 바, 요시무라는 향부흥업에 재직사실 없어 신원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³⁴⁷). 또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차풍길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국가정보원에 요시무라에 대한 신상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요시무라가 조총련 대남공작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³⁴⁸).

결과적으로, 당시 안기부는 요시무라와 이재혁을 동일인물로 규정하고 차풍길이 조총련 정치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세운 증거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고, 이와 관련된 차풍길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풍길의 기억에 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까지도 확인된다. 당시 안기부가 관련첩보를 근거로 차풍길이 향부흥업에서 만났던 ‘성명미상의 어떤 인물(요시무라)’과 실존

344) 안기부, 「조총련 연계 혐의자 차풍길 관련자 첩보보고」 (1982.8.25)

345) “조총련연계혐의자 차풍길 신문사항(신문자료)”

346) 이와 관련해 안기부 수사부서는 1982.12 파견관에게 첩보상 ‘이모’에 대한 신원확인 지시를 했고 파견관은 1982.8.17 과 같은 달 18일 ‘이호연은 조총련 체육연합회회장, 같은 단체 고문이고 외국인 등록상 이견회이며 장남 이재혁(33세)은 조총련 정치부 지도원’이라고 보고했다고 하면서, 당시 수사관은 차풍길이 말한 ‘요시무라’가 ‘이재혁’이라고 생각하고 1982.8.19 긴급사실확인 지시 전문에서 ‘차풍길은 2차 도일시 76.6 고베고교(주) 쓰레기 수거잡부 취업 중 8월경 조총련 공작지도원 요시무라 33세(이호연의 자 이재혁)에게 포섭, 지령받고 국내 잠입 활동, 3차 도일시에도 동사에 종사하며 계속 요시무라와 접선, 국가기밀을 보고 누설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자’라고 했으며, 그 후 수사관은 1982.8.25 ‘조총련 연계 혐의자 관련 첩보보고’에서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공작원 요시무라’라고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347) 안기부 본부의 네 차례에 걸친 지시(1982.8.16, 1982.8.26, 1982.9.2, 1982.9.14)에 대해 파견관은 ‘아베상무, 가가와의 딸(경리사원), 데루이 등에 확인한 바, 요시무라는 향부흥업에 재직사실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조총련 간첩(차풍길)사건 대일 지시 및 결과 보고 상황”

348)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7, p702.

하는 ‘조총련 동경본부 이모 지도원(이재혁)’으로 추정하고 이를 억지로 관련짓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 ‘요시무라’의 차풍길 포섭 여부

안기부 및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차풍길은 1976.6.18 가가와가 경영하던 향부흥업에 야스다란 별명으로 취업한 후, 동년 8월 요시무라를 접촉한 이래로 4회에 걸쳐 ‘북괴 우월성 등에 관한 허위 선전 및 교양’을 받고 포섭되어³⁴⁹⁾, 귀국 직전인 동년 12월 초순 가마다 지역 “도로변”에서 요시무라로부터 ‘남한제반정세’를 수집하여 향부흥업을 통해 보고 하라는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 그 후, 차풍길은 1978.9.29 3차로 도일하여 동년 10월에 향부흥업에서 요시무라를 접촉하고 국내에서 탐지·수집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동년 12월과 1979.1에 재차 회합했다. 또 귀국 직전인 동년 3월에 다시 접촉하여 요시무라로부터 ‘민심동향’ 등을 탐지·수집·보고할 것을 지시받은 후, 약속의 징표로 ‘일제 은색 가스라이타’와 세탁비누 1개 그리고 수건 1개를 받고 또다시 “잠입”한 것이다.

당시 안기부는 이와 같은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도일시 차풍길이 입었던 양복, 요시무라가 찍어 주었다는 차풍길의 개인 인물사진, 요시무라가 주었다는 가스라이타 등의 물증, 이재혁과 가가와의 신원사항에 대한 영사증명, 차풍길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반면, 차풍길은 1976.9-10사이 요시무라와 김씨(이름 미상)의 남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이 ‘남한의 장기집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을

349) 공소장 내용을 보면, 차풍길은 1976.9 도교 교외 유원지에서 교양을 받고(1회), 빠징고에서 경상도 출신(35세 가량)의 조총련 정치지도원 김명미상 남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북괴의 우월성 등 상투적 허위선전’을 들었고(2회), 동년 11월 초순 가마다역 부근 쓰레기 수거장 등에서 ‘북괴의 선전화보’인 “조선화보”1권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등의 책자를 교부 받으면서 통일혁명전략전술 등에 관한 교양을 받고 위 책자 등을 탐독 후 적화통일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인식을 굳게 했으며(3회), 동월 하순 일요일 요꼬하마 부근 야마시다공원 등지에서 그 공원 앞 항구에 입항하여 있던 북괴의 대남공작용 선박 환경보호의 원거리 관람을 안내 받는 등(4회)으로 포섭되었다. “공소장 (1982.11.15)”

듣고 ‘조총련이 아닌가하고 추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요시무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았다는 것은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1회(10.19) 진술시 사실대로 말했으나 안기부 수사관이 구치소에 찾아와 안기부 조사내용대로 진술하라며 구타와 협박을 가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³⁵⁰). 실제로, 차풍길은 자신의 ‘포섭과 지령수수’ 과정에 대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내용을 당시 수사받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차풍길의 주장에 따르면, 요시무라와 접촉한 것은 요시무라가 향부흥업에 입사한 1976.9 중순경부터 퇴직한 동년 10월 사이에 10회 정도 같은 조가 되어 일을 한 것과 동년 9월에 도쿄 교외 유원지와 가마다역 빠징고를 함께 간 것 그리고 동년 10월 초순경 보트장에 놀러간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³⁵¹).

이 중에서 빠징고에 갔을 때 요시무라의 소개로 김씨(이름 미상)의 남자를 만났는데, 이때 ‘남한의 장기집권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듣고 ‘조총련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고, 그 일이 있던 얼마 후 요시무라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얼마 후 집으로 찾아와 빠징고에 가자고 하여 거절한 후로는 요시무라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³⁵²).

또 1976.9 요시무라와 요코하마 부근 야마시다 공원에 갔던 이야기를 했는데³⁵³), ‘항구 부근에 놀러 간 것이 이상하다며 북괴의 배를 봤나, 만경봉호를 타 보았냐’고 물어서 ‘200미터의 거리에서 수십 척의 배들을 보았지만 북괴의 배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수사관들이 고문과 구타를 가했다는 것이다³⁵⁴).

350) “항소이유서(1983.5.24)” ; “상고이유서(1983.9.30)” ; “1심2차 공판조서(1983.1.10)” 참조

351) “1심2차 공판조서(1983.1.10)” 참조

352) “항소이유서(1983.5.24)” 참조

353) 차풍길은 진실위 면담에서 ‘친구와 요코하마역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가보니 친구가 오지 않아 집으로 돌아 온 적이 있는데 수사관이 요코하마를 갔다고 하니까 만경봉호를 본 것으로 쓰라고 했고 요시무라와 야마시다 유원지에 간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354) ‘항소이유서(1983.5.24)’ ; ‘상고이유서(1983.9.30)’

요시무라가 자신에게 보여 주었다는 책자와 관련해서는 화보 10여권을 가져와서 요시무라가 보여 준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서 구경조차하지 못했다고 하자, 두 권을 골라 그림을 보고 그리게 했고, ‘김일성 교시’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는 내용을 보여 주며 ‘잔소리 말고 보고 적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³⁵⁵⁾.

한편, 차풍길이 요시무라로부터 받았다는 수건과 비누에 대해서는 ‘매형 서막동이 쇠장사를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가끔 가져 온 수건을 준 것’이라고 했고³⁵⁶⁾, 라이타는 작업반장이던 테루이와 1978.11경 오모리 소재 라이타 공장에 폐기물을 수거하러 갔다가 그 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⁵⁷⁾.

이처럼 상반된 각각의 주장을 살펴볼 때에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당시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과 범죄혐의와의 직접적 관련성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진술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당시 수사결과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간첩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간첩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포섭공작방법과 연락체계 등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다.

우선, 차풍길사건에서 나타난 포섭과정을 소위 다른 ‘간첩사건’들에 나타나는 양상과 비교해 보면, 차풍길사건에서는 포섭방법의 치밀함과 은밀함, 통신연락체계 설정, 조선노동당 가입, 공작금 제공, 입북권유 등

355) 앞의 문서 참조

356) ‘간첩 차풍길 연구자 차기순 입국저지시’에 대한 파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순을 1983.1.18 13시부터 16시까지 민단 오오파지부 사무실에서 임정식 주선 하에 접촉한 후, “대상자는 차풍길 체일 중 남편이 손목시계 1개, 자전거 1대를 사 준 사실은 있으나 귀국시 선물을 사 준 기억은 없다하여, 파견관이 양말, 내의 등 의류나 치약, 치솔, 비누 등 사소한 생활용품을 사 준 사실이 있는가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으나 여사한 물품제공 사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라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순의 입국을 저지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357) 앞의 문서 참조

‘간첩사건’에서 ‘간첩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포섭한 ‘간첩’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암호화된 통신 연락방법의 설정과 이에 대한 비밀엄수는 간첩포섭과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방법으로 단지 ‘향부흥업에 취업하면 자연스럽게 연락 된다’고 하고 ‘다음 연락 또는 접촉 일시를 정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조선노동당 가입’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고, 공작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첫 ‘지령’을 “도로변”에서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차풍길을 약 30여일 동안 불법구금하는 등 피의자가 자유로이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³⁵⁸⁾한 후 실시한 안기부의 전략신문결과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³⁵⁹⁾. 특히, ‘포섭단계에서의 적극성 결여’, ‘구체적인 교양계획이 없었던 점’, ‘작업장이나 주점에서 지령을 부여하면서도 유의 및 준수 사항을 지시하지 않은 점’, ‘충성의 결의문 작성 및 입당권유가 없었던 점’ 등이 특징이라고 했다. 또 ‘귀국 후에 조총련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동료들에게 설득하라는 등 북괴보다 조총련 선전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당시 안기부가 차풍길을 66일 동안 불법구금하는 등 피의자가 자유로이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고 결론내린 범죄사실 자체에서도 ‘차풍길이 요시무라에게 포섭됐다’는 점을 명백히 할 만한 구체적인

358)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의 ‘불법수사 여부’ 부분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359) 이 보고서에서 당시 안기부는 이 사건의 특징으로 ‘포섭단계에서 적극성 결여. 작업도중, 회사 인근 주점, 근교 유원지 등에서 간단한 식사, 정종, 맥주 등 몇 잔으로 포섭을 시도했으며 귀국시까지 일관’했고, 교양과 관련 ‘구체적인 교양(교육)계획 무, 교양을 위한 지정된 장소가 없이 휴식시간 및 주점 등지에서 일관성 없는 북괴 우월성 교양, 영화 슬라이드교육 전무, 기간 중 북괴화보 및 김일성 교시책자 1회 탐독’에 그쳤으며, ‘지령사항을 작업장이나 주점 등에서 부여하였으며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지시 별무’하고, ‘충성의 결의문 등 작성 및 입당 권유 무’라고 정리했다. 한편, ‘만경봉호 승선권유 및 입북권유에 대한 거절에 재권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실현을 위한 권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귀국 후에 조총련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동료들에게 설득하라는 등 북괴보다 조총련 선전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조총련 간첩 차풍길 전략신문 결과 보고(1982.9)”

사실과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보았듯이 수사과정에서 당시 안기부 스스로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안기부의 의도와 필요에 맞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차풍길의 자술서 내용상의 모순은 위와 같은 ‘의심’을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만든다³⁶⁰). 즉, 차풍길은 ‘요시무라에게 포섭돼 지령을 수수했다’고 말하면서도 자술서의 말미에 가서는 ‘향부흥업에 취업할 수 있을지 확실할 수 없고 요시무라를 만나게 될 지도 확실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차풍길이 실제로 포섭되어 지령을 수수하고 다음 도일시 향부흥업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위와 같이 모순된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차풍길이 요시무라에게 포섭돼 지령을 수수하고 간첩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야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³⁶¹).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유력한 증거인 ‘영사증명(1982.10.4)³⁶²’의 내용도 당시 파견관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점들이 확인된다.

360) 차풍길의 자술서에는 조사장소가 조사실이 아니라 ‘OOO 호텔’로 기재되어 있어 자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역용공작 검토보고서(1982.9.2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 “인지보고(1982.8.6)”에는 차풍길이 연행되기 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풍길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있다. 게다가 “조총련 연계 혐의자 차풍길 관련자 첩보보고(1982.8.25)”에는 박OO이 ‘차풍길이 ... 신문을 지참하고 집으로 가서 내용을 메모하여 제일 조총련 공작원 요시무라에게 제공하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박OO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더 큰 왜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례들로 볼 때, 당시 안기부의 의도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서에 모순된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361) “차풍길 자술서 1회부터 8회(8.9-9.24)” 참조

362) 영사증명 내용에 의하면 ‘요시무라(吉村)는 前 조총련 체육연합회 회장 이호연(李浩然, 일명 : 李鍵熙)의 장남으로 경남 밀양에서 출생한 이재혁(1949.3.24생)’으로, ‘조청(조선청년동맹) 오오따(大田)지부 위원장,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등으로 활동하고 일본인 처 우시다 켄에코(牛田 千繪子)와 동경도 오오다구 미나미마고메(大田區 南馬込) 2-5에서 금강(金剛) 다방 경영하였으며, 1976.8경 (주)고오베고교에 운전수로 취업, 약 4개월간에 걸쳐 차풍길의 포섭 공작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당관에 협조자에 의해 확인, 제보된 사실’이다. 한편, 가가와에 대해서는 ‘同社 사장 가가와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요시무라의 취업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동사 운전수 및 잡역부 취업자 명단 공개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시무라와 이재혁의 동일인이라는 점과 차풍길의 포섭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당시 안기부 본부에서 제공한 ‘첩보’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영사증명서가 작성되기 전 당시 파견관은 ‘일본공안당국, 향부흥업의 직원, 데루이, 아베, 차관열, 차기순, 민단협조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 일본 공안당국은 가가와가 일본사람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가가와가 일본사람’이라고 했다³⁶³⁾. 즉 파견관은 가가와가 ‘제주 출신 한국인으로 조총련 열성맹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재혁이 전 조총련 체육연합회장 이호연의 아들’이라는 사실과³⁶⁴⁾ 요시무라가 ‘향부흥업에 재직할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³⁶⁵⁾ 1976년경 동 회사에 근무한 외국인인 차관열 부자뿐이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가와와 사장 주변인물 및 민단 협조자 등을 통해 요시무라에 대한 신원사항을 내탐하였으나 지실자 전무’하다고 했다³⁶⁶⁾.

【주요 지시 및 결과 보고상황】

근거	구분	내 용
82.8.9 지시전문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신원내사지시 ○ 고베고교(주) 사장 인적사항, 국내연고지, 조총련 여부 등 확인 (본명 제주도 출신으로 국내입국 사실 없는 자로 본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자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8.13 회신보고 ○ 고베고교(주) 가가와후미오 사장 신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동경도 오오다꾸 하기시고지야쵸 6-6-10), 회사명(고베고교(주) 흥업 주식회사), 업종(쓰레기 처리업) - 동인은 제주도 출신으로 처는 일본인이라고 하며 귀화한 자로 알려져 있어 신원자료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중에 있으므로 추보위계

363)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가와와 후미오의 실체’ 부분 참조

364) 안기부 본부 지시(1982.8.12)에 대해 파견관은 1982.8.18 ‘이호연의 외국인 등록상 이름은 이견희’이고 ‘장남 이재혁(33세)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초청 오오다꾸 부위원장 등 활동타가 현재 오오다꾸 산노우에서 일본인 처 우시다찌 이어고와 다방 경영 중’이라고 보고했다. “조총련 간첩(차풍길)사건 대일 지시 및 결과 보고 상황”

365) 차풍길이 요시무라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요시무라가 향부흥업에 근무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당시 직원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영사증명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366) 안기부 본부의 네 차례에 걸친 지시(1982.8.16, 1982.8.26, 1982.9.2, 1982.9.14,)에 대해 파견관은 ‘아베 상무, 가가와의 딸(경리사원), 데루이 등에 확인한 바, 요시무라는 향부흥업에 재직사실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조총련 간첩(차풍길)사건 대일 지시 및 결과 보고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8.17 회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가와후미오(24.1.5생)에 대하여 공안에 확인결과 일본인으로 확인, 동인은 오오다꾸 하나다 5-30에 취적, 오오다꾸 히기시고지야쵸 6-7-6거주다가 78.5.8 오오다꾸 미나미마고베 6-7-10 거주 중, 78.5.11 일본인으로 취적확인 소송에 의해 취적된 자로 공부상 특이사항 미발견(공안당국 회보), 동인에 대한 신원동향 등 주변인물을 통해 내탐중에 있으므로 추보위계
82.8.12 지시전문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신원내사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호연(李浩然) 70세, (전 조총련 체육협회장)에 대한 신원사항 - 동인의 자 이 모는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지도원으로 고베고교(주) 종업원 차풍길(38세)을 포섭 공작, 국내침투 시킨 바 차풍길 연행조사중임으로 위 사항 긴급내사보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8.17 회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호연(1906.6.1)은 경남 밀양군 밀양읍 내1동 추신 동경도 오오다꾸 훈마고비 2-18-14 거주중 - 활동 경력(49.6 일고당 아지지 인위원회 구성원, 49.9 조총련 아아지현 본부위원장...68.10 조총련 체련회장, 71.2 조총련 체련고문, 75 조총련 체련회장, 78 조총련 체련고문 등 가족사항 추보) ○ 82.8.18 회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호연 외국인 등록상 이건희, 처 김혜옥 59세, 장남 이재혁(李在赫), 33세(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초청 오오다꾸 부위원장 등 활동타가 현재 오오다꾸 신노우에서 일본인 처 우시다찌 이어고와 다방 경영중)
82.8.12 지시전문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신원내사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총련 간첩형의자 차풍길의 재일숙부 차상열(조총련 열성맹원) 62세와 가족 등 신원성분 및 조총련 활동사항, 기타 수사상 참고자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8.18 회신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총련 동경 오오다꾸 열성맹원이나 동 간부 역임사실 발견할 수 없음(공안당국 회보) - 일본통명 '야스다 간에에'(직업 : 철근 수집업)
82.8.16 지시전문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신원확인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베고교(주)에서 76.6-76.12간 쓰레기수거차 운전수로 재직 한 '요시무라'(조총련 공작원으로 가명일 가능성 농후)의 신원사항 확인보고 - 본건과 관련 지시한 긴급신원확인 지시, 긴급 신원내사지시(1982.8.9), 긴급 신원내사지시(1982.8.12) 등은 본부에서 조총련 간첩형의자로 조사중인 사안임으로 지급 결과보고 바람, 첨부 : 항부흥업(주) 약도 1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8.20 회신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열 가족사항 처 최복자와 2남3녀 전부 조총련계 - 고베고교(주) 아베상무(10년 근속) 및 동사 가가와 경리사원(여)(사장말-현처 전남편 소생) 등을 통해 확인한 바, 78.10-79.4간 차풍길(한국인)이 동사 재직사실 있으나 '요시무라'는 재직사실 없다 함, 동 가가와 경리사원 협조로 78년도 10,11,12월 79년 1,2,3,4월 등 임금지급명세 확인, 동 가가와 여사원은 부 가가와 사장은 순수한 일본인으로 한국인 또는 일본 귀화자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함 ○ 82.8.31 회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가와 사장에 대해 재차 공안당국에 확인한 바 78.5.11 취적확인 소송에 의거 일본인으로 취적, 한국이었다는 자로 발견되지 않음, 주변인물 통해 내사가 요하니 파견관이 차판열 접촉할 수 있도록 차풍길이 부 차판열 앞으로 서신작성 하달과 기타 접촉 가능 인물 하달 건의
82.8.19 지시전문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사실조사 지시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차풍길 사건 관련 첨부내용의 증거자료 수집 지시하니 긴급 결과보고할 것 ○ 추후 본건에 대한 영사증명을 일괄 작성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것

		<p>첨 부 : 조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풍길 2차 도일시 76.6 고베고교(주) 쓰레기 수거 잡부 취업중, 동년 8월경 조총련 공작지도원 '요시무라' 33세(이호연 자 이재혁)에게 포섭, 지령받고 국내 잠입 활동, 3차 도일시도 동사에 종사하며 계속 '요시무라'와 접선, 국가기밀을 보고 누설하는 등 간첩활동한 자인 바 (1) 기히 지시한 고보 가가와사장의 신원성분 및 인물사진, 조총련 대남공작조직과의 관련여부, 동 가가와 사장은 제주출신으로 조총련에 활동타 일본인으로 귀화했으므로 조총련 활동 연계사실 입증시킬 것 (2) 고베고교(주) 전경 사진촬영(전경, 필름 송부) (3) 차풍길의 취업은 부 차판열 주선으로 부 차판열이 친구 고베고교(주) 의무담당인 '아베' 66세에게 부탁, 동사에 취업하였다는 바 ①차풍길 고베 취업경위, ②동사 가가와 사장 신원성분, ③조총련 여부 등 진술서 징구 (4) 재일숙부 차삼열(62)은 조총련계 인물인바 동인의 신원사항, 사상성분, 조총련 활동상황 및 주거지 사진 (5) 본 첩보출처(조총련 오오따 지부 첩망)에 의하면,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공작원 이모(전 조총련 체육회장 이호연의 자)가 차풍길을 포섭공작 추진 성공사실 발설, 동 '요시무라'와 이재혁과는 동일인물 여부 및 이재혁 인물사진 입수 송부 (6) 76.8-76.12.30간 고베고교(주) 제작한 '요시무라' 등 운전수 3명 가량 신원사항 (7) 차풍길은 76.9 이후 '요시무라'의 안내로 '요코하마'항을 관광시 동소에 정박중인 만경봉호 승선 및 입북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76.9-76.12간 만경봉호 요코하마항 출입항 상황 (8) 차풍길이 '요시무라' 회합한 장소, 오오다구 가마다 전철역 건너편 2층 커피숍, 빠찌고 점 등의 내외부 사진, 약도, 상호, 소재지 (9) 차풍길 환영회식 후 '요시무라' 등 전 사원 10여명은 귀가하고 가가와 사장이 별도로 화대를 지불하고 여자관계를 주선해 준 투숙했던 호텔은 가마다 역전에서 약 700미터 상거한 명미상 8층 호텔의 전경사진, 위치, 소재지, 호텔명 등 확인(별첨 약도 참조)
	결과	
82.8.26 지시전문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긴급 신원성분 조회지시 o 조총련간첩으로 조사중인 차풍길의 재일 상부선인 가가와후미오에 대하여 주재국 기관상대로 조총련 및 제주도 출신 여부 등 확인보고 - 가가와 사장은 과거 리어카 끌며 고철 수집 자수성가한 자로 제주도 출신이라 하며, 고베(주) 경리 여사원 가가와(약 27세) 현 일본인 처가 데리고 온 딸로 동처가 고베(주) 설립시 자본금 50%투자 설 - 고베(주) 소재지, 구성원 등(반장 데라이, 외무 아베, 운전수 요시무라 35세 가량 등) - 위 데라이 반장이 76.6-12.12간 같이 작업시 차풍길에게 전일 한뜨로부터 득문했는데 가가와 사장은 제주도 출신으로 한국인임에도 신분을 숨기고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언급 - 차풍길이 2차 도일 4촌자형 서막등가 방문, 동석 음주시 그로부터 가가와 사장은 제주도 출신이며 조총련(아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득문(당시 4촌 차기순 동 사실 같이 득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82.9.15 회신보고 데라이(이와데켄 하나마기시 거주)를 통해 확인한 바 - 가가와 사장은 순수한 일본사람이다, 차풍길에게 사장이 한국 또는 조선인이었다고 말한바 없다. 어디서 한국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당시 종업원 중 외국인인 차판열 부자뿐이었다. - 차판열은 성묘단으로 참가하는 실제 차삼열과 동반자 차기순과 같이 9.23 12:30 칼 703편 입국 예정

결국 당시 파견관은 가가와가 제주 출신 조총련 열성맹원이라는 점과 요시무라가 향부흥업에 재직한 점 그리고 요시무라와 이재혁이 동일인물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³⁶⁷⁾, 오히려 가가와는 “일본 사람”이고 요시무라는 향부흥업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영사증명 내용과 거의 동일한 첨부확인서(영사증명 양식)’를 첨부해 파견관에게 “첨부확인서(견본) 내용과 같이 영사증명을 작성 송부”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당시 확인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영사증명서가 작성된 것이다³⁶⁸⁾. 관련 전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p>▲ 전보(1982.8.31)</p> <p>1. 대호 가가와 후미오에 대해 재차 공안당국에 확인하였으나 78.5.11 취적 확인 소송에 의하여 일본인으로 취적된 자료 취적경위 및 자료상 일체 하자 없었고 동인이 한국인이었다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함</p> <p>▲ 긴급조사보고(1982.9.11)</p> <p>3. 차판열이 아베 및 고베공업 종사원들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76년 당시 고베공업 종업원은 사장, 딸, 아베, 차판열, 차풍길, 데루이 ... 등이 있었으나 차판열 부자를 제외한 자들은 전부 일본인... 요시무라라는 사람은 동사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임</p> <p>4. 차기순은 차풍길로부터 가가와 사장이 친절하게 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남편 서막동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가와가 제주출신 한국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함</p> <p>5. 차판열은 ... 아베에게 재차 확인한바 가가와 사장은 순수한 일본 사람...</p> <p>6. 9.9 차판열이 가가와 사장에게 본격지 등 고향을 재차 문의한바 나는 순수한 일본사람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 대사관예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등 일응 항의 의사를 표시...</p> <p>7. 가가와 주변인물 및 민단 협조자 등을 통하여 가가와와 요시무라에 대한 신원사항을 내담하였으나 지실자 전무한 실정...</p> <p>▲ 영사증명 및 홍보자료 입수지시(1982.9.20)</p> <p>1. ... 차풍길에 대하여 첨부확인서(견본) 내용과 같이 영사증명을 작성 송부...</p> <p>【확인서】</p>

367)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의 ‘요시무라와 이재혁의 동일인 여부’ 부분 참조

368) 당시 영사증명서를 작성한 박OO은 안기부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안기부는 박OO에게 1982.8.19 이미 ‘추후 본건에 대한 영사증명 일관작성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사증명 작성 지시에 대해 동인이 지시중, 2항 다의 (2)항 중 협조자인 조총련 오오다지부 정치부 공작원과 업무협의를, 동 내용과 동(3)항 중 협조자에 의해 확인제보된 사실 등 내용이 있는 바 동 내용이 영사증명에 포함될시 추후 이에 협조자의 자필진술서 징구가 요구되어 질 수 있고 이 경우 대처방안이 없는바 이에 대한 본부의견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 문의에 회답하면서 “82.9.30 문의한 (2)(3)항에 대하여는 이후 자필진술서 요구, 재문의, 재확인, 등 일체의 요구사항 없으므로 불필요한 기우하지 말고 (1982.9.20) 내용대로 확인 10.5 한 보고할 것”이라고 다시 지시했다. “긴급 사실조사 지시(1982.8.19)”, “영사증명 및 홍보자료 입수지시(1982.9.20)”, “의견문의 회답(날짜미상)”

나. 피의자 차풍길이 종사하였다는 “고오베고교 가부시키 가이사”

(4) 대표자 신원

- 성명 : “가가와 후미오”(香川文夫) 58세
- 신원성분 : 일본인으로서 이례적으로 취적확인 소송에 의하여 취적한 자로서 본인은 한국인임을 부인, 은폐하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제주도 출신 한국인으로서 일본인 처와 결혼, 일본에 귀화하였으며, 귀화 전 조총련에서 활동하였다고 알려져 있음

다. 피의자의 상부선 “요시무라”에 대하여

(1) 인적사항

- 성명 : 이재혁(李在赫) 33세(1949.3.24생)
- 일본통명 : “요시무라”(吉村)

(2) 신원성분 및 활동상황

- 본명은 “조청”(조선청년공맹 “오오따(大田)지부 위원장,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등으로 대남공작활동을 자행하면서... 도오교도 오오다꾸 지역을 사업지로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당관에 협조하고 있는 조총련 ... 공작원과의 업무협의시 차풍길에 대한 공작사업 성과 과시...

(3) “고베고교(주)” 취업사실

- 본명이 76.8경 “고오베고교(주)”에 “요시무라”라는 가명으로 운전수로 취업, 약 4개월간에 걸쳐 피의자 차풍길의 포섭공작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당관에 협조하고 있는 위 공작원에 의해 확인, 제보된 사실이나, 동사사장 “가가와 후미오”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요시무라”의 취업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

즉 재판에 증거로 제시된 ‘영사증명’의 내용은 영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에 의해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증명’해 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주체였던 안기부의 요구대로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영사증명’이 형사처벌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다른 증거인 요시무라로부터 받았다는 라이타, 수진, 비누 등도 각각 라이타 공장 직원과 차기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풍길이 자신과 함께 라이타를 받았다고 진술한 데루이는 차풍길의 변호인 설동훈을 통해 ‘소화53년(1978년) 11월(정확한 월일은 기억치 못함)경 라이타 공장에서 폐기물의 처리 작업을 종료한 후 그 라이타 공장의 회사원으로부터 본인과 안전풍길씨에게 불용이된 만년필과 라이타를 1개씩 받았습시다’라는 내용의 공증 받은 진술서를 제출했다.³⁶⁹⁾

비누와 수건에 대해, 차기순은 진실위 면담에서 ‘일본에 있을 때 남편(서막동)이 철강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어서 비누·수건 같은 선물이 많이 들어 왔으며, 자주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차풍길이 한국에 귀국할 즈음에도 몇 번인가 비누·수건을 주었고 수건에는 회사이름 같은 것이 인쇄돼 있었다’고 진술했다³⁷⁰). 안기부가 작성한 날짜미상의 차풍길 진술서³⁷¹)에 “타올(무슨 회사 상호가 진곤색으로 쓰여 있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차기순 진술의 설득력을 높여 준다. 더구나 당시 안기부가 파견관에게 ‘차기순의 입국을 저지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비누와 수건을 요시무라로부터 받았다’는 안기부의 수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로 인해 차풍길의 변호인이었던 임태선은 증인들로부터 ‘사정에 의해 출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³⁷²).

한편 차풍길이 요시무라로부터 ‘만경봉호의 원거리 관광을 받고 포섭’되었다는 혐의사실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당시 안기부는 1982.8.19 ‘긴급 사실조사 지시’를 통해 ‘1976.9 이후 요시무라의 안내로 만경봉호가 정박 중이던 요꼬하마항을 관광하던 중 선박 승선 및 입북권유를 받았다고 하는 바, 1976.9 이후 동년 12월말 까지 만경봉호의 입출항 상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³⁷³). 이에 대해 파견관은 1982.9.17 ‘1976.6.17-6.21과 1976.11.25-11.30 2회 입항’

369) 차풍길의 변호인 설동훈이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1983.8.10)” 참조

370) 이와 관련된 당시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 보고에 따르면, 차기순은 차풍길에게 ‘수건과 비누를 사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고가 안기부 본부의 ‘차기순 입국 저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후 차기순은 차풍길의 변호인이었던 임태선의 증인출석 신청을 ‘사정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고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보고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 ‘사준 기억이 없다’는 것이지만, 위에 제시된 다른 진술이나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이 판단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전문 : 간첩차풍길 연고자 차기순 입국저지 지시)

371) “진술서 2회(날짜미상)”

372)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1983.2.14, 변호인 임태선)” 참조

373) “긴급사실조사지시(1982.8.19)”

했다고 보고했다³⁷⁴). 이런 사실은 “처음엔 9월말로 했다가 나중에 11월말로 했으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불러주는 대로만 적으면 된다고 했으나,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여 보니까 만경봉호가 11월말에 입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쳤다는 것이었다”는 차풍길의 주장³⁷⁵)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파견관이 관련내용을 보고(1982.9.17)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면서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문서인 차풍길의 자술서(1982.8.16)에는 만경봉호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날짜는 기재돼 있지 않다. 반면 1982.9.17 이후에 작성된 문서들에는 ‘11월말’에 만경봉호에 대한 원거리 관람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³⁷⁶). 게다가 “원거리 관람”이 포섭의 방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풍길이 요시무라로부터 교양을 받았다는 책자와 화보에 관련된 내용은 수사관이 안기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차풍길에게 보여 주면서 진술로서 확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다. 또 차풍길의 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은 실질적으로 차풍길의 간첩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증거는 사실과 다르거나 간첩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다. 또한 안기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간첩사건’에서 보여 지는 포섭방법 및 연락체계와 관련된 양태도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안기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적 권한도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차풍길이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되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나 진술은 없다고 할 것이다.

374) “전보(1982.9.17)”

375) “항소이유서(1982.5.24)” 참조

376) 남아 있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차풍길이 연행(1982.8.7)된 이후 OO호텔에 수용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OO호텔에 수용된 것이 아니라 안기부 조사실에 곧바로 수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가 안기부에 임의동행(1982.9.27)된 62일 동안 작성된 차풍길의 진술서는 “조총련 간첩 피의자 역용공작 가능성 검토보고(1982.9.25)”에 첨부된 8회의 자술서가 전부다. 따라서 안기부의 수사보고서 이외에 차풍길이 직접 작성한 대부분의 진술서 및 신문조서는 1982.9.2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남아 있다.

바) 소 결

차풍길이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이재혁³⁷⁷⁾’에게 포섭돼 간첩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와 진술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안기부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가가와가 조총련 열성맹원으로 요시무라의 차풍길 포섭공작을 지원했다는 사실과 차풍길이 향부흥업에서 만난 요시무라와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이재혁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동시에 요시무라의 차풍길 포섭과정이 ‘간첩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양태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도 가가와는 일본공안당국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으로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요시무라와 이재혁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은 신빙성 있는 증거나 진술로서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차풍길의 포섭과정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간첩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양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강요되었다는 차풍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들이 안기부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안기부가 증거로 제출한 영사증명과 가스 라이타, 수건, 비누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되었다는 점은 증거의 조작은 물론, 이와 같이 조작되고 왜곡되는 과정에서 차풍길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은 66일간의 불법구금과 접견권제한 등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앞서 보았듯이 차풍길의 진술서에 심각한 사실 왜곡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 진다.

실제로 가스 라이타, 수건, 비누 등은 요시무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각각 폐기물수거를 위해 갔던 가스 라이타 공장의 직원과 차기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영사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파견관을 통해 일본

377) 이재혁은 2003.4.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취적허가’ 결정을 받았다.

공안당국으로부터 ‘가가와가 일본인으로 특이사항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혁과 요시무라의 동일인 여부’는 확인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본부의 지시’에 따라 ‘가가와는 제주출신 조총련 열성 맹원’ 그리고 ‘이재혁은 향부흥업에 취업해 4개월 동안 차풍길 포섭공작을 추진했다’라는 확인된 사실과 반대의 내용으로 ‘영사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해외관련 간첩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사증명’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가가와가 일본인으로 확인됨으로써 요시무라가 가가와의 도움을 받아 향부흥업을 거점으로 차풍길을 포섭했다는 안기부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또 차풍길이 향부흥업에서 만난 요시무라가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이재혁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차풍길이 요시무라에게 포섭되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차풍길이 조총련 공무원에게 포섭되어 간첩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2) 차풍길의 간첩행위 여부

가) 문제제기

안기부 수사내용에 따르면, 차풍길은 1976.12 요시무라의 지령을 수수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요시무라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197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발간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서 ‘팀스피리트 78’과 관련된 기사 등 모두 3건의 기사를 편지지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1978.9.29 3차 도일하여 요시무라에게 보고하고 귀국 직전인 1979.3 요시무라와 회합한 자리에서 간첩지령을 받고 귀국한 후, 동년 4.1 고향 친목모임인 ‘자양회’ 모임에 참석하여 ‘조총련을 찬양하는 발언³⁷⁸⁾’을 했다는 것이다.

378) 법원은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반공법(법률제643호, 제1412호) 제4조 1항 전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1979.6.24부터 1981.11경까지 주한미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두천으로 이사하여 주한 미2사단의 정보와 ‘YH 여자 근로자 농성’ 등 2건의 신문기사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간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풍길은 오규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잘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 조총련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³⁷⁹⁾, 만일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당시 ‘자양회’ 모임에 참석했던 장성경찰서 정보과 형사 임형택에 의해 연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⁸⁰⁾. 또한 신문내용은 안기부 수사관이 주면서 외우라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³⁸¹⁾.

이와 같은 사실은 1976.12 차풍길이 요시무라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수행한 지속적인 간첩활동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나) 조총련 찬양 발언 여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차풍길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자백과 1979.4 자양회 모임에 참석했던 오OO, 박OO, 김OO, 박OO, 김OO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5명은 모두 안기부와 검찰에서 차풍길이 오OO의 질문에 ‘조총련을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고, 김OO을 제외한 4명은 1심 3차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조총련은 나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진실위 조사에서 밝힌 위 5명의 진술내용은 안기부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상당부분 다를 뿐만 아니라, 진술이 강요된 측면도 확인된다.

379) “1심2차 공판조서(1983.1.10)” 참조

380) “상고이유서(1983.9.30)” 참조

381) “항소이유서(1983.5.24)” ; “상고이유서(1983.9.30)” 참조

처음 광주안기부 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오OO을 제외한 위 4명은 1979.4 자양회 모임시 차풍길의 조총련 찬양발언 사실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자 안기부 수사관은 차풍길이 동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며 차풍길이 그런 자양회 모임 좌석 배치도를 보여 주는 한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도 말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4명은 ‘본인(차풍길)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럴 것이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차풍길에게 ‘조총련이 TV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무섭고 나쁘냐’고 질문했던 오OO은 당시 모임에 여러 명의 공직자와 대공·정보 경찰관이 참석하고 있던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질문에 차풍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고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위 5명은 당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안기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수 시간 동안 어둡고 밀폐된 안기부 수사실에 고립된 채 방치되어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시 수사받던 상황에 대해 말했다. 안기부 수사관으로부터 “워어야 겠다. 손 좀 봐줘야 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박OO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 한다.

김OO은 면담에서 ‘당시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협박, 위협,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본인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차풍길에게 부탁해 사온 카세트라디오도 죄가 되는 줄 알고 이실직고했더니 수사관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오OO은 면담에서 ‘안기부 조사를 받을 당시 협박이나 가혹행위는 없었고 장성군청 출입 안기부 직원을 만나서 대우도 잘 받았으며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과 관련해 주문 받은 일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OO은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진술 강요나 협박 또는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위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OO을 제외한 위 4명은 검찰조사 과정에 대해, 안기부 수사관의 안내로 서울에 올라가 숙식을 제공받고 검찰조사에 참여했으며, 검찰조사에서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차풍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럴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또한 박00은 도착한 당일 안기부 수사관으로부터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내용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당시 재판과정에서도 확인됐었다. 실제로 오00은 변호인의 신문에 “그 당시는 조총련을 찬양하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고, 박00도 변호인 신문에서 “차풍길이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대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차풍길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적극성과 목적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던 것이다³⁸²⁾.

나아가, 전00은 박00, 김00, 김00 등이 차풍길의 조총련 찬양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박00과 김00 등은 수사관이 차풍길의 자백진술서를 보여 주며 ‘못 들었느냐’고 반문하여 ‘본인이 자백했다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박00, 김00 등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³⁸³⁾. 이것은 현재의 진술과도 꼭 일치한다.

당시 1심 3차 공판(1983.1.24)을 앞두고 안기부가 작성한 「간첩 차풍길 공판 예정 보고」(1983.1.22)에 조치의견으로 ‘증인 4명(오00외 3명)은 1983.1.23 사전 접촉, 회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뒤받침 한다³⁸⁴⁾.

결과적으로, 차풍길이 1979.4 자양회 모임에 참석하여 ‘조총련 찬양 발언’을 했다는 범죄사실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안기부의 수사과정에서 왜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범죄사실을 증언했던 위 5명은 안기부에 대한 공포감과 수 시간동안 어둡고 밀폐된 수사실에 고립되었다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실제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차풍길이 자백했다’는 안기부수사관의 말을 듣고 ‘차풍길이

382) “1심3차 공판조서(1983.1.24)” 참조

383) 앞의 문서 참조

384) 안기부 「간첩 차풍길 공판 예정 보고」(1983.1.22)

자백했다면 그럴 것'이라며 '조건을 달아 소극적으로 진술'했을 뿐이다. 그런데, 안기부는 이들의 진술을 기억과 경험에 의한 사실인양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조서에 기재하고, 나아가 검찰조사에 임하는 이들에게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대로만 하면 된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다) 국가기밀 탐지·수집·보고 여부

안기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차풍길이 1976.12 요시무라로부터 '남한 제반 정세를 탐지·수집하여 다음 도일시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김정신의 집에서 '1978년도의 경제지표(한국일보, 1978.1.26)'와 '대졸 초임 17만원(한국일보, 1978.24)'이라는 기사를 그리고 박OO의 집에서 '팀스피리트78(경향신문, 1978.2.15)'이라는 기사를 수집하여 편지지에 옮겨 적은 후, 1978.10 초순 향부흥업에서 요시무라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979.6.24부터 1981.11경까지 동두천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YH 여자 근로자 농성(한국일보, 1979.8.12)'과 '사북탄광 광부 3,500여명 집단난동(경향신문, 1980.4.24)'이라는 기사를 그리고 양복점 인근 주한미2사단의 규모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다음 도일시 요시무라에게 보고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차풍길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안기부 수사관이 장성에 조사를 다녀와서 하는 말이 김OO은 한국일보를 구독한 사실이 없으며, 박OO도 신문 구독한 일이 없는데 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경향신문을 구독하던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확인서를 받아 왔다고 확인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면서 "신문내용도 신문복사한 것을 주면서 외우라고 했다"고 했다³⁸⁵⁾. 또한 "수사관이 YH사건과 사북탄좌사건을 신문에서 보았느냐고 물어 자세히 이야기 못하니 신문사에서 신문을 복사해 와서 외우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미군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주변에 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약도는 조사해 와서 보고 그린 것이고, 훈련상황은 파견된 정보과 직원으로부터 알았다며 외우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⁸⁶⁾.

385) "항소이유서(1983.5.24)" 참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날짜미상의 안기부 존안 차풍길의 진술서 및 보고서는 눈길을 끈다. ‘차풍길 진술(요지)’에는 모두 신문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78.3에 김OO의 집이 아니라 박OO의 ‘신신오토바이상회’에서 신문을 본 것으로 기록돼 있다³⁸⁷). 이것은 ‘진술서 2회’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³⁸⁸). 그러나 또 다른 ‘진술서2회’에서는 1978.3 신문을 보았다는 장소가 ‘박OO의 신신오토바이센터’에서 ‘신신세탁소’로 변경되었다³⁸⁹). 또한 ‘조총련 연계 혐의자 차풍길 관련자 첩보보고(1982.8.25)’에는 박OO이 “신신오토바이상회 내에서 본명(박OO)이 구독하던 경향신문 중에서 노사문제, 팀스피리트 작전 상황 등이 기재된 신문을 지참하고 집으로 가서 동 내용을 메모하여 제일 조총련 공작원 요시무라에게 제공하였다함”이라고 기재돼 있다³⁹⁰). 이것은 안기부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차풍길이 신문을 가져가는 것을 박OO이 보았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을 메모하여 조총련 공작원에게 제공한 사실까지 아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로 안기부가 차풍길의 자유로운 진술에 의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참고인 오OO 등을 회유할 계획을 세웠다는 「간첩 차풍길 공판 예정 보고」(1983.1.22) 내용 등을 고려하면³⁹¹), 오히려 차풍길의 주장대로 ‘신문을 보여 주고 여기에 맞춰 결론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차풍길이 1979.6.24부터 동두천으로 이사한 목적이 ‘주한미군관련

386) “항소이유서(1983.5.24)” ; “상고이유서(1983.9.30)” 참조

387) “차풍길 진술 요지(날짜미상)”

388) “진술서 2회(날짜미상)”

389) “진술서 2회(날짜미상)”

390) 안기부, 「조총련 연계 혐의자 차풍길 관련자 첩보보고」(1982.8.25)

391) 이와 같은 사실은 1983.1.10 작성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기부는 ‘검찰 측 증인 박OO, 김OO, 오OO, 박OO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협의, 사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간첩 차풍길 공판상황 보고”

정보를 탐지·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만한 증거도 없다. 동시에, 차풍길의 동서였던 이OO으로부터 동두천의 양복점을 인수할 것을 제안 받으면서 기술을 제공했다는 차풍길과 이학용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주장³⁹²⁾에 대해서는 이를 반증할 증거 또는 진술이 없다.

게다가 안기부 수사기록으로 보더라도 도일할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지·수집한 주한미군관련 정보와 신문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1978년의 경우처럼 신문내용을 발췌하여 옮겨 적었다는 진술도 없다. 더욱이 차풍길이 자술서에서 적고 있듯이 '도일 후 요시무라를 만날지 확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차풍길이 진정으로 요시무라의 지령대로 '남한 제반정세에 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했다면, 귀국하여 다시 도일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했어야 자연스런 일이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때 간첩행위의 지속성과 목적성도 증명된다 할 것이다. 요시무라가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7개월 내지 10개월 이전의 신문기사'가 국가기밀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기부의 수사결과처럼 1976.12부터 1978.9까지 사이에 그것도 3건의 신문기사만을 굳이 발췌까지 하면서 옮겨 적어 보고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차풍길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신문을 본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권리이고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신문을 탐독했다는 증거가 없고 중대한 사실오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언제 전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문 기사를 옮겨 적어 보고 한다는 것은 당시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과 일본의 주요 도서관들에 한국신문들이 비치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차풍길이 요시무라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할 수 없다. 위 안기부 문서들에서 일부

392) "2심2차 공판조서(1983.6.29)" ; "항소이유서(1983.5.24)" ; "상고이유서(1983.9.30)" 참조

확인되는 것처럼 각각의 범죄사실들이 안기부의 의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점은 실제로 차풍길의 주장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들이다.

라) 소 결

차풍길이 요시무라의 지령을 받고 ‘조총련을 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했다는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 반면, 이와 관련된 차풍길의 주장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따라서 차풍길이 요시무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조총련 찬양발언’과 관련하여 참고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차풍길이 인정했다’고 말해 주거나, ‘다른 참고인 또는 차풍길의 진술서’를 보여 주면서 관련내용을 인정할 것을 종용했다. 또한, ‘차풍길이 인정했다면 그럴 것이다’라는 소극적 진술을 ‘차풍길이 조총련 찬양발언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기록했다. 나아가, 검찰에 조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안기부에서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함으로써 참고인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음은 물론 사실을 왜곡·과장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한편,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관련해서도, 당시 안기부는 차풍길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자백’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진술의 임의성 문제’로서 피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수사과정을 고려할 때,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차풍길을 연행하고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풍길이 구독했다는 신문과 장소에 대한 수사내용이 불일치했고, 박OO이 ‘차풍길이 신문내용을 옮겨 적어 요시무라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오히려 수사내용이 짜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요시무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도일 또는 도일을 준비하기까지 9개월 또는 28개월의 시간 동안 ‘요시무라를 만날 확신’도 없이, 각각 3건의 신문기사 그리고 2건의 신문 기사를 탐지·수집했다는 것이 간첩행위에 대한 차풍길의 목적성과 적극성을 증명할 수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

3) 불법수사 여부

가) 문제제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위법성은 수사결과의 신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우리 법률체계는 피의자의 권리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수사결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유까지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의자의 자백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³⁹³⁾.

차풍길의 사건의 경우, 차풍길의 자백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증거다. 다른 간첩사건의 경우는 공범 상호간의 진술을 보강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독 간첩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는 이런 보강 증거도 없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일 뿐, 이외 다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아가 차풍길은 항소·상고이유서에서 자신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불법연행된 후, 66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작성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변호사와 가족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

393) 물론, 형사소송법은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한 채 1심1차 재판 진행 중에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었고, 결국엔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풍길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차풍길의 범죄행위사실 자체에 대한 규명만큼 핵심적인 문제다³⁹⁴).

나) 불법 연행 및 감금 여부

차풍길은 1982.8.7 아침 포목가게로 남자 3-4명이 찾아와 ‘양복집 세무관계로 의정부 세무서로 가자’는 말을 듣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져 안기부 남산 지하실로 끌려간 후, 영장이 발부된 1982.10.12까지 66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았고 ‘높은 분을 만나러 간다’며 어느 날 3-4시간 정도 OO호텔에 간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³⁹⁵)

그러나 당시 안기부가 검찰에 송치한 수사자료에 의하면, 1982.8.7 차풍길을 안기부의 안가 OO호텔에 임의동행하여 ‘역용공작여건을 문초’

394) 이와 관련해 당시 5공화국 헌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95) OO호텔은 조사내용을 가지고 10여일에 걸쳐 이 수사관과 손OO 수사관 두 분에게 일문 일답을 연습한 후 높은 분과 면담하자고 하여 따라간 곳이었고 그 곳에서 각본대로 일문일답 과정을 촬영했다고 차풍길은 주장해 왔다. “항소이유서(1982.5.24)” ; “· 상고 이유서(1983.9.30)” ; “차풍길 면담결과 보고서” ; “1심2차 공판조서” 참조

하고자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용가치가 없다고 판단³⁹⁶⁾하여 1982.9.27 위 장소에서 안기부로 임의동행했다고 기록돼 있다³⁹⁷⁾. 말하자면, 차풍길을 임의동행하여 안기부 조사실이 아닌 OO호텔이라는 중립적인 공간에서 차풍길의 동의 하에 역용공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차풍길이 위 장소에 머물고 있던 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로 당시 안기부가 차풍길을 OO호텔에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당시 안기부는 1982.6 이미 차풍길에 대한 수사계획을 작성하면서 차풍길을 ‘조사실’에 조사할 의사가 있었으며³⁹⁸⁾, 실제로 차풍길이 연행된 1982.8.7부터 동월 16일까지 ‘조사실’에서 조사할 추가 수사계획도 있었다³⁹⁹⁾. 나아가, 1982.9에 작성된 ‘조총련간첩 추가 수사 계획 보고(1982.6)⁴⁰⁰⁾’에 따르면 안기부는 실제로 ‘1982.7부터 8.16까지(1차), 1982.8.17부터 9.18까지(2차), 1982.9.19부터 10.12까지(3차)’ 모두 3차에 걸쳐 ‘조사실’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물론, 한편으로 당시 안기부가 차풍길을 활용하여 역용공작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당시 안기부가 작성한 대부

396) ‘조총련 간첩 피의자 역용공작 가능성 검토 보고(82.9.25)’에 따르면, 역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자 차풍길은 조총련 동경본부 대남공작조직과 연계, 활동 중에 있는 자로서 상부 선과는 단선연계조직임이 확인”되었으며, “대상자 포섭을 위한 후색 거점인 향부홍업의 경영주 향천문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현재까지 입국사실 없으므로 차후 국내 입국동향 등 감시가 요망”될 뿐, “여타 관련 대상공작조직에 관한 첩보 유출되지 않는다”면서, “대상자는 극도의 현실불만과 체제 비판에서 비롯된 북괴 동경자로서 변절의 우려가 다분하고 사상전향의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며, 대상자 접촉 기간 중 대상자 가족과 재일부의 전화 연락을 통해 본건 조사상황이 전달되어 보안 노출로 역용가치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대상자에 대한 역용공작 가치 없고 대상자의 사상성향이 극히 불온하므로 차후 사회적 위해도를 감안하여 의법처리함이 가하겠습시다”라는 내용의 조치의견을 보고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총련 간첩 피의자 역용공작 가능성 검토 보고(82.9.25)” 참조

397) 안기부, 「조총련 간첩 피의자 역용공작 가능성 검토 보고」(1982.9.25) ; 「동행보고」(1982.9.27) 참조

398) 안기부, 「조총련 연계 혐의자 수사계획 보고」(1982.6)

399) 안기부, 「조총련 연계 혐의자 추가 수사계획 보고」(1982.8)

400) 안기부, 「조총련간첩 추가 수사계획 보고」

분의 수사계획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고 ‘의법 처리함’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⁴⁰¹⁾, 1982.6에 작성된 수사계획서에 ‘역용여부 검토 후 별도 계획 수립 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차풍길의 자술서에서 ‘역용공작 수행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⁴⁰²⁾.

그러나 차풍길이 연행과 조사에 동의한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과 1982년경 안기부 대공수사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에 굳이 비추어 보지 않더라도, ‘역용공작’을 위해 차풍길을 연행하여 조사했다는 목적과 행위가 법률로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에 반하여 불법연행과 불법구금을 범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⁴⁰³⁾.

결국 안기부는 차풍길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연행하여 위와 같은 수사계획에 따라 66일간 동안 안기부 수사국 조사실에 불법구금한 채 수사한 후, 1982.10.12 구속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차풍길은 위에서 밝혔듯이 66일 동안 안기부 수사국 조사실에 불법구금된 채 조사받았고 1982.10.12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안기부 조사실에 있던 66일 동안 차풍길은 안기부 수사관이 제시해 주는 내용들을 외우고 쓰라고 하여 수회의 자술서 등을 썼다고 주장

401) 안기부, 「조총련 연계 혐의자 수사변경 보고」(1982.7), 「조총련 연계 혐의자 차풍길 수사계획 보고」(1982.8), 「조총련 연계 혐의자 추가 수사계획 보고」(1982.8), 「조총련 연계 혐의자 추가 수사계획 보고」(1982.8), 「조총련 간첩 추가 수사계획 보고」(1982.9)

402) 물론 이와 같은 자술서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작성되었는가에 따라 그 임의성이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역용공작 가능성 검토’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차풍길 자술서 1회부터 8회(8.9-9.24)” ; “조총련 연계 혐의자 수사계획 보고(1982.6)”

403) 이와 관련해 당시 담당 수사관 성00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서 “당시 수사관 임의동행으로 차풍길을 연행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하였으며, 66여 일이 경과된 것은 현재 시각에서 보면 불법구금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는 관행이었다”고 진술했다.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7, pp699-700.

했다⁴⁰⁴). 또 구치소에서 실시된 검찰의 1차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구치소에 안기부 수사관이 찾아와 구타와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검찰의 2차 조사부터는 안기부 조사내용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⁴⁰⁵).

이에 대해서는 차풍길의 항소·상고 이유서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진실위 면담에서도 이와 일치된 진술을 했다. 안기부에 연행되자마자 7-8명의 수사관으로부터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해 정신을 잃었으며, 벗은 상태로 나이론 줄로 몸과 손을 묶어 놓고 계속해서 물을 먹이는 등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면 모진 매질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는 ‘허위진술을 해서라도 살아 나가서 법에 호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재하는 등 차풍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1차 검찰 조사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자 안기부직원이 찾아와 ‘특사가 있다면 우선권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향부흥업에서 받은 월급을 몰수하겠다’ 그리고 ‘부모와 처 그리고 자식들을 혼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고, 교도관이 안내한 지하실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작성된 차풍길의 신분장 기재내용은 안기부 수사관이 차풍길을 구치소로 찾아와 검찰조사에서 안기부 조사내용을 시인하라며 구타와 협박을 가했을 높은 가능성을 확인해 준다⁴⁰⁶).

이OO 검사가 조사를 시작한 1982.10.19(1차)과 2차 검찰의 조사가 있었던 1982.11.2 사이에, 안기부 수사관 이OO 외 1명이 2차례에 걸쳐(1982.10.29, 11.1) 구치소로 차풍길을 찾아와 “검사에게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말하도록 설득”했고, “요시무라와의 관계를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검사에게 얘기하도록 설득”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404) “1심2차 공판조서” ; “2심 1차 공판조서” 참조

405) “1심2차 공판조서” 참조

406) 실제로 차풍길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1982.10.19 1회 조사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2회 조사부터 차풍길이 안기부의 수사내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조사내용도 많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차풍길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 “차풍길 신분장” 참조

있다. 이 외에 11.3도 이00 외 1명의 안기부 수사관은 구치소로 차풍길을 찾아와 “검사조서에 부인하지 말고 안기부 조서대로 얘기하도록 설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설득”을 어느 수준에서 이해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66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설득”은 사전적 의미를 뛰어 넘어 피의자에게 참혹했던 수사과정을 떠올리게 하면서 심각한 심리적 부담과 협박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당시 차풍길의 구체적인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본 보고서의 ‘요시무라의 실체 및 차풍길의 포섭 여부’와 ‘차풍길의 간첩행위 여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증거나 진술들은 대부분 구체성과 신빙성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행사됐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차풍길은 처음 재판부터 최근 진실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공판정 진술, 항소·상고 이유서, 출소 후 사회단체를 통한 진술, 진실위 조사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 겪었던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일치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해 왔다. 여기에 차풍길이 66일 동안 안기부 수사실에 고립된 채 불법구금되어 있었던 사실과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대부분 차풍길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차풍길의 진술 내용과 증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된 점들을 감안한다면, 차풍길이 진술하듯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행사됐을 것으로 보인다⁴⁰⁷⁾.

407) 이와 관련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5조에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형사소송법(1963.12.13) 제309조에는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10조에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라) 접견권 제한 및 증인출석 방해 문제

차풍길은 안기부 수사과정 동안은 물론이고 검찰 송치이후 1심 재판에 이르도록 변호인 접견 및 가족면회를 하지 못하다가 1심 재판 진행 중에 처음 만났으며, 이로 인해 변호인은 변론준비가 어려웠다고 주장해 왔다.⁴⁰⁸⁾

이에 대해 당시 차풍길은 자신의 상고이유서에서 ‘첫 심리가 1982.12.20에 통지가 왔고 피고인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일자에 이르도록 변호사님 접견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심리를 한 저의가 의문이고 연기신청을 하여서야 변호사의 접견을 하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또한 당시 차풍길의 변호인 임태선은 첫 재판 일이었던 1982.12.20 ‘변론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⁴⁰⁹⁾.

위와 같은 내용들은 ‘차풍길 신분장 기재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안기부 수사관 성OO의 ‘접견금지의뢰’에 의해 ‘1982.10.12부터 추후 통보시까지’ 접견이 금지되었으며, 1983.4.1 서울지검 이OO 검사의 ‘접견 금지 해제 통보’가 있는 후부터 접견이 허가 되었다.

한편, 당시 안기부는 파견관에게 ‘간첩 차풍길 연고자 차기순 입국저지 지시’라는 제목의 전문을 보냈다. 당시 차풍길은 자신에게 ‘수건과 비누를 준 것은 요시무라가 아니라 차기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증인인 차기순을 접촉해 ‘귀국시 파견관과 의논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던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후 차풍길의 변호인 임태선은 증인들이 ‘사정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변경을 신청했다⁴¹⁰⁾.

피의자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권리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408) 민주화운동실천가복운동협의회, 2007, “차풍길사건 개요”, 『나는 간첩이 아니다』 참조

409) “변론기일 변경 신청(1982.12.20)” 참조

410) “간첩 차풍길 연고자 차기순 입국저지 지시” 참조

안기부는 ‘접견금지를 의뢰’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1심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이는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차풍길에 대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 중요한 증인을 ‘출석저지’하고자 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수사기관이 무력화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형사처벌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측 중요증인을 출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재판의 중요한 사실오인을 유발케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⁴¹¹⁾.

마) 소 결

안기부는 차풍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연행과 66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풍길이 연행된 1982.8.7부터 안기부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1982.9.27까지는 ‘역용 공작심사’를 위해 ‘OO호텔’에 수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이 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접견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력화한 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던 피의자의 중요증인을 ‘입국저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인출석을 방해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처했던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억압적인 조건은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건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411)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은 제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2.1.2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며 이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 등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배제시켰다. 이것은 차풍길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구타·협박을 당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이와 같은 행위가 행사된 사실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라 | 결 론

차풍길이 ‘조총련 동경본부 정치부 지도원 이재혁’에게 포섭돼 1976.12경 간첩지령을 받은 후, ‘1978년도의 경제지표’ 등 3건의 신문기사 수집·보고하고 1979.4.1 자양회 모임에서 ‘조총련 찬양발언’을 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주한미군에 관한 기밀을 수집·탐지할 목적으로 동두천으로 이사한 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YH여자 근로자 농성’ 등 2건의 신문 기사를 수집해 요시무라에게 보고하고자 했다고도 할 수 없다.

당시 안기부는 이와 관련해, ‘차풍길의 자백 진술서’와 요시무라로부터 받았다는 징표(가스라이터, 수건, 비누) 그리고 ‘영사증명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위 징표는 요시무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영사증명서는 중요내용에 있어서 당시 파견관이 확인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기부 본부의 수사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이외의 다른 증거들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또한 차풍길의 진술은 불법적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신뢰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당시 안기부의 기록과 차풍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차풍길의 기억에 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된다.

특히 ‘차풍길이 조총련 공무원 이재혁에게 포섭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가와의 조총련 열성맹원 여부, 이재혁과 요시무라의 동일인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첩보와 불법적 수사과정에서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무리한 결론내리고 말했다.

또한 불법연행과 66일간의 불법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견권 제한, 증인출석 방해 등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해진 불법적인 행위들은 피의자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증거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케 하는 차풍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안기부의 기록들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이 강요되었을 높은 가능성을 반증한다.

이처럼 차풍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와 진술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첩보내용의 구체성을 고려할 때, 차풍길이 향부흥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어떤 운전원으로부터 ‘남한의 장기집권을 비방’하고 ‘북괴의 우월성’에 대해 들었고 차풍길의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그 운전원은 보다 적극적인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 그리고 그 운전원이 실제로 이재혁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방법과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섭과정과 최종적인 포섭여부를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이후의 간첩행위 사실이 없으며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받았던 점들을 고려할 때, 위 가능성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의율될 사안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이를 침해한 책임은 흔히 말하듯이 ‘간첩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와 범죄사실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사활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법적 권한, 예산, 조직, 인원을 보장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사소한 듯이 보이는 행위 또는 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첩보들을 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고정관념을 고려할 때, 주어진 권한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충분한 증거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수사결과 등은 적지 않은 ‘간첩의혹사건’들을 등장시켰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은 어떤 이유로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6 위장 귀순 김진모 사건

가 | 개 요

1) 사건의 개요

공소장과 의견서에 따르면 김진모는 강원도 강릉에서 父 김OO의 2남으로 출생하여, 1960.3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962.4. 동료교사 김OO과 결혼한 후 1966.7 장성초등학교 교직원 봉급을 횡령하여 7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1974.5.8 서독 취업광부로 취업 출국하였다. 1977.9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접근한 북한 공작원 광기석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포섭된 후 1977.10.12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입북, 평양 초대소에 수용되어 24일간 체류하면서 노동당에 입당 및 간첩교육을 받았다. 그 후 지령에 따라 북한 내과의사 ‘박정수’로 신분 위장하여 1977.11.4 모스크바 의학세미나 참가 중 탈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서독으로 잠입한 후 서독정부에 망명을 요청하였다. 1977.12월경 서독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1978.2 병원 간호보조원인 터키인 ‘아이셀 데미르’와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였다. 1981.12 북한 공작원 김중수로부터 ‘남조선 의사협회에 침투,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지령과 공작금 5,000마르크를 받고 1982.2.18 터키 주재 한국공관을 직접 찾아가 북한 의사 박정수로 위장 귀순하였다. 1982.3.29 국내로 입국하여 귀순 심사과정에서 위장 귀순이 발각되었다. 1982.4 안기부에 간첩죄로 구속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1986.5.27 사형이 집행되었다.

2) 조사 필요성

시민사회에서 간첩혐의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였다는 김진모 사건의 의혹주장은 다음과 같다. 김진모는 형이 모 초등학교 교장⁴¹²⁾이고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다. 소련 모스크바 세미나에 참석중 사상을 떠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북 사람을 2회 만나 대화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1982년 귀국하여 서울대 등에서 특강도 하던 중 안기부에 검거되었다. 그러나 김진모는 지속적으로 간첩임을 부인하면서 수감기간 중 세례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 사형 직전에는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잡니다만 제 마음은 국가에 충성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와 88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처형대에 서겠습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죄로 억울하게 처형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⁴¹³⁾ 이런 문제제기에 따르면 김진모는 한국 국적의 독일 의사로 모스크바의 세미나 참석 중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당했다는 것이다.

나

조사 결과

1) 수사 착수 경위

1982.2.20 주 터키 대사는 ‘1977.11 서독으로 망명한 북한인 박정수 (39.4.1생)가 1982.2.18 한국대사관에 출두하여 귀순을 희망’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였다⁴¹⁴⁾. 이에 외무부는 안기부에 박정수에 대한 ‘귀순자 처리여부 및 귀국시 처리 방안’ 등을 의견 문의하였다.⁴¹⁵⁾ 이에 대해

412) 안기부, 「서독망명 북괴인 조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형 김OO은 그 당시 OO초등학교 교감이었다.

413) 인터넷에서는 사형폐지운동과 관련하여 김진모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억울한 사형수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출처가 명기되지 않았으나 <오판에 의한 사형수>등의 제목이 붙은 글에는 위의 김진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으로 오랜 기간 사형장에 입회 하였던 목회자이며, 본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문장식 목사의 저서 『아! 죽었구나 아! 살았구나』, 2006, 금란출판사, pp.71-80에도 김진모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414) 안기부 자료, 「재독 망명 북괴원 터어키에서 아국으로 귀순 신청」 : 김진모철 1권 2쪽. 귀순동기에 대해 ‘오랜 망명생활로 정신적 불안과 고독감 및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귀순을 결심했다고 하였다

415) 안기부 자료, 「김진모철1권」 6쪽

안기부는 박정수에 대해 ‘현행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거 귀순자로 취급, 처리할 수는 있으나 탈출 후 4년 이상이 경과하고 서독 장기거주 등 요인으로 인해 대공적 차원에서 활동가치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북괴 공작에 의한 위장 귀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귀순입국은 불허함이 가할 것이나 모국방문 차원에서 일시 방한은 허용해도 무방할 것’ 이라고 회신하였다⁴¹⁶⁾. 이에 따라 박정수는 1982.3.29 입국하였고 안기부 주관아래 다음날부터 3박4일간 시내 관광 및 재일동포 성묘단과 합류하여 경주,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등을 견학하게 된다. 한편, 당시 안기부의 귀순입국 불허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무 제1수석비서관은 박정수의 귀순허용을 검토해줄 것을 안기부에 요청하게 된다.⁴¹⁷⁾ 이와 관련 정무 비서관이 요청한 경위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김진모의 귀순을 지원하는 인사나 단체의 부탁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안기부에 요청한 것이거나 정치권에서 김진모가 북한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안기부는 1982.4.19-4.21간 박정수가 체류 중인 종로구 소재 내자호텔 (1006호실)에서 귀순심사를 실시하였다. 귀순심사에서 박정수는 ‘일본에서 출생했고 해방 후 입국하여 1969년 평양의대를 졸업하고 평양 시립병원에 근무하던 중 1977.11 모스크바 의학세미나에 참가 중 탈출하여 서독에 망명하였고 1980.6 터키인 “아이셀 데미르”와 결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는 박정수가 위장 진술한 내용이다.

박정수는 1939.4 일본에서 와세다대학 의대 유학중이던 부 박인권과 일본인 金木正子(가네모도마사코, 한국명 김순) 사이에 독자로 태어나 1945.4 동경 소학교 1년에 재학 중 8.15 해방을 맞이하여 본적지인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으로 귀국하였다. 부 박인권이 인민군 병원 외과 의사로 취직되어 조부 박철수, 조모 최씨, 모 김 순 등 가족과 같이 평양시로 이사하여 1948.3 평양 모란봉 인민 학교에 입학하였다. 6·25시 부는 인민군 군관으로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되었다. 1952.3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제일고급중학교에 입학하여 1958.2 졸업

416) 안기부 자료, 「안기부 회신」 : 김진모철 2권, 7쪽

417) 안기부 자료, 「재독 망명 북괴인 귀순입국 희망에 따른 심사계획」(1982.2)

하였다. 1958.7 인민군에 입대하여 평양시 경비사령부에 복무하다가 1961.3경 하사로 제대, 재가한 모의 남편 이은주의 주선으로 김일성대학 생물학부 시험실 보조원으로 배치되었다. 1962.3 평양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69.2 졸업과 동시 내과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양 시립병원 소화기 내과의사로 종사하면서 1972.7 노동당에 입당하고 1975.7 ‘위암의 새로운 처방기술’ 이란 논문을 발표, 그 공로로 조선국기훈장 2급 공로메달을 수상하고 평양 시립병원 내과 부과장으로 승진하였다. 1976.2 주 소련 북한 대사관 직원 최중철의 처의 음독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차 7일간 모스크바 여행하고 1977.9 의료시찰차 유고 벨그라드에 7일간 출장 등을 통하여 선진국가의 제반 사회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평소 모 김순으로부터 ‘너의 아버지는 남조선에 포로 교환시 미국을 거쳐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풍문을 들었다. 언젠가 기회를 보아 자유주의 국가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 집안의 대를 계승하도록 하라’ 는 말을 듣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1977.11.5 소련 모스크바 대학에서 주최한 ‘새로운 의학토론회’ 에 참석차 여행기간을 이용하여 1977.11.18 모스크바 공항에서 동독행 항공표를 구입, 동독, 유고, 오지리 등을 경유하여 1977.11.20 서독정부에 망명하였다

심사관들은 오랫동안 북한에서 생활해왔음에도 이북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박정수에 대해 서독정부가 망명 처리하고 본인도 심사에 자진협조하고 1982.4.21 거짓말탐지기 시험에도 진실반응이 나타나 위장 귀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⁴¹⁸⁾ 결국, 안기부는 ‘인도적 입장에서 국내정착을 허용’하고 ‘특별법에 따라 귀순자로 처리 보상’하고 ‘최초의 북괴출신 의사’이므로 ‘대국민 반공계몽을 위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는 심사결과보고를 제출하였다.⁴¹⁹⁾ OO 호텔에서 안기부 단독 귀순심사를 통과한 박정수는 마지막 절차로 1982.5.3 육군정보사에 수용되었고 재차 안기부, 보안사, 경찰의 합동 신문을 받게 되었다.⁴²⁰⁾ 1982.5.4 관계기관 합동신문에서 박정수는 서독

418) 안기부 자료 「서독 망명 북괴인 박정수 일가 심사결과보고」; 김진모철1권 122쪽. 평가부분에서 ‘이북사투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독일정부의 망명처리, 심사에 자진협조, 허언탐지기 신문결과 진실반응 등을 감안한다면 위장귀순혐의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419) 안기부 자료, 「재독망명 북괴민간인 귀순입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 김진모철1권 87쪽, 「재독망명 전 북괴민간인 박정수 신원심사 및 국내정착 허용여부 검토보고」(1982.4.27); 김진모철1권, 142쪽

망명 및 귀순입국 사실은 위장이었음을 자백하였다.⁴²¹⁾ 이에 안기부는 수사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박정수의 지문조회를 치안본부에 의뢰하여 1982.5.7 귀순한 북괴의사 박정수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내국인 김진모임을 확인하였다.⁴²²⁾

2) 안기부 고문조작 여부

시민사회에서는 사형을 앞둔 사람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음으로 국가에 충성한다. 대통령과 정치인과 국군장병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억울한 사형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⁴²³⁾

고별 예배시에 김진모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 얻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며 국군장병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소장 이하 모든 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직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주시고 저희를 위해 수고하신 문 목사님과 김옥이 집사 영원한 하나님 편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승리케 해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고 하였다고 한다.

서울구치소장 인정 심문시 김진모는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갑니다만은 제 마음은 이 국가에 충성합니다. 네 명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나의 처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처의 방해로 얼굴을 못보고 가니 그것이 섭섭합니다. 앞으로 자식들과 처가 꼭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기독교 공원묘지에 묻어주십시오. 영치금 10만원으로 성경찬송 4권을 사서 4명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갖고 있는 성경찬송을 처에게 주고 목걸이는 누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420) 안기부 자료, 「김진모첩1권 178쪽」

421) 안기부 자료, 「김진모첩1권 177쪽」

422) 안기부 자료, 「김진모첩1권 204쪽」

423) 문장식, 『아! 죽었구나 아! 살았구나』, 2006, 금란출판사, pp71-80.

김진모는 <1심 공판>에서 재독 북한공작원 곽기석에게 포섭되어 입북하였고 간첩교육 등 지령을 받고 위장귀순을 가장, 국내 침투한 사실 등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였다.⁴²⁴⁾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고 있으니 가족을 생각하여 관대히 처분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⁴²⁵⁾ <항소심>에서 김진모는 ‘1977.10 유고 벨그라드에 도착한 이후에 곽기석이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령을 받기 위하여 입북한 것이 아니다. 박정수라는 가명을 사용, 위장 귀순한 행위는 지령사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하였다.⁴²⁶⁾ 이것은 북한 공작원 곽기석의 안내로 북한에 입북한 것이 사실이고, 박정수라는 이름으로 위장 귀순한 것도 사실임을 자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진모는 항소심에서는 그가 지령을 받아 귀순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즉 그는 입북과 신분을 위장하여 귀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귀순이 지령을 수행하여 간첩행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뒤늦게 주장 한 것이다. 또한 <최후진술>에서 ‘다시 광명을 볼 수 있다면 신명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겠다’며 감형을 호소한 후 ‘신이여 광명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⁴²⁷⁾ 이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재판부는 ‘안기부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안기부·검찰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각 증거조사 및 방법에서도 채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양형과다’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탈출하여 밀봉교육을 받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된 다음 그 지령에 따라 서독에 위장망명하여 여자와 혼인하는 등 신분을 교묘히 위장하고 그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등 범행 동기, 수단, 방법, 전과관계, 성행, 가족관계 등으로 볼 때’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⁴²⁸⁾ <상고심>은 김진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424) 안기부 자료, 「간첩 김진모 공판상황보고」(1982.8.24)

425) 안기부 자료, 「간첩 김진모 구형공판 상황보고」(1982.9.21)

426) 안기부 자료, 「간첩 김진모 항소심 공판 상황보고」(1982.12.8)

427) 위 항소심 공판상황보고(82.12.8)

428) 김진모 항소심 판결이유(82노2856. 82.12.22)

사형을 확정하였다⁴²⁹⁾ 따라서 김진모의 국내에서의 행적, 유럽에서의 생활 및 귀국 후 위장된 행위, 귀순 심사 과정에서 그의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진모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

3) 김진모의 국·내외 행적⁴³⁰⁾

김진모는 1939.4.1 본적지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64에서 부 김OO의 2남으로 출생하여 1960.3 OO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경북, 충북 및 강원도 등지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⁴³¹⁾ 1961.7 경북 OO초등학교에 근무 중 동료교사인 김OO과 교제하다가 1962.4.7 결혼하였다. 1966.7 강원도 장성읍 OO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시 교직원 20여 명의 봉급 23만원을 횡령하여 1966.9.20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67.7.1 특사로 석방되었다. 출소 후 김진모는 1974.1 서울 사대부고에서 교원연수교육을 받던 중에 처 김O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독광부로 지원하여 1974.5.8 서독으로 출국하였다. 김진모는 뒤스부르크 광부로 일했고 1975.4.23 휴가차 귀국시 100만원을 처 김OO에게 주어 김OO이 퇴직금 80만원을 합하여 면목동에 기와집 1채를 구입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진모는 1975.5.30 재차 출국한 후 점점 소식을 단절하다 1976년경부터는 처와 연락을 끊었다. 당시 김진모는 서독에서 파독 간호사 이OO와 동거중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소식만 기다리던 처 김OO은 1977.5 ‘나오던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대사관에 진정하여 강제 송환시키겠다’는 서신을 발송하였고 10여 일 후 김진모는 ‘곧 귀국하겠다’고 답신했다. 1977.7.7 귀국한 김진모는 처 김OO이 오히려 ‘바람이 났다’고

429) 안기부 자료, 「김진모사건 3심 선고공판 상황보고」(1983.4.26)

430) 안기부 자료, 「김진모 공소사실 및 처 김선악 안기부 녹취록」

431) 김진모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은 김진모의 허위 진술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다

구타하기도 하였다. 김진모 입국 후 10여일쯤 지나 파독 간호원 이OO가 김OO의 집으로 수차에 걸쳐 전화하여 김진모를 독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1977.9 초순경에는 이OO의 부탁을 받는 동인의 언니 이△△이 김OO을 방문하여 ‘김진모라는 사람이 동생 OO하고 동거하고 있다. 김진모의 처는 폐병으로 죽었다’고 하여 김OO은 자신이 김진모의 처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김OO은 신경안정제를 먹고 음독자살까지 기도하였다.⁴³²⁾ 1977.8.22 출국한 김진모는 뒤스부르크 가톨릭 병원 간호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1977.9 슈투트가르트시 살 아르 악기점 ‘라디오 바드’사 점원으로 취직하였다. 1977.9.25 피아노 배달을 나섰던 김진모는 슈투트가르시 역전에서 북한공작원 광기석을 우연히 만나 반갑게 인사하면서 김진모 자신은 3년 전 유학온 학생으로 행세하고 광기석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피혁도매상이라 소개하였다. 1977.9.29 다시 만난 광기석이 ‘사업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조력자를 구하는 중’이라며 의중을 살피자 김진모는 자신의 처지를 실토하면서 ‘지금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 하였고 광기석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김진모는 광기석이 시키는 대로 1977.10.1 뮌헨으로 이동하여 오스트리아 영사관과 유고 영사관을 방문하여 입국비자를 받고 10.2 유고 벨그라드역 인근 호텔에서 광기석과 북한대사관 직원 3명을 접촉하고, 10.3 북한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북한여권용 사진을 촬영하고, 10.4-9간 미상호텔에서 대기하면서 사상교육을 받았다. 김진모는 1977.10.10 북한대사관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여권을 주고 북한대사관에서 발급한 ‘박정수’ 명의 공무여권을 받아 광기석의 안내로 모스카바공항으로 이동하여 북한대사관에서 1박 후 1977.10.12 15:00경 평양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1977.10 김진모는 처 김OO에게 ‘저축한 돈을 12월에 찾으면 한국으로 나오겠다. 직장에서 해고되어 하숙집을 전전하고 있는데 일정한 주소가 없으니 편지는 하지 마라’고 서신을 발송하였다⁴³³⁾. 1977.10.13-11.4간 (24일) 평양 초대소에 수용되어 통신조직⁴³⁴⁾ · 약정음어⁴³⁵⁾ · 위장신분⁴³⁶⁾

432) 안기부 자료, 「처 김OO 녹취록」

433) 안기부 자료, 「김진모 처 김OO 녹취서」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간첩지령을 받고⁴³⁷⁾ 공작금품을 수령하였고 1977.11.2 노동당에 입당(당증번호 032267)하였다. 1977.11.5 모스크바, 동베를린, 유고 벨그라드 공항을 거쳐 열차로 오스트리아를 경유 11.14 서독 하이델베르그에 입국, 11.16 서독 만하임시 경찰국에 ‘북한의사 박정수’의 신분으로 망명을 신청하여 12.5 임시망명 허가를 받았다. 1978.1 서독 정부의 주선으로 만하임 시립 파울리니 병원 잡역부로 종사하던 중 간호보조원 터키인 ‘아이셀 000’과 사이에 딸을 출산하였고 1980.1.7 정식 망명허가를 받고 동년 6.13 아이셀과 혼인하였다. 1982. 2경부터 위장 귀순을 위해 변장용 안경, 의학서적 등을 준비한 후 국내 귀순시 인물사진이 보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콧수염을 길러 변장하였다. 아이셀에게는 ‘터키에 있는 독일계 병원에 가서 보조의사로라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설득하여 2.17 터키 이스탄불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아이셀에게 ‘터키에서도 의사자격을 인정받기가 힘들 것 같으니 한국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도록 해보자’고 하였다. 2.18 터키 앙카라시 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나는 서독정부에 망명한 북조선 의사 박정수란 사람인데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 우리 가족과 같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박정수에 대한 처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터키 주재 한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박정수의 망명 신청사실을 보고하였고, 본부는 안기부에 ‘귀순자 처리 여부 및 귀순시 처리방안’을 문의하였다. 이에 안기부는

- 434) 공작서신을 발송할 때 발신자의 주소 성명은 임의로 기재하되 수신자의 주소 성명은 ‘스웨덴 스톡홀름 11432 빌라가탄 17’ 김종수로 기재하여 발송하라(의견서)
- 435) 남조선-본국, 공작-일, 공작원-형님, 지하당-회사, 광부-동생, 유학생-친구, 간호원-누나, 병원-집, 포섭-만남, 망명-입원, 외국인여자-처, 결혼-초청, 공작금-입원비, 이사-여행, 사업추진-여권, 장기잡복-귀국, 성공-결혼
- 436) 이름은 1939.4.1생 박정수로, 직업은 평양시립병원 내과의사로,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으로, 주소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보란봉동 135으로 위장
- 437) 주요 지령사항으로 ‘북조선에 발행한 박정수 명의 공무여권을 가지고 행세할 것. 서독 경찰에 출두하여 북조선 내과의사 박정수로 망명할 것. 망명 성공후 스웨덴 김종수에게 안착신호 발송.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여 서독에 영주, 재독 한국인 광부 유학생 간호원 등과 접촉하여 동조자 포섭 및 입북, 여건이 성숙되면 남조선 대사관에 망명, 합법신분을 쟁취하면 남조선 의사협회에 침투, 동조세력 규합. 사업보고 및 지시는 스웨덴 김종수를 통한 것’ 등임 그러나 김진모는 항소심에서 이를 부인하였다.

‘귀순입국은 불허’함이 가하나 모국 방문차원에서 ‘일시 방한은 허용’함이 무방하다고 의견을 회신하였다⁴³⁸). 김진모는 재일동포 한식 모국방문단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1982.3.20 앙카라 공항을 출발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 3.29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982.3.31-4.2간 재일동포 한식 모국방문단의 산업시찰단과 합류, 포항 울산 경주 부산 등지에 있는 포철,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국가 주요산업시설을 시찰하였다. 그 후 청와대 정무 제1수석비서관이 안기부에 박정수(김진모)의 귀순허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여 호텔에서 안기부 단독의 귀순 심사가 있었으나 위장 귀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귀순허용을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안기부는 재차 신병을 정보사에 수용하여 안기부, 군, 경찰 등 3개 기관 합동신문을 실시하는데 동 심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이 드러난 것이다.

다 | 결 론

진실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진모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의대 출신도 아니고, 소련 모스크바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바도 없고, 1982년 귀국하여 서울대에 특강을 한 사실도 없다. 한국국적의 독일의사인 김진모가 모스크바 세미나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하였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당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김진모가 입북하여 교육을 받은 것, 신분을 속이고 북한의사 행세를 하며 위장귀순한 것은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행적이 당국의 입장에서 볼때 패썹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해도 그를 간첩죄로 의율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었으며, 더구나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까지 된 것은 김진모가 저지른 죄에 비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438) “수사착수 경위” 부분 참조

가

사건개요

1987년1월 홍콩에 거주하던 상사주재원 윤태식은 자택에서 처 김옥분(일명 수지 김)과 말다툼을 벌이는 도중 김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되자 윤씨가 베갯잇을 김씨의 머리에 씌운 다음 캔버스 벨트로 목을 감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김씨가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으며 자신 역시 납치되기 직전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윤태식은 한국대사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싱가포르 파견관에게 “1월2일 일본어를 잘하는 2명의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아내 수지 김에게, 빚 400만 엔의 사용처를 추궁했으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와 함께 사라졌다”면서, “다음날 그중 1명이 다시 찾아와 아내가 빚 때문에 싱가포르에 잡혀있으니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4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가 북한대사관 요원에게 납치됐다. 이후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호텔로 옮겨졌으나 저녁 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호텔을 탈출, 한국대사관으로 피신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기부 파견관은 ‘윤태식이 1월5일 오전에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하려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오히려 북한이 윤씨를 납치하려 했거나 윤씨가 납치되기 직전 탈출했다는 징후가 전혀 포착되지 않아, 윤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안기부장의 지시에 의해, 윤씨의 주장대로 ‘북한의 미인계 공작으로 납북될 뻔했다가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국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안기부는 윤태식을 귀국시켜 심문하는 과정에 윤씨가 처 김옥분을 살해

했다는 사실과 이를 숨기기 위해 북한에 납치될 뻔 했으며, 북한 공작원이 김씨를 죽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자백을 받았음에도, 대공사건으로 조작하여 ‘여간첩 납치미수 사건’으로 왜곡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김옥분은 1월26일 홍콩 소재 자신의 아파트 침대 밑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홍콩 경찰은 남편 윤태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한국정부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3월 김옥분 가족의 고소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 발생 14년 10개월만인 2001년11월 서울지검 외사부는 윤태식을 살인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윤태식은 살인죄 등으로 2003년 징역 15년6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 사건 전개 과정

윤태식은 1958년8월 태생으로 행당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북중학교 1학년을 무단결석으로 중퇴하였고, 방위병으로 복무한 후 1986년 봄부터 주식회사 서진통상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5월경부터 홍콩 소재 영화사로부터 영화 판권을 추천·수입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서진통상 해외사업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김옥분은 1952년4월 충주 태생으로 1968년경 서울로 상경하여 술집을 전전하다가, 1976년경 홍콩으로 건너가 현지인과 합법신분 획득을 위해 위장결혼한 후 이혼하였고, 그 후 홍콩에서 나이트클럽 접대부(호스티스)로 일하다가 1982년경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나 1985년 8월경 헤어지게 되었다.

김옥분은 1986년 8월경 일본에 가기 위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홍콩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던 중, 윤태식을 알게 되어 방 1개를 윤씨

에게 임대하여 거주토록 하였으며, 같은 해 9월경부터는 급속히 가까워져서 아예 동거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16일경에는 함께 한국으로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윤태식은 1986년9월 초순경 중문대학교 중국어 어학연구과정 기초반에 등록하여 다니면서(이처럼 위 어학코스에 등록함으로써 홍콩정부로부터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홍콩에서 비디오대여점을 개점하려 준비하였고, 같은 해 11월경부터는 김옥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때리기도 하는 등 자주 다투었다.

김옥분은 1987년1월2일 16:00경 친구인 최○○를 찾아가 윤태식이 자신의 돈을 모두 가져갔다면서 최씨로부터 20홍콩달러(당시 원화 2,000원 상당)를 빌려 최씨와 함께 한의원과 시장을 거쳐 18:00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저녁식사 준비를 하다가, 19:00경 윤씨가 돌아오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였으나 윤씨로부터 저녁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는 최씨와 둘이서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만든 저녁식사를 하였다.

윤태식은 1987년1월2일 15:35경 같은 달 5일 개점을 위해 실내공사 중이던 비디오대여점에서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는 몹시 화가 나서 김옥분에게 전화를 건 후 15:50경 나갔고, 19:00경 귀가한 것이다.

김옥분의 친구인 최씨는 저녁식사 도중 김씨와 윤태식이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김씨에게 “둘이 싸웠느냐”고 물었으나 김씨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이때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난 윤씨에게 김씨가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갈거냐”고 묻자 윤씨가 통명스럽게 “알면서 왜 묻느냐”라고 답하는 등 서로 비꼬면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 19:30경 김씨의 아파트에서 나와 그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김옥분은 1987년1월2일 19:3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윤태식과 다투다가 사망하였다.

윤태식은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북한으로 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대사관으로 가려고, 1987년1월3일 10:30경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싱가포르행 편도 비행기표 중 가장 빠른 시각의 1등석 표를 예매하였고, 12:30경 직접 여행사에 찾아가 현금을 주고 표를 구입하였다.

윤태식은 1987년1월3일 13:30경 김옥분의 친구인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최씨의 집에 있는지 물으면서 “전날 밤 최씨가 떠난 뒤 약 30분쯤 후에 2명의 남자가 찾아와 김씨와 돈 문제를 상의하다가, 김씨가 자신에게 나가서 담배를 사다줄 것을 부탁하여 나갔다가 와보니 아파트 문에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눌러 보아도 응답이 없었는데, 당시 자신은 가까운 가게에 갔다 오느라고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문을 열지 못하여, 김씨를 찾으러 최씨의 집으로 갔으나 최씨도 집에 없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파트 현관 문 앞바닥에 집 열쇠가 떨어져 있어 이를 주워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으며 김씨의 여권도 없어졌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기 직전에는 다시 “집 열쇠가 없어서 필리핀 가정부에게 열쇠를 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윤태식은 같은 날 15:00경 필리핀인 가정부의 집으로 찾아가 가정부에게 “아파트 안에 열쇠를 두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으니 자신의 집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으면서 “자신의 집에 언제 청소하러 올 것이냐”고 묻고는 “오후 6시”라는 답을 듣자 다시 “19:00시 이전에 열쇠를 받아 아파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열쇠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집의 유일한 열쇠가 확실하냐”고 물었고 이에 “그렇다”는 답을 듣고는 15:30경 가정부의 집에서 떠났다.

윤태식은 같은 날 20:00경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탑승하였으나, 비행기 기체결함으로 그 출발이 다음날인 1월4일 09:30으로 연기되어 위 비행기의 모든 탑승객들과 함께 항공사가 잡아 준 호텔(김옥분의 집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음)에서 묵은 뒤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윤태식은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북한으로 도망가는 것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 유인되어 간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서울의 가족들이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 이○○에게 ‘그놈들이 와이프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여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다. 혹시 연락이 두절되면 와이프와 나를 찾는 수사의 의뢰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부탁하여 발송하였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윤태식은 1987년1월5일 오전에 북한대사관에 전화를 건 후 북한대사관으로 찾아가 대리대사 이창룡을 만났으나 북한대사관 측으로부터 별다른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자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한국대사관에 신병이 인수되었으며, 한국대사관으로 와서는 “1987년1월2일 밤 북한공작원이 김옥분을 이용하여 자신을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유인한 후 북한으로 납치하려던 것을 극적으로 탈출하였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안기부 직원의 인솔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하여 1987년1월9일 김포공항에서 “1987년1월2일 저녁 일본에서 왔다고 하는 2명의 한국인 남자가 김옥분을 찾아와 김옥분이 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상의하다가 김옥분이 나가서 담배를 사오라 하여 밖으로 나가 담배를 사 돌아와 보니 김옥분과 위 두 남자가 없어졌고, 다음날 아침 위 두 남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들이 김옥분을 데리고 있으니 그녀를 되찾으려면 400만 엔을 줘야 한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그런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싱가포르로 와서 지불각서를 쓰고 김옥분을 데리고 가라고 하여 싱가포르로 갔는데, 싱가포르 공항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한 여인의 안내로 어디론가 가보니 북한대사관이었고, 그 곳에서 이창룡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아를 경유하여 스위스에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탈출을 결심하여 호텔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를 타고 한국대사관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러한 윤태식의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국내 언론에 의해 보도 되었으며, ‘김옥분은 북한의 공작원이었으나, 윤태식과 위장결혼 한 후 납북시키기 위해 공작을 하다가 실패하자 북한측이 김옥분을 살해했다’는 ‘여간첩 수지 김 사건’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홍콩 경찰은 1987년1월26일 17:47경 김옥분의 아파트 옆집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김씨의 아파트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다가 19:45경 김씨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00년3월 김옥분의 오빠 김○○이 윤태식을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어, 2001년10월24일 윤씨가 김옥분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다가 2001년11월13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2003년5월30일 대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안기부는 1987년1월 윤태식의 범행 내용을 파악 했으면서도 살인 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 ‘여간첩 수지 김 사건’으로 왜곡하여 발표하도록 하였고, 경찰이 2000년2월경 김옥분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했으나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의해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다

안기부의 사건 은폐 경위

윤태식은 1986년9월2일 홍콩으로 출국하여 접대부로 종사하던 홍콩교포 김옥분(일명 수지 김)과 결혼, 동거하다가 1987년1월3일 홍콩거주지 아파트에서 김옥분을 살해하고 북한으로 도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월5일 싱가포르 주재 미국대사관⁴³⁹⁾을 찾아가 “북한공작에 의해 처 김옥분이

439) 윤태식이 기자회견에서 ‘미국대사관 방문’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한국대사관으로 오지 않고 미국대사관으로 갔는지에 대한 괜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안기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납치되었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안기부 싱가포르 파견관이 윤태식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윤태식의 신병을 인수한 안기부 싱가포르 파견관은 윤태식이 자술서를 쓸 때마다 횡설수설하여 의심하던 차에, 1월6일 안기부 본부로부터 “현지에서 윤태식을 북한에 납북되려 했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시키고 입국을 시키라”는 전문을 받았으나, 안기부 장○○ 부국장이 현지로 출장을 와서 윤태식을 면담하던 중, 북한대사관 동향을 감시하는 정보망에 의하면 윤태식이 1월5일 오전에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하려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북한이 윤태식을 납치하려 했거나 윤태식이 탈출했다는 징후가 전혀 포착되지 않아, 윤태식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안기부에서는 1987년1월6일 해외담당부서 주도로 관계 부처 홍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및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하고 1월7일 싱가포르 파견관에게 ‘싱가포르, 홍콩에서 1차 기자회견, 국내 입국시 김포공항에서 2차 기자회견을 실시하며, 당부(안기부) 신문 완료 후 조사내용을 종합발표하기로 하고, 김대중, 문익환, 유성환 관련 북측 발언내용은 윤태식을 통해서만 언급하도록 결정되었다’는 기자회견 추진방안 및 지침을 하달하였다.

안기부 해외담당부서 장 부국장과 싱가포르 파견관은 수집한 첩보를 근거로 윤태식의 진술을 의심하여 윤태식을 국내로 데려간 다음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자 1월7일 18:46경 ‘윤태식이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월북기도 가능성이 농후하고 북괴의 납치기도는 허위일 가능성이 나타나므로 기자회견을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작성하여 안기부 본부에 기자회견을 보류해야 한다고 윤태식의 진술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했고, 이를 검토한 본부에서는 ‘처 김옥분이 북괴공작원이라면 윤태식을 자연스런 방법으로 유인 납북할 수 있을 것임에도 구태여 조총련 공작원을 활용한 점 등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작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윤태식의 진술은 극(시나리오)적 공작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21:22경 '기자회견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또한 1월7일 22:03경 싱가포르 파견관은 '윤태식은 1월5일 10:00 북괴공관에 직접 전화, 대사에게 망명요청, 대사는 직접 방문하라고 공관 주소를 윤에게 알려줌. 자진 망명의사를 갖고 북괴공관 방문 후 심경변화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음. 싱가포르에서 언론활용계획은 싱가포르 측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싱가포르 및 홍콩에서의 기자회견은 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추가 보고 전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23:14 안기부본부에서 싱가포르 파견관에게 '싱가포르 정보기관을 설득, 기자회견 실시 추진. 기자회견시 북괴공관에 전화한 사실 일체 언급할 필요 없음. 윤에게 신병안전 보장할 터이니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문 발송하였고, 1월8일 00:50경에는 '부장님께 보고 드린바 부장님의 지시(윤태식의 기자회견시 북괴공관에 전화한 사실을 일체 언급하지 말 것. 북괴공관은 당사자이므로 부인하더라도 언론에서 믿지 않을 것임. 윤태식의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할 것)를 하달하니 최선을 다하여 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중간 보고 바란다'는 전문을 타전하였으며, 10:10경 해외담당부서장 명의로 '파견관, 장 부국장의 보고 중 위장 망명 진술, 현지 기자회견시 윤태식이 아측에 불리한 내용 진술 우려 등에 대한 예방조치도 충분히 상부에 보고하였음을 분명히 하며,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부장님이 결정한 것을 통고함'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안기부는 윤태식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이다.

안기부 해외담당부서 장 부국장은 홍콩정부가 윤태식이 북한대사관에 망명하려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서의 기자회견이 여의치 않자, 1월8일 19:00경 윤태식을 데리고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이동

하여 그곳에서 연합뉴스 기자로 하여금 윤태식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한 후, 1월9일 11:40경 방콕을 출발하여 오후 8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윤태식은 김포공항 도착시 40여명의 내외신 기자 참석 하에 20분간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귀국소감으로 “싱가포르 북한공작원들이 ‘서울 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살아 돌아왔고, 귀국시까지 보호해 준 한국대사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후, “주 싱가포르 북한공관 이창룡은 ‘김대중 선생이 잘 계시냐’고 묻고 김대중 선생은 민족의 영웅이라고 언동한 바 있고, 북한이 자신의 망명동기로 유성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했고, 이로 인해 한국정부로부터 신변위험을 받아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선언토록 지시했으며, 북한이 문익환 목사의 향소 포기를 찬양하고 문목사는 ‘꺼지지 않는 민족의 횃불’이라고 언동했다고 말하면서 반공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며, 북한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표적의 대상으로 삼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윤태식의 김대중, 문익환, 유성환에 대한 언급내용은 윤태식이 1월5일 한국대사관에서 북한에 납치되려 했었다는 허위 진술을 하는 과정에 꾸며낸 이야기로 안기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윤태식의 귀국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문익환, 유성환 관련 내용을 윤태식의 입을 통해 부각토록 하였다.

안기부 수사담당부서는 1월9일 김포공항에서 해외담당부서로부터 윤태식의 신병을 인수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윤태식은 처음에는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하게 “김옥분은 북한공작원이며 자신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옥분의 북한공작원 활동 사항 등 진술에 대한 모순점(공작적 차원에서 불합리)들을 집중 추궁한 결과, 1월11일경 “처 김옥분을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이창룡 대리대사를 접촉, 입북을 기도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이에 수사담당부서는 윤태식을 국가보안법(탈출) 및 형법(살인죄)을 적용하여 구속송치의견으로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1월6일 대통령에게 ‘납북미수 사건’을 보고한 장 부장은 “이미 북한만행으로 보도되었으므로 구속하지 말고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하였다.

1987년1월26일 홍콩 경찰은 김옥분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윤태식으로부터 이미 자백을 받은 안기부는 김씨 사체 발견 전인 1월13일 ‘홍콩측의 보도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한 보도로 대응하되 윤태식에게 그동안의 주장 등을 완벽히 교육하여 북괴납치 살인극임을 규탄케 하고, 김옥분 국내 가족들로 하여금 사전교육을 통해 북괴살인만행을 규탄하는 인터뷰식의 홍보’를 진행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두었다.

또한, 안기부는 1월19일에는 「마카로니⁴⁴⁰⁾ 보도 등 관련 대책 검토 보고」를 통해, ‘마카로니 발견에 대비, 예상되는 사태전망 및 홍콩 경찰과 언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홍콩경찰 대책으로 사건을 미제로 유도, 홍콩 거점장은 현지 경찰이 아측에 윤에 관한 수사자료를 요청시 일단 본국에 보고하여 협조하겠다는 태도로 대응하여 지연 작전’을 펴고, ‘홍콩 현지 언론대책으로 외신기자 조종은 불가함으로 외신을 인용한 국내 보도는 마카로니 발견 사실 보도에 국한, 가능한 축소 보도토록 하고, 현지 거점장이 특과원들에게 역시 준비된 브리핑 자료에 의거 북괴 소행으로 송고토록 조종’하며, ‘국내 언론대책으로(브리핑요지) 마카로니는 홍콩과 마카오를 거점으로 납치 입북 대상자를 물색 미인계 등으로 유인하여 북괴에 인계하던 여자공작원으로 윤태식의 납치공작을 기도타 실패하자, 마카로니의 정체가 노출되어 이용가치가 없고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등 곤경을 벗어나고 공작 실패에 대한 책벌과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원상회복시킨 상태에서 살해만행 자행한 것이며, 윤 조사결과 마카로니에게 유인당해 싱가포르 북괴대사관을 갔다가 탈출한 것’으로 보도토록 하면서, 국내발표 보도문안 내용으로 ‘신상옥 납치사건, 하라타다아 끼 납치사건

440) 안기부는 김옥분(수지 김)을 공작명 마카로니라 칭하였다.

폭로로 곤경에 빠진 처지에 또다시 윤의 납치 실패로 국제적 비난이 자명해져 공작실패에 대한 책벌과 증거인멸을 위해 김옥분을 원상시킨 상태에서 살해'라는 구체적인 언론보도안 대책을 마련하여 장세동 안기부장의 지시대로 살인 사건을 은폐하고 대공사건으로 조작하였다.

또한, 김옥분의 시체가 발견된 후에는 '대공관련자 시체를 국내반입 시 가족들에게 하등의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지하여 유류품 인수 포기를 유도하고 사체처리 의뢰서 및 유류품 포기각서를 징구'하여 김씨 가족들의 문제제기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한편, 안기부는 윤태식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윤태식의 신병처리 및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윤태식은 북괴 납북 기도 탈출하였다고 진술, 국내외 기자회견시 북괴 악랄성 폭로, 대내외 홍보효과를 거양하여 국가이익을 도모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처 김옥분을 살해 유기 후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북괴 유인 공작에 따라 납치된 양 싱가포르 주재 북괴대사관으로 탈출, 입북하겠다고 요청한 사실로 판명되었다. 살인행위가 표출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권위 실추, 북괴 대남비방 및 대외 홍보효과 노정, 국민으로부터 대정부 불신임 고조(김일성 사망설 보도로 인한 신뢰성 실추), 사법처리시 비공개 재판이 불가능하고 공판기록 등 자료존안 관리상 공개될 가능성이 농후, 김옥분 유족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추 가능성 등 문제가 야기될 소지 다분하므로 사법처리가 불가하다. 국보법 및 살인행위에 대한 사법서류 작성 보완하여 약점 조성 자료로 활용하고 변질시 하시라도 처벌받는 다는 심리적 위압감을 주지 하여 본래의 기자회견내용을 반복 주입 세뇌시킴과 동시 동 내용을 녹음, 녹화 및 체반서류(자필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구비, 향후 여사한 문제점 발생시 대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위 대책보고서는 안기부가 윤태식을 수사하기 전에는 윤씨의 거짓 진술을 몰랐던 것처럼 적시되어 있으나, 이미 윤씨가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안기부 싱가포르 파견관은 '윤이 현재 자신의 진술에

의해 아축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으로 믿고 점차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염두에 둔 파견관의 교육 및 심리안정 유도작전에 의해 윤의 기분이 희망적으로 들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홍콩 경찰은 1987년, 1990년, 1995년 등 꾸준히 김옥분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수사공조 요청을 하였는데, 그 때마다 안기부는 '사건 실체가 밝혀지는 것 보다는 은폐하는 것이 국익에 이로움으로 홍콩 경찰에 대응 논리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사건을 종결토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윤태식을 면담시키면 사건 실체가 밝혀질 우려가 있으며, 만일 사건 실체가 밝혀진다면 국내외적으로 정부 이미지 손상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까지도 의구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홍콩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2000년 경찰청 외사분실은 김옥분 가족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북한 간첩으로 몰려 더욱 기가 막히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탄원하여 방송사에서 취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 윤태식 사건기록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국가정보원 2차장 엄OO은 당시 수사부서장 김OO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만나 윤태식 살인 사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나 대북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경찰은 수사를 중지하였다.

그 후 2000년3월9일 김옥분 가족의 고소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 발생 14년 10개월만인 2001년11월 서울지검 외사부는 윤태식을 살인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1987년 당시 윤태식이 안기부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을 검찰에 제공하였다.

2003년5월30일 윤태식은 대법원에서 살인죄 외에도 '패스21'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배임중재죄 등으로 징역 15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안기부가 조사 과정에서 윤태식의 범행 내용을 확인하고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형법상 범인은닉죄에 해당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국가정보원과 서울고등검찰은 2003년8월 재판부에서 42억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김옥분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12월24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 윤태식 등 6명을 대상으로 법원에 45억여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8 조직 사건

가 동백림 사건

1967.7.8-17간 중앙정보부(부장 김형욱)는 이례적으로 7번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 적화 공작단」 제하로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용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 운동권의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⁴⁴¹⁾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으며, 사건 관계자들은 1958.9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하고, 4회에 걸쳐 66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진실위는 50년대 후반부터 독일 등 在歐 한국인들은 정부의 지원 및 관심 부족과 동·서독간의 교류 분위기 속에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치밀하고 광범위한 심리전 공작에 노출되었으며, 실제로 다수의 한국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들이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 회유·포섭을 당하고 동백림 및 북한 방문·금품수수 등을 통해 주변인물 근황제보 및 대북 접촉 주선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사건을 발표하면서 “북괴의 지령수행을 위해 귀국 후 조○○는 활동 보고를 위해 재방북하였으며 황○○은 북괴 지령에 의해 민비연⁴⁴²⁾을 설립 후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등으로 동백림 관련자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였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간첩죄로

441) 중정은 발표 이후 7.14기준 총 수사대상 인원이 203명으로 검찰 송치 66명(구속 44, 불구속 22), 수사 중 138명 집계

442) 민족주의비교연구회(약칭 민비연)는 황성모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후진국의 민족주의를 비교 연구하는 서울대 사회대생들의 학술단체로서 63.9월경 발족. 64년에 회장을 역임한 김중태 및 현승일은 64년에 전개된 각종 한일회담반대 학생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지시에 따라 65.9월 해체됨.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중앙정보부는 검찰에 송치한 66명중 23명에게 간첩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기타 혐의가 미미하고 범의도 없던 인물에게도 범죄사실의 확대를 시도하였으며, 자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민비연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증거가 미미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후 판사와 검사들에게 금품 제공을 통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위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발표하면서 「간첩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작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였다. 중앙정보부 스스로도 동백림 사건에 대해 「간첩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백림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뒤인 1973년에 「북한대남공작사(제2편)」⁴⁴³⁾을 통해 동백림 사건을 ‘중요간첩단사건’으로 소개하면서 대공수사의 성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동백림 사건은 「동백림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건국 이래 최대의 간첩단 사건’으로 기억되어 왔다. ‘간첩’이 없는 ‘간첩단’ 사건이 된 셈이다. 심지어 동백림 사건 관련자의 가족들도 간첩의 가족으로 일생을 살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진실위가 면담한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는 윤이상이 간첩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면서, ‘남편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처벌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보부는 동백림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에 따라 외교문제를 간과하고 독일,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등 5개국에서 30명을 연행하는 등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인권 후진국으로서 오명을 자초하였다.

동백림 사건은 1967.6.8 치러진 7대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규탄시위의 확산을

443) 중정, 『북한대남공작사(제2권)』 광명인쇄공사(1973.3)

막고 박정희 정권의 공안통치 강화에 도움이 되었던 반면에, 중앙정보부의 해외활동 인프라가 훼손되고 외국의 방첩 기관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는 등 해외정보력 감소를 초래하였다.

나 |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64년의 「인혁당사건」과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 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다.

1964년의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3 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8월14일 중앙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 데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사건)은 1972년 10월 박정희의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3년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데모를 기점으로 유신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이 1974년4월3일을 기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 연합시위를 준비하자,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민청학련이 조총련·인혁당재건위 등의 배후조종을 받으며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7명에게 무기징역·1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1심 기준)하는 등 중형을 남발한 사건이다.

세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4월3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중정은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중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을 포함 모두 8명을 형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55분경부터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학생시위의 배후에 북한과 관련된 간첩 또는 조총련 등 공산계 불순세력이 있다는 중정 발표의 진위와 고문조작 여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져 왔다.

진실위 조사결과, 사건 당시 중정의 수사결과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의 혐의가 구체적인 증거나 신뢰할 만한 진술로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중정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 이들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과장, 왜곡, 조작되었던 것이다.

소위 인혁당사건(1964년)에 대해 중정은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한 ‘지하정당’으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5·16 군사 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 주요 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 해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인민혁명당이란 명칭은 여러 명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며, 강령·규약도 일부 구성원 사이에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결국 소위 ‘인혁당’은 ‘국가 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했다는 근거로 ‘창당을 주도’한 남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1967년 남파된 김배영의 존재를 들었다. 그러나 중정이 ‘남파간첩 김영춘’이라 발표한

인물은 4·19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고성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 김상한(1919년생)으로 김상한은 남과 간첩으로서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다른 대북정보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 임무를 받고 북파된 것이었다. 또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인혁)당 자금 수령 차’ 1962년10월 일본을 경유 월북한 것으로 발표된 김배영은 국내에서 인혁당사건이 발표되고 3개월이 지난 1964년11월 월북한 것으로 1964년8월에 발생한 인혁당 조직의 대북연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964년의 학생시위도 당시 중정의 발표처럼 ‘북괴의 지령’ 또는 ‘인혁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중정에 의해 인혁당과 학생운동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오병철 등은 학생데모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대일굴욕외교에 대해 학생들이 의분에 못 이겨 한 행동이지 어떠한 세력의 지령이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당시와 같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고문 등 불법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혁당 사건은 담당 공안검사들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여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민정당 박한상 의원이 인권옹호협회 이름으로 피의자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신직수 당시 검찰총장도 의혹이 증폭되자 고문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의 고문 상처를 확인하는 등 고문의 증거를 찾아내어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중정이 인혁당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민청학련사건에 대해 1974년4월25일 중정부장 신직수는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민청학련을 조직, 국가변란을 획책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관계로 보아 공산주의

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타도를 기도한 이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청학련’은 1974년3월27일 서울 삼양동 김병곤의 방에서 이철·김병곤·정문화·황인성 등이 모여 유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인성의 제안으로 붙인 명칭이었고, 단일한 명칭과 강령, 규약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었으며, 국가변란을 기도할만한 실행력을 지닌 하부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나아가, 중정 등 수사당국은 민청학련의 투쟁목표가 정부 전복 후 노동정권을 세워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그 유인물 및 선전내용이 북한방송 및 간첩지령과 일치하고 있어 순수한 학생운동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1974.4.3)에서 이미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와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4년4월21일자 「수사상황보고」에 ‘수사의 초점’을 ‘관련자(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지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해 이미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이전에 미리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에 의해 결론지어진 것이었다.

또한 당시 중정과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와 조총련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여 민청학련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참여한 중정 직원이나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여정남 진술’ 이외에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고, 민청학련은 유인태 등 서울대생들이 총괄기획하여 ‘인혁당 재건위’가 배후조종을 할 여지가 없었으며, 일부 수사관들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수사발표에 반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총련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과 관련해 당시 중정의 수사 상황보고에 첨부된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을 보면 ‘초기 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 되는 부분 삭제하라’고 하면서 ‘조서를 정리할 때 경력·모의 과정·목표배후·자금·활동·조직 등 상황은 지난번 부장님의 수사상황 발표문을 참조하여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조○○는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특채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굳히기로 하였음’이라며 중앙정보부는 그의 ‘진술조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점’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일본인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 왜곡하고 중정에 협조적인 통역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어 내란음모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를 상세히 지시했다.

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고문 등 불법수사가 이뤄지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잠 안 재우기·모욕과 협박 등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가해졌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중에서 고문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고백한 사람은 없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 관련 주장은 구체적인 고문상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교도관·파견경찰·검찰서기 등)역시 고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 피고인 48명에 대해 인정신문만을 한 뒤 대부분의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김지하 등 11명의 변호를 맡은 강신옥 변호사가 ‘애국학생에 대하여 검찰측이 사형과 무기를 구형한 것은 사법살인행위로서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자 그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함으로써

변호인의 변론권을 짓밟았다. 그러나 민간인인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군사법정인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점 자체가 곧 유신독재의 폭력적 인권침해의 적나라한 실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세칭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 1974년5월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추가발표에서 서도원, 도예종 등은 1969년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하면서 ‘인혁당 재건위’를 조직재건이 완료된 하나의 실체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을 인혁당재건위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이라고 수사과정에서 이름붙인 것으로 재판과정에서도 단일조직의 결성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단체’ 등 모두 3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 대법원에서 ‘인혁당재건 단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성격 규정되었다. 실제로 ‘인혁당재건위원회’라는 단체의 실재를 입증할 증거나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증거는 자백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8명의 관련자를 사형에 처한 세칭 ‘인혁당재건위’란 단체는 중앙정보부와 군사법정 검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수사의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실제로 존재한 지하조직의 정식명칭은 아니었다. ‘인혁당 재건위’란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의 명칭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재했던 조직이 아니다.

또한 중정 등 수사당국은 ‘인혁당재건위’가 국가변란을 기도하고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 중 경북 출신 인사들은 박정희 출신지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심인물들로서 1972년7월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자 서울 지역의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5·16 쿠데타 이래로 침체된 혁신세력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반박정희활동 내지 반정부활동일수는 있어도 체제전복이나 국가전복기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여정남 외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민청학련과 연결된 적은 없으며, 당시의 수사관련자들도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이라는 수사당국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나아가, ‘인혁당재건위’가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1972년 2월 하재완은 송상진의 도움을 받아 20여 일에 걸쳐 북한방송을 청취 하면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문을 노트에 받아 적었고, 서도원 등 일부 혁신계 인사들이 이를 돌려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파공작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할 때와 같이 A-3단파라디오를 통해 암호문을 수령하여 난수표를 통해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시절 북한방송을 녹취하는 임무에 종사했던 특무대 중사 출신의 하재완이 당대회보고문을 청취한 것을 지령수수로 본 것이고, 그 내용도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이 주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령으로서의 구체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 북한의 공작금이 인혁당 재건위에 흘러 들어갔다는 일부 전직 중앙정보부원들의 주장은 김배영의 자금이 강무갑을 통해 이수병에게 전해졌다는 것인데, 이미 1974년도 조사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시의 공소장에서도 빠진 것이다.

‘인혁당재건위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하여 피의자 가족, 변호인, 교도관, 파견경찰, 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도예종, 김용원,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등은 고문일시, 고문방법, 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증, 고문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 서울 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파견경찰이 중앙정보부에서 전기고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관이 군용전화 손잡이를 잡고서 기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렸다고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진술했다. 물론 당시 담당검사 송중의를 비롯하여, 중앙정보부의 이용택·윤종원, 파견경찰 손중덕·박재명·신흥수 등은 자신들이 고문을 하거나 고문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고, 고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3자적 위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 경찰 등 목격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게다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신청 기각, 발언 저지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조치도 이뤄졌다. 공판조서는 심문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위에 제시된 사건들은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되었다. 일단 대통령이나 중정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 맞추기가 진행되어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를 이룬 사건이다.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천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와 10년 이상의 장기 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 운동 탄압사건이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괴와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란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이다.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부의 존립의미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 본 행위는 분명 당시의 실정법 위반이겠지만, 그 처벌은 반공법으로 엄격하게 의율 한다 해도 최고 징역 1-2년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조작하여 8명씩이나 사형에 처한 조치는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위 사건들은 ‘북한과 연계된 조직’으로 결론지어지고 발표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관련자들을 배제시키고 ‘극형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인식을 유포시켰다. 그러나 정작 이 사실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신뢰할 만한 진술은 없이 관련자들의 자백과 일부 증거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왜곡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공안사건에서 ‘간첩’ 또는 ‘북한’과의 ‘연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동시에 이런 특성은 자칫 잘못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과 의도가 사건의 본질을 좌우할 개연성도 내포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사 활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법적 권한, 예산, 조직, 인원을 보장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사소한 듯이 보이는 행위 또는 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첩보들을 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고정관념을 고려할 때, 주어진 권한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과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충분한 증거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수사결과 등은 적지 않은 ‘의혹사건’들을 등장시켰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은 어떤 이유로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소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은 국제적으로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냉전 체제의 해체라는 변화, 국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 빠르게 진행된 민주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의 급진전 등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다.

안기부는 14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를 두 달 여 앞둔 시점인 1992년 10월6일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등 3개 간첩망 사건’을 포괄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발표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어 논란이 일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정권이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안기부는 1992년 10월 6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안기부는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남 공작기구를 총동원하여 남한내에 북한 공작 현지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규모의 ‘남한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고,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선실은 10여 년 동안 서울에 잠복하면서 북한 직파간첩 10여 명으로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과거 남로당과 같은 성격의 남한내 「조선노동당」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실체화시킨 「애국동맹」을 결성했다고 했다.

또 「민중당」을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별동대’로 만들어 대선시 반민자당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조성한다는 등, 1995년에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전략 하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대담한 대남 적화공작을 수행했다고 했다. 또한 김낙중 간첩망·손병선 간첩망 및 황인오를 책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3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400여 명이고 그 밖에 현재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나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영남·호남지역당과 정치권 및 재야, 생산현장, 학생운동권, 언론, 출판,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 구축된 ‘간첩망’을 포함하면 가담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규모의 ‘공산혁명 지하당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92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발표됨으로써 지금까지 사건의 조작 및 사전기획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안기부 간부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를 공개하고 발표문에는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과 민주당 입법 보조원의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진실위 조사결과, ‘민중당’ 등에 출입한 이선화와 황인오를 데리고 월북한 ‘할머니 공작원’이 북한 공작원 이선실로 실제 본명은 이화선이라는 안기부 수사결과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의혹은 그동안 관련자들 상당수가

이선실이란 이름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10여 년 동안 서울에서 재야 단체 등을 출입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했는데 안기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낙중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당시 안기부는 ‘김낙중이 1955년6월 자진 월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돼 36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해 왔고 북한의 지시로 민중당에 참여해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김낙중이 1990년에 공작원을 접선하고 공작금 210만 달러와 공작장비를 수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36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는 당시 안기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고, 김낙중이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민중당 참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김낙중의 민중당 활동이 전적으로 북한의 지시에 의한 지령 수행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손병선과 관련해서는 황인오와 같은 일본연락거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안기부가 일본 연락거점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왔다. 또 손○영이 지령전문 해독방법을 안기부에서 진술하기 전에 안기부가 이미 해독했다는 점에서 ‘A-3방송을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본 연락거점을 운용했던 제일동포 이○호가 황인오와 손병선의 대북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본 연락거점을 이용했던 손병선, 황인오, 손○영도 관련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이를 부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당시 안기부는 손병선과 황인오로부터 암호 해독체계와 장비 등을 확보한 후 지령전문을 해독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서, 공판시의 진술, 관련 증거, 진실위 면담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인오와 최호경 등은 대외 명칭을 ‘민애전’으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강원도 당으로 ‘조애전’을 조직했으며 산하조직으로 ‘95년위원회’를 재편한 ‘애국동맹’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황인오는 1990년10월17일 이선실, 김동식 등과 입북하여 북한으로부터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당’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로 돌아 온 후, 1990년12월경 이미 ‘95년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한민전’의 직접 지도를 받기 위해 변○숙을 월북시킨 바 있는 최호경에게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최호경은 황인오가 변○숙의 입북활동 결과 북으로부터 파견된 것으로 오인하고, 황인오를 책임자로 하는 중부지역당의 결성 준비에 착수해 강령과 규약을 만들고 정○수와 은○형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시킨 후, 1991년7월 말경 대외명칭을 ‘민애전’으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결성했다. 그 후 1991년10월경 황인오는 민애전의 중앙위원 은○형과 정○수를 해임하고 장○호를 새로운 중앙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새로운 조직원을 확보하고 ‘조애전’을 명칭으로 하는 강원도당을 결성했다.

한편, ‘95년위원회’는 최호경이 한민전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계급 주도의 정치투쟁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0년1월경 결성하기 시작한 조직으로, 최호경이 황인오와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95년위원회’의 지휘권을 황인오에게 인계하면서 ‘95년위원회’를 당적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성에 따라 ‘애국동맹’으로 전환했다. 황인오와 최호경은 ‘95년위원회’와 ‘애국동맹’에 관련된 북한의 지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으며, 애국동맹 구성원들에게는 민애전의 각종 유인물 배포, 북한에 보낼 정성금 모금과 축하편지 작성, 일본 연락거점 연락원 등의 임무를 실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황인오의 지도력에 대한 최호경의 불신이 고조되어 가던 가운데, 1992년5월경 중부지역당 편집부원이 선전문건을 인쇄하다 적발된 ‘나라기획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최호경은 비상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총책 황인오를 해임하고, 중앙위원회의 나머지 성원인 최호경과 장○호의 처리는 중앙당에 위임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민애전 중앙위원회를 해산하고 북한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합법 비밀조직이었던 95년위원회 또는 애국동맹의 하부 구성원들은 최호경이 황인오에게 95년위원회의 지휘권을 인계한 사실, 95년위원회가 애국동맹으로 전환된 사실, 중부지역당과 애국동맹의 조직적 관계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또 비합법 비밀조직의 특성상 복과 직접 연결된 중부지역당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 내의 자생적 운동조직인 95년위원회 또는 애국동맹의 다수 구성원들의 활동은 중부지역당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지도부의 활동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도 안기부의 사전기획과 고문불법수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전체 사건에 대한 단서를 미리 입수하고도 수사 착수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했거나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당시 수사과정에서는 적법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상당한 수준에서 제한·통제했으며 허용한 변호인 접견에서 조차 비밀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또 실질적으로는 긴급구속을 하고도 ‘인지보고서’에 ‘임의동행’으로 기재하고 구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긴급구속된 날이 아닌 영장 집행일을 기산일로 삼아, 약 이틀간 피의자로서의 권리보장이 힘든 상태를 유발시켰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은 없었지만 일부 구타, 잠안재우기, 벌세우기, 인격모욕, 고문협박 등 여러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사건의 실체가 상당부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과장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건의 규모를 과장하고 일부 관련자들이 ‘간첩’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했으며, 일부는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선실이 직과 간첩 10여 명으로 ‘현지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김낙중 망,

손병선 망, 황인오 간첩망의 중부지역당을 중심으로 한 ‘남한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고 발표하고, 그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도 ‘조직원이 400여 명’이고 ‘남한조선노동당은 중부, 경인, 영남, 호남 지역당으로 구성’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위 3개의 사건은 개별 조직사건으로서, 이들이 ‘남한조선노동당’ 또는 ‘남한내 조선노동당’이라는 단일한 조직을 결성했다고 볼 수 없고 조직 규모도 다소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었다. 특히 ‘간첩단 사건 또는 무전 간첩망의 조직원이 400여 명’이라고 발표하고 관련자 62명의 인적 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모두를 간첩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400여 명의 간첩으로 구성된 대규모 간첩단’인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인적 사항과 행적이 공개된 62명이 ‘간첩’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분단된 상황에 있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간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고려할 때,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첩’이라고도 할 수 없는 다수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 그리고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간첩단 관련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간첩단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많은 단서와 첩보를 보유하고 내사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다가 대선 이후로 수사결과 발표를 미뤘다. 그러다가 대선 이후에는 ‘야당의 위축과 견제 그리고 7공 국정 운영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유보하고 계속 내사’할 것을 계획하는 등 ‘간첩단 관련 정치인 수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문제다. 또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의지나 정체성’과는 관련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위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굳이 발표문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과 민주당이 연결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 것은 국내 정치문제에 대해 불개입의 원칙을 엄정히 지켜야 할 정보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안기부가 대선 직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나 미확인 첩보를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 것은 안기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했다는 의혹을 불필요하게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어느 면에서는 안기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와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들은 그 실체가 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발표 시기, 일부 과장된 내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공개, 이례적인 홍보 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당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런 점에서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때로는 권력자의 의중에 영합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해 받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중정-안기부 간첩수사와 처리상의 문제

1 수사 및 발표 과정

가 내사에서 수사의 착수까지

수사기관은 수사의 전 단계로서 범죄를 인지·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내사를 한다. 대공수사권을 가진 중앙정보부-안기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범죄행위에 대한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활동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업무이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앙정보부-안기부의 공안사건에 대한 내사는 정당하다. 그러나 내사단계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따라야 할 ‘범죄의 내사’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20조를 들 수 있다.

내사란 대상이 된 피의자가 모르게 주변인물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데, 내사와 공개수사의 차이는 피의자의 연행 또는 출석 요구 등으로 피의자가 수사당국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여부이다. 진실위에서 조사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박동운 일가 간첩단 사건, 정영 사건, 차풍길 사건 등은 모두 기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사 단계를 거쳤다.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는 송창섭이 남파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 중앙정보부, 경찰, 보안사 등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이들의 동향을 내사했으며, 1982년 3월 초순 관련자들의 연행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1981년 12월 5일부터 약 3개월 간 주변인물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다. 박동운 사건의 경우도 1981년 3월 관련자들의 본격 연행에 앞서 1980년 10월 14일부터 박동운의 외숙인 이영준의

남파가능성과 접촉인물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다. 차풍길 사건의 경우도 수사부서는 1982년 1월 28일부터 차풍길에 대한 첩보를 다른 부서에서 이첩받아 내사에 착수하여 약 6개월 후인 8월 7일일 차풍길을 연행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정영 사건의 경우는 인구 100여 명의 작은 섬 미법도를 대상으로 1978년부터 오징어공작, 미나리공작, 내왕선 공작 등 다양한 공작을 벌였다. 이를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 이상 공안당국이 이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네 사건 모두 안기부가 내사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할 당시, 안기부는 장기간의 내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범죄의 단서나 혐의를 잡지 못했다. 박동운 사건의 경우, 안기부는 진도 출신의 박씨라는 사람이 남파되었다는 첩보를 토대로 “박씨가 남파되었다면”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박씨는 박영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다시 “박영준이 남파되었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그가 누구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가를 놓고 만약 박영준이 남파되었다면 박동운, 이수례 등 가족들과 접촉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이들을 연행하여 불법감금과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정영 사건의 경우 정영, 정진영 등 사건 관련자들은 사건 발생 1년 반 전인 1982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안기부에 연행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방면된 바 있다. 차풍길 역시 안기부는 그의 주변에 국내 관련망이 있을 것이니 이를 일망타진하고, 나아가 일본의 대남공작망을 와해시킨다는 목표로 그의 ‘역용공작’을 위해 그를 연행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자 그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송씨 일가 사건에서도 충북 출신 송충건이 남파되었다는 막연한 첩보로 송충건이 송창섭일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송씨 일가를 연행하였다. 안기부는 송씨 일가가 1960년 송창섭이 남파되었을 때 그를 만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이들의 간첩혐의에 대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이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100여일 간 불법감금과 고문을 가했다.

수많은 간첩 피의자의 연행이 장기간의 내사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혐의나 단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은 놀라운 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내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나 범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물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가며 장기간에 걸쳐 내사를 해서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채 사건을 덮는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책임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영 사건의 경우 안기부 본부가 1982년 2월의 연행조사에서 정영의 자백을 허위로 옳게 판단하여 풀어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1983년 9월 인천지부는 별다른 새로운 첩보도 없는 상황에서 정영을 연행하여 유사한 구조의 자백을 받아내어 그를 간첩으로 기소하고 말았다.

위의 사례에서 볼 때 간첩사건에서 내사에서 공개수사로의 전환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일단 피의자를 연행하여 ‘강력수사’를 하고, 가택수색을 해 보면 구체적인 증거나 자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장기간 내사에도 어떤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초조감을 덮으려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사건의 경우 당시의 안기부 수사관들은 내사단계부터 이미 이들이 간첩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확신이 틀릴 수 있다는 의심을 그들은 하지 않았고, 이 확신을 밀고 나갈 때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영 사건의 경우 일부 이런 장치가 작동하여 피의자가 일단 방면되었으나 “1년 후에 다시보자”는 수사관의 말처럼 이들은 1년 여 후에 간첩으로 기소되었다.

나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

“가보면 압니다.”

차에 타면 그 때부터 욕이나 반말이 시작되고 머리를 숙여야 했다.

영장의 제시도, 묵비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관이 말해 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의 고지 같은 것도 없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본인들도 자신이 끌려간 곳이 어디인지 몰랐다.

국가보안법은 ‘특별소송규정’을 두어 사법경찰관서와 검찰에서 각각 1회 10일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락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데,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나 사법경찰관서인 중앙정보부-안기부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등 총 50일간을 수사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중대범죄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특별소송규정의 위헌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간첩수사에서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이런 규정을 처음부터 무시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간첩 사건치고 불법구금이 없었던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안기부 청주지부에서 시작하여 본부에 와서 마무리된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최장 116일에서 최단 75일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은 안기부에 법적으로 허용된 수사기간 20일의 4-5배를 넘기는 초장기간 불법구금된 채 수사를 받았다. 안기부의 지하실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미치지 않는 성역이었다.

가족들은 도대체 갑자기 끌려간 사람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몰라 여러 날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변호인의 접견도, 가족의 면회도 꿈도 꿀 수 없었다. 이 고립무원의 긴 기간 동안 피의자들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으며 손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안기부 수사관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쓰고 또 쓰고 해야 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로 그런 일을 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진저리를 치며 회상했다. 이 오랜 기간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피의자들은 완전히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수사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안기부는 연행조사하였으나 도저히 혐의를 씌울 수 없는 경우였던 박동운 사건에서 박동운의 외숙인 이영남에 대해서 “본명을 방면할 시 타 연루자

및 피의자들과 통모하여 부재 증명의 날조 및 증거 인멸 등 공소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신병 확보하였다가 관련 피의자 기소 후 신병 처리하겠음”이라 하여 1981년 3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려 65일간 잡아두기까지 했다.

다 | 고 문

안기부 조사실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먼저 군복 등 안기부가 제공하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딴 세상에 왔다는 것을 피의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조치이다. 진실위의 1차 조사대상이었던 1, 2차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이나 2차 간첩분야에서 조사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박동운 사건, 차풍길 사건, 정영 사건 등 4개 사건에서는 모두 피의자들에 대해 고문과 가혹행위가 행해졌음이 확인되었다. 70, 80년대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수많은 간첩사건들은 모두 불법구금과 고문이 없었다면 성립할 수 없다.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음에도 면담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그 당시의 이야기를 묻는 것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될 정도로 그들의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깊었다.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해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고문과 가혹행위의 형식은 참으로 다양했다. 온 몸 구타, 손바닥 발바닥 등 특정부위 때리기,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 고문, 체모 불태우기, 잠 안재우기, 거꾸로 매달기, 통닭구이, 비녀꽂이, 손발톱사이 찌르기, 손발톱 뽑기, 원산폭격 등 군대식 기합, 손가락 사이 나무막대기 끼우기 등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고문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고문 소리 듣게 하기, 가족을 데려다가 고문하겠다고 협박하기, “너 같은 놈 하나쯤 심문투쟁하다 죽었다고 해버리면 그만이다”라거나 실제 권총을 들이대고 쏘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협박하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자극하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의 방식은 끝이 없었다. 송씨 일가

사건의 송기복은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안기부가 “간첩 공장”이라고 대들었다가 더 심하게 맞았다고 면담에서 진술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황대권은 “이 기관의 책임자라 할지라도 발가 벗겨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달 여를 지낸다면 자신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인하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⁴⁴⁴⁾

수사기관이 고문을 하는 이유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증거 항목에서 살펴보겠지만, 간첩사건에서 변변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증거도 없는데 왜 피의자들이 형량이라고는 딱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일까? 그 답은 초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자백은 증거의 왕이 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은 3공화국 헌법 10조 6항으로 있다가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으나, 5공화국 헌법에서 11조 6항으로 부활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법원은 안기부 등 수사기관이 똑같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받아낸 공범의 자백, 또는 안기부를 거쳐 법정에서 나간 참고인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보강증거’로 기꺼이 인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란 존재하지 않았다.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을 방어할만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것, 또는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검찰에서 용기를 내어 안기부에서 행한 자백을 부인할 경우, 검사는 안기부로 돌려보낸다고 으박지르거나, 안기부 수사관을 불러오거나, 안기부 수사관

444) 황대권, 「나는 어떻게 하여 간첩이 되었는가? - 안기부의 간첩조작극」, 1988년 6월 6일, 민주화운동사료관 DB, p3.

으로 하여금 구치소로 피고인들을 면회 가게 만들었다.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는 “안기부는 검사인 내게도 섬뜩한 곳”이라고 했다.⁴⁴⁵⁾ 피의자들은 안기부란 말만 들어도, 수사관의 얼굴만 보아도 벌벌 떨며 움츠러들었다. 1980년대에는 고문에 대한 열렬한 고발자였던 조갑제는 “고문한 형사들이 검찰 수사단계에서까지 활동한다면, 위압 상태의 연장이라고 보고 진술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지적 엘리트인 검사가 고문을 하지 않으리란 믿음은 한국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⁴⁴⁶⁾

법정에서 고문을 폭로해도 소용이 없었다. 법원은 김근태 사건에서처럼 증거보존신청 기각과 면회의 금지를 통해 고문의 은폐에 적극 협력하기도 했고, 30분도 걸리지 않을 고문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외면했다. 불법구금의 문제는 판사가 기록만 꼼꼼히 읽고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주변의 한두 사람만 증인으로 불러 물어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런 최소한도의 책임을 다 한 법관은 거의 없었다.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인권변호사들의 노력으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 이론이라는 퇴로를 만들어 고문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문 수사관을 고발해 보아야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부가 몇 번이나 바뀌도록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이 고문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면 수사기관에서 고문이 사라졌을 것이기에 한국사회에서 공안사건에서 고문이 만연한 것은 법원의 책임이기도 하다.⁴⁴⁷⁾

안기부는 간첩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를 법정투쟁 전술로 몰아갔다. 안기부는 송씨 일가 사건에서 고문이 논란이 되자 자수간첩 김용규를 출두시켜 간첩들이 법정투쟁 전술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공판 때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445) 안상수, 『안검사의 일기』, 새로운 사람들, 1998.

446) 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한길사, 1986, pp284-285.

447) 고문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1, pp373-430을 볼 것.

“너무 심하게 고문하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식으로 끝까지 우겨대면 된다”고 교육받았다고 증언하도록 하였다.⁴⁴⁸⁾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폭로되자 당황한 5공정권은 안기부의 주도하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때 안기부가 작성한 보도자료는 검찰을 통해 배부되어 각 언론에 전문이 보도되었는데, 이 자료는 권모양의 수사과정에서의 ‘성 모욕’ 주장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 좌경세력의 조작이라면서, 안기부가 수사한 송씨 일가 사건의 송지섭, 서울·안동 거점 간첩단의 안승윤 등이 만약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부인하라는 법정 투쟁 진술을 복귀로부터 교육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⁴⁴⁹⁾

라 | 수사서류의 허위 작성

공안사건의 경우 ‘관행’이란 이름으로 수십 일간의 불법감금이 당연하게 이루어졌지만, 수사기관도 이것이 불법임을 알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이를 감추려 하였다. 공안사건의 수사관련 서류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쓰게 되는 것이 「인지동행보고서」인데, 이 「인지동행보고서」부터 허위로 작성되었다. 진실위가 조사한 송씨 일가 사건 등 간첩 사건에서 검찰에 송치된 서류에 포함된 공식적인 「인지동행보고서」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 송치일자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역산해서 국가보안법의 특별형사소송규정에 따른 구금일수인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행일자가 조작된다.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 제출되는 수사보고서와는 달리 송치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안기부 내부의 수사계획서나 수사보고서에는 원래의 연행일자가 그대로 나와 있다. 「인지동행보고서」는 형식상 해당사건에서 안기부가 처음 작성하는 공식수사서류인데, 이것부터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448) 송씨 일가 사건 1심 13회 공판조서, 1982년 11월 30일, 증인 김용규 항복.

449) 『중앙일보』 1986년 7월 17일자.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안기부에서 63일간 불법 구금되어 수사를 받은 황대권이 안동교도소에서 교도관 몰래 쓴 「나는 어떻게 하여 간첩이 되었는가? - 안기부의 간첩조작극」은 안기부에서의 수사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⁴⁵⁰⁾ 그의 수기에 기록된 수사의 진행과정은 다른 간첩 사건 피의자들의 면담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황대권의 회고에 따르면 “처음 3일 동안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으며 피의자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케 하여 그들의 의도에 대해 저항할 기력을 완전히 빼어놓는다”는 것이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처음 3일 동안 피의자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대충 얻은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간첩으로 확실히 몰아넣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짚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시나리오를 “피의자가 스스로 인정케 하는 고통스런 작업”에 들어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기부에 잡혀온 이 순간까지의 성장과정을 세세하게 쓰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황대권은 두 달 간 자신이 쓴 “16절지 갱지가 거의 책상 높이까지 쌓였으며, 쓰고 버린 볼펜이 12자루”나 되었다고 회상했다. 진실위가 면담한 간첩사건 피의자들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결같이 오른 손 셋째 손가락 첫 마디에 굳은살이 박여 있었다.

처음 자술서는 일상의 언어로 쓰게 마련이지만, 이는 곧 간첩 사건 특유의 문체로 바뀌게 된다. 황대권은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몇날 몇일 오랜만에 동창 친구를 만나 종로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담담하게 기술하면 이것은 영락없는 빠따감”이었다면서 “한 차례 얻어터지고 나서” 그 문장은 “몇월 몇일 나는 간첩으로서 친구 XXX를 포섭하기 위해 만나 자고 약속한 뒤 서울 종로거리의 정세를 파악할 겸 종로 XX주점에서 친구를 만나 그로부터 학생들의 동태를 전해 듣고 나는 그에게 정부를 비방하는 말을 해주었다”는 식으로 “고쳐 써야만 했다”고 회고했다.⁴⁵¹⁾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신영복도 구타와

450) 황대권, 「나는 어떻게 하여 간첩이 되었는가? - 안기부의 간첩조작극」, 1988년 6월 6일, 민주화운동사료관 DB.

451) 황대권, 앞글.

고문도 힘들었지만, 조사 자체가 고문이었다고 회고했다. “청년기의 고민과 방황이 어린 수많은 만남과 토론, 그리고 서로 빌려주고 빌려 보았던 수많은 책들은 몇 십장의 자술서와 몇 십장의 조서와 몇 줄의 법률용어에 의해 온통 조직적인 관계로 규정됐다”는 것이다. 신영복은 “지난 수년간 자신이 행한 활동을 담은 것이지만, 수사기록은 외국어보다도 낯설었다”고 회고했다.⁴⁵²⁾

모든 피의자들은 자신의 성장과정과 일상을 오로지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꾸며 써야 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술서를 쓰는 동안에는 얻어맞지는 않기 때문에 불편을 바꿔가며 허벅지 높이까지 오는 수천 장의 자술서를 쓰고 또 썼다.

이런 자술서를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다수의 피의자들이 심한 고문 때문에 북한에 갔다 왔다고 자백을 했다고 면담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영복도 현역 군인신분으로 근무기록이 있어 북에 갔다 올 수 없다는 것을 중앙정보부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회고했다. 송기복은 자신도 안기부의 고문에 못이겨 북한에 갔다왔다고 허위자백을 했더니, 어디로 갔다왔는지 입북 경로를 대라기에 막막하여 판문점으로 갔다고 했더니 “이년아, 네가 뭔데”하며 몹시 때려 다시 “비행기 타고 일본을 거쳐서 갔다”고 했더니 그런 노선이 어디 있냐며 또 때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얘기해 주세요”라고 빌었다고 회고했다. 같은 사건의 송기홍, 송기수, 송희섭, 송광섭 등도 모두 북한에 갔다 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말했다. 이들의 입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수사계획서에는 나오지만, 피의자신문조서나, 의견서, 공소장 등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안기부가 이런 진술을 강요했었던건

452) 신영복 교수와 한홍구 위원과의 인터뷰, 2006년 8월,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교수 연구실. 또한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한홍구, 「신영복의 60년을 사색한다」, 『대한민국사』 4, 2006, 한겨레신문사, pp195-196.

실제 이들이 입북한 적이 있는지 수사착수 단계에서는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가장 무거운 혐의라 할 수 있는 입북밀봉 교육을 시인케 하는 것은 피의자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십 일간의 기간 동안 십 여 자루의 볼펜을 바꿔가며 수백 또는 수천 쪽의 자술서와 조서를 작성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다 공문서도 아니고,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도 않으며,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는다. 피의자가 완전히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수사기관의 요구대로 진술을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공식적인 조서 작성이 시작”된다.⁴⁵³⁾

이 기록은 너무나 매끄럽다. 이미 피의자들의 진술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여러 명인 간첩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을 직접 신문하는 수사관들과는 달리 종합반이 각 조사실에서 올라온 진술을 종합하여 진술 내용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많은 피의자들은 면담과정에서 조사 중에 쪽지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며 혼이 난 뒤 거기에 맞춰 새로이 진술해야 했다고 말했다. 송씨 일가 사건의 김춘순은 “나는 지금도 하얀 쪽지만 보면 무서워”라며 몸을 떨었다.⁴⁵⁴⁾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안기부 수사기록을 보면 피의자들이 사형이나 무기만이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1회 신문조서부터 순순히 자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문조서가 작성된 날은 안기부가 허위로 작성한 「인지동행보고」에 기록된 연행일자로, 실제 연행일자에서는 수십 일 뒤이다. 그 수십 일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공식 수사기록은 아무런 설명 없이 피의자는 연행된 뒤에 1회 신문에서부터 엄청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45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나는 간첩이 아니다』, 2006, p9.

454) 김춘순과의 면담

보안사령관 출신인 전두환 대통령부터 간첩사건이란 원래 증거가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⁴⁵⁵⁾ 꼭 전두환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안기부의 수사권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간첩 사건은 증거가 없다는 말이다. 간첩이란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매우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도 않고,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록 어디를 봐도 이들이 실제로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는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보안사가 수사한 간첩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을 때 안기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법원이 “입북사실 지령사실 등 사실상 입증 불가능”하다는 간첩 사건의 특수성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⁴⁵⁶⁾

사실 간첩사건에서 무전기, 난수표, 권총, 독침, 암호문 같은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면 일부 불법수사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조작’의혹이 제기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간첩사건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사례는 별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례에 비해 훨씬 적다. 심지어 1982년 안기부가 수사하여 발표한 황용운 사건의 경우는 아예 수사기록에 증거물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의자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정영 사건이나 황용운 사건의 경우 안기부 내부자료에도 이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물증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을 정도이다.⁴⁵⁷⁾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공안당국은 나름대로 증거물을 내어 놓는데,

455) 김병진, 『보안사』

456) 안기부, 「간첩 심판식에 대한 항소심, 간첩혐의 무죄선고 경위 등 확인보고」, 일자미상(내용상 1987년 2월)

457) 정영 사건 관련-〈인천분실, 간첩 등 혐의자 수사상황보고〉 중 ‘부정적인 면 : 피의자들의 범법사실 인정 외 물증 무(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방증자료 전무)’
황용운 사건 관련-〈간첩용의 납북귀환어부 심사계획서〉 중 ‘부정적인 면 : 대상자 연행 심사 과정 혐의내용 부인시 구증 자료 회박’

오늘날 그 증거물을 보는 심경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간첩이 제보한 간첩 사건”으로 인구 100 여 명의 작은 섬에서 줄줄이 간첩 사건이 발생한 미법도 관련 사건을 보면 정영 사건의 경우는 별상마님이라는 무당 모자와 옷, 옷을 찢 한지, 그리고 100원 짜리 지폐 한 장인데, 남파공작원에게서 받은 공작금을 이 모자에 넣고 절을 하고 보관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보면 공작금은 500원 짜리로 받았으니 100원 짜리는 공작금의 일부도 아니고, 이 별상마님 옷은 1969년 당시 사용했던 것은 낡아서 버리고 새로 마련한 것이며 이를 찢 한지 역시 최근에 바꾼 것이다. 정영과 같이 납북되었다가 그보다 앞서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검거된 안장영 사건의 경우 증거는 무인포스트에 사용되었다는 돌과 빈 병인데, 바닷가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빈병과 사방에 널린 돌이 어떻게 특정 ‘무인포스트’ 설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박동운 사건의 경우는 무전기를 부쳤다는 자귀 자루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박동운의 죄목이 증거인멸이 아닌 다음에야 자귀 자루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안기부는 일제 라디오를 증거물로 제시했다가 이 라디오의 생산년도가 안기부가 제시한 간첩행위가 벌어진 때보다 뒤라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증거물에서 철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사건의 한광수의 증거물은 그가 무인포스트를 파러 갈 때 입었다는 등산복과 모자이다. 차풍길 사건의 경우 차풍길이 제일공작원에게서 받았다는 가스라이터와 수건이 증거이고, 그가 일본에 갈 때 입었다는 양복이 이 옷에 보고문을 넣고 갔다고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편 1977년 안장영 사건에서 안장영의 북한 공작원 접선, 밀입북,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는 무인포스트용으로 사용됐다는 종근당 제약 공병 하나와 역시 무인포스트용으로 사용됐다는 납작한 돌 1개, 그리고 1975년 인천 만석우체국에 15만원을 1년 정액 저금한 정액 우편저금 증서 1개 뿐으로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빈병과 사방에 널린 돌이 어떻게 특정 ‘무인포스트’ 설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위가 조사한 사건에서 안기부에 의해 제출된 증거품 목록】

사건명	관련자	증거품(압수품)	관련성	비고
	송기홍	칼(독일제 주머니칼)	73.6.초 한경희가 참외 깎고 있을 때 물으니 “아버지가 주신거다, 내가 죽으면 가지라” 하여 지금도 보관	1심 공판에서 인정했으나, 면담에서 부인
		사진(송기홍, 송기복)	64.4.초 홍익전문학교 소풍 사진, 누나 송기복으로부터 송창섭 배웅한 곳에 대한 설명 들음	1심 공판 부인
	송지섭	카세트 라디오(빅사운드, 보고산업제품)	A-3 지령수신	1976년까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소지한 사실도 없음(항소이유서)
		확대경		
라디오(캐논소형)				
송씨 일가	송기섭	라디오(일제 쇼날 트란지스타)	송창섭으로부터 받았다는 라디오	검찰진술에서 인정, 생산년도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해 미제출
		여산송씨 호군공파 종계회의록	시국 비판 등 대정부 불만토 로를 통한 동조세력 규합 목적 *88회는 성우회에서 임원이 못되어 제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조직	
		88회 회칙		
		88회 회의록		
		88회 회원명단		
		성우회 회원명단 및 회칙		
	성우회 회의록			
송기복	미화(1만 2백 5불)	송창섭 지령에 의한 모 한경희 만불비축 유언, ‘다 써버렸으니 마련하여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주어라’	검찰진술에서 부인한 것으로 기재	
한광수	등산복(카키색 상)	송창섭이 지정해준 무인포스트 에서 공작금 발굴시 착용한 복장		
	등산모(국방색)			
	정구라켓			
송기준	우산(일제흑색)	한경희가 송창섭이 준 돈으로 구입해준 회갑선물		
	수첩			
송기수	라디오(일제 소니트란지스타)	67.10. 하순 한경희 A-3 청취 조력	검찰진술에서 인정, 생산년도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해 미제출	
정영	정영	굿할 때 무당이 쓰	정영이 1969년 정진구에게	

		는 모자(별상마님모자) 증제1호	받은 공작금을 별상마님 모자에 넣고 절을 했다 함	
		굿할 때 무당이 입는 전복(별상마님옷) 증제2호		1969년 당시의 별상마님옷은 낡아서 버리고 새로 장만한 것임
		한지(창호지) 증제3호		별상마님모자와 옷을 포장해둔 한지로 새로 마련한 것임
		한화지폐(100원권) 증제4호		별상마님모자와 옷 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공작금의 일부는 아님(공작금은 500원권 지폐)
차풍길	차풍길	칼라사진15장 (증11-22, 30-32호)	혐의내용과 관련된 현장에서 찍은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82년 도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신문기사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이 상식이나, 조서에는 이를 '기억' 하고 있었던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을 은폐하려함 o 기타 포섭과정이나 지령과정에서는 증거로 할 만한 물건이 전달된 사실이 없고 모두 열람 또는 교양 받은 것으로 돼 있고, 금품을 수수한 것도 없음
		썸그라스(썸워드)		
		봉급명세서 5매	고베고교 재직사실과 관련	
		여권(번호678032) 1매	여권 및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독일사실과 관련	
		재직증명서 1매	고베고교 재직사실과 관련	
		신사복 상의 1착	1978년 도일시 신문기사를 메모한 보고서를 넣어 갔던 옷	
		까스라이타 1개	1979.3 요시무라로부터 받은 것	
		봉급명세서 8매	고베고교 재직사실과 관련	
여권(번호 0280044) 1매	여권 및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독일사실과 관련			
박동운	박동운	육군본부 팜플레트 사본	1971.10.5부터 북한으로 '탈출' 했다는 17일 동안 군복무 경력과 훈련내용 등에 관하여 군사기밀을 누설	동 팜플레트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육군본부가 만든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박동운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단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박동운에 대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팜플레트도 증거가 될 수 없음
		박동운의 수첩	1971.10 월북 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풍국제지 근무기간을 10월말까지 허위 기재	동 수첩은 오히려 박동운의 공소 사실을 부인할 결정적인 알리바이이나, 박동운의 허위 자백을 받아

			내어 증거를 날조한 것임
	라디오	박동운이 북한방송 청취에 사용	박동운이 간첩활동을 하거나 간첩 활동에 쓴 무전기를 파괴하는데 쓴 것이 아니고 박동운의 외삼촌의 집에 고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것임
	자귀 1 자루	박동운이 북한과 통신한 무전기 파기에 사용	1979년에는 농협 진도군 지부에 전자복사기가 없어 복사가 불가능함
	농협 인사기록 카드 등	1979년 북한공작원에게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사본 교부	

1981년의 석달윤·김정인 사건 당시 안기부는 난수표, 단파라디오, 권총 등 각종 장비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판결문의 압수목록에 기재된 것은 간첩장비는 전혀 없고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석달윤), 반지(김정인), 머플러뿐이었다. 안기부는 재판도 청구하기 전, 애초 이들과는 무관하고 압수품에도 포함되지 않은 간첩장비들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였다.

재일동포 간첩 사건이나 일본 관련 간첩 사건의 경우 영사증명이 중요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은 이를 유죄의 경우로 삼았다. 이 영사증명은 주일 대사관에 근무하던 안기부 직원이 발행한 것이다. 차풍길 사건에서도 영사증명이 제출되었는데, 내부 기록을 보면 안기부 직원 자신이 파악한 내용 또는 일본 공안당국의 통보와는 정반대인 내용을 본부가 요구한대로 작성하여 보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많은 간첩사건에서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채택된 영사증명제도의 신뢰성을 뒤흔드는 것이다.

안기부는 간첩사건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들의 증언과 진술에 때로는 물리력으로 때로는 위압으로 진술의 내용을 왜곡시켰다. 송씨 일가 사건에서 송기준의 입북 혐의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송기준이 국내에 있었다고 증언한 김재철은 안기부에 의해 위증죄로 구속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았다. 그는 위증죄로 실형을 살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여 송기준의 입북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 일가 사건의 피의자들과 동향인 남파간첩 박종덕은 송씨 일가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안기부에 끌려와 한경희가 간첩이라는 위증을 할 것을 강요당하면서 심하게 구타를 당해 법정에 나가 안기부의 요구대로 증언했다. 차풍길 사건의 참고인들은 안기부에 끌려와 차풍길이 이미 진술했으니 당신들이 확인하라는 안기부의 위세에 눌려 안기부와 법정에서 차풍길이 조총련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안기부는 차풍길의 사촌 누나 차기순이 안기부가 차풍길이 재일공작원에게서 받았다는 수건 등이 사실은 자신이 준 것이라고 차풍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러 입국하자 그를 압박하여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바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 침해 : 변호인 접견권 등

간첩 혐의로 중정/안기부에 체포될 경우 곧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피의자의 변호권에 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도 공안사건 피의자들은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했다. 혹은 설혹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간첩 사건에 선뜻 나서서 변호사를 찾기란 매우 어려웠다. 심지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변호에 적극 나섰던 인권변호사들조차도 ‘간첩’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진실위에서 조사한 정영 사건의 경우, 정영의 처 황문자가 빗까지 얻어서 간신히 선임한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이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정영의 변호인을 사임해 버렸다. 김상철 변호사의 노력으로 간첩죄 무죄판결을 받아낸 남북귀환어부 김성학도 『신동아』 1988년 10월호에 게재한 「간첩으로 조작된 72일간의 고문」이라는 글에서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나는 아내에게 변호사를 꼭 선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돈도 돈이지만 국가보안법사건을 선뜻 맡고 나서주는 변호사가 없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동분서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뛰어다녔고 그 결과 『고시계』를 발행하고 있던 김상철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아주었다.”

김성학 사건이나 진실위에서 조사한 송씨 일가 사건 등의 경우 ‘운 좋게’ 유명한 인권변호사들이 변론을 맡으면서 불법 장기구금 문제나 고문 등 가혹행위 문제 등을 제기하고 혐의 조작에 항변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간첩 사건 피의자들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경제사정 등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첩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에게 “모든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고 설득하곤 했다.

석달윤 사건의 경우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재판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및 가족들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출석이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82조를 들어 항소심 판결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영 사건에서는 정영, 정진영, 황정임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1심 1회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형을 받게 된다. 그러니 무조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고 설득해서 세 명의 피고인들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차례로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영 등이 “(국선 변호인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하고 동정을 받으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했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을 재촉했다”라면서 항소·상고를 하는 동안에도 국선 변호인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무식의 소치’로 간첩행위를 저질렀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영 사건의 1심 국선 변호인은 더구나 과거 미법도에서 발생한 거의 유사한 간첩 사건인 안장영 사건의 1심과 2심을 담당했던 변호사이기도 했다.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간첩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간첩죄 무죄판결이 나온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사건과 진실위에서 다룬 송씨 일가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성학 사건의 경우, 당시 김상철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김상철 변호사가 검사에게 간첩죄의 증거에 해당하는 난수표나 무전기 등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검사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대답했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부터 간첩죄와 국가기밀탐지 부분을 빼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만으로 기소했던 것이다.⁴⁵⁸⁾

송씨 일가 사건에서는 홍성우, 황인철, 조준희 등 당시 인권변호사 4인방 중 세 명이 결합하면서 장기 불법 구금 문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문제, 검찰 진술조서의 임의성 문제 등을 강력하게 제기, 두 번의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피의자/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가 피의자/피고인의 변론권 중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라면, 그 다음으로 국선 변호인이든 사설 변호인이든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 문제가 제기된다. 김근태 사건 등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둘러싼 재정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높아지면서 1990년대 들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피의자/피고인이 사법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았다.⁴⁵⁹⁾

진실위에서 조사한 네 건의 간첩사건 중에서만 보더라도 네 건 모두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는 일체 변호인이나 가족을 접견할 수 없었다.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인권변호사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끝나고 15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었으며 정영 사건과 차풍길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1심 1회 공판정에서 처음으로 국선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법경찰이나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범과의 모의 방지, 증거 인멸, 그리고 간첩 사건의 경우 역용공작의 여지가 있을 때 등이다. 그러나 차풍길 사건의 경우 이미 안기부에서 역용공작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법처리로 넘긴 것이며 공범도 없었다. 증거 인멸에 관해서라면, 간첩 사건은 아니지만

458) 김성학, 「간첩으로 조작된 72일간의 고문」, 『신동아』 1988년 10월호

459) 변호인 접견권 제한과 관련한 문제는 진실위 사법 분야 보고서,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근태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접견을 제한했다면서 정작 피의자가 증거 보전을 요구하는 신청은 기각했다. 1992년 정형근 당시 안기부 수사차장보는 김낙중 간첩 사건 중간수사발표 자리에서 “김씨를 접견하려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진정한 변호인이 아니고 ‘딴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변호사들에게 간첩 용의자를 접견하고 구속적부심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변호인 접견 불허가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지만 크게 보면 정당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간첩 사건 등에서 변호인 접견권은 피의자의 방어권·변론권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변호인 접견권이 허용되면서 간첩 사건 숫자가 크게 줄었던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호인 접견권과 더불어 피의자/피고인의 중요한 방어권 중 하나가 묵비권 즉 진술거부권이다. 그러나 이 역시 거의 보장되지 않았는데, 사법경찰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혹 진술거부권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행사하려 해도 저지받곤 했다. 한 예로 1995년 11월 15일 새벽에 안기부에 연행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박충렬 부의장은 수사관들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주기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구타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⁴⁶⁰⁾

한편으로 간첩 사건 등에서 피의자·피고인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 변호사들에 대한 신원조회나 비위조사 조치가 세워지는 것은 기본이고 변론 때문에 변호사들이 중정/안기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일도 일었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공판조서 왜곡 문제를 주장했던 김종길·조승각 변호사가 중정에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민청학련 사건 때에는 재판 중 했던 변론 때문에 강신옥 변호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송씨 일가 사건에서도 김성기 변호사가 안기부의 안가에

460)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1, 2006, 역사비평사, pp91-92

끌려가 조사를 받고 서약서를 제출한 후에야 풀려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재일동포 간첩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맡아 변론했던 태윤기 변호사는 안기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마땅히 형사소송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자 변호사법 위반을 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인권변호사들조차도 간첩 사건 등에는 관여하기 꺼려했던 이유 중에는 이처럼 변호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탄압도 있었다.

이처럼 진실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정/안기부에서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제도 등을 통한 이른바 당사자대등주의 원칙⁴⁶¹⁾은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되었다. 많은 시국사건·공안사건 피의자/피고인들이 변호인이나 가족은 물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철저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것이다.

사 | 누설·제공된 국가기밀의 성격

국가기밀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형법상 간첩 또는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이적단체 등의 조항의 적용범위가 결정된다. 국가보안법과 형법 적용에서 국가보안법의 확대적용의 경향은 국가기밀에 대한 개념 해체의 과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8년 개정된 국가보안법에는 “본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국가방위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적에게 비밀로 보지할 것을 요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461) 당사자대등주의 원칙이란 소송법상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하게 하여 서로 대등하게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에서도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보충적으로 당사자대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형사소송의 본질상 완전한 당사자 대등은 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나 원고인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강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률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열등감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검찰과 대등하게 맞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를 보강해주는 것이 변호인 제도이다. 당사자대등주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상 극히 중요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변호인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등 당사자대등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1960년의 법 개정에서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국가기밀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으려는 수사당국의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960년 10월 대법원은 “근대전이 비록 총력전이라도 정치·경제·문화 등 기타 사회 백반의 부문을 전쟁과 상관성이 있다 하여서 그를 즉시 군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국가기밀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수사기관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1966년 대법원은 국가기밀이라 함은 “북한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비록 일반 행인이 쉽게 외부에서 목견(目見)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한다고 하여 곧 그것이 위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97년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갖추어야 국가기밀이라 할 수 있다고 국가기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때까지 사법부는 북한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해가 되는 모든 정보가 국가기밀일 수 있다며, 국가기밀에서 ‘기밀성’의 요건보다는 ‘이적성’ 여부로만 국가기밀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기밀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인 비공지성마저도 요구되지 않게 되고 이는 공지의 사실이라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판단으로까지 이어졌다(황석영 사건). 공지의 사실 일지라도 그 누설이 대한민국에 해가 된다면 국가기밀이라는 논리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시키게 되었고, 이런 판례가 있었기에 간첩같지 않은 간첩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십수년의 장기형을 받은 거물간첩들이 탐지·수집·누설한 국가기밀을 들여다보면 황당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차풍길의 경우 북한이나 조총련에서 한국신문을 다 구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군사정보가 한국에 비해 넘쳐나던 1970년대 후반에 신문에서, 그것도 집에서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가게에 가서 우연히 본 신문에 난 기사 3건을 언제

만날지도 모를 재일지도원을 위해 편지지에 베껴 적어 두었다가, 최초의 기사를 적은 지 9개월 후 일본에 가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납북어부들의 경우는 이들이 국가기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처지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도대체 무전기라든지 남파공작원과의 접선약속이라든지 수집·탐지한 국가기밀을 북한 측에 전달할 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수십 명이 간첩이 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영 사건과 그에 앞선 미법도의 4건의 간첩 사건을 보면 북한은 인구 100명 가량인 작은 섬의 예비군 훈련 상황이나 군경 배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안기부 차장급에 해당하는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급 공작원이 8회 침투하는 등 모두 수십 차례에 걸쳐 미법도에 공작원을 남파시키고, 미법도의 ‘간첩’들을 입북 시킨 것이 된다. 송씨 일가 사건에서는 송도에 바람 쐬러 가다가 지나가며 본 고철 해체하는 광경도 국가기밀이 된다.

아

발표의 문제 : 피의사실 공표 및 확대·과장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주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례처럼 사건의 내용을 발표해 왔다. 이와 같은 발표는 안보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서 주요 공안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수사기관이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받아쓰는 것을 방치한다면 피의자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는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수사하여 발표한 사건 중에 피의자들이 주요 혐의사실에서 무죄가 난 경우가 자주 있다. 비교적 최근의 예로는 1997년 11월 20일 안기부가 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를 36년 간 고정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송치하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겨 놓은 상황으로 안기부가 고영복 교수가 포섭하려 한 야당의원들을 내사한다는 등의 소식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안기부가 36년 간 암약해 온 고정간첩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한 고영복 교수는 1심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는 간첩방조죄도 무죄를 선고 받았고, 다만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회합·통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즉 법원은 고영복이 간첩은 물론이고 간첩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그는 간첩으로 낙인찍힌지 오래이다.

1994년 구국전위 사건 당시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이광철 씨와 가족은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 없이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2001년 7월 21일 서울지법은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 없이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에 발표됐다”며 “이는 공표내용과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피의사실의 진실성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다.

이광철 씨 사건의 경우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광철 씨 역시 간첩죄로 기소되었다가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광철 씨는 판결 선고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첩으로 몰렸을 당시 가족들이 제대로 취업하기도 힘들었고 주위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 한국 사회에서 간첩의 누명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⁴⁶²⁾

진실위가 조사한 1980년대 초반의 4개 간첩사건의 경우, 안기부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한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보도자료가 방대한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의 직업이나 한 때의 경력을 과장해서 “한경희는 정계, 송지섭 군사, 송기준은 산업계, 송기섭은 공무원 속, 한광수·송기복은 학원 등에 침투, 국가기밀 수집”했고, 피의자들이 “국내에 소요 및 주요 사건 발생시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학생, 근로자 등의 대정부 투쟁을 선동”해 왔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는 이들 피의자들이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까지 간첩조직에 끌어들이고, “학생, 근로자 등의 대정부 투쟁을 선동”했다고 쓰고 있으나 이런 내용은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당시 5공정권에 거세게 저항하는 학생운동이 마치 간첩들의 조종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전형적인 색깔론이라 할 수 있다. 정영 사건의 경우는 공작금을 무려 10배나 부풀려 과장하고 있다.

자 | 대통령 보고와 ‘분부 사항’

한편 당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안기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힘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462) 한겨레신문, 2001년 7월 21일자.

당시의 대통령은 간첩의 검거에서 수사, 발표,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세세한 보고를 받은 것을 알려지고 있다. 진실위는 이 보고서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입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수많은 간첩 사건에서 딱 한 건, 1985년의 구미유학생 사건 관련 문서를 입수했을 뿐이다.

<주요 좌경대학 연계여부 수사상황보고>

- 북괴 대남공작, 운동권학생 연계사건-

1. 각하 분부사항

- 간첩 김성만이 연대출신임에도 연대내 부식망 없고
- 전남대생 간첩 강용주는 수차 상경하였으나 서울 운동권과 연계사실 없고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대학 관련자 없음.

2. 수사상황

- 간첩 양동화, 김성만 등의 각대학 연락혐의자 총93명 연행수사, 22명 입건 송치(85.9.3 기소)
- 간첩 김성만은 “전민중” 조직(5명)을 모체로 조직확산 기도중 검거됨으로써 출신대학인 연대침투 좌절
- 간첩 양동화, 강용주는 북괴지령 공작토대인 전남대 운동권내 침투에만 주력하고 기반이 없는 서울 운동권과 연결모색타 신분탄로로 검거되는 등, 조기색출, 좌경 주요대학 침투 사전방지

3. 조치

- 훈방한 서울대 등 각 대학 재학생 36명을 학원협조망으로 부식 북괴공작조직 색출
- 해외유학 운동권 학생 현황을 파악, 수사공작여건으로 개발

이 보고서로 미루어 볼 때 보안사령관 출신인 전두환 대통령은 구미유학생 간첩사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상황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⁴⁶³⁾, 진실위는 전두환 대통령의

463) 박정희 대통령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사형으로 치달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실위의

경우 간첩사건의 수사에서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지시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 힘이 실리기도 하지만, 일단 보고가 되고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기기 때문에, 수사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 사법분야 보고서에서 다른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서 안기부가 내란죄를 적용하지 말자는 담당검사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눌러버린 것도 이미 사건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에 기초해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은 간첩 사건의 재판에도 깊은 관심을 쏟았는데, 간첩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아직도 이런 판사가 있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한 예로 보안사가 수사한 재일동포 간첩 심한식 사건의 항소심에서 1987년 2월 무죄가 선고되자⁴⁶⁴⁾ 전두환 대통령이 보인 격한 반응에 대해 무죄선고 재판장인 김현무 당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뒷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선고하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간첩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무죄판결을 하느냐, 아직도 이런 판사가 있느냐, 이런 판사가 어떻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까지 되었느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관장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에 신문에는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까마는 사법부가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법관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역시 운이 좋아 가지고 법원장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⁴⁶⁵⁾

간첩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대통령의 시각이 간첩사건에 무슨 증거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보고서 참조. 그러나 다른 간첩 사건에 대해 그가 보인 반응을 입증하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464) 안기부 자료, 「간첩 심한식에 대한 항소심, 간첩혐의 무죄선고 경위 등 확인보고」, 1987년 2월.

465) 「제227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02년 2월 27일, p20.

있느냐는 것이고, 일선 수사부서에서도 “입북사실 지령사실 등 사실상 입증불가능”⁴⁶⁶⁾하다고 자인하는 분위기는 간첩 사건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해서라도 본인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대통령과 일선 정보기관의 간첩사건에 대한 시각이 이러한데, 법원에서 간첩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자, 최고권력자는 몹시 불쾌해 했고, 일선 정보기관은 최고권력자의 이런 뜻에 따라 사법부의 단속에 나서기도 했던 것이다.

466) 안기부 자료, 「간첩 심한식에 대한 항소심, 간첩혐의 무죄선고 경위 등 확인보고」. 1987년 2월

IV 결 론

일반적으로 간첩(間諜, spy)은 ‘비밀리에 적대국의 내정·동정 등을 탐지하여 보고하는 자, 또는 자국의 비밀을 수집하여 적대국에 제공하는 자’로 규정된다. 즉, 국가나 어떠한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허위나 매수 등의 수단을 써서 수집 및 탐지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나 단체에게 제공하는 자를 통틀어 말한다.⁴⁶⁷⁾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은 치열한 첩보와 침투활동을 통해 경쟁적으로 수많은 간첩을 파견하였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이 침투시킨 간첩들을 적발하는 방첩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간첩을 막아내고 잡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존재를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그동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존립을 위해 방첩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정보수사기관원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간첩의 적발과 체포에 대한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진실위가 조사한 동백림·인혁당 재건위·송씨일가·박동운·정영·차풍길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수사과정에서 장기구금·수사서류 허위 작성·고문·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정보수사기관에서 간첩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상당수였다. 때로는 ‘여간첩 수지 김 사건’처럼 단순 살인사건이 대공사건으로 왜곡되었던 일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모든 간첩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단이후 수천 건의 간첩사건 중에서 사건 관련자나 인권단체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진실위의 조사로 인해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아주 극소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간첩사건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467) 두산세계대백과

과거 간첩사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위의 설립 취지가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고 국가정보원이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⁴⁶⁸⁾이므로,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 모두는 소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본 보고서가 담고 있는 중정·안기부의 간첩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진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발판으로 삼아주길 기대한다.

진실위의 간첩사건 조사에 있어서 나타난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정된 조사활동 기간과 조사권한의 한계 및 조사인력의 부족 등은 진실위의 근본적인 한계였음을 밝혀둔다. 더불어 진실위가 조사한 간첩사건이 과거 정보수사기관이 수사한 대공사건 중에 극히 일부이므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모든 대공사건에 적용해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오랜 시간의 경과로 관련자가 사망하거나 소재파악이 어려워 면담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이 아쉽다 하겠다.

【진실위가 조사한 간첩사건의 내용】

사건명	주요 혐의	조사 결과	비고
동백림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베를린 북한대사관 방문 및 입북, 금품수수 등 간첩활동 ○ 북한지령에 의해 민비연 설립 후 정부전복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在유럽 유학생 등이 동베를린 북한대사관을 방문하고 입북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 사실 확인 ○ 자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증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유도하여 민비연 관련자들에게 간첩죄 적용을 남용 ○ 중정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후 판사와 검사들에게 금품 제공을 통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 ○ 사건 관련자들을 독일 등 5개국에서 30여명을 연행하는 등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하여 인권후진국으로서의 오명 자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음에도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왔음

468)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p>인혁당 재건위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연계되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국가 변란을 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혁당 재건위'라는 단체는 중정과 군사 법정 검찰부가 수사의 편의상 붙인 명칭 일뿐 실제로 존재한 조직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피의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교도관, 파견 경찰 등의 목격증언을 통해 확인됨 ○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 본 행위는 사실이지만, 다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8명이 대법원의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1.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를 선고
<p>남한조선노동당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노동당 간부 이선실이 10여 년 동안 남한에 잠복하면서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하고 간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선실은 북한공작원임이 확인되었음 ○ 김낙중은 1990년에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받고 공작장비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안기부의 발표대로 36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한 것은 사실과 다름 ○ 사건의 실체가 상당부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기부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 관련자를 '간첩'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하였음 	
<p>송씨 일가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당시 월북한 송창섭과 접촉하고 입북하여 간첩교육을 받아 남파되어 국가기밀을 수집·보고하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등 25년간 간첩으로 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창섭이 8차 남파되었다고 했으나 1968년 숙청된 사실 확인 : 흑룡공작서류 보면 안기부도 2차 남파까지만 인정 ○ 송지섭, 송기준 입북사실 없음 ○ 지방법원 1회, 고등법원 3회, 대법원 3회 등 총 7회 재판(대법원에서 2차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유죄판결 유도 위한 안기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확인 	
<p>박동운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당시 월북한 박영준과 접촉하고, 2회 입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등 가족 및 친척을 포섭하여 24년간 간첩으로 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영준이 남파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접선형의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 강요 ○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구금 등 위법행위 은폐 ○ 박영준이 남파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박동운도 입북했다는 시기에 알리바이가 입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4 재심청구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대상 사건
<p>정영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년 조개잡이를 하다 납북되어 평양 체류 중 6·25당시 월북한 정진구에게 포섭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귀환한데 이어 1회 입북하여 재교육을 받고, 미법도 인근 경비상황 등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진구가 남파되었다는 증거 및 정영이 1965년 납북시 정진구와 접선, 포섭되었다는 증거, 1971년 정영의 말입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십수년간의 내사 끝에 장기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 강요 ○ 1982년 안기부 본부에서 1차로 관련자를 연행조사 후 무혐의 방면했으나 198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대상 사건

	18년간 간첩으로 암약	<p>안기부 인천분실로 재연행되어 간첩죄로 구속기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 장기 불법구금 등 위법행위 은폐 ○ 1965년 조개잡이하다 납북된 어부들 중 1976년 오형근 간첩사건을 시작으로 1977년 안장영, 1977년 안희천, 1982년 황용윤, 1983년 정영 사건 등 5건이 발생했는데 이 5건의 간첩 사건의 내용과 구성이 매우 유사. 각각의 간첩사건은 앞서 일어난 간첩사건에서 유출된 첩보를 기반으로 발생하였음에도 5건의 간첩사건 상의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됨 ○ 안기부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공판조서에서 왜곡·변조된 의혹이 다수 발견됨 	
차풍길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신문기사 등 국가 기밀을 수집·보고하는 등 간첩행위 ○ 주한미군에 관한 기밀을 수집·탐지할 목적으로 동두천으로 이사한 후 신문기사 수집·보고하는 등 간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행위에 대한 증거는 자백진술서와 영사증명서, 그리고 공작원에게 받았다는 징표(가스라이터, 수건, 비누)인데, 자백진술은 불법적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의심되고, 영사증명서는 현지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안기부 수사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며, 징표는 공작원으로 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7. 진실화해위원회 ‘인정’ 결정
김진모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독 광부로서 모스크바 경유 북한 입북 후 노동당 입당 및 간첩교육, 북한 내과의사로 신분위장 후 서독 정부에 망명 후 한국에 위장 귀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진모는 서독 광부로 파독 후 간호사와 동거하다가 북한공작원에 포섭되어 모스크바를 경유 평양에 도착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내과의사 박정수로 신분을 위장하여 서독 정부에 위장 망명하였으며, 한국에 위장 귀순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발각되어 간첩죄로 처벌받음 	
윤태식 사건(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 김옥분이 북한의 공작원이었으며,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되려다가 탈출 ○ 김옥분은 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 일명 ‘여간첩 수지 김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는 윤태식이 처 김옥분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윤태식의 거짓 진술을 이용하여 대공사건으로 왜곡하였음 ○ 당시 수사실무자들은 윤태식을 처벌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안기부장이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 ○ 2001.11. 윤태식은 검찰에 의해 살인죄 등으로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법원은 윤태식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 6월 선고. 국가 배상판결 ○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 등에게 45억원으로 구상권을 청구

469) 윤태식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진실위는 과거 안기부가 사건은 은폐, 왜곡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 총론(Ⅰ)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Ⅱ)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Ⅲ)

-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 정치 · 사법편(Ⅳ)

● 언론 · 노동편(Ⅴ)

● 학원 · 간첩편(Ⅵ)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학원 · 간첩편 (Ⅵ) —

편 집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발행처 | 국가정보원

발간일 | 2007년 10월 10일